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 ❑ 행정안전부 소관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 인사혁신처 소관
- ❑ 경찰청 소관
- ❑ 소방청 소관

2025.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 목 차 】

Ⅰ. 소관부처 회부예산안 ····· 1

Ⅱ. 심사경과 ····· 3

Ⅲ. 2026년도 예산안 개요 및 검토보고 ····· 6

[행정안전부 소관] ·····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377

[10·29이태원참사 특별위원회 소관] ····· 451

[인사혁신처 소관] ····· 480

[경찰청 소관] ····· 561

[소방청 소관] ····· 716

Ⅳ. 대체토론 요지 ····· 861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862

Ⅵ. 심사결과 ····· 865

Ⅶ. 소수의견의 요지 ····· 868

Ⅷ. 부대의견 ····· 869

<참고자료> ····· 875

2026년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5. 11.

행정안전위원회

Ⅰ. 소관부처 회부예산안

1.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3.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 일반회계 : 세출

4.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공무원연금기금 : 수입 및 지출

5. 경찰청 소관 예산안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세출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세입 및 세출

6. 소방청 소관 예산안

○ 일반회계 : 세입 및 세출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5년 9월 3일

2. 회부일자 : 2025년 9월 4일

3.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국회(정기회)

가. 행정안전부 소관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12.)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2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3.)
- 상정·예비심사

○ 제3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4.)
- 상정·예비심사

○ 제4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8.)
- 상정·예비심사·수정의결

○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18.)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12.)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2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3.)
- 상정·예비심사

○ 제3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4.)
- 상정·예비심사

○ 제4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8.)
- 상정·예비심사·수정의결

○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18.)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12.)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2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3.)
- 상정·예비심사

○ 제3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4.)
- 상정·예비심사

○ 제4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8.)
- 상정·예비심사·수정의결

○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18.)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라. 인사혁신처 소관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12.)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2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3.)
- 상정·예비심사

○ 제3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4.)
- 상정·예비심사

○ 제4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8.)
- 상정·예비심사·수정의결

○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18.)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마. 경찰청 소관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12.)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2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3.)
- 상정·예비심사

○ 제3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4.)
- 상정·예비심사

○ 제4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8.)
- 상정·예비심사·수정의결
○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18.)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바. 소방청 소관 : 제429회국회(정기회)

○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12.)
-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
○ 제2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3.)
- 상정·예비심사
○ 제3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4.)
- 상정·예비심사
○ 제4차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소위(2025. 11. 18.)
- 상정·예비심사·수정의결
○ 제1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 11. 18.)
- 상정·소위심사보고·찬반토론·의결(수정가결)

Ⅲ. 2026년도 예산안 개요 및 검토보고

〔행정안전부 소관〕

Ⅰ. 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대비 165억 1,800만원이 증가(10.13%)한 1,795억 9,500만원임. 이 중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596목)이 1,201억 7,5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241억 5,300만원, 일반회계 기타재산이자수입(546목) 148억 900만원 등이 다음으로 큰 규모임.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B-A)/A
계	163,077	179,595	16,518	10.13
o 일반회계	143,392	153,126	9,734	6.79
-재산수입: 11관	18,938	21,309	2,371	12.52
(건물대여료: 512목)	2,976	6,076	3,100	104.17
(토지대여료: 511목)	424	424	0	0.00
(기타재산이자수입: 546목)	15,538	14,809	-729	-4.69
-경상이전수입: 12관	115,079	121,798	6,719	5.84
(과징금: 565목)	-	81	81	순증
(위약금: 572목)	945	1,542	597	63.17
(기타경상이전수입: 596목)	114,134	120,175	6,041	5.29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3관	1,297	1,352	55	4.24
(면허료및수수료: 651목)	38	39	1	2.63
(기타잡수입: 691목)	1,259	1,313	54	4.29
-수입대체경비수입: 14관	8,078	8,667	589	7.29
(기타잡수입: 691목)	8,078	8,667	589	7.29
o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685	26,469	6,784	34.46
-재산수입: 11관	1,493	2,316	823	55.12
(기타재산이자수입: 546목)	1,493	2,316	823	55.12
-경상이전수입: 12관	18,192	24,153	5,961	32.77
(기타경상이전수입: 596목)	18,192	24,153	5,961	32.77

주) 총계·총수입 기준 동일

한편, 수입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한 주요한 이유는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이 전년대비 각각 60억 4,100만원, 59억 6,1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임.

기타경상이전 수입은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이 수납되는 과목인데,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는 기존 국고보조사업의 집행잔액 수입은 전년대비 축소되었으나, 2025년에 지급한 민생지원금의 반납 예상액이 추가로 반영되어 전체적으로는 증가하게 된 것임. 한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는 최근 수납액이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고려[1]하여 예산액을 전년 대비 증액하게 된 것임.

1) 2024년 기타경상이전수입(지역자율계정) 수납액은 예산액 18억 3,300만원의 920.5%인 168억 7,200만원임

나. 세출예산안

(1) 총 괄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76조 4,426억 3,6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72조 839억 3,600만원 대비 4조 3,587억원(6.05%) 증가하였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5년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증 감 (B-A)/A
계	72,083,936	76,442,636	4,358,700	6.05
o 일반회계	69,720,872	72,742,432	3,021,560	4.33
-지방교부세	67,038,505	69,345,855	2,307,350	3.44
-인건비	369,519	390,873	21,354	5.78
-기본경비	39,671	39,398	-273	-0.69
-사업비	2,273,177	2,966,306	693,129	30.49
o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363,064	3,700,204	1,337,140	56.59
-사업비	2,363,064	3,700,204	1,337,140	56.59

주 1) 총계·총지출 기준 동일
2)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프로그램(1600) 6개 세부사업 예산 전체
3) 인건비: 과학수사연구원인건비, 본부인건비, 소속기관인건비 등 3개 단위사업 예산 전체
4) 기본경비: 과학수사연구원기본경비, 본부기본경비, 소속기관기본경비 등 3개 단위사업 예산 전체
5) 사업비: 상기 지방교부세·인건비·기본경비 내역을 제외한 예산 전체

이를 예산 목적별로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69조 3,458억 5,500만원으로서 국세수입 예산안 추계와 연동하여 전년 대비 2조 3,073억 5,000만원(3.44%) 증가하였음.

다음 인건비는 3,908억 7,300만원으로서 공무원 보수 인상(전년 대비 3.5%)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13억 5,400만원(5.78%) 증가하였으며, 기본경비는 393억 9,8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2억 7,300만원(-0.69%) 감소하였음.

마지막으로 사업비는 일반회계의 경우 2조 9,663억 6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6,931억 2,900만원(30.49%) 증가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도 3조 7,002억 400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1조 3,371억 4,000만원(56.59%) 증가하였음.

우선 일반회계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재난대책비(보조) 세부사업(2734-300) 예산이 2025년 대비 크게 증가(6,500억 2,000만원)된 것에 기인함.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사업(1349-306) 예산이 2025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6년 예산안에는 1조 1,500억원이 반영된 것에 기인함.[2)]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2025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2025년 추가경정예산으로 1조원이 반영되었음.

(2)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은 3개 분야, 6개 부문, 20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단위 : 백만원, %)

부문	프로그램	2025년 본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B-A)	증 감 (B-A)/A
총 계		720,839	764,426	43,587	6.05
일반·지방행정 분야(010)		703,298	738,510	35,212	5.01
지방행정·재정지원(013)	소 계	685,301	720,106	34,805	5.08
	지방자치분권(1100)	652	617	△35	△5.37
	지역발전(1200)	13,835	14,067	232	1.68
	지방재정경제(1300)	263	11,779	11,516	4378.71
	지방자치인재개발(1400)	143	158	15	10.49
	이북5도(1500)	23	26	3	13.04
	지방교부세(1600)	670,385	693,459	23,074	3.44
정부자원관리(015)	소 계	7,994	8,451	457	5.72
	인사관리(1800)	2	2	-	-
	정부혁신조직(1900)	340	537	197	57.94
	전자정부(2000)	7,652	7,912	260	3.40
일반행정(016)	소 계	10,001	9,953	△48	△0.48
	정부의전(2100)	177	174	△3	△1.69
	청사관리(2200)	2,271	2,399	128	5.64
	기록물관리(2300)	454	489	35	7.71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2400)	3,219	2,836	△383	△11.90
	행정안전행정지원(7000)	3,880	4,055	175	4.51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020)		17,296	25,847	8,551	49.44
경찰(023)	과학수사(2500)	683	700	17	2.49
재난관리(025)	소 계	16,614	25,147	8,533	51.36
	안전관리(2600)	9,770	11,542	1,772	18.14
	재난관리(2700)	4,386	10,913	6,527	148.81
	재난안전기술개발(2900)	976	1,019	43	4.41
	재난안전정보화(3000)	1,482	1,673	191	12.89
사회복지 분야(080)		245	70	△175	△71.43
취약계층지원(082)	일자리지원(3100)	245	70	△175	△71.43

(3) 사업 내역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은 114개 단위사업과 308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세부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69,976,907	72,083,936	85,982,183	76,442,636	4,358,700	6.0
[11]일반회계						67,345,917	69,720,872	82,554,813	72,742,432	3,021,560	4.3
	[010]일반·지방행정					66,307,040	68,937,763	81,110,160	71,272,728	2,334,965	3.4
		[013]지방행정·재정지원				64,631,995	67,147,094	79,317,961	69,444,236	2,297,142	3.4
			[1100]지방자치분권			39,431	39,480	39,480	34,601	△4,879	△12.4
				[1131]지자체역량강화		4,942	6,195	6,195	5,181	△1,014	△16.4
					[302]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3,054	3,423	3,423	3,123	△300	△8.8
					[304]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666	935	935	927	△8	△0.9
					[314]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463	1,008	1,008	378	△630	△62.5
					[315]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161	161	161	145	△16	△9.9
					[316]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지원	598	599	599	539	△60	△10.0
					[319]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	69	69	69	-	-
				[1132]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7,631	1,524	1,524	1,818	294	19.3
					[300]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7,631	1,524	1,524	1,818	294	19.3
				[1133]기반정보관련전산망운영(정보화)		228	205	205	-	△205	순감
					[504]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정보화)	228	205	205	-	△205	순감
				[1135]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984	1,177	1,177	838	△339	△28.8
					[500]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984	1,177	1,177	838	△339	△28.8
				[1137]주민등록및인감운영(정보화)		2,732	5,294	5,294	5,109	△185	△3.5
					[500]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정보화)	2,732	5,294	5,294	5,109	△185	△3.5
				[1138]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44	544	544	537	△7	△1.3
					[501]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44	544	544	537	△7	△1.3
				[1139]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4,635	6,410	6,410	5,323	△1,087	△17.0
					[307]지자체경쟁력지원	4,635	6,410	6,410	5,323	△1,087	△17.0
				[1140]비영리민간단체지원		3,822	3,604	3,604	3,907	303	8.4
					[300]비영리민간단체지원	3,822	3,604	3,604	3,907	303	8.4
				[1142]새마을운동지원		6,000	6,645	6,645	5,442	△1,203	△18.1
					[304]새마을운동지원	880	792	792	713	△79	△10.0
					[305]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5,120	5,853	5,853	4,729	△1,124	△19.2
				[1143]성숙하고따뜻한사회구현		488	369	369	331	△38	△10.3
					[305]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	278	180	180	161	△19	△10.6
					[308]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210	189	189	170	△19	△10.1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1145]국민통합위원회 운영		7,426	7,513	7,513	6,115	△1,398	△18.6
					[300]국민통합위원회 운영	7,426	7,513	7,513	6,115	△1,398	△18.6
			[1200]지역발전			27,617	26,146	26,146	22,648	△3,498	△13.4
				[1234]생활공감정책추진		252	260	260	-	△260	순감
					[300]생활공감정책추진	252	260	260	-	△260	순감
				[1237]도로명주소사업추진		22,822	21,023	21,023	18,185	△2,838	△13.5
					[300]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19,957	18,665	18,665	18,185	△480	△2.6
					[501]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	2,865	2,358	2,358	-	△2,358	순감
				[1242]한국 섬 진흥원 지원		4,543	4,863	4,863	4,463	△400	△8.2
					[300]한국섬진흥원 지원	4,543	4,863	4,863	4,463	△400	△8.2
			[1300]지방재정경제			25,465	26,302	12,197,169	22,748	△3,554	△13.5
				[1331]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1,113	1,157	1,157	993	△164	△14.2
					[300]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1,113	1,157	1,157	993	△164	△14.2
				[1332]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620	7,208	7,208	7,671	463	6.4
					[500]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	5,620	7,208	7,208	7,671	463	6.4
				[1333]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775	5,453	5,453	5,149	△304	△5.6
					[500]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5,675	5,353	5,353	5,051	△302	△5.6
					[503]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00	100	100	98	△2	△2.0
				[1335]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91	156	156	388	232	148.7
					[300]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91	156	156	388	232	148.7
				[1336]지방공기업경영평가추진		3,407	3,411	3,411	3,404	△7	△0.2
					[301]지방공기업경영평가	3,407	3,411	3,411	3,404	△7	△0.2
				[1337]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3,587	3,587	3,587	3,297	△290	△8.1
					[300]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3,587	3,587	3,587	3,297	△290	△8.1
				[1338]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1,364	1,424	1,424	1,042	△382	△26.8
					[300]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1,364	1,424	1,424	1,042	△382	△26.8
				[1349]지역경제지원		4,507	3,906	3,906	804	△3,102	△79.4
					[300]지역금융활성화	87	87	87	114	27	31.0
					[301]지역경제활성화	4,420	3,819	3,819	690	△3,129	△81.9
				[1350]긴급재정지원		-	-	12,170,867	-	-	순감
					[301]민생회복 소비쿠폰	-	-	12,170,867	-	-	순감
			[1400]지방자치인재개발			14,533	14,370	14,370	15,822	1,452	10.1
				[1431]지방자치인재개발원운영		5,595	5,817	5,817	6,594	777	13.4
					[300]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4,535	4,666	4,666	5,350	684	14.7
					[301]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825	1,011	1,011	875	△136	△13.5
					[302]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236	140	140	369	229	163.6
				[1432]지방자치인재개발원정보화(정보화)		864	912	912	887	△25	△2.7
					[500]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 교육센터운영(정보화)	371	375	375	375	-	-
					[501]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493	537	537	512	△25	△4.7
				[1433]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8,074	7,641	7,641	8,341	700	9.2
					[650]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8,074	7,641	7,641	8,341	700	9.2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1500]이북5도			1,955	2,291	2,291	2,562	271	11.8
				[1531]이북도민관련지원		1,955	2,291	2,291	2,562	271	11.8
					[300]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499	613	613	531	△82	△13.4
					[301]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581	469	469	499	30	6.4
					[302]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875	1,209	1,209	1,532	323	26.7
			[1600]지방교부세			64,522,994	67,038,505	67,038,505	69,345,855	2,307,350	3.4
				[1631]보통교부세		57,793,200	60,401,769	60,401,769	61,703,228	1,301,459	2.2
					[300]보통교부세	57,793,200	60,401,769	60,401,769	61,703,228	1,301,459	2.2
				[1632]특별교부세		893,800	823,189	823,189	954,133	130,944	15.9
					[300]지역현안특별교부세	715,000	658,551	658,551	763,307	104,756	15.9
					[301]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178,800	164,638	164,638	190,826	26,188	15.9
				[1633]부동산교부세		4,109,800	4,004,709	4,004,709	4,698,208	693,499	17.3
					[300]부동산교부세	4,109,800	4,004,709	4,004,709	4,698,208	693,499	17.3
				[1644]재난특별교부세		893,699	823,189	823,189	954,133	130,944	15.9
					[300]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	893,699	823,189	823,189	954,133	130,944	15.9
				[1645]소방안전교부세		832,495	985,649	985,649	1,036,153	50,504	5.1
					[300]소방안전교부세	832,495	985,649	985,649	1,036,153	50,504	5.1
			[015]정부자원관리			724,686	790,534	790,534	833,219	42,685	5.4
			[1800]인사관리			164	167	167	152	△15	△9.0
				[1831]공무원단체건전육성		164	167	167	152	△15	△9.0
					[306]공무원단체건전육성	164	167	167	152	△15	△9.0
			[1900]정부혁신조직			20,668	25,132	25,132	41,850	16,718	66.5
				[1931]책임운영기관제운영및정부조직진단관리		1,105	1,140	1,140	1,109	△31	△2.7
					[300]정부조직진단관리	647	681	681	681	-	-
					[301]책임운영기관제운영	459	459	459	428	△31	△6.8
				[1932]민원처리개선(정보화)		7,993	11,132	11,132	29,089	17,957	161.3
					[500]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	524	537	537	537	-	-
					[501]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7,407	10,530	10,530	26,152	15,622	148.4
					[505]지식기반의행정구축(정보화)	62	65	65	2,400	2,335	3,592.3
				[1933]행정효율성향상		9,080	10,435	10,435	9,261	△1,174	△11.3
					[300]행정생산성향상지원	438	469	469	236	△233	△49.7
					[302]정부혁신국제네트워크강화및대외신인도제고	676	488	488	503	15	3.1
					[303]UN거버넌스센터지원(ODA)	2,411	2,629	2,629	2,756	127	4.8
					[306]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734	773	773	733	△40	△5.2
					[307]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4,241	5,492	5,492	4,464	△1,028	△18.7
					[311]온라인 청원 시스템(정보화)	581	584	584	569	△15	△2.6
				[1935]정보공개활성화		2,489	2,425	2,425	2,391	△34	△1.4
					[305]정보공개활성화(정보화)	2,489	2,425	2,425	2,391	△34	△1.4
			[2000]전자정부			703,854	765,235	765,235	791,217	25,982	3.4
				[2031]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21,230	26,007	26,007	17,561	△8,446	△32.5
					[501]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정책연구(정보화)	2,098	2,886	2,886	2,886	-	-
					[504]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9,984	11,605	11,605	11,843	238	2.1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505]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6,342	8,684	8,684	-	△8,684	순감
					[506]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정보화)	2,806	2,832	2,832	2,832	-	-
				[2032]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12,854	16,439	16,439	15,003	△1,436	△8.7
					[500]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2,854	15,510	15,510	15,003	△507	△3.3
					[506]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	929	929	-	△929	순감
				[2033]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36,329	19,933	19,933	19,514	△419	△2.1
					[500]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36,329	19,933	19,933	19,514	△419	△2.1
				[2034]전자정부성과평가강화(정보화)		2,982	3,568	3,568	3,592	24	0.7
					[500]전자정부 성과평가(정보화)	2,982	3,568	3,568	3,592	24	0.7
				[2035]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정보화)		4,045	5,087	5,087	4,031	△1,056	△20.8
					[506]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공공서비스 촉진(정보화)	2,942	3,616	3,616	3,488	△128	△3.5
					[507]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1,103	1,471	1,471	543	△928	△63.1
				[2036]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455,068	517,987	517,987	531,210	13,223	2.6
					[500]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12,009	259,940	259,940	270,240	10,300	4.0
					[503]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정보화)	73,476	83,099	83,099	98,197	15,098	18.2
					[507]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150,601	173,334	173,334	158,400	△14,934	△8.6
					[508]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18,982	1,614	1,614	4,373	2,759	170.9
				[2038]국제사회전자정부선도국가위상강화(정보화)		8,565	8,926	8,926	7,392	△1,534	△17.2
					[502]전자정부분야국제교류협력(ODA,정보화)	1,401	1,375	1,375	1,382	7	0.5
					[501]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ODA)	5,941	6,391	6,391	4,980	△1,411	△22.1
					[507]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운영(정보화)	328	328	328	328	-	-
					[508]전자정부대외협력활동강화(정보화)	895	832	832	702	△130	△15.6
				[2039]정보자원관리기반확충(정보화)		10,486	19,119	19,119	39,095	19,976	104.5
					[500]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3,643	5,250	5,250	3,973	△1,277	△24.3
					[504]디지털서비스 개방(정보화)	6,843	8,477	8,477	7,143	△1,334	△15.7
					[506]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	5,392	5,392	7,371	1,979	36.7
					[508]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	-	-	20,608	20,608	순증
				[2040]미래전자정부추진(정보화)		6,796	7,358	7,358	10,273	2,915	39.6
					[501]스마트워크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	4,860	4,998	4,998	6,202	1,204	24.1
					[504]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 고도화(정보화)	1,136	1,021	1,021	919	△102	△10.0
					[505]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 구축(정보화)	800	1,339	1,339	3,152	1,813	135.4
				[2041]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3,910	3,901	3,901	3,511	△390	△10.0
					[502]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3,910	3,901	3,901	3,511	△390	△10.0
				[2042]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신축		22,786	9,058	9,058	22,599	13,541	149.5
					[500]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22,786	9,058	9,058	22,599	13,541	149.5
				[2045]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27,719	29,948	29,948	30,318	370	1.2
					[500]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27,719	29,948	29,948	30,318	370	1.2
				[2046]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75,292	72,905	72,905	66,385	△6,520	△8.9
					[502]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44,925	41,634	41,634	40,662	△972	△2.3
					[503]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정보화)	14,664	15,008	15,008	10,478	△4,530	△30.2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504]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5,352	7,653	7,653	8,253	600	7.8
					[507]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10,351	8,610	8,610	6,992	△1,618	△18.8
				[2047]대민서비스기반확충(정보화)		15,793	24,999	24,999	20,733	△4,266	△17.1
					[500]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15,793	24,999	24,999	20,733	△4,266	△17.1
		[016]일반행정				950,358	1,000,135	1,001,665	995,273	△4,862	△0.5
			[2100]정부의전			12,956	17,726	18,656	17,368	△358	△2.0
				[2131]국가의정관리		12,956	17,726	18,656	17,368	△358	△2.0
					[300]국경일등정부행사	1,546	4,924	5,854	2,559	△2,365	△48.0
					[301]정부포상	9,942	10,755	10,755	13,368	2,613	24.3
					[302]전직대통령및유족연금	343	323	323	336	13	4.0
					[303]국가상징선양	143	776	776	147	△629	△81.1
					[307]전직대통령및유족예우	982	948	948	958	10	1.1
			[2200]청사관리			227,052	227,123	227,123	239,876	12,753	5.6
				[2231]정부청사시설관리		221,926	221,430	221,430	234,183	12,753	5.8
					[300]청사시설유지보수	66,631	62,777	62,777	65,936	3,159	5.0
					[301]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16,051	16,227	16,227	20,177	3,950	24.3
					[302]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126,687	139,093	139,093	147,880	8,787	6.3
					[303]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재건축	12,556	2,953	2,953	-	△2,953	순감
					[500]스마트정부청사관리체계구축(정보화)	-	380	380	190	△190	△50.0
				[2232]공무원통근버스운행		5,126	5,693	5,693	5,693	-	-
					[305]공무원통근버스운행	5,126	5,693	5,693	5,693	-	-
			[2300]기록물관리			43,156	45,336	45,336	48,864	3,528	7.8
				[2331]기록물효율적관리		16,543	17,144	17,144	16,640	△504	△2.9
					[303]국가기록물정리	11,884	12,314	12,314	11,893	△421	△3.4
					[306]기록물보존복원	4,659	4,830	4,830	4,747	△83	△1.7
				[2332]기록관리정보화(정보화)		8,132	7,895	7,895	10,281	2,386	30.2
					[500]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180	302	302	292	△10	△3.3
					[501]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3,978	4,089	4,089	6,505	2,416	59.1
					[502]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3,973	3,504	3,504	3,484	△20	△0.6
				[2333]기록관리정책및교육		2,865	2,823	2,823	3,521	698	24.7
					[300]기록관리정책및교육	2,865	2,823	2,823	3,521	698	24.7
				[2334]기록정보서비스		1,168	1,746	1,746	1,254	△492	△28.2
					[300]기록정보서비스	1,168	1,746	1,746	1,254	△492	△28.2
				[2335]기록물보전시설관리		6,310	6,969	6,969	7,637	668	9.6
					[302]기록관보존시설관리	6,310	6,969	6,969	7,637	668	9.6
				[2336]기록물보존기술연구		189	400	400	400	-	-
					[301]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189	400	400	400	-	-
				[2337]대통령기록관리		7,949	8,359	8,359	9,131	772	9.2
					[304]대통령기록관리	7,949	8,359	8,359	9,131	772	9.2
			[2400]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294,670	321,910	322,510	283,634	△38,276	△11.9
				[2431]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227,728	265,200	265,200	232,692	△32,508	△12.3
					[300]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957	1,070	1,070	1,094	24	2.2
					[301]과거사관련사업지원	13,364	10,461	10,461	9,405	△1,056	△10.1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303]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16,009	11,792	11,792	10,813	△979	△8.3
					[304]한국전쟁전후민간인희생자전국단위위령시설조성	-	-	-	18,365	18,365	순증
					[306]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	197,398	241,877	241,877	193,015	△48,862	△20.2
				[2432]강제동원진상규명		8,368	8,477	8,477	9,166	689	8.1
					[300]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7,464	7,694	7,694	8,619	925	12.0
					[302]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904	783	783	547	△236	△30.1
				[2433]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		2,581	2,578	2,578	2,530	△48	△1.9
					[300]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581	2,578	2,578	2,530	△48	△1.9
				[2434]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23,324	8,033	8,633	7,230	△803	△10.0
					[300]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23,324	8,033	8,633	7,230	△803	△10.0
				[2435]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1,413	30,864	30,864	24,758	△6,106	△19.8
					[300]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1,413	30,864	30,864	24,758	△6,106	△19.8
				[2436]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6,355	1,954	1,954	3,188	1,234	63.2
					[300]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6,355	1,954	1,954	3,188	1,234	63.2
				[2437]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지원		4,901	4,804	4,804	3,770	△1,034	△21.5
					[300]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4,901	4,804	4,804	3,770	△1,034	△21.5
				[2439]진실화해위원회 청산 운영		-	-	-	300	300	순증
					[300]진실화해위원회 청산 운영	-	-	-	300	300	순증
			[7000]행정안전행정지원			372,524	388,040	388,040	405,531	17,491	4.5
				[7001]본부인건비		178,540	182,338	182,338	191,892	9,554	5.2
					[100]인건비(본부)	178,540	182,338	182,338	191,892	9,554	5.2
				[7002]소속기관인건비		141,187	149,563	149,563	159,895	10,332	6.9
					[102]인건비(지방자치인재개발원)	6,581	7,875	7,875	7,920	45	0.6
					[103]인건비(기록)	18,039	18,952	18,952	20,088	1,136	6.0
					[104]인건비(청사)	72,476	73,568	73,568	80,765	7,197	9.8
					[105]인건비(국가정보자원관리원)	22,011	24,657	24,657	26,085	1,428	5.8
					[106]인건비(이북)	3,811	3,992	3,992	4,088	96	2.4
					[107]국가재난안전교육원인건비	3,301	3,639	3,639	3,455	△184	△5.1
					[108]재난안전연구원인건비(R&D)	8,061	9,272	9,272	9,921	649	7.0
					[109]인건비(대통령기록관)	6,697	7,381	7,381	7,314	△67	△0.9
					[156]인건비(부마민주항쟁위)	210	227	227	259	32	14.1
				[7011]본부기본경비		20,979	24,028	24,028	23,100	△928	△3.9
					[200]기관운영(총액)	6,128	5,927	5,927	5,539	△388	△6.5
					[201]대변인실(총액)	65	71	71	76	5	7.0
					[202]의정관실(총액)	17	29	29	14	△15	△51.7
					[203]감사관실(총액)	53	62	62	55	△7	△11.3
					[204]기획조정실(총액)	181	172	172	210	38	22.1
					[205]정부혁신조직실(총액)	71	74	74	85	11	14.9
					[206]전자정부국(총액)	130	135	135	157	22	16.3
					[207]차관보실(총액)	316	316	316	323	7	2.2
					[208]지방재정경제실(총액)	197	194	194	196	2	1.0
					[209]인사기획관실(총액)	12	15	15	14	△1	△6.7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210]안전감찰관실기본경비(총액)	32	32	32	33	1	3.1
					[211]재난안전상황실기본경비(총액)	57	59	59	61	2	3.4
					[212]안전정책실기본경비(총액)	134	146	146	143	△3	△2.1
					[213]재난관리실기본경비(총액)	177	224	224	224	-	-
					[214]사회재난실(총액)	111	172	172	169	△3	△1.7
					[215]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총액)	86	97	97	105	8	8.2
					[249]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총액)	39	77	77	81	4	5.2
					[250]기관운영	1,502	1,633	1,633	1,424	△209	△12.8
					[251]대변인실	271	357	357	341	△16	△4.5
					[252]의정관실	213	250	250	239	△11	△4.4
					[253]감사관실	527	587	587	570	△17	△2.9
					[254]기획조정실	1,463	1,568	1,568	1,514	△54	△3.4
					[255]정부혁신조직실	641	691	691	651	△40	△5.8
					[256]전자정부국	497	572	572	550	△22	△3.8
					[257]차관보실	1,368	1,412	1,412	1,396	△16	△1.1
					[258]지방재정경제실	979	1,166	1,166	1,161	△5	△0.4
					[259]인사기획관실	481	525	525	505	△20	△3.8
					[260]안전감찰관실기본경비	234	244	244	233	△11	△4.5
					[261]재난안전상황실기본경비	93	94	94	90	△4	△4.3
					[262]안전정책실기본경비	609	618	618	614	△4	△0.6
					[263]재난관리실기본경비	842	925	925	928	3	0.3
					[264]사회재난실기본경비	523	673	673	667	△6	△0.9
					[265]비상대비정책국기본경비	239	282	282	262	△20	△7.1
					[296]불우소외계층격려	45	1,954	1,954	1,880	△74	△3.8
					[297]재외주재관지원	1,121	993	993	955	△38	△3.8
					[299]기관운영및예산지원관리	1,528	1,682	1,682	1,635	△47	△2.8
				[7018]소속기관기본경비		9,423	10,317	10,317	10,375	58	0.6
					[202]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총액)	300	298	298	282	△16	△5.4
					[204]기록원기본경비(총액)	387	451	451	481	30	6.7
					[205]대통령기록관기본경비(총액)	116	152	152	160	8	5.3
					[206]청사기본경비(총액)	1,172	1,194	1,194	1,463	269	22.5
					[208]이북5도기본경비(총액)	936	1,048	1,048	1,144	96	9.2
					[209]국가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총액)	114	118	118	120	2	1.7
					[210]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총액)(R&D)	404	463	463	462	△1	△0.2
					[252]지방자치인재개발원기본경비	573	634	634	600	△34	△5.4
					[254]기록원기본경비	622	677	677	653	△24	△3.5
					[255]대통령기록관기본경비	34	52	52	50	△2	△3.8
					[256]청사기본경비	1,417	1,512	1,512	1,462	△50	△3.3
					[258]이북5도기본경비	3,099	3,276	3,276	3,077	△199	△6.1
					[259]국가재난안전교육원기본경비	197	369	369	351	△18	△4.9
					[260]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R&D)	53	73	73	70	△3	△4.1
				[7031]행정안전정보화(정보화)		4,433	5,792	5,792	6,391	599	10.3
					[500]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	4,433	5,792	5,792	6,391	599	10.3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7032]정책연구개발		865	922	922	765	△157	△17.0
					[300]정책연구개발	865	922	922	765	△157	△17.0
				[7033]부내행정지원		6,134	6,896	6,896	6,813	△83	△1.2
					[300]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2,913	3,417	3,417	3,476	59	1.7
					[301]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1,638	1,777	1,777	1,652	△125	△7.0
					[302]세종청사 이전 지원	1,583	1,702	1,702	1,685	△17	△1.0
				[7034]국제행정발전지원		2,462	668	668	606	△62	△9.3
					[303]행정한류네트워크구축운영	2,462	668	668	606	△62	△9.3
				[7036]국민안전방송운영		765	821	821	760	△61	△7.4
					[300]국민안전방송운영및재난정책홍보	765	821	821	760	△61	△7.4
				[7037]재난상황관리		7,736	6,695	6,695	4,934	△1,761	△26.3
					[300]중앙안전상황실운영	7,736	6,695	6,695	4,934	△1,761	△26.3
	[020]공공질서및안전					1,038,877	783,109	1,444,653	1,469,704	686,595	87.7
		[023]경찰				65,486	68,252	68,252	69,987	1,735	2.5
			[2500]과학수사			65,486	68,252	68,252	69,987	1,735	2.5
				[2501]과학수사연구원인건비		33,650	37,618	37,618	39,086	1,468	3.9
					[108]인건비(국과수)	33,650	37,618	37,618	39,086	1,468	3.9
				[2511]과학수사연구원기본경비		5,349	5,326	5,326	5,923	597	11.2
					[200]국과수기본경비(총액)	5,040	3,968	3,968	5,533	1,565	39.4
					[250]국과수기본경비	309	1,358	1,358	390	△968	△71.3
				[2531]과학수사활동지원		20,146	17,523	17,523	18,253	730	4.2
					[303]과학수사감정지원	10,779	12,360	12,360	12,843	483	3.9
					[304]과학수사감정장비현대화	9,367	5,163	5,163	5,410	247	4.8
				[2532]과학수사정보화(정보화)		796	1,742	1,742	1,286	△456	△26.2
					[500]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796	1,742	1,742	1,286	△456	△26.2
				[2533]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5,546	6,043	6,043	5,439	△604	△10.0
					[300]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5,546	6,043	6,043	5,439	△604	△10.0
		[025]재난관리				973,391	714,857	1,376,401	1,399,717	684,860	95.8
			[2600]안전관리			30,029	36,062	36,062	47,644	11,582	32.1
				[2631]안전점검 및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4,128	8,052	8,052	15,934	7,882	97.9
					[301]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점검단운영	-	3,204	3,204	3,275	71	2.2
					[303]재난안전산업활성화	2,758	3,124	3,124	3,004	△120	△3.8
					[304]재난안전사업평가	1,118	1,466	1,466	1,265	△201	△13.7
					[305]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정보화)	252	258	258	-	△258	△100.0
					[307]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	-	-	3,390	3,390	순증
					[308]국민안전산업펀드조성	-	-	-	5,000	5,000	순증
				[2632]생활안전개선 추진		13,332	15,592	15,592	15,269	△323	△2.1
					[301]국민안전의식선진화	-	3,032	3,032	2,741	△291	△9.6
					[302]4.16재단지원	330	330	330	330	-	-
					[303]지역안전개선컨설팅	-	5,758	5,758	5,588	△170	△3.0
					[305]안전사고대책및재난현장종사자지원	309	600	600	600	-	-
					[306]승강기안전관리개선	12,693	5,872	5,872	6,010	138	2.4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2633]민방위재난안전교육		3,141	3,354	3,354	3,344	△10	△0.3
					[300]재난안전교육원운영	3,141	3,354	3,354	3,344	△10	△0.3
				[2634]비상시대비능력강화		9,427	9,064	9,064	13,097	4,033	44.5
					[300]비상대비훈련	1,002	1,040	1,040	1,038	△2	△0.2
					[301]동원자원관리	642	763	763	728	△35	△4.6
					[303]B-1정부노후시설정비	888	353	353	574	221	62.6
					[304]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6,728	6,736	6,736	10,592	3,856	57.2
					[305]비상대비담당자선발	169	172	172	165	△7	△4.1
			[2700]재난관리			714,140	438,640	1,100,184	1,091,294	652,654	148.8
				[2731]재난관리인프라구축		10,181	11,230	11,230	10,768	△462	△4.1
					[300]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477	551	551	601	50	9.1
					[301]재난관리평가지원	640	655	655	662	7	1.1
					[304]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2,384	2,110	2,110	2,310	200	9.5
					[305]재난관리국제협력	2,164	2,403	2,403	2,320	△83	△3.5
					[307]지진대비인프라구축	4,517	5,511	5,511	4,660	△851	△15.4
					[311]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ODA)	-	-	-	215	215	순증
				[2733]재난경감활성화		2,098	8,314	8,314	8,214	△100	△1.2
					[300]자연재해저감 역량강화	238	272	272	272	-	-
					[303]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860	2,042	2,042	1,942	△100	△4.9
					[310]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	6,000	6,000	6,000	-	-
				[2734]재난복구지원		700,666	417,324	1,077,324	1,067,692	650,368	155.8
					[300]재난대책비(보조)	653,762	360,020	1,020,020	1,010,040	650,020	180.6
					[301]재난구호지원	1,000	900	900	1,221	321	35.7
					[302]풍수해·지진재해보험	38,042	48,994	48,994	48,951	△43	△0.1
					[303]재난심리회복지원	1,181	940	940	1,052	112	11.9
					[314]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5,909	5,618	5,618	5,183	△435	△7.7
					[317]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771	852	852	1,245	393	46.1
				[2735]재난관리지원		1,195	1,772	3,316	4,620	2,848	160.7
					[300]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273	305	305	274	△31	△10.2
					[301]사회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	261	303	303	341	38	12.5
					[304]재난원인조사및미래대형복합재난대비	502	619	619	612	△7	△1.1
					[309]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159	545	2,089	3,393	2,848	522.6
			[2900]재난안전기술개발			80,937	91,965	91,965	93,452	1,487	1.6
				[2931]재난안전기술개발		76,807	88,445	88,445	89,468	1,023	1.2
					[509]도시침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피해저감실용화 기술개발(R&D)	1,600	2,650	2,650	-	△2,650	순감
					[513]AI기반차세대안전신고및위험징후분석 서비스 기술개발(R&D)	1,500	1,080	1,080	-	△1,080	순감
					[517]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 기술개발(R&D)	1,040	1,976	1,976	-	△1,976	순감
					[520]도시지역강풍피해방지역량강화 기술개발(R&D)	-	2,000	2,000	2,600	600	30.0
					[524]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R&D)	-	1,270	1,270	1,791	521	41.0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527]드론SAR및디지털트윈연계급경사지 위험성분석기술개발(R&D)	-	1,500	1,500	2,600	1,100	73.3
					[529]제4기단층정보를활용한국가지진 위험지도및설계기준고도화(R&D)	-	1,491	1,491	1,500	9	0.6
					[533]재난안전중점기술로드맵연계형 기술개발(R&D)	-	-	-	1,500	1,500	순증
					[534]재난안전산업우수기술개발 지원(R&D)	-	-	-	2,000	2,000	순증
					[535]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	-	-	-	26,766	26,766	이관
					[610]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13,562	14,411	14,411	15,278	867	6.0
					[614]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관리(R&D)	851	482	482	543	61	12.7
					[627]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R&D)	11,060	11,867	11,867	18,925	7,058	59.5
					[628]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R&D)	7,590	3,180	3,180	-	△3,180	순감
					[629]자연재난 정책 연계형 기술개발(R&D)	4,450	3,058	3,058	-	△3,058	순감
					[631]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R&D)	5,500	3,870	3,870	-	△3,870	순감
					[632]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R&D)	2,344	2,110	2,110	1,500	△610	△28.9
					[634]기후변화 대응 AI 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기술 개발(R&D)	3,400	520	520	-	△520	순감
					[635]재난 위험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R&D)	2,160	1,630	1,630	-	△1,630	순감
					[638]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지원(R&D)	5,060	9,570	9,570	7,465	△2,105	△22.0
					[640]지진위험 분석 및 관리기술 개발(R&D)	4,100	8,100	8,100	-	△8,100	순감
					[641]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R&D)	3,950	5,100	5,100	-	△5,100	순감
					[642]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 (2단계)(R&D)	4,140	6,080	6,080	-	△6,080	순감
					[644]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R&D)	4,500	6,500	6,500	7,000	500	7.7
				[2932]재난안전연구지원		4,131	3,520	3,520	3,984	464	13.2
					[300]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2,133	1,190	1,190	1,385	195	16.4
					[301]재난안전연구원운영	1,615	1,649	1,649	1,938	289	17.5
					[302]재난안전정책서비스	384	414	414	405	△9	△2.2
					[305]잠재재난요소조사평가	-	267	267	256	△11	△4.1
			[3000]재난안전정보화			148,285	148,190	148,190	167,327	19,137	12.9
				[3031]재난정보통신관리(정보화)		132,157	127,779	127,779	141,593	13,814	10.8
					[501]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9,510	15,027	15,027	12,520	△2,507	△16.7
					[502]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112,646	112,752	112,752	129,073	16,321	14.5
				[3032]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16,128	20,411	20,411	25,734	5,323	26.1
					[500]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4,519	7,904	7,904	6,696	△1,208	△15.3
					[501]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3,475	2,343	2,343	2,155	△188	△8.0
					[502]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정보화)	580	509	509	509	-	-
					[503]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 구축·운영(정보화)	3,517	4,156	4,156	3,569	△587	△14.1
					[505]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785	424	424	436	12	2.8
					[509]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3,251	5,075	5,075	12,369	7,294	143.7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39]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30,990	2,363,064	3,427,370	3,700,204	1,337,140	56.6
	[010]일반·지방행정					1,597,120	1,391,998	2,392,218	2,578,244	1,186,246	85.2
		[013]지방행정·재정지원				1,577,907	1,383,083	2,383,083	2,566,330	1,183,247	85.6
			[1100]지방자치분권			26,640	25,759	25,759	27,138	1,379	5.4
				[1131]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27	27	27	27	-	-
					[304]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27	27	27	27	-	-
				[1131]지자체자율통합지원		11,797	10,575	10,575	7,795	△2,780	△26.3
					[300]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11,797	10,575	10,575	7,795	△2,780	△26.3
				[1132]지자체역량강화		1,291	1,836	1,836	1,496	△340	△18.5
					[325]지방시대위원회운영	1,291	1,836	1,836	1,496	△340	△18.5
				[1141]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524	13,321	13,321	17,820	4,499	33.8
					[302]자원봉사활성화지원	13,524	13,321	13,321	17,820	4,499	33.8
				[1200]지역발전		1,251,274	1,357,324	1,357,324	1,384,067	26,743	2.0
				[1231]광역경제권추진지원		9,744	5,528	5,528	10,777	5,249	95.0
					[302]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199	200	200	-	△200	순감
					[303]지역발전활성화	9,545	5,328	5,328	10,777	5,449	102.3
				[1231]특수상황지역개발		210,498	194,260	194,260	199,449	5,189	2.7
					[300]특수상황지역개발	210,498	194,260	194,260	199,449	5,189	2.7
				[1231]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3,078	5,026	5,026	2,837	△2,189	△43.6
					[301]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3,078	5,026	5,026	2,837	△2,189	△43.6
				[1232]지역경관개선지원		-	10,000	10,000	-	△10,000	순감
					[300]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	10,000	10,000	-	△10,000	순감
				[1233]접경권발전지원		-	45,627	45,627	53,271	7,644	16.8
					[300]접경권발전지원(자율)	-	45,627	45,627	53,271	7,644	16.8
				[1233]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61,797	61,797	79,942	18,145	29.4
					[301]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	61,797	61,797	79,942	18,145	29.4
				[1235]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400	9,818	9,818	11,761	1,943	19.8
					[301]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400	9,818	9,818	11,761	1,943	19.8
				[1236]서해5도종합발전지원		8,783	8,540	8,540	10,707	2,167	25.4
					[300]서해5도종합발전지원	8,783	8,540	8,540	-	△8,540	이관
					[300]서해5도종합발전지원(자율)	-	-	-	10,707	10,707	이관
				[1241]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0,847	11,478	11,478	15,323	3,845	33.5
					[300]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0,847	11,478	11,478	3,742	△7,736	△67.4
					[300]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	-	-	-	11,581	11,581	이관
				[1247]제주민군복합항주변지역발전지원		7,925	5,250	5,250	-	△5,250	순감
					[301]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7,925	5,250	5,250	-	△5,250	순감
				[1261]지방소멸대응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
					[300]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	-
				[1300]지방재정경제		299,993	-	1,000,000	1,155,125	1,155,125	순증
				[1349]지역경제지원		299,993	-	1,000,000	1,155,125	1,155,125	순증
					[301]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세종)	-	-	-	26	26	이관
					[301]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자율)	-	-	-	4,935	4,935	이관
					[301]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제주)	-	-	-	164	164	이관
					[306]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99,993	-	1,000,000	1,150,000	1,150,000	순증

(단위: 백만원, %)

회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4년 결산	'25년 본예산(A)	'25년 추경	'26년 정부안(B)	증감 (B-A)	증감률
		[015]정부자원관리				19,212	8,915	9,135	11,914	2,999	33.6
			[1900]정부혁신조직			19,212	8,915	9,135	11,914	2,999	33.6
				[1938]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19,212	8,915	9,135	11,914	2,999	33.6
					[301]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9,212	8,915	9,135	11,914	2,999	33.6
	[020]공공질서및안전					949,352	946,527	1,010,613	1,115,010	168,483	17.8
		[025]재난관리				949,352	946,527	1,010,613	1,115,010	168,483	17.8
			[2600]안전관리			946,952	940,927	1,005,013	1,106,610	165,683	17.6
				[2635]재난예방지원		940,019	934,809	998,895	1,100,810	166,001	17.8
					[300]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69,666	874,154	944,332	1,048,810	174,656	20.0
					[301]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70,352	60,655	44,563	40,000	△20,655	△34.1
					[302]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	-	10,000	12,000	12,000	순증
				[2638]재난예방지원		6,933	6,118	6,118	5,800	△318	△5.2
					[302]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6,933	6,118	6,118	5,800	△318	△5.2
			[2900]재난안전기술개발			2,400	5,600	5,600	8,400	2,800	50.0
				[2931]재난안전기술개발		2,400	5,600	5,600	8,400	2,800	50.0
					[626]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2단계)(R&D)	2,400	5,600	5,600	8,400	2,800	50.0
	[080]사회복지					84,519	24,539	24,539	6,950	△17,589	△71.7
		[082]취약계층지원				84,519	24,539	24,539	6,950	△17,589	△71.7
			[3100]일자리지원			84,519	24,539	24,539	6,950	△17,589	△71.7
				[3131]지역일자리창출		84,519	24,539	24,539	6,950	△17,589	△71.7
					[301]마을기업육성사업	2,695	1,675	1,675	5,250	3,575	213.4
					[301]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6,186	3,011	3,011	1,700	△1,311	△43.5
					[303]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75,638	19,853	19,853	-	△19,853	순감

(4)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임무(Mission)와 비전(Vision)을 각각 ‘AI 민주정부 구현, 지방자치·균형발전 촉진, 국민생명·안전 보호’ 및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유능한 정부 구현’로 설정하였음.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행정안전부는 임무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6가지 전략목표(①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는 유능한 정부 구현한다’ ②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③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④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⑤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⑥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한다.’)와 16개의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이상 16개 프로그램 목표별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94개, 세부사업은 총 192개임.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성과 목표 및 과제 현황]

구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개수(개)	6	16	94	192

※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p5.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대상 사업 재정현황]

<성과관리대상/ 비대상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부처 소관 (C)	타부처 소관 (D)	계 (C+D)	비율
총 계(A+B)		76,442,636	19,599	76,462,235	100
성과관리 대상	일반재정	5,781,665	0	5,781,665	7.6
	정보화	718,079	0	718,079	0.9
	R&D	103,707	0	103,707	0.1
	소계(A)	6,603,451	0	6,603,451	8.6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	390,873	0	390,873	0.5
	기본경비	62,447	0	62,447	0.1
	교부금	69,355,468	3,000	69,358,468	90.7
	예비비	0	0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0	0	0	0
	보전지출	0	0	0	0
	기타	30,397	16,599	46,996	0.1
	소계(B)	69,839,185	19,599	69,858,784	91.4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p.12.

<예산과 사업주체가 다른 사업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	기금명	성과관리 대상사업	성과관리 비대상사업	계	비율
총 계		0	19,599	19,599	0
기획재정부	복권기금	0	3,000	3,000	0
기획재정부	기후대응기금	0	3,188	3,188	0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관리기금	0	13,411	13,411	0

주 1) 복권기금: 서천특화시장 재건축 지원(6333-330) 30억원
2) 기후대응기금: 정부청사온실가스저감사업(6132-500) 32억원
3) 국유재산관리기금: 부산지방합동청사 신축(2631-403) 111억, 대전지방합동청사 신축(2631-560) 23억

※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p.12.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성과 목표 체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6예산안
전략목표 Ⅰ. 일 잘하고 소통하는 국민 모두의 AI민주정부를 구현한다.				**844,981**
프로그램목표 Ⅰ-1. 국민과 소통하는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한 정부혁신을 추진한다.				**53,764**
정부혁신 조직	민원처리개선(정보화)	일반회계	1900-1932	29,089
	행정효율성향상	일반회계	1900-1933	9,261
	정보공개활성화	일반회계	1900-1935	2,391
	책임운영기관제운영및정부조직진단관리	일반회계	1900-1931	1,109
	주민참여 지역문제 해결 확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900-1938	11,914
프로그램목표 Ⅰ-2. AI민주정부 기반 구축과 국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현한다.				**791,217**
전자정부	전자정부실행기반마련(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1	17,561
	지역정보화지원(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2	15,003
	정보보호체계강화(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3	19,514
	전자정부성과평가강화(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4	3,592
	공공서비스신기술적용촉진(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5	4,031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6	531,210
	국제사회전자정부선도국가위상강화(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8	7,392
	정보자원관리기반확충(정보화)	일반회계	2000-2039	39,095
	미래전자정부추진(정보화)	일반회계	2000-2040	10,273
	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일반회계	2000-2041	3,511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	일반회계	2000-2042	22,599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일반회계	2000-2045	30,318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일반회계	2000-2046	66,385
	대민서비스기반확충(정보화)	일반회계	2000-2047	20,733
전략목표 Ⅱ. 지자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사회통합과 공동체 발전을 증진한다.				**1,519,753**
프로그램목표 Ⅱ-1. 지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46,011**
지방자치 분권	지자체역량강화	일반회계	1100-1131	5,181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5	838
	주민등록및인감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7	5,109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100-1138	537
	지방자치단체경쟁력지원	일반회계	1100-1139	5,323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일반회계	1100-1140	3,907

구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6예산안
	새마을운동지원	일반회계	1100-1142	5,442
	성숙하고따뜻한사회구현	일반회계	1100-1143	331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00-1131	27
	자원봉사활성화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00-1141	17,820
	지자체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100-1132	1,496
프로그램목표 Ⅱ-2. 튼튼한 지방재정 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1,177,873**
지방재정경제	표준지방재정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300-1332	7,671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일반회계	1300-1333	5,149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일반회계	1300-1331	993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일반회계	1300-1335	388
	지방공기업경영평가추진	일반회계	1300-1336	3,404
	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일반회계	1300-1337	3,297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일반회계	1300-1338	1,042
	지역경제지원	일반회계	1300-1349	804
	지역경제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300-1349	1,155,125
프로그램목표 Ⅱ-3.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쟁력 있는 공무원을 양성한다				**10,472**
지방자치인재개발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1400-1432	887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일반회계	1400-1433	8,34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운영	일반회계	1400-1431	1,244
프로그램목표 Ⅱ-4.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을 지원하여 사회통합과 남북 평화번영 시대의 매개체 역할을 강화시킨다.				**2,063**
이북5도	이북도민관련지원	일반회계	1500-1531	2,063
프로그램목표 Ⅱ-5. 과거사 및 민주화 운동관련 희생자 지원과 명예회복 추진을 통해 공동체 화합에 기여한다.				**283,334**
민주화지원및과거사정리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일반회계	2400-2431	232,692
	강제동원진상규명	일반회계	2400-2432	9,166
	민주화관련자명예회복	일반회계	2400-2433	2,5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일반회계	2400-2434	7,2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일반회계	2400-2435	24,758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일반회계	2400-2436	3,188
	여수,순천 10.19사건위원회 지원	일반회계	2400-2437	3,770

구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6예산안
전략목표 Ⅲ. 지역특화 발전을 통해 주민행복 향상에 기여한다				**1,413,665**
프로그램목표 Ⅲ-1. 맞춤형 지역개발을 추진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1,406,715**
지역발전	특수상황지역개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1	199,449
	광역경제권추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1	10,777
	지역공동체기반조성및역량강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5	11,761
	한국 섬 진흥원 지원	일반회계	1200-1242	4,463
	지방소멸대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61	1,000,000
	접경권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3	53,271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3	79,942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6	10,707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41	11,581
	도로명주소사업추진	일반회계	1200-1237	18,185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41	3,742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00-1231	2,837
프로그램목표 Ⅲ-2. 지역일자리를 창출한다				**6,950**
일자리지원	지역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00-3131	**6,950**
전략목표 Ⅳ. 정부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수사의 신뢰를 제고한다.				**313,718**
프로그램목표 Ⅳ-1.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한다.				**48,864**
기록물관리	기록물효율적관리	일반회계	2300-2331	16,640
	기록관리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2300-2332	10,281
	기록관리정책및교육	일반회계	2300-2333	3,521
	기록정보서비스	일반회계	2300-2334	1,254
	기록물보전시설관리	일반회계	2300-2335	7,637
	기록물보존기술연구	일반회계	2300-2336	400
	대통령기록관리	일반회계	2300-2337	9,131

구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26예산안
프로그램목표 Ⅳ-2. 효과적인 정부청사 관리 및 운영으로 업무편의를 높인다.				**239,876**
청사관리	정부청사시설관리	일반회계	2200-2231	234,183
	공무원통근버스운행	일반회계	2200-2232	5,693
프로그램목표 Ⅳ-3. 신속하고 정확한 과학수사시스템을 구축한다.				**24,978**
과학수사	과학수사활동지원	일반회계	2500-2531	18,253
	과학수사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2500-2532	1,286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	일반회계	2500-2533	5,439
전략목표 Ⅴ. 국민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1,256,106**
프로그램목표 Ⅴ-1. 국가안전 정책수립 및 국민생활 안전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1,154,254**
안전관리	안전점검 및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일반회계	2600-2631	15,934
	생활안전개선 추진	일반회계	2600-2632	15,269
	민방위재난안전교육	일반회계	2600-2633	3,344
	비상시대비능력강화	일반회계	2600-2634	13,097
	재난예방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00-2638	5,800
	재난예방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600-2635	1,100,810
프로그램목표 Ⅴ-2. 국민안전 기술을 과학화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한다				**101,852**
재난안전기술개발	재난안전기술개발	일반회계	2900-2931	89,468
	재난안전연구지원	일반회계	2900-2932	3,984
	재난안전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900-2931	8,400
전략목표 Ⅵ.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 한다				**1,255,228**
프로그램목표 Ⅵ-1. 현장중심의 재난관리정책 추진으로 재난피해를 최소화한다.				**1,087,901**
재난관리	재난관리인프라구축	일반회계	2700-2731	10,768
	재난경감활성화	일반회계	2700-2733	8,214
	재난복구지원	일반회계	2700-2734	1,067,692
	재난관리지원	일반회계	2700-2735	1,227
프로그램목표 Ⅵ-2. 재난정보화 업무를 통해 재난상황 및 환경변화를 빠르게 대응한다.				**167,327**
재난안전정보화	재난정보통신관리(정보화)	일반회계	3000-3031	141,593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일반회계	3000-3032	25,734
총 계				**6,603,451**

※ 자료: 행정안전부, 「2026년도 성과계획서」, pp.316~320.

(5) 성인지예산

행정안전부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총 4개, 31억 9,700만원 규모임.

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세부사업의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내역사업(5억 200만원)은 지자체 여성 간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리더십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 교육을 실시하여 여성 관리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②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세부사업(5억 3,100만원)은 여성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의 경제활동 및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③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세부사업(18억 9,000만원)은 석·박사급 전문가 양성 교육기관을 통해 여성 교육생이 재난관리 분야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④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세부사업(2억 7,400만원)은 사회재난교육에 대한 여성 담당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2026년도 행정안전부 성인지예산 사업총괄표]

(단위 : 백만원)

회계	세부사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률 (%)
일반회계	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 여성리더양성·심화과정운영	502	502	-	-
	2)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613	531	-82	-13.4
	3)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1,890	1,890	-	-
	4)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305	274	-31	-10.2
총 계		**3,310**	**3,197**	**-113**	**-3.4**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 p.191.

(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행정안전부 해당 없음.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2026년도 신규사업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중 신규사업은 세부사업 기준으로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사업(R&D),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8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세 부 사 업	2026년 예산안	사 업 내 용
계	59,779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20,608	공공부문 공통 서비스에 AI를 적용하여 표준화·효율화로 중복투자 방지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필요
진실화해위원회 청산 운영	300	진화위 폐지에 따라 위원회 조직 정리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구축	3,390	재난현장 드론을 통해 실시간 정보파악으로 신속한 상황판단 및 현장대응 지원체계 구축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5,000	첨단 기술기반 국민안전기업의 성장 촉진
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ODA)	215	개발도상국의 재난위험경감을 위해 수원국 재난관리 정책 및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여 재난역량 강화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사업 (R&D)	26,766	“재난안전 현안문제 해결과 미래 대응을 위한 3대 전략분야 현장활용 핵심기술 확보”를 목표로 행정안전부 고유임무 중심의 연구개발 추진
재난안전중점기술로드맵연계형 기술개발(R&D)	1,500	재난안전 R&D 분야의 고유임무형 현장 적용 기술에 선택·집중하기 위한 중점기술 로드맵 연계형 기술개발 추진
재난안전산업 우수 기술개발지원 (R&D)	2,000	최근 재난안전 최대 이슈인 집중호우, 태풍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AI, 빅데이터, 재난로봇 등 첨단 기술분야에 특화한 기술제품 개발 및 사업화 과제 추진

주) 단순 이관사업 및 2025년 이전 편성 이력이 있었던 사업 제외

나. 2025년도 종료사업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종료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진위험 분석및관리기술개발(R&D) 등 19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	사 유
계	69,455	
생활공감정책 추진	260	사업 종료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587	시스템 구축 완료
지자체경쟁력지원	750	30주년 종료
클라우드기반의통합주소체계구축(정보화)	2,358	시스템구축완료
자연재난정책연계형기술개발(R&D)	3,058	사업기간 종료
지능형상황관리 기술개발(R&D)	3,870	사업기간 종료
기후변화대응AI기반풍수해위험도 예측기술개발(R&D)	520	사업기간 종료
재난위험감지및모니터링기술개발(R&D)	1,630	사업기간 종료
사회복합재난 대응기술개발(R&D)	3,180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도시침수방어능력강화를위한피해저감실용화기술개발(R&D)	2,650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AI기반차세대안전신고및위험징후분석서비스기술개발(R&D)	1,080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과학기술기반군중밀집관리기술개발(R&D)	1,976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지진위험분석및관리기술개발(R&D)	8,100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재난안전공동연구기술개발(R&D)	5,100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국민수요맞춤형생활안전연구개발사업(2단계)(R&D)	6,080	동 사업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2931-535)”로 통합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재건축	2,953	건축 완료('25.4.)
지역균형발전추진지원	200	지출구조 조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9,853	'25년 사업 완료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5,250	'25년 사업 완료

주) 단순 이관 및 통폐합사업 제외

3. 주요 유형별 예산안

가.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안 현황

□ 행정안전부의 2026년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액은 3조 7,372억 100만원으로, 일반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44개의 보조사업이 편성되었음.

일반회계에서는 20개의 사업(1조 666억 9,300만원)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는 24개 사업(2조 6,705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과목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합 계(44개)				3,472,818	3,737,201	264,381
-	일반회계(20개)			1,072,958	1,066,693	-6,267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4개)			2,399,860	2,670,508	270,648
1	일반회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330-01	980	980	0
2	일반회계	지자체경쟁력지원	330-03	350	350	0
			330-01	1,650	1,650	0
종료	일반회계	생활공감정책추진	330-01	135	0	-135
종료	일반회계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330-01	117	0	-117
3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활성화	330-01	243	243	0
4	일반회계	지역안전개선컨설팅	330-01	935	553	-383
5	일반회계	국민안전의식선진화	330-01	370	370	0
6	일반회계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330-03	3,818	3,819	1
			330-01	1,731	5,567	3,836
7	일반회계	재난구호지원	330-01	900	1,200	300
8	일반회계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운영	330-01	60	90	30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과목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9		재난대책비(보조)	330-03	1,019,960	1,009,940	-10,020
10		지진대비인프라구축	330-01	2,592	2,071	-521
11		동원자원관리	330-01	133	133	0
12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330-03	6,810	6,243	-567
			330-01	770	770	0
종료		지역경제활성화	330-01	3,060	0	-3,060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330-03	4,055	7,606	3,551
			330-01	3,642	4,735	1,093
14		재난심리회복지원	330-01	700	840	140
15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330-01	3,115	2,804	-312
16		과거사관련사업지원	330-01	8,286	7,433	-853
17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330-03	80	100	20
			330-01	2,166	1,511	-655
18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 시설(보조)	330-03	6,000	6,000	0
19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330-01	300	200	-100
종료		(민생회복 소비쿠폰)[1]	330-01	12,160,522	0	순감
20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330-03	0	1,485	순증
21	균특회계 (지역자율계정)	특수상황지역개발	330-03	194,260	199,449	5,189
22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330-03	2,966	1,700	-1,266
			330-01	45	0	-45
23		지자체 빈집정비 지원	330-01	10,000	0	-10,000
24		접경권발전지원(자율)	330-03	45,627	53,271	7,644
25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	330-03	0	11,581	11,581
26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자율)	330-01	0	4,935	4,935
27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	330-03	10,575	7,795	-2,780
28		서해5도종합발전지원	330-01	8,540	10,707	2,167
29		지역발전활성화	330-01	0	200	200
			330-03	0	6,275	6,275
30		자원봉사활성화지원	330-03	0	4,500	4,500
			330-01	9,716	10,245	529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과목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31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330-03	941,532	1,048,443	106,911
			330-01	2,500		-2,500
32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	330-03	61,797	79,942	18,145
33		마을기업육성사업	330-01	1,475	4,650	3,175
3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330-01	999,600	1,149,400	149,800
종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330-01	19,545	0	-19,545
35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330-03	10,913	3,233	-7,680
36		우수유출저감시설설치(보조)	330-03	44,530	39,967	-4,563
37		산불지역 마을단위 복구·재생	330-03	10,000	12,000	2,000
38		활력 복합시설 건립 지원	330-01	0	132	132
			330-03	9,818	11,629	1,811
39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330-01	0	1,600	1,600
40	균특회계 (제주계정)	자원봉사활성화지원(제주)	330-01	27	27	0
41		특수상황지역개발(제주)	330-03	5,026	2,837	-2,189
42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제주)	330-01	0	164	164
종료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330-03	5,250	0	-5,250
43	균특회계 (세종계정)	재해위험지역정비(세종)	330-03	6,118	5,800	-318
44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세종)	330-01	0	26	26

주1) 2025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동 사업은 그 규모가 1조 2,000억원이상으로 크고 일회성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연도별 자치단체보조금 규모의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동 사업 예산은 합계 산정시 제외함.

2) 2025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기준임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민간보조사업 예산안 현황

□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민간보조사업 예산액은 827억 8,400만원이며, 일반회계로 18개 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1개 사업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민간보조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과목	피보조 기관명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합 계					84,489	82,784	-1,705
1	일반회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1140-300)	320-01	비영리민간단체 200개	2,925	3,298	373
2	일반회계	새마을운동지원 (1142-304)	320-01	새마을운동중앙회	734	660	-74
3	일반회계	맞춤형 새마을 운동 지원사업(ODA) (1142-305)	320-01	공모기관	1,100	537	-563
				새마을운동중앙회	4,158	3,912	-246
				새마을금고중앙회	462	160	-302
				소 계	5,720	4,609	-1,111
4	일반회계	행복한 선진시민사회구현 (1143-305)	320-01	한국자유총연맹	180	161	-19
5	일반회계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1143-308)	320-01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	189	170	-19
6	일반회계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320-01		0	1,729	1,729
7	일반회계	이북도민관련단체및행사지원 (1531-302)	320-01	(사)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 등	391	335	-56
8	일반회계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2041-502)	320-01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3,875	3,485	-390
9	일반회계	전직대통령 및 유족 예우 (2131-307)	320-01	(사)해위윤보선 대통령기념사업회	105	105	-
				(재)아름다운봉하	141	141	-
				소 계	246	246	-
10	일반회계	기록관리정책및교육 (2333-300)	320-01	유네스코국제기록 유산센터	1,718	2,511	793
11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 조사지원및운영(2432-300)	320-01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지원재단	3,827	4,210	383
12	일반회계	부마민주항쟁명예회복지원 (2433-300)	320-01	부마민주항쟁재단	1,404	1,429	25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예산 과목	피보조 기관명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13	일반회계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지원 (2434-300)	320-01	민주화운동기념 사업회	8,633	7,230	-1,403
종료	일반회계	민주화운동기념 사업지원 (2435-300)	320-01	공모 단체	1,300	0	-1,300
14	일반회계	4.16재단지원 (2632-302)	320-01	4.16재단	330	330	0
15	일반회계	승강기안전관리개선 (2632-306)	320-01	한국승강기안전공단	56	56	0
16	일반회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 (2731-300)	320-01	전국자율 방재단연합회	45	45	0
17	일반회계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2731-304)	320-01	강원대학교(재난)	90	45	-45
				울산과기원(재난)	90	45	-45
				동의대학교(재난)	90	45	-45
				한성대학교(재난)	90	45	-45
				숭실대학교(재난)	90	45	-45
				군산대학교(지진)	180	90	-90
				세종대학교(지진)	180	90	-90
				울산과기원(지진)	180	90	-90
				강원대학교(지진)	198	180	-18
				부산대학교(지진)	180	90	-90
				연세대학교(지진)	180	180	0
				고려대학교(지진)	90	0	-90
				숭실대학교(지진)	162	180	18
18	일반회계	풍수해·지진재해보험 (2734-302)	320-01		48,580	48,580	0
1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1141-302)	320-01	한국자원봉사협의회	127	127	0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30	30	0
				한국중앙자원 봉사센터	2,379	2,418	39
				소계	2,536	2,575	39

주) 2025년도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임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연구용역비 예산안 현황

□ 연구용역비(260목)는 일반연구비(260-01)와 정책연구비(260-02)로 구분되는데, 각 세목의 편성 목적은 다음과 같음.

일반연구비(260-01)	정책연구비(260-02)
국가로부터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

※자료: 기획재정부,「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 편성 목적의 차이 이외에, 정책연구용역은 일반연구용역과 달리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로 과제가 선정되고, 정책연구용역관리시스템(PRISM)을 통해 중복성이 검토되며 용역결과가 공개되는 등 보다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음.

□ 행정안전부 2026년도 예산안에는 일반연구비(정보화사업 제외)[3]가 50개 세부사업(205억 5,700만원)에, 정책연구비가 16개 세부사업(38억 2,200만원)에 편성되었음.

3) 일반연구비(260-01)에는 정보화 사업의 일환인 전산개발에 대한 용역 비용이 포함됨. 그러나 정보화사업은 별도 목차가 있으므로, 일반연구비에서는 제외하고 현황을 분석함.

[2026년도 행정안전부 일반연구비(260-01)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합 계(50)				20,557	21,123	565
일반회계(48)				20,257	21,023	76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				300	100	-200
1	일반회계	국경일등정부행사		0	629	629
2	일반회계	기록정보서비스		0	50	50
3	일반회계	비상대비훈련		155	155	0
종료	일반회계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90	0	-90
4	일반회계	대통령기록관리		380	359	-22
5	일반회계	재난안전신기술해외보급(ODA)		1,135	1,335	200
6	일반회계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96	196	0
7	일반회계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790	722	-68
8	일반회계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30	27	-3
9	일반회계	기록관리정책및교육		100	96	-4
10	일반회계	고객만족관리및이미지제고		52	47	-5
11	일반회계	지자체경쟁력지원		340	111	-229
12	일반회계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738	548	-190
13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제운영		217	195	-22
14	일반회계	민원제도및서비스개선		400	400	0
15	일반회계	과학수사감정지원		301	301	0
16	일반회계	국가기록물정리		282	222	-60
17	일반회계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2,024	1,833	-191
18	일반회계	재난관리전문인력양성		100	300	200
19	일반회계	행정생산성향상지원		30	0	-30
20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활성화		525	297	-228
21	일반회계	지역안전개선컨설팅		400	800	400
22	일반회계	국민안전의식선진화		100	88	-12
23	일반회계	청사시설유지보수		1,136	1,136	0
24	일반회계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1,175	1,098	-77
25	일반회계	재난안전교육원운영		278	101	-177
26	일반회계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30	30	0
27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25	127	102
28	일반회계	지진대비인프라구축		1,550	1,250	-300
29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260	270	10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30	일반회계	동원자원관리		41	41	0
31	일반회계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600	577	-23
32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54	54	0
33	일반회계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3,071	3,123	52
34	일반회계	재난안전사업평가		350	372	22
35	일반회계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332	1,001	669
36	일반회계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339	339	0
37	일반회계	기록관보존시설관리		43	43	0
38	일반회계	재난관리평가지원		40	40	0
39	일반회계	재난안전정책서비스		240	240	0
40	일반회계	성과관리및행정효율성제고		100	85	-15
41	일반회계	승강기안전관리개선		247	100	-147
42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관리(R&D)		182	174	-8
43	일반회계	여수·순천10·19위원회 지원		250	500	250
44	일반회계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30	200	170
45	일반회계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안전점검단운영		340	340	0
46	일반회계	잠재재난요소조사평가		150	130	-20
47	일반회계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80	340	260
종료	일반회계	민생회복 소비쿠폰		200	0	-200
48	일반회계	개도국재난관리역량강화(ODA)		0	215	215
4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지역발전활성화		600	386	-214
종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29	0	-129
5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마을기업육성사업		0	100	100
종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지방시대위원회운영		300	0	-300

주1) 정보화 사업은 제외
2) 2025년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6년도 행정안전부 정책연구비(260-02)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합 계(16개)				3,541	3,822	281
일반회계(12개)				1,839	2,234	39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4개)				1,702	1,588	-114
1	일반회계	정책연구개발		922	765	-157
2	일반회계	정부조직진단관리		240	240	0
3	일반회계	지역안전개선컨설팅		140	183	43
4	일반회계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400	400	0
5	일반회계	지역경제활성화		50	50	0
6	일반회계	재난안전사업평가		1,000	777	-223
7	일반회계	정부혁신추진 및 확산		50	50	0
8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100	50	-50
9	일반회계	사회재난교육훈련및역량지원강화		210	210	0
10	일반회계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 및 민관협력 지원		189	100	-89
11	일반회계	사회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		70	70	0
12	일반회계	승강기안전관리개선		0	150	150
1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자원봉사활성화지원		120	120	0
1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	250	200
1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지방시대위원회운영		0	107	107
16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0	300	300

주) 2025년은 추가경정예산 기준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라. 정보화사업 예산안 현황

□ 행정안전부의 2026년 정보화사업 예산액은 1조 302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 60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었음.

[2025년도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합 계			972,780	1,030,246	57,466
1	일반회계	정보보호인프라확충(정보화)	19,933	19,514	-419
2	일반회계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44	537	-7
3	일반회계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정보화)	5,294	5,109	-185
4	일반회계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5,353	5,051	-302
5	일반회계	국립재난안전연구원전산운영(정보화)	509	509	0
6	일반회계	비상대비정보화(정보화)	7,904	6,696	-1,208
7	일반회계	행정정보화지원및관리조정(정보화)	3,901	3,511	-390
8	일반회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5,027	12,520	-2,507
9	일반회계	행정안전부정보화(정보화)	5,792	6,391	599
종료	일반회계	지자체기능분류모델시스템운영(정보화)	205	0	-205
10	일반회계	범정부신규도입전산장비통합구축(정보화)	83,099	98,197	15,098
11	일반회계	스마트폰기반의모바일전자정부구축(정보화)	1,339	3,152	1,813
12	일반회계	공공데이터개방및이용활성화지원(정보화)	41,634	40,662	-972
13	일반회계	전자정부글로벌아카데미운영(정보화)	328	328	0
14	일반회계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2,343	2,155	-188
15	일반회계	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화)	7,653	8,253	600
16	일반회계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1,177	838	-339
17	일반회계	행정기관정보통신서비스이용환경고도화(정보화)	1,021	919	-102
18	일반회계	스마트워크센터구축및운영(정보화)	4,998	6,202	1,204
19	일반회계	전자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4,089	6,505	2,416
20	일반회계	국가기록서비스정보화추진(정보화)	302	292	-10
21	일반회계	대통령기록관리체계구축(정보화)	3,504	3,484	-20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22	일반회계	과학수사정보화시스템구축(정보화)	1,742	1,286	-456
23	일반회계	전자정부국가간협력강화(정보화,ODA)	6,391	4,980	-1,411
24	일반회계	정보자원관리지원(정보화)	6,347	3,973	-2,374
25	일반회계	정부기능분류시스템운영(정보화)	537	537	0
26	일반회계	지식기반의행정구축(정보화)	65	2,400	2,335
27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537	512	-25
28	일반회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375	375	0
29	일반회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운영(정보화)	112,752	129,073	16,321
30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272,149	270,240	-1,909
31	일반회계	긴급신고전화통합체계구축·운영(정보화)	4,156	3,569	-587
32	일반회계	국가정보관리원대구센터신축(정보화)	9,058	22,599	13,541
33	일반회계	행정서비스통합포털운영(정보화)	24,999	20,733	-4,266
34	일반회계	전자문서소통시스템(정보화)	10,530	26,152	15,622
35	일반회계	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	7,208	7,671	463
36	일반회계	국가위임사무종합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15,510	15,003	-507
37	일반회계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정보화)	2,832	2,832	0
38	일반회계	지능형 서비스 확대 및 운영(정보화)	11,605	11,843	238
종료	일반회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929	0	-929
39	일반회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852	1,245	393
40	일반회계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시스템 구축(정보화)	424	436	12
41	일반회계	첨단정보기술을활용한공공서비스촉진(정보화)	3,616	3,488	-128
42	일반회계	정보공개활성화(정보화)	2,425	2,391	-34
43	일반회계	전자정부 성과평가(정보화)	3,568	3,592	24
44	일반회계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정보화)	173,334	158,400	-14,934
45	일반회계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1,471	543	-928
46	일반회계	전자정부분야국제교류협력(ODA,정보화)	1,375	1,382	7
47	일반회계	전자정부대외협력활동강화(정보화)	832	702	-130
48	일반회계	지능형전자정부재설계및정책연구(정보화)	2,886	2,886	0
종료	일반회계	클라우드기반의 통합주소체계 구축(정보화)	2,358	0	-2,358
49	일반회계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정보화)	15,008	10,478	-4,530
50	일반회계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100	98	-2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	세부사업명 (코드번호)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51	일반회계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69	69	0
52	일반회계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정보화)	8,610	6,992	-1,618
종료	일반회계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정보화)	258	0	-258
53	일반회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1,614	4,373	2,759
54	일반회계	디지털서비스 개방(정보화)	8,477	7,143	-1,334
종료	일반회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운영지원(정보화)	8,684	0	-8,684
55	일반회계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16,642	30,318	13,676
종료	일반회계	지능형 CCTV 관제체계 구축(정보화)	5,075	0	-5,075
56	일반회계	온라인 청원 시스템(정보화)	584	569	-15
57	일반회계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 구현(정보화)	5,392	7,371	1,979
58	일반회계	스마트정부청사관리체계구축(정보화)	380	190	-190
59	일반회계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0	20,608	20,608
60	일반회계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5,075	12,369	7,294

주) 세부사업명에 “(정보화)”가 포함된 사업 기준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마. 지방교부세 등 의무지출 예산안

□ ‘**의무지출**’은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4]상 ① ‘**법정지출**’(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재정지출) 및 ② ‘**이자지출**’을 말함. 참고로 재정지출 중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재량지출**’이라고 칭함.

정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제3항[5] 및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의무지출을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 ② 지방이전재원, ③ 기타 의무지출(①~③이 ‘법정지출’) 및 ④ 이자지출로 세분하고 있음.

□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전체에서 의무지출은 388조원으로 2025년도 364.8조원 대비 23.2조원(6.4%) 증가하였고, 총지출 중 의무지출 비중도 51.9% → 53.3%로 증가하였음.

의무지출 유형별로 2026년도 예산안의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은 196.5조원으로 전년 대비 13.4조원(7.3%) 증가하였고, 의무지출 중

---

4)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③ 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2.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3.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비중도 50.2% → 50.6%로 확대되었음. ② 지방이전재원은 144.9조억원으로 전년 대비 4.5조원(3.2%) 증가하였으나, 의무지출 중 비중도 38.5% → 37.3%로 축소되었음. ③ 기타 의무지출은 13조원으로 전년 대비 1.5조원(13.0%) 증가였으며, 의무지출 중 비중도 3.2% → 3.4%로 증가되었음. ④ 이자지출은 33.6조원으로 전년 대비 3.8조원(12.8%) 증가하였으며, 의무지출 중 비중도 8.2% → 8.7%로 확대되었음.

[2026년도 정부 예산안 의무지출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규모(c=b-a)	비율(c/a)
총지출(A)	703.3	728.0	24.7	3.5
의무지출(B)	364.8	388.0	23.2	6.4
(총지출 대비(B/A))	(51.9)	(53.3)	(1.4)	2.7
법정지출	364.8	388.0	23.2	6.4
① 복지분야 법정지출(D)	183.1	196.5	13.4	7.3
(의무지출 대비(D/B))	(50.2)	(50.6)	(0.4)	0.8
② 지방이전재원(E)	140.4	144.9	4.5	3.2
(의무지출 대비(E/B))	(38.5)	(37.3)	(-1.2)	-3.1
③ 기타 의무지출(F)	11.5	13.0	1.5	13.0
(의무지출 대비(F/B))	(3.2)	(3.4)	(0.2)	6.3
④ 이자지출(G)	29.8	33.6	3.8	12.8
(의무지출 대비(G/B))	(8.2)	(8.7)	(0.5)	6.1
재량지출(C)	338.4	340.0	1.6	0.5
(총지출 대비(C/A))	(48.1)	(46.7)	(-1.4)	-2.9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중 ‘의무지출’은 총 10개 세부사업 69조 5,475억 4,800만원(정부 의무지출 합계의 17.9%)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인 69조 3,458억 5,500만원은 지방교부세 6개 세부사업이고, 나머지는 기타 의무지출 유형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지원금(1131-300) 77억 9,500만원, 전직대통령및유족연금(2131-302) 3억 3,600만원,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 (2431-306) 1,930억 1,500만원,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 (2432-302) 5억 4,700만원 등 4개 세부사업임.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의무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a)[1]	2026 예산안(b)	증 감	
			규모(c=b-a)	비율(c/a)
행정안전부 의무지출 합계 (정부 의무지출 대비 비중)	67,292,063 (18.4)	69,547,548 (17.9)	2,255,485	3.4
지방이전재원 (정부 의무지출 대비 비중)	67,038,505 (18.4)	69,345,855 (17.9)	2,307,350	3.4
보통교부세(1631-300)	60,401,769	61,703,228	1,301,459	2.2
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	658,551	763,307	104,756	15.9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	164,638	190,826	26,188	15.9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	823,189	954,133	130,944	15.9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985,649	1,036,153	50,504	5.1
부동산교부세(1633-300)	4,004,709	4,698,208	693,499	17.3
기타 의무지출 (정부 의무지출 대비 비중)	253,558 (0.07)	201,693 (0.05)	-51,865	-20.5
지방자치단체자율통합지원금(1131-300)	10,575	7,795	-2,780	-26.3
전직대통령및유족연금(2131-302)	323	336	13	4.0
제주4.3피해보상(보상금등)(2431-306)	241,877	193,015	-48,862	-20.2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보상금)(2432-302)	783	547	-236	-30.1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2026년도 행정안전부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조 2,554억 8,500만원(3.4%)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예산안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재정력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며, 2026년도 예산안은 69조 3,458억 5,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조 3,073억 5,000만원(3.4%) 증가함.

[2026년도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예산안]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규모(c=b-a)	비율(c/a)
보통교부세(1631-300)	60,401,769	61,703,228	1,301,459	2.2
특별교부세	1,646,378	1,908,266	261,888	15.9
-지역현안특별교부세(1632-300)	658,551	763,307	104,756	15.9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1632-301)	164,638	190,826	26,188	15.9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1644-300)	823,189	954,133	130,944	15.9
소방안전교부세(1645-300)	985,649	1,036,153	50,504	5.1
부동산교부세(1633-300)	4,004,709	4,698,208	693,499	17.3
합 계	67,038,505	69,345,855	2,307,350	3.4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구체적으로, 보통교부세는 61조 7,032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014억 5,900만원(2.2%)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내국세를 재원[6]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도 함께 증가한 것임.

6) 보통교부세의 재원: 내국세 총액(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 총액 45%,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은 제외. 이하 동일)의 19.24% 중 97%

한편, 특별교부세인 지역현안특별교부세는 7,633억 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47억 5,600만원(15.9%) 증가,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는 1,908억 2,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1억 8,800만원(15.9%) 증가,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는 9,541억 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9억 4,400만원(15.9%) 증가하였는데, 이는 내국세 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가하여 내국세를 재원[7]으로 하는 특별교부세가 함께 증가한 것에 기인함.[8]

다음 소방안전교부세는 1조 361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05억 400만원(5.1%) 증가하였는데, 이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전액을 재원[9]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도 전년 대비 증가하는 것임.[10]

마지막으로, 부동산교부세는 4조 6,982억 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934억 9,900만원(17.3%) 증가하였는데, 이 또한 종합부동산세 세입예산안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그 전액을 재원[11]으로 하는 부동산교부세가 증가하는 것임.[12]

---

7) 특별교부세의 재원: 내국세 총액의 19.24% 중 3%
8) 2026년 지역현안.국가지방협력.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예산안에서 차감한 2024년 정산분은 각각 △285억 5,400만원, △71억 3,900만원, △356억 9,300만원임
9)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원: 담배 부과 개별소비세의 45%
10) 소방안전교부세의 2024년 정산분은 △1,099억 3,900만원임
11) 부동산교부세의 재원: 종합부동산세 전액
12) 부동산교부세의 2024년 정산분은 +747억 900만원임

바.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안 현황

□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이란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13]이며, 실무적으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14]에 따라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의미함.[15]

---

13)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9.

14)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기초연구와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5) 참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세부사업명 마지막에 “(R&D)”라는 문구를 붙임(ex. 0000(R&D)).

□ 2026년도 행정안전부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안은 총 19개 세부사업 1,14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합 계(19개)			142,040	114,160	-27,880
일반회계(18개)			136,440	105,760	-30,68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개)			5,600	8,400	2,800
1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총액)(R&D)	463	462	-1
2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기본경비(R&D)	73	70	-3
3	일반회계	중장기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R&D)	6,043	5,439	-604
4	일반회계	재난안전관리업무지원기술개발(R&D)	14,411	15,278	867
5	일반회계	국가기록관리 활용기술 연구개발(R&D)	400	400	0
6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원인건비(R&D)	9,272	9,921	649
7	일반회계	재난안전부처협력기술개발(R&D)	11,867	18,925	7,058
종료	일반회계	사회복합재난대응 기술개발(R&D)	3,180	0	-3,180
종료	일반회계	자연재난 정책 연계형 기술개발(R&D)	3,058	0	-3,058
종료	일반회계	지능형 상황관리 기술개발(R&D)	3,870	0	-3,870
8	일반회계	재난피해 복구 역량 강화 기술개발(R&D)	2,110	1,500	-610
9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관리(R&D)	482	543	61
종료	일반회계	기후변화 대응 AI 기반 풍수해 위험도 예측기술 개발(R&D)	520	0	-520
종료	일반회계	재난 위험 감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R&D)	1,630	0	-1,630
10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지원(R&D)	9,570	7465	-2,105
종료	일반회계	지진위험 분석 및 관리기술 개발(R&D)	8,100	0	-8,100
종료	일반회계	재난안전 공동연구 기술개발(R&D)	5,100	0	-5,100
종료	일반회계	국민수요 맞춤형 생활안전 연구개발사업(2단계)(R&D)	6,080	0	-6,080
11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 지원(R&D)	6,500	7,000	500
12	일반회계	도시지역강풍피해방지역량강화기술개발(R&D)	2,000	2,600	600
종료	일반회계	도시침수 방어능력 강화를 위한 피해저감 실용화 기술개발(R&D)	2,650	0	-2,650
종료	일반회계	AI기반차세대안전신고및위험징후분석서비스 기술개발(R&D)	1,080	0	-1,080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기금	세부사업명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종료	일반회계	과학기술기반 군중밀집관리 기술개발(R&D)	1,976	0	-1,976
13	일반회계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기획평가관리(R&D)	1,270	1,791	521
14	일반회계	드론·SAR및디지털트윈연계급경사지위험성분석기술개발(R&D)	1,500	2,600	1,100
15	일반회계	제4기단층정보를활용한국가지진위험지도및설계기준고도화(R&D)	1,491	1,500	9
16	일반회계	재난안전중점기술로드맵연계형기술개발(R&D)	0	1,500	1,500
17	일반회계	재난안전산업우수기술개발지원(R&D)	0	2,000	2,000
18	일반회계	재난및안전관리연구개발(R&D)	31,744	26,766	-4,978
19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2단계)(R&D)	5,600	8,400	2,800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Ⅱ. 검토의견

Ⅱ-1. 총괄 분석

【총 괄】

1. 지방소멸대응 예산 관리

○ 지방소멸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소멸완화 및 극복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예산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획정하고, 해당 사업들을 성과평가 및 환류 등의 방식으로 관리하는 인지예산 체계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소멸”은 일본 전 총무대신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소멸』[16]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 현상을 강조하기 위해 2014년 제시된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대 부터 지역인구 감소 문제가 심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방소멸대응 정책이 본격화되었음.

2020년 12월 8일 공포(2021년 6월 9일 시행)된 「舊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은 2021년 10월 총 89개의 시·군·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음.

한편, 2021년 12월 7일 공포(2022년 1월 1일 시행)된 「지방자치

16) 마스다 히로야, 『지방소멸』, 와이즈베리, 2015.

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은 2022회계연도부터 17개 시·도가 공동 설립한 조합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국가가 10년간(2022~2031년) 매년 1조원씩 총 10조원의 국비를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소멸대응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또한, 2022년 6월 10일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공포(2023년 1월 1일 시행)되어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특례를 구체화하였음.

□ 국가재정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행 예산체계는 지방소멸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예산을 명확하게 획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사업[17] 및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013관) 사업 등을 지방소멸대응과 관련이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 우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보면, 2026년 예산안에는 19개 부처에 총 22조 6,305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17)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교부금(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 등 5개 세목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부처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연번	회계명	소관부처	예산안
1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고용노동부	240,986
2		국가보훈부	2,453
3		산림청	881,655
4		농촌진흥청	128,804
5		기후에너지환경부	4,418,741
6		경찰청	5,146
7		국가유산청	43,619
8		문화체육관광부	488,467
9		보건복지부	4,462,011
10		성평등가족부	129,825
11		교육부	233,255
12		농림축산식품부	1,849,634
13		산업통상부	1,410,285
14		국토교통부	2,117,175
15		해양수산부	810,196
16		식품의약품안전처	55,223
17		행정안전부	3,700,204
18		중소벤처기업부	466,747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6,154
		합 계	**22,630,580**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음,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세목인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교부금(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 등 5개 세목 예산이 있음.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는 28개 부처에 77조 6,485억 5,100만원, 자치단체교부금(330-02)은 2개 부처에 144조 9,075억 1,800만원, 자치단

체자본보조(330-03)는 24개 부처에 9조 5,085억 6,200만원,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는 2개 부처에 1,324억 7,500만원,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는 1개 세부사업(기획재정부 지방채 인수(융자))에 100억원 등 총 232조 2,989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세목별 예산안]

(단위: 백만원)

세목	구분	회계명	부처명	예산안
자치단체 경상보조 (330-01)	일반회계	일반회계	경찰청	2,700
			고용노동부	103,849
			교육부	197,814
			국가보훈부	1,789
			국가유산청	30,74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500
			국토교통부	3,403,331
			농림축산식품부	21,940
			농촌진흥청	59,550
			대법원	9,237
			문화체육관광부	24,428
			법무부	133
			보건복지부	55,562,988
			산림청	142,649
			산업통상부	50
			성평등가족부	621,395
			소방청	26,624
			식품의약품안전처	5,103
			외교부	6,917
			재외동포청	2,122
			질병관리청	10,303
			통일부	11,083
			해양수산부	16,366
			행정안전부	31,149
	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교육부	2,135,335
		영유아특별회계	교육부	5,886,758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토교통부	4,158

(단위: 백만원)

세목	구분	회계명	부처명	예산안
		교통시설특별회계	국토교통부	952,914
		환경개선특별회계	기후에너지환경부	71,10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383,781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5,125
		양곡관리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1,1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촌진흥청	4,61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8,88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청	175,68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산업통상부	3,46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328,07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9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고용노동부	14,000
	기금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135
		국가유산보호기금	국가유산청	34,611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100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36,890
		기후대응기금	기획재정부	25,482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400,233
		한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265,95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28,713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108,014
		금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62,368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농림축산식품부	2,975,846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83,37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8,810
		농지관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4,013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51,244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242,120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288,600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300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19,635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40,037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1,290,842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216,122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부	153,228
		청소년육성기금	성평등가족부	108,324
		양성평등기금	성평등가족부	790,829

(단위: 백만원)

세목	구분	회계명	부처명	예산안
		남북협력기금	통일부	900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22,966
	합 계			77,648,551
자치단체 교부금 (330-02)	일반 회계	일반회계	교육부	72,252,708
		일반회계	행정안전부	69,345,855
	특별 회계	영유아특별회계	교육부	3,308,955
	합 계			144,907,518
자치단체 자본보조 (330-03)	일반 회계	일반회계	고용노동부	2,040
			국가보훈부	6,255
			산림청	442,832
			농촌진흥청	19,712
			기후에너지환경부	530,701
			국가유산청	598,839
			방위사업청	3,711
			문화체육관광부	111,458
			보건복지부	62,210
			산업통상부	7,958
			국토교통부	8,160
			해양수산부	29,736
			식품의약품안전처	1,660
			새만금개발청	3,600
			행정안전부	1,035,543
			소방청	5,803
			질병관리청	17,885
	특별 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산림청	43,66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촌진흥청	2,139
		환경개선특별회계	기후에너지환경부	932,37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기후에너지환경부	2,43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기후에너지환경부	1,809,660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화체육관광부	11,98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418,29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16,837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농림축산식품부	1,386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토교통부	3,000
		교통시설특별회계	국토교통부	1,047,544
		교통시설특별회계	해양수산부	7,296

(단위: 백만원)

세목	구분	회계명	부처명	예산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해양수산부	51,509
	기금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185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110
		한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88,686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19,46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59,084
		금강수계관리기금	기후에너지환경부	27,923
		국가유산보호기금	국가유산청	25,651
		기후대응기금	기획재정부	188,280
		복권기금	기획재정부	29,742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230,785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11,115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8,620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46,464
		청소년육성기금	성평등가족부	450
		양성평등기금	성평등가족부	3,261
		축산발전기금	농림축산식품부	38,053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림축산식품부	118,40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림축산식품부	64,027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1,259,958
		수산발전기금	해양수산부	13,174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34,80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부	4,000
	합 계			**9,508,562**
자치단체대행 사업비 (330-04)	일반 회계	일반회계	국방부	128,507
	특별 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국토교통부	5,768
	합 계			**134,27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450-05)	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기획재정부 (지방채인수 융자)	100,000
총 합 계				**232,298,906**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다음,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013관) 예산으로는 2026년에 908억 3,600만원이 편성되었음[18].

[2026년도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013관) 예산안]

(단위: 백만원)

부문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지방행정 재정지원 (013관)	일반 회계		행정안전부	행복한선진시민사회구현	161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개발연구등지원	3,123
				한국섬진흥원 지원	4,463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운영(정보화)	537
				차세대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98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927
				지자체재정분석및재정제도개선	993
				지역금융활성화	114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170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388
				지방재정 정보화(정보화)	7,67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전산운영(정보화)	512
				지방자치인재개발원수입대체경비	8,341
				지방자치인재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운영(정보화)	375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환경개선유지	5,350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교육운영	875
				지방자주재원확충을위한정책추진	1,042
				지방세정보화추진(정보화)	5,051
				지방분권 균형발전 홍보지원	539
				지방공기업경영평가	3,404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정보화)	69
				주민등록제도개선및운영	145
				주민등록정보센터및전산망운영(정보화)	5,109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378
				자원봉사1365시스템운영(정보화)	838

18) 전술한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자치단체교부금(330-02),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 등 5개 세목 예산과 중복 금액 차감.

(단위: 백만원)

부문	회계 기금	계정	소관	세부사업명	예산안
				이북5도청사시설개보수	499
				외국지방공무원교육운영(ODA)	369
				새마을운동지원	713
				비영리민간단체지원	3,907
				북한이탈주민 및 이북도민 지원	531
				맞춤형 새마을운동 지원사업(ODA)	4,729
				도로명및건물번호활용	18,185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6,115
				과표양성화를위한시가표준액조사	3,297
				공직선거관리및지방의회역량강화	1,818
합 계					**90,836**

※ 자료: 대한민국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지방소멸대응 예산의 구체적인 선정 및 성과관리 필요

□ 현행 지방소멸대응 관련 정부기관으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지방시대위원회'[19]가 있음.[20]

동 위원회는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들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담당하는데,[21] 특히 지역에 투자되는 국가재정과 관련하여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획예산처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장관 등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22]

---

19) 기존의 대통령 소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하여 2023년 7월 10일 출범하였음

2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시대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2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3조(기능) 지방시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2장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시·도 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 부문별 계획 및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4. 제3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의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에 관한 사항
5. 제23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등의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에 관한 사항
7. 지역혁신융복합단지의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제3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권한 및 사무의 원활한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등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통합을 위한 기준·통합방안·조정에 관한 사항
11. **제5장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제72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13. 다른 법률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1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84조(예산편성 절차상의 특례) ① 기획예산처장관은「국가재정법」제29조제1항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회계 예산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9조제2항·제80조제2항 및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다음 연도의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처럼 지역균형발전에 투자되는 재정을 전담하여 관리하는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소멸대응을 위한 재정투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임.

□ 다만,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만을 하고, 각 사업이 지방소멸완화 및 극복의 측면에서 어떠한 사업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평가·관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

또한,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과 관련있는 예산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2026년 예산안: 22조 6,305억 8,000만원) 뿐만 아니라, 330목과 450목에서 지방에 교부하는 예산(2026년 예산안: 232조 2,989억 6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 예산(2026년 예산안: 908억 3,600만원)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편성시 의견제시만으로는 전체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소멸완화 및 극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사업의 범위를 획정하고, 이러한 사업이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작성**한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시대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시책의 투자방향에 관한 의견과 제11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을 매년 6월 15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기획예산처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및 조정·배분**하여야 한다.

⑥ 지방시대위원회는 회계의 운용을 심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 국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를 평가·환류하는 **‘(가칭)지방소멸대응 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의 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있는데, 각각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과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예산제도임.

[성인지 예산제도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

구분	성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의의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예산이 온실가스감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근거법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재정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기본법」 「국가재정법」
2026년도 예산안 규모	265개 사업, 14조 5,982억원	347개 사업, 11조 9,560억원

※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6년도 성인지 예산서」,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경우를 예로 들면, 각 사업별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예상량 및 감축효과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감축효과 및 감축효과 분석 사례]

□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단위: tCO_2eq/년)

내역사업명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40 (누적)	'50 (누적)
(1)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 실증센터 구축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3,102	3,102
합계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282	3,102	3,102

□ 내역사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정량) 분석

<table>
<tr><th>내역사업명</th><th>정량/정성/R&D</th><th>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th></tr>
<tr><td>(1)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td><td>정량</td><td>
ㅇ 사업내용
- 광물탄산화 기술을 적용한 콘크리트 제품 상용화 성공사례 확보

ㅇ 산정방법
- 국외기술개발 수준 :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배합 1m³당 CO_2 0.354kg 고정화

- 기 확보된 국내 개발기술의 상용화 성공사례 확보 목표(10건)
- 활용량 : 레미콘 제품 생산 시 활용량 : 282 ton
= 충북지역 레미콘 생산량 5,697,306m³ x 기술개발수준 0.354kg/m³ x 기업 참여율 14%

ㅇ 산출근거
- 충북지역 레미콘 생산량 : 5,697,306m³
- 기업참여율 : 14%
· 충북지역 레미콘 70사 중 10개 기업

< 전국 레미콘 관련 기업현황 >
(단위 : 개/천m³)
<table>
<tr><th>구분</th><th>서울 경기</th><th>강원</th><th>충북</th><th>대전 충남</th><th>전북</th><th>광주 전남</th><th>경북</th><th>대구</th><th>경남</th><th>부산</th><th>울산</th><th>제주</th><th>합계</th></tr>
<tr><td>기업수</td><td>142</td><td>139</td><td>70</td><td>109</td><td>72</td><td>128</td><td>145</td><td>25</td><td>105</td><td>28</td><td>14</td><td>25</td><td>963</td></tr>
<tr><td>출하량</td><td>46,894</td><td>5,820</td><td>5,697</td><td>13,290</td><td>4,917</td><td>8,335</td><td>8,221</td><td>3,333</td><td>7,463</td><td>5,718</td><td>3,300</td><td>1,450</td><td>114,438</td></tr>
</table>
* (출처: 레미콘공업협동협회 통계자료 2024년)

- 기술개발 수준: 콘크리트 제품 제조 배합 1m³당 CO_2 약 0.354kg 고정화
*출처 : 해외기술사례(카본큐어) (https://www.carboncure.com/blog/concrete-corner/total-carbon-costs/?utm_source=chatgpt.com)
</td></tr>
</table>

□ **성과목표**

(단위: 사업별 자체기준)

내역사업명	이행지표	'24년		'25년		'26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1)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	시험·분석·평가 장비 구축	3	3	21	21	20

주: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시멘트산업 이산화탄소 저감 종합실증센터 구축사업'의 사례임
※ 자료: 「2026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 이러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소멸 대응 분야도 각 사업별 지방소멸완화 및 극복 관련 요소(인구, 일자리, 생활인프라, 교육기관 등)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고, 성과목표를 제시하여 사업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Ⅱ-2. 부서별·사업별 분석

【디지털정부혁신실】

1.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2041-502)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해당함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는 한국지역개발원의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에 대해 재난 및 사이버공격 등 장래 위험에 대응하여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행정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사업은 국가위임사무 및 자체 사업을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사업의 운영·관리 전문기관으로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공통관리 인력의 인건비 및 시설관리 유지비 등 경상경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39억 100만원 대비 3억 9,000만원이 감액된 35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행정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행정정보화 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3,910	3,901	3,511	△390	△10

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국가핵심기반으로 미지정하여 재난안전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문제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전자정부법」 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정보화 및 전자지방정부 구현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을 지원하고 자치분권 및 지역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주체는 행정안전부 및 광역시·도임.

개발원의 2025년도 예산은 총 3,198억원으로, 수탁사업 수입 2,647억원(국가 551억원, 국가·지방자치단체 1,381억원, 지방자치단체 742억원), 지방자치단체분담금 34억원, 국고보조금 39억원, 기타 451억원임.[23)]

□ 주요 업무에는 「전자정부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22개 지방행정(자치행정, 보건위생 등)을 지원하는 시도

23)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현황.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25.

행정정보시스템 구축·유지관리, 중앙·시도·시군구 간 정보연계를 지원하는 시군구(새올) 행정정보시스템 지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지방세 납부(Wetax),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고향사랑기부금 관리, 지자체 전산장비 유지관리, 행정표준코드시스템, 행정전자서명 인증, 복합인증 시스템, 사이버침해 대응지원센터 운영,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진단지원, 지역정보인프라 서버·통신장비 등 2,352대의 전산장비 관리 등임.

□ 이처럼 개발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시스템 등 지방정보화에 관한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어 재해 발생 시 그 피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업무영역에 미칠 수 있게 된다는 됨을 감안할 때,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부합한 시설로서 국가핵심기반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 2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으로 출범한 이후 현재까지 지정되지 않아 「재난안전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임.

□ 국가핵심기반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해당 시설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위원회에 설치된 안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고(「재난안전법」 제26조제1항[2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국가핵심기반의 지정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국가핵심기반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국가핵심기반 등에 미치는 연쇄효과

법 제26조제1항 각 호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게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할 의무가 있는 것임(「재난안전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 특히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25]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과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 자산 등으로서 해당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개발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가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재난안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제나목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지정기준에 따라 한국지역개발원의 정보시스템 및 인프라에 대해 재난 및 사이버공격 등 장래 위험에 대응·대비하여 시스템 운영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 및 보호·관리할 필요가 있음.

---

2.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공동대응 필요성
3.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 규모 및 범위
4. 재난의 발생 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분야별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제30조제1항 관련)

분야	국가핵심기반의 지정기준
2. 정보통신	나. 「전자정부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국가핵심기반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한정한다)과 관련된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물적·인적 자산 등으로서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2046-502)

○ ‘전국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은 국민 수요조사를 토대로 대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개방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제·가공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등 사업의 목적, 개방과제의 선정 절차 등에서 ‘국가중점데이터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낮은 데이터 활용률 및 지자체 참여율 등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두 사업의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가. 개 요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 사업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운영, 공공데이터 제공 분쟁조정처리, 사무국 운영 등 민·관 협의체 운영 추진, 클라우드 기반의 데이터 융합·분석, 공동활용 등의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 설계 추진,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공공데이터 이용활성화 지원, 공공데이터 활용기업 맞춤형 창업·성장 패키지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416억 3,400만원 대비 9억 7,200만원이 감액된 406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원(정보화)	44,921 [41,625]	41,634	40,662	△972	△2.3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26,410 [23,695]	26,410	30,506	4,096	15.5

□ 내역사업인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는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가능성 점검 및 개선,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민·관 협업 기반 데이터 구축·개방 확대, 전국 통합(지자체) 데이터 개방 확대,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2026년도 신규 편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264억 1,000만원 대비 40억 9,600만원이 증액된 305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나. 전국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을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사업과 통합·추진할 필요

□ 내역사업인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의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국민수요기반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신산업분야 핵심 데이터 발굴 개방을 확대 추진하기 위한 것으

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276억 3,200만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28억 7,400만원)하는 사업들로 구성됨.

□ 동 내역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를 살펴보면, 출연사업은 공공데이터 개방 가능성 점검 및 개선 97억 4,400만원,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40억원,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85억 6,800만원,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53억 1,000만원이고,

위탁사업은 전국 통합 데이터 개방 확대 사업 28억 7,400만원임.

[2026년도 공공데이터 구축 개방 확대 사업 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 백만원)

구분	피보조·피출연기관명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산출 근거
출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7,632	① 공공데이터 개방 가능성 점검 및 개선: (2025) 9,744백 → (2026요구) 9,744백만원, 전년동 ②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 (2025) 0백 → (2026요구) 4,010백만원(신규) ③ 공공데이터 개방DB 구축 : (2025) 8,568백 → (2026요구) 8,568백만원, 전년동 **④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2025) 5,310백 → **(2026요구) 5,310백만원, 전년동**
위탁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874	**⑤ 전국통합데이터 개방 확대**: (2025) 2,788백 → **(2026요구) 2,874백만원, +86백만원, ↑3.1%**

※ 자료: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행정안전부, 2025.9.

□ 이 중 전국통합데이터 개방 확대(이하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은 지자체에서 생성·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개방형태(상세 항목·

내용, 서비스 방식 등) 등이 다양하고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전국통합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업무협약을 통해 1년 단위로 추진되고 있고, 사업의 범위는 국민 선호도 조사,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개방 후보과제의 발굴 및 개방과제 선정, 통합개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제공 등임.

사업추진은 국민수요 조사 등을 통해 개방 후보 과제[26]를 발굴하고, 과제 보유기관인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타당성 검토 및 개방과제를 선정 후 표준화(파일[27] 또는 오픈API[28])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됨.

□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의 내용은 대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개방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제·가공하여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제공하기 위한 비용, 즉 지자체가 보유하는 데이터 중 선호도가 있는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개방하는 것으로, 주요 실적에는 2023년 공영자전거 통합데이터(서울·

26) **[개방 후보 과제(안) 도출 절차]**

① 민간의 데이터 수요 분석	② 데이터 특성 분석	③ 후보 데이터군 도출	④ 후보 데이터 개방 가능성 검토
민간 기업의 사업화 아이템 기준 데이터 수요 분석	민간의 수요가 있고, 사회문제 해결과 연관이 있는 지자체 보유 데이터 선별	전국 통합개방 데이터 후보군 도출	후보 데이터군과 연관성 있는 데이터, 제공주기, 민간사업자 참여 가능성, 사용자 편의성 등을 고려

자료 : 행정안전부

27) 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으로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임.

28)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임.

대전·세종), 2024년 공영자전거 대여현황(광역 4개, 기초 7개),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보(광역 5개, 기초 75개), 공공도서관 열람실 가용 좌석 확인서비스(광역 1개, 기초 20개), 공영 물품보관함 대여 현황(광역 1개, 기초 11개) 등이 있음.

□ 다만, 전국통합데이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사업의 목적, 개방과제의 선정 절차 등을 감안할 때, '국가중점데이터 사업'과의 통합·조정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음.[29)]

□ 이와 관련해서 '국가중점데이터 사업'을 살펴보면, 출연사업 중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사업'(내내역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개방·활용 시 국가 차원의 파급효과가 높은 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개방하는 사업임.

행정안전부는 2015년 이후 4차에 걸친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30)]에 따라 217개 데이터를 개방하였고, 2025년도는 제4차 국가중점

29)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2025.8., p.124

30)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현황]**

연번	연도	개방(후보)데이터
1차	'15~'16	■ 건축물정보, 부동산실거래가정보, 상권정보 등 33개 데이터
2차	'17~'19	■ 공간융합정보, 의료영상정보, 다국어음성정보 등 63개 데이터
3차	'20~'22	■ 자율주행통합관제, 119구급정보, 산재심사결정문 등 72개 데이터
4차	'23~'25	■ 여권진위확인 서비스, 가맹사업정보공개서 등 30개 데이터('23) ■ 법령유권해석, 헌법재판소 판례, 교통카드 이용내역 등 19개 데이터('24) ■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다부처 협력과제, 리걸테크 데이터('25 예정)

자료 : 행정안전부

데이터 개방계획에 따라 15개 분야 데이터의 개방을 추진 중임.

□ 두 사업은 모두 수요자인 국민의 니즈를 반영하여 개방과제를 발굴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사업목적이 같고, 대국민 수요조사를 통해 개방과제를 선발하고 데이터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API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방식도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전국통합데이터 및 국가중점데이터 사업 비교]

구분	전국통합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
목적	공공데이터 활용성 증대 및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개방 관리로 민간서비스 창출** 도모	**개방·활용 시** 국가 차원의 파급효과가 높은 고가치·**고수요 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 데이터 신산업 육성 및 창업 지원 등 품질개선을 통한 고품질 데이터 제공
제공 절차	수요조사(국민, 기업 등) ⬇ 의견수렴(기업, 전문가 대상) ⬇ **지자체 수요조사 및 개방과제 선정** ⬇ 사업추진(**한국지역정보개발원**) ⬇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 전국통합데이터 이용(국민, 기업 등)	수요조사(국민, 기업 등) ⬇ **타당성 심의위원회 검토(전문위원)** ⬇ 후보과제 확정 ⬇ 사업추진(NIA) ⬇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 국가중점데이터 이용(국민, 기업 등)
실적	5건(2023년~2024년)	217건(2015년~2024년)
제공 형태	파일(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 또는 오픈API** *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식 **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나 사용자가 바로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 ※ 최근 국가중점데이터의 오픈API 제공 확대 노력	

※ 자료:「2024회계연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 결산 검토보고」, 행정안전위원회, p.145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가 두 사업의 예산과목을 사업출연금(350-02목) 및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으로 달리 편성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해 별도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은 미흡해 보임.

□ 더구나 2025년 10월말 기준 전국통합데이터의 민간 앱 활용현황을 보면, 전국 공영자전거 실시간 정보 활용 4종,[31] 공공 물품보관한 실시간 정보[32] 활용 1종을 제외하고는 민간에서 전국통합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는 없고, 지자체 참여율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임.[33]

[2025년 10월 기준 전국통합데이터 참여 지자체 현황]

개방데이터	연계 완료 지자체
전국 공영자전거 실시간 정보	○ 총 11개(광역 4, 기초 7개) - (광역) 서울, 세종, 대전, 광주 - (기초) 부산 기장군, 충남 공주시, 전남 순천시·여수시, 경북 경주시, 경남 창원시·경남 거창군,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 실시간 정보	**○ 총 185개(광역 11개, 기초 174개)** **- (광역) 서울,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기초) 11개 시·도 관할 전체 시·군·구**
공공도서관 열람실	○ 총 26개(광역 1개, 기초 25개)

31) NHN 도플소프트에서 스마트무브, 전국스마트버스, 지하철종결자 앱(3종)을 네이앤 캠퍼니에서 네이버스 앱(1종)을 통해 공영자전거 대여소 정보, 대여 가능 자전거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32) EveryLocker(모두의 보관함) 앱(1종)을 통해 이용 가능한 물품보관함의 위치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함.
33)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은 데이터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여 민간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앱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있다고 할 수 있음.

개방데이터	연계 완료 지자체
실시간 정보	- 울산(광역), 전북 완주군,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경기 광주시, 경기 성남시, 경기 수원시, 경기 오산시, 경기 용인시,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 인천 서구, 경기 안산시, 충북 음성군, 경기 군포시, 전북 익산시, 경기 부천시, 대구 수성구, 인천 남동구, 경기 안양시, 인천 강화군, 경기 남양주시, 경기 동두천시, 부산 기장군, 전북 전주시, 경기 화성시
공영 물품보관함 실시간 정보	○ 총 34개(광역 1개, 기초 33개) - 서울(광역) 서울 강남구, 서울 강동구, 서울 강북구, 서울 강서구, 서울 관악구, 서울 광진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노원구, 서울 도봉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동작구, 서울 마포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중구, 서울 서초구, 서울 성동구, 서울 성북구, 서울 송파구, 서울 양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용산구, 서울 은평구, 서울 종로구, 서울 중랑구, 경기 구리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전남 완도군, 경북 경주시, 경남 통영시, 경기 수원시, 강원 양양군

※ 자료: 행정안전부

□ 따라서 전국통합데이터 사업은 국민 수요조사를 토대로 대국민 수요가 높은 분야의 개방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하기 쉬운 형태로 정제·가공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등 사업의 목적, 개방과제의 선정 절차 등에서 국가중점데이터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낮은 데이터 활용률 및 지자체 참여율 등 사업성과가 미흡하므로, 두 사업의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 시도·새올시스템은 20년 전 구축 당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한 해킹위협의 심각성 및 시스템 중단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ISMP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 지연 및 예산 미편성 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바,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사업비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통 소요 항목인 소프트웨어개발비,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은 노후화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지능정보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9억 2,900만원 순감되었음.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정보화)	-	929	-	△929	순감

나. 시도·새올시스템 노후화 해소 및 기능고도화를 위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예산안 편성 검토 필요

□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의 지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으로, 시·도에서 사용하는 '시·도 행정시스템'과 시·군·구에서 사용하는 '새올 행정시스템'이 있음(이하 "시도·새올시스템"). 시도·새올시스템을 통해 732개 국가위임사무와 227개 지방자치사무, 921종 민원처리(신청, 발급, 인·허가 등) 업무가 수행되고 있고, 245개 시·도/시·군·구[34]와 58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공공서비스와도 연계됨.

□ 2025년 현재 시·도 행정시스템(2004년 구축)과 새올 행정시스템(2006년 구축)은 구축 당시 환경과 기술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어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보안성 및 지자체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 이 중 보안성 측면에서 상용소프트웨어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보안 취약점에 대한 조치가 어려워 해킹위험[35]에 노출돼 있고 하드웨어 노후화 및 부품 단종으로 장애 시 복구가 지연되는 등 우려가 있는바, 2025년 말 기준 시도·새올시스템 장비의 노후화율은 평균 95.2%에 달함.

---

34)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별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245개 개별 시스템으로 존재함.

35) 2025년도 국정감사 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안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한 해킹시도 건수는 2022년 4,648건, 2023년 4,896건, 2024년 7,237건으로 급증하였고, 2025년 8월 기준 5,182건(2024년도 같은 기간보다 7.4% 많음)으로 전년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됨.

[시도·새올시스템 하드웨어 장비 노후화 현황]

(단위: 식, %)

구분	서버		네트워크	저장장치	백업장치	기타	합계
	Unix	x86					
장비현황	1,225	544	1,453	683	245	3	4,153
노후장비	1,180	513	1415	642	203	-	3,953
(노후화율)	(96.3)	(94.3)	(97.4)	(94.0)	(82.9)	-	(95.2)

주) 노후장비 및 노후화율은 2025년 말 기준
※ 자료: 행정안전부

□ 시도·새올시스템 장비의 노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 10년 전부터 관련 사고가 발생하고 있고,[36] 2023년 11월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37] 시 서비스 중단 영향을 받은 시도·새올시스템의 노후화 문제도 동시에 불거진바,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과제라 할 수 있겠음.

□ 시도·새올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은 노후화된 245개 시·도/시·군·구 개별 행정정보시스템을 17개 시·도 단위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차세대 시스템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국비 및 지방비 분담비율은 각각 34% 및 66%임.

36) "새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상태…민원 처리 중단", MBC, 2015.3.9., "전국 지자체 행정전산망 '새올' 2시간 가량 마비…현재 정상 복구 완료", 아주경제, 2015.3.9., "지자체 행정망 '새올' 시스템장애", 경인일보, 2015.3.9. 등

37) 해당 장애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광주센터와 대전센터를 연결하는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인한 것으로, 라우터 내용 연한(9년) 경과에 따라 교체대상인 것으로 파악됨.

□ 이 사업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시 2025년 ISMP[38] 수립,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구축, 2032년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으로 추진되었으나, 2025년 8월 말 ISMP 수립결과 및 예비타당성 결과 간에 사업 적정규모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2026년도 4월까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진행됨에 따라 총사업비[39] 미확정을 이유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본사업 단계인 구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40]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계획]

구분		2024년 기준	2025년 기준
사업 기간	ISMP	2025년 실시	2025.8월말 완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	2025.9월~2026.4월
	구축 사업	2025~2027년	2026.6월~2029.5월
	운영·유지 관리 사업	구축 후 2032년까지	구축 후
총사업비		6,805억원	6,614억원
구축비		3,633억원(국비1,235억원)	3,326억원(국비1,380억원)
관리비		3,174억원	3,288억원
국비·지방비 비율		국비 34%, 지방비 66%	

※ 자료: 행정안전부

38) 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39) 2025년 예산안 편성 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는 6,807억원이었으나, ISMP 수립 결과에서는 6,614억원으로 조정된바, 총사업비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 보임.
40)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미편성하였다고 설명함.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정보화 사업의 구축 예산은 원칙적으로 ISP 또는 ISMP 수립을 완료한 이후에 편성을 요구[41]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025년 8월 수립된 ISMP 결과를 토대로 2026년 예산안에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계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이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이 2010년대 중반부터 추진되었으나 예산 미편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유로 실제 본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비 노후화(노후화율 95.2%) 및 사고 위험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의 시급성 및 정책적 중요성은 인정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경과]

(2015.7.~12.) 국가위임사무 통합정보관리체계 ISP 추진
(2017.11.~2022.1. 34회)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계자 합동토론회, 지자체 설문조사, 중앙부처 설명회, 시도·새올 팀장 회의, 실무TF 회의 등을 통한 관계자 의견 수렴
(2018.9.~2019.3.)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ISMP 추진
(2021.3.~2021.9.)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BPR[42] 수립
(2022.4.)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41)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2025.5.
-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ISP·ISMP 수립 완료 이후에 예산을 요구
- 각 중앙관서의 장은 「ISP·ISM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에 앞서 ISP·ISM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

42) BPR: 업무과정 재설계(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2024.8.)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최종 통과 확정 (2025.8.)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ISMP 수립 (2025.8~2026.4.)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진행 중)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시도·새올시스템 노후화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간 3,416종의 시스템을 연계하는 중앙연계시스템에 장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장애 발생 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등 48종 민원 발급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호환모드 지원 서비스가 종료되는 2029년도부터는 동 시스템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함.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계획의 적정성 재검토가 완료되는 2026년 4월경에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사업의 총사업비가 확정될 것이므로, 2026년 하반기부터는 본사업이 단계별로 착수될 수 있도록 총사업비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통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43)]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개발비, 하드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43) 당초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5년 ISMP 수립 후 10월부터는 우선적으로 1개 시·도 및 1개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1차 구축사업을 진행하여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하고, 이후 2차 및 3차 사업을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전체 17개 시·도 및 22개 행정업무로 확산한 후, 2028년부터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을 통한 서비스를 개시하는 것이었으나, 2025년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가 2026년 2월까지 예정된 상황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본사업 예산이 미편성됨으로써 1년 6개월여 정도 지연이 불가피해 보임.

비, 위탁사업수행 인건비 및 조달수수료 등을 고려할 수 있음.[44)]

□ 따라서 시도·새올시스템은 구축된 지 20년 경과 후에도 구축 당시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시스템의 노후화로 보안상 해킹위협의 심각성 및 시스템 중단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시도·새올시스템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구축사업은 ISMP 수립, 예비타당성 조사 등 행정절차의 지연 및 관련 예산 미편성 등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어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화시스템 구축 시 공통 소요되는 경비인 소프트웨어 개발비, 인프라 구축(하드웨어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관련 예산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4) [2026년도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예산안 반영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SW개발비	인프라		위탁사업수행 인건비	조달수수료	합계
	HW	상용SW			
3,089	494	5,046	256	48	8,933

자료: 행정안전부

4.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2039-508)

○ 내역사업인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은 동 내역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가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국비와 지방비 분담비율을 일률적으로 5대5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거나 권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풀에서 지자체를 선정하는 등 다양한 참여 유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공공 AI 사업지원센터’은 컨설팅 수요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받는 방안이 효과적일 수도 있는 점, 출연금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운영 예산을 계상한 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인 ‘부처 효율화 AI 지원사업’은 국민권익위 등 개별 부처에서 동 내역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상 낭비가 발생하고 활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부처 간 사업의 협의·조정이 필요함.

가. 개 요

□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사업은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부처·지자체 공통업무를 AI 서비스로 공통 모델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6억 800만원이 순증되었음.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	-	-	20,608	순증
부처 효율화 AI 지원사업	-	-	-	10,220	순증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	-	-	10,220	순증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	-	-	168	순증

나.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 사업이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참여 유인 방안 마련 등

□ 내역사업인 ‘지자체 공통서비스 AI 표준화 지원’은 지자체 공통적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를 조사, 공통 모델화하여 지역 간 AI 격차가 해소되도록 전국에 보급·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102억 2,000만원이 순증되었음.

□ 현재 지자체별로 주로 관내 인공 기업 지원, 민원인을 위한 챗봇, 어르신 돌봄 서비스, 지능형 CCTV 설치·영상 분석 등 AI 기술을 도입한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됨.

[지방자치단체 AI 서비스 제공 사례]

구분	기관명	서비스(시스템)	주요 내용
1	각 지자체	지능형 관제 시스템	지능형 CCTV 영상을 AI를 통해 분석, 실종자 검색, 각종 사건 사고 대응 등
2	서울시 구로구	AI 챗봇, 민원 응대	유선 전화, 홈페이지를 방문한 민원인에게 정책 안내, 민원 답변 등 제공
3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대응	활동 데이터, 건강정보를 활용하여 AI가 고독사 발생을 예측하고 즉시 대응
4	경기도	혁신 클러스터 조성	도내 AI 창업자,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
5	경기도 안성시	노인통합돌봄	독거 노인에게 AI 스피커를 이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
6	강원도 춘천시	AI케이콜	독거 재가 어르신에게 AI를 활용한 안부전화 및 돌봄 서비스 제공
7	충청남도	AI 실증랩 운영	도내 AI 솔루션 공급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자료 : 행정안전부

□ 이에 동 내역사업은 지자체 공통적으로 주민들의 수요가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는 공통 모델화를 통해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지역간 AI 격차가 해소되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2026년도 동 내역사업 예산은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전자정부법」 제71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출연을 통해 추진되며, 사업 지원율은 국비 50%임.

□ 동 내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의 참여 유인 방안 마련, 국비 및 지방비의 분담비율(50%)에 관한 법령상 근거 불명확, 지자체 실제 수요에 기초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점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행정안전부는 국비와 지방비를 5대 5로 매칭하여 동 내역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인데 이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하고 참여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고 AI 이해도가 있는 전문인력 등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 집중될 수 있어 보임.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제2항[45]은 행정기관 등이 인공지능 등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내역사업의 국비 보조의 지원은 동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런데, 국비 및 지방비 분담비율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범위 및 기준보조율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에 보조율이 예시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수행의 근거 법령 및 성격에 따라 정률 또는 정액으로 보조하도록 하고 있는바, 동 내역사업은 보조금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가 예산의 범위 내

45) **「전자정부법」 제18조의2(지능형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등)**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기관등의 장이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에서 분담비율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이같이 지자체에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는 보임.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모로 선정된 지체가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지방비를 적시에 확보하여 중도 포기하지 않아야 하고, 이와 함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에 AI 관련 전문인력 및 데이터센터 등 인적·물적 인프라 확보가 관건임을 감안할 때, 동 내역사업의 참여 지자체는 재정여건이 양호하거나 AI 전문인력[46]을 확보한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에 편중될 가능성도 있음.[47]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당초 사업의 취지인 지역 간 AI 격차를 해소하고 사업집행에서 지자체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방식에 있어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도록 하되, 그 비율을 모든 지자체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해당 풀에서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함으로써 참여 지자체가 수도권 등 일부 지자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46) “AI 열풍 속 AI인력 없어 속타는 지방”, 서울신문, 2025.7.8., .“전국 지자체 데이터직 공무원 19명 불과”, 법률저널, 2025.10.20., “AI 행정 외치지만…광주 外 전국 광역단체 데이터직 '0명'”, 머니투데이, 2025.10.19. 등 언론보도 참조

47) 2025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AI 관련 조사결과, 지자체 AI 사업의 76%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동 내역사업은 과제별 단년도 사업으로, 사업과제 확정부터 AI 서비스 제공 단계까지 회계연도 내 완료돼야 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지방비 확보 등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연도 말까지 동 내역사업의 세부사업계획을 마련하고,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 및 사업 과제(3개) 확정과 지자체 공모를 통해 참여 지자체를 선정한다는 계획임.

다만, 동 내역사업은 사업기간이 1년으로 짧아 지자체가 지방비를 적시에 확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사업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함.

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신규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공모절차를 통한 지자체 선정, 지방비 확보 등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국비가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동 내역사업은 데이터를 보유한 지자체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공통 모델화에 효과적이고 예산 절감도 도모할 수 있는바, 국회의 예산안 심사 시 동 내역사업의 추진 필요성 및 예산안 규모에 대한 정량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동 내역사업을 통해 AI 활용에 있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개발된 서비스를 공동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임.

행정안전부는 동 내역사업을 2026년도에 신규로 편성하면서도 사업의 실수혜자인 지자체에 대한 수요조사 없이 예산액을 산출하였는바,[48] 향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실제 수요에 기초해 예산액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내역사업은 내년도 사업 시행에 앞서 의견수렴, 과제 선정 등 사전 준비 절차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시범사업을 거쳐 실효성 검증 및 보완 개선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48)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에 지자체 등에 대한 수요조사를 2025.9월에 실시한 것으로 파악됨.

다.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출연금 편성 법적 근거 마련 및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 내역사업인 ‘공공 AI 사업지원센터’는 AI 관련 전문인력과 경험이 부족한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적 컨설팅을 제공하는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억 6,800만원이 계상됨.

2026년도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3명과 연구원 1명의 12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한 것임.

[2026년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예산안 산출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168	컨설팅 인건비 : (책임연구원 3,705천원 3명 + 연구원 2,841천원 1명) x 12개월

□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 사유에 대하여 부처·지자체가 AI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동 내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출연금 비목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동 센터를 통해 지자체에 대한 AI 관련 컨설팅이 충실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AI 전문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의 사각지대 해소에는 일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지자체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컨설팅 수요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자체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자체에서 직접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음.

□ 둘째, 동 내역사업은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전자정부법」 제71조 제1항[49]은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한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국가재정법」[50]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금 편성의 구체적인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공공 AI 사업지원센터' 사업의 출연금 편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49) **「전자정부법」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각 중앙사무관장기관 소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전자정부서비스의 개발·제공 및 이용촉진에 관한 업무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업무
3.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의2. 제56조의2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장애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업무
3의3. 제56조의4에 따른 정보시스템 현황조사 및 점검에 관한 업무
3의4. 제56조의5에 따른 장애사후관리에 관한 업무
4. 감리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업무
5.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및 개선에 관한 연구
6. 전자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업무
7. 그 밖에 전자정부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0)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동 내역사업 피출연기관에 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인바, 사업출연금은 법령에 의한 출연금 중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소요비용에 편성되는 것으로,[51] 사업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집행에서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대신 지원의 법적 근거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함.

□ 셋째, 동 내역사업은 부처· 지자체에 AI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사업이나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운영 예산을 계상하고 단기간 채용방식은 컨설팅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2026년 예산안 설명자료[52]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동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규모만 결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수립하고 있지 아니한바, 인력 운영 규모는 센터의 업무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12개월 단위의 인력 채용은 해당 업무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계속되는 신규채용으로 컨설팅의 품질이 저하되고 불필요한 예산 및 행정력 소모를 가져올 수 있음.

51)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 계획안 작성세부지침」, 기획재정부, p.264
52)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공통요구자료(Ⅱ-1)」, 행정안전부, p.801

라. ‘부처 효율화 AI 지원사업’의 개별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방지 필요

□ 내역사업인 ‘부처 효율화 AI 지원사업’은 각 부처가 중복투자 없이 공통업무에 신속하게 AI를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102억 2,000만원이 순증되었음.

□ 행정안전부의 부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23개 기관에서 61개 과제를 제출하였는데, 부처별 특화 업무에 해당하는 과제가 24개로 가장 많았고, 민원 응대 분야 과제 15개, 부내 업무자료 검색·요약 등 업무포털 구축 6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4개 등임.

[공공부문 AI 서비스 지원(정보화)]

연번	분야	기관명	주요 내용
1	특화 업무	국조실	(국민) 조세 심판을 위한 신청서 작성 지원 (공무원) 자료 요약, 사례 제공, 조사 보고서 지원
2		경찰청	수사 사례 제공 및 핵심 요약, 보고서 작성 지원 등
3		보훈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진료 기록 분석 및 요약
4	민원	기재부	분산된 보조금 정보를 통합하여 안내(챗봇 등)
5		질병청	분산된 질병 정보를 통합하여 안내(AI 민원 안내)
6		관세청	다양한 개인 통관 물품에 대한 종합 상담

연번	분야	기관명	주요 내용
7	안내	유산청	내외국인, 학생 등 수요자 맞춤형 국가유산 해설
8		문체부	AI가 자연어 기반으로 도서에 대한 정보 안내
9	업무포털	법무부	부내 업무자료 검색, 요약, 초안 작성 등
10		환경부	부내 업무자료 검색, 요약, 초안 작성 등
11	데이터 구축	통계청	AI가 학습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구축 지원

※ 자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부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달용 제안요청서·지출결의서 작성, 증빙자료 검증, 어르신 돌봄 등 공통업무용·민원용 AI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함.

□ 그런데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등 부처에서는 개별적으로 범부처민원용·업무용 분야 AI 기반 플랫폼을 구축[53]하였거나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파악됨.

예를 들어, 민원용 분야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에 AI 기반 범정부 통합콜센터 시스템을 구축 후 그 운영을 위해 '통합콜센터시스템운영(정보화)(1132-322)' 사업에 74억 1,200만원, 돌봄 업무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복지·돌봄 혁신(2639-310)' 사업에

53) 국민권익위원회는 2020년 범정부 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ISP, '23년 범정부 AI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 1차 사업 완료 및 1개 기관 시범운영, '24년 범정부 AI 기반 통합콜센터 서비스 구축 2차 사업 완료 및 17개 기관에서 정식운영하고 있음.

58억 7,000만원, 법령 업무의 경우 법제처는 생성형 AI 기반의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위해 ‘생성형 AI 법령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사업에 33억 4,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

□ 이처럼 개별 부처에서 동 내역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중복 추진에 따른 예산상 낭비가 발생하고 활용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와 부처 간 사업의 협의·조정이 필요해 보임. 이에 더하여 향후 행정안전부는 개별 부처에서 추진 예정인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를 파악하고 개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동 내역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지방행정국】

5. 국민통합위원회 운영(1145-300)

○ 국민통합위원회는 회의 개최 실적에 비해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실제 회의 개최 횟수, 참석 인원, 수당·사례금 지급 내역 등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반영하여 참석 수당 및 사례금 예산을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음.
○ 국민통합위원회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한 사업 중 상당수는 법령상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운바, 수의계약 남용으로 인한 예산 편성·집행의 투명성 저하와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에는 경쟁입찰 원칙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추진 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민통합위원회’는 국민통합의 기본 방향 및 국가전략 수립, 정책의 조정·평가·지원 등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자문위원회로서,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54]에 따라 2022년 7월 공식 출범하였음.

---

54)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민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국민통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2.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
3. 국민통합에 관한 정책의 조정·평가 및 지원
4.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
5.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6. 사회 갈등의 예방 및 해결
7.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
8. 국민통합에 관한 법제도의 제정·개정 및 폐지
9. 국민통합에 관한 교육·조사·연구 및 모니터링
10. 그 밖에 국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대국민 홍보, 국민통합 행사 등 관련 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5년도 예산 75억 1,300만원 대비 13억 9,800만원(18.6%) 감액된 61억 1,500만원이 편성되었음.[55)]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7,426	7,513	6,115	△1,398	△18.6
국민통합위원회 운영비	4,672	5,137	3,739	△1,398	△27.2
국민통합위원회 사업비	2,754	2,376	2,376	-	-

나. 위원회 활동실적을 반영한 회의참석수당 예산의 적정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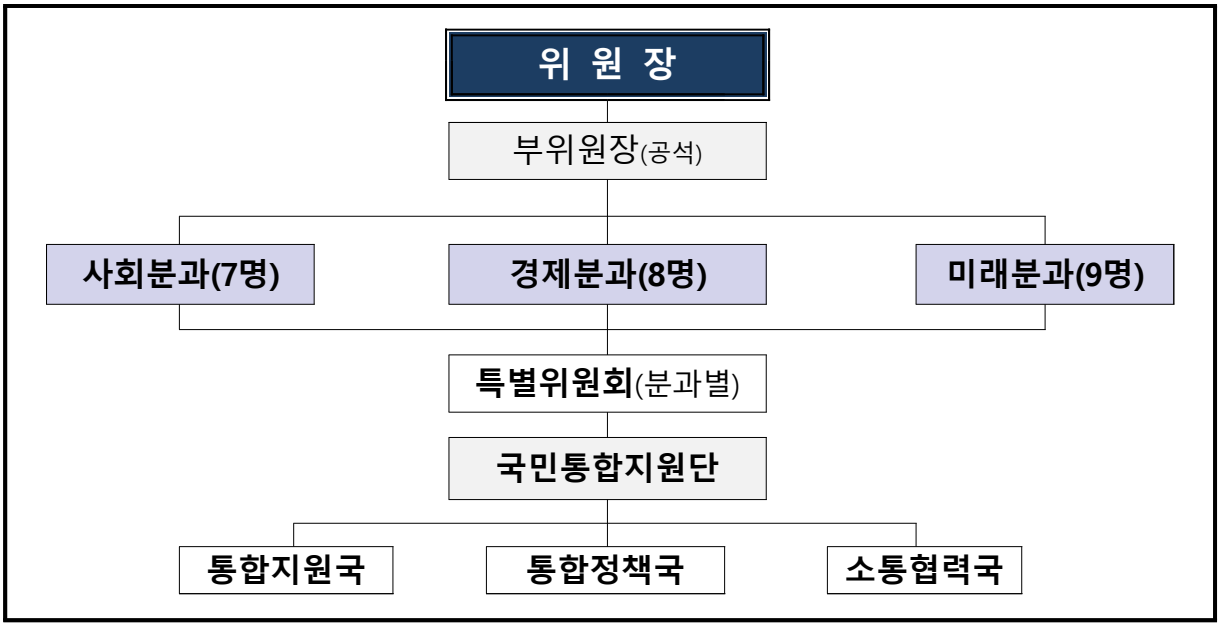
□ 국민통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56)] 국민통합 관련 주요 현안 논의 및 정책 자문을 담당하는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55) 감액된 예산은 전문임기제 인건비(1145-300-110-02)로, 추후 행정안전부에서 국민통합위원회로 재배정될 예정이며, 해당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경비 및 사업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되어 **실질적인 예산 감액은 없음.**

56)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
2. 국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2호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위원 1명을 둔다.

두고, 위원회의 실무적·행정적 지원을 위해 국민통합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국민통합위원회 조직도]



※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이후 2025년 9월까지 전체회의 18회, 분과위원회 278회, 특별위원회 361회, 지역협의회 73회 등 총 1,858회의 회의를 개최하며,[57]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정책 수립 활동을 지속해왔음.

□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 및 외부 전문가에게는 1회당 20만원 이

57) 국민통합위원회 회의 유형
- 전체회의: 국민통합위원회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사회적 갈등이나 주요 문제 중 위원회에서 다룰 핵심 의제를 선별하고, 이를 논의할 방향성을 제시함.
- 분과위원회: 기획, 정치, 사회, 경제, 미래 등 국민통합이 필요한 핵심 분야로 세분화되어 각 소관 영역에서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국민통합 전략을 마련함.
- 특별위원회: 구체적인 갈등 현안에 대한 조사와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함.
- 지역협의회: 분과위 및 특위에서 발굴한 과제에 대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다시 국민통합위원회에 전달하여 중앙과 지역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
(※ 출처: 국민통합위원회 백서, 2025. 4.)

내의 회의참석수당과, 사전 자료수집 등 별도 용역에 대한 사례금이 지급되며,[58] 2026년도 예산안에는 회의참석수당 11억 3,664만원, 안건검토사례금 5억 3,632만원, 총 16억 7,296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최근 3년간(2023~2025년)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 집행률을 살펴보면, 2023년 65.0%, 2024년 76.9%, 2025년 13.6%(9월 기준)로,[59] 회의 실적에 비해 집행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회의 개최실적 및 회의참석 수당·사례금 집행 현황]

연도	회의 구분	개최횟수(회)	참석인원(명)	평균 참석인원(명)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천원)
2023	전체회의	5	120	24.0	49,350
	운영회의	44	231	5.3	88,650
	분과회의	102	376	3.7	253,998
	특별위원회	**175**	**2,048**	**11.7**	652,150
	지역협의회	**34**	**377**	**11.1**	160,278
	청년포럼	47	529	11.3	41,380
	기타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401	1,423	3.8	448,868
	소계	**808**	**5,104**	**6.5**	**1,694,674**

58)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1-1. 일반수용비)
차.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000원내(서면심사 100,000원내)에서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교통비·식비·숙박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220목) 또는 일반수용비(210-01목)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현지조사·기술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지급할 수 있다.

59) 연도별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 집행 내역
- 2023년: 예산 26억 892만원 중 16억 9,467만원 집행
- 2024년: 예산 16억 7,296만원 중 12억 8,653만원 집행
- 2025년: 예산 16억 7,296만원 중 2억 2,819만원 집행(9월말 기준)

연도	회의 구분	개최횟수(회)	참석인원(명)	평균 참석인원(명)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천원)
2024	전체회의	6	148	24.7	57,200
	운영회의	57	351	6.2	131,050
	분과회의	99	696	7.0	231,729
	특별위원회	**129**	**1,737**	**13.5**	478,779
	지역협의회	**37**	**659**	**17.8**	104,330
	청년포럼	39	419	10.7	32,570
	기타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282	1,285	4.6	250,878
	소계	**649**	**5,295**	**8.2**	**1,286,536**
2025 (9월 기준)	전체회의	2	38	19.0	11,650
	운영회의	**11**	**57**	**5.1**	24,150
	분과회의	30	232	7.7	84,842
	특별위원회	**17**	**197**	**11.6**	67,694
	지역협의회	-	-	-	-
	청년포럼	4	103	25.8	4,910
	기타 회의 (전문가 간담회 등)	**94**	**375**	**3.9**	**34,950**
	소계	**158**	**1,002**	**6.3**	**228,196**

※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이에 대하여, 국민통합위원회는 2024년 말의 정치적 상황 및 2025년 상반기 대통령 부재로 인한 위원회 활동 축소가 집행 부진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하였으나, 위원회가 비교적 활발히 운영된 2023년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기간과 2025년 하반기에도 집행률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한편, 참석수당·사례금 예산의 약 86.9%를 차지하는 특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의 산출내역을 보면, 특별위원회는 16개 특위가 각각 연간 20회의 회의를 개최(총 320회/연), 회의당 20명의 민간위

원·전문가가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지역협의회는 17개 협의회가 연간 4회씩 회의를 개최(총 68회/연), 회의당 25명의 민간위원·전문가가 참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각각 60%의 보정률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

[회의참석수당 및 사례금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회의참석수당		안건검토사례금	
	산출내역	금액	산출내역	금액
전체회의	200천원×29명×4회×60%	13,920	직급별 단가×4회×60%	10,240
분과위원회	200천원×48명×12회×60%	69,120	직급별 단가×12회×60%	41,280
특별위원회	**200천원×320명×20회×60%**	**768,000**	**100천원×320명×20회×60%**	**384,000**
지역협의회	**200천원×420명×4회×60%**	**201,600**	**100천원×420명×4회×60%**	**100,800**
청년포럼	70천원×100명×20회×60%	84,000	-	-
계	-	1,136,640	-	536,320

※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그러나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운영 실적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연평균 152회의 회의가 개최되어 회의당 평균 12.5명의 민간위원·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지역협의회는 연평균 35.5회의 회의가 개최되어 회의당 평균 14.6명의 민간위원·전문가가 참석하는 데 그쳐, 60%의 보정률을 감안하더라도 예산 산출의 전제와 실적 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였음.

[특별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개최 현황(2023~2024년)]

회의 구분	연도	개최횟수(회)	참석인원(명)	평균 참석인원(명)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검토사례금(천원)
특별위원회	2023년	175	2,048	11.7	652,150
	2024년	129	1,737	13.5	478,779
	평균	**152**	**1,893**	**12.5**	**565,465**
지역협의회	2023년	34	377	11.1	160,278
	2024년	37	659	17.8	104,330
	평균	**35.5**	**518**	**14.6**	**132,304**

※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이와 같이, 2026년도 예산안은 회의개최 횟수 및 참석 인원이 실제 운영 실적과 괴리가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이 관행적으로 편성되어, 예산 산출의 전제에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이로 인해 회의참석수당과 안건검토사례금 예산이 실제 수요에 비해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측면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 및 목적 외 집행 등 비효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국민통합위원회는 국정과제인 '국민통합실질화' 이행을 위해 2026년부터는 민간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이에 따라 향후 위원회 운영 활성화와 예산집행률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음.

□ 다만, 이와 같은 사업 목표와 계획이 실제로 반영된다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소요예산 산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국민통합위원회는 향후 예산 편성 시 회의개최 실적, 실제 참석 인원, 수당·사례금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실적과 연동되는 합리적인 예산 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경쟁입찰 원칙 준수를 통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은 대통령 자문 기능과 관련된 각종 행사 및 정책연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용역비(210-14) 19억 7,600만원과 정책연구비(260-02) 4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주요 사업은 ‘위원회 및 정책 홍보’, ‘국민통합 행사’, ‘국민통합 기반 강화’, ‘국민통합 정책연구’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국민통합위원회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주요 내용	예산액	예산과목
위원회 및 정책 홍보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136	1145-300-210-14 (일반용역비)
	국민통합 홍보 기획 및 확산	360	
	국민통합 여론분석 및 홍보콘텐츠 제작	100	
	소계	**596**	
국민통합 행사	대통령 보고대회 개최	100	
	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20	
	국민통합 대국민 소통행사 개최	100	
	국민통합 컨퍼런스	130	
	소계	**450**	
국민통합 기반 강화	국민통합기반 강화체계 구축·운영	120	
	국민통합 갈등해결 역량 강화	460	
	특별위원회 국민소통 행사 개최	80	
	특별위원회 해커톤 행사 개최	70	
	청년포럼 청년마당 운영	100	
	국민통합 실천 캠페인 추진	100	
	소계	**930**	
정책연구	대과제 (60백만원×1회)	60	1145-300-260-02 (정책연구비)
	중과제 (40백만원×4회)	160	
	소과제 (30백만원×6회)	180	
	소계	**400**	
계		**2,376**	-

※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 사업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9월말) 계약금액 2천만원 초과 사업 75건 중 약 82.7%인 62건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그 사유는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60] 31건, 긴급한 사유 18건, 특정인의 기술·자격 필요 6건으로, 경쟁입찰 공고 후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은 7건에 불과하였음.

[2천만원 초과 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현황(2023~2025년)]

연도	계약건명	예산과목	계약일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수의계약 사유	조달청 입찰공고
2023	2023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210-14	'23.02.07.	한국언론진흥재단	78,795	특정기술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	210-14	'23.02.16.	㈜더블유컴퍼니	48,207	장애인기업	미실시
	근로자 안전 보장 제도의 적절성 평가	260-02	'23.03.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50,000	특정기술	미실시
	"청년정치시대 특별위원회" 출범식	210-14	'23.03.13.	에이엠피알	24,983	여성기업	미실시
	국내 이주배경인 정책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60-02	'23.04.10.	㈜아이오엠이민정책연구원	30,000	특정기술	미실시
	정치진영갈등 해소 과제 운영 지원	260-02	'23.04.25.	한림대 산학협력단	50,000	특정기술	미실시
	국민통합 행사 및 실천캠페인 대행 용역	210-14	'23.05.04.	㈜케이아이미디어	365,000	유찰	실시
	청년의 로컬 생활정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260-02	'23.05.08.	(사)한국정치학회	25,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260-02	'23.05.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6,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국민통합 10대 지표로 본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분석	260-02	'23.05.11.	한신대 산학협력단	5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행사	210-14	'23.05.15.	㈜블루컴	37,5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시도 지역협의회 운영효과 제고방안 수립	260-02	'23.05.15.	(사)한국갈등협회	3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국내외 국민통합 정책 동향 및 사례 연구	260-02	'23.06.0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7,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한 이슈 연구	260-02	'23.06.14.	(사)한국정치학회	5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제안설명 및 토론회	210-14	'23.06.20.	올어바웃플레이스	25,000	여성기업	미실시
	청년포럼 "청년마당" 운영 용역	210-14	'23.06.21.	㈜그리다360	40,000	여성기업	미실시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공론 행사	210-14	'23.07.10.	㈜엠앤엠리서치	49,00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기획 홍보영상 제작	210-14	'23.07.14.	컬쳐랩	49,50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210-14	'23.07.14.	㈜블루컴	43,703	여성기업	미실시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210-14	'23.08.03.	㈜비전메이커플러스	48,62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	210-14	'23.08.07.	㈜더블유컴퍼니	48,091	장애인기업	미실시
	"청년젠더 공감 특별위원회" 운영 지원	210-14	'23.09.08.	㈜비전메이커플러스	49,39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제10차 전체회의 행사 용역	210-14	'23.10.24.	㈜리노위즈	54,950	여성기업	미실시
	4차 산업혁명 관련 갈등완화 및 국민통합 방안	260-02	'23.10.31.	(사)한국정책학회	48,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국민통합정책 평가방안 연구	260-02	'23.11.01.	(사)한국정책학회	3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가족구조 변화와 청년 1인가구 지원방안 연구	260-02	'23.11.13.	㈜오픈도어	3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60)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5))

연도	계약건명	예산과목	계약일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수의계약 사유	조달청 입찰공고
	자살위기극복 특위 성과 홍보영상 제작	210-14	'23.11.14.	㈜인보이드	68,600	여성기업	미실시
	천만노인시대 대비 정책연구	**260-02**	**'23.11.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5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이주민 자치참여 제도 발전방안 연구	**260-02**	**'23.11.22.**	**(재)이민정책연구원**	**55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성공희망 파도타기 영상 제작	210-14	'23.11.24.	㈜네오누리콤	25,300	여성기업	미실시
	2024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210-14**	**'23.12.22.**	**한국언론진흥재단**	**86,803**	**특정기술**	**미실시**
	소 계				**1,704,442**		
2024	2022-2023 백서 기획 용역	210-14	'24.01.31.	㈜온컬처인	47,200	여성기업	미실시
	북배경주민 정착지원 발전방안 연구	**260-02**	**'24.03.04.**	**통일연구원**	**35,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불법도박 대응 및 거버넌스 정책방안 연구	**260-02**	**'24.04.12.**	**(사)한국셉테드학회**	**30,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제12차 전체회의 및 성과보고	210-14	'24.05.07.	㈜블루컴	46,101	여성기업	미실시
	지표와 데이터로 본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분석 연구	260-02	'24.07.16.	(사)한국행정학회	62,363	유찰	실시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성과보고회	210-14	'24.08.13.	블랙올리브	31,23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성과보고회 및 제3기 출범식	210-14	'24.09.09.	㈜블루컴	47,476	여성기업	미실시
	지역활력 제고 방안 연구	**260-02**	**'24.09.11.**	**원주대 산학협력단**	**45,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지자체 기본수당 설치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60-02	'24.09.19.	(사)한국행정학회	34,545	유찰	실시
	지역협의회 연석회의 행사	210-14	'24.09.20.	㈜씨앤아이리서치	48,84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적 지역주의 극복방안 연구	260-02	'24.09.27.	(사)한국사회통합학회	45,455	유찰	실시
	일자리 격차 및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조사	**260-02**	**'24.10.24.**	**연세대 산학협력단**	**48,048**	**긴급한사유**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제16차 전체회의 및 워크숍	210-14	'24.10.25.	㈜리노위즈	53,790	여성기업	미실시
	초고령 사회 대비를 위한 통합돌봄체계 구축 연구	260-02	'24.11.19.	공주대 산학협력단	40,000	유찰	실시
	양성공감 인식개선을 위한 슬로건 제작	210-14	'24.11.22.	아이리스	33,00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정책과제 주요성과 홍보물 제작	210-14	'24.11.22.	㈜미르크리에이티브	45,000	여성기업	미실시
	양성공감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210-14	'24.11.22.	디자인팜	49,500	여성기업	미실시
	2040 가족·노동역할 태도와 실태 연구	**260-02**	**'24.11.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5,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청년포럼 "청년마당" 활동영상 제작 및 홍보	210-14	'24.11.29.	디자인혼	33,000	여성기업	미실시
	도시 기후불평등 대응 정책마련을 위한 기초조사	**260-02**	**'24.11.29.**	**서울대 산학협력단**	**49,000**	**긴급한사유**	**미실시**
	소 계				**869,548**		
2025	'존엄한 노후를 위한 새로운 길을 묻다' 정책토론회	210-14	'25.01.15.	㈜라이브온미	30,000	여성기업	미실시
	국민통합위원회 백서(제1기~제3기) 제작	210-14	'25.01.20.	㈜온컬처인	54,100	여성기업	미실시
	2025년도 뉴스 저작물 이용	210-14	'25.01.20.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94,700	유찰	실시
	국민통합 가치 확산을 위한 캠페인	210-14	'25.01.23.	㈜에이플랜투모로우	51,200	여성기업	미실시
	향후의 국민통합 방안 모색을 위한 콘퍼런스	210-14	'25.01.24.	㈜인보이드	43,700	여성기업	미실시
	"소득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210-14	'25.02.26.	㈜라이브온미	29,928	여성기업	미실시
	"기후격차 해소, 함께 사는 미래" 정책토론회	210-14	'25.03.13.	㈜미코플랜	50,000	여성기업	미실시
	"함께 만드는 노인돌봄 사회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210-14	'25.03.17.	㈜라이브온미	54,840	여성기업	미실시
	"기업 성장을 돕는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210-14	'25.03.26.	㈜라이브온미	35,000	여성기업	미실시
	5대 사회갈등 관련 주요 이슈 및 데이터 분석 연구	**260-02**	**'25.09.10.**	**한국행정연구원**	**40,000**	**특정기술**	**미실시**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대화, 숙의 전략 연구	260-02	'25.09.18.	한양대 산학협력단	37,990	유찰	실시
	소 계				**521,458**		

※ 자료: 국민통합위원회 제출자료 재구성

□ 국민통합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한정된 활동기간 내에 시의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관련 행사 및 정책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 사업자 선정 시에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업무규정”) 제50조제1항[61]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 방식에 의하여야 하며,[62] 수의계약은 ① 천재지변·감염병확산 등에 준하는 긴급한 경우, ② 특정인의 기술·자격이 필요하거나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③ 추정가격 2천만원(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 등 예외적인 상황에 한정하여 허용되고 있음.[63]

---

61)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0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9조에 따른 계약을 통한 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6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라. (생략)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자. (생략)

□ 또한, 「행정업무규정」은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절차를 정한 행정적 기준일 뿐, 「국가계약법」상 일반경쟁 및 수의계약 등 계약의 방법 자체를 완화하는 예외 규정으로 볼 수 없음.

□ 그런데, 국민통합위원회가 '긴급성'을 사유로 체결한 수의계약은 일반 사회 이슈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17건과 "이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 행사용역 1건으로, 사업의 내용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제1항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외부요인에 의한 용역계약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특히, 정책연구과제는 통상 연간계획·과제심의·선정 절차에 따라 계획적으로 진행되며, 긴급성을 이유로 추진된 연구과제의 대다수가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 방안", "지역활력 제고 방안" 등 사전에 필요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적 과제라는 점에서, '활

차.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타. (생략)
3.~4. (생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생략)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생략)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7) (생략)
나.~자. (생략)

동기간 내 보고서 도출'이나 '정책적 시의성' 등과 같은 불가피성은 효율적인 일정 관리를 통해 대응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됨.

□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특정인의 기술·자격) 및 제5호가목4)(특수 지식·기술이 필요한 학술연구)에 따른 수의계약은, 특허권·저작권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독점적 권리 등으로 실질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인정되는 예외적인 사항임.

□ 반면, 국민통합위원회가 '특정인의 기술·자격'을 근거로 체결한 수의계약은 "근로자 안전보장 제도의 적절성 평가", "5대 사회갈등 관련 이슈 분석" 등 4건의 정책연구용역 및 2건의 뉴스 스크랩 서비스[64]로서, 복수의 학술·연구기관 또는 민간사업자가 수행 가능한 과제라는 점을 감안할 때, 관련 경험만을 이유로 특정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보임.

□ 결론적으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사업의 긴급성 및 특정인의 기술·자격 필요성을 근거로 체결한 다수의 수의계약이 실제로는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과제였다는 점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상 수의계약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과도한 수의계약은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제한하고, 이로 인해 사업예산의 합리적 산정 여부 및 사업자의 역량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과가

64) 뉴스 스크랩 서비스: 언론에 보도된 뉴스, 기사, 방송자료 등을 디지털 시스템(전자스크랩 솔루션)을 활용해 수집·관리하며, 이메일·모바일·전자게시판 등 다양한 형태로 배포·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국민통합위원회는 향후 사업 추진 시 경쟁입찰 원칙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요건 및 절차를 충실히 검토·이행함으로써,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비영리민간단체지원 (1140-300)

○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기획·운영, 보조금관리, 사업성과 등 사업수행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평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별 특성과 실제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적정 수준의 보조금 지원, 평가결과에 기반한 체계적인 교육·컨설팅 등 환류 체계 강화를 통하여 단체의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단체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도 대비 3억 300만원(8.4%) 증액된 3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비영리민간단체지원	3,822	3,604	3,907	303	8.4
공익활동 지원	3,137	2,925	3,298	373	12.8
공익사업 평가 및 교육용역	210	196	196	-	-
공익사업 운영 및 관리	80	81	81	-	-
공익사업 관리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395	402	332	△70	△17.4

나.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환류체계 강화 필요

□ ‘공익활동 지원’ 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65]에 근거하여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임. 2026년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 공익사업 수가 전년도 110건에서 130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300만원(12.8%) 증액된 32억 9,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최근 5년간 사업 운영 현황을 보면, 공익사업 신청 건수 대비 선정률이 2023년까지 60~70%를 상회하다가 2024년부터는 약 50% 수준으로 유지되어, 선정률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보임. 이는 본 사업이 성과 중심의 경쟁적 공모사업보다는 ‘비영리민간단체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 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설계된 영향이 크다고 보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운영 현황(2021~2025)]

연도	등록단체수 (개)	신청현황			선정현황			
		사업수 (개)	금 액 (억원)	평균금액 (백만원)	사업수 (개)	금 액 (억원)	평균금액 (백만원)	선정률[66] (%)
2021	1,708	273	139	50.9	202	68	33.6	74.0
2022	1,733	284	151	53.2	182	65	35.7	64.1
2023	1,754	251	109	43.4	180	65	36.1	71.7
2024	1,471	249	88	35.3	124	32.5	26.2	49.8
2025	1,482	232	75	32.3	110	29.2	26.6	47.4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6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66) 공익사업 선정률 = (선정사업 수 ÷ 신청사업 수) × 100

□ 한편, 2024년 예산이 전년 대비 절반으로 감액된 이후, 공익사업당 평균 보조금액은 2023년 3,610만원에서 2026년(안) 2,530만원(잠정)으로 크게 감소하였음.

□ 이와 같이 높은 선정률을 유지하는 동시에 지원 단가가 지속 감소할 경우, 단체의 사업수행 여건과 성과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별 특성과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2~2024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67]를 종합한 결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 기획 및 운영, 보조금 집행, 성과평가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공익사업 기획 단계에서는 전담인력 부재, 조직·행정관리 미비 등 단체의 운영체계 취약성이 지적되었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집행지침 미숙지, 집행등록 지연, 잦은 예산변경과 행정 부담 문제가 지적되었음.

- 성과평가의 경우, 다수 사업이 행사 횟수, 참가 인원 등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정책적 기여도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 정성적 성과를 평가하는 데에는 일부 미흡한 측면이 있었음.

67)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용역 수행

□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비영리민간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보통 등급 이상의 준수한 평가를 받았으나, 절대평가 방식의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미흡' 판정을 받은 단체도 매년 일부 발생하고 있음.

[연도별 종합평가 결과(2022~2024)]

연도	우수(A) (90점 이상)		보통(B) (60점 이상~90점 미만)		미흡(C) (60점 미만)		중도포기 (평가제외)	계 (A+B+C)
	개수	비중(%)	개수	비중(%)	개수	비중(%)		
2022	34	19.1	137	77.0	7	3.9	2	178
2023	54	31.2	117	67.6	2	1.2	3	173
2024	52	43.3	62	51.7	6	5.0	1	120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재구성

□ 한편, 동 평가보고서에서는 사업기획 및 예산 편성, 교부금 집행 및 행정관리, 성과지표 수립 및 달성 등 공익사업 추진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민간단체가 이러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량을 강화할 것을 지속 권고하고 있음.

□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수를 확대하기보다는, 공익사업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규모의 보조금 지원을 통해 단체의 사업수행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평가 결과를 교육·컨설팅 등 맞춤형 환류 체계와 연계하여 단체의 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자치분권국】

7.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1131-304)

○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상호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유기적·체계적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효율화’ 사업은 지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혁신 지원,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지자체 맞춤형 협력지원,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9억 3,500만원 대비 800만원이 감액[68]된 9억 2,700만원이 편성되었음.

68) (지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 2,200만원 감액,
(지자체 균형인사정책 등 인사혁신 지원) 1,100만원 감액
(지역 맞춤형 지자체 협력지원) 4억 2,000만원) 순감
(읍면동 기능 및 체계개선) 2,800만원) 순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소송대응) 500만원 감액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3,400만원 증액
(지자체 맞춤형 협력지원) 1억 4,000만원만원 신규편성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3억 400만원 신규편성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 효율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자체조직 및 인사관리효율화	542	935	927	△8	△0.8
지자체 조직분석·진단	227	227	205	△22	△9.6
지자체 균형인사정책등 인사혁신 지원	110	110	99	△11	△10.0
지자체 적극행정 활성화	96	96	130	34	35.4
지역맞춤형 지자체 협력지원	200	420	-	△420	순감
지자체 맞춤형 협력지원	-	-	140	140	순증
읍면동 기능 및 체계 개선	28	28	-	△28	순감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및 소송대응	54	54	49	5	9.2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	-	304	304	순증

나. 지방시대위원회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 간 유기적·체계적 연계성 확보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 사업은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69]을 정부차원에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3억 400만원이 신규편성[70]되었음.

69) 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24.5.출범)가 '25.1.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권고안으로 지방행정체제의 행정구역, 계층, 기능 측면에서 8개 개편방안을 제시하였음.

70) 의회 위촉위원 참석수당 및 여비 10백만원, 사무실 운영물품 구입 14백만원, 사무실 인터넷망 전용회선 사용료 25백만원, 직원 특근매식비 5백만원, PC 및 복합기 등 사무기기 임차료 25백만원, 과운영비 2백만원, 실무회의 참석 여비 11백만원, 협의회 개최 3백만원, 실무회의 추진 3백만원, 지역주민 간담회 추진 3백만원,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권역별 행정수요 분석 200백만원

□ “지방행정체제”란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특별시·광역시·도와 시·군·구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로서 현재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며[71],

[지방시대위원회 개요]

□ 설치목적

○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

□ 주요기능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관련 정책의 조정 등 다음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 조정, 국정과제의 총괄·조정·점검 및 지원
2.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3.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사업, 지방자치분권 과제 등 추진·조사·분석·평가·조정
4.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지원
5. 공공기관 등 지방이전, 혁신도시 활성화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6.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정·육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 및 운영 등

□ 구성·운영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당연직위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등

(위촉위원)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17명 이내로 구성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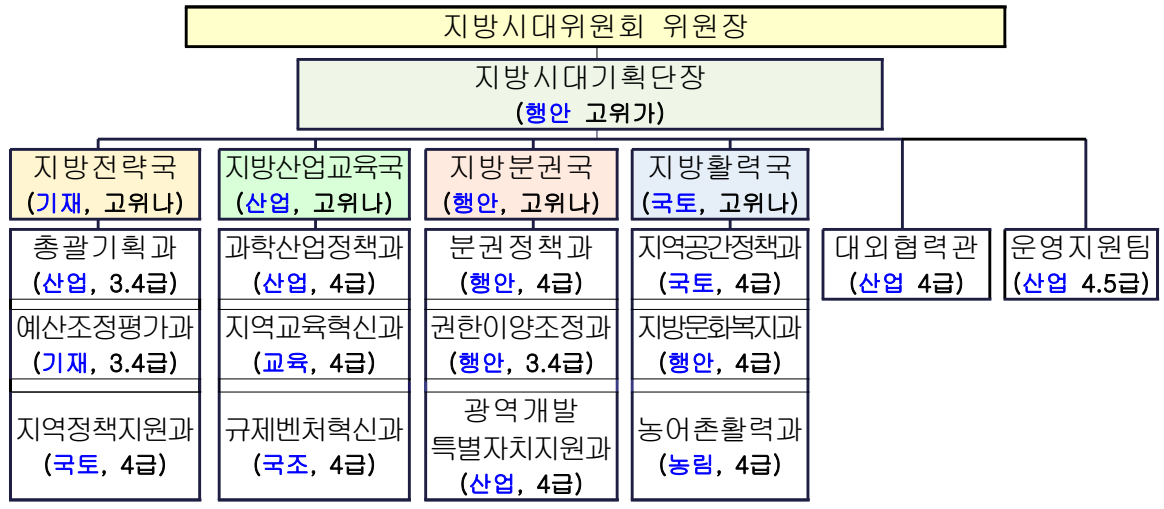
7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거나 행정수요 및 지역 특성에 따라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발전 격차를 줄이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증진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제62조(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둔다.

□ 지방시대위원회 사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이 설치되어 있는데[72], 이 중 분권정책과는 행정체제개편 등 제도개선(자치조직·입법·경찰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지방시대기획단 현황]

□ (조직구성) 4국 12과 1관 1팀



□ (인력현황) 정원 46명 / 현원 91명('25.11.5. 기준)

○ 정원 : ①14개 중앙부처 소속파견(42) + ②전문임기제 공무원(4)

* 정원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및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부처파견(별도) 및 전문임기제 T/O 현황임

○ 현원 : 정원 外 지자체(21), 공공기관 파견직원(15) 등 구성

※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7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지방시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시대위원회 소속으로 지방시대기획단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시대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8조(지방시대기획단) ① 법 제68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시대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에 부칠 안건의 작성·검토 및 협의·조정
3. 지방시대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지원
4. 그 밖에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지방시대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 또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운영(1132-325)을 위하여 14억 9,600만원(위원회 기본운영 443백만원, 위원회 회의운영 251백만원, 지방시대 정책연구 및 홍보 302백만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활성화 300백만원, 지방분권 평가·확산 지원 200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실행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와 해당 협의회의 운영·지원 등을 위한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의 설치근거를 마련('25. 4. 10.)[73]하였으며, 협의회 및 지원단 운영을 위해 3억 400만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였음.

---

73)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및 추진을 위하여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간의 기능배분 등과 관련한 일련의 체제에 대한 개편(이하 "지방행정체제개편"이라 한다)을 위한 실행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1.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실행방안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2. 협의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시와 도가 통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이하 "광역시·도 통합"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정부조직법」 제3조에 따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 및 국가사무의 이양 등 기능 이관에 관한 사항
4. 광역시·도 통합 관련 기구·정원·인사 및 통합비용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법령 제정·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6.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기능 조정 시 기관 간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8.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한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지원단 개요]

□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주요 내용

○ (구성) 위원장행안부 장관, 위원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 등

○ (기능)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실행방안의 협의 조정

-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실행방안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
- 지방행정체제개편 관련 법령 제정·개정 등 제도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지원단 주요 내용

○ (구성) 단장행안부 자치분권국장(겸임), 단원행안부·기재부 등 관련부처, 필요시지자체등

○ (기능) 지방행정체제 개편 관련 검토 및 이행방안 마련, 범정부 협의회 운영, 유관부처 협의, 관련 법령 정비, 연구용역 수행 등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같이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고, 지방시대기획단 내에도 행정체제개편 등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조직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안전부 내 협의회 및 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적 행정체제개편 추진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위원회와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도록 상호 간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정책추진 과정에서 유기적·체계적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사전에 지방시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범정부 지방행정체제개편 협의회 및 지원단이 출범하였으며, 앞으로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겠다는 입장임.

8.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1131-315)

○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이용 현황과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홍보 전략과 예산 배분을 재검토하고, 국민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 사업은 주민등록·인감·본인서명제도 운영 및 개선을 통해 민원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1억 6,100만원 대비 1,600만원 감액된 1억 4,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주민등록제도개선 및 운영	161	161	145	△16	△9.9

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홍보전략 및 예산 배분 검토 필요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인감을 소지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감 도장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갈음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74]에 따라 2012년부터 운영되고 있음.

[인감증명서와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비교]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 인감등록 신고	• 해당 없음	• 온라인 발급시스템 이용신청 ※ 인증서 등 사전발급 필요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신청방법	• 발급기관 방문 ※ 일부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가능	• 발급기관 방문	• 발급사이트 접속
발급	• 증명청이 발급	• 발급기관이 발급	• 본인이 직접 발급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拇印)의 전자적 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拇印)의 전자적 확인	• 온라인 상 확인
확인방법	• 인감날인	• 본인 자필서명	• 전자서명
관인	• 발급기관 날인	• 발급기관 날인	• 미날인
발급형태	• 문서형태	• 문서형태	• 전자문서
제출방법	• 인감증명서 제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 발급증 제출

74)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명"이란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제5조에 따른 발급기관이 확인한 종이문서를 말한다.
4. "전자본인서명확인서"란 본인이 제7조제1항에 따른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에 따라 발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법」 제12조에 따른 인감증명서(이하 "인감증명서"라 한다)에만 적용한다.

구 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수요기관확인 방법	• 인영비교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서명과 기재사항 등 종합고려 확인 ※발급사실 확인 가능	• 온라인 상 확인

※ 자료: 행정안전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명 (한자)		( )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매도 용도	[ ] 부동산 매수자, [ ] 자동차 매수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일반 용도 (그 외의 용도)			
위임받은 사람		성명		
		주소(자격증 소지자 외의 사람에게 위임하는 경우만 작성)		

위의 기재사항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발급 신청자 (서명)

비 고			
발급번호		수수료	600원

위 본인의 서명사실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장・면장・동장 및 출장소장 직인

□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2012년 도입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률은 매우 저조한 상황으로 5~7% 대에서 정체되고 있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8
인감증명 발급(A)	35,510	30,749	29,836	29,845	19,712
본인서명 및 전자본인서명 발급(B)	2,177	1,729	1,880	1,901	1,483
발급률 (B/A+B)*100	5.8%	5.3%	5.9%	6.0%	7.0%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급 실적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을 지적해왔으며[75],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홍보 및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2020년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 실적 개선	○ [지적사항] 2020년도 본인서명 발급률은 5.19%로, 2012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 도입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는	제도개선	○ 수요기관의 **인감증명서 요구사무 및 근거 규정을 정비**하도록 협의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와 교육을 지속 추진** 중 ○ 인감증명서 등을 활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업(행정사, 법무사)

75) 2020년도 결산심사, 2023년도 예산안 심사, 2024년도 결산심사 시 우리위원회의 지적이 있었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형	조치결과
	인감증명서 수요기관과 추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 홍보를 강화**하는 등 인감증명서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발급 실적을 개선**할 것		협회에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 및 이용 협조 요청** ○ 민원편의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과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려해 나가고 있음

□ 그러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홍보예산은 2023년까지는 3,900만원으로 유지되었으나,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8.7% 감액된 2,000만원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 예산안에서도 전년 대비 30% 감액된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2년~2026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안)
서명확인제도 홍보예산	39,000	39,000	20,000	20,000	14,000

※자료: 행정안전부

□ 이처럼 발급 실적이 낮은 상황에서 홍보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제도의 활성화와 대국민 서비스 확대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보임.

[2025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홍보계획]

○ **(홍보물 제작)** 합리적 비용으로 다양한 영상(모션그래픽 영상, 이미지 강조형 영상, 인플루언서 협업 숏폼, 현장 인터뷰 홍보영상 등) 및 홍보물 제작

《 2025년 홍보 캐치프레이즈(슬로건) 》

“ 똑똑한 요즘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나[1]만 있으면 됩니다[2] ”

1) **“나”**란 본인을 의미함과 동시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지칭
2) ‘23년 홍보 슬로건 ‘씁니다’의 시리즈 형식으로 **“됩니다”** 로 강조

① **(2D모션영상)** 서명의 **편리함**과 본인만 발급하는 **안전함** 강조

- **입체감 있는 3D 소스 이미지**와 주요 텍스트 자막을 강조하는 **2D 모션 그래픽 형식**의 20초 짧은 영상으로 제작(**비디오 강조**)

(예시) 은행갈 때! 신분증, 통장, 핸드폰...**도장 어디있지? 실패!**
내가 은행갈 때?! 신분증, 핸드폰 그리고5 **나?! 성공**
부동산 거래할 때! **도장 대신 여기 있어요. 저! 통과!**
자동차 구입할 때! **언제 어디서나 신분증과 나만 있으면 되는 이유**
우리에겐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치트키가 있으니까

② **(숏폼영상) 서명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위한 SNS 홍보용 제작

- **(이미지 강조형)**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키워드 중심의 자막과 직관적인 아이콘**을 통해 대화 형식으로 핵심 내용 설명

(예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어서 안전한데
서명 하나로 증명하니까 편리하지
사실 이거 신청 한 번이면 그냥!
확인서 발급은 주민센터에서
다 **됩니다**

☞ 사람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변신
☞ 펜으로 터치패드 서명 모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모션
☞ 주민센터 확인서 튀어나오는 모션
☞ 사용처 사이를 확인서가 뛰어가는 모션

- **(인플루언서 협업형)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A to Z를 소개, 2030 세대에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 섭외**, 행안부 인스타 동시 업로드

(예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궁금증 유발 질문 → 장점 나열 → 인감증명서와 비교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간편함 사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설명(사용처, 발급방법 등) → 슬로건 강조 및 엔딩

③ **(댓글 이벤트) 인플루언서 활용하여 제작한 제도안내 영상과 연계하여 댓글 달기 이벤트 추진**

* 유명 인플루언서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참여율 및 반응효과 극대화

○ **(홍보 방안) 전광판, SNS(인스타, 유튜브 등), 엘리베이터 활용**하여 국민생활 속 일부분으로 인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합동 홍보**

※자료: 행정안전부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제도의 이용 현황과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홍보 전략과 예산 배분을 재검토하고, 국민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편성된 예산 내에서 효과적인 홍보콘텐츠를 발굴하고 법원, 은행 등 수요기관과 협력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입장임.

9.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1137-500)

○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개발SW에 대한 유지관리 요율을 유사 시스템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비교·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하여 유지관리비 산정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대책」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발SW 유지관리 요율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유지관리비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 예산 요구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하고, 개별 기관의 직접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 편성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사업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서비스 및 주민등록데이터 개방 시스템 등의 운영 및 유지관리와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교체 및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52억 9,400만원 대비 1억 8,500만원이 감액[76]된 5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음.

76)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용 문서변환 시스템 구축)** 5억 4,000만원 순감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교체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1억 2백만원 증액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민간전용 연계환경 구축) 1억 2,200만원 증액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2,732	5,294	5,109	△185	△3.4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309	2,182	2,101	△81	△3.7
비대면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24	-	-	-	-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235	235	235	-	-
주민등록 데이터 개방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64	164	164	-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운영	-	266	478	212	79.6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용 문서변환 시스템 구축	-	540	-	-	순감
주민등록정보제공시스템 노후 대개체 및 재해복구 시스템 강화	-	1,907	2,009	102	5.3

나. 모바일주민등록증 시스템 SW 유지관리 요율의 합리화 필요

□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운영’ 사업은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 모바일 주민등록증[77]의 본격 시행(’24. 12. 27.)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과 기술지원 등을

77) **「주민등록법」**
제24조의2(모바일 주민등록증)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4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주민등록증과 효력이 동일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된 주민등록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및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시스템 운영, SW 유지관리 및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년 대비 79.7% 증가한 4억 7,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모바일주민등록증 시스템 예산산출 내역]

□ 모바일주민등록증시스템 운영 : (2025) 266백만원 → (2026) 478백만원, +212백만원(+79.7%)

가. 시스템 운영 : (2025) 266백 → (2026) 266백, 전년동

- 〔산출근거〕 정보시스템운용자 12M/M(1명) × 32,706천원(1M/M 단가) × 67.8%(할인 32.2%) = 266백만원

나. 개발SW 유지관리 : (2025) 0백만원 → (2026) 36백만원, 순증

- 〔산출근거〕 526FP(기능점수) × 1,473천원(1FP당 유지보수 단가) × 4.65%(유지관리 요율) = 36백만원

다. 상용SW 유지관리 : (2025) 0백만원 → (2026) 108백만원, 순증

- 〔산출근거〕 901백만원(상용SW도입가) × 12%(유지관리 요율) = 108백만원

라. 시스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2025) 0백만원 → (2026) 68백만원, 순증

- 〔산출근거〕 DPM 16식 × 3,500천원 + SYSMON 12식 × 1,000천원 = 68백만원

※ 자료: 행정안전부

□ 이 중 '개발SW 유지관리' 사업은 2024년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의 개발 이후, 무상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것으로 유지관리비는 개발규모와 개발단가, 유지관리요율 등을 고려한 기능점수방법에 의해 산정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음.

[기능점수 방식에 따른 유지관리비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식
①개발원가	기능점수×개발단가×보정계수
②개발금액	(①+이윤(개발원가의 20%))×1.1(부가세)
유지관리비	②×유지관리요율

※ 자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 해당 방식에 따르면 모바일주민등록증 시스템의 개발SW 유지관리 개발원가는 5억 8,699만원이고, 개발금액은 7억 7,482만원이며, 유지관리요율(4.65%)을 고려한 유지관리비는 3,602만원으로 산정됨.

□ 그런데, 해당 유지관리요율은 유사한 개발SW 유지관리 사업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임.

2026년 예산안에 편성된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세부사업 내 개발SW 유지관리 사업은 총 5개인데,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을 제외한 다른 시스템의 개발 SW에 적용되는 유지관리 요율은 9~11% 수준이며,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는 10~15%를 적정 유지관리 요율로 산정[78]하고 있음.

78) 참고로,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개발 SW유지관리비에 대해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하여 적정 비용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운영 세부사업 내 SW 유지관리비]

사업명	유지 관리비	기능점수	개발단가	개발금액	유지관리 요율
주민등록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1,093백만원	9,231FP	605,784원	11,245,151,632원	9.7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16백만원	163FP	605,784원	174,546,973원	9.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개발SW 유지관리	70백만원	575FP	605,784원	714,718,943원	9.85%
주민등록 데이터 개방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28백만원	220FP	605,784원	235,584,872원	11.9%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36백만원	526FP	605,784원	774,826,825원	4.65%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같이 유지관리 요율이 과도하게 낮은 경우 SW 유지관리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점검·보수 및 장애 대응이 제한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편의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유지관리 요율을 유사 시스템 및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와 비교·검토하여 적정 수준으로 재산정하고, 유지관리비 산정의 합리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정부 재정운용 여건 및 모바일 주

민등록증 발급 추이 등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향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활성화 정도를 고려하여 개발SW 유지관리 요율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을 고려한 SW 유지관리비 대가체계의 실효성 제고 필요

□ 행정안전부는 '23년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를 계기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대책을 발표('24.1.31.)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체계를 개선하여 사업품질을 높이고, 전산망 장애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음.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3. 디지털 행정 체질 개선으로 안정성 제고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체계를 개선**해 사업의 품질을 높인다.

○ 우수 개발자의 참여와 품질 제고를 위해 임금·물가상승률, 산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기준 상향**을 추진하는 한편,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유지관리 요율의 차등 적용기준**, 클라우드·인공지능 등 신기술 과업의 대가 산정기준, 과업변경 심의 가이드라인 등도 마련하여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

※ 자료: 행정안전부

□ 이는 기존 공공정보화사업의 대가체계가 저예산으로 구성됨에 따라 우수기업의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

물가상승률과 산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기준을 상향하는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우수 개발자를 참여시키고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을 확보하려는 취지임.

□ 그런데,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주민등록정보센터 및 전산망 운영' 세부사업의 개발SW 유지관리 사업 유지관리비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단가는 2024년 및 2025년 약 55만원에서 2026년 약 6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유지관리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총 유지관리비((개발단가×기능점수×보정계수)×유지관리요율)는 매년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2024년~2026년 개발SW 유지관리비 현황]

구 분		2024	2025	2026(안)
주민등록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유지관리비	1,093백만원	1,093백만원	1,093백만원
	개발단가	553,114원	553,114원	605,784원
	개발금액	7,292,750,993원	9,386,667,224원	11,245,151,632원
	유지관리요율	15%	11.64%	9.7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유지관리비	24백만원	16백만원	16백만원
	개발단가	553,114원	553,114원	605,784원
	개발금액	160,888,773원	168,933,212원	174,546,973원
	유지관리요율	15%	9.5%	9.2%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개발SW 유지보수	유지관리비	70백만원	70백만원	70백만원
	개발단가	553,114원	553,114원	605,784원
	개발금액	469,387,798원	652,577,575원	714,718,943원
	유지관리요율	15%	10.75%	9.85%
주민등록 데이터 개방시스템 개발SW 유지보수	유지관리비	28백만원	28백만원	28백만원
	개발단가	553,114원	553,114원	605,784원
	개발금액	186,675,860원	215,101,902원	235,584,872원
	유지관리요율	15%	13%	11.9%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개발SW 유지관리	유지관리비	-	-	36백만원
	개발단가	-	-	605,784원
	개발금액	-	-	774,826,825원
	유지관리요율	-	-	4.65%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같이 SW사업의 대가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대책」의 취지와 달리, 유지관리비 규모는 이전과 유사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며, 우수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품질을 제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대책」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발SW 유지관리 요율 및 개발단가 등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여 유지관리비 예산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1등급 핵심 정보시스템인 주민등록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향후 적정 수준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라. 시스템 SW 예산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 편성 필요성

□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 운영 사업은 현재 임시 라이센스로 활용 중인 모니터링SW 2종을 구매하여 상시관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초동대응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6,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음.

□ 해당 예산은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에 따라 모니터링SW를 도입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에 대한 24시간 상시관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DPM[79] 16식과 SYSMON[80] 12식 도입에 각각 5,600만원 및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2026년 도입예정 모니터링SW 현황]

<table>
<tr><th>제품명</th><th>도입비(원)</th><th>수량(식)</th><th>소요예산(원)</th><th>비 고</th></tr>
<tr><td>DPM</td><td>3,500,000</td><td>16</td><td>56,000,000</td><td>'25년 임시 라이선스 사용 중
※ CPU 2Core당 1식으로 총 16식 필요
(CPU 32Core ÷ 2Core(1식) = 16식)
<table><tr><th>구분</th><th>CPU</th></tr><tr><td>주민증 DB 1, 2</td><td>16Core</td></tr><tr><td>안면인식 1, 2</td><td>16Core</td></tr><tr><td>합 계</td><td>32Core</td></tr></table></td></tr>
<tr><td>SYSMON</td><td>1,000,000</td><td>12</td><td>12,000,000</td><td>'25년 임시 라이선스 사용 중
※ 라이선스 설치 대상 서버 목록
<table><tr><th>구분</th><th>수량</th></tr><tr><td>WEB1,2</td><td>2식</td></tr><tr><td>안면인식 1,2</td><td>2식</td></tr><tr><td>개인정보이력1,2</td><td>2식</td></tr><tr><td>DB암호화 1,2</td><td>2식</td></tr><tr><td>중 스테이징 WEB</td><td>1식</td></tr><tr><td>중 스테이징 WAS</td><td>1식</td></tr><tr><td>중 스테이징 DB</td><td>1식</td></tr><tr><td>WAS 모니터링 서버</td><td>1식</td></tr><tr><td>합계</td><td>12식</td></tr></table></td></tr>
</table>

※ 자료: 행정안전부

79) DPM(Data Performance Management) : 데이터베이스 성능 및 장애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80) SYSMON(System Monitor) : 단일 서버에 대한 장애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 그러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전된 정보시스템의 신규 구축과 관련된 예산 중 HW 및 시스템 SW[81] 구입 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중앙관서와 협의한 후 자체 예산안에 계상하고, 기타 SW구입 등의 예산은 개별 중앙관서 예산안에 계상하여야 함.

다만, 예외적으로 ①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인 정보화사업과 ②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중앙관서가 HW구축 및 AP개발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과 중앙관서장이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에서 예산을 요구할 수 있음.

□ 이는 개별 정부부처에서 사용할 전산장비를 부처가 각각 구매하지 않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일괄구매한 후 정보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도입·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려는 취지임.

81) 시스템 SW : DBMS, Web서버, WAS, 서버보안, DB 보안, DB 접근제어, DB 모니터링, 백업 SW, 관제 SW, WAS 모니터링, HA용 SW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자산 관리지침」

[별표 2] 정보자산 분류기준

1) 정보자산 분류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고
소프트웨어	시스템S/W	관제	SMS	
			NMS	
			nTEMS	
			ESM	
			APM	
			DPM	
			nSIMS	

□ 이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스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이전되어 있으며, 개별 중앙관서가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스템 SW인 DPM, SYSMON의 도입예산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통합하여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 예산 요구 절차에 따를 경우, 모니터링 SW의 도입이 2026년 하반기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어, 신속히 SW를 도입하기 위해 직접 도입예산을 요구하였다고 설명함.

□ 이러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 예산 요구 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개별 중앙관서가 직접 예산을 요구하는 방식이 반복될 경우,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과 도입·운영 비용 절감이라는 통합 예산 편성의 본래 취지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통합 예산 요구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점검하고, 개별 기관의 직접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예산 편성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균형발전지원국】

10. 지역발전활성화(1231-303)

○ 행정안전부는 상시형 불법촬영 시스템 도입의 효과성과 시급성,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제품 단가를 적절히 수정하는 등 상시형 불법촬영 시스템 관련 예산액을 조정하여 양방향 비상벨 설치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빈도, 범죄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의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시설 등에도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의서 확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비상벨 설치 지원 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참여 여부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량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보조사업 추진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가. 개 요

□ ‘지역발전활성화’ 사업은 ‘보조요원인건비’,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조성’, ‘온천산업활성화’, ‘지역활력제고’, ‘고향사랑기부제활동지원’, ‘인구감소지역 기업협업 활성화 지원’, ‘균형발전 사업추진’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53억 2,800만원 대비 54억 4,900만원이 증액된 107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발전활성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역발전활성화	9,545	5,328	10,777	5,449	102.3
보조요원인건비	72	88	96	8	9.1
안전한 주민생활환경 조성	717	760	6,965	6,205	816.4
- 안전한 화장실 조성	110	110	6,373	6,263	5,694
- 옥외광고 규제개선 및 안전관리	38	38	33	△5	△13.2
-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569	612	559	△53	△8.7
온천산업활성화	4,825	325	324	△1	△0.3
지역활력제고	1,824	3,155	2,612	△543	△17.2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지원	750	750	200	△550	△73.3
인구감소지역 기업이전 활성화 지원	357	250	-	△250	순감
부처지역사업 연계지원	1,000	-	-	-	-
인구감소지역 기업협업 활성화 지원	-	-	430	430	순증
균형발전 사업추진	-	-	150	150	순증

나.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 관련 예산 재검토 필요

□ ‘안전한 화장실 조성’ 사업은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통해 국민의 화장실 이용 편의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1억 1,000만원 대비 62억 6,300만원이 증액된 63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안전한 화장실’ 사업의 세부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안전한 화장실 조성	110	6,373	6,263	5,694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공모·시상 등 행사	87.5	67	△20.5	△23.4
전국 화장실 시설 안전·위생 실태조사 및 분석	10	10	-	-
화장실 이용문화 개선 캠페인	12.5	21.5	9	72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 설치지원	-	6,275	6,275	순증

□ 이 중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 설치지원’ 사업은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및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공중화장실 2,500개소에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개소당 250만원, 국비 지원율 50%)을 설치하고 3,500개소에는 비상벨(개소당

180만원, 국비 50%)을 설치할 수 있도록 62억 7,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현행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양방형 비상벨[82] 등을 설치해야 하고, 국가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음.[83]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 발생 현황]

(단위: 건)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범죄	3,852	3,154	3,528	2,890	2,584
불법촬영	523	419	518	520	504

※ 자료: 경찰청

□ 그런데 비상벨 설치 의무가 있는 69,385개소 중 실제 비상벨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37,874개소(54.6%)에 불과하고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전체 범죄 수는 감소하였으나 불법 촬영 범죄 비중

82) 비상 상황 발생 시 시설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에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유형의 비상벨을 의미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조례로 정한다.

8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관리 또는 개선 비용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할 때에는 그 개선 비용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은 오히려 증가하는 등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84]

□ 다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음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사업별 예산액과 관련하여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은 공중화장실 내 범죄 예방 및 대응에 효과가 제한적이고 도입의 시급성·필요성이 낮으며, 실제 1개소 당 설치 단가는 편성된 단가에 비하여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예산액 일부를 비상벨 설치지원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은 불법촬영 카메라를 상시로 탐지하여 관련 정보를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알리고 영상 무선 송출을 원격으로 차단하거나 경고 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불법촬영의 적발 가능성을 높여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중화장실에 대한 일회성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해당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도입하고 있음.

□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제품은 크게 '통신 데이터 감지형', '열원 감지형', '트래픽 감지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디바이스 검색에 기반한 '통신 데이터 감지형'은 통신 기능이 없는 기록형 카메라나 스마트폰 등 이동형 기기를 활용한 불법촬영을 탐지하지 못하고, 온도감지센서를 활용한 '열원 감지형'은 장애물 통과가 안 되

84)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중

며 탐지거리가 2m 이내로 짧고, ‘트래픽 감지형’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가격이 2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각각 한계가 있음.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개요]

○ **(개념)** 불법촬영 카메라를 상시로 탐지하고, 관리자에게 알림 및 영상 송출을 원격으로 차단하거나 칸막이 상단 촬영 행위 감지시 경고 방송 등을 할 수 있는 시스템

○ **(주요 제품)**

제조사	이○○○	지○	넷○○
희망가격 85)	1,342,000	1,210,000	2,893,000
주요 기능	불법촬영 상시감지 (통신 데이터 감지)	불법촬영 상시감지 (열원 감지)	불법촬영 상시감지 (트래픽 감지)
	관계자 알림	관계자 알림	관계자 알림
	영상 송출 원격 차단	칸막이 상단 촬영 감지 (적외선 감지) 및 경고방송	카메라 위치 추적

※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제품 설명을 토대로 재구성

□ 또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이 실시간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등 예방적 환경을 조성할 수는 있으나, 불법촬영 이외의 다른 유형의 범죄에 대하여는 예방·적발·대응의 효과는 없고 해당 시스템을 설치하여 불법촬영을 실제로 적발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임.

85) 혁신장터 운영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36호)에 따른 견적가격(VAT포함)이며, 혁신장터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제2020-37호) 제16조 2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 1항 1호에서 규정하는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이 아님.

□ 반면, 양방향 비상벨의 경우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외에 각종 범죄 발생시 경찰관서에 즉각적으로 연락이 가도록 하여 범죄 예방·적발·대응 측면에서 더 높은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과 달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를 직접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전 수요조사 결과 상시형 불법촬영 시스템에 비하여 양방향 비상벨에 대한 수요가 약 1.7배 더 많음.

[지방자치단체 사전 수요조사 결과]

(단위: 개소)

구분	불법촬영 상시탐지 시스템 구축		비상벨 설치	
	사업량	신청량	사업량	신청량
합 계	2,500	1,765	3,500	3,033
서울	252	128	251	128
부산	56	59	8	41
대구	115	40	118	38
인천	97	104	66	11
광주	27	114	67	64
대전	96	3	18	20
울산	46	62	22	203
세종	39	0	46	55
경기	653	431	829	571
강원	154	44	273	153
충북	97	21	279	225
충남	125	435	202	543
전북	125	115	298	201
전남	169	117	324	360
경북	177	25	386	119
경남	238	57	290	301
제주	34	10	23	0

※ 자료: 행정안전부

□ 더 나아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된 주요 제품의 희망가격은 ‘통신 데이터 감지형’의 경우 개당 134만원, ‘열원 감지형’의 경우 개당 121만원, ‘트래픽 감지형’의 경우 개당 289만원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공중화장실 1개소당 1개의 시스템이 설치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개소당 실제 소요액 평균은 250만원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사용의 관점에서 예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상시형 불법촬영 시스템 도입의 효과성과 시급성,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제품 단가를 적절히 수정하는 등 상시형 불법촬영 시스템 관련 예산액을 조정하여 양방향 비상벨 설치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둘째,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 설치 사업 추진시 사업의 효과성과 집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출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의 경우 관광·체육시설 및 상업시설 등 이용객이 많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위치한 공중화장실등에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나, 터미널이나 역, 공항 등 교통시설도 이용객이 많고 범죄 가능성이 높은 시설에 해당하므로 사업 대상 확대 필요성이 있음.

□ 또한 관광·체육시설 및 상업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경우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이나 법인 등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의 협조가 요구되어 예산집행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시 민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경우 비상벨 설치를 지원받은 공중화장실등이 개방형 화장실로 이용될 수 있도록 동의서를 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86]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빈도, 범죄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 시스템의 지원 사업의 대상을 확대하여 교통시설 등에도 설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의서 확보 절차를 마련하는 등 사업 계획을 철저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비상벨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특별교부세 예산 사업과의 중복 가능성 및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사업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86) 제21대국회 제388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1.06.08.)
- 공중화장실 비상벨 등 설치에 관한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 당시 논의

> 행정안전부차관 : 공공기관이 개방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의무를 두고요. 민간이 개방한 화장실에는 의무로 안 두고 민간기 벨을 설치할 때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하는 것이 좋지 않나 … (중략) … 지금 민간부문 개방은 저희들이 겨우겨우 설득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부담을 더하게 되면 개방이 좀 더 늦춰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민간부문까지 다 하면 지방자치단체 재원 부담도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알아서 반드시 부담해야 될 것 아니면 임의사항을 두고 하게 되면 지원해 줄 것 그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측면이나 민간개방 화장실의 개방 권장 측면이나 유리할 것 같습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2021년 개정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양방향 비상벨 등을 설치할 의무가 있음.

□ 이에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자체적인 예산 사업을 통해 양방향 비상벨 등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정안전부가 비상벨 설치에 관한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업과 일부 중복의 우려가 있음.

[예시 : 서울시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확충 사업]

□ 서울특별시 공중화장실 안전시설 확충 사업
○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지원
- 사업 내용 : 공중화장실 출입구 주변 CCTV 및 비상벨 설치 지원
- 사업 총액 : 1억 2,855만원
- 지원 금액 : 자치구 별 설치 비용의 50%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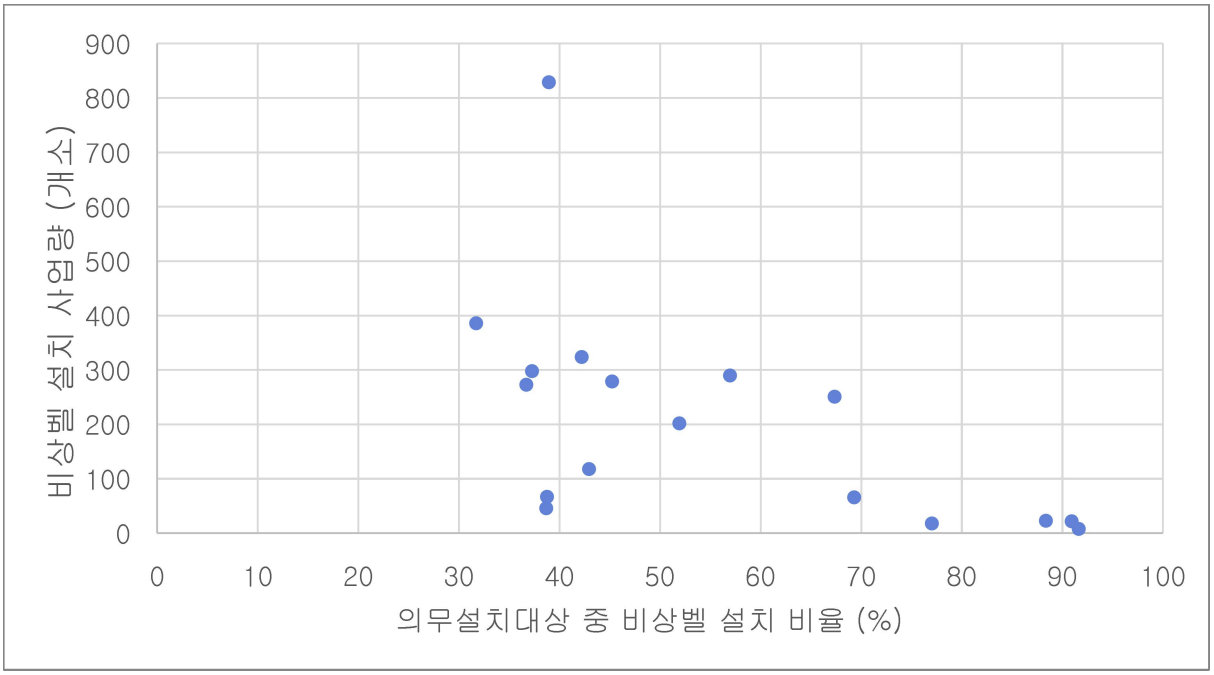
○ 민간개방화장실 안전관리시설 설치지원
- 사업 내용 : 민간건물 공용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 지원 등
- 사업 총액 : 2억원
- 지원 금액 : 출입구 분리 최대 1,000만원, 층간 분리 최대 200만원, CCTV 및 비상벨 각 250만원

※ 자료: 서울특별시

□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9년부터 '국민안심 (그린) 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와 비상벨 설치 등 노후화장실의 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교부하여 공중화장실 안전관리시설 확충을 지원해왔음.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비상벨 설치 사업량을 비상벨 설치 비율에 반비례하도록 설계하였는바 그동안 중점사업으로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와 이를 소홀히 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비상벨 설치 비율과 사업량 대비 신청량]



※ 자료: 행정안전부

□ 다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광역보조사업이나 특별교부세 사업에도 불구하고 예산부담으로 인하여 관련 사업에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고, 화장실 만족도 조사 결과 불법촬영범죄 불안도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87]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이 공중화장실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상황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 확보라는 국가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참여 여부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조율을 차등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별

87) 불법촬영범죄 불안도 : ('22년) 42.4% → ('23년) 53% → ('24년) 67.2%
(※ 자료 : 행정안전부 공중화장실 만족도 조사)

사업량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보조사업 추진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지 않도록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어 보임.

11.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1261-300)

○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의 조성 주기를 2년으로 바꾸는 등 연차별 출연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1조원이 편성되었음.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1,000,000	1,000,000	1,000,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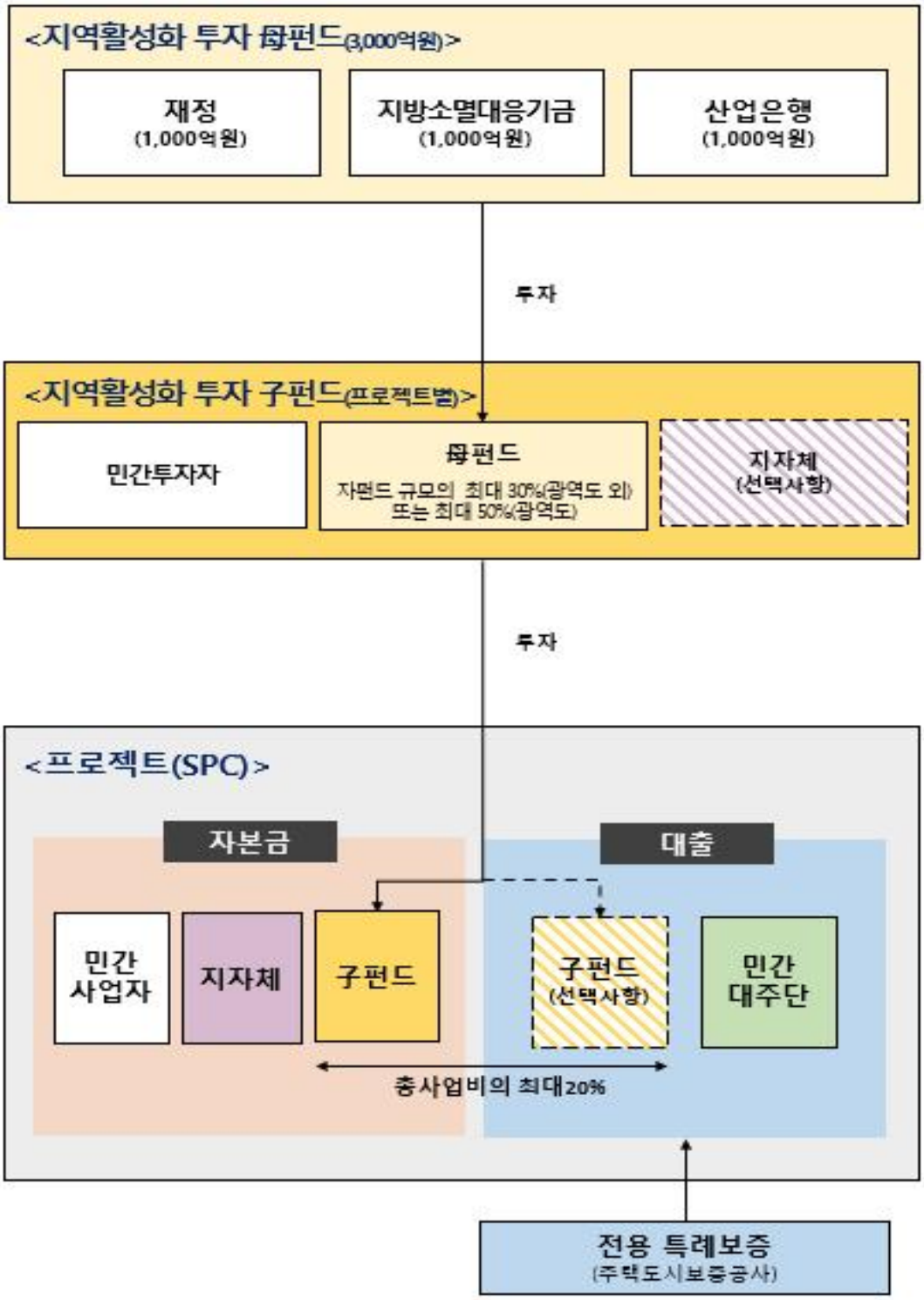
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연차별 출연 계획 재점검 필요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란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역량과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지역 투자 방식으로,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매년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1,000억원을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에 출자하여 2028년까지 5년간 총 5,000억원을 출자할 예정임.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 자본을 활용하기 위하여 모펀드-자펀드(Fund of Funds) 구조를 활용함. 구체적으로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매년 1,000억원을 출자하여 매년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모펀드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금융기관과 프로젝트별로 자(子)펀드를 결성하여 지역개발 프로젝트 시행법인(SPC)과 함께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

□ 이때 프로젝트별로 모펀드는 자펀드 규모의 최대 30%(광역도 외)~50%(광역도)를 출자하고, 자펀드는 프로젝트 총사업비의 최대 20%까지 출자하므로 모펀드는 총사업비의 최대 10% 출자할 수 있어, 3,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최대 3조원 규모의 지역 투자 유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자 구조]



※ 자료: 관계부처 합동,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 1년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2025.2.5.를 토대로 일부 수정

□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는 결성되어 있으나, 지역개발 프로젝트 조성이 지속적으로 지체되어 자펀드 결성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임.

□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자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운용사에게 프로젝트 펀드 출자 심사를 신청하여 프로젝트 투자 승인을 받고, 투자승인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자펀드를 결성하되 3개월씩 총 2회 연장하여 최대 10개월 이내에 자펀드를 결성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의 투자승인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SPC 설립,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각종 인·허가 취득을 거친 뒤 비로소 자펀드 결성이 이루어지며, 자펀드가 결성되어야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에 투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자금이 비로소 활용될 수 있음.

즉,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 출자가 실제 프로젝트 진행으로 이어지기 위하여는 모펀드 위탁운용사의 선정뿐만 아니라 지역 프로젝트 투자 선정,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자펀드 결성 등 절차를 거쳐야 함.

□ 그런데 2025년 10월 말 기준으로, 2024년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로 추진하는 5개 프로젝트 중 3개 프로젝트만이 자펀드가 결성된 상황이고 1개 프로젝트는 자펀드 결성 중이며 1개 프로젝트는 재심사 진행 중에 있음.

[2024년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자펀드 결성 현황]

프로젝트	자펀드 선정일	자펀드 위탁운용사 최종선정일	자펀드 결성시한 및 결성일
충북 단양 복합관광단지	24.2.16.	24.11.27.	25.9.29.
			25.9.26.
경북 구미 1국가산단 구조고도화	24.2.22.	25.1.24.	25.8.25.
			25.8.21.
전남 여수 묘도 LNG터미널	24.8.29.	24.9.2.	25.4.2.
			25.2.28.
경북 경주 강동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24.11.26.	24.11.27.	25.9.29.
			(투자조건 재심사 중)
충남 서산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1단계	24.12.24.	25.10.2.	26.2.2.
			(결성 중)

※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2025년 올해에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중 1,000억원을 출자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를 조성하여 지난 4월 한국성장금융을 모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하였으나 10월 말까지도 자펀드 위탁운용사 및 신규 프로젝트가 선정되지 못하여 2025년도에는 자펀드 결성 실적이 전무한 상황임.

□ 이는 지역활성화 투자성 자펀드 조성시 기조성된 모펀드로부터의 출자를 우선하고 있어 2024년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가 소진되지 않는 한 2025년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로부터 출자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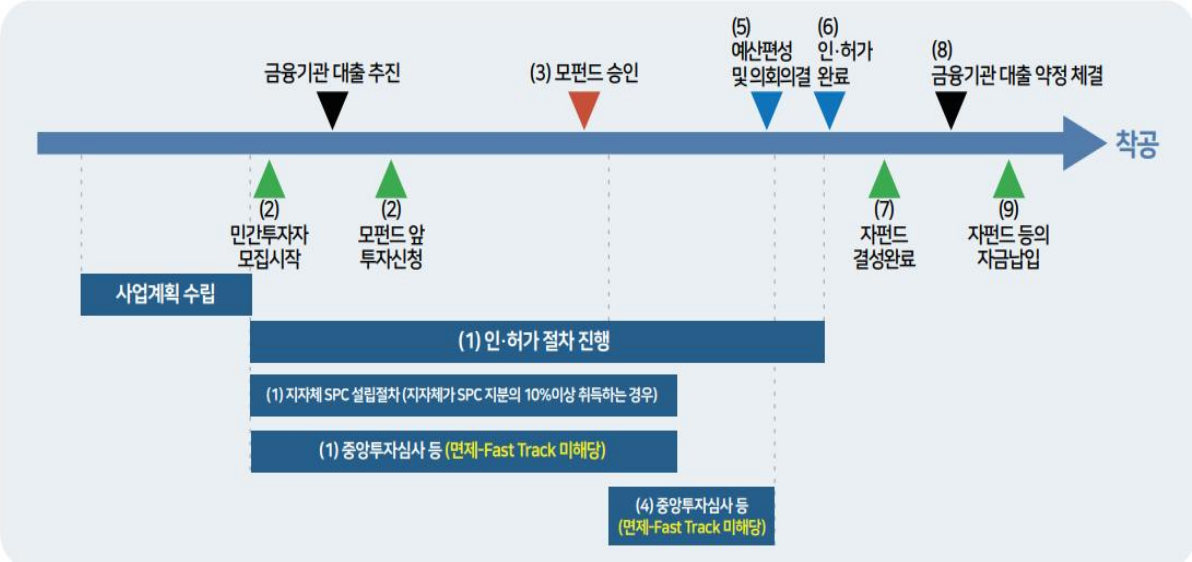
□ 한편 지난 11월 4일, 모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2개 사업(모펀드 투자액 합계 792억원 규모)을 승인하여 2025년도 모펀드 소진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는데, 2024년 조성된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는 같은 해 2월 자펀드를 선정했음을 고려할 때 2025년의 경우 자펀드 선정이 지연된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대상 수요조사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르면 2026년 1분기까지 모펀드 1,240억원을 추가 소진하고, 2026년 2~4분기에 지방자치단체 추진 희망 프로젝트(총 18개 사업, 모펀드 투자액 합계 6,877억원)를 추진하는 경우 2026년 내 2025년 조성 모펀드를 전액 소진할 수 있다는 입장임.

□ 따라서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 매입기간[88]이 2년이고 모펀드 소진에 약 2년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모펀드의 조성 주기를 2년으로 바꾸는 등 연차별 출연 계획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88) 자펀드를 선정하고 확약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함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업무흐름도 (예)]



※ 자료: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종합안내」, 2024.6.

12.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1938-301)

○ 행정안전부는 청년 인구의 실질적인 지방 유입·체류를 독려할 수 있도록 개별 청년마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 업체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 청년마을과 관련된 전 부분의 성과를 평가하여 환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마을 신규 조성 및 지원 규모를 계획하고 매년 일정한 수의 청년마을이 신규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 해결’,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 거점 활성화’ 등 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91억 3,500만원 대비 27억 7,900만원이 증액된 119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9,212	9,135	11,914	2,999	33.6
청년 유입 및 체류 지원	7,513	7,515	6,764	△751	10.0
데이터 기반 지역문제해결 사업	1,386	1,400	1,000	△400	28.6
지역주도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확산	-	-	2,500	2,500	순증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 성장거점 활성화	-	-	1,650	1,650	순증
산불재난지역대상 지역청년공동체 활성화	-	220	-	△220	순감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4,199	-	-	-	-
과학기술 기반 현안해결	1,145	-	-	-	-
빈집정비 등 경관 개선사업 지원운영	4,969	-	-	-	-

나.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 관리 강화 필요

□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은 청년마을을 ‘조성’하고 청년마을에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51개의 청년마을이 선정되었음.

□ 청년마을 ‘조성’ 사업은 2018년 세부사업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의 내역사업 ‘과제지정형 프로젝트’로서 지방 원도심의 유휴상가를 활용하여 청년을 위한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괜찮아 마을’ 프로젝트로 시작하였음.

□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매년 1개소씩 조성되다가 2021년에는 12개소로 확대 조성되었고, 2022년부터는 다년도 지원사업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단년도 지원에서 다년도(3년)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2022년~2023년, 2025년에 매년 12곳이 추가 선정되었음.[89]

89) 행정안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
(10) 청년마을 조성 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년도 사업체계 필요(제도개선)
○ **[지적사항]**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사업의 청년마을 조성사업은 사업 특성상 단년도가 아닌 다년도 사업체계에서 그 성과가 나타나는 사업이나, 현재 사업의 진행방식은 단년도의 지역공모 및 용역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들은 약 7~8개월의 계획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고, 정부는 단년도 시점으로 청년 정착률 등의 성과를 측정하는 한계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행정안전부는 실질적 사업기간 보장, 성과공유 결과 환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점검을 위해 향후 최소 3년 이상의 다년도 관점에서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체계를 보완할 것

[연도별 청년마을 조성 현황]

연도	세부사업 - 세사업 명	마을당 지원액	신규 선정마을
2018년 2018.8.28~12. 25. (약 5개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과제지정형 프로젝트	7억원	1개소 전남 목포 '괜찮아 마을'
2019년 2019.6.10.~1231. (약 7개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 국민참여 협업 프로젝트	8억원	1개소 충남 서천 '삶 기술학교'
2020년 2020. 4. 28. ~12. 31. (약 8개월)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 청년자립 및 활력지원 ※2022~ 다년도지원(3년)	6억원	1개소 경북 문경 '달빛탐사대'
2021년 2021.7.13.~12.31. (약 6개월)		5억원	12개소
2022년		2억원	12개소
2023년		2억원	12개소
2024년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청년주도 균형발전타운 조성	2억원	- (2022~2023년 지정 24개소 지원, 신규 지정 없음)
2025년		2억원	12개소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은 청년마을 조성을 통하여 청년 일자리 부족이나 단절·고립 등 청년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인구의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으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예산배분의 효율성과 예산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지방 정착이나 체류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나 정량적인 성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해당 사업이 청년 인구의 지방 유입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성과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년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에 따르면 자연마을은 행정리 안에 위치하여 고유의 마을 이름이 있고 다른 마을과의 경계가 구분되는 마을로, 자연마을별 가구 수는 평균 6.0~81.9호 수준임.[90)]

□ 반면, 청년마을의 경우 최근 3년간 청년마을당 이주정착 인원은 9.61명 및 월평균 참여 인원은 11.47명으로 해당 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마을’을 조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최근 3년간 청년마을당 이주정착 인원 및 월평균 참여 인원]

구분	이주정착 인원	월평균 참여 인원
2022년	9.17명	5.00명
2023년	9.58명	10.06명
2024년	10.08명	19.36명
평균	**9.61명**	**11.47명**

※ 자료 :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0) 행정리 내에서 가장 큰 마을을 자연마을1(본마을)이라 하고 자연마을 숫자가 커질수록 자연마을의 규모가 작아짐

구분	사례수	전체 가구수	본마을	자연마을 2	자연마을 3	자연마을 4	자연마을 5	자연마을 6	자연마을 7
전체	(103)	106.7	81.9	47.1	51.6	23.8	19.7	12.3	6.0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청년마을 사업이 행정구역상 행정리 안에 위치한 실제 ‘마을’을 신규로 건설한다기보다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멸 위기에 봉착한 마을에 청년들이 유입·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4년까지 39개의 청년마을 조성을 통해 880명의 지역 이주·정착을 유도하고 10,680명의 참여 인원이 지역사회의 관계인구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입장임.

□ 한편, 국비 지원이 종료되는 4년차 이후에 충남 서천 삶기술학교와 같이 폐업하여 활동을 종료하거나 경북 문경 달빛탐사대와 같이 정착사례가 없게 되는 등 국비 지원 없이 청년마을이 지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 이는 청년마을이 매년 일정한 성과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청년마을로 일단 선정되는 경우 3년간 매년 2억원 씩 총 6억원이 지원되고, 지원 종료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원이 부족하므로 청년마을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도록 할 유인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보임.

□ 참고로, 마을기업육성사업의 경우 1차 신규지정을 받은 마을기업이 2차 재지정 및 3차 고도화 마을기업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1차 지정과 마찬가지로 공모 심사를 통과해야 하고 우수 마을기업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을 성과가 부진한 마을기업에게는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거 정보화마을 사업의 경우에는 운영평가를 통해 정보화마을을 5가지 등급으로 구분하여 매출이 부진하거나 사업지속 노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해제를 하거나 컨설팅을 통해 매출액 증가를 유도하는 등 성과 평가 및 환류를 위한 기본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음.

□ 특히 해당 사업은 청년마을에 직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보조사업으로서의 실질을 갖지만 일반용역사업으로 편성되고 있어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에서 제외되어 청년마을에 대한 지속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다년도 사업이나 1년 단기 용역사업으로 진행되어 청년마을 중간관리기관의 성격을 갖는 용역업체에 대하여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없다는 문제도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청년 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 외에도 2022년부터 3년간 특별교부세로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공유 숙소·오피스, 생활편의시설 등이 갖춰진 주거공간을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므로, 실제 준공·입주가 이루어진 이후 해당 사업이 청년 유입에 미치는 성과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청년 인구의 실질적인 지방 유입·체류를 독려할 수 있도록 개별 청년마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 업체 및 특별교부세 사업 등 청년마을과 관련된 전 부분의 성과를 평가하여 환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에 신규 청년마을로 1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나 청년마을 조성 사업의 지속성을 위하여는 연도별 청년

마을 지정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사업은 2022년에 다년도 지원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2022~2023년 2년간 청년마을 12개소를 신규로 지정하였는데, 2024년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의 예산액이 편성되어 2022~2023년에 지정된 24개소에 대하여만 지원이 이루어졌고 신규 청년마을을 지정할 수 없었음.

□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청년마을 지원 대상은 22개소로, 2027년 이후에 예산 증액 없이 2025~2026년 신규 지정된 청년마을에 대하여 지원이 지속되는 경우 2027년에는 2024년과 마찬가지로 신규 청년마을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는 청년마을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년도예산주의의 특성상 미래 예산 편성 계획을 미리 알기 어렵고, 다년도 사업은 지원 대상이 연차별로 누적되어 신규 청년마을 조성을 위하여 기 조성된 청년마을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임.

[청년마을 신규 조성 및 지원 건수]

(단위 : 개소)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2년 신규	12	12	12				
23년 신규		12	12	12			
24년 신규			-	-	-		
25년 신규				12	12	12	
26년 신규					10	10	10
27년 신규						a	a
28년 신규							b
연간 지원 청년마을	12	24	24	24	22	22+a	10+a+b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청년마을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마을 신규 조성 및 지원 규모를 계획하고 매년 일정한 수의 청년마을이 신규로 조성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3.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2·3차 지정 비중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1~3차 지정단계별 지정 건수를 조정하고 마을기업 2·3차 지정 심사를 토대로 마을기업 관련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을 활용하여 마을기업의 특성과 사업추진 구조를 고려하여 마케팅 지원 외에 마을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가. 개 요

□ '마을기업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16억 7,500만원 대비 35억 7,500만원이 증액된 5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마을기업육성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마을기업육성사업	2,695	1,675	5,250	3,575	213.4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	200	600	400	200
마을기업 육성사업	2695	1475	4650	3175	215.2

나. 마을기업 지정단계 별 지정 건수 조정 필요

□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마을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문제를 자발적으로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0년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추진된 이후 2011년부터 ‘마을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 그동안 해당 사업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근거하여 운영하였으나 올해 8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에 있음.

□ 마을기업에 대한 지정·지원은 1차~3차 지정에 따라 총 1억원을 지원하고 우수사례와 연합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사업비를 미흡사례에 대하여는 컨설팅을 지원하는 체계임.

[마을기업 지정·지원 체계]

예비 마을기업 (1천만원)	▶	1~3차 지정		▶	우수사례 확산
		1차	신규 마을기업(5천만원)		우수 마을기업 (최대 7천만원)
		2차	재지정 마을기업(3천만원)		모두애(愛) 마을기업 (최대 1억원)
		3차	고도화 마을기업(2천만원)		
		↕			
		재도약 지원	재도약 마을기업(1천만원, 컨설팅)		
		연합체 지원	기초지자체 내 3개 이상 연합 마을기업(최대 3억원)		

※ 자료 : 행정안전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이 때 1차 지정은 신규 마을기업을 발굴한다는 점에서 마을기업의 양적 성장을 유도하고, 2·3차 지정과 우수사례 및 재도약, 연합체 지원은 기존 마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마을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은 신규 마을기업을 130개소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나, 2·3차 지정 대상으로는 각각 20개소와 16개소만을 편성하여 기존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이 충분하지 않음.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을기업 지정 현황]

(단위: 건수)

구분	합계	1차	2차	3차
2021년	241	109	77	55
	(100%)	(45.2%)	(32.0%)	(22.8%)
2022년	238	113	75	50
	(100%)	(47.5%)	(31.5%)	(21.0%)
2023년	201	88	64	49
	(100%)	(43.8%)	(31.8%)	(24.4%)
2024년	116	-	70	46
	(100%)	(0%)	(60.3%)	(39.7%)
2025년	113	57	-	56
	(100%)	(50.4%)	(0%)	(49.6%)
2026년(안)	166	130	20	16
	(100%)	(78.3%)	(12.0%)	(9.6%)

※ 자료 : 행정안전부

□ 최근 5년간 연도별 마을기업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마을기업 1~3차 지정단계별 비율은 1차 50% 내외, 2차 30% 내외, 3차 20% 내외 수준으로 전체 지정 건수 중 절반 이상을 2~3차 지정에 배정해 왔음.

□ 반면 2026년도 예산안에는 마을기업 전체 지정 건수 중 1차 지정에 78%에 달하는 130개소를 편성하여 과거에 비하여 신규 지정 건수가 과도하여 한 측면이 있음.

□ 또한 그동안 마을기업의 숫자 증가 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의 매출 증대나 일자리 창출 등 마을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차등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91]

91) 2023 회계연도 결산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요지	
(2) 마을기업 자립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관련 사업명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마을기업육성사업(3131-301)
	지적사항	○ 2030년까지 3,500개의 마을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하에 정부는 2023년 말 기준, 3,500개 대비 2,386개(68%)의 마을기업을 지정했음 ○ 다만, 지정취소 기업이 2023년 말 기준 586개에 달해 전체 5곳 중 1곳이 사실상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매출액 0원인 기업의 수도 2018년 199곳, 2021년 449곳, 2023년 526곳에 달하는 등 연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당초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득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한다는 목표와 달리 매출과 고용 없이 간판만 걸고 있거나 아예 폐업을 선택하는 마을기업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함
	시정요구 사항	○ 행정안전부는 운영 지표가 부실한 마을기업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개선방안과 이와 연계한 차등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것

제22대국회 제429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2025.09.01.)

마을기업 2·3차 지정을 받기 위하여는 신규 지정과 같이 지정요건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지정 요건에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사업계획, 일자리 창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3차 지정 제도는 마을기업의 성과를 관리하는 효과가 있음.

[마을기업 1~3차 지정 심사 기준별 배점]

(단위: 점)

구분	1차	2차	3차
공동체성	30	15	10
공공성	20	25	30
지역성	20	15	10
기업성	20	25	30
사업계획의 적정성	10	10	10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	10	10
가점	5	3	3

※ 자료: 행정안전부,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2·3차 지정 비중이 확대되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1~3차 지정단계별 지정 건수를 조정하고 마을기업 2·3차 지정 심사를 토대로 마을기업 관련 성과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다. 마을기업 지원 방안 다양화 노력 필요

□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마을기업에 대한 역량개발, 경영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여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마을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판로지원’, ‘워크숍 등’, ‘연구용역’, ‘DB 운영’, ‘현장방문’을 위하여 2025년 예산액 2억원에 비하여 200% 증가한 6억원이 편성되었음.

□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예정인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교육훈련’,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92)]

---

9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6.8.15.] [법률 제21017호, 2025. 8. 14., 제정]
제12조(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에 대한 전문적 자문 및 정보 제공
2. 마을기업 대표자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3. 시설비·부지구입비 등의 지원·융자
4.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5. 그 밖에 마을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설립·운영하는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청년의 구성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마을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이는 마을기업에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마을기업이 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는데 도움을 주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예산액이 3배 증가하였으나 지원 방식은 판로개척을 통한 '마케팅' 지원에만 머무르고 있어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하고자 하는 법률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함.

□ 참고로, 2026년도 예산안 중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은 사회적기업에 판로지원 외에 창업, 성장(공간지원, 교육, 멘토링), 자금(크라우드펀딩, 투자유치 IR대회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지자체, 사회적기업, 민간지원기관 등 협력사업), 교육(업무 담당자 교육,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 설립)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다만,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에 관한 사업은 재정분권 2단계 추진에 따라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어 보조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가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을 통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방식이 제한되어 있는 측면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마을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므로, 마을기업의 특성과 사업추진 구조를 고려하여 마케팅 지원 외에 마을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겠음.

[2026년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주요 예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액	내 용
사회적기업 육성[93]	창업지원	30,000	사업화 자금, 창업프로그램 제공
	판로지원	4,963	맞춤형 판로개척 지원, 공공구매 활성화, 차세대 판로플랫폼 운영
	성장지원	14,171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유망기업 스텝업 지원, 사회적 가치 평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인식개선	504	사회적기업 브랜드 강화, 주간행사, 국제협력, 모니터링 및 조사협력
	자금지원	800	투자유치 강화, 크라우드 펀딩
사회적기업 육성(지특)[94]	인건비 창출사업	32,100	인건비 지원

※ 자료: 고용노동부, 2026년도 예산안

93) 일반회계 사업
9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14.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자율)(1236-300), 섬 발전 협력 사업 추진(자율)(1241-300)

○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포괄보조 이관사업 보완조치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며, 지역자율계정으로 사업 집행시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자율)’ 사업은 서해 5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① 정주생활지원금, ② 해상운송비, ③ 노후주택개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보다 21억 6,700만원이 증액된 10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 사업은 열악한 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섬 지역에 정주를 유도하고 섬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과 ‘작은 섬 공도방지’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보다 29억 3,800만원이 증액된 115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 중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자율)’ 사업은 2022년까지 일반회계로 편성되다가 2023년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되었고, 2026년 예산안부터는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됨.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자율)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자율)	8,783	8,540	10,707	2,167	25.4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	8,958	8,643	11,581	2,938	34.0
섬 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5,808	5,808	7,542	1,734	29.9
작은 섬 공도 방지	3,150	2,835	4,039	1,204	42.5

나. 지역자율계정의 취지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 필요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는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에 부합하고 지역 연계 투자로 효율화가 가능한 사업을 수행하며,

①지역자율계정, ②지역지원계정, ③제주특별자치도계정, ④세종특별자치시계정 총 4개의 계정으로 구분됨.

□ 이 중 재정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고 지자체 자율성이 요구되는 사업은 ‘지역자율계정’으로, 권역간 협력 및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관리, 기능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을 ‘지역지원계정’으로 편성하고 있음.[95]

□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자율) 사업과 섬 발전 협력사업(자율)은 2026년 회계연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에서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역자율계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편성 절차 측면에서, 시·도지사는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및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95) 기획재정부, 「2026년도 국가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안 편성 지침」상 절차를 위반한 문제가 있음.

□ 시·도 자율편성사업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도별 지출한도 내에서 예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자체의 예산신청서 및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기초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그런데 시·도의 예산신청서 및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된 이후인 2025년 8월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를 현행 3조 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재정건전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 지출한도를 새로이 정하지 않은 채 시·도에서 요구하는 예산액 전부를 일괄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또한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은 포괄보조 사업 이관에 따른 과소투자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사업에 대한 별도한도 설정 및 사업별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이 작성된 이후에 지역자율계정 이관이 결정되어 보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음.

□ 예를 들어,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의 정주생활지원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선호하는 예산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1인당 지급액이 전년대비 최대 66.6% 증가하도록 편성되었음. 그

동안 정주생활지원금 지급액은 물가상승률과 정부재정 등을 고려하여 인상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특정 사업에의 쏠림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임.

[정주생활지원금 1인당 지급액]

연도		2011	2018	2022	2023	2024	2025	2026(안)
1인당 지급액	단기 거주자 (10년 미만)	5만원	5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2만원	20만원
	장기 거주자 (10년 이상)		10만원	12만원	15만원	16만원	18만원	
소비자물가 총지수 (2020=100)		89.9	99.1	107.7	111.6	114.2	-	-

※ 자료: 통계청 국가발전지표 – 소비자물가상승률

□ 이외에도 기획재정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시·도별 지출한도 배분방식을 공개할 뿐 지방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지출한도액이 얼마인지는 공개하고 있지 않아, 국회의 예산안 심의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출한도액이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또는 지출한도액을 적절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할 수 없어 예산안 편성의 투명성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임.

[시·도 지출한도 배분모형]

$$\log(y_i) = \beta_0 + \beta_1 \log(\text{인구}_i) + \beta_2 \log(\text{면적}_i) + \beta_3 \log(\text{지방소득세}_i)$$
$$+ \beta_4 \text{노령인구비율}_i + \beta_5 \text{재정력지수}_i + \epsilon_i$$

* 각 변수는 최근 3년 값 평균

※ 자료: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 **둘째**,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집행** 측면에서, 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계정 이관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자율계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편성사업으로서 포괄보조사업의 성격을 가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세부 내역을 자율적으로 기획·설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됨.

□ 이에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따라 '지역자율' 계정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정부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별도 조정 없이 검토의견만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반면, ‘지역지원’ 계정으로 분류된 사업의 경우 정부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으로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를 받아 부처에서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부처에서 그 집행실적을 관리함.

□ 그런데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자율)’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서해 5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섬 발전 협력사업(자율)’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하는 ‘사업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도록 함.

□ 예를 들어,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자율)’의 내역사업인 ‘섬 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및 ‘작은 섬 공도 방지’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연차별·지자체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임.

□ 또한 ‘서해 5도 종합발전 지원’ 사업의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사업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96]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하

---

96)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2조(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① 국가는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서해 5도에 일정한 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 대하여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이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정주생활지원금(이하 이 조에서 “정주생활지원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주소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출입국관리법」

더라도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없음.

□ 이는 ‘서해 5도 종합발전지원’ 사업이 서해 5도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북한의 군사도발 등에 노출된 서해 5도 주민에 대하여 국가가 특별히 지원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기 때문임.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해당 사업이 지역자율계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정주생활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으로 책정하여 이를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나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에 따라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에 대하여는 검토 중에 있고,

행정안전부는 정주생활지원금 예산이 모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

제3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체류지를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③ 정주생활지원금은 그 지급대상자별로 **매월 지급**한다. 다만, 정주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의 지급대상자인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적힌 세대주
2. 제1항제2호의 지급대상자인 경우: 배우자

④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의 **1인당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주생활지원금의 신청, 지급 절차·방법·시기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 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지급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체류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년 이상 서해 5도에 주소나 체류지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망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급액) 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2만원으로 한다.

②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금은 1인당 매월 18만원으로 한다.

에는 정주생활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액 일부를 노후주택개량사업으로 대신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변경할 계획임.

□ 그러나 지역자율계정으로 편성된 예산이 부처에 의하여 조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지역자율계정의 취지에 반하게 되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이는 해당 사업이 그동안 정부의 수요 관리 및 기능 조정을 전제로 추진되어 왔음에도 지역자율계정으로의 이관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부처와의 협의나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거치지 못한 채 지역자율계정으로 일괄 이관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상 절차를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포괄보조 이관사업 보완조치 등을 추가적으로 마련하며, 지역자율계정으로 사업 집행시에는 지특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경제실】

15. 지역금융활성화 (1349-300)

○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제재처분 및 적기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이를 위한 행정소송대응 예산이 신규로 반영되었으나, 그 예산규모가 충분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금융활성화’ 사업은 새마을금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97]의 제도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8,700만원 대비 2,700만원이 증액된 1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심의회 운영 및 행정쟁송 대응’ 내역사업이 4,700만원 규모로 신설되었고,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제도개선’ 내역사업이 전년대비 2,000만원 감액된 2,700만원이 계상되었음.

97) 지방공무원에 대한 공제사업을 담당하며, 「대한지방공제회법」에 따라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음.

[지역금융활성화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 (A)	예산 현액			%
지역금융활성화	87	87	87	114	27	31
새마을금고 및 행정공제회 제도개선	40	40	40	20	-20	-50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47	47	47	47	0	0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심의회 운영 및 행정쟁송 대응	-	-	-	47	47	순증

나. 충분한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행정쟁송 대응 예산 확보 필요

□ 내역사업인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심의회 운영 및 행정쟁송 대응’ 사업은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에 대한 직접제재 처분 및 조치를 위한 심의회 운영과 제재 불복에 대한 행정쟁송 대응을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에 신규로 편성되었음.

□ 동 사업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제제심의회 운영비로 위원참석수당 540만원, 안건검토 수당 540만원,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등 1,680만원과 소송대응 비용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새마을금고 감독 관련 심의회 운영 및 행정쟁송 대응 예산안 내역]

○ 〔위원 참석 수당〕 150,000원 × 3명 x 12회 = 5,400천원
○ 〔안건검토 수당〕 150,000원 × 3명 x 12회 = 5,400천원
○ 〔자료 인쇄 및 소모품 등 구입〕 500,000원 × 12부 = 6,000천원
○ **〔소송 대응 등〕 5,000,000원 × 6회 = 30,000천원**

□ 기존에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임직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재처분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었으나, 2025년 7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새마을금고법」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제재[98] 및 적기시정조치[99]의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2026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것임.

이러한 예산 편성은 개정된「새마을금고법」의 새마을금고 건전성을 도모하고, 금고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취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보임.

□ 다만, 타 부처의 행정소송 대응 예산과 비교해 볼 때, 그 규모가 다소 미흡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는 직접제재 및 적기시정조치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불복시 행정소송 대응 예산으로 건당 500만원씩 6회의 사건을 예상하여 총 3,000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98)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에 조치 요구만 할 수 있다.

1. 임원에 대해서는 해임,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2.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

99) **「새마을금고법」**

제80조의2(적기시정조치) ①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회원의 보호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1.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고
2. 예적금의 지급이나 중앙회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금고
3. 중앙회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적금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금고

□ 우선, 소송건수에 관하여 살펴보면, 행정안전부의 감독대상인 새마을금고 법인은 2024년말 기준 1,276개인데, 해마다 발생할 행정쟁송 건수를 예측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금융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2024년말 금융기관(은행, 보험, 금융투자, 여신전문, 저축은행, 상호금융, 금융지주회사)의 수는 3,624개[100]로, 금융기관을 감독·관리하는 금융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동 위원회는 최근 4년간 연평균 83건의 행정쟁송이 발생하고 있음.

[최근 4년간 금융위원회의 행정쟁송 건수]

연도	행정소송	행정심판	국가소송	헌법재판	합 계[1)]
2021	34	13	3	4	54
2022	32	23	3	3	61
2023	63	40	4	3	110
2024	82	21	1	2	106
4개년 평균	53	24	3	3	83

주1) 합계는 전체 소송건수 중 집행정지 사건은 제외한 수치임
※ 자료: 2026년도 금융위원회 사업설명자료 Ⅱ-1

행정안전부의 감독대상인 새마을금고 법인 개수는 금융위원회 감독대상인 금융기관의 개수의 약 35%(1,276/3,624) 수준임에 반해 소송발생 건수는 6%(5/83)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어 다소 소송발생 건수를 낮게 예상한 측면이 있어 보임.

100) 은행 53개, 보험 55개, 금융투자, 여신전문 1,030개, 저축은행 79개, 상호금융 2,207개, 금융지주회사 10개(출처: 금융감독원)

□ 한편, 건당 소송비용에 관하여 타부처의 소송대응 예산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건당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건당 1,250만원, 개인정보위원회는 건당 3,000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당 착수금 750만원과 승소사례금 550만원 등을 계상하고 있음.

[최근 타부처 행정쟁송 예산안 내역]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위원회
행정소송 대응예산	○ 행정소송 대리인 선임 80건 × 선임료 1,250만원= **10억원**	○ 소송대응 : 4억 5,200만원 · 착수금: 39건 × 750만원 = **2억 9,250만원** · 승소사례금: 29건 × 550만원 = **1억 5,950만원**	○ 국가송무수행 : 8억원 · 진행중·신규 소송 등 대응: 25건 x 3,000만원* =**7억 5,000만원** * 23~25년도 소송 건당 평균 지출액
소송의 목적	○ 금융위원회 상대 소송(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행정심판 등)의 소송 수행	○ 식약처 소관 소송사건 수행	○ 과징금 등 행정처분에 대한 피처분자의 처분취소 청구 등 행정쟁송
기타	○ 기타소송(집행정지 사건) 대리인 선임 34건 × 선임료 250만원 = **8,500만원**	-	○ 송무 관련 법률·기술 등 전문가 검토 : 10건 x 500만원=**5,000만원**

※ 자료: 2026년도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인정보위원회 사업설명자료 Ⅱ-1

특히 새마을금고의 금융기관적인 성격을 감안하면,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의 법률분쟁 발생시 그 소송의 난이도가 평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당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위에서 언급한 타 부처의 사례를 참고하여 계상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의 행정소송 대응 예산은 건수와 건당 소송비용 등의 측면에서 충분치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또한, 동 사업의 소송대응 예산안에는 행정소송 이외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응비용, 소송단계 이전에 법률자문 비용 등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소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직접 제재조치 등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불복에 대응할 행정쟁송 예산이 충분치 않다면,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극적으로 실행할 우려가 있고, 행정안전부의 승소율 저하로 인한 남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이는 결국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하여 새마을금고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반감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 제재처분 및 적기시정조치 등에 대한 불복 행정쟁송시 소요되는 비용의 적정규모를 재검토하여 적정한 수준의 행정쟁송 대응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6.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1331-300)

○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 된지 10년이 경과하였고 과거 국회에서 해당 제도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였고, 지자체별로 제도 활성화 정도에 편차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내역사업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운용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 재정상태와 지방재정 위험수준을 점검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공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재정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9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1,113	1,157	993	△164	△14.2
지자체재정분석 및 지방재정위기관리	498	499	445	△44	△10.8
지자체 지방공공기관 체계적 관리	52	52	42	△10	△19.2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70**	**73**	**47**	△26	△35.6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10	10	-	△10	순감
지방보조금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	40	40	30	△10	△25.0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 운영	443	483	429	△54	△11.2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자체 재정분석 및 재정제도 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인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워크샵,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의 세부산출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 활성화 및 제도 확산’을 위해 전년대비 2,510만원 감액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치단체 컨설팅’을 위해 전년과 동일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음.

[2025년 및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 사업 세부산출 내역]

2025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및 제도 확산	
○ 총액 : 48,100천원 ・워크숍 개최,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자료인쇄비 : 10천원×400부×4회 = 16,000천원 ・워크숍 개최등 외부 전문가 자문 관련 수당 : 355천원×10명×2회 = 7,100천원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동영상 등 제작 : 25,000천원×1식 = 25,000천원	○ 총액 : 23,000천원 ・워크숍 개최,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한 자료인쇄비 : 10천원×400부×4회 = 16,000천원 ・워크숍 개최등 외부 전문가 자문 관련 수당 : 355천원×10명×2회 = 7,100천원

2025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 주민참여예산제도 자치단체 컨설팅	
○ 총액 : 25,000천원 · 컨설팅 관련 물품 구입 : 300천원×10회 = 3,000천원 · 컨설팅 책자 및 관련 자료 인쇄 : 10천원×30부×10회 = 3,000천원 · 컨설팅 전문가 수당 지급 : 300천원×5명×6회 = 9,000천원 · 주민참여예산제도 권역별 현장방문 : 130천원×6명×5회 = 3,900천원 · 평가지표 개발 등 간담회 : 30천원×20명×9회 = 5,400천원	○ 총액 : 25,000천원 · 컨설팅 관련 물품 구입 : 300천원×10회 = 3,000천원 · 컨설팅 책자 및 관련 자료 인쇄 : 10천원×30부×10회 = 3,000천원 · 컨설팅 전문가 수당 지급 : 300천원×5명×6회 = 9,000천원 · 주민참여예산제도 권역별 현장방문 : 130천원×6명×5회 = 3,900천원 · 평가지표 개발 등 간담회 : 30천원×20명×9회 = 5,400천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 사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로[101], 2004년 광주광역시 북구에 최초로 도입된 이후 시행 여부가 지자체의 자율에 맡겨져 있었으나,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가 의무화되었음.

□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으며, 지역주민은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공청회·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의

101)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 2025.6., p2

방법을 통해 지방예산의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렇게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음[102].

[예산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방법(예시)]

사업제안		사업선정		예산편성		예산집행		예산결산
주민	→	지자체 + 주민	→	지자체 + 주민	→	지자체 + 주민	→	지자체 + 주민
공모방식·공모외 방식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선정 및 정보공개		선정사업 편성 시 주민참여·정보공개		집행과정 주민참여 및 과정·결과 정보공개		결산과정 주민참여 및 과정·결과 정보공개

주) 이외에도 환류 과정에서 모니터링 회의 등에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음.

※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매뉴얼」, 2025.6., p18

---

102)**「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이 조에서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과정에 반영할 수 있다.

□ 그런데,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액과 및 전체 예산액 대비 주민참여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103].

[2023년 및 2024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2024년		
	전체 예산액 (A)	주민참여예산 예산액 (B)	비중 (B/A)	전체 예산액 (A)	주민참여예산 예산액 (B)	비중 (B/A)
서울	43,750,801	38,527	0.09	45,466,908	44,180	0.10
부산	16,658,129	18,855	0.11	17,619,856	15,185	0.09
대구	11,993,733	31,040	0.26	12,417,847	33,284	0.27
인천	14,657,191	35,214	0.24	15,885,809	13,063	0.08
광주	7,931,542	11,897	0.15	7,772,158	6,374	0.08
대전	7,671,938	16,746	0.22	7,787,862	12,104	0.16
울산	5,679,557	41,243	0.73	5,956,448	33,440	0.56
세종	1,260,621	541	0.04	1,181,394	16,563	1.40
경기	61,976,092	219,062	0.35	64,349,926	146,956	0.23
강원	13,379,630	45,139	0.34	15,225,965	49,056	0.32
충북	13,626,745	86,745	0.64	13,276,523	32,045	0.24
충남	18,072,902	68,621	0.38	18,732,868	57,985	0.31
전북	18,143,490	89,775	0.49	19,133,605	79,768	0.42
전남	19,481,012	78,610	0.40	21,247,408	64,782	0.30
경북	25,221,807	212,753	0.84	26,154,130	159,653	0.61
경남	24,499,219	144,914	0.59	24,737,434	127,960	0.52
제주	4,627,309	22,495	0.49	4,535,785	25,938	0.57
합계	**308,631,718**	1,162,177	**0.38**	321,481,926	918,336	**0.29**

주) 이는 일반회계 기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합계임

※ 자료: 행정안전부

103) 2023년 및 2024년 주민참여예산이 직전 대비 감소한 것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세 세입여건 등이 어려운 상황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일부 줄어든 측면이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액은 연간 약 1조원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임.

[최근 5개년 지방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주민참여예산액	1,360,179	1,183,295	1,399,618	1,162,177	918,336
전체 대비 비중	0.49	0.38	0.41	0.38	0.29

※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행정안전부가 2024년 실시한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성과평가에 의하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 등급인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185개로 전체의 76.1%에 달함[104)105)].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결과(2024년)]

(단위: 개)

우수	보통	개선필요	합계
22	36	185	243
(9.1%)	(14.8%)	(76.1%)	(100%)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104)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별도의 평가등급 없이 우수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 왔으나, 2024년부터는 외부 전문가 평가를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절대평가로 3등급(우수, 보통, 개선필요)으로 평가하였음.

105) 다만,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참여예산제도 운영 관련 평가는 자치단체별 순위나 등급을 구분하려는 일반적인 평가가 아니라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한 뒤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제도를 보다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독려하기 위한 평가라는 입장임.
구체적으로, 2024년 자치단체 평가는 우수자치단체를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횟수 11회 이상, 예산학교 교육시간 21시간 이상을 만점으로 하는 등 평가기준을 다소 높게 설정한 부분이 있고, 현재 모든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임.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 지표(2024년 기준)]

구분		세부지표	배점
정량평가 (60점)	책임성(15점)	운영계획·사업선정 시 주민참여, 주민의견서 구성	8
		제안사업의 구체화, 결과환류, 포상·인센티브	7
	투명성(15점)	사회적약자·청년 참여, 집행·결산과정 참여 등	13
		웹페이지 운영	2
	민주성(15점)	주민참여예산기구 소집·지원기구·운영 등	9
		제안사업 총액 설정·공개, 주민 제안 확대 등	6
	전문성(15점)	예산학교 과정 및 교육시간	6
		홍보, 관련기관·단체 협력, 퍼실리데이터 활용	9
정성평가 (40점)	발전가능성(20점)	전년 대비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과 결과	0~20 (5점 단위)
	우수사례발굴(20점)	우수시책 및 사례 개발·발굴 성과	
총점 (100점)		※ 주민e참여 시스템 사용/컨설팅 참여 및 환류 시 2점 가점	

주) 85점 이상 우수, 70점 이상 84점 이하 보통, 69점 이하 개선필요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진행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106]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전반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107].

106) 특히, 최근 3개년 컨설팅 참여 지방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3년간 매번 컨설팅을 신청한 지방자치단체가 11개소인데, 이는 컨설팅 참여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사업 및 제도 활성화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나 미흡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문제 해결 및 제도 활성화 효과를 가져다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107)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수준이 높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컨설팅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어, 2025년부터는 컨설팅 대상 자치단체 선정 시 개선이 필요한 자치단체가 컨설팅을 받아 실질적으로 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임.

[주민참여예산제도 컨설팅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도입배경)**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해결방안 제시를 통한 지역 간 운영편차 해소 및 관행적 사업운영 예방

○ **(사업기간)** 2018년~

○ **('25년 예산)** 2,500만원

○ **(참여현황)** ('22) 40개소 → ('23) 55개소 → ('24) 52개소

□ 사업방식 ('25년 기준)

○ **(일시/장소)** 7~10월(4개월간) /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장소

○ **(대 상)** 컨설팅 신청 자치단체 ※ 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개선필요' 지방자치단체 중심

○ **(컨설팅단)** 주민참여예산제도 전문가(교수, 시민단체 등)

○ **(진행방식)** 전문가와 담당자 간 1:1 맞춤형 컨설팅

○ **(추진절차)**

① 추진계획(안) 안내 및 수요조사	▶	② 추진계획 확정·안내 및 일정 협의	▶	③ 사전 점검 및 컨설팅 추진	▶	④ 결과 보고
자치단체 수요조사 (행안부→지자체)		신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컨설팅 일정 등 협의 (행안부↔지자체)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 점검 및 컨설팅 실시 (행안부→지자체)		컨설팅 결과 보고 (컨설팅단→행안부)
(7월)		(~8월)		(~10월)		(11월)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포스터 및 브로셔, 홍보 동영상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홍보 동영상 등 제작에 관한 예산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는바[108],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

108)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6년에도 2025년에 제작될 주민참여예산 홍보 동영상 활용, 홍보부서와의 협조를 통한 SNS 제작·홍보 등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홍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임.

도의 실질적 활성화가 미진한 상황에서 단순히 홍보 예산만을 삭감하고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 과거 국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109], 예산편성·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110]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별 제도 운영 수준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원 사업을 마련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당 내역사업을 운용할 필요가 있음.

109) 과거 국회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이루어졌는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9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예산 중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크지 않고, 제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19%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9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2020.8., p145)"고 지적하였음.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행정안전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실 있는 운영여부를 성과 평가 등의 방법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3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11, p235)"고 지적하였음.

110)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연번 53번은 "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예산편성·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7.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1335-300)

○ 행정안전부는 신규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정보전략기획(ISP)수립 예산은 국비로, 시스템 구축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하기로 계획하고 있으나, 실제 지방자치단체간 시스템 구축 비용의 분담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사업은 지방회계제도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실무자회의 및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는 한편,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지원하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1억 5,600만원 대비 2억 3,200만원이 증액된 3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주요 증액의 요인은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2026년에 신규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정보전략기획(ISP) 예산 2억 4,200만원을 반영함에 따른 것임.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사업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 (A)	예산 현액			%
지방회계결산제도연구개선	91	156	156	388	232	148.7
지방회계제도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21	63	63	47	△16	△25.4
계약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70	93	93	64	△29	△31.2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	-	-	277	277	순증

나.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 비율의 조속한 확정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재산[111] 등을 의미함.

---

11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ㆍ지방채증권ㆍ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 현행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도·새올 행정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동 시스템은 텍스트 기반으로 구축되어 공간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타 시스템과 연계가 미흡하며, 대국민 포탈도 지원하고 있지 않는 상황임.

이에 감사원은 국유재산 수준의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및 온라인 포탈을 구축하고 공개하도록 권고하였고, 경상북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및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또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건의해 왔음.

□ 이러한 배경에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예산으로 신규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동 시스템에 대한 정보전략계획 수립예산 2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음. 동 시스템은 AI·GIS[112] 등 기반으로 구축되어 공간정보의 제공·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시스템과 연계가 강화될 예정이며, 대국민 포탈도 지원할 예정임.

112)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인간생활에 필요한 지리정보를 컴퓨터 데이터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변경 사항]

	現 시도·새올행정시스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행정 내부	◦ 텍스트 기반으로 구축되어 공간정보 미제공, 다른 시스템과 연계 * 부족 * 공유재산 총조사('24~'25년)시 공유재산대장과 3종공적장부 간 불일치 163만 건 발굴 ◦ 공유재산 처분 등에 대한 전·후 검증기능* 부족으로 횡령 등 재정누수 발생 * (예시) 매각시 낙찰가격-계약서상 가격-징수액-수납액 일치 여부 자동확인 등	◦ AI·GIS 등 기반으로 구축되어 공간정보 제공·활용, 다른 시스템*과 연계 강화 * 3종공적장부(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온비드, 위택스, K-Geo, e호조, 도로명주소, 토지이용계획 등 ◦ 대장 간 불일치 누락재산 자동 분석·발굴 ◦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검증기능* 도입 및 이상징후 확인 시 알림기능** 강화 * (예시) 매각 단계별 증빙자료 첨부여부 검증, 매각 단계 간 입력수치 일치 여부 등 확인 ** (예시) 감사실·총괄재산관리관에 자동 통보
대민 서비스	◦ 공유재산 관련 대국민 포털 없음 ◦ 공유재산 기본현황, 유휴재산 정보 등이 엑셀 형태로 지자체별 누리집에 공개되어 식별 곤란 ◦ 대부·매각은 대면 계약으로 진행되어 원거리 거주자 불편 발생	◦ 공유재산 관련 대국민 포털 구축 ◦ 유휴재산 및 사용·대부 중인 공유재산 현황 실시간 공개, 온라인 수의계약 기능 도입 ◦ 공유재산의 입찰, 계약, 사용료·대부료 납부 등이 한 번에 가능하도록 유관 사이트 연계
디지털 전환	◦ 최신기술을 활용한 관리기능 활성화 요구에도 미활용 중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무단점유 적발, 신규시설 최적 입지 도출 등 신규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지자체 공유재산 효율적·체계적 관리 지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또한, 현재 일부(2025년 10월말 기준 32개) 자치단체에서 공간정보의 미구현, 타 시스템 연계 부족 등[113] 현행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별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어 공유재산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다만, 동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과 관련하여는 다음과 같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동 시스템의 정보전략계획수립(ISP)에 2억 4,200만원이 소요되고,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개발비용으로 85억 300만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정보전략계획수립(ISP) 비용은 국비에서 부담하고, 시스템 인프라 구축 및 개발비용은 지방비로 부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동 시스템 구축이 진행될 예정임.

113) 이투데이, '전북도 공유재산관리 엉터리', 2025. 7. 17.
KBS 등, '전남 시.군 공유재산 관리 부실 개선 시급', 2024. 1. 31.
서울신문, '서울시의원 "135조원 서울시 재산, 제대로 관리해야"', 2023. 11. 07.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분담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계			2026년			2027~2028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합계	8,745	242	8,503	242	242	-	8,503	-	8,503
ISP(국비)	242	242	-	242	242	-	-	-	-
시스템 구축(지방비)	8,503	-	8,503	-	-	-	8,503	-	8,503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 그러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스템 개발비 85억 300만원을 지방자치단체간 어떻게 분담할지에 대한 협약 및 약정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2025년 10월말 기준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114]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간의 비용 분담비율[115]에 대한 이견 등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면, 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연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함.

□ 또한, 공유재산관리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은 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거 '차세대 지방세징수시스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경우 지방세 징수 및 지방재정관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116]임에도 불구하고, 일정비율 국비가 투입[117]되었다는 점을 감

114) 당초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하여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사태로 인하여 해당 설명회가 연기되었음.

115)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의 규모,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활용도에 따라 분담비율을 정할 예정임

116)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하면,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에 일부 국비가 투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임.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간 비용 부담비율에 대한 이견,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부담 요구 등에 의해 사업지연 및 추가 국비 부담의 가능성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속히 지방자치단체와의 명확한 비용부담 협약 또는 약정을 통해 비용부담의 구체적인 내역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117)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총사업비 1,956억원(국비:623억원, 지방비: 1,333억원)
차세대 지방세징수시스템: 총사업비 2,678억원(국비:692억원, 지방비: 1,986억원)

18.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349-301)

○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안에 계상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예산 규모는 최근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고려할 때 과소한 측면이 있으므로 실제 수요에 맞게 예산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2026년도 예산안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국비 지원율이 상향되었고 최근 해당 사업을 둘러싼 정책환경 및 경제여건이 변화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정기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예산의 국가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은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활성화 함으로써 물가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 지역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51억 2,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	5,125	5,125	순증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자율)	-	-	4,935	4,935	순증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제주)	-	-	164	164	순증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세종)	-	-	26	26	순증

주) 2026년도 예산안에는 세부사업이 각각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가독성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통합

※ 자료: 행정안전부

□ 동 사업은 당초 일반회계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부터 이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면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였음.

□ 착한가격업소는 2011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안정을 목적으로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는 2023년부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운영비 명목의 각종 물품을 지원하고 있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 **(도입배경)**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 **(사업기간)** 2023년~
- ○ **('26년 예산)** 102억원 (국비 51.2억, 지방비 51.2억)
- ○ **(지원현황)** 11,001개소('25.7 기준)

□ **사업방식** ('26년 기준)
- ○ **(선정방식)**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및 위생·청결,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서 선정*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선정
- ○ **(지원내용)** 시·도별 착한가격업소 운영비* 보조
  - * 업종별 주방용품, 세탁·청소용품, 미용용품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85만원 한도)
- ○ **(지원방식)**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국비지원율 30%→50%)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내 설명자료를 재구성

□ 구체적으로, 2025년 7월 기준 11,001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외식업 업소가 6,572개소(59.7%), 그 외 업소가 4,429개소(40.3%)를 차지하고 있음.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25.7월 기준)]

(단위: 개소)

합계	외식업		외식업 外							
	소계	비중	소계	세탁	이용	미용	목욕	숙박	기타	비중
11,001	6,572	59.7%	4,429	210	311	1,599	113	109	315	40.3%

※자료: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 착한가격업소 안내 → 지정현황

나.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고려한 적정 예산 계상 필요

□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예산을 전년대비 약 21억원 증액된 51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증가율 67,4%).

[최근 3개년 예산안 편성 및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		2025('25.7월말)		2026 예산안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전년대비 증감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785	1,785	3,060	3,060	5,125	67.4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예산 편성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12,058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맞춤형 인센티브 85만원의 50%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원대상 업소 수는 전년의 12,000개소와 유사한 수준이나 종전 대비 국비 지원율을 30%에서 50%로 20%p 상향하여 전년대비 예산이 증액되었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이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분야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는 물가안정 정책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보조율을 상향하였다는 입장임.

[최근 4개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예산 편성 세부내역]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지원대상 업소 수		1개소 당 지원금액		국비지원율		예산액
2023년 예산	5,895	×	85만원	×	30%	=	1,530
2024년 예산	7,000						1,785
2025년 예산	12,000						3,060
2026년 예산안	12,058				50%		5,125

주) 착한가격업소 대상 물품지원 사업은 2023년도부터 시작되었음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그런데, 최근 5개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감안할 때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2026년도 지원대상 착한가격업소 개소 수인 12,058개소는 과소한 측면이 있어 보임.

[최근 5개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6월)
합 계		5,895	6,146	7,172	9,723	10,954
	기지정	-	-	6,146	7,172	9,723
	신규지정	-	-	1,685	3,210	1,673
	취소	-	-	659	659	442
전년대비 증가폭		-	251	1,026	2,551	1,231
	증가율	-	+4.3%	+16.7%	+35.6%	+12.7%

주 1) 2025년 8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 : 11,134개소
2) 2021년 및 2022년의 경우 세부 지정 현황에 관한 자료 없음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 2023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연평균 증가폭이 1,923개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5년 12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 건수는 약 11,646개소, 2026년 12월 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 건수는 약 13,569개소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됨.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최근 3개년 간 착한가격업소 수가 대폭 증가하여 2026년도 이후에는 착한가격업소 수를 늘리기보다는 현재 지정된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므로 지원 대상 업소 수를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는 입장임.

□ 다만, 2023년 8월 행정안전부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개편[118]한 이후 신규지정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착한가격업소의 경우 지정 주체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로 행정안전부가 지정 건수를 통제하기는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가 사전에 예측한 수준 이상으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최근 착한가격업소 지정 현황을 고려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예산 규모를 실제 수요에 맞게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118)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총점을 110점에서 55점으로 하향하고, 기존 지정 기준 중 착한가격 메뉴 수 기준(25점)과 이용자 만족도 기준(20점)을 삭제하였음. 이에 따라 위생·청결 기준(20점)이 전체 점수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게 되었음. 이로 인해 단순히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가격수준이 저렴하기만 한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기 용이해져 착한가격업소 지정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후단의 참고자료 1 참조

참고1 2023.8.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개정 전·후 비교

2022.12. 기준	2023.8. 기준
□ 가격(30점)	□ 가격(30점)
① 가격수준(20점)	① 가격수준(20점)
② 가격안정노력(10점)	② 가격안정노력(10점)
□ 위생·청결(20점)	□ 위생·청결(20점)
① 주방 등(10점)	① 주방 등(10점)
② 매장 내(7점)	② 매장 내(7점)
③ 화장실(3점)	③ 화장실(3점)
□ 공공성(5점)	□ 공공성(5점)
□ 메뉴비중(25점)	<삭 제>
① 착한가격메뉴 개수(25점)	
□ 이용만족도(20점)	
□ 가점(10점)	
총합 (110점)	총합 (55점)

주) 2023.8 이전은 110점 중 70점 이상일 경우, 2023.8 이후는 55점 중 40점 이상일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 가능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참고2 2025년 기준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구분	지표정의	평가기준
□ 가격(25점)		
① 가격수준(25점)	착한가격메뉴가 인근 상권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신 규) 평균가격 미만 25점 (재지정) 평균가격 미만 20점
② 가격안정노력(+5점)	평균가격 미만 유지 기간	(신 규) 미평가 (재지정) 2년 이상 5점 1~2년 3점
□ 위생·청결(25점)		
① 주방·매장 공통(12점)	·주방용품 관리상태 ·행주 등 용도별 사용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주방 및 매장의 청결상태, 위생복·위생모 착용 여부 등 평가
② 주방(4점)	·주방 바닥의 물기 처리상태, 배수시설의 청결도 ·식재료 구분 보관 관리상태	·주방의 청결상태를 고려하여 평가
③ 매장(6점)	·식탁, 의자 등 청결 상태 ·냅킨통, 소스통 등 청결 상태	·매장 내 용품 등 관리상태를 고려하여 평가
④ 화장실(3점)	·세척제, 화장지·에어타월 구비여부, 수세, 소독, 환기 등 관리상태	·화장실 청결 상태 등 고려하여 평가
□ 가·감점		
① 가점(+3점)	·지역화폐가맹점(1점) ·지역특화자원 활용도(1점) ·기타 지역사회 공헌도(1점)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정성평가
② 감점(-2점)	·착한가격메뉴 표시(-1점) ·착한가격업소 현판 부착(-1점)	·착한가격메뉴 및 현판 미부착시 감점
총합 (50점)		

주 1) 50점 만점 중 40점 이상인 경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가능
2) 평가점수가 40점 이상인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미지정 가능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을 위한 환류체계 구축 필요

□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효과 분석을 위해 2024년 3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연구를 의뢰하였고, 동 기관은 2024년 7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따른 지원의 효과성·타당성을 제시하였음.

□ 구체적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체의 경우 전년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였으며 미지정 일반업소 대비 생존율이 높아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업소에 미치는 영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설명임. 또한, 주요 음식의 평균 가격을 비교할 때 착한가격업소 지정업소의 가격대가 비지정 일반업소 대비 낮아 물가 안정 효과가 존재한다는 분석임.

동시에, 착한가격업소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의견수렴 채널을 마련하며,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음.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주요 내용]

□ 착한가격업소 지정 효과

○ (매출액) 매출 증대에 긍정적

- 착한가격업소의 69.8%(4,410개 업소) 매출액*이 전년대비 2,800만원 증가했고, 31.1%(1,995개 업소)는 매출이 평균 1,500만원 감소

* 2022년도와 2023년도 신용카드 매출액

○ (생존율) 미지정업소 대비 높은 생존율

- 착한가격 지정업소의 5년차 생존률은 76.58%, 미지정 일반업소의 5년차 생존률은 53.46%로 착한가격업소의 5년차 생존률이 23.12%p 높음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착한가격업소	93.49%	90.15%	86.52%	82.25%	76.58%
미지정 일반업소	88.55%	79.29%	69.34%	61.77%	53.46%
차이	4.94%p	10.86%p	17.18%p	20.48%p	23.12%p

○ (물가안정) 미지정일반업소 대비 저렴한 메뉴 가격

- 2023년 12월 기준, 주요 음식의 평균 가격을 비교한 결과 착한가격업소의 모든 품목이 미지정 일반업소에 비해 낮은 가격대를 형성

구분	냉면	비빔밥	김치찌개 백반	삼겹살	자장면	삼계탕	칼국수	김밥
미지정 일반업소 평균가격(원)	9,870	9,482	8,124	13,728	6,490	15,810	8,181	3,046
착한가격업소 평균가격(원)	6,804	7,335	7,110	11,389	4,897	13,138	6,347	2,882
차이(원)	3,066	2,147	1,014	2,339	1,594	2,672	1,834	165

□ 정책제언

○ (법제·예산) 착한가격업소 지원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예산 지원 필요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외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필요

○ (환류체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업체 대상 정기적 의견수렴 채널 마련

- 착한가격업소 지원 방향성, 높은 자진취소율 완화 방안, 홍보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정기적 검토 필요

○ (협업체계) 지역 물가 안정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 유관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 마련, 데이터·정보 공유 및 지속적 지역 물가 모니터링을 한 선제대응 필요

※자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방안 연구」, 2024.7.

□ 그런데, 해당 연구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의 효과보다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자체에 대한 분석이었다는 점, 국비 지원이 시작된 2023년과 직전 연도만을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원 효과의 지속성 및 장기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환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2023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개편 이후 착한가격업소 지정 건수는 2022년 약 6,000개소에서 2025년 9월 약 11,000개소로 크게 증가하였는바, 양적 지표만 놓고 보았을 때 착한가격업소 제도가 정착하여 물가 안정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지원하는 정책의 타당성은 있어 보임.

□ 다만,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되는 업소가 최근 1년간 약 800개소로 2023년의 659개소 대비 증가하였다는 점, 등록기간이 3년 미만인 착한가격업소 수가 전체의 60%를 차지한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정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거나 영세한 업소의 이탈을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따라서, 지원 사업이 착한가격업소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소비자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에 장기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최근 1년간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및 지정 취소 현황]

(단위: 개소)

구분	신규지정	취소업소	취소사유			
			휴·폐업	기준미달	자진취소	행정처분 및 기타
서울	725	157	83	27	11	36
부산	173	38	9	9	1	19
대구	170	39	24	8	-	7
인천	191	38	27	4	3	4
광주	141	29	21	-	2	6
대전	137	37	25	4	-	8
울산	125	24	11	7	2	4
세종	11	5	4	1	-	-
경기	916	110	61	24	8	17
강원	137	58	21	18	4	15
충북	178	17	13	4	-	-
충남	171	39	24	7	1	7
전북	123	32	16	14	1	1
전남	157	41	18	19	1	3
경북	137	47	24	10	7	6
경남	367	38	28	4	3	3
제주	244	36	25	5	3	3
합계	**4,103**	**785**	**434**	**165**	**47**	**139**

주) 2024.7월부터 2025.6월까지 통계임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재구성

[등록기간별 착한가격업소 현황('25.8)]

(단위: 개소)

구분	업종							
	외식업	세탁업	이용업	미용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합계
1년 미만	**2,616**	**21**	**39**	**386**	**28**	**34**	**169**	**3,293**
1년~3년미만	**2,617**	**40**	**89**	**475**	**26**	**41**	**102**	**3,390**
3년~5년미만	661	23	20	144	12	10	23	893
5년~10년미만	924	36	47	207	12	15	16	1,257
10년 이상	1,620	93	121	410	35	8	14	2,301
합계	8,438	213	316	1,622	113	108	324	11,134

※ 자료: 행정안전부

□ 뿐만 아니라, 매년 물가상승률, 소상공인 경기동향(BSI) 지수[119] 등 경제지표의 변동성이 나타나 행정안전부가 연구용역을 추진하였던 때와 비교하여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해당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변화된 경제환경에 맞춰 사업의 규모, 지원 단가 등을 조정하고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119) BSI지수는 사업체의 실적과 계획 등에 대한 주관적 의견을 수치화하여 전반적인 경기동향을 파악하는 경기 예측 지표로, BSI 지수가 100 이상인 경우 경기 실적이 호전되었다는 의미이며, 100 미만인 경우 경기 실적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함(『2025년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조사』).

[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동향]

(단위: %)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연간
2023	5.0	4.7	4.2	3.7	3.4	2.7	2.4	3.4	3.7	3.8	3.3	3.2	3.6
2024	2.8	3.1	3.1	2.9	2.7	2.4	2.6	2.0	1.6	1.3	1.5	1.9	2.3
2025	2.2	2.0	2.1	2.1	1.9	2.2	2.1	1.7	2.1	-	-	-	1.9 (전망)

주) 이는 전년동기 대비 지표임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테마별통계지표→소비자물가지수

[월별 소상공인 경기동향(BSI) 체감지수 동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3	59.8	56.2	69.9	69.4	70.3	63.9	57.3	63.6	70.5	69.6	63.6	59.0	64.4
2024	48.1	50.0	64.5	64.8	64.4	57.3	54.5	55.4	65.6	69.1	62.4	53.7	59.2
2025	47.6	51.3	66.5	63.6	70.0	67.6	61.5	72.3	76.6	-	-	-	64.1

주) 체감지수 > 100 이면 전월대비 호전되었다고 체감, 체감지수 < 100이면 악화되었다고 체감

※ 자료 : 중소기업벤처부→주요정책→정책자료→정책연구→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월별 소상공인 경기동향(BSI) 전망지수 동향]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2023	77.8	72.5	93.9	91.3	88.9	80.8	73.7	83.6	98.0	95.7	89.4	84.9	85.9
2024	79.5	65.2	74.6	78.1	73.4	67.4	57.9	56.6	82.8	83.9	79.8	79.3	73.2
2025	75.5	69.3	86.6	86.9	79.8	79.1	76.2	76.7	88.3	86.8	-	-	80.5

주) 전망지수 > 100 이면 전월대비 호전되었다는 의미이며, 체감지수 < 100이면 악화되었다는 의미

※ 자료 : 중소기업벤처부→주요정책→정책자료→정책연구→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 행정안전부는 종전 ‘착한가격업소 지원 활성화 사업’이 일반회계의 ‘지역경제활성화(1349-301)’ 세부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당시 성과지표로 ‘착한가격업소 지정 건수’를 설정하였음. 2025년도부터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이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인 ‘착한가격업소 재지정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였으나[120] 해당 지표 또한 국비 지원의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보임[121].

□ 2026년도 예산안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대한 국비 부담률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안전부는 지원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꾸준히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용역,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등의 환류체계를 구축하여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120)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 국회공통요구자료에 의하면 해당 성과지표는 다음과 같음.

구분	2024	2025	2026	2026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또는 측정방법)
목표	-	90.1	90.1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값	동일 업소에 대해 전년대비 당해연도 지정률
실적	90.8	-	-		
달성도	-	-	-		

121) 특히, 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업소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신규 지정 업소의 증가폭이 훨씬 커 전체 착한가격업소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처럼 지정 업소가 양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산식의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성과지표 달성이 용이해질 수 있으므로,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워 보임.

19.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1349-306)

○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상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일률적으로 5%의 할인율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지우고 있는데, 재정여력이 열악한 자치단체일수록 상품권 국비지원 신청규모가 축소되는 경향성을 고려하여 재정여력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의 지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해당지역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할인판매 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조 1,500억원이 순증되었음[12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예산안 내역]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 (A)	예산 현액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299,993	-	1,000,000	1,150,000	1,150,000	순증

122) 2025년 예산현액 대비로는 1,500억원 증액 되었음

□ 동 사업은 2018년도에 군산·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해 1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면서 시작되었음. 2019년도에는 884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전국적인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그 규모가 1조 2,522억원까지 확대되었음. 그 이후에는 2022년 8,050억원, 2023년 3,522억원, 2024년 2,998억원으로 점차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2025년 1조원, 2026년 예산안에는 1조 1,500억원으로 그 규모가 다시 확대되었음.

나. 자치단체 유형별로 지방비부담률 차등화 필요

□ 동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판매비용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불교부단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4가유형으로 구분하여 할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할 예정임.

각 지역의 유형별로 국비보조율을 살펴보면, 불교부단체는 국비 미지원,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인구감소지역은 7%의 비용을 부담하는 한편, 지방비부담율은 불교부단체는 자율이고, 나머지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일률적으로 5%로 동일하게 계획하고 있음.

(단위:백만원, %)

구분	유 형	발행규모[1)]	국비보조율 (국비부담액) (A)	지방비부담율 (지방비부담액) (B)	할인율 (A+B)
2026년도 예산안	불교부단체	자율(미지원)	-	자율	**자율**
	수도권	-	3%	5%	**8%**
	비수도권	-	5%	5%	**10%**
	인구감소지역	-	7%	5%	**12%**
	합 계	24,000,000	4.8% (1,149,400)	5% (1,200,000)	**9.8%**

주1) 발행규모 합계는 실제 지자체별 발행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에 5%가량의 지방비를 부담시키는 것은 높은 구매할인율 지원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유인을 높여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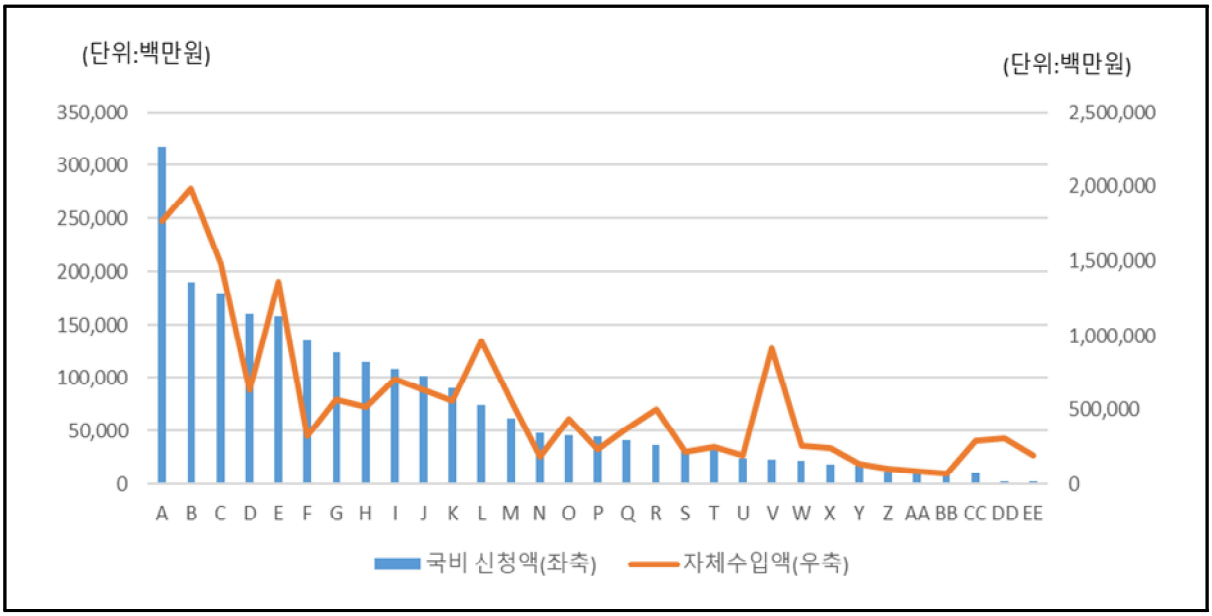
□ 다만, 불교부단체 및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간의 재정여력의 차이를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과 달리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 각각 발행규모의 5%정도의 지방비를 부담할 재정적 여력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재정여력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신청규모와의 관계는 지난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국비지원시 자치단체의 자체수입과 상품권 발행지원 신청액의 현황을 참고할 수 있음[123].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29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해당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액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신청액이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즉, 자체수입액이 많을수록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신청규모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123) 2025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은 예산규모가 1조원이고,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국비지원비율은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지방비 부담률은 일률적으로 5%로 고정하는 등 2026년 본예산안과 유사한 구조로 설계되었음.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집행시 경기도 29개 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신청액과 자체수입액 비교]



주1) 경기도에 속한 2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자료임
2) '국비 신청액'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집행시 각 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수요에 따른 국비지원 신청액을 의미함
3) '자체수입액'은 2023년도 결산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이처럼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신청액이 자체수입액과 비례하여 나타나는 경향성에 비추어 볼 때, 지방비를 부담할 여력이 높은 자치단체일수록 많은 금액의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을 신청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 각각의 재정여력과 상관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일률적으로 5%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한다면, 상품권의 국비지원이 재정여력이 양호한 자치단체에 몰리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124]에 규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지역보다 지방비 부담비율을 경감하는 등의 지방비 부담비율 차등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12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

20.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2231-301)

○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의 내역사업인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사전 절차인 실시설계가 예산안 제출 시점 이후에도 완료되지 않아 국회가 예산안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심사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집행 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증가할 우려가 있음. ○ 또한,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신규조성’ 사업은 계획된 세부 일정 간 시간적 간격이 빠듯하여 사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정부청사 노후시설등정비’ 사업은 정부청사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법정 점검 및 진단을 실시하고, 안전한 정부청사 조성을 위한 노후 시설물 등을 정비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39억 5,000만원이 증액된 201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정부청사 노후시설등정비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16,051	16,227	20,177	3,950	24.3
시설점검 및 진단	1,619	2,018	1,818	△200	△9.9
노후시설정비	10,685	8,904	14,384	5,480	61.5
방호보안시설보강	2,389	4,361	2,608	△1,753	△40.2
편의시설정비	1,359	944	1,367	423	△44.8

※ 자료: 행정안전부

나.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필요

□ 내역사업인 ‘노후시설정비’의 내내역사업인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청사 건물을 재정비하여 정부청사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43억 1,8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 본관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1억 4,200만원을, ‘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신규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1억 7,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정부청사 노후시설등정비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정부청사노후시설등정비	16,051	16,227	20,177	3,950	24.3
노후시설정비	10,685	8,904	14,384	5,480	61.5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	140	4.318	4,178	298.4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	140	3,142	3,002	214.4
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신규 조성	-	-	1,176	1,176	순증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노후 시설물 리모델링’ 사업의 두 내역사업은 예산안 제출 시점까지 필수적인 사전절차가 미이행됨에 따라 2026년도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향후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공사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보임.

□ 첫째,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실시설계가 지연됨에 따라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예산안 규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은 서울청사 어린이집 통·폐합에 따른 유휴 공간을 민원동, 회의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청사 공간의 효율성을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행정안전부는 2025년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2026년 1월 공사 용역계약을 발주하여 2026년 하반기 내에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임.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개요]

□ **건립개요**
- ○ **(사업목적)** 청사 어린이집 통·폐합에 따른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사 공간의 효율성 제고
- ○ **(위　　치)**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 **(규　　모)** 지상 3층, 연면적 1,768㎡
- ○ **(사업기간)** 2025년 ~ 2026년
- ○ **(총사업비)** 32억 8.200만원
- ○ **(구성안)** 옥상휴게공간(404㎡), 1층안내데스크, 대기공간 등(331㎡), 2층접견실, 편의시설 등(581㎡), 3층회의실(581㎡), 지하물품보관창고(275㎡) 등

□ 사업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2025년	2026년
실시설계비	140	140	0
공사비	2,900	0	2,900
감리비	22	0	22
시설부대비	10	0	10
자산취득비	210	0	210
합 계	**3,282**	**140**	**3,142**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 다만, 동 사업의 경우 당초 2025년 상반기 내에 실시설계를 완료한 뒤 공사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었으나, 추가 검토 사항 및 일부 과업이 추가됨에 따라 실시설계 절차가 지연되었고[125], 이로 인해 구체적인 공사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임.

□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이하 "「편성지침」"이라 함) [126]은 토목공사 및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시설계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를 반영하되,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 추진의 시급성이 높거나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 한

125)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외부동선계획 검토 및 입수시설 확정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용역이 일시중지되었고, 민원동 창호 신설 및 창호교체에 따른 에너지절약계획 과업이 추가되어 용역이 재개되었으며, 해당 용역은 2025년 11월 13일 완료될 계획이라는 입장임.

126) 「편성지침」p281

□ 토목공사 및 대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타당성조사.기본조사설계, 실시설계, 토지보상 등 사업추진을 위한 단계적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공사비 반영

ㅇ 토목공사의 경우 선보상 후착공의 원칙을 적용하되, 보상협의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보상 2차년도부터 공사비 반영

ㅇ '26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사업추진의 시급성이 높은 경우 또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설계비와 함께 공사비 반영

하여 예외적으로 설계비와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동 사업의 경우 2026년 상반기까지는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대규모 건축공사에는 해당하지 않아 「편성지침」에 반하지는 않아 보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및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설계 이후 공사비를 반영하도록 하는 「편성지침」의 취지를 고려하면 조속히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공사계획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실시설계를 2025년 11월까지 최대한 완료한 뒤 2026년 1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당해연도 4월부터 공사를 시공하겠다는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4~5개월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임.

[서울청사 민원동 확충을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계획]

구분	계획
실시설계 용역	2025.2. ~ 2025.11. (9개월)
건축협의 및 공사계약 체결	2026.1. ~ 2026.4. (3개월)
건축공사	2026.4. ~ 2026.9. (최대 5개월)
준공	2026.9.

※ 자료: 행정안전부

□ 실시설계 용역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 협의 절차가 소요되어 공사가 지연되거나 집행과정에서 실제 소요되는 예산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사전절차를 완료하여 차년도 예산액 규모를 확정하고 연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신규조성' 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전절차가 지연될 경우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정부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의 회전반경(5.45m)이 현행 「주차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회전반경(6m)[127]를 미충족하여 차량 진출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상 일부 구역에 진출입 경사로를 신규 설치하려는 사업임.

□ 동 사업의 세부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는 실시설계비에 1억 5,300만원, 공사비에 10억원, 감리비 및 부대비에 각각 1,700만원과 600만원을 편성하였음.

---

127)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신규조성 사업 개요]

□ 건립개요
○ (사업목적) 지하주차장 진출입로(2차선, 2개소)를 신규 조성함으로써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시설 기준을 충족 및 이용여건 개선
○ (위　　치) 대전광역시
○ (사업기간) 2026년
○ (총사업비) 11억 7,600만원
○ (산출내역) 공사비1,000백만원, 실시설계비153 백만원, 감리비17백만원, 부대비6백만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기반으로 재작성

□ 행정안전부는 2025년 12월부터 실시설계용역과 교통영향평가용역을 조기 발주하여 각각 2026년 5월 해당 절차를 마무리한 뒤, 7월까지 건축협의 및 공사계약 체결 절차를 완수하여 8월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11월까지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임.

[대전청사 지하주차장 진출입로 신규조성 사업 추진 계획]

구　　분	계　　획
실시설계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계약 체결	2025.12.~2026.2. (2개월)
실시설계 용역	2026.2.~2026.5. (4개월)
교통영향평가	2026.2~2026.5. (4개월)
건축협의 및 공사계약 체결	2026.5.~2026.7. (2개월)
건축공사	2026.8.~2026.11. (4개월)
준공	2026.11.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행정안전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의 경우 세부 절차 간 시간적 간격이 다소 촉박하게 설정되어 있어 특정 절차가 지연될 경우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구체적으로, 사전절차인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협의 과정에서 인허가기관이 보완의견을 제시할 경우 공사계획이 변경되고 계약 발주·체결 절차가 지연되어 건축공사가 연내 마무리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공사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128].

□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공사는 3~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사계약이 9월 이후 체결된다면 차년도에는 그 선급금 정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때, 「국고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공사 계약의 선급금 상한을 원칙적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129].

□ 행정안전부는 사전절차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허가기관과 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설계비와 공사감리비의 동시계상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 「편성지침」[130]의 취지를 고려할 때 2026년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계상할 필요가 있음.

---

128)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6년 연내 사업완료를 목표로 실시설계비·공사비·감리비를 편성하였으며,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인허가기관(대전시 서구청 건축과·교통과 등)과 소통을 통해 공사 전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129) **「국고금관리법」**

제26조(선급과 개산급)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傭船料),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개산(槪算)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선급) ① 법 제26조에 따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130) 「편성지침」, p278

25. 설계비(420-01·420-02목)

2. 세부지침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 비목의 동시계상을 지양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1.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2036-508)

○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인 공주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예산편성을 사업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동 세부사업으로 일원화 또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함으로써 관련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방식의 타당성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 사업은 전쟁·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시에도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요 전산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인 공주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16억 1,400만원 대비 27억 5,900만원이 증액된 43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18,982	1,614	4,373	2,759	170.9

나. 국가재해복구센터로서 기능에 부합하도록 사업명칭 변경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의 일원화 편성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이하 “공주센터”)는 전쟁·재난·재해 등 국가 비상사태 시 대전 및 광주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는 경우에도 국가 중요 정보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 재해복구(이하 “DR”) 데이터센터로서, 2008년 7월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131]”상 세부과제 중 ‘통합전산센터 백업센터 구축’[132]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부터 시작되었음.

□ 공주센터 건축공사는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총 1,545억원이 집행되어 2023년 완료되었고,[133] 동 사업은 공주센터에 전산환경을 구축하고 재해복구시스템을 이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는데 총 8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 2024년 예산안 편성 당시 계획에 따르면 2024.12월까지 재해복구

13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10년까지 정보보호 사회안전망 구축-정부, 공공·민간의 정보보호 종합대책 발표”, 2008.7.22.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최근 「옥션」의 해킹사건으로 1천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등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유해정보 유포 등으로 국민 불안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에 따라 국가정보원, 지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합동으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을 마련, 7.22(화) 국무회의에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132) 「안전하고 신뢰받는 U-지식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정보보호 중기종합계획,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방송통신위, 2008.7.22. p.22.
- (아젠다) 국가기반시설 보호 강화, (추진과제) ⑤통합전산센터 보호체계 강화, (세부과제) ㉑통합전산센터 백업센터 구축

133) 당초 통합전산센터 백업센터 추진 당시 2012년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한다는 계획이었으나, 타당성재조사 2회, 사업자 선정 유찰 7회, 입찰방식 변경 등으로 2019년 4월에서야 착공하였고, 착공 이후에도 기반환경 공사비 증액 및 정보화 사업비 등록과 관련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감리비 부족으로 인한 공사중단을 거치면서 2023년 5월에 공주센터가 완공됨으로써 건축 단계에서 11년 정도 지연됨.

시스템, 통신망, 통합보안시스템 및 운영통합시스템 등 공통인프라의 구축과 대전·광주센터에서 운영 중인 각급 기관 재해복구시스템과 소산용 내화금고를 공주센터로 이전을 완료하는 것이었으나, 2025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11억 2,800만원) 외에 전산장비 구축 및 재해시스템 이전을 위한 예산(4억 8,6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 기간도 2024년 12월에서 2025년 9월까지로 변경하였음.

□ 이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에 대한 재해복구 대책[134]에 따라 수립된 ISMP 보완 및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사업기간 연장 및 총사업비 증액은 그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겠음.

□ 동 사업의 2025년 10월 23일 현재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72억 700만원 중 15억 8,100만원이 집행(집행률 21.9%)된 것으로 파악됨.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12월말까지 총 69억 4,300만원(예상집행률 96.3%) 집행 예정으로 밝히고 있는바, 공주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은 2026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임.

134) 2023년 11.17.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와 광주센터를 연결하는 라우터의 포트 불량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며, 정부는 행정전산망 범정부 대책 TF를 구성하여 2024.1.31. 상시 장애 예방, 신속 대응 복구, 안정 기반 강화의 3대 분야에 12개 대과제 및 26개 세부과제를 내용으로 하여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를 위한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2025년 및 2026년도 공주센터 신축사업]

(2025.10.23. 기준, 단위: 백만원)

2025년 예산 집행현황						2026년 예산안
세부사업 (내역사업/내내역사업/비목)		예산액 (A)	전년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전년도 이월액 제외 집행액)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1,614	5,593	7,207	1,581 (95)	4,373
전산환경 구축 및 이전 * 10월말 잔금 4,429 집행예정		**486**	**5,593**	**6,079**	**1,571 (85)**	**-**
전산환경 구축	공사비 (420-03)	-	385	385	232 (-)	-
	자산취득비 (430-01)	401	5,082	5,483	1,254 (-)	-
재해복구시스템 이전	일반용역비 (210-14)	-	16	16	- (-)	-
감리비	감리비 (420-04)	-	110	110	- (-)	-
조달수수료	시설부대비 (420-05)	85	-	85	85 (85)	-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11월 311, 12월 622 집행예정		**1,128**	**-**	**1,128**	**10 (10)**	**4,373**
전산장비 운영	관리용역비 (210-15)	1,128	-	1,128	10 (10)	3,794
전산장비유지관리	관리용역비 (210-15)	-	-	-	-	557
조달수수료	일반수용비 (210-01)	-	-	-	-	22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이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는 공주센터의 전산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43억 7,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 내용과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공주센터는 국가 재해센터로서 청사는 2023년에 완공되었고, 동 사업은 정부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바, 공주센터 신축사업이라는 명칭은 사업 내용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는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2036-503) 사업에서 '통합스토리지 DR 구축' 예산(3억 100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통합스토리지 DR 구축은 대전본원에 입주한 1·2등급 정보시스템 중 DR이 없는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재해 발생 시 대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 사업의 성격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135] 해당 예산을 동 사업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가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인 공주센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사업 예산은 사업의 내용과 취지에 맞게 동 세부사업으로 일원화 또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함으로써 관련 예산 규모의 적정성, 사업추진방식의 타당성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135) 2025년도 예산의 경우 행정안전부는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예산을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2036-503)과 '국정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2036-500)'에서 각각 분산·편성하고 있으나, 센터이중화 시범사업은 Active-Active 방식 DR 사업이라는 점에서 정부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인 공주센터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2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2036-500),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구축사업(2036-503)

○ Active-Active 방식의 센터이중화 사업을 비롯해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은 구체적·체계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연도별 상황에 맞춰 예산 수립 기준 변경 및 사업 내용 변경 등으로 연속성이 미흡해 보이고, 정부 부처별 수요에 의존하는 등 총괄적·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바,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Active-Active 방식의 센터이중화 구축에 관한 중단기 계획을 조기에 확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 배분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되어 운영 중인 52개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관리 지원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2,721억 4,900만원 대비 19억 900만원이 감액된 2,70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정보화)	224,103	272,149	270,240	△1,909	△0.01

□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사업은 2026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설치 예정인 각 부처 신규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기술기반의 인프라 환경으로 일괄 통합구축하고, ‘20~’25년까지 각 부처 신규 전산장비 통합구축 시 임차사업으로 관리원에 도입된 전산장비의 잔여 임차료를 연차별 상환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830억 9,900만원 대비 150억 9,800만원이 증액된 981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음.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정보화)	76,75	83,099	98,197	15,098	18.2

나. Active-Active 방식 재난복구시스템 구축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재정투입 중장기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추진 필요

□ ‘재해복구시스템(이하 “DR”)’이란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 서비스 오류, 사이버 공격 등 시스템 재해 등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핵심 서비스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 수준에 따라 ⅰ)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하고 그 외 서비스

를 위한 정보자원은 확보하지 않거나 장소만 확보하는 등 최소한으로 확보하는 ‘스토리지 DR’, ii)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자원을 원격지에 구축하여 스탠바이 상태로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주기적(수 시간~1일)으로 백업하는 ‘서버 DR’, iii) 주센터와 동일한 시스템을 원격지와 떨어진 보조센터에 구축하여 Active-Active 방식으로 실시간 동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센터 가동 중단 시 보조센터에서 서비스를 연속성 있게 유지하는 ‘Active-Active DR(이하 “센터이중화”)’의 3가지 유형이 있음. DR 유형별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유형별 특성]

유형	특성
스토리지 DR	•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하고, 이외 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은 확보하지 않거나 장소 등 최소한으로만 확보
서버 DR (Active-Standby)	• 주센터와 동일한 수준의 정보기술자원을 원격지에 구축하여 Standby 상태로 유지 • 데이터는 주기적(약 수시간~1일)으로 백업
센터이중화 (Active-Active)	• 주센터와 동일한 시스템을 원격지에 떨어진 보조센터에 구축하고, Active-Active 상태로 실시간 동시 서비스 제공 • 주센터 장애·재해발생 시 보조센터에서 서비스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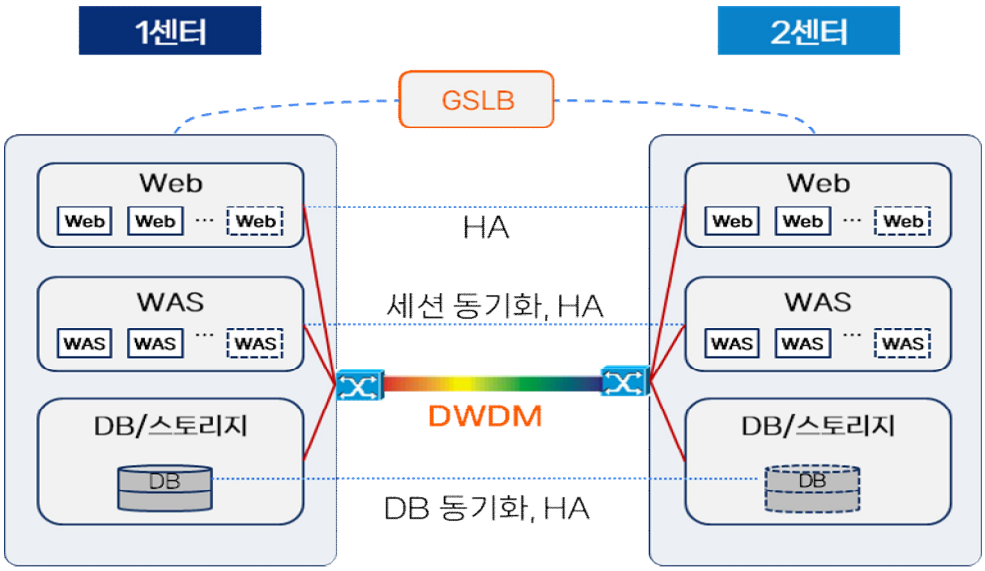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이 중 ‘센터이중화’란 하나의 서비스를 원거리의 여러 지역에서 동일하게 구축 및 동시 가동하는 시스템으로, 여러 곳(대전·광주·

대구 센터)의 시스템이 사용자 요청을 분산처리함으로써 1개 센터의 과부하를 막고 서비스 성능을 유지하고, 한 곳의 시스템이 장애나 재해 등으로 사용할 수 없더라도 다른 센터의 시스템이 서비스를 계속하여 서비스 중단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스토리지 DR이나 서버 DR보다 재해복구에 더 유리함. 반면, 시스템 구축에 초고속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 등 인프라 요소와 업무서비스의 데이터 동기화기술 적용 필요 등으로 고비용 및 고난이도 기술력이 요구됨.

또한 주센터와 보조센터 간 작동 가능 거리 제한이 있어, 공주센터에 Active-Active 구축 가능한 주센터 정보시스템은 대전본원에 입주되어 있는 시스템이 해당함.

[센터이중화 시스템 구성도]



주: GSLB는 사용자의 요청을 적절한 서버·센터로 분산시키는, 네트워크 트래픽의 교통경찰 역할을 하는 기술로, 센터 간 네트워크 트래픽 분산 관리 기능을 제공함.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2025.10월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DR 구축현황을 보면, 대전본원은 47개 업무, 광주센터는 30개 업무 등 총 77개 업무에 대해 DR이 구축되어 평균 구축률은 전체 업무 수(1,271개) 대비 6.1%에 불과함. 구축방식은 주로 서버 DR(52개 업무, 67.5%)이고, 나머지는 스토리지 DR(25개 업무, 32.5%)임.

반면, '센터이중화' 방식은 전혀 없는 상태인바, 지진 등 대형재난·재해 및 사이버공격 등 유사시 국가행정업무 및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센터이중화 방식의 장점을 감안할 때, 관련 사업의 시급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겠음.

[2025년 10월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DR 현황]

구분	업무 수	DR 구축 업무 수			DR 구축율
		계	서버 DR (active-standby)	스토리지 DR	
대전본원	709개	47개	28개	19개	6.6%
광주센터	562개	30개	24개	6개	5.3%
계	1,271개	77개 (%)	52개 (67.5%)	25개 (32.5%)	6.1%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행정안전부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발생 후 '24.1월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행정전자서명(GPKI),

(가칭)Any-ID, 모바일 신분증, 정부디렉터리(LDAP) 등 다수의 디지털행정서비스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능에 대해서는 DR 구축방식을 '다중지역 동시 가동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고,[136][137] 행정안전부가 DR 구축·기준 및 방안을 직접 수립하는 것으로 결정함.

□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25년도에 다중지역 동시 가동(Active-Active) 방식을 적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통합 구축사업(정보화)(2036-503)' 및 '국정자원관리원 운영(정보화)(2036-500)'에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위한 16억 7,500만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하 "nTOPS[138]") 센터이중화 구축'을 위한 7억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음.[139]

---

136) **['24.1월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3-12-2-① 다중지역 동시 가동

【다중 지역 동시 가동】 공통기능서비스*에 대해 장애 상황에도 활용할 수 있는 재해복구시스템을 여러 지역에서 동시 가동하는 방식 적용('25.上～) (17p)

* 행정전자서명(GPKI), (가칭)Any-ID, 모바일 신분증, 정부디렉터리(LDAP) 등 다수의 디지털행정서비스에서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기능

137) 행정안전부는 대전·광주센터에서 운영 중인 각급 기관 재해복구시스템을 공주센터로 이전하기 위해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국민신뢰 제고 대책'의 재해복구 정책에 맞춰 장애대응이 불가능하거나 등급기준 부적합으로 이전 대상에서 제외함.

138) 'nTOPS'(National Total Operation Platform System)는 2개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의 HW 9.2만식, SW 28만식을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보자원의 전 주기(입고-설치-사용-반납-처분)를 관리하고, IT 서비스 관리 분야 국제표준 기반 표준운영절차를 시스템화하여 장애, 변경, 자산관리 등 업무를 처리함.

[nTOPS 주요 기능 및 구성]

구 분	내 용
자산관리	자산 도입 확인 및 입고를 승인하고 입고된 자산과 이력을 관리
IT서비스 운영	관리원의 IT 서비스 운영 및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활용되는 절차와 정보를 제공
운영기준관리	운영, 유지관리, 정보화 등의 사업관련 정보 및 업무관련 정보 관리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139)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예산 규모와 관련해서, 국정자원관리원의 2025년도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 2025년도 10월말 기준 센터이중화 시범사업의 과제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은 집행실적이 전혀 없고, ‘nTOPS 센터이중화 구축’은 7억 7,300만원 중 2억 3,500만원(집행률 30.4%)이 집행됨.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과제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과제명	예산액	집행액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2036-503)	부처 신규 전산장비 통합구축	‘25년 신규 전산장비 구축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1,675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운영(2036-500)	공통인프라 운영강화		**nTOPS 센터이중화** 구축	773	235
합 계				**2,448**	**235**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두 사업과제의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구축’은 부처 신규 전산장비통합구축 사업과 통합 발주 방식이 적용돼 해당 사업의 2회차[140] 시점인 7월 중순에 입찰공고를 거쳐 9월 하순에 이르러서야 계약체결이 되었고, ‘nTOPS 센터이중화 구축’은 5월 중순에 입찰공고 및 7월에 계약체결 등으로 두 과제의 사업자 선정은 2~3분기에 이루어졌음.

과제별 계약기간은 각각 3개월 및 5개월로 비교적 단기간이나, 완료

인프라 구축 사업의 예산요구안은 9개 시스템이었으나 정부안은 2개 시스템으로 축소됨.
140)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1차 발주는 2025년 3월에 추진되었음.

는 모두 연도 말로 예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5년도 센터이중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취지[141]인 기술적 검증 및 사업의 방향성 점검 등에 비추어 사업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음.[142]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과제별 추진현황]

구분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네트워크 인프라구축	nTOPS 센터이중화 구축
입찰공고일자	2025. 7.15.	2025. 5.19.
공고기간(긴급)	2025. 7.15. ~ 8.19.	2025. 5.19. ~ 6.18
재공고(단일응찰)	2025. 8.19. ~ 9.3.	2025. 6.20. ~ 6.30.
응찰자 수	단일응찰	2개 업체
낙찰자	세000000	오00000 주식회사, ㈜에0000
낙찰자 선정방법	일반경쟁 → 수의계약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근거법령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제27조제1항(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43조의2(지식기반산업의 계약방법)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금액	16억 7,500만원	7억 7,300만원
계약기간	2025. 9.24. ~ 12.12.	2025. 7.25. ~ 12.31.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2025년도 예산 수립 당시 센터이중화 시범사업은 Active-Active

141) 디지털 행정성비스 국민신뢰 제고대책 관련 행정안전부 2025년 예산수립 기준(안)에서는 2025년 우선적 투자가 필요한 1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되, Active-Active 방식의 DR은 2025년 센터이중화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검증을 거쳐 방향성을 확정한 후 2026년부터 예산을 편성하기로 하고 1·2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DR 구축 투자를 금지하였다가 2026년도 정보시스템 등급에 따른 예산수립 기준(안)에서는 시범사업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부처별로 AP 개발 예산 수립, 스토리지 DR 구축을 하도록 변경함.

14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따르면, 당초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일정은 계획수립(2월), 설계(6월), 기반환경 구축(9월) 완료임.

방식 적용에 있어 기술적 타당성 및 실효성 등을 검증하여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인바, 시범사업의 검증 사항에는 ① 네트워크 측면에서 GSLB의 기존 네트워크 연계, 트래픽 분산 기능 등 검증, ② AP 측면에서 시스템 분산배치, Active-Active 환경설정, 서비스 정합성 등 검증, ③ 성능 측면에서 대전시스템의 사용자 응답속도, 공주시스템의 응답속도 비교 등임.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검증 내용]

분류	검증내용	설명
네트워크	GSLB 구축	GSLB 설치 및 DNS 시스템과의 연계
	네트워크 연계	네트워크 (국통망, 대전센터 백본, 백업센터 백본 등) 상의 시스템 연계, 기능 이상유무 확인
	트래픽 분산	nTOPS 사용자 요청의 대전↔공주 트래픽 분산기능 검증
AP	AP 분산배치	대전센터 AP 시스템의 백업센터 환경구성 및 설치 검증
	원거리 시스템 연계	대전센터 AP, 신규구축된 백업센터 AP간의 기능 검증 및 연계
	동기화 검증	대전센터 처리결과 및 백업센터 처리결과의 데이터 반영 여부 확인
	서비스 정합성 검증	대전·공주 동시 서비스 제공 시의 시스템, 서비스 이상유무 점검
성능	대전·공주 성능비교	- 대전센터 경유 사용자 응답 및 백업센터 경유 사용자 응답의 지연속도 비교검토 - 일반요청, 대용량요청 등 분류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하지만 9월 대전본원 화재로 nTOPS 주시스템이 소실됨으로써 nTOPS 센터이중화 구축 사업은 중단되었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시범사업의 검증 결과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는 2025년 4월에 '2023년도 전산장애 대책 이행을 위한 2026년 예산투자 우선대상 기준'을 통해 Active-Active 방식 DR 예산안은 1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부처별로 편성하되, 2026년에는 구축 최적 유형, 업무영향분석, 타당성 등에 관한 ISP 수립을 우선 추진하도록 하고, Active-Active 방식의 DR 구축 전이라도 스토리지 DR 구축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함.

그런데 이는 2025년도 예산 수립 당시 Active-Active 방식의 DR은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시범 구축 후 기술적 검증 등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구축기준에 맞지 않는 것임.

□ 한편, 2026년 예산투자 우선대상 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는 1·2등급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통합스토리지 DR 구축 예산[143]만 편성되어 있고, 1등급 정보시스템에 대한 Active-Active 방식의 센터이중화 예산은 미반영된 것으로 파악됨.

□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스토리지 DR은 센터이중화 사업 시 데이터 용량에 맞춰 사용할 수 있으므로 통합스토리지 DR 사업

143) 2026년도 통합스토리지 DR 구축 예산안의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870TB 기준 총 임차비 60억원으로, 2026년도는 임차료 1회분(20회 분할납부)에 해당하는 3억 100만원이 반영됨.

예산안은 센터이중화 대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별 Active-Active 관련 AP 개발 예산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144]에 따라 해당 중앙관서에서 편성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하지만, 스토리지 DR은 장애·재해 발생 시 시스템의 연속성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145] 이를 Active-Active 방식의 센터이중화 사업과 직접적 연계성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2026년도 통합스토리지 DR 예산안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대전본원에 있는 2등급 정보시스템 중 DR이 없는 스토리지를 대상으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부처별 Active-Active DR 구축을 위한 AP 개발과도 연계되지 않는 것임.

이에 더하여 부처별 Active-Active 관련 AP 개발 예산은 행정안전부의 2025년도 예산 수립 시 센터이중화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검증을 거쳐 방향성이 확정되면 편성하도록 한 당초 취지에 따라 센터이중화 시범사업 완료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Active-Active 방식의 DR 예산안 편성 관련 기준은 '2024년도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및 2025년도 DR 예산 수립 기준과 연동되지 못하고 있는

144)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p.45
14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합스토리지 구축'은 데이터만 원격지에 보관하고, 이외 서비스를 위한 정보자원은 확보하지 않거나 장소 등도 최소한으로만 확보하는 것으로, 장애 발생 시 대규모 서비스 중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점들을 감안할 때, Active-Active 방식의 센터이중화 사업은 범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 없이 부처별 수요 여부[146]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센터이중화 DR 구축 관련해서도 2024년도[147]부터 매년 예산 수립 기준이 변경되는 등 추진 방향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여 혼선이 발생하고 총괄적·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임.

이와 관련해서, 2024년도 예산의 경우 '공주센터 신축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재해복구시스템 이전'을 통해 1~4등급 정보시스템 장비 941대를 이전하기 위하여 14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다중지역 동시 가동 정책'에 따라 1·2등급 시스템에 대해서는 공주센터에 신규 구축하기로 하고 3·4등급 정보시스템 중 원격지 소산 방식에 해당하는 67대만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한 후, 1·2등급 정보시스템 이전 관련 예산 13억 4,300만원을 전용 감액하여 전산환경 구축 공사비 10억원, 자산취득비 1억 9,600만원 및 감리비 1억 4,700만원을 각각 전용 증액하여 인프라사업을 추진한 바 있음.

146)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2026년도 통합스토리지 DR 구축 관련 정부 부처 수요조사 시 의견을 제출한 부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바, 정부 부처별 DR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관련 예산확보 및 우선순위 등에서 소홀히 다뤄질 우려도 지적될 수 있음.

147) 행정안전부는 2024.1월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발표 시 2025년 상반기부터 행정전자서명(GPKI), (가칭)Any-ID, 모바일 신분증, 정부디렉터리(LDAP) 등에 대해서는 다중 지역 동시 가동 방식의 DR을 적용하는 계획이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Active-Active 방식의 센터이중화 구축에 관한 중단기 계획을 조기에 확립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집행함으로써 국가재정 배분의 합리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3.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2036-500)

○ 대전본원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물량은 2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행정안전부가 국가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행정정보체계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재난 대비가 미흡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미래 위험에 대비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험 가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전산장비 파손 등 물리적 손해 외에도 대국민 공공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손실 등 비물리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전담보험을 운용·관리하는 방안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 대전본원,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는 화재보험 계약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이 개별발주 방식보다는 통합발주로 전환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화재보험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일치시킴으로써 예산편성 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결과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되어 운영 중인 52개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관리 지원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2,721억 4,900만원 대비 19억 900만원이 감액된 2,70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정보화)	224,103	272,149	270,240	△1,909	△0.01

나. 범정부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재난 대비 보험제도 개선 필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05년 정부통합전산센터 출범하여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이관(2008년) 후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2016.3월)을 거쳐 2017.7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5년 10월 현재 대전본원·광주센터·대구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센터별 현황]

구분	대전본원	광주센터	대구센터	공주센터
개소	2005.11월	2007.11월	2024.6월	2025.10월 (2023.5월 준공)
구축 형태	기존 건물 임차	건물 신축	건물 신축	건물 신축
정보 자원	서버 4,955대 등 27,965대	서버 4,073대 등 23,432대	서버 548대 등 2,821대	서버 111대 등 520대
입주 기관	27개 기관	25개 기관	35개 기관	-
특징	-	-	클라우드 전용 데이터센터(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미입주 시스템 입주)	전쟁·대형 재난 등 비상상황 대비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EMP대응·지하터널형 전산동)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한편, 2025년 9월 26일 대전본원 5층 전산실에서 리튬배터리를 정보시스템과 공간적으로 분리하기 위한 이전 작업 중에 배터리 1

개에서 불꽃이 튀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하여 1명 1도 화상, 1개 전산실(7-1) 전소, 대전센터의 709개 시스템[148] 가동 중단 등 피해가 발생하였음. 특히 1개 전산실 전소로 약 740대 전산장비와 384모듈 리튬이온배터리가 전소됨.

행정안전부는 장비 교체 등 시스템 복구를 위해 예비비(1,723억원)를 신청하고, 추가소요(503억원)는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사 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함.

□ 이번 화재사고로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전기·기계·보안 등) 등 물리적 손실 외에 공공행정서비스 중단이라는 국가적 피해도 초래되었는바, 행정안전부가 국가 핵심 정보인프라를 각종 위험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있는지와 법령상 근거는 마련돼 있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대전본원에 입주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물량은 24.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행정안전부가 국가의 재난 및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가행정정보체계 핵심 인프라에 대한 재난대응 및 대비가 미흡하고 국가 자산을 소홀히 관리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워 보임.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개 센터(공주센터 제외)에서는 서버·스토리지·전산장비 등에 대해 일반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바, 보

148) (행안부) 정부24·국민비서·모바일신분증·정보공개시스템·온나라문서, (권익위) 국민신문고, (과기정통부) 인터넷우체국, (복지부) 복지로·사회서비스포털, (조달청) 나라장터·종합쇼핑몰 등

험금액은 대전본원 4,557억원, 광주센터 5,080억원, 대구센터 2,194억원이고, 보험료(210-02목, 공공요금 제세)는 대전본원 2,284백만원, 광주센터 2,462만원, 대구센터 813만원임.

그런데 보험 가입물량에서 광주센터 및 대구센터는 입주한 전체 정보시스템에 대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 대전본원은 총 10,082대 정보시스템 중 2,503대에 대해서만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파악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보험 가입현황]

구분	대전본원	광주센터	대구센터
보험기간	2025.7.26.~2026.7.26	2025.9.8.~2026.9.8.	2025.7.26.~2026.7.26
보험가입금액	4,557억원	5,080억원	2,194억원
보험료 (보험사)	22,839천원 (DB손해보험)	24,623천원 (DB손해보험)	8,131천원 (DB손해보험)
계약방식	일반경쟁	일반경쟁	수의계약
목적물 사항	1. 건물 2. 정보시스템 3. 기반시설(전기·기계·보안 등)		
정보시스템 수 (보험가입 물량)	**10,082개 (2,503개)**	**10,618개 (10,618개)**	**2,789개 (2,789개)**
센터별 UPS/리튬이온배터리 (보험가입 물량)	36대/2,156모듈 (36대/2,156모듈)	30대/2,520모듈 (30대/2,520모듈)	30대/1,440모듈 (30대/1,440모듈)

주: 대구센터 보험가입금액은 민간협력 클라우드(PPP) 시설을 포함하고, PPP에 대한 보험료는 CSP가 분담함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본원의 화재보험 가입물량과 관련해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정보시스템의 보험가입 물량 산출 시 대전본원의 경우는 정보시스템의 도입금액을 기준으로 물량을 산출하고 있고, 광주센터의 경우는 정보시스템의 도입금액에 감가를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어 물량 산정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하지만 통상 화재보험은 가입금액 한도가 정해져 있고 이에 맞춰 보험가입 목적물(건물 및 기반시설과 정보시스템)의 가입물량이 결정되는바, 대전본원의 보험가입 물량이 적은 이유는 대전본원의 건물 및 기반시설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우선 차감하고 나머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험가입 물량이 산출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따라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예상치 못한 미래 위험에 대비해 담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보험 가입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전산장비 전담보험인 전자기기 보험(EEI)을 활용하는 방안, 보험가입금액 산정 시 전산장비 도입가에서 감가상각을 차감하는 방안 등이 있겠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보험 가입현황]

구분	화재보험	EEI(전자기기 보험)
보험 목적물	건물, 부속설비, 정보시스템	전자기기(컴퓨터, 의료장비, 통신설비 등), 부대설비, 자료(외적정보매체)
보상하는 손해	화재	화재, 전기적, 기계적 사고, 취급부주의 등
특약	도난, 전기, 지진, 풍수해 등	외적정보매체 손해비용, 대용기기 사용에 따른 제반 추가경비

주) 외적정보매체란 Magnetic Discs(DVD, CD 등), Magnetic Tapes, 필름류 등을 말함.
※ 자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둘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가입한 화재보험은 화재로 인한 전산장비 파손 등 물리적 손해만 보장되고, 행정서비스 중단 및 데이터 손실 등 비물리적 손실은 제외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핵심기반인 정보시스템의 재난에 대비한 보험 제도를 도입·운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 한도를 낮추려는 경향이 있으므로 전산장비 손상 외에 정보시스템 마비로 인한 업무중단 및 데이터 손실 등 비물리적 손해까지 보장하는 보험 계약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함.

하지만,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이 재난 및 사이버 공격 등으로

재해 발생 시 국민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되고 국가적 차원의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중기적으로 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각종 위험 대비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전산장비 파손 등 물리적 손해 외에도 대국민 공공서비스 중단[149] 및 데이터 손실 등 비물리적 손해에 대해서도 보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전담 보험을 운용·관리하는 방안과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음.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제1항[150]은 국가의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선언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셋째, 국가정보관리원 센터별 화재보험 증권에는 리튬이온배터리, UPS 등 화재위험 관련 전담계약사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바, 향후 화재보험 계약체결 시 리튬이온배터리, UPS 등 관련 특약 사항을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개 센터의 화재보험은 화재보험보통약관, 테러행위면책추가약관, 날짜인식오류 부보장 추가약관 등 세 가지

149)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정보 검색, 우표 포털 등 시스템 34개에서 총 79억6,600만 원의 피해를 신고했다. 전체 피해 추산액의 84%를 차지한다. 소방청은 사상자 관리시스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7억1,000만 원의 피해를 예상했다.”(한국일보, 2025.10.26. “갈 길 먼 '국가전산망 정상화'...국정자원 화재 피해 추산액만 100억 원” 기사 중 발췌)

15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재난안전 관련 보험·공제의 개발·보급 등)** ① 국가는 국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노력으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관련 보험 또는 공제를 개발·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항목을 계약적용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 화재 위험성이 높은 리튬이온배터리 취급 시 면책 등 예상치 못한 미래 위험에 대비해 전산 장비·시설 관련 전담 특약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넷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3개 센터는 화재보험 계약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통합발주로 전환하여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겠음. 이에 더하여 화재보험기간과 회계연도가 불일치하고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가급적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151]

2025년 10월 기준 3개 센터는 같은 보험사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였는데도 보험요율 적용에 있어서 대전본원은 장비 도입단가를 적용한 반면, 광주센터는 장비 도입단가에서 감가상각(시가)을 반영하는 등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센터별로 추진하는 보험 계약을 통합발주로 전환하되, 보험 계약 시 센터별 정보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하여 필요사항을 특약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국가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해 보임.

이에 더하여 회계연도와 보험가입기간을 일치시킴으로써 예산편성 시 직전 회계연도의 사업결과를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151)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24.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2036-500),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2036-508)

○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가핵심기반 평가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21년도 A등급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B등급으로 하향 평가됐고, 2023년도에 완공된 공주센터는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등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한 보호 관리가 미흡했다고 보이는바, 국가안보상 주요 핵심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 적극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사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입주되어 운영 중인 52개 범정부 정보자원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관리 지원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2,721억 4,900만원 대비 19억 900만원이 감액된 2,702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운영 (정보화)	224,103	272,149	270,240	△1,909	△0.01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사업은 전쟁·재난·재해 등 비상사태 시에도 행정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중요 전산자원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정부 재해복구 전용 데이터센터인 공주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16억 1,400만원 대비 27억 5,900만원이 증액된 43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 신축(정보화)	18,982	1,614	4,373	2,759	170.9

나. 국가핵심기반 제도 총괄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 소속 국정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관리 미흡 문제 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152]'으로서, 대전본원은 2007.9월, 광주센터는 2011.1월, 대구센터는 2024.2월에 각각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됨.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핵심기반 지정일자]

구분	대전본원	광주센터	대구센터
전산망	2007.9.17.	2011.1.20.	2024.2.29.
통신망	2007.9.17.		

※ 자료: 행정안전부

□ 2025년 기준 국가핵심기반 지정현황은 에너지·정보통신·교통수송·금융·보건의료·원자력·환경 및 식용수·국가유산·공동구 분야 등 11개 분야 155개 기관(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11개, 특별지방행정기관 11개, 지방자치단체 38개, 공공기관 41개, 민간사업자 43개)의 363개 시설임.

15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국가핵심기반"이란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한다.

[국가핵심기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주관 부처	관리기관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등	특별지방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합계	155	11	11	11	38	41	43
에너지	16	1	-	-	-	9	6
정보통신	11	1	3	-	-	4	4
교통수송	49	2	1	11	-	10	28
금융	10	2	-	-	-	5	3
보건의료	12	1	-	-	-	10	1
원자력	2	1	-	-	-	1	-
환경	7	1	-	-	5	1	-
식용수	24	1	-	-	22	1	-
중요시설	7	1	6	-	-	-	-
공동구	13	2	-	-	11	-	-
국가유산	2	1	1	-	-	-	-

※ 자료: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법」 제26조의2[153],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154]에 따

1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분야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핵심기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관리정책의 수립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할 수 있다.

15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국가핵심기반의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반 보호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이하 이 조에서 "관리실태점검"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 등의 장(이하 이 조에서 "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관리실태점검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실태점검 계획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라 국가핵심기반을 담당하는 주관부처와 관리기관은 국가핵심기반의 핵심기능 유지를 위해 지정시설의 보호목표 및 보호대상 범위 설정, 위험식별 및 분석 등 위험평가, 중점위험관리 전략 및 재난관리대책 등 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핵심기반의 보호 및 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 이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재난안전법」에 따른 국가핵심기반의 관리기관으로서 대전본원·광주센터·대구센터 시설들에 대한 보호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있으며,[155]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있음.

□ 한편, 행정안전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이 통보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취약분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대해서는 총 2회를 실시하였는바, 2023년도 대전본원, 2024년도 광주센터[156]에 대해 각각 실시한 것으로 파악됨.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실태점검 결과 시정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시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155)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직접 보호계획을 제출하는 국가핵심기반의 관리기관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외에도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센터, 우정사업정보센터(우정사업본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부청사관리본부,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기상청이 있음.

156) 2024년 광주센터 실태점검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국가정보원의 합동으로 보안점검이 실시된바, 해당 점검결과는 미파악됨.

□ 2023년 대전본원 점검결과를 살펴보면, 3개의 권고사항 및 1개의 보완사항이 지적된바, 구체적으로 배터리실에 대해서는 UPS와 배터리 사이 공간 분리 또는 내화구조 격벽 설치 사항이 권고되었고, 전기실에 대해서는 사용기한이 지난 전기시설(변압기, 배전반 등)의 교체 필요 등이 지적됨.

[2023년 대전본원 국가핵심기반 점검결과]

구분	항목	지적사항(○) 및 이행조치(▸)
전기실	일반	○ 주요 분전반·배전반에 소공간 자동소화용구 설치권고 ▸전기실 내 청정소화가스 설비가 구축되어 있으며, 분전반 및 배전반 내 자동소화용구는 미설치 상태 ○ 사용기한 도과한 전기실 주요 시설(변압기, 배전반 등) 교체권고 ▸변압기 및 배전반 교체는 작업위험도, 정전 발생, 교체비용 등을 고려하여 주요부품 교체로 지속적인 관리점검 실시
배터리실	일반	○ UPS와 배터리 사이 공간분리 또는 내화구조 격벽 설치권고 ▸('24) 지하층 배터리실 공간 분리 및 내화 격벽 설치 완료 ▸('25) 전산실 내 배터리 지하층 이전 공사 중
비상발전기	배터리	○ 비상발전기용 배터리 외함 접지선 연결보완 ▸배터리 외함 접지선 연결 완료

※ 자료: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 또한 최근 5년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국가핵심기반 평가[157]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은 2021년 A등급을 받았다가 2022년부터 2025년도까지 B등급으로 하향 조정된 것으로 파악됨.

157)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핵심기반 평가는 A·B·C 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전체 평가대상 기관 중 A등급 30%, B등급 50%, C등급 20%를 받는 상대평가 구조임.

□ 이러한 점검결과 및 평가결과는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국가핵심기반 시설물들에 대해서 보호관리가 미흡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2001년 발생한 9.11 테러로 세계무역센터에 본사를 두고 있었던 모건 스탠리가 본사 붕괴 직후 24시간 만에 모든 업무를 정상화한 사례[158]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경쟁력은 데이터 처리 속도보다는 업무의 안정성 및 연속성 확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가안보상 주요 핵심축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정보시스템 및 기반시설 등을 철저히 관리 보호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2023년도 완공 및 2026년도 본격 운영[159]되는 공주센터에 대해서도 조속히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음.

158) "재난대응 정부조직체계 개편한다면 방향은?", 물류신문, 2020.11.10., "인터넷 장애가 국가 대혼란을 야기하는 시대,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IT 동아, 2021.11.23. 등 다수 언론보도 참조
159) 「2026년도 행정안전부 소관 예산안 공통요구자료(Ⅱ-1)」, 행정안전부, p.3473

【안전예방정책실】

25.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2631-307)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사업은 일정 대수 이상의 재난안전 드론을 보유하고 있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기초-광역지자체 상황실 연계, 광역 지자체-중앙재난안전상황실 연계를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각 지자체별 드론 보유 대수 외에 드론 데이터 연계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조사업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의 목적은 드론을 활용하여 재난 현장의 영상을 각 상황실별로 연계 송출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의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함에 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드론 조정인력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관련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는 재난 발생 시 실시간 현장 정보 파악을 위해 상황실에 드론 데이터를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33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	-	3,390	순증	순증

나.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의 구체화를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사업은 재난 현장의 드론 데이터(영상·위치 등)를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간에 다층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사업 내용 및 예산안 산출 내역]

구 분	예산안 산출 내역	수행 방법
기초-광역지자체 상황실 연계	기초 지자체(37개) x 25백만원 = 925백만원	지자체 자본보조 (보조율 50%)
광역지자체-중앙재난안전상황실 연계	광역 지자체(4개) x 140백만원 = 560백만원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1식) x 1,515백만원 = 1,515백만원	직접 수행
산림청-중앙재난안전상황실 연계	상황실(1개) x 390백만원 = 390백만원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사업을 2년 간(2026～2027년) 추진하여, 2026년에는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37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드론 데이터를 연계하고, 2027년에는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31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연계할 계획임.

[2026~2027년 연계 시스템 구축 대상 지방자치단체(안)]

연 도	광역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2026	[4개] 경북(138대), 경기(108대), 경남(78대), 제주(38대)	[37개] 경북(성주-25, 안동-20, 구미-12, 울진-10, 예천· 봉화-7, 영주·상주·경산-5, 김천-4, 의성-3), 경기(광주-12, 김포-8, 안양-5, 포천·수원·하남-3), 경남(진주-9, 통영-8, 의령·창녕·남해·하동-5, 창원·밀양·거제·함안·함양-4, 양산·산청-3), 제주(제주-10)
2027	[6개] 강원(117대), 충남(88대), 충북(69대), 전북(39대), 서울(30대), 울산(24대)	[31개] 강원(홍천-21, 인제-16, 원주-11, 영월-8, 동해·고성-7, 정선-6, 속초·철원-5, 태백-4), 충남(서산·청양-17, 예산-15, 서천-10, 당진-8, 계룡·금산-5), 충북(진천-20, 영동-17, 단양-10, 증평-4, 음성-3), 전북(익산-11, 전주-9, 완주-7, 무주-4, 남원-3), 서울(노원-15), 울산(북구-4, 중구-3, 동구-3)

※ 자료 : 행정안전부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체명-재난안전 드론 수)

□ 행정안전부는 2025년 3월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안전분야 드론 수를 조사하였고,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대,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대 이상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을 것을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으로 적용하였다고 설명함.

□ 드론 보유 대수는 시스템 구축 이후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활용도를 고려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나, 지방자

치단체별 드론 조정 인력 수 및 숙련도 현황, 실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드론 활용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할 때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활용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신규 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거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안전 드론 수 외에 별도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추진 이전에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드론 보유 대수 이외에 다른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사업 관련 연구용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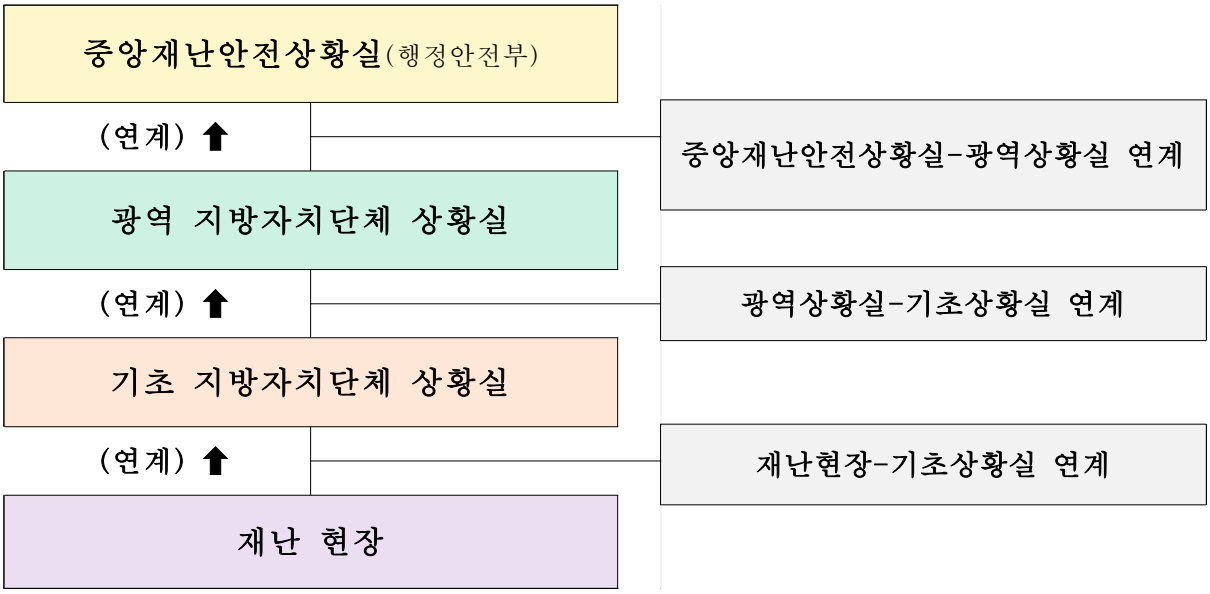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용역명	재난안전분야 드론 활용 방안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수행기관	명지대학교·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25년 4월~2025년 10월(6개월간)
계약금액	44,500,000원
주요내용	국내외 재난안전분야 드론 활용 현황 및 사례 조사 재난안전관리 드론 활용 방안 및 활성화 방안 제시 재난안전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기술개발 및 제도개선 방안

※ 자료 : 행정안전부

다. 사업 목적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훈련 관련 예산 반영 필요

□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사업을 통해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연계를 추진하는 목적은 재난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신속한 상황판단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연계 체계도]



※ 자료 : 행정안전부

□ 따라서, 드론 데이터 연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드론 조정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서 각 상황실별로 요청하는 영상·위치 데이터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임.

□ 2025년 3월 행정안전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시·도의 재난안전분야 드론은 813대이고, 조정인력은 1,143명인 것으로 확인되는데, 시·도별 재난안전 드론 조정인력은 드론 조정 관련 전문 인력이 아닌 순환보직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음.

[시·도별 재난안전 드론 수 및 조정인력]

(단위: 대, 명)

구분	경북	강원	경기	충남	경남	충북	전북	제주	서울
드론	138	117	108	88	78	69	39	38	30
조정인력	128	175	129	134	124	74	43	35	21
구분	**울산**	**대구**	**부산**	**전남**	**광주**	**대전**	**인천**	**세종**	**합 계**
드론	24	19	16	14	13	13	9	0	**813**
조정인력	68	25	83	5	50	30	19	0	**1,143**

※ 자료 : 행정안전부

□ 드론의 정밀한 조정을 통해 재난 현장의 영상·위치 데이터 등을 수집·전송하고 이를 신속하게 각 상황실별로 연계되도록 하는 것이 드론 데이터 연계 시스템의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드론 조정인력의 전문성 부재로 인해 동 시스템 구축 이후 실제 원활한 데이터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만을 편성하고 있고, 전반적인 드론 데이터 연계 시스템 운용과 관련하여 담당 인력들에게 필요한 교육·훈련 관련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한 2025년 3월 지방자치단체 드론 현황 조사 당시 지방자치단체별로 드론 자격증 교육 기회 확대,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교육·훈련 관련 건의가 이루어진 바 있음.

[지방자치단체별 드론 교육·훈련 관련 건의사항]

지자체	건의 내용
부산	드론 관련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대구	드론자격증 교육지원 등 주기적인 드론 교육 지원 확대 필요
경기	재난안전분야 드론 전문가 양성 및 인력 지원 필요
충북	드론 자격증 교육, 해당분야 전문교육 등의 교육 프로그램 지원 필요
전북	드론 운용에 대한 분야별 대응 매뉴얼 등 운용 교육·훈련 필요
경남	드론 전담 인력 추가 배치 및 교육 및 장비구매 예산 지원 확대

※ 자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데이터 연계 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 등을 통해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연계를 통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6.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2631-308)

○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은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전용 투자펀드를 결성하여 지원하려는 신규사업으로, 재난안전산업의 특수성과 투자 환경 등에 대한 사전 검토를 통해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AI·로봇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기업을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존 한국중소기업모태펀드 내 다른 계정 투자대상, 국민안전산업펀드에 공동 출자하는 경찰청의 치안산업 분야의 투자대상과 중복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중복 투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운용사, 경찰청 등과 협의하여 사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기존 직·간접적 지원 수단과의 비교와 재난안전산업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펀드의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가. 개 요

□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은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첨단 기술 기반 재난안전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전용 투자 펀드를 결성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50억원이 편성되었음.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	-	5,000	순증	순증

나. 정책펀드 사업 추진 이전에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 사업은 한국중소기업모태펀드(“이하 모태펀드”라 한다)에 가칭 ‘재난안전산업’ 계정을 신설하고, 정부 출자금 100억원을 출자하여(행정안전부 50억원, 경찰청 50억원) 자펀드 출자 공모를 통해 전문 운용사를 선정한 후 민간·지자체 등으로부터 100억원을 추가 모집하여 펀드를 결성하려는 것임.

[국민안전산업펀드 개요]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결성 목표</td><td>총 200억원 (매년 추가 확대)</td></tr>
<tr><td>결성 방법</td><td>정부 출자 50% (행안부 50억+경찰청 50억)
민간 또는 지자체 등 추가 출자 50%</td></tr>
<tr><td>결성 조합</td><td>
<table>
<tr><th>계정</th><th>분야</th><th>출자예산</th><th>결성 목표</th><th>최대 출자비율</th><th>선정 조합 수</th></tr>
<tr><td rowspan="2">재난안전산업</td><td>재난안전산업</td><td>50억원</td><td>100억원</td><td>50%</td><td>1</td></tr>
<tr><td>치안산업</td><td>50억원</td><td>100억원</td><td>50%</td><td>1</td></tr>
</table>
</td></tr>
<tr><td>주목적투자대상</td><td>업력 10년 이내,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AI·로봇·드론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기업으로서 기술 성숙도(TRL) 6~8단계[160] 수준의 기업</td></tr>
<tr><td>투자 방법</td><td>지분투자(신규 주식·지분 인수, 신규 전환사채 인수 등)</td></tr>
<tr><td>주목적투자비율</td><td>투자 대상에 60% 이상 투자</td></tr>
<tr><td>운용주체</td><td>한국벤처투자를 통한 모펀드-자펀드 구조</td></tr>
<tr><td>운용기간</td><td>8년(4년 투자, 4년 회수)</td></tr>
<tr><td>관리보수</td><td>협의 예정</td></tr>
<tr><td>기준수익률</td><td>0~3% 설정 예정</td></tr>
<tr><td>성과보수</td><td>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의 20% 이내</td></tr>
</table>

※ 자료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161]를 통해 2017년부터 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은 매년 사업체 수, 사업 종사자 수, 매출액 규모에서 성장세를 보여 2023년에는 76,429개 기업, 476,255명의 종사자가 재난안전산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산업 매출액은 59조 397억원으로 나타남.

[2017~2023년 재난안전산업 관련 주요 통계 지표]

(단위: 개, 명, 억원)

구 분	사업체 수	산업 종사자 수	산업 매출액
2017년	59,251	374,166	418,537
2018년	67,161	388,515	438,336
2019년	71,038	410,319	473,493
2020년	64,141	393,010	437,140
2021년	73,897	440,746	523,912
2022년	77,810	463,734	589,028
2023년	76,429	476,255	590,397

※ 자료 : 행정안전부 연도별 재난안전산업실태조사

□ 그러나 2023년 전체 재난안전산업 사업체 중 연 매출 20억원 미만의 사업체는 68,349개로 약 89%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중소·영세업체로 분류되고 있고, 해당 사업체들의 매출액이 전체 산업

160) 기술성숙도(TRL ; Technology Readiness Level)는 개발 중인 기술이 실제로 실용화 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는지 여부를 기초 연구(1단계)부터 사업화·양산(9단계)까지 구분해 평가하는 지표이며, TRL 6~8단계는 실제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제품 실증, 성능 검증 완료 제품, 상용화 제품 출시 직전 단계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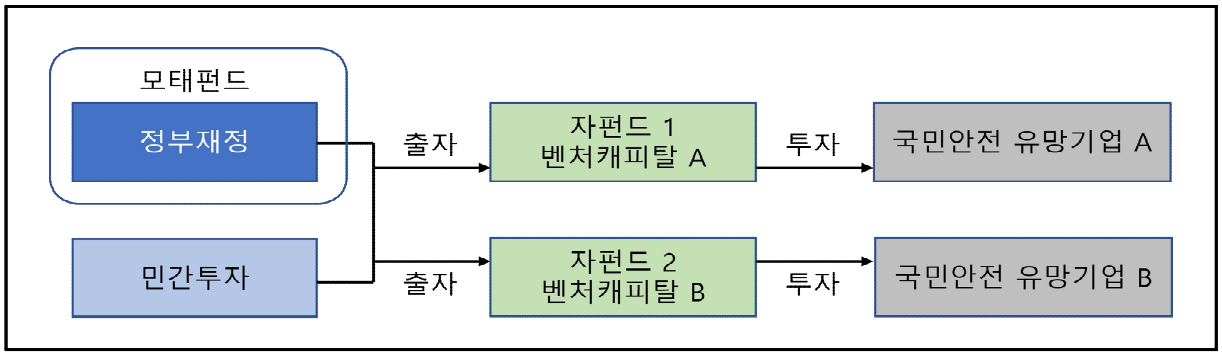
161)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는 t년에 대한 조사를 (t+1)년에 실시하여 (t+2)년 초에 공개하고 있음. 예시) 2023년에 대한 조사를 2024년에 실시하여 2025년 초에 공개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9.2%에 불과하며, 전체 사업체 수의 0.9%에 해당하는 650개사만 해외 수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등 여전히 산업 전반의 진흥·발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을 통해 영세한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전용 투자펀드를 결성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인데, 동 사업 추진 이전에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본 투자 여건에 대한 분석과, 다른 정책펀드 사례나 기존 산업 지원 정책과의 비교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정책펀드 사업을 면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재난안전산업의 특징과 영세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민간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면서도 재난안전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자하는 정부재정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인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국민안전산업펀드 구조]



※ 자료: 행정안전부

□ 재난안전산업은 공공성을 비롯한 사회적 가치가 고려되어야 하는 특징이 있어 정부·공공기관 주도의 수요가 크며[162], 재난의 발생 규모 및 빈도에 따라 시장 수요가 유동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음.

□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주목적 투자대상 기업의 요건 중 '매출액 20억원 미만의 기업'의 수는 전체 재난안전기업 대비 약 89.4%에 해당하는 68,349개인데 반하여, 해당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체 산업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2%에 불과하고, 위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는 '업력 10년 이내의 기업' 수는 27,527개로 더 감소하여 주목적 투자대상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기업 경쟁력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시장 상황과 재난안전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특성,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투자 환경 및 여건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민간투자자 입장에서 시장성이 높지 않은 산업에 투자할 유인을 갖기 어려울 수 있음.

□ 민간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 정부출자(50%)와 민간투자(50%)를 매칭한 자펀드 결성과 실제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펀드 출자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 출자연도에 활용되지 못하는 예산상의 비효율성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펀드 투자를 예상하는 재난안전기업

162) 2023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난안전산업 전체 매출액(59조 397억원) 대비 공공기관 판매 비중은 약 18.8%로 나타남.

들의 생산·개발·연구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우선 손실 충당 기회 제공, 초과 수익 배분, 콜옵션 등 타 정책펀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민간투자자 인센티브 부여 계획(안)]

구 분	내 용
우선 손실 충당	손실 발생 시 정부 출자금의 15~20% 범위에서 우선 손실 충당 기회를 제공
초과수익 배분	기준 수익률(0~3%)을 초과하는 수익 발생 시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30~50%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자에게 우선 배분
콜옵션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30~50%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자에게 모태펀드 출자지분 매입 권리를 부여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러나 재난안전산업의 특성과 영세성, 낮은 자펀드 운용사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0~3%)을 고려할 때, 자펀드 운용 수익이 부진한 경우, 펀드출자를 위해 투입된 정부재정이 당초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촉진이라는 목적과 달리 민간투자자의 손실 보전에 주로 활용될 우려도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재난안전산업의 전반적인 투자 환경, 정부재정의 투입의 목적, 민간투자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민간투자 유치 방안을 설계할 필요가 있고, 민간투자를 이끌어내는 마중물로서 정부재정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출자가 이루어진 연도 내에 자펀드가 결성되고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주목적 투자대상의 조건으로 'AI·로봇·드론 등 첨단기술 기반 재난안전기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AI 등 첨단기술 기반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 모태펀드의 다른 계정이나 타 정책펀드, 공동으로 모태펀드에 출자하는 경찰청의 치안산업 분야 투자대상과의 중복 투자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모태펀드에는 부처별 출자를 기반으로 투자 분야별로 계정이 형성되어 있는데, 2024년 8월 기준 전체 계정 합계 정부의 예산 출자액은 9조 8,417억원이고, 예산 출자액 중 회수되어 재투자된 금액 5조 3,242억원을 더한 누적 출자액 15조 1,659억원에 민간 출자액 28조 6,488억원이 매칭되어 43조 8,145억원의 자펀드가 결성되었으며, 이 중 34조 3,157억원이 실제 투자된 것으로 나타남.

[중소기업 모태펀드 계정별 자펀드 결성 및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계정명	정부출자액			민간출자액 (b)	자펀드 결성액 (a+b)	투자액
	예산 출자액	회수액	소계(a)			
중진	39,678	24,393	64,071	170,647	234,718	189,359
혁신모험	11,150	6,656	17,806	33,496	51,302	39,317
문화	15,262	4,959	20,221	19,914	40,135	33,922
청년	5,730	3,710	9,440	9,770	19,210	15,076
과기정통	3,350	1,511	4,861	5,144	10,004	6,112
엔젤	2,090	1,762	3,852	1,155	5,007	4,106
영화	2,270	608	2,878	2,190	5,068	5,363
소부장	2,140	160	2,300	2,799	5,099	2,863
관광	2,380	150	2,530	1,423	3,953	2,224
지방	2,678	3,461	6,139	6,930	13,068	10,965
환경	2,345	166	2,511	1,642	4,153	2,111
국토교통혁신	1,000	-	1,000	934	1,934	1,022
스포츠	1,540	164	1,704	972	2,676	1,562
교육	940	-	940	571	1,511	962
해양	1,000	-	1,000	522	1,522	695
중진(고용)	210	145	355	213	568	413
중진(복지)	150	-	150	65	215	52
도시재생	500	-	500	125	625	422
연구개발특구	190	-	190	190	380	228
보건	1,200	910	2,110	8,906	11,016	5,968
계	**98,417**	**53,242**	**151,659**	**286,488**	**438,145**	**343,157**

※ 자료: 한국벤처투자 /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2024년 11월)」)
* 2024년 8월 기준

□ 이 중 모태펀드 중진 계정은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출자하고 있고, 해당 펀드는 출자분야로 초격차 10대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초격차·글로벌’ 분야의 자펀드를 출자 대상으로 하여 해당되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음.

[모태펀드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출자 대상 자펀드]

출자분야	출자 대상 자펀드
초격차·글로벌	◆ 글로벌 진출이 기대되는 초격차 10대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에 투자 *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시스템 반도체, **빅데이터·AI**,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양자기술
세컨더리	◆ 구주 투자 목적 일반 세컨더리, 펀드 LP지분 유동화 및 M&A 목적 투자
오픈이노베이션	◆ 벤처·스타트업과의 기술제휴, 공동사업화, 해외시장 진출 등 오픈이노베이션 목적 투자

※ 자료: 한국벤처투자 2025년 스타트업코리아펀드 조성계획

□ 그런데 위 펀드의 초격차·글로벌 분야 출자 대상 자펀드를 살펴보면 로봇, 빅데이터·AI 분야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별도의 산업 분야는 설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펀드를 통해서 로봇,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안전기업에도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참고로, 모태펀드 외 다른 정책펀드의 경우를 살펴보아도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인 혁신성장펀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펀드인 AI 혁신펀드 등에서도 로봇, AI 기술 관련 품목에 해당하거나 해당 기술을 접목·활용하는 인공지능·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기업을 주목적 투자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는 모태펀드 내에 재난안전산업 계정을 신설하여 경찰청과 함께 각 50억원 씩 출자하고, 출자분야를 재난안전산업과 치안산업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자펀드 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펀드가 결성된 이후에는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민간운용사가 달라짐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와 치안산업 분야의 투자대상이 중복될 우려도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사전 준비 과정에서 기존 정책펀드에서 재난안전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현황을 조사하고 추후 한국벤처투자, 자펀드 운용사와 협의하여 타 정책펀드와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공동 출자자인 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국민안전산업펀드 내에서 산업 분야별 중점 투자대상이 구분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셋째,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등에서 재난안전산업·치안산업 분야 기업들에 대한 제품·기술 상용화, 판로 개척 및 컨설팅 등 직·간접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직·간접적 지원의 확대를 통한 산업 진흥·발전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정책펀드와 비교하여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2026년 예산안 기준 재난안전산업·치안산업 분야 주요 지원 사업]

(단위: 백만원)

소관부처	사 업 명	내 용	예산액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활성화	재난안전제품인증제도 운영,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 해외 수출역량 강화 지원, 판로개척 지원, 우수 안전기술 개발·발굴	3,004
	재난안전산업 우수 기술개발 지원(R&D)	재난안전 융합기술 고도화 지원, 재난안전 맞춤형 사업화 지원	2,000
	재난안전산업 기술사업화지원(R&D)	중소기업의 기개발된 기술 대상으로 기술 고도화 및 제품·기술 개발 출연금 교부, 재난안전기업의 사업화 지원 연구과제 발굴 및 제품·기술 개발 출연금 교부	7,465
경찰청	과학치안공공연구성과 실용화촉진시범사업(R&D)	원천기술 또는 치안분야 연구성과의 현실화 및 기술고도화 목표 출연금 교부	1,440
	치안신산업핵심기술사업화지원(R&D)	경찰청의 주요 임무와 R&D 성과분석에 기반한 중점분야별 사업화 지원	820
	미래치안기반조성	국제치안산업대전 등 판로개척 지원, 직무발명활성화 및 특허등록 지원,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지원, 산·학·연 및 부처 간담회 개최	1,497
소방청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	소방장비 기업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 컨설팅 지원, 첨단 소방장비 구매	866
	소방산업육성지원	국제소방안전박람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614

□ 위와 같은 직·간접적 지원은 재난안전산업의 영세성과 기술·제품에 대한 공공수요의 필요성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가 설정하는 특정한 정책 목표에 부합하도록 재정을 운용할 수 있고, 정책 수혜자인 기업의 수요도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펀드 보다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 추진 이전에 재난안전산업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기존 정책수단 대비 정책펀드의 실효성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등 전반적인 재난안전산업 지원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27.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3032-509)

○ 내역사업 ‘재난안전 영상분석 인공지능 실증’은 2026년 산불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불 AI 학습데이터 제작 및 산불 탐지 AI 알고리즘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데, 산림청에서 2026년 계획하고 있는 ‘AI 기반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 사업’과 AI 알고리즘 개발 측면에서 유사한 내용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의 세부 추진 과제 중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에 대한 데이터 연계 및 품질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과제 내용이 세부사업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 중 내역사업 ‘재난안전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바, 동 사업의 세부 추진 과제 내용을 재검토하여 사업별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공지능 영상분석 학습데이터 플랫폼 구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통해 AI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50억 7,500만원 대비 72억 9,400만원이 증액된 123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 (정보화)	3,251	5,075	12,369	7,294	143.7
지능형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ISP	431	-	-	-	-
지능형 표준 영상분석 시험개발 및 시범적용	820	-	-	-	-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2,000	1,760	1,554	△206	△11.7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	-	3,315	3,135	△180	△5.4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	-	7,680	순증	순증

나. 재난안전 영상분석 인공지능 실증 사업의 추진 계획 재정비 필요

□ 내역사업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은 민간영역에서 개발이 어려운 재난분야 학습데이터 구축 및 재난식별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고도화·실증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대비 2억 600만원이 감액된 15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1~2024년 지능형 선별관제를 적용한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 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잦은 오탐으로 인해 현장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음.

[2021~2024년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연계 CCTV 대수]

연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통합관제센터 수	광역: 3개 기초: 221개	광역: 3개 기초: 218개	광역: 4개 기초: 212개	광역: 5개 기초: 212개
총 CCTV 대수	494,863대	541,018대	599,142대	650,423대
지능형 선별관제 적용 CCTV 대수	139,126대	173,452대	205,845대	244,065대

(자료 : 행정안전부)

□ 이에 동 사업은 지능형 선별관제 CCTV의 오탐률을 낮추기 위해 민간영역에서 개발이 어려운 AI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재난 식

별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는 목적으로 2024년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을 거쳐 2025년에는 2024년의 집중호우 피해를 반영하여 '침수 탐지 AI 모델 구현 및 학습데이터 학습효과 실증 및 고도화'를 추진 중에 있음.

□ 2026년에는 2025년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를 고려하여 산불에 특화된 생성형 AI를 활용한 산불 AI 학습데이터 제작 및 산불 탐지 AI 알고리즘 개발을 계획하고 있음.

[재난안전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 실증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1,554백만원 (민간위탁사업비 320-02)	◆ 재난 분야 학습데이터 제작 x 1식 = 524백만원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생성 AI 개발 x 1식 = 450백만원 ◆ 산불탐지 AI 알고리즘 개발 x 1식 = 450백만원 ◆ 위탁사업 수행경비 x 1식 = 130백만원

□ 그런데 2026년도 산림청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동 사업과 같이 산불 재난 상황에 대한 탐지를 목적으로 AI 알고리즘을 개발하려는 목적의 세부사업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R&D)(1544-327)' 중 내역사업 'AI 기반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에 114억 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AI 기반 대형산불 대응 지능형 솔루션 기술개발 사업 개요]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 적</td><td>AI기반 산불진화자원 통합배치 및 초기 긴급대응 체계 구축</td></tr>
<tr><td>세부 과제 내용</td><td>
<table>
<tr><th>과제명</th><th>기간</th><th>내용</th></tr>
<tr><td>❶딥러닝 기반 산불·연무 확산속도 예측 알고리즘 개발</td><td>2년</td><td>산불·연무 위치 및 확산 속도 등 예측 알고리즘 개발</td></tr>
<tr><td>❷대형산불 대응 최적 진화자원 진입로·대피로 분석과 이해관계자 맞춤형 정보공유 기술개발</td><td>2년</td><td>민간인, 진화대원 대상 상황별 맞춤형 정보 실시간 제공 기술개발</td></tr>
<tr><td>❸군집 드론을 활용한 대형산불 초기 긴급대응 기술개발</td><td>2년</td><td>군집 드론 활용 산불 발생 초기 긴급 대응 지원기술 개발</td></tr>
<tr><td>❹산불화선 자동탐지 연계 기술개발</td><td>5년</td><td>산불 화선 자동탐지 및 산림청 산불 시스템 실시간 연계 기술개발</td></tr>
<tr><td>❺AI 기반 공중·지상 산불진화자원 통합 배치 및 의사결정 체계 개발</td><td>5년</td><td>산불 진화 자원의 최적 배치할 수 있는 AI 기반 통합 의사 결정 지원 체계 개발</td></tr>
</table>
</td></tr>
<tr><td>사업 기간</td><td>2025 ~ 2029년</td></tr>
<tr><td>2026년 예산안</td><td>11,447백만원</td></tr>
</table>

※ 자료: 산림청

□ 최근 발생한 대형 재난 유형을 반영한 재난 식별 AI 알고리즘 개발과 AI 학습데이터 구축은 발생한 재난에 대한 사후적 분석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재난에 대한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행정안전부는 해당 재난 유형의 재발 가능성이나 AI 알고리즘 개발 및 학습데이터 구축 이후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다른 부처의 사업과 유사한 내용으로 사업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 사업의 경우 산림청과 협력을 모색하고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사업을 계속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부처에서 추진 중인 AI 알고리즘 개발 및 학습데이터 구축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과의 유사·중복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의 예산 편성 내역 재검토 필요

□ 내역사업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은 과학적 재난관리를 위해 데이터를 통합하고 표준화된 데이터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대규모의 고품질 AI 학습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76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 주요 내용]

구 분	예산안	주요 내용
재난안전 데이터 품질관리	1,440백만원	◆ AI 알고리즘 편향성을 줄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고품질 재난안전데이터 확보 관리체계 마련 ◆ 재난유형별 학습데이터셋 구축을 위한 가이드·매뉴얼 마련, 품질관리 진단·평가 및 오류개선 지원
AI 학습용 지능형 데이터 확보	6,240백만원	◆ 재난안전 문제해결형 지능형 데이터 구축 ◆ 정형-비정형 데이터가 결합된 멀티모달 데이터 수집·정제·가공을 통한 AI 학습데이터 생성 ◆ 중앙·지역 현안과 연계한 학습데이터 증강 ◆ 재난안전 AI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 제공 확대를 위한 오픈 AI 서비스 개발

※ 자료: 행정안전부

□ 동 내역사업은 재난안전 분야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목표로 8개의 세부과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과업들은 특정 분야의 학습데이터의 제작, 가공, 비정형 데이터의 정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의 세부 추진 과제]

(단위: 백만원)

연번	과업명	예산안
1	위치기반 재난상황 자동 요약 AI 학습데이터 구축	1,195
2	위성영상 활용 피해 평가 AI 학습데이터 구축	1,005
3	인공강우 실험 모형 및 침수 데이터 구축	800
4	재난 취약 지형 AI 학습데이터 구축	705
5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1,440
6	위성-드론-CCTV 교차정합 데이터셋 구축	1,005
7	중앙-지자체 AI 학습데이터 구축	1,410
8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및 해커톤 개최	120
합 계		**7,680**

※ 자료: 행정안전부

□ 이 중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과제는 2025년 1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이하 “공유플랫폼”이라 한다)’에 대해 600종의 데이터를 직접 연계하고, 연계 방식·주기·정합성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개요]

<table>
<tr><th>구분</th><th>내 용</th></tr>
<tr><td>구축
경과</td><td>
<table>
<tr><th>구 분</th><th>‘22년</th><th>‘23년</th><th>‘24년</th></tr>
<tr><td>재난유형</td><td>지진 등 10종</td><td>가뭄 등 20종</td><td>황사 등 27종</td></tr>
<tr><td>연계 시스템(누적)</td><td>6개</td><td>27개</td><td>81개</td></tr>
<tr><td>연계 데이터(누적)</td><td>710개</td><td>1,295개</td><td>1,800개</td></tr>
<tr><td>기능 개발</td><td>웹사이트 개발</td><td>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td><td>표준API 등 공유
확산</td></tr>
</table>
</td></tr>
<tr><td rowspan="3">운영
내용</td><td>◆ 재난유형별 데이터 수집·연계
-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흩어진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합</td></tr>
<tr><td>◆ 재난안전데이터 개방
- 산사태·지진·가뭄·황사 등 57종 재난유형의 1,800여개 재난안전데이터를 수집하여 공개</td></tr>
<tr><td>◆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 모든 데이터는 오픈API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개방, 개발자가 피해 예측 분석 등 재난안전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td></tr>
</table>

※ 자료: 행정안전부

□ 한편, 공유플랫폼의 구축·운영은 데이터 연계를 포함한 유지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세부사업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3032-501)’ 중 내역사업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데,

신규 내역사업인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의 세부 추진과제 중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과제는 현재 공유플랫폼에 연계되어 있는 1,800종의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진단·평가를 수행하고,

추가적으로 600종의 재난안전데이터를 직접 연계하는 등 공유플랫폼의 운영에 포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동 내역사업에 해당 과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기존 사업인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해 수행하거나,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 관련 별도의 세부사업을 편성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 사업과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과제 비교]

구 분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세부사업명	재난행정정보화(정보화)(3032-501)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3032-509)
내역사업명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운영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
사업/과제 목적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시스템 유지관리	재난안전데이터 품질제고를 위한 데이터 관리체계(연계방식, 표준 등) 마련
관련 정보시스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수행기관	민간위탁(한국지역정보개발원)	민간위탁(예정)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	[299백만원] · SW개발비 3,104백 × 8.1% + 상용SW 도입 589백 × 8.1% : 299백만원	[1,440백만원] ·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체계 마련(연계방안 및 가이드 마련 등) : 450백만원 · 연계방식 변경에 따른 SW 개발 : 870백만원 · 데이터 비식별 처리를 위한 개인정보 SW 도입 : 120백만원

※ 자료: 행정안전부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내역사업 ‘재난안전 AI 데이터 체계적 제공’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재난안전데이터 품질관리’ 과제의 목표 및 내용 등을 재검토하여 사업별 목적 및 내용에 부합하는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자연재난실】

28.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2731-304)

○ 내역사업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은 자격시험 시행을 앞두고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자격시험 시행을 위탁 수행할 기관이 선정되어 있지 않아, 향후 자격시험 시행을 위탁받아 수행할 시험 실시 기관에 행정안전부에서 진행을 계획하고 있는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연계될 수 있을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시험 실시 기관을 조속히 선정한 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실제 시험 실시 업무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가. 개 요

□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은 이론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종합적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21억 1,000만원 대비 2억원이 증액된 23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재난관리 전문인력 양성	2,384	2,110	2,310	200	9.5
재난관리 분야 전문인력 양성	500	450	450	-	-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	1,600	1,440	1,440	-	-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 위탁	100	120	120	-	-
재난관리분야 표준교재 개발	94	100	100	-	-
재난관리전문인력 양성 생태계 구축	90	-	-	-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	-	-	200	순증	순증

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시험 실시 기관의 조속한 선정 및 연구용역 발주기관 재검토 필요

□ 내역사업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운영’은 2024년 3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63]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5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공인재난관리사 국가전문자격 제도의 원활한 정착·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공인재난관리사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기획 및 재난상황에 대한 효과적 관리를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해당 자격을 통해 재난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성 및 업무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격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시험횟수	매년 1회
시험과목	(1차시험) 객관식 / (2차시험) 주관식(논술형)
합격결정	(1차시험·2차시험) 각 과목별 40점 이상, 전 과목 60점 이상 득점자 중 총점이 높은 사람
자격발급	2차시험 합격 후 연수과정 수료 시 자격증 발급
자격심의위원회	위원장(재난안전관리본부장) 포함 9~13인

※ 자료: 행정안전부

1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3(공인재난관리사 자격증 교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업무수행 역량을 검정하는 자격시험(이하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공인재난관리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2025년을 기준연도로 하여 2027년까지 시험 실시를 위탁 수행할 기관의 선정,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 등 자격시험 제반 마련을 통해 2028년부터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며, 2025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개정하고, 자격제도 정착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함.

[2025년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관련 주요 업무추진 현황]

구 분	기 간	주요 내용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025. 1~3월	■ 시험과목 및 방법 규정 ■ 합격자 결정 방식 규정 ■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정착방안 연구용역	2025. 4~11월	■ 재난관리 분야 NCS 개발방안 마련 ■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수립 ■ 공인재난관리 자격증 활성화 방안 마련

※ 자료: 행정안전부

□ 자격시험 제반 마련의 과정에서 2026년에는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시험 문제 출제 및 모의평가를 위한 일반연구비(260-01)로 2억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였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참조한 국가전문자격 시험의 문제출제 또는 모의평가 관련 유사 연구용역 현황을 살펴보면,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주관 부처가 아닌 실제 자격시험 실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 문제출제 또는 모의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음.

[국가전문자격 시험 문제출제·모의평가 관련 유사 연구용역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소관부처	시험명	시험실시기관	연구용역 내용	용역 발주기관	용역 금액
2024년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문제출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95
2024년	농식품부	스마트농업관리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모의평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300

※ 자료: 행정안전부

□ 소관부처가 아닌 실제 시험 실시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에서 문제출제 또는 모의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자격시험 실시의 범위 안에 문제출제 또는 모의평가 실시가 통상 포함되고, 연구용역의 결과를 실제 시험 문제출제에서의 시사점이나 보완점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까지 시험 실시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선정하지 못하였는데, 이로 인해 선행 단계로서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기관과 이어지는 실제 시험 문제출제를 수행하는 기관이 달라지면서,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 연구용역 결과가 향후 정해질 실제 시험 문제출제 과정에 반영될 수 있을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가전문자격인 기업재난관리사 제도를 도입할 당시 2013년 시험 실시 기관(기업재해경감협회)을 먼저 선정하였고, 이후 시험 실시 기관에서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를 진행한 후 2014년 실제 시험을 실시한 바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시험 실시 기관을 조속히 선정한 후 해당 기관에서 문제출제 및 모의평가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그 결과를 실제 시험 실시 업무에 직접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164].

164)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인재난관리사 자격제도 정착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시험 실시 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 마련 후 적합한 기관을 '시험시행 준비 용역기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29.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2733-303)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사업을 통해 실시되는 ‘안전한국훈련’은 훈련 기획 및 설계, 훈련 실시, 훈련 환류 단계로 추진체계가 설계되어 있는데, 훈련 환류 단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적용되는 평가지표가 형식적인 측면이 있어 훈련 결과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내실 있는 환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바, 훈련 기획 및 설계, 훈련 실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행정안전부·민간전문가의 컨설팅을 훈련 환류 단계에도 포함시키고, 훈련 환류 단계의 평가에 가점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지표의 개선과 실질적인 훈련 환류체계 강화가 필요함.

가. 개 요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은 재난관리책임기관들의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20억 4,200만원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9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사업 예산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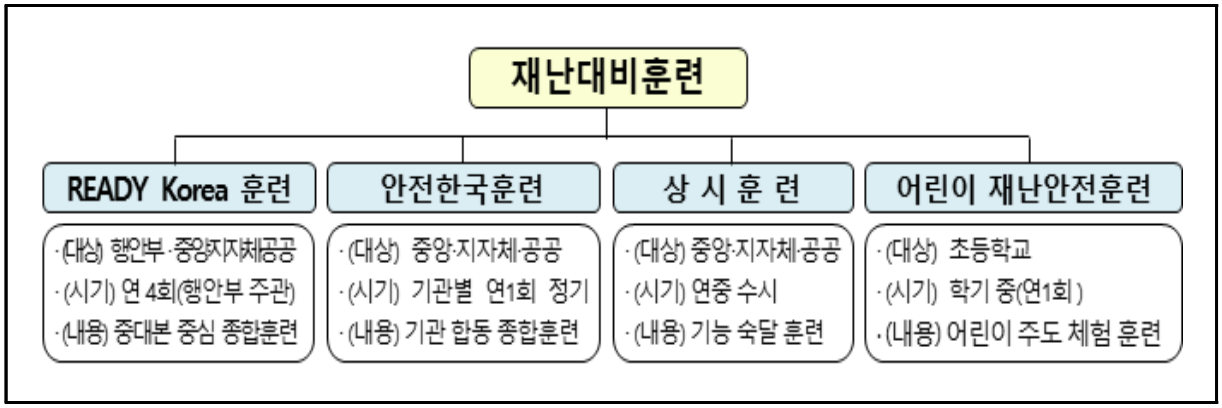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1,860	2,042	1,942	△100	△4.9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880	1,062	962	△100	△9.4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보조)	980	980	980	-	-

나. 안전한국훈련 환류 단계의 평가지표 개선 및 실질적인 환류 체계 강화 필요

□ 세부사업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은 READY Korea훈련,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어린이 재난안전훈련 등 4가지 국가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임.

[국가재난대비훈련 체계]



※ 자료: 행정안전부

□ 이 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소관 분야의 재난 대응·수습체계를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5년 최초 실시되었고, 2024년부터는 반기별로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을 설정하여 연 2회 실시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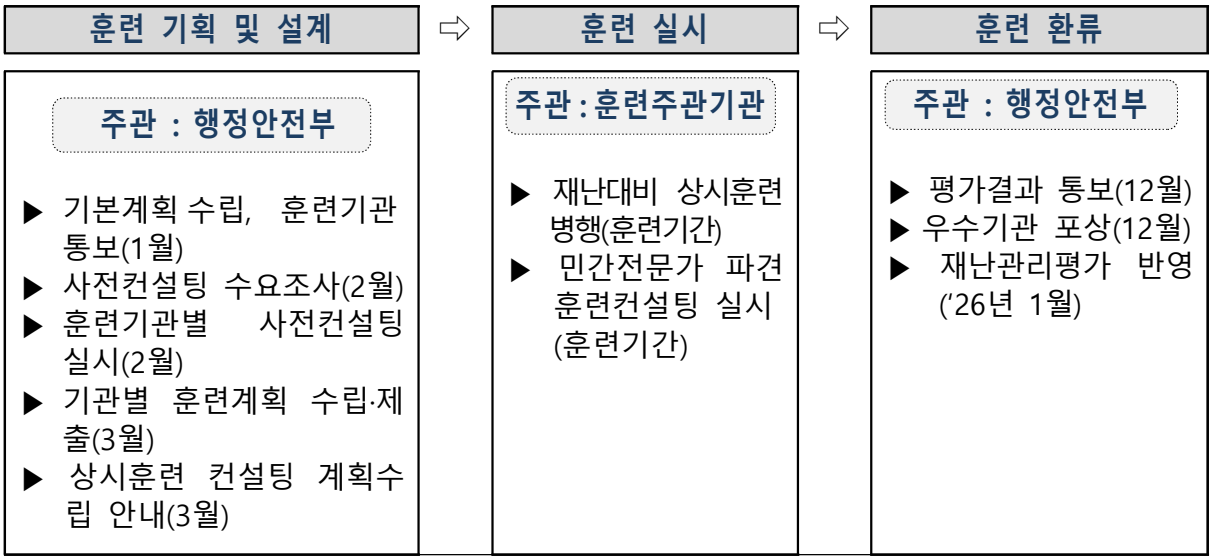
[2025년 안전한국훈련 추진 사항]

구 분	상반기(5.12.~23.)	하반기(10.20.~10.31.)
참여기관	(중앙행정기관) 1개 (지방자치단체) 69개 (공공기관) 36개	(중앙행정기관) 18개 (지방자치단체) 150개 (공공기관) 29개
주요 재난 및 사고 유형	풍수해, 산사태, 지진, 도로 터널사고, 철도사고, 화학물질유출, 선박사고 등	다중밀집시설 화재, 산불, 경기장·공연장 인파사고, 감염병, 가축질병, 폭설·결빙 등

※ 자료: 행정안전부

□ 안전한국훈련의 전반적인 추진체계를 살펴보면, 계획 수립 단계, 훈련 실시 단계, 평가 및 환류 단계로 구분되는데 행정안전부는 계획 수립 단계에서 훈련기관별 사전 컨설팅을 수행하고, 훈련 실시 단계에서 민간전문가의 훈련 컨설팅을 실시하여 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2025년 안전한국훈련 추진체계]



(자료 : 행정안전부)

□ 안전한국훈련 실시 후 평가는 위 추진체계 상 훈련 단계별로 평가영역 및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일정한 배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평가 주관 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기관유형별 재난 상황 시 역할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 시·군·구, 공공기관별로 평가지표(안)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 그러나, 훈련 환류 단계의 평가영역은 '개선 및 환류의 적정성'으로, 평가지표는 '개선계획 수립의 적절성'으로 모든 기관유형이 동일한 지표를 적용받고, 총 평가 배점(90점)의 10%에 불과한 9점의 배점이 배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역시 훈련결과 점검·개선회의 실시 여부 등을 확인하는 '추진의 적절성' 기준과 훈련 실시 후 작성한 개선계획서에 일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하는 '작성의 충실성' 기준 등 형식적인 측면만을 평가하고 있음.

[안전한국훈련 평가지표 - 훈련 환류 단계]

구 분	내 용	
평가분류	개선 및 환류의 적정성	
평가지표	개선계획 수립의 적절성	
평가기준	⑴ 추진의 적절성	① 훈련결과 점검·개선회의 실시 ② 개선계획 수립 ③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사항 포함 ④ 기관장 결재

구 분	내 용	
	⑵ 작성의 충실성	① 전년도 수립한 개선계획이 적절히 추진되었고 올해 훈련에 반영됨 ② 훈련 평가 중에 발견된 문제점, 현안사항 포함 ③ 개선 및 조치사항의 담당자(책임부서) 지정(배정) ④ 개선에 필요한 제반사항(조직, 예산, 일정 등) 포함 ⑤ 개선 및 조치사항의 추적관리를 위한 절차 마련
평가방법	⑴ 추진의 적절성	①~④별로 해당 시 각 1점, 미해당 시 각 0점
	⑵ 작성의 충실성	①~⑤에 대해 5개 해당(5점), 3~4개 해당(3.5점), 1~2개 해당(2점), 0개 해당(0점)
	종합	총점 9점 배점 (전체 평가 배점의 10%)

(자료 : 행정안전부)

□ 재난대비훈련에 있어서 훈련의 사전적인 기획 및 설계의 준비성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의 실시도 중요하나, 훈련 결과에 대한 정밀한 평가와 내실 있는 환류가 이루어져야 훈련의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재난 예방 및 대응 과정에 있어서 기관별로 보완이 필요한 취약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환류 단계의 평가지표와 관련하여 평가 기준을 실질화하여 각 기관이 훈련 결과에 대해 자체적인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관련 환류체계를 강화함으로써 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현행 안전한국훈련 추진체계 중 훈련 기획 및 설계, 훈련 실시 단계에서 각각 이루어지는 행정안전부 또는 민간전문

가의 컨설팅을 훈련 환류 단계에도 포함시키고, 행정안전부 또는 민간전문가의 훈련 결과 관련 컨설팅 수행 여부 등을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 평가지표의 평가기준 중 ‘작성의 충실성’과 관련하여 전년도 수립한 개선계획의 적절한 추진과 반영에 대해서는 훈련 환류 단계 평가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각 기관이 자체적인 훈련 환류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0.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2635-300)

○ 내역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의 내내역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는 2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4,904억 7,100만원 대비 16.7% 증액된 5,723억 9,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재원이 투입된 사업지구 중 실집행이 부진하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 확보가 어려운 사업지구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행정안전부는 2026년 신규 사업 물량 55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 물량을 2025년보다 더 크게 계획하고 있으므로, 실집행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은 재해위험지구 정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을 통해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각종 재해취약 요인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8,741억 5,400만원 대비 1,746억 5,600만원이 증액된 1조 488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69,666	874,154	1,048,810	174,656	20.0
재해위험지구정비	484,578	469,782	593,517	123,735	26.3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149,096	108,099	112,997	4,898	4.5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217,813	285,773	341,929	56,156	19.7
스마트계측관리시스템 구축	15,400	7,700	-	순감	순감
재해예방사업의 효율적 관리	279	300	367	67	22.3
급경사지 실태조사	2,500	2,500	-	순감	순감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의 집행 부진 사업지구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내역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의 내내역사업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는 「자연재해대책법」[165]에 근거하여 7개 유형[166]의 피해 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방식으로 국비가 50%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집행하는 사업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 추진 절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	정비 중기계획(5년마다) 및 사업계획(매년) 수립	⇒	국고보조금 지자체 보조	⇒	정비사업 시행
법 제12조 (시장·군수·구청장)		법 제13조, 제14조 (시장·군수·구청장)		(행정안전부)		(시·도, 시·군·구)

※ 자료: 행정안전부

165)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6) ① 침수(시가지, 하천 등), ② 유실(교량, 암거 등), ③ 고립(교통두절 마을 등), ④ 취약방재(제방·배수문·유수지·저류지 등), ⑤ 해일(지진·폭풍해일·너울성 파도 등), ⑥ 붕괴(급경사지·산사태 등), ⑦ 상습가뭄(3년간 제한급수, 논 물마름 반복지역 등)

□ 동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21개소에 대한 국고보조를 목적으로 4,379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5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437개소(계속 382개소, 신규 55개소)에 대한 국고보조를 위해 5,72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874,154	944,332	1,048,810	174,656	20.0
재해위험지구정비	469,782	522,282	593,517	123,735	26.3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437,971	490,471	572,394	134,423	30.7

□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계속 사업 중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연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지구 8개소와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사업지구 25개소를 선정하여 총 33개소에 대해 추가적인 국고보조를 목적으로 5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33개소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지역	사업지구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5년				
			추경 전	추경 후		본예산	추경(A)	집행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계	33개소				35,801	88,301	88,301	49,726	56.3%
1	대전 서구	정림	2021.1 ~2027.6	2021.1 ~2026.12	42,000	3,105	4,105	4,105	3,535	86.1%
2	대전 유성구	구암2	2024.1 ~2026.6	2024.1 ~2025.12	6,840	171	3,120	3,120	-	0%
3	경기 연천군	동막	2021.1 ~2026.6	2021.1 ~2025.12	30,533	3,594	4,448	4,448	3,020	67.9%
4	경기 포천시	포천	2022.1 ~2028.12	2022.1 ~2028.6	49,000	2,818	3,818	3,818	3,818	100%
5	강원 원주시	문막교	2022.1 ~2028.12	2022.1 ~2028.6	33,188	250	2,250	2,250	961	42.7%
6	강원 강릉시	우암	2022.1 ~2028.6	2022.1 ~2027.6	21,646	1,377	2,877	2,877	1,989	69.1%
7	충북 충주시	용원	2021.1 ~2026.12	2022.1 ~2026.6	7,988	449	1,449	1,449	449	31%
8	충북 진천군	용몽	2021.1 ~2027.6	2021.1 ~2026.12	31,500	1,783	4,783	4,783	1,481	31%
9	충북 충주시	상대촌	2022.1 ~2027.6	2022.1 ~2026.12	9,900	250	750	750	533	71.1%
10	충북 옥천군	적하	2021.1 ~2028.6	2021.1 ~2027.12	16,300	1,289	1,789	1,789	966	54%
11	충북 진천군	돌팩이	2023.1 ~2028.6	2021.1 ~2027.12	7,862	393	893	893	797	89.2%
12	전남 목포시	임성	2021.1 ~2028.6	2021.1 ~2027.12	38,560	600	2,600	2,600	600	23.1%
13	전남 장흥군	고읍	2023.1 ~2028.12	2023.1 ~2028.6	26,320	-	300	300	-	0%
14	전남 무안군	청수1	2025.1 ~2026.6	2025.1 ~2025.12	3,000	15	1,500	1,500	18	1%
15	전남 무안군	현경	2022.1 ~2026.6	2022.1 ~2025.12	12,000	373	1,401	1,401	1,034	73.8%
16	전남 구례군	선월	2021.1 ~2028.12	2021.1 ~2028.6	31,300	250	3,250	3,250	700	21.5%
17	경북 포항시	자호	2021.1 ~2028.12	2021.1 ~2028.6	44,900	1,596	2,046	2,046	632	30.9%
18	경북 포항시	가사	2022.1 ~2028.6	2022.1 ~2027.12	30,500	1,525	1,975	1,975	597	30.2%
19	경북 포항시	골안	2022.1 ~2026.12	2022.1 ~2026.6	6,470	250	750	750	204	27.2%
20	경북 포항시	자명	2022.1 ~2026.12	2022.1 ~2026.6	9,900	250	1,000	1,000	225	22.5%

(단위: 백만원)

연번	지역	사업지구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5년				
			추경 전	추경 후		본예산	추경 (A)	집행액	실집행액 (B)	실집행률 (B/A)
21	경북 안동시	오대1	2021.1 ~2027.6	2021.1 ~2026.12	14,308	429	2,429	2,429	429	17.7%
22	경북 상주시	강창교	2022.1 ~2028.6	2022.1 ~2027.12	53,662	2,414	5,414	5,414	4,566	84.3%
23	경북 상주시	함창(구향)	2021.1 ~2027.12	2021.1 ~2027.6	32,996	990	3,490	3,490	990	28.4%
24	경북 영덕군	강구(구)교	2018.1 ~2026.6	2018.1 ~2025.12	41,352	0	4,696	4,696	3,953	84.2%
25	경북 고령군	고방	2021.1 ~2027.6	2021.1 ~2026.12	22,500	1,675	2,675	2,675	2,675	100%
26	경북 고령군	치산	2022.1 ~2028.6	2022.1 ~2027.12	41,370	1,511	2,511	2,511	1,639	65.3%
27	경북 예천시	오류	2021.1 ~2028.6	2021.1 ~2027.12	45,180	1,829	4,829	4,829	4,829	100%
28	경북 예천군	느티바우	2023.1 ~2027.6	2023.1 ~2026.12	8,082	200	1,200	1,200	-	0%
29	경북 울진군	읍남4-3	2022.1 ~2027.6	2022.1 ~2026.12	24,754	1,238	3,872	3,872	1,730	44.7%
30	경북 봉화군	운곡천	2024.1 ~2026.6	2024.1 ~2025.12	4,995	631	1,498	1,498	316	21.1%
31	경남 창녕군	용석2	2020.1 ~2026.6	2020.1 ~2025.10	23,322	1,166	2,821	2,821	2,821	100%
32	경남 창녕군	운봉	2021.1 ~2026.6	2021.1 ~2025.10	20,267	1,000	1,882	1,882	1,882	100%
33	경남 양산시	북부	2021.1 ~2027.12	2021.1 ~2027.6	41,286	2,380	5,880	5,880	2,340	39.8%

※ 자료: 행정안전부

* : 연내 조기에 준공가능한 사업지구(8개소)

** 2025년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은 9월 말 기준임.

□ 그런데 2025년 9월 기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국비 보조가 이루어진 33개소 전체의 실집행률은 56.3%에 불과하며, 연내 준공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국고보조를 추가 지원한 8개소 중 실집행률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지구가 3개소가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중 대전 유성구 구암2지구와 전남 무안군 청수1지구는 각각 실집행률이 0%, 1%에 불과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연내 준공 가능 사업지구(8개소)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지역	사업지구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5년				
		추경 전	추경 후		본예산	추경(A)	집행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대전 유성구	구암2	2024.1~2026.6	2024.1~2025.12	6,840	171	3,120	3,120	-	0%
경기 연천군	동막	2021.1~2026.6	2021.1~2025.12	30,533	3,594	4,448	4,448	3,020	67.9%
전남 무안군	청수1	2025.1~2026.6	2025.1~2025.12	3,000	15	1,500	1,500	18	1%
전남 무안군	현경	2022.1~2026.6	2022.1~2025.12	12,000	373	1,401	1,401	1,034	73.8%
경북 영덕군	강구(구)교	2018.1~2026.6	2018.1~2025.12	41,352	0	4,696	4,696	3,953	84.2%
경북 봉화군	운곡천	2024.1~2026.6	2024.1~2025.12	4,995	631	1,498	1,498	316	21.1%
경남 창녕군	용석2	2020.1~2026.6	2020.1~2025.10	23,322	1,166	2,821	2,821	2,821	100%
경남 창녕군	운봉	2021.1~2026.6	2021.1~2025.10	20,267	1,000	1,882	1,882	1,882	100%

※ 자료: 행정안전부

* 2025년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은 9월 말 기준임.

□ 사업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으로 추가 국고보조를 투입한 25개소의 경우에도 60%에 해당하는 15개소가 실집행률 50%에 미치지 못하는 등 실집행 실적이 부진하여 상당한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기간 단축 사업지구 중 실집행 부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지역	사업지구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5년				
			추경 전	추경 후		본예산	추경(A)	집행액	실집행액(B)	실집행률(B/A)
1	강원 원주시	문막교	2022.1 ~2028.12	2022.1 ~2028.6	33,188	250	2,250	2,250	961	42.7%
2	충북 충주시	용원	2021.1 ~2026.12	2022.1 ~2026.6	7,988	449	1,449	1,449	449	31%
3	충북 진천군	용몽	2021.1 ~2027.6	2021.1 ~2026.12	31,500	1,783	4,783	4,783	1,481	31%
4	전남 목포시	임성	2021.1 ~2028.6	2021.1 ~2027.12	38,560	600	2,600	2,600	600	23.1%
5	전남 장흥군	고읍	2023.1 ~2028.12	2023.1 ~2028.6	26,320	-	300	300	-	0%
6	전남 구례군	선월	2021.1 ~2028.12	2021.1 ~2028.6	31,300	250	3,250	3,250	700	21.5%
7	경북 포항시	자호	2021.1 ~2028.12	2021.1 ~2028.6	44,900	1,596	2,046	2,046	632	30.9%
8	경북 포항시	가사	2022.1 ~2028.6	2022.1 ~2027.12	30,500	1,525	1,975	1,975	597	30.2%
9	경북 포항시	골안	2022.1 ~2026.12	2022.1 ~2026.6	6,470	250	750	750	204	27.2%
10	경북 포항시	자명	2022.1 ~2026.12	2022.1 ~2026.6	9,900	250	1,000	1,000	225	22.5%
11	경북 안동시	오대1	2021.1 ~2027.6	2021.1 ~2026.12	14,308	429	2,429	2,429	429	17.7%
12	경북 상주시	함창(구향)	2021.1 ~2027.12	2021.1 ~2027.6	32,996	990	3,490	3,490	990	28.4%
13	경북 예천군	느티바우	2023.1 ~2027.6	2023.1 ~2026.12	8,082	200	1,200	1,200	-	0%
14	경북 울진군	읍남4-3	2022.1 ~2027.6	2022.1 ~2026.12	24,754	1,238	3,872	3,872	1,730	44.7%
15	경남 양산시	북부	2021.1 ~2027.12	2021.1 ~2027.6	41,286	2,380	5,880	5,880	2,340	39.8%

※ 자료: 행정안전부

* 2025년 집행액, 실집행액, 실집행률은 9월 말 기준임.

□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된 사업지구의 실집행 부진 현황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서 동 사업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0.7%,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6.7% 규모로 증액하여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 물량 55개소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 물량도 2025년 대비 증가하였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실집행 부진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 추진 경과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각 사업지구 개소별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예산의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사회재난실】

31.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2735-309)

○ 내역사업 '피해지원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생활지원금 지원'은 신청인이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 인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는 구조인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이 2026년 5월 20일에 도래함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22일 기준 누적 피해자 인정 신청건수가 618건인 것에 대비하여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사건수는 120건에 불과하므로, 신청기한 도래 이전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피해자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건수를 확대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은 10·29이태원참사의 피해자·유가족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5억 4,500만원 대비 28억 4,800만원이 증액된 33억 9,300만원이 편성되었음.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A)	추경			%
10·29참사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160	545	2,089	3,393	2,848	522.6
지원단 운영	160	545	545	500	△45	△8.3
피해지원사업	-	-	1,244	974	순증	순증
추모사업	-	-	300	1,919	순증	순증

나. 피해자 인정 및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을 고려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 필요

□ 내역사업 ‘피해지원사업’은 10·29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지원금 지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고용유지비용 지원, 법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2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26년 예산안에는 2억 7,000만원이 감액된 9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피해지원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A)			%
피해지원사업	-	1,244	974	△270	△21.7
생활지원금 지원	-	888	462	△426	△48.0
공동체회복 프로그램 지원	-	-	400	순증	순증
고용유지비용 지원	-	356	12	△344	△96.6
법률지원	-	-	100	순증	순증

□ 이 중 생활지원금 지원[167]은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16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7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을 지원하기 위해 가구당 1회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피해자 인정 신청 후 피해자로 인정받아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피해자 인정 신청과 함께 생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함.

[생활지원금 지원 단계별 절차]

피해자 인정 신청 (생활지원금 동시 신청 가능)	⇒	피해자 인정 결정	⇒	생활지원금 신청	⇒	생활지원금 결정 및 지급
종전 피해자 및 신규 피해자 신청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신청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정		피해자가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		결정된 지원액을 피해자에 지급

□ 동 내역사업은 262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6월 9일부터 각 시·군·구를 통해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아 2025년 10월 14일 기준 187가구에 대한 지급이 시작되어 5억 2,600만원이 집행되었음.

[생활지원금 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5년 예산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생활지원금 지원	-	888	526	59.2%

※ 자료: 행정안전부
* 2025.10.14. 기준
**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당시 262가구에 대한 지급을 계획함.

□ 한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내역 산출일('25. 7.31.) 기준 피해자 인정을 신청자는 452명으로 이 중 피해자 인정 결정을 받은 자는 133명이나,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피해자 인정 신청자는 627명, 피해자 인정 결정을 받은 자는 329명으로 각각 예산안 내역 산출일 대비 175명, 196명 증가하였음.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인정 결정 현황]

(단위: 명)

구 분	피해자 인정 신청			피해자 인정 결정						
일자	계	종전 피해자	신규 신청자	종전 피해자			신규 신청자			
				소계	인정	불인정	소계	인정	불인정	검토중
예산안 내역 산출일 ('25.7.31)	452	101	351	101	101	0	351	32	18	301
'25.10.31	627	175	452	175	175	0	452	154	107	191

※ 자료: 행정안전부

* 종전 피해자 : 참사 이후 위원회 구성 전까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지침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았던 자. 종전 피해자는 피해자 인정 신청할 경우 별도 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없이 피해자 인정 결정(피해자 인정 결정서 송부)하기로 결정(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1차 회의 의결, '25. 3.21.)

** 검토중 : 심사를 하였으나 증빙자료 미흡으로 피해자 인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19건)와 신청자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보완 요구 중인 경우(41건) 및 신청서 검토 중인 경우(131건)

□ 피해자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는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5년 9월 30일 기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개최 및 신규 신청자에 대한 심사 현황을 보면,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이 보류되어 재심사된 건수를 제외한 심사건수는

261건으로 2025년 10월 31일 기준 452건의 피해자 인정 신청건수의 약 57.7%에 해당함.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개요]

구분	주요내용	비고
소속	‣ 국무총리 소속	구성일 '25.2.26
구성	‣ 9명 (진상규명·인권 등 분야별 전문가 6,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위원장 : 위원 중 호선
수행 업무	‣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 피해자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피해조사,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에 관한 사항 ‣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0조

※ 자료: 행정안전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개최 및 신규 신청자 심사 현황]

(단위: 건)

구분	개최일시	심사건수	인정건수	피해자 인용률
제3차	2025-04-22	2	1	50%
제4차	2025-05-19	1	1	100%
제5차	2025-05-27	3	3	100%
제6차	2025-06-24	10	7	70%
제7차	2025-07-22	34	20	59%
'25. 7.31. 기준		50	32	64%
제8차	2025-08-26	27	0	0%
제9차	2025-09-23	51	45	88%
제10차	2025-10.24	133	77	58%
'25. 10.31. 기준		261	154	59%

※ 자료: 행정안전부
* 제1차, 제2차 회의에서는 별도의 피해자 심사 건수 없음.
** 심사건수는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이 보류되어 재심사된 건수를 제외한 수치임.

□ 생활지원금 지원의 근거가 되는「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은 2024년 5월 21일 시행되었는데,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을 동 법률의 시행 후 2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168], 2026년 5월 20일에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기한이 도래함.

□ 피해자 인정은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신청기한 도래 이전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피해자 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 결정을 신속히 수행하여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169].

16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52조(피해자 인정 신청 등)** ① 10·29이태원참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지원금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일정기간 이상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69) 참고로, 피해자 인정 신청 또는 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점인 2026년 6월 16일 이후 6개월 또는 1년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임.

(2025년 10월 27일 기준)

연번	의안번호	제안자	내 용
1	2212185	이해식의원 등 13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로 현행법보다 연장
2	2212326	용혜인의원 등 14인	피해자 인정 신청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로 현행법보다 연장
3	2212928	권칠승의원 등 14인	피해자 인정 신청기한을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1년 이내'로 현행법보다 연장

【재난복구지원국】

32. 재난구호지원(2734-301)

○ 내역사업 '재해·재난긴급구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출하기 전에 긴급구호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라 보조금으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호법」의 근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부담한 구호비용에 대해 신청을 받아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동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구호지원 수요, 과거 지원사례,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고 설명하였으나, 2022년부터 동 사업의 국고보조 신청 및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신청 98건 중 교부 미결정이 이루어진 건은 4건에 불과하여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사업 추진 절차 상에 심의 절차를 도입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재난구호지원' 은 재난으로 발생한 이재민 등에 대해 신속한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9억원 대비 3억 2,100만원이 증액된 12억 2,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재난구호지원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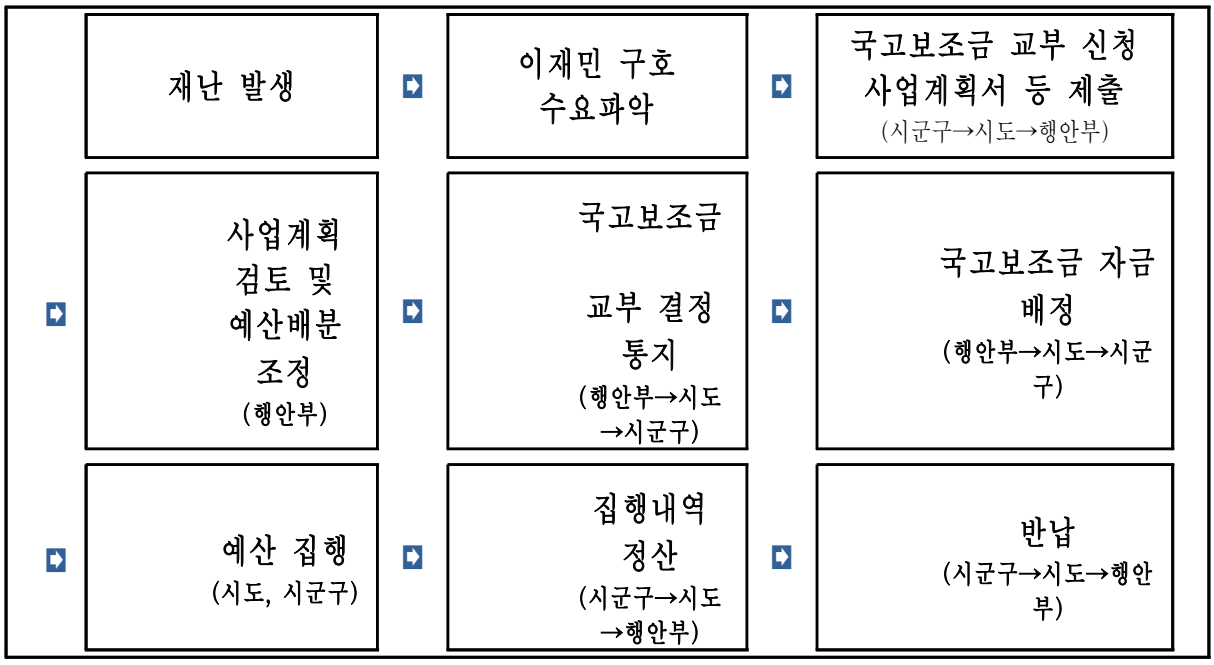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재난구호지원	1,000	900	1,221	321	35.7
재해·재난긴급구호	1,000	900	1,000	100	11.1
재난피해자통합지원	-	-	221	순증	순증

나. 법적 근거에 부합하도록 사업 추진 방식 변경 필요

□ 내역사업 ‘재해·재난긴급구호’는 이재민의 조기 생활 안정과 대국민 구호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호 역량을 국가에서 보조(보조율 100%)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9억원 대비 1억원 증액된 10억원이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재난이 발생했을 시 이재민 구호 수요를 파악하여, 시·군·구에서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국고보조금 교부를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이를 검토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재해·재난긴급구호 사업 집행절차]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법적 근거인 「재해구호법」 제13조제2항에서 구호기관[170]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에 대해 국고를 보조할 수 있다는 취지와 다르게 구호기관이 아직 부담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신청을 받아 국가가 선(先)보조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어 법적 근거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재해구호법 제13조 내용]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국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③ (생략)

□ 위 「재해구호법」 규정은 동 법에 따른 이재민 등에 대한 구호의 주체를 이재민 등 구호 대상자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호에 필요한 비용도 구호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호기관에서 이미 지출하여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 국가가 사후적으로 국고보조를 할 수 있는 취지라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추진 방식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에 부합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미 부담한 구호비용에 대하여 신청을 받아 이를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170) **「재해구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구호기관"이란 제3조에 따른 구호 대상자(이하 "이재민등"이라 한다)의 거주지 또는 재해 발생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의 실질화 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 ‘재해·재난긴급구호’는 앞서 살펴본 절차와 같이 구호 수요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검토하여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교부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집행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신청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① 이재민·일시대피자 발생 수 등 구호지원 수요, ② 과거 지원사례, ③ 해당 지자체의 재정력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고 설명함.

□ 그러나 2022~2024년 동 사업을 통한 국고보조금 신청 및 교부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기간 동안 전체 신청건수 98건에 대해 교부 미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4건에 불과한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설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기준이 형식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22~2024년 재해·재난긴급구호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현황]

(단위: 건, 백만원)

연도	신청건수	교부건수	미교부건수	집행액(교부액)
2022	23	22	1	1,000
2023	35	32	3	1,000
2024	40	40	0	1,000

※ 자료: 행정안전부

□ 특히 행정안전부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재난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신청일(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예산을 교부하는 것을 성과목표의 산출 근거로 하고 있어 해당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일 이내에 교부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실제 신청에 대한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은 더 짧을 것으로 보임.

□ 이재민 등에 대한 긴급한 구호의 필요성은 있으나, 동 사업은 구체적인 예산 지출 수요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 요청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측면이 있어 현행 사업 추진 절차에서는 보조사업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이재민 구호의 신속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에 대한 별도의 심의 절차를 구성하는 등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을 실질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비상대비정책국】

33.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2634-304)

○ 내역사업 ‘민방위시설장비확충’ 중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 사업은 연례적인 실집행부진에도 불구하고 2026년에도 2025년 대비 동일한 사업개소 수와 예산액을 계획·편성하였는데, 2026년 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에 있어 각 사업대상지가 연내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지연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내역사업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는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지원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피해 지역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보조율 : 70%)의 구조에 따라 피해 주민의 피해지원금 지원 관련 세부절차가 다단계로 설정되어 있고, 각 시·군의 피해상황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조사 비용 부담 능력 등의 차이로 지역별로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 지원 절차의 단계별 소요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보조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은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대피시설 및 필요 장비 확충, 민방위경보시스템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67억 3,600만원 대비 38억 5,600만원이 증액된 105억 9,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구축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6,728	6,736	10,592	3,856	57.2
민방위교육훈련	2,183	2,050	2,048	△2	△0.1
민방위시설장비확충	2,614	3,834	3,856	22	0.6
민방위경보시설운영	1,931	852	852	-	-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	-	-	3,836	순증	순증

나.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의 연내 집행가능성 확보 필요

□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사업은 국지도발 등 민방위 사태에 대비하여 지하시설이 부족한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주민대피시설의 구축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보조율 50%)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과 동일하게 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그런데 동 사업의 최근 5년 간 실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연례적으로 실집행이 부진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고 예산의 대부분이 이월되는 문제가 반복되었음.

[2021～2025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구축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사업대상	예산액	교부액	실집행액	집행잔액	실집행률
2021	5개소 (인천3, 경기2)	1,600	1,600	1,128	472	70.5%
2022	3개소 (인천3)	960	960	35	925	3.6%
2023	3개소 (인천1, 경기1, 강원1)	960	960	505	455	52.6%
2024	2개소 (인천1, 경기1)	640	640	19	621	3.1%
2025. 9.	4개소 (인천2, 경기1, 강원1)	1,860	1,860	94	1,766	5.0%

※ 자료: 행정안전부

* 2021～2024년 실집행액은 각 회계연도 결산 기준

□ 2024년의 경우 2개소(인천 1개소, 경기 1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각각 사유지 매입을 통한 확보의 지연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사업대상지 변경 등으로 인해 실집행률이 3.1%에 불과하였으며, 2025년에도 9월까지 실집행률이 5.0%에 그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연례적 이월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동 사업이 단년도 건축사업임에도 주민 동의를 얻어 부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 BF인증[171] 절차를 거쳐 실제 건축공사 시공 및 준공검사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함.

□ 2026년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2025년 9월 실시한 대피시설 선정절차를 살펴보면, 총 7개소의 마을이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희망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대피시설 설치 장소 선정의 타당성(40점), 지역 주민 사업 추진 의견 수렴(20점), 신청기관의 사업 추진 의지(40점)를 사업대상 적정성 심사 기준으로 고려하여 4개소를 사업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음.

171) BF(Barrier Free) 인증 :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하여 인증

[2026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구축 사업 사업계획서 제출 현황]

구 분	인천 강화 당산리	인천 강화 초지2리	인천 강화 상도2리	경기 가평 신하리	경기 김포 마곡1리	경기 김포 군하3리	강원 화천 파포리
대피 가능인원	90명	90명	90명	90명	66명	66명	90명
면적	160㎡	160㎡	160㎡	160㎡	118㎡	119㎡	160㎡
주민동의 여부	완료	완료	완료	완료	X	X	완료
마을 설명회	실시	실시	실시	실시	미실시	미실시	실시
부지확보 여부	확보 (군유지)	X	확보 (소유자 동의)	확보 (군유지)	확보 (시유지)	확보 (시유지)	확보 (군유지)

※ 자료: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2026년에는 전년 대비 지역 주민 사업 추진 의견 수렴(20점) 항목 중 '대피시설 설치 대상지 인근 주민의 동의' 항목의 배점을 10점에서 15점으로 확대하였으나, 2025년과 동일한 규모의 사업개소 수를 계획하면서 예산액도 같은 액수로 편성하였으므로 사업 지연 및 실집행 부진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 확보를 위해 사업대상지 최종 선정에 있어 주민 동의 여부, 실시 설계부터 준공검사까지 소요되는 예상 기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각 사업대상지가 연내에 주민대피시설 구축을 완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 지연 요소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 사업의 지원 절차 소요기간을 고려한 보조사업 관리 필요

□ 내역사업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는 민방위사태(평시)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보조율 : 70%)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38억 3,6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은 2025년 6월 4일 시행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개정 : 2024.12. 3.)[172]에 따라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에 의해 피해를 입은 약 8,700명(인천 강화군 약 2,900명, 경기 파주시·김포시 약 5,800명)의 주민에게 금전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는 법률의 개정 및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과 지침을 마련하여 세부적인 집행 계획을 구체화하였음.

---

172)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3(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민방위사태(평시에 한정한다)로 인하여 또는 민방위사태에 이르지 아니한 적(敵)의 직접적인 위해(危害)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명, 신체 또는 재산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방위기본법」 제54조의3(피해 지원의 대상이 되는 위해 행위) 법 제3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해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기구류 중 무인자유기구에 의한 위해 행위
2. **확성기 등을 통하여 소음 등을 송출하는 행위(이하 “소음방송”이라 한다)에 의한 위해 행위**
3. 총격 또는 포격에 의한 위해 행위
4.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에 의한 위해 행위
5. 그 밖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유사한 위해 행위로서 제54조의9에 따른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이하 “피해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위해 행위

□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5-54호)」(이하 “운영지침” 이라 한다)은 각 시·군에서 수행한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역별 소음영향도에 따라 주민에게 일당 2,000~4,000원의 피해지원금 액수를 책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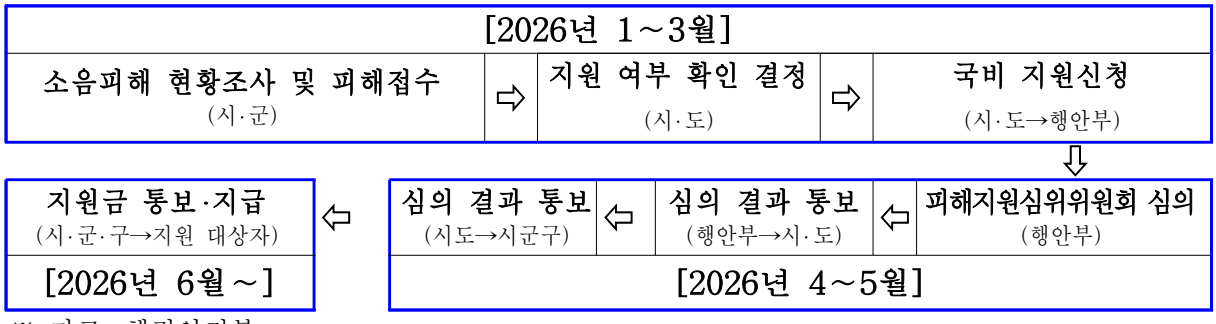
[소음영향도 평가 결과에 따른 피해지원금 단가]

구역	구역별 소음영향도	피해지원금 단가
제3종	60dB(A) 이상 70dB(A) 미만	2,000원/일
제2종	70dB(A) 이상 80dB(A) 미만	3,000원/일
제1종	80dB(A) 이상	4,000원/일

※자료:「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제13조
* 일별(00:00~24:00) 5분 등가소음도 중 최대소음도를 기준으로 소음영향도 산정

□ 행정안전부는 각 시·군별로 진행 중인 소음영향도 조사가 완료되면 2026년 3월까지 주민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4월부터 행정안전부의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부터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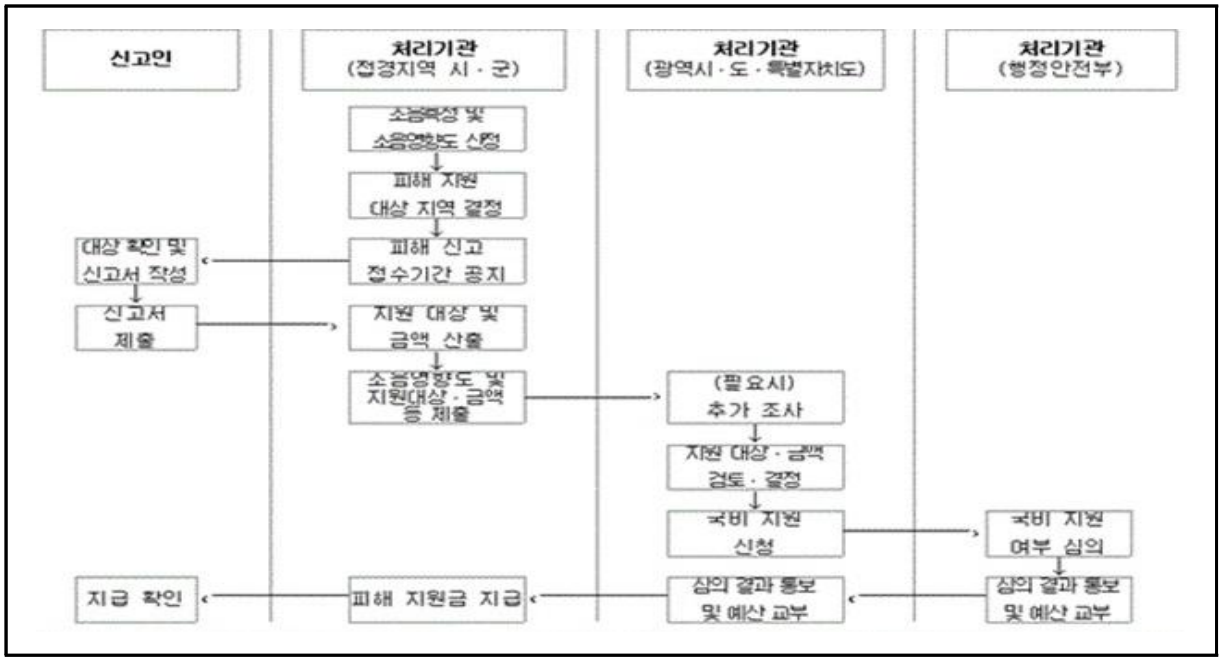
[2026년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 사업 추진 계획]



※ 자료: 행정안전부

□ 그런데 운영지침에 따른 동 사업의 세부적인 지원 절차를 살펴보면, 지역주민이 신고인으로서 피해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 접수하여야 하고[173], 신고를 접수한 시·군에서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 행정안전부에 국비 지원을 신청해야 하는 등 피해지원금 신청부터 지급에 이르는 절차가 다단계로 설정되어 있어 실제 신고인에게 피해지원금이 지급될 때까지 집행이 지연될 우려가 있음.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 세부 지원 절차]



※ 자료:「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제14조제4항

173) **「 민방위 피해지원 기준 및 지원금 지급 운영지침」제14조(소음 피해 지원절차)** ③ 제1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피해 신고 접수기간 내에 시행규칙제65조의4에서 정한 피해 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피해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통장 사본
2. 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교도소 등에 수용된 기간이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
3.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이러한 단계적인 세부 지원 절차의 설계는 동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인데, 보조사업자인 시·군별로 신고를 접수한 후 피해상황 조사에 걸리는 기간이나 조사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담 능력 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지역별 피해지원금 지급 시기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소음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세부 지원 절차의 단계별 소요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보조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34.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2431-303)

○ 내역사업인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의 실집행률이 저조하여 2025년도 예산의 30%에 달하는 금액(2억 4,900만원)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안전부는 이월예산 및 2026년도 편성예산안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제주4·3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사업은 제주4·3사건 희생자 위령을 위한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제주4·3평화공원 내 희생자·유족 숙원사업 추진, 제주4·3전국민 바로알리기,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117억 9,200만원 대비 9억 7,900만원(8.3%) 감액된 108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제주4.3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지원	16,009	11,792	10,813	△979	△8.3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1,839	1,530	1,135	△395	△25.8
4·3전국민 바로알리기 사업	70	70	70	-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0,000	5,980	5,608	△372	△6.2
제주4·3평화재단 출연금	4,100	4,212	3,800	△412	△9.8
제주4·3아카이브 구축	-	-	200	200	순증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 사업 편성예산의 차질없는 집행 노력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은 제주4·3사건 희생자의 주요 암매장지 유해발굴 및 유전자 감식을 통하여 희생자의 영면과 유족들의 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에는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목) 예산 7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예산 8억 3,000만원 등 총 15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2025년 편성된 자치단체자본보조 예산 8억 3,000만원이 지자체 등에 전액 교부되었으나, 8월말 기준 실집행액은 7,600만원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유적지 보존 관련 유족들의 의견수렴 기간 소요, 토지보상 협의 등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한 때문으로 보임.

[제주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예산 실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8월말 기준)	9~12월 예상 집행액	예상 이월액	예상 불용액	실집행부진사유
제주4·3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830	76	473	249	32	
중문지구	360	14	162	184	-	전시물 리뉴얼에 따른 유적지 보존위원회 현장 자문 및 보완, 관계자(중문유족회 등) 의견수렴 기간소요
수악주둔소	250	8	177	65	-	토지보상 지연
종남마을	50	-	50	-	-	토지보상 지연으로 협의 중, 10~12월 토지보상비 집행 예정
진아영할머니삶터	170	54	84		32	10월 준공금 집행 예정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중문지구 선급금 1억 6,200만원, 수악주둔소 토지보상금 1억 200만원 등 연말까지 4억 7,300만원이 추가로 집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이나, 해당 금액이 차질없이 집행되더라도 2025년도 편성예산의 30%인 2억 4,900만원이 차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는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 4억 3,500만원의 57.2%에 달하는 것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사업추진 시 체계적인 사업추진 계획 수립을 통해 2025년도 이월예산과 2026년도 편성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35.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2431-304)

○ 타당성재조사 수행으로 2023년~2025년 중단되었던 사업이 2026년도 예산반영으로 재시작될 예정이므로, 행정안전부는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시설 조성을 통해 희생자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함으로써 국민 통합과 화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183억 6,500만원이 순증 편성되었음.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	-	18,365	18,365	순증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위령시설 조성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협의노력 필요

□ 동 사업은 2010년 진실화해위원회의 단일 화해·위령시설 건립 정책권고에 따라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연구용역(2012.8.) 실시 및 위령시설 조성 자문위원회 구성(2016.4.) 등의 절차를 거쳐 2016년 10월 대전 동구 낭월동 일원 골령골이 대상부지로 선정되었고, 설계용역 착수 등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억 4,1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전국단위 위령시설 조성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8~2024년(타당성 재조사 이전) → 2018~2027년(타당성 재조사 이후) ○ 사업위치 : 대전시 동구 낭월동 일원 골령골(민간인 집단 희생지) ○ 사업내용 : 추모관, 전시관 등 역사공원 조성(부지 102,002㎡, 건축 3,913㎡) ○ 총사업비 : 479억원(타당성 재조사 이전) → 589억원(타당성 재조사 이후) ※ 전액 국비 / 공사비 318억원, 보상비 236억원, 시설부대경비 35억원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그런데, 물가·지가 상승 및 시설계획 변경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기존 479억원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었고, 이에 2023년 3월부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가 실시되어 2024년 12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통과 의결되었음.

[타당성 재조사 결과]

○ **(경제성 분석 결과) B/C 2.60** (※ B/C≥1이상 경제성 ↑)

- 편익(B) : 사업 시행에 따른 총 편익은 1,595억 원
- 비용(C) : 총사업비 및 운영비 등 총 비용은 613억 원

○ **(종합평가 결과) AHP 0.687** (※ AHP≥0.55이상 타당성 ↑)

구 분	종합평가	경 제 성	정 책 성	지역균형발전
획득점수 (비중)	0.687	0.277 (32.8%)	0.238 (35.6%)	0.172 (31.5%)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타당성 재조사 통과와 함께 2026년도 예산 183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2026년 상반기 공사가 재개될 예정이나, 결과적으로 총사업비가 당초 479억원에서 58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사업완료 시기도 2026년 이후로 연기되어, 조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희생자 유해 합사 방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유해를 일괄 화장 후 합사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유족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어, 이것이 추가적인 사업 지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임.[174]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2025년 7월 2일 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해 신원확인이 완료된 유해부터 개별 화장하여 안장하는 방식을

174) "유족들 입장에서는 위령시설 조성으로 끝나는 문제도 아니다. 전 회장은 "정부는 위령시설을 조성한 뒤 희생자 유해를 일괄 화장해 합사하려 하는데 이는 학살의 역사를 지우려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과거와 달리 지금은 유전자(DNA) 감식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유해를 온전히 보존해 추후에라도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대전 동구 '한국전쟁 희생자 위령 시설' 10년째 첫 삽도 못 떴다", 2025.6.29.

마련하였고, 유족들도 이에 동의하여 유해 합사 방식과 관련한 사업 지연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임.[175]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사업 완료 시점까지 유족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타당성 재조사 진행 등으로 인해 지연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75)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6년부터 유족대표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총 30여 차례의 자문회의를 통해 발굴된 유해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해 오고 있다고 밝혔음.

36.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2432-300)

○ 솔로몬제도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추모조형물 건립을 위한 예산이 신규편성되었는바, 행정안전부는 해당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외 추모조형물 건립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운영 및 희생자 유해봉환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76억 9,400만원 대비 9억 2,500만원(12.0%) 증액된 86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음.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지원 및 운영	7,464	7,694	8,619	925	12.0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솔로몬제도 추모조형물 건립 관련 사업의 내실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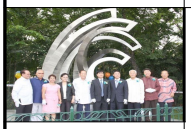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지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의 복지지원, 강제동원 피해 문화·학술·조사·연구, 희생자 추도 등을 위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대비 3억 8,300만원 증액된 42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증액분은 처우개선비를 반영한 인건비 4,300만원과 국외 추모조형물 신규건립을 위한 3억 4,000만원으로 구성됨.

□ 국외 추모조형물 신규건립사업은 솔로몬제도에 추모비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인바, 솔로몬제도는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군이 군사기지를 건설했던 주요 전장 중 하나였으며, 해당 지역의 비행장 건설 등을 위해 수많은 조선인이 강제동원되어 노역을 당하고 희생된 장소로,

□ 행정안전부는 이곳에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비를 건립함으로써 강제동원 희생자를 추모하고 양국의 우호 증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한편,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를 위한 추모조형물은 인도네시아 평화 기원의 탑, 파푸아뉴기니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모탑 등 총 6개 소에 설치되어 있음.

[국외 추모조형물 건립 사례]

지역	희생자수(명)	주요내용
 인도네시아	2,280	[인도네시아 동부 평화 기원의 탑] · 위 치: 인도네시아 수라바야시 Taman Iman Bonjol 공원 · 건 립 일: 2010. 5. · 건립비용: 240백(국고보조 200백, 한인회자부담 40백)
 필리핀	344	[필리핀 추도와 평화 기원의 탑] · 위 치: 필리핀 마닐라시 리잘공원 내 · 건 립 일: 2010. 9. · 건립비용: 180백(국고보조 160백, 한인회자부담 20백)
 파푸아뉴기니	1,076	[파푸아뉴기니 강제동원 한국인 희생자 추모탑] · 위 치: 뉴브리튼 주 코코포 독일장병 묘지 인근 · 건 립 일: 2014. 6. · 건립비용: 350백(국고보조)
 미얀마	453	[미얀마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추모조형물] · 위 치: 미얀마 양곤시 코리아센터 부지 내 · 건 립 일: 2017. 9. · 건립비용: 369백(제작 180백, 운송·설치 등 189백)
 홋카이도	2,608	[홋카이도 강제연행·강제노동 희생자 추도비] · 위 치: 홋카이도 슈마리나이(조릿대 묘표 전시관) · 건 립 일: 2017. 10. · 건립비용: 200백(정부지원 15백, 일본 시민단체 185백)
 호주	1,500*	[한호 평화증진 및 태평양전쟁 희생자 추모탑] · 위 치: 호주 NSW주 블랙타운시 호주왕립공군기념공원 · 건 립 일: 2018. 9. · 건립비용: 254백(제작 82백, 운송·설치 등 172백)

* 태평양전쟁 당시 카우라 포로수용소 한국인 강제동원 희생자 25명을 포함하여 호주 인근 해역에서 1.500여명 사망한 것으로 추정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솔로몬제도 추모조형물 건립에는 3억 4,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이후 유지·관리비용으로 매년 600만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임.

[국외 추모조형물 건립 관련 연간 유지비용 지출현황]

지역	관리운영 주체	연간 유지비용
인도네시아	동부자바한인회	600만원 (50만원x12개월)
미얀마	미얀마 한인회	600만원 (50만원x12개월)
일본 홋카이도	동아시아시민네트워크	600만원 (50만원x12개월)
솔로몬제도(예정)	솔로몬제도 한인회(예정)	600만원(예정) (50만원x12개월)

※ 재단-현지 한인회 등과 추모조형물 유지·관리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매년 유지·관리비용 지원

※ 자료: 행정안전부

□ 또한 행정안전부는 태평양전쟁 지역별 전몰자 기준으로 볼 때 솔로몬제도는 아직 추모조형물이 건립되지 않은 곳 중 전몰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며, 현재 솔로몬제도 지역주민의 협조를 통해 추도비 건립부지 무상사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사업을 즉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임.

[태평양전쟁 지역별 전몰자 및 추모조형물 건립 현황]

지 역	전몰자(한국인 포함, 명)*	추모조형물 현황(개)**
필리핀	518,000	1 (정부)
중부태평양(마리아나, 팔라우, 마셜 등)	247,000	6 (정부1·민간5)
미얀마	137,000	1 (정부)
파푸아뉴기니	127,600	1 (정부)
솔로몬제도, 비스마르크	**118,700**	-
서이리안	53,000	-
인도네시아	31,400	1 (정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21,000	-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12,400	-
북보르네오	12,000	-

* 출처: 2025년도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 지역 확대를 위한 연구 용역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자료 등을 통해 파악된 현황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다만, 향후 추모조형물 미건립 지역의 건립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될 경우 국가 재정부담이 과중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추모조형물 건립의 우선순위 등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솔로몬제도의 추모조형물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해외 추모조형물 건립과 관련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2434-300)

○ 2026년도 예산안에 민주주의 연구 및 사료관리를 위한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 해당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필요예산 증액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가. 개 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80억 3,300만원 대비 8억 300만원(△10.0%) 감액된 7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23,324	8,033	7,230	△803	△10.0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전액 삭감된 민주주의 연구, 사료관리 예산의 증액 검토 필요

□ 동 세부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은 인건비 등 기관운영경비 60억원과 민주화운동정신계승, 민주주의 기반구축 등의 추진을 위한 주요사업비 12억 3,000만원으로 구성됨.

□ 그런데, 주요사업비 중 민주주의 연구 및 사료관리를 위한 예산이 2025년도에 각각 5억 1,700만원과 6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2026년도에는 해당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음.

[2025~2026년도 민주주의 연구 및 사료관리 예산편성 현황]

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민주주의 연구	○ **민주주의 연구: 517** - 민주화운동사 연구 30 - 연구총서발간 150 - 민주화운동 사전편찬 및 DB구축 237 - **(2회추경안) 민주주의 콘텐츠 개발 100**	○ **민주주의 연구: 0**
사료관리	○ **사료관리: 665** - 사료수집사업 230 + **(2회추경안) 100** - 정리서비스사업 335백	○ **사료관리: 0**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해당 예산삭감은 동 세부사업에 대한 2024년도 부처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81.2점) 판정으로 예산 총액의 삭감이 불가피했고, 이에

세부사업 내 주요사업비 규모가 2025년 추경 기준 25억 6,400만원에서 2026년도 예산안의 12억 3,000만원으로 축소된 데 따른 것임.[176]

□ 그러나, 민주주의 연구 사업은 사업회 소장 민주화운동 사료 기반 연구 체계 구축, 민주화운동 사전 편찬을 통한 사회적 공유 시스템 구축 및 민주화운동 기념·계승 관련 연구성과 체계화를 위한 것이며, 사료관리 사업은 이용자를 위한 민주화운동 주요 사료 수집 및 확보와 이를 활용한 콘텐츠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사업의 연속성이 단절될 경우 민주화운동관련 대국민 공공정보 서비스 약화가 예상되어 최소한 전년 본예산 수준의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보임.

□ 참고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에도 민주주의 연구 및 사료관리 사업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의 예산 증액이 이루어진 바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민주주의 연구를 위한 4억 1,700만원과 사료관리를 위한 예산 5억 6,500만원 등 총 9억 8,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76) 기관운영비는 2025년도의 60억 6,900만원과 큰 차이 없는 60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이는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를 포함하고 있는 기관운영비의 특성상 삭감이 어렵고, 이에 주요사업비가 큰 폭으로 감액된 것으로 보임.

[민주주의 연구 및 사료관리 사업 예산 증액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민주주의 연구	학술 연구	180
	민주화운동 사전편찬	122
	연구개발 및 시스템 구축	115
	소계	**417**
사료관리	사료 수집 및 관리	230
	사료정리서비스	335
	소계	**565**
계		**982**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38.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2435-300)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관련 설계용역 지연 및 편성예산 전액 불용 등 사업관리 상의 제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은 2·28민주운동 및 부산민주항쟁 등의 기념사업회 지원,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및 관련 기록물 보존시설 확충, 민주주의 기념관 건립, 민주화운동기념관 관리운영 등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308억 6,400만원 대비 61억 600만원(△19.8%) 감액된 247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민주화운동기념사업지원	21,413	30,864	24,758	△6,106	△19.8

※ 자료: 행정안전부

나. 민주주의기념관 건립 사업의 2026년도 편성예산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 내역사업 중 민주주의기념관 건립 사업은 가칭 YS민주역사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4년 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을 시작으로 2025년 예산에는 17억 2,800만원, 2026년 예산안에는 41억 2,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조달청 적정성 검토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2025년 말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5년도에 공사 착수금으로 편성된 17억 2,800만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될 전망임.

[민주역사기념관 건립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세목	25년 예산	집행액(실집행액)	실집행부진 사유(상세)
(가칭)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	자치단체 자본보조	1,728	-	■ 2025년도 예산은 공사 착수금을 목적으로 편성되었으나, 현재 공정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단계임. ■ 당초 계획과 달리 조달청 적정성 검토 절차가 지연되어 설계용역 준공이 연말로 예상됨에 따라, 2025년도 내에는 공사 착수금 집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향후 계획> - 2025.9: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완료 - 2025.9.~12.: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설계용역 준공 - 2026.12~2.: 시공사 선정, 공사 착수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와 같은 설계용역 지연 및 2025년도 편성예산 불용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2024~2026년도 민주역사기념관 건립사업 예산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예산	2025년예산	2026년 예산안
민주역사기념관 건립	o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50 - 설계비 465 - 조사측량비 85	o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1,728 - 공사비 1,428 - 감리비 300	o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4,121 - 공사비 3,334 - 감리비 209 - 예비비 578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설계용역 완료 시점이 2025년 12월로 미뤄짐에 따라 2025년도 공사착수금의 집행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2026년 예산은 공사 착수 시점을 2026년 2월로 예상하여 편성한 것으로, 이후 착공 일정에는 변동이 없어 연내 전액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2021~2025년도 민주주의기념관 건립사업 연도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연도	사업추진 경과 및 실적
2021	- 부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1.10.~'23.2.) - 대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1.9.~'22.11.) - 경남 창원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1.1.~'21.12.)
2022	- 경남 창원시 건축공사 착공(4월) - 부산·대전 건축공사 착공(12월)
2023	- 부산·대전·창원 건축 및 전시 공사 추진
2024	- 부산민주공원 부속건물 준공('24.11.) - (가칭)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4.6.~'25.5.)
2025	- (가칭)YS민주역사기념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예정('25.5.~'25.12.) - (가칭)YS민주역사기념관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25.10.~'27.12.)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다만, 2026년도 편성예산의 집행가능성과는 별개로 설계용역 지연 및 2025년 편성예산 전액 불용 등 사업관리 상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행정안전부는 향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39.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2436-300)

○ 동 세부사업에 대한 국비편성비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행정 및 상담전문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가. 개 요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과거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후유증을 겪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전문적인 트라우마 치유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19억 5,400만원 대비 12억 3,400만원(63.2%) 증액된 31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6,355	1,954	3,188	1,234	63.2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치유센터 행정 및 상담인력 증원을 위한 예산 증액 검토 필요

□ 2025년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이하 트라우마 치유센터) 국비 출연금 예산은 19억 5,400만원으로,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소재지인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체 소요 출연금의 50%를 각각 지방비로 매칭 출연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음.

□ 그러나,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국가가 설립주체가 되는 국립 시설이고,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17조는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재원에 대하여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국비로 운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으며,[177] 「지방자치법」 제137조는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178]

---

177)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9228호]」 제17조(운영재원)** 치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기부금
3. 그 밖의 수입금

한편, 2025년 8월 14일 일부개정으로 인해 동조 제2호는 “국가 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으로 변경되었음(2026.1.1.시행예정).

178) **「지방자치법」 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재정의 자주성과 건전한 운영을 장려하여야 하며, 국가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설·확장·이전·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1.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국가가 출자·출연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등을 포함한다)
4. 국가가 설립·조성·관리하는 시설 또는 단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재단법인, 사단법인

□ 이에,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제18조[179]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에 반하여 출연금을 국비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음.

□ 이와 관련하여 2025년 7월 행정안전위원회는 「트라우마치유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면서,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운영예산을 사업비와 기관운영비로 구분하여 사업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되 인건비 등이 포함된 기관운영비는 전액 국비로 부담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음.

□ 그 결과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기관운영비를 전액 국비로 편성하여 국비 출연 비율이 81.4%로 상승하였음.

등을 포함한다)

④ 국가는 제3항 각 호의 기관을 신설하거나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위치를 선정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입지 선정의 조건으로 하거나 입지 적합성의 선정항목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179)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 19228호]」 제18조(출연 또는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2025~2026년도 트라우마 치유센터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액 (50:50)		2026년 예산안 (기관운영비 국비 100%, 사업비 50:50)		비고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총 계		1,954	1,137	3,188	726	
광주센터	합 계	1,101	284	1,741	475	
	기관운영비	626	284*	1,266 (국비 100%)	-	인건비 등
	사업비	475	-	475 (국비 50%)	475	프로그램
제주센터	합 계	853	853	1,447	251	
	기관운영비	602	602	1,196 (국비 100%)	-	인건비 등
	사업비	251	251	251 (국비 50%)	251	프로그램

* 25년도 광주시에서 지방비 매칭 필요금액 11억 100만원 중 2억 8,400만원만 매칭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다만, 국비편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 증원을 위한 인건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 먼저, 치유센터의 행정업무를 담당할 인력 충원이 필요함.

□ 현재 트라우마 치유센터의 행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고, 이들의 파견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부족으로 지속적인 파견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현재 광주광역시 4명, 제주특별자치도 3명 등 파견된 행정공무원의 파견 종료일이 2026년 3월 24일로 예정되어 있어, 기간연장이 어려울 경우 이를 대체할 행정인력의 충원이 필요할 것임.

□ 또한 관외 거주 관리대상자에 대한 원활한 상담 등을 위해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함.

□ 광주센터의 경우 광주 외 지역에 거주하는 피해자의 통합관리 및 치유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적치유팀이 구성되어 현재 4명의 상담인력이 활동중이나, 관리대상자의 수가 772명에 달하여 직원 1인당 193명의 대상자를 담당하고 있음.[180]

[광주센터 관리대상자 지역별 등록현황]

(2025년 8월 기준, 단위: 명)

총 계	광주	전라	경기	서울	인천	대구
1,340(100%)	568(42.4%)	573(42.8%)	71(5.3%)	27(2.0%)	1(1.3%)	11(0.8%)
부산	**강원**	**충청**	**대전**	**경상**	**울산**	**미상 (공개거부)**
11(0.8%)	9(0.7%)	8(0.6%)	7(0.5%)	7(0.5%)	4(0.3%)	27(2.0%)

※ 전체 총계 1,340명에서 광주거주자 568명을 제외한 772명이 사회적치유팀의 관리대상자가 됨
※ 자료: 행정안전부

□ 제주센터의 경우에도 방문치유팀 5명이 서귀포시의 대상자 621명을 담당하고 있어 1인당 사례관리 대상자 수가 124명에 달함.[181]

---

180)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에 따르면, 상담인력 1인당 적정 사례관리 대상자 수는 22명임.
181) 광주광역시 및 제주시 등록인원은 치유재활팀에서 별도로 담당함.

[제주센터 관리대상자 지역별 등록현황]

(2025년 8월 기준, 단위: 명)

총 계	제주시	서귀포시	도외	비 고
1,691(100%)	1,065(63%)	621(36.7%)	5(0.3%)	

※ 자료: 행정안전부

□ 이에 행정안전부는 광주센터 인력 10명(행정인력 4명, 전문상담인력 6명) 및 제주센터 인력 7명(행정인력 3명, 전문상담인력 4명) 등 총 17명의 증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인건비 예산 12억 500만원(광주센터 7억 5,100만원, 제주센터 4억 5,4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사업 예산 증액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인건비	광주센터	월급여 및 수당	626
		4대보험료, 적립퇴직금	125
	소계		751
	제주센터	월급여 및 수당	380
		4대보험료, 적립퇴직금	74
	소계		454
계			1,205

※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40.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2437-300)

○ 여수순천위원회의 조사기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조사인력만으로 희생자 결정 및 진상규명조사사건의 처리가 완료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조사인력 증원을 위한 관련 예산 증액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가. 개 요

□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을 통하여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48억 400만원 대비 10억 3,400만원(△21.5%) 감액된 3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4,901	4,804	3,770	△1,034	△21.5

※ 자료: 행정안전부

나. 위원회 접수 사건의 기한 내 처리를 위한 조사인력충원 예산 증액 검토 필요

□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여수·순천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2022년 1월 출범하였음.

□ 그런데, 당초 2024년 10월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던 위원회의 처리율이 2024년 6월말 기준으로 11.9%(신고건수 7,465건 중 886건 처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위원회의 업무처리 지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2024년 6월말 기준 진상규명 및 희생자 신고 및 처리 현황]

(단위: 건)

<신고> <실무위원회> <여순사건위원회>

합계	→	희생자 신고		진상규명(조사중)	→	합계	희생자 결정			취하 등
		조사완료	조사중				소계	인용	기각	
7,465		2,741	4,533	191		886	708	696	12	178

※ 자료: 행정안전부

□ 2025년 9월말 현재 기준으로 볼 때 희생자 결정 관련 처리율은 44.0%를 기록하고 있으나, 실무위원회 조사완료 건수(6,256건) 대

비 위원회 처리건수(3,642건)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인데, 이는 실무위원회의 승인 건에 대해 사실확인을 진행할 위원회 전문조사인력 부족에 주요 원인이 있다고 보임.

[2025년 9월말 기준 희생자 결정 처리 현황]

(단위: 건)

<신고> <실무위원회> <여순사건위원회>

합계	→	희생자 신고		→	합계	희생자 결정		
		조사완료	조사중			인용	기각	취하 등
8,269		6,256	2,013		3,642	2,596	104	942

※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현재 위원회 전문조사인력 5인이 해당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으로 1인당 월 30건을 처리하는 등 업무 과부하가 나타나고 있음.[182]

□ 또한 위원회의 조사기한은 2026년 10월 5일까지이며,[183]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위해 최대 1년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연장되므로, 2027년 10월 4일까지 접수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이 마무리되어야 하나, 위원회의 조사인력 5명이 남은 기간 동안 월 30건씩을 처리하더라도 조사기간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처리가 완료되기

182) 제주4·3위원회 조사관은 1인당 월 7건을 처리하고 있음.

18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진상규명조사와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진상규명조사 개시 결정을 하고,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규명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려운 상황임.[184]

[향후 희생자 결정사건 처리 예상]

미처리건수 (A)	조사인력 (B)	월별 처리건수 (C)	잔여기간 (D)	예상 처리건수 (E=B×C×D)	예상 잔여건수 (A-E)
4,627건	5인	30건	24개월 (2025.10.~2027.9.)	3,600건	1,027건

※ 자료: 여순사건위원회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또한 접수사건 중 사실확인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처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사건처리가 진행됨에 따라 처리속도는 현재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잔여 사건의 처리난이도 상승 등을 고려하여 향후 조사인력 1인이 1달에 20건의 사건을 처리한다고 가정할 때, 3인의 신규 조사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184) 다만, 위원회의 조사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보고를 위해 최대 1년의 기간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므로, 위원회의 접수사건에 대한 사실확인은 2027년 10월 4일까지 가능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① 위원회는 제7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고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조사인력 증원 시 희생자 결정사건 처리 예상]

(단위: 인, 건)

요청인원	조사인원 (A)	월평균 처리 (B=A×20건)	법정기한 (C)	기한내 처리 (D=B×C)	미결 (E)	기한내 처리불가 (E-D)
증원 3인	5 (현원)	100	2027.10.5. (24개월)	2,400	4,627	2,227
	8 (증원시)	160		3,840		787*

* 일괄심사 처리건수 상향 노력 등 자체개선방안을 통해 기한 내 처리 완료 추진

※ 자료: 여순사건위원회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또한, 희생자 및 유족 결정과 별도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도 2025년 9월말 기준 총 2,476건이 미처리된 상황으로, 현재 이를 전담하는 조사인력 3인이 배정되어 있으나, 2026년 10월 4일로 지정된 조사기한 내에 처리를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185]

□ 여순사건위원회는 현재 인력으로 조사를 진행할 경우 모든 사건 처리를 위해 총 30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나, 담당 조사인력을 4인 증원할 경우 조사기한인 2026년 10월까지 진상규명 조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185) 희생자 결정의 경우 조사보고서 작성 완료 시점까지 사건처리가 가능하나, 진상규명사건의 경우 조사기간 내에 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조사인력 증원 시 진상규명 조사사건 처리 예상]

(단위: 인)

요청인원	조사인원	진상규명조사		
		법정기한	소요기간	완료예상
증원 4인	3 (현원)	2026.10.5.	30개월	2028.4.
	7 (증원시)		12개월	2026.10.

※ 자료: 여순사건위원회 제공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결과적으로 조속한 사건처리 완료를 위해서는 희생자 결정 조사인력 3인, 진상규명 조사인력 4인 등 총 7인의 전문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바,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사업 증액 요구 내역]

(단위: 천원)

세목별	내용	금액
기타직보수(110-02)	소계	66,758
	기본급	55,979
	가족수당	1,200
	초과근무수당	3,582
	정액급식비	1,680
	직급보조비	3,000
	연가보상비	1,316
복리후생비(210-12)	맞춤형복지제도	800
고용부담금(320-09)	기관부담금	1,200
소계		68,758
증원필요 인원 수		7
증액필요 예산		481,306

※ 자료: 여순사건위원회 제출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안

□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세입예산안 12억 9,900만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A)	2026예산안(B)	증 감	
			(B-A)	%
총 계	1,299	1,299	-	-
51 관유물대여료	31	31	-	-
토지대여료(51-511)	26	26	-	-
기타관유물대여료(51-513)	5	5	-	-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10	10	-	-
기타재산이자수입(54-546)	10	10	-	-
56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	100	100	-	-
과태료(56-563)	100	100	-	-
57 변상금 및 위약금	3	3	-	-
변상금(57-571)	3	3	-	-
58 가산금	1	1	-	-
가산금(58-581)	1	1	-	-
59 기타경상이전수입	1,125	1,125	-	-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1,125	1,125	-	-
69 잡수입	29	29	-	-
기타잡수입(69-691)	29	29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세출예산안

가. 개 요

□ 2026년도 세출예산안[186]은 2025년도 3,634억 700만원 대비 1,208억 6,700만원(33.3%) 증가한 4,842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금 액	363,407	484,274	120,867	+33.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사업 증감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액	%
합 계	122,738	228,470	105,732	86.1
국회의원선거관리	-	52	52	순증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45	13,280	13,235	29,411
재보궐선거관리	149	388	239	160.4
재외선거관리	1	48	47	4,700
위탁선거관리	136	116	△20	△14.7
선거보전금	-	631	631	순증
선거장비및물품관리	2,545	1,848	△697	△27.4
정당사무지원	66	675	609	922.7

18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은 “일반 · 지방행정 분야” -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편성되어 있음.

사업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액	%
정당보조금	52,383	116,987	64,604	123.3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477	550	73	15.3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240	1,348	108	8.7
공명선거기반조성	740	4,837	4,097	553.6
위법행위예방활동	7,439	10,956	3,517	47.3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408	419	11	2.7
인터넷심의기반조성	93	257	164	176.3
선거방송토론	281	504	223	79.4
선거여론조사심의	238	337	99	41.6
법제지원및법규운용	336	399	63	18.8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340	1,837	1,497	440.3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313	5,626	4,313	328.5
국제교류협력	926	995	69	7.5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137	205	68	49.6
차량및물품관리	605	1,105	500	82.6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8,491	27,881	9,390	50.8
위원회운영	703	1,369	666	94.7
선거연수원운영	1,909	2,225	316	16.6
청사관리	25,005	26,712	1,707	6.8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563	555	△8	△1.4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6,119	6,278	159	2.6
예비금	50	50	-	-

※ 참고: 기본경비 및 인건비 등 제외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세부사업별 주요 증액사업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132억 8,000만원, 정당보조금 1,169억 8,700만원,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56억 2,600만원, 전산운영경비(정보화) 278억 8,100만원이 있음.

<2026년도 예산안 주요 증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구 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액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45	13,280	13,235	29,411.1
정당보조금	52,383	116,987	64,604	123.3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313	5,626	4,313	328.5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8,491	27,881	9,390	50.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편, 감액된 사업을 살펴보면, 위탁선거관리 경비 2,000만원, 선거장비및물품관리 6억 9,700만원,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 800만원이 감액되었음.

<2026년도 예산안 감액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구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감액	%
위탁선거관리	136	116	△20	△14.7
선거장비및물품관리	2,545	1,848	△697	△27.4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563	555	△8	△1.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사업별 내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은 「선거의공정한관리」 및 「선거관리행정지원」 2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거의공정한관리」 프로그램은 공직선거관리, 정당발전지원,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선거관리지원 등 4개의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고, 「선거관리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인건비, 기본경비, 기관운영지원, 선거행정정보화, 예비금 등 5개의 단위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6년도 사업별 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5년도 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액 (B-A)	%	비고
일반·지방행정					363,407	484,274	120,867	33.3	
	입법및선거관리				363,407	484,274	120,867	33.3	
		선거의공정한관리			66,241	153,233	86,992	131.3	
			공직선거관리		2,876	16,363	13,487	468.9	
				대통령선거관리	-	-	-	-	
				국회의원선거관리	-	52	52	순증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45	13,280	13,235	29,411	
				재보궐선거관리	149	388	239	160.4	
				재외선거관리	1	48	47	4,700	
				위탁선거관리	136	116	△20	△14.7	
				선거보전금	-	631	631	순증	
				선거장비및물품관리	2,545	1,848	△697	△27.4	
			정당발전지원		52,449	117,662	65,213	124.3	
				정당사무지원	66	675	609	922.7	
				정당보조금	52,383	116,987	64,604	123.3	
			시민교육및공명선거정착		10,304	18,110	7,806	75.8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2025년도 예산 (A)	2026년도 예산안 (B)	증감액 (B-A)	%	비고
				민주시민의식함양및지원	477	550	73	15.3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240	1,348	108	8.7	
				공명선거기반조성	740	4,837	4,097	553.6	
				위법행위예방활동	7,439	10,956	3,517	47.3	
				한국선거제도해외전파(ODA)	408	419	11	2.7	
				선거관리지원	612	1,098	486	79.4	
				인터넷심의기반조성	93	257	164	176.3	
				선거방송토론	281	504	223	79.4	
				선거여론조사심의	238	337	99	41.6	
				선거관리행정지원	297,166	331,041	33,875	11.4	
				인건비	225,570	240,531	14,961	6.6	
				기본경비	15,099	15,273	174	1.2	
				기관운영지원	49,765	68,354	18,589	37.4	
				법제지원및법규운용	336	399	63	18.8	
				선거관리역량강화	-	-	-	-	
				시험관리및전문성강화	340	1,837	1,497	440.3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313	5,626	4,313	328.5	
				국제교류협력	926	995	69	7.5	
				감사활동및공직윤리확립	137	205	68	49.6	
				차량및물품관리	605	1,105	500	82.6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8,491	27,881	9,390	50.8	
				위원회운영	703	1,369	666	94.7	
				선거연수원운영	1,909	2,225	316	16.6	
				청사관리	25,005	26,712	1,707	6.8	
				선거행정정보화	6,682	6,833	151	2.3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563	555	△8	△1.4	
				선거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6,119	6,278	159	2.6	
				예비금	50	50	-	-	
				예비금	50	50	-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정부 재정규모와의 비교(일반회계 기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843억원은 정부예산안의 일반회계 총규모 728조원의 0.07%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5년도 0.05%에 비하여 점유비가 0.02%포인트 증가함.

<연도별 선관위예산안의 정부예산안 점유율 현황('22년도~'26년도)>

(단위: 억원, %)

구 분	정부 예산안(A)	선관위 예산안(B)	점유율(B/A)
2022년도	6,044,000	8,715	0.14
2023년도	6,387,000	4,073	0.06
2024년도	6,569,000	8,324	0.13
2025년도	6,774,000	3,634	0.05
2026년도	7,280,000	4,843	0.0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한편, 정부전체 예산의 증가율은 8.1%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33.3%임.

<2026년도 정부 전체 예산증가율 대비 선관위 예산증가율>

(단위: 억원, %)

구 분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증 감	증감률
정 부	6,733,000	7,280,000	547,000	8.1
중앙선관위	3,634	4,843	1,209	33.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라.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출예산은 전국 단위 선거의 실시 유무에 따라 연도별 편차가 심하고, 인건비·정당보조금 등 법정경비가 예산의 대부분(2026년도의 경우 76.8%)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음.

<2026년도 법정경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2026년도 예산안										
	대통령선거관리	국회의원선거관리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재보궐선거관리	재외선거관리	위탁선거관리	선거보전금	정당보조금	인건비	소계
484,274	-	52	13,280	388	48	116	631	116,987	240,531	372,033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최근 5년간 세출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세출예산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전국단위 선거가 없는 해에는 예산규모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연도별 세출예산 현황('22년~'26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	2024년도 예산	2025년도 예산	2026년도 예산안
예산액 (전년대비 증가율)	872,594 (126.5)	406,700 (△53.4)	857,227 (110.8)	363,407 (△57.6)	484,274 (33.3)
전국단위 선거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안

가. 일반회계

【공 통】

○ 과거 결산 실적과 선거규모, 이월금 반영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고, 징수재위탁·국세청 공조·체납자 공개 등 실질적인 회수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1.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 산정의 근거 및 수준 재검토 필요

□ 2026년도 세입예산안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세입으로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근거로서 직전 임기만료 선거인 제21대 대통령선거 과태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선거에서 후보자별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5미만 득표자 등의 기탁금, 당선무효된 자의 기탁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타경상이전수입 또한 작년도와 동일한 수준인 1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근거로서 재보궐 후보자 기탁금 국고귀속액 4억 5,000만원, 당선무효된 자의 선거비용보전 반환금 4억원 등을 제시하고 있음.

<2026년도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편성내역	예산액
과태료 (12-56-563)	- 직전 임기만료 선거(제21대 대통령선거) 과태료 부과액 기준 편성	100
기타경상이전수입 (12-59-596)	- 국회의원재보궐선거 후보자 기탁금 국고귀속액 4억 5,000만원 - 국회의원선거 당선무효자 등 선거비용보전금 반환금 4억원 - 기타 과오지급금 회수 등 2억 7,500만원	1,12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과태료, 기타경상이전수입 등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187]에 따라 징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전액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해야 하고, 같은 규칙 제34조[188]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징수결정으로 이월해야 함. 이러한 과정

187)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있거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징수결의서에 따라 수입금으로 징수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수입의 근거
2. 납세의무자등의 명칭(성명) 및 주소
3. 납세의무자등의 실명확인번호(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5. 납부기한
6. 소속 회계연도
7. 회계·기금 및 소관의 구분
8. 수입과목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88)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징수결정금액의 이월)** ①수입징수관은 매 회계연도의 징수결정금액 중 미수납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의 징수결정금액으로 이월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자로 영 제92조제1항에 따른 수입징수부의 해당 과목에 해당 회계연도분과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 상호간의 국고금대체에 따라 발생한 이월액은 다음 회계연도 1월 21일자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전 회계연도로부터 이월되었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전 회계연도에서 이월된 징수결정금액으로서 계속하여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재차 이월하여야 한다.

을 거쳐야 미반환된 금액이 국가회계에 반영되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임.

□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편성의 산정 근거를 직전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과태료 부과액 기준으로 제시하였는데, 2026년도에는 대통령선거가 아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선거 유형과 과태료 발생 규모가 다름. 실제 유사 선거 규모였던 2018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예산현액은 3억원이었고, 2022년 당시 징수결정액은 2억 3,400만원 수준으로 나타나, 현행 1억원 편성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태료 징수결정액 중 상당 부분이 미수납 상태로 이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2025년도 결산 기준 과태료 미수납액이 약 1억 8,000만원 수준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어야 하나, 이번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러한 미수납액 이월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 과태료는 선거 규모 및 성격, 과거 징수 실적, 미수납액 이월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어야 함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대통령선거 기준만을 적용하여 예산안을 편성함으로써 2026년도 세입 규모를 과소 추계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2026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과태료 부과 가능성이 높은 선거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점, 전년도 미수납액 이월분 약 1.8억원의 반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과태료 세입예산을 현 수준(1억원)보다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음.

□ 기타경상이전수입의 경우 2026년도 기준 11억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는 2025년도와 동일한 수준이나, 최근 4년간 결산 추이를 보면 실제 징수결정 및 수납 실적이 예산규모와 큰 괴리를 보임.

<최근 4년간 기타경상이전수입 징수 및 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2022	3,695	7,427	6,148	1,279
2023	710	1,729	476	1,253
2024	9,565	6,263	5,065	1,197
2025	1,125	3,279	2,077	1,20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특히, 2025년도 결산 기준 미수납액이 12억원에 달하고, 선거보전비용 반환금 등의 소멸시효가 5년임을 감안하면, 2021~2025년 내에 발생한 미수납액은 2026년도 수입징수결정액으로 이월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됨.

□ 더욱이,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2022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74억 2,700만원에 달했음을 고려할 때, 2026년도 예산을 2025년도와 동일한

수준(11.25억원)으로 책정한 것은 현저히 과소계상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26년도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으로기탁금 국고귀속액, 선거비용보전 반환금 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아울러 미수납액 이월분(12억원 상당)을 반영해야 하므로 기타경상이전수입 세입예산 또한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음.

□ 종합적으로, 2026년도 세입예산 편성 시, ① 선거규모 확대(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② 과거 결산 실적(징수결정액 증가 추세), ③ 미수납액의 이월 반영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아 과태료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모두 과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2026년도 세입예산은 과거 징수결정액 및 편성액, 실질적으로 징수가 가능한 규모 등을 반영하여 일정 부분 증액 편성하는 동시에, 미수납액의 실질 회수를 위해 징수재위탁·국세청 공조·체납자 공개 등 제도개선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임.

2. 세출예산안

가. 일반회계

【세부사업별】

1.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1131-302)

○ 지방선거에서 참관인 수당 등을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국가가 일부 재정을 부담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며, 실제 개표 절차를 수행하는 개표사무원의 수당이 참관인보다 낮아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수당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은 2026년 6월 예정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적, 물적 기반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132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4년 예산액 4,500만원 대비 132억 3,500만원 증액(29,311.1%)된 것임.

<2026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	**45**	**13,280**	13,235	29,311.1
선거관리일반	45	3,988	3,943	8762.2
사전투표관리	-	6,531	6,531	순증
투·개표관리	-	2,655	2,655	순증
당내경선관리	-	96	96	순증
선거소송	-	10	10	순증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수당 지급시 일정 부분 국가 부담으로 조정하고 개표사무원의 업무수준에 부합하는 수당으로 현실화 필요

□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위촉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사무원은 9만원, 개표사무원은 7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받음.[189]

또한,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에 따르면 (사전)투표참관인과 개표참관인의 수당 및 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하며, 각 참관인의 수당은 1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190]

□ 위 규정에 따라 최근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국비 부담 100%로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사전투표 포함)에게 9만원, 개표사무원에게 7만 5,000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음.

---

189)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제12조(실비보상)**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위촉된 간사·서기·선거사무종사원(이하 "위촉직원"이라 한다)에 대한 일당 ·여비 기타의 실비보상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상임위원은 제외한다)과 위촉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때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4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90) **「공직선거법」 제122조의2(선거비용의 보전 등)**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자를 위하여 부담한다. 이 경우 제3호의2 및 제5호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6. 제161조(投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투표참관인 및 제162조에 따른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7. 제181조(開票參觀)의 규정에 의한 개표참관인의 수당과 식비
④ 제3항제6호에 따른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 수당은 1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투표참관인 및 사전투표참관인의 수당과 개표참관 도중 개표참관인을 교체하는 경우의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 반면, 지방선거의 경우 직전 국회의원선거 또는 대통령선거의 수당 지급 수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 있음. 2022년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투표관리관 및 사무원, 개표사무원에게 6만원, 참관인에게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으며, 2026년 제9회 지방선거에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될 것이며, 해당 경비는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예정임.

< 선거별 투표관리관 등에 대한 수당 지급 현황 >

구분	직 책	수당(원)
제20대 대선(2022년) <국비 부담 100%>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60,000
	개표사무원	60,000
	참관인	50,000
제8회 지선(2022년) **<지자체 부담 100%>**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60,000
	개표사무원	60,000
	참관인	100,000
제22대 국선(2024년) <국비 부담 100%>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90,000
	개표사무원	**75,000**
	참관인	100,000
제21대 대선(2025년) <국비 부담 100%>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90,000
	개표사무원	**75,000**
	참관인	100,000
제9회 지선(2026년) **<지자체 부담 100%>**	투표관리관/투표사무원	90,000
	개표사무원	**75,000**
	참관인	100,00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국가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와 달리 지방선거의 경우 수당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것은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 단위의 행정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절차이지만,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인력 운영 및 사무 집행은 국가적 통일성을 요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음.[191] 그럼에도 지방재정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 등에서는 매 선거마다 수당 지급에 상당한 재정부담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선거사무의 국가적 책무를 지방에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음.[19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따라 선거의 관리 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지방선거에 관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

191) **「지방자치법」 제15조(국가사무의 처리 제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7.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술과 재정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사무

192) 다만,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방선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구성하고 그 기관의 각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지방선거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을 위한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따라서 법률을 통하여 예외적으로 다른 행정주체에게 위임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고 그에 따른 비용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관여가 필요하거나 특정 사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문제와 직결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성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국가가 관여할 수 있다.”(2008.6.26. 2005헌라7)이라고 판시하여, 지방선거 관리사무가 자치사무임을 선언한 바 있으나, 당시 판결시보다 현재 지방소멸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 지방재정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현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으로, 특히 군 단위 지자체의 경우 평균 20% 내외에 불과한 수준임. 세입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필수 행정서비스 유지에도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선거사무 경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는 것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강원·전남·경북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 단위 지역에서는 선거 인력 수당만으로도 수억 원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어, 타 지자체 대비 상대적으로 큰 재정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이고,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필요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적 보조가 인정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참관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개표 과정을 감시·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 개표사무원은 실제 개표 절차를 집행하는 핵심 인력으로 실질적인 업무 부담이 크나, 현행 수당 체계에서는 개표사무원의 수당이 참관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제도의 합리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193]

□ 이에 따라 향후 선거에서는 개표사무원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수당을 참관인 수준으로 상향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개표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로 보임.

193) '선거절차사무 개선방안-구시군위원회 절차사무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p.46

□ 따라서, 지방선거의 경우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와 동일한 수당 수준을 적용하면서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정 형평성 측면에서 국가적으로 재원을 일정 부분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개표사무원은 실제 개표 절차를 수행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참관인보다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질적인 업무 수행자의 수당을 참관인 수준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당사무지원(1132-320)

○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 및 기능개편 과정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상 보호의무를 이행하고, 보안 내재화를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면서 노후화된 회계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난 만큼,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전자회계보고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의무 점검 및 제도 보완을 병행해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정당사무지원 사업은 건전한 정당활동 및 정책 정당 기반 조성 등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정당·후원회·정책연구소 관련 사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6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예산 6,600만원 대비 6억 900만원 증액(922.7%)된 것임.

<2026년도 정당사무지원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정당사무지원	66	675	609	922.7
정당·후원회 법정사무관리	29	640	611	2106.9
정당·정책연구소 활성화	37	35	△2	△5.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상 보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등 보안체계 구축 필요

□ ‘정당·후원회 법정사무관리’ 내 세부내역사업인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 사업은 후원인의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후원회의 정치자금 업무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의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후화된 서버를 교체하고 클라우드 서버로 이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정치후원금센터 서비 및 솔루션 구입 등을 위한 비용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6억 900만원이 순증되었음.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 산출근거>

(단위: 백만원)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른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 609	
내용별	**비목별**
· 정치후원금센터 서버 및 솔루션 구입 184 **- 위·변조 방지 솔루션(14×2식) 28** **- HCI 서버(52x3식) 156** · 정치후원금센터 서버이관 및 기능개편 용역 425 **- 웹서버이관 및 시스템개편 398** **- 사업감리 27**	· 관리용역비(210-15)=425 · 자산취득비(430-1)=184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정치후원금센터는 정치자금영수증 발급 및 후원금 내역 관리 등 후원회의 업무처리를 위해 약 4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고 있으며, 후원인의 조세감면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음. 후원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 기본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후원 계좌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여 약 400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내부 업무망뿐만 아니라 대국민망(인터넷망)에서도 세부적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보안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임.

<정치후원금센터 개인정보 보유 항목>

구 분	개인정보 수집항목
(대국민망) 이용자(후원인)	◦[필수] 후원회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직업, 후원금액, 후원일자 ◦[선택] 이메일주소, 회사명
(대국민망) 후원회 관리자	◦(후원금 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부금액, 기부일자, 입금일자, 주소, 연락처, 직업 ◦(후원회 관리) 지정권자명, 소속정당, 지역구,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학력, 경력
(업무망) 위원회 관리자	◦(기탁금 등록) 성명,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기부금액, 기부일자, 주소, 연락처, 직업, 입금일자 ◦(시스템 이용 신청관리) 후원회명,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회계책임자(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사무실(주소, 전화번호), 기부금 수령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194] 및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195]에 따르면,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신규 구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함. 정치후원금센터의 시스템 보강사업은 전자결제 기능 추가, 서버 이관 및 프로그램 재구축 등 개인정보파일의 구조와 운영방식에 실질적 변화를 수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동 사업은 전자결제 기능 추가 및 서버이관 용역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가 실질적으로 변경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관련 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이는 법령상 의무이행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 또는 오·남용 등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이 곤란할 우려가 있음.

---

194)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⑩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95)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 중앙위원회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 중에서 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체계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개인정보파일. 이 경우 영향평가 대상은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 최근 SK텔레콤, KT 등 주요 통신사에서 해킹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이 발생하였고, 공공기관과 첨단산업 전반으로 사이버 공격이 확산되는 추세임.[196] 특히 KT의 경우 결제 관련 인증정보가 유출되어 사회적 파장이 컸으며, SK텔레콤은 수천만 건의 고객정보 유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0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는 등, 대규모 정보보유 기관의 관리소홀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사례는 정치후원금센터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국가기관이 보다 철저한 보안체계를 갖추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의 필요성뿐 아니라, 정치적 의사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으로, 특정 개인이 어느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했는지는 개인의 정치적 신념과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정보로, 정치후원금 관련 정보는 그 비밀성과 보호 수준이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엄격히 유지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후원금센터 시스템 보강사업과 서버 이관 및 기능개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법령상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 특히 향후 전자결제 기능 도입과 영수증의 전자적 발급 등 신규 기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 식별하고,

196) '국정원 "정부기관·첨단 기술까지 해킹 시도 정황"', YTN, 2025.11.05.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보안 내재화를 구현함으로써 국민의 개인정보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다. 후원회 설치 대상자 증가와 회계보고 시스템 불편 해소를 위한 정치자금 회계관리 시스템 고도화 필요

□ 2024년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도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197] 정치자금 회계관리 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해졌으며, 이는 정당 및 후원회 회계보고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회계보고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음.

□ 정당 및 후원회의 회계보고 지원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에 직결되며, 특히 새로 도입된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려면 공적 관리 시스템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제도정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임.

□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은 2015년에 개발된 이후 유지보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기술적 노후화가 심각하고, 설치형 구조 및 복잡한 입력 절차로 인해 이용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어, 지방의원 후원회 도입으로 약 8배 이상 증가할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 프로그램 설치와 입력 과정이 번거롭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되어 왔으며, 회계보고 기한마다 처리 오류와 문의가 잇따르는 상황

197) **「정치자금법」 제6조(후원회지정권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는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2의2.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한다)

임.[198]

□ 더욱이, 지방의원 후원회 허용으로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예상 사용자 수는 기존 1,088개의 후원회에서 7,720개의 후원회로 약 7배 증가할 전망으로, 기존 후원회의 트래픽 이용에도 불편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추가될 대규모의 사용자로 인해 사이트 이용량 폭증, 트래픽 과부화가 우려됨.

<정치자금 회계관리 프로그램 사용(예정)자 현황>

<table>
<tr><th rowspan="2">법 개정 이전 사용자(1,088)</th><th rowspan="2"></th><th colspan="3">법 개정 이후 추가 사용자(7,720)</th></tr>
<tr><th colspan="2">지방의회의원 및 후원회(정수)</th><th>후원회 등록수
(25. 9. 1. 기준)</th></tr>
<tr><td>중앙당(49), 시도당(392),
정책연구소(13),
창당준비위원회(1)</td><td rowspan="4">⇒</td><td rowspan="2">시·도의회
의원</td><td>의원(872)</td><td rowspan="2">268
(회계보고
대상 536)</td></tr>
<tr><td>중앙당후원회(33)</td><td>후원회(872)</td></tr>
<tr><td>국회의원(300)</td><td rowspan="2">자치구·시·군
의회의원</td><td>의원(2,988)</td><td rowspan="2">278
(회계보고
대상 556)</td></tr>
<tr><td>국회의원후원회(300)</td><td>후원회(2,988)</td></tr>
</table>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또한, 지방의원 후원회의 연간 모금 한도액이 3,000만원~5,0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전담 회계인력 고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보좌진을 활용하기에도 새로운 회계업무 부담이 커 실효성이 낮은 만큼, 회계보고의 편의성을 높이는 시스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198) 이 프로그램은 이용자가 PC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독립형 소프트웨어로 개발 언어도 Delphi 기반이라 유지·보수가 어렵고, 사용 절차가 복잡하여 정치자금 실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후원회 회계책임자 등)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실제 2025년 9월까지 지방의원들의 후원회 설립률이 저조한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회계 처리 부담이 지목되고 있어 제도 활용에 애로가 나타나고 있음.

□ 정치자금 회계관리 시스템의 고도화는 후원회 회계책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여 지방정치권의 자율적 회계역량을 강화하고, 전자보고를 통한 행정 효율성과 데이터 표준화를 촉진하며,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 신뢰와 소액 후원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투명성과 건전한 정치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정치자금 회계보고의 편의성 강화뿐만 아니라, 전자보고 전환 이후에도 보고 누락이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이행 점검 및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여, 시스템 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치자금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가 허용되면서 정치자금 회계관리 체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해졌으며, 노후화된 기존 회계관리 프로그램은 급증하는 이용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방의원들의 회계처리 부담과 제도 활용 저조로 이어지고 있는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용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전자회계 시스템의 고도화와 함께 보고의무 점검 및 제재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병행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교육및연구기반조성(1133-331)

○ 통합선거교육시스템 구축 대비 한정된 예산 재원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핵심 기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절약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 사업은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는 집행을 위해 세부사업을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교육및연구기반조성 사업은 선거·정당사무 등 법률이 정한 소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과 선거 또는 정당관계자, 유권자에 대한 대국민 교육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13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예산 12억 4,000만원 대비 1억 800만원 증액(8.7%)된 것임.

<2026년도 교육및연구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교육및연구기반조성	1,240	1,348	108	8.7
사이버 교육·연수	545	720	175	30.4
선거관리전문인력 양성	430	300	△130	△30.2
선거·정치제도연구	265	288	23	8.7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	-	40	40	-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제한된 재원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한 통합선거교육시스템 고도화 사업 진행 필요

□ ‘사이버교육·연수’ 내역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인 ‘통합선거교육시스템 분석·구축’ 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선거교육시스템의 노후화와 기능 한계를 보완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시스템을 재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상된 사업임.

<사이버교육・연수 사업 세부내역사업 현황>

예산	산출내역
사이버교육·연수 720백 (+175백)	**< 사이버교육·연수 720백> +175백** 가. (사이버외국어교육 위탁운영) 106백(+11백) 나. (사이버교육과정 운영) 16백(전년동) 다. (사이버교육·콘텐츠 개발) 113백(전년동) 라. (시스템 노후장비 도입교체 리스대금) 0백(순감) 마. (교육용 서버 소프트 웨어 구입) 45백(전년동) 바. (사이버교육시스템 기능개선 등) 60백(△38백) 사. (사이버교육전용회선 이용요금 등) 3백(△23백) **아. (통합선거교육시스템 분석 구축) 377백(순증)** **・ (통합선거교육시스템 분석) 50백×1식 = 50백** **・ (통합선거교육시스템 구축) 324백×1식 = 324백** **・ (특근매식비) 9천원×4명×12일×6월 = 3백**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교육시스템은 2006년에 최초 구축된 이후 한 번도 전면 개편이나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15년 이상 운영되어 왔고, 그 결과 소프트웨어 구조가 오래되고 보안 취약점이 누적되어, 최근 국가정보원·KISA 보안 컨설팅과 감사원의 지적사항이 다수 제기되었음.

- 예를 들어 파일 업·다운로드 및 DB 통제 취약, 관리자 계정 탈취 가능성 등의 보안 위험이 발견되었고, 학습 관리 측면에서는 진도율 체크 외에 별다른 수료 통제 장치가 없어 무늬만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또한, 기존 사이버교육 포털은 PC 웹브라우저 기반으로만 서비스되고, 모바일 접속 시 화면 호환이 되지 않거나 기능 이용이 어려워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오늘날 많은 국민과 직원들이 스마트폰으로 학습 콘텐츠를 소비하는데, 모바일 지원 부재는 참여 저조와 학습효과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가 있음.

□ 아울러 선거교육 관리체계의 분산 운영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교육은 △국민 대상 민주시민교육, △선거관계자 대상 사이버교육,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으로 구분되나, 각 교육이 별도 시스템 또는 수기 방식으로 운영되어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현재 민주시민 대상 오프라인 연수 신청과 자료 제공은 선거연수원 홈페이지(civicedu.go.kr)를 통해, 사이버교육은 별도 온라인교육포털(portal.civicedu.go.kr)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내부 직원 직무교육은 전용 시스템이 없어 엑셀 등으로 수기 관리되고 있음.

<사이버교육을 위한 중앙선관위 시스템 구축 현황>

구분	민주시민교육	사이버교육	직무교육
이용사이트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civicedu.go.kr)	온라인교육포털 시스템 (portal.civicedu.go.kr)	별도 없음 (수기관리)
주요기능	민주시민 연수 신청, 민주시민교육 자료 다운로드	선거 관련 온라인 강의 수강,	위원회 직원 교육
이 용 자	국민, 각종 학교 및 단체 등	국민, 선거·정당관계자, 공정선거지원자 및 직원 등	위원회 직원
회원수 등	회원 약 85,000여명 콘텐츠 350여개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이러한 이원화·분산된 교육관리 체계로 인해 교육 수요자 및 이력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교육성과에 대한 종합적 분석도 어려운 실정임. 예를 들어 동일인이 민주시민교육과 사이버교육에 모두 참여하더라도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어, 교육이력의 누적 관리나 인사·성과평가 연계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선거교육의 체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다만, 자체 시스템 고도화, 보안 강화, 교육시스템 일원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교육시스템 구축 사업이 타 기관의 교육시스템 구축 사업과의 규모 또는 예산과 비교해봤을 때 현재 계상된 사업 예산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지 의문임.

《 중앙부처 기관 교육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 예산 비교 》

(단위: 백만원)

기관명	사업명	추진연도	사업금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 통합교육시스템 고도화	2020	1,350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 교육시스템 구축	2021	997
한국저작권위원회	차세대 저작권 원격 교육시스템 구축	2022	979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계상된 예산 규모로는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면적 개편 작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 다만, 통상의 정보화 성격의 사업은 시스템의 개편 및 고도화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통상 1차년도에는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세부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고도화 사업 전체에 필요한 예산을 초기 연도부터 일괄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핵심 기능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재원을 절약적으로 운용해야 할 것임.

다.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 사업 '선거연수원 운영' 사업으로 재편성 필요

□ 내역사업인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 기념'은 1996년 선거연수원 창설 이래, 개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다지고 선거관리 대표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기념식 개최 등을 위한 사업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기념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유공자·유권자 등을 대상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매 10주년마다 선거연수원 청사에서 유관기관 및 직원 등을 초청하여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기념행사 개최현황 >

일 자	장 소	개 최 내 역	참 석 대 상	비 고 (소요예산)
매년 5. 10. (2024년)	중앙위원회 대강당 (과천)	제13회 「유권자의 날」[199] 기념행사	270명 (유공자, 유권자, 직원 등)	60,000천원
2016. 5. 27.	연수원 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120명 (유관기관, 직원 등)	67,400천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 유권자의 날을 5월 10일로 정한 것은 해방 이후 보통선거를 최초로 실시하였던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한 것인데, 1948년 5월 10일은 총선을 통해 제헌국회가 구성되고,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한 날임.

□ 동 사업의 주요 내용은 선거연수원 30주년을 기념하여 영상 상영, 경과보고, 발자취 사진전, 비전선포식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선거연수원의 과거 성과를 조명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관 자체 기념행사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됨.

<선거연수원 30주년 기념 사업 개요>

가. 기념식 개최
- ◦ 시　　기: 2026. 10월중　※ '26년도 하반기 상황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
- ◦ 장　　소: 선거연수원 청사 內
- ◦ 참석대상: 200명 정도(내부 80, 외부 120)
- ◦ 내　　용
  - (기념식) 기념사 및 축사, 창설 30주년 영상상영,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 (전시회) 연수원 30년 발자취 사진 전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진공모전 수상작 관람

나. 비전 선포식 실시(기념식에 포함)
- ◦ 비전 홍보영상 상영을 통한 새로운 비전 선포
  - ※ 향후, 국가인재개발홍보지 등에 게재 의뢰하여 비전 홍보·확산
  - ※ '25년 하반기 비전 재설정 TF팀 운영 및 의견수렴 실시

다. 부대행사
- ◦ 역대 선거연수원장님과의 대화(기념식 개최 이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러나 동 세부사업인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 사업'은 선거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선거·정치제도 연구 등 교육적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선거연수원의 운영행사와는 그 성격이 상이한 본래의 교육·연구 중심 사업임.

□ 한편, 선거연수원은 이미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사업을 통해 운영비, 청사관리, 환경개선 등 기관의 기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 또한, 선거연수원 창설 30주년과 관련한 CI 제작 및 교체 예산이 동일한 취지로 이미 선거연수원운영 사업 내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선거연수원의 새로운 정체성과 역할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 9월까지 CI 개발을 통해 10월 예정된 30주년 행사에서 제막식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으로 보이며, 기념행사 예산과 동일한 취지의 예산 편성으로 보임.

<선거연수원 CI 개발 및 제작 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ㅇ 선거연수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선거환경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선거연수원의 역할을 대내외에 선포
- ㅇ CI 개발·활용을 통한 선거교육·연구기관으로서 위상 제고

2. 필요성
- ㅇ 선거연수원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되는 함축적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전달
- ㅇ CI 관련 응용 도안 활용을 통한 국민에게 신뢰받는 친근한 기관 이미지 정립

3. 주요내용

가. 선거연수원 CI 개발·제작
- ㅇ 시　　기: 2026. 9월까지
- ㅇ 방　　법: 개발업체 선정 및 위탁
- ㅇ 개발사항: 기본디자인시스템 및 응용디자인시스템

<전문업체 제작사항>
□ 기본디자인시스템 : 심볼마크, 로고타입, 엠블럼, 전용색상, 시그니처
□ 응용디자인시스템 : 명함, 서식류, 전자홍보매체, 사인물 등
⇒ 계약·개발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나. CI 활용: 선거연수원 시설물 및 홈페이지, 각종 서식 등 정비

4. 소요예산: 78,100,000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참고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검토’에 따르면, ‘국회의원선거관리(1131-301)’ 사업의 일반수용비가 선거연수원 개원 20주년 기념식 등에 사용되어 예산의 목적 외 사용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었음.[200]

이에 따라 당시에도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통해 해당 지출을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사업에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는 현재의 30주년 기념행사 역시 예산의 목적과 사업 성격의 일치성 측면에서 동일한 검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동 기념행사는 교육 및 연구기반조성 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사업의 성격에 맞는 편성 및 집행을 위해 세부사업을 ‘선거연수원운영(7132-352)’ 사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는 것이 타당함.

2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6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검토: 행정안전위원회, p.1127

4. 공명선거기반조성(1133-332)

○ 허위정보 확산에 대응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 홍보체계를 마련하며, 홍보예산 증액 또는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신뢰 회복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은 공명선거 정착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및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정치후원금 조성 활성화, 선거관리 신뢰 및 주권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48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예산 7억 4,000만원 대비 40억 9,700만원 증액(553.6%)된 것이고,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 실시로 인한 예비비 배정 후 예산현액 74억 3,500만원 대비 25억 9,800만원 감액(△34.9%)된 것임.

<2026년도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공명선거기반조성	7,435	4,837	△2598	△34.9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한 홍보	17	-	△17	순감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636	469	△167	△26.3
정치자금 등 홍보	66	51	△15	△22.7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 계도홍보	-	4,316	4,316	순증
재보궐선거관리 계도홍보	21	1	△20	△95.2
대통령선거 계도홍보	5,723	-	△5,723	순감
대통령재외선거 계도홍보	972	-	△972	순감

※ 주: 2025년 예산은 예산현액 기준이며, 제21대 대통령선거로 대통령선거 계도홍보, 대통령재외선거계도홍보 내역사업에 각각 5723백만원, 972백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음.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공명선거 기반 조성을 위한 적극적 홍보 방식 검토 필요

□ 지난 1월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매우 공감' 30%, '대체로 공감' 13%를 합하여 43%에 달하여,[201] 선거제도에 관한 국민적 불신이 무시하기 어려운 수준임을 알 수 있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인식>

(단위: %)

조사완료 사례수(명)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무응답
1005	30	13	12	42	4

※자료: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한 선거소송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직후에는 동일한 소장을 바탕으로 지역구와 원고만 바꿔 제기하는 형태의 소송이 반복되어, 일부 변호인들이 하루 30건에 달하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출하는 등 100건이 넘는 유사 소송이 복제·증식되는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양상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근거로 한 비정상적 선거소송 남발이 집중된 결과로, 선거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불신이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임.[202]

---

201) 조선일보-케이스탯리서치 '정치현안여론조사' 2025.01.23.
202) 21대 총선 직후 보름 만에…부정선거 음모론 '복붙 소송' 100여건, 한겨레, 2025.08.28.

□ 최근 부정선거 관련 의혹이 유튜브(Youtube), X(前 트위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재생산되고 있으며, 일부 정치세력은 정당 현수막이나 거리홍보 등을 통해 해당 의혹을 오프라인 공간으로까지 확장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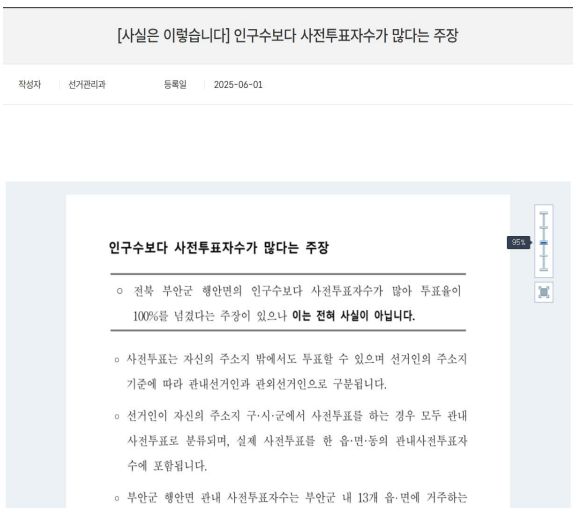
□ 특히, 2026년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될 예정으로, 전국 각지에서 약 2,000~3,000여 명에 달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자리를 두고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선거를 둘러싼 갈등의 양상이 더욱 복잡·다양해지고, 선거의 공정성 및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의혹을 없애고 선거에 대한 신뢰성을 기반으로 2026년도 선거 대응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여론에 대한 대응은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점은 2025년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위촉사무원 교육의 형식적 운영, 투표장 관리 부실 등 중앙선거관리체계의 허점이 '부정선거 의혹'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에 대한 소극적 태도가 이러한 불신을 키워간다고 지적된 바 있음.

□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은 제한적인 보도자료 배포나 단편적 홍보, 관련 기사 스크랩 등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신뢰 회복 전략이 부재한 상황이며, 이에 따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및 참여형 소통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중앙선관위 주요 대응 방식>

각종 방송영상・기사 스크랩	유튜브 채널을 통한 설명자료 업로드
	
사실관계 설명자료 업로드	**언론보도 설명자료 업로드**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2026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홍보예산이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액됨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 및 허위정보에 대해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홍보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충분한 홍보·교육 활동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임.

<2026년도 공명선거기반조성 사업 예산 중 홍보사업 현황>

2025년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636백	**<각종 계기 이용 홍보 153백만원>** 가. (각종 계기 이용 홍보) 125백만원 나. (홍보여비) 2백만원 다. (사업추진비) 26백만원 **<인터넷 등 이용 홍보 377백만원>** 가. (소셜미디어 운영 등) 90백만원 나. (중앙 공식 온라인 영상채널 운영) 268백만원 다. (업무협의 등) 9백만원 라. (콘텐츠 제작·관리 장비 등 구입) 10백만원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100백만원>** 가.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100백만원 **<언론매체 이용 공보 활동 6백만원>** 가. (언론취재지원) 4백만원 나. (업무협의비) 2백만원	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 469백 **(△167백)**	**<각종 계기 이용 홍보 135백만원> - △18백만원** 가. (각종 계기 이용 홍보) 111백만원 - △14백만원 나. (홍보여비) 2백만원 다. (사업추진비) 22백만원 - △4백만원 **<인터넷 등 이용 홍보 239백만원> - △138백만원** 가. (소셜미디어 운영 등) 90백만원 나. (영상콘텐츠 제작) 130백만원 - △138백만원 다. (업무협의 등) 9백만원 라. (콘텐츠 제작·관리 장비 등 구입) 10백만원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90백만원> - △10백만원** 가. (유권자의 날 및 유권자 주간 홍보) 90백만원 - △10백만원 **<언론매체 이용 공보 활동 5백만원> - △1백만원** 가. (언론취재지원) 3백만원 - △1백만원 나. (업무협의비) 2백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계도 홍보	**<언론매체 이용 홍보 2,008백만원>** 가. (TV·라디오광고) 1,353백만원 나. (TV·라디오 방송기획) 219백만원 다. (신문 및 잡지 광고) 436백만원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계도 홍보	**<언론매체 이용 홍보 1,784백만원> - △224백만원** 가. (TV·라디오광고) 1,314백만원 - △39백만원 나. (TV·라디오 방송기획) 154백만원 - △65백만원 다. (신문광고) 316백만원 - △120백만원

2025년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567백	**<인쇄물 및 시설물 등 이용 홍보 663백만원>** 가. (포스터 및 팸플릿 등 제작) 19백만원 나. (유권자의식조사) 90백만원 다. (투표율 분석) 20백만원 라. (홍보자료집 발간) 50백만원 마. (청사이용 홍보물) 50백만원 바. (영화상영관 이용 홍보) 60백만원 사. (단체 공명선거 추진활동) 251백만원 아. (선거사진공모전) 123백만원 **<인터넷 등 이용 홍보 1,289백만원>** 가. (온라인 광고) 191백만원 나. (소셜미디어운영) 273백만원 다. (영상 콘텐츠 제작) 173백만원 라. (투개표과정 영상서비스) 351백만원 마. (선거홍보사이트 운영) 301백만원	4,316백 (△1,251백)	**<인쇄물 및 시설물 등 이용 홍보 185백만원>** **-△478백만원** 가. (포스터 및 팸플릿 등 제작) -순감 나. (유권자의식조사) -순감 다. (투표율 분석) 20백만원 라. (홍보자료집 발간) 50백만원 마. (청사이용 홍보물) 50백만원 바. (영화상영관 이용 홍보) -순감 사. (단체 공명선거 추진활동) -순감 아. (선거사진공모전) 65백만원 -△58백만원 **<인터넷 등 이용 홍보 851백만원>** **-△438만원백** 가. (온라인 광고) 185백만원 -△6백만원 나. (소셜미디어운영) 202백만원 -△71백만원 다. (영상 콘텐츠 제작) 137백만원 -△36백만원 라. (투개표과정 영상서비스) -순감 마. (선거홍보사이트 운영) 327백만원 +26백만원
재보궐선거 관리 계도 홍보 21백	**<언론매체·인터넷 이용 홍보 15백만원>** 가. (언론매체 홍보) 15백만원 **<인쇄물 이용 홍보 6백만원>** 가. (인쇄물 홍보) 6백만원	재보궐선거 관리 계도 홍보 1백 (△20백)	**<언론매체·인터넷 이용 홍보 0백만원> -순감** 가. (언론매체 홍보) -순감 **<인쇄물 이용 홍보 1백만원> -△5백만원** 가. (인쇄물 홍보) 1백만원(+5백만원)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특히, 세부내역사업을 살펴보면, 상시적 홍보사업 성격의 ‘각종 계기 이용 홍보사업’ 및 ‘인터넷 등 이용 홍보사업’이 감액되었을 뿐만 아니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홍보 예산인 ‘언론매체 이용 홍보’, ‘인쇄물 및 시설물 이용 홍보’, ‘인터넷 등 이용 홍보’ 항목 역시 모두 감액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상시적·선거대비 홍보 모두에서 예산 축소로 인한 홍보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부정선거 의혹 대응 및 유권자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홍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의혹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까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지난 5년 간 홍보 예산은 지속적으로 축소됨에따라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다는 입장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부정확한 정보 확산에 대응하고 유권자의 올바른 인식 제고를 위한 전략적·통합적 홍보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허위정보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팩트체크 기반 콘텐츠 강화, 지역단위 소통형 캠페인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할 것임.

아울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선거 홍보 및 유권자 교육사업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홍보예산의 부분적 증액 또는 우선순위 조정을 검토함으로써,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임.

5.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7132-34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록관 건물 완공에도 불구하고 기록물 이관 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기록관 개관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선거기록관의 조속한 개관을 위해 기록물 이관 등 관련 예산의 증액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가. 개 요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사업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활용하고 선거·학술 자료 및 선거역사를 기록·보존·전파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56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예산 13억 1,300만원보다 43억 1,300만원 증액(328.5%)된 것임.

<2026년도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	1,313	5,626	4,313	328.5
기록물관리	600	444	△156	26.0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편찬	364	297	△67	△18.4
선거기록관 건립	349	4,885	4,536	1,299.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선거기록관의 조속한 개관을 위한 기록물 이관 등 예산 증액 논의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선거기록관 건립은 선거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영구기록물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국민참여·소통형 기록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영구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15억 2,300만원과 선거기록관 시설장비 설치·시공 등을 위한 33억 6,200만원 등 총 48억 8,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

□ 선거기록관 시설장비 설치·시공 예산은 현재 공사중인 선거기록관 완공 후 필요장비 및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것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선거연수원 내 부지에 2023년 12월부터 2년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선거기록관을 건립 중임.

<선거기록관 건립 개요>

○ 사업위치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선거연수원 내) ○ 사업규모 : 연면적 8,115㎡(지상3층, 지하1층) ○ 공사기간 : 2023.12.~2025.12. ○ 총사업비 : 243억 8,100만원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선거기록관이 2025년 12월 완공되면 현재 선거연수원 별관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던 기록물들을 선거기록관으로 이전하여 개관을

준비할 계획이었으나, 해당 기록물의 이관을 위한 용역비와 준공된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시설관리인력 및 기록물 검수인력의 고용을 위한 인건비 예산이 2026년도 예산안에 미반영되었음.

<선거기록관 개관 관련 예산 반영 상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소요예산 (A)	2026년 정부안 (B)	추가 확보 필요 예산 (A-B)	비 고
보존서고 등 제작	2,748	2,625	123	
- 이동식서가 설치	1,731	1,731	-	
- RFID시스템 설치	881	881	-	
- 디지털 온·습도계	13	13	-	
- 기록물 이관 등	123	-	123	① 국회증액요청
보존·복원 장비 도입	918	737	181	
- 저산소 소독장비	481	481	-	
- 보존상자제작기기 등	185	185	-	
- 수선·복원장비류	252	71	181	('27년도 예산요구)
디지털화 장비 도입	1,909	-	1,909	
- 스캐너(3종)	611	-	611	('27년도 예산요구)
- 시청각기록물 관련장비	1,298	-	1,298	
사무환경 구축 및 청사운영	1,657	-	1,657	
- 공공요금 등	457	-	457	② 국회증액요청
- 인 건 비	331	-	331	③ 국회증액요청
- 각종 비품·집기류	528	-	528	('27년도 예산요구)
- 청사시설·장비 유지 등	341	-	341	
전시체험관 설계·시공	4,235	-	4,235	
- 전시관 설계 및 시설물 구조	1,403	-	1,403	('27년도 예산요구)
- 진열장 및 전시 콘텐츠 제작	2,832	-	2,832	
총 계	11,467	3,362	8,105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선거기록관 건물이 완공되더라도 개관준비를 위한 기록물 이관 등이 2026년도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선거기록관에는 기록물없이 일부 보존장비만 도입되어 기록물 보관시설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되어 2026년도 확정예산에 반영되는 경우, 2026년 내 기록물 이관작업 등을 완료하고,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027년도에 추가 소요예산을 반영한 후, 2027년도 하반기에는 개관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임.

□ 따라서, 선거기록관의 조속한 개관을 위한 관련 예산 증액의 필요성 및 적정 예산액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록물 이관을 위한 용역비와 공공요금, 관리인력 고용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9억 1,1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구체적으로, 기록물 이관에 1억 2,300만원, 공공요금 등에 4억 5,700만원, 인건비로 3억 3,1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설명임.

<선거정보및기록물관리사업 예산 증액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선거기록관 개관 준비를 위한 기록물 이관 등	기록물 이관	123
	공공요금 등	457
	인건비	331
계		911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6. 국제교류협력(7132-345)

○ A-WEB이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서의 위상 유지와 국제적 신뢰 확보를 위해 사무처의 기본 운영비 등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비목 변경 또는 예산 증액 등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외국 선거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 서울국제선거포럼 등 국제회의 개최, 국가 간 선거제도 비교·연구·관리기법 공유 등을 통해 선거를 매개로 민주주의 분야에서 국제협력관계를 증진 및 강화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총 9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5년 예산 9억 2,600만원 대비 6,900만원 증액(7.5%)된 것임.

<2026년도 국제교류협력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제교류협력	926	995	69	7.5
국제교류협력	190	409	219	115.3
A-WEB 운영지원	736	586	△150	△20.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A-WEB 총회 등 선거 관련 국제회의 참석 사업 예산 비목 변경 필요

□ 동 사업은 ‘국제교류협력’[203]과 ‘A-WEB 운영지원’ 두 내역사업으로 구성되며, 전자는 서울국제선거포럼 개최 및 국제회의 참석 등을 위한 사업비이고, 후자는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지원 예산임.

-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국제교류협력’은 전년 대비 2억 1,900만원 증액된 반면, A-WEB 운영지원(민간경상보조)은 1억 5,000만원 감액되었음.

□ A-WEB 운영지원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204] 경상경비·인건비 등을 A-WEB에 보조하는 사업으로, 2019년 감사원 감사와 2022년 기획재정부 평가 등을 계기로 ODA[205] 사업은 전액 삭감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지원만 유지되고 있음.

<연도별 A-WEB 지원 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963	1,314	3,309	7,948	7,896	**1,501**	1,189	1,373	1,313	**782**	**912**	**736**	**58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

□ A-WEB은 2013년 우리나라 주도로 창설된 세계 최대 선거기관 협의

203) 해당 내역사업은 ‘서울국제선거포럼’,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교류 등’을 세부내역사업으로 구성하고 있음.
204)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5) ODA사업: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제공하는 원조를 의미함.

체로 111개국 12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창설 이후 연수·회의·선거참관 등 활발한 국제협력 활동을 수행해 온 기구로 평가됨.

<A-WEB 현황>

- **창설:** 2013 A-WEB 창립 총회 개최 및 헌장 채택 계기
- **근거 법률:**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2014년 제정)
- **조직:**
  -총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전 회원 대상, 격년 단위, 2026.9. 이후 필리핀 개최
  -집행이사회, 사무처 등
- **사무처 조직:** 사무총장, 5부・5팀, 인력 11명(정규직 7명, 중앙선관위 파견 4)
- **운영 예산:** (2025년) 7억 3600만원
  -편성내역 : 인건비 4억 3,900만원, 사무처 운영비 2억 3,800만원, 사업비 5,900만원

※ 자료: A-WEB

<A-WEB 대륙별 회원기관 현황>

(2025.9. 기준)

대륙별	국가수	기관수	주요국가
유럽	19	19	프랑스, 포르투갈, 튀르키예, 폴란드 등
아시아	24	26	대한민국, 인도, 태국, 필리핀,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아메리카	26	31	캐나다,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등
아프리카	36	39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케냐,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등
오세아니아	6	6	피지, 파푸아뉴기니 등
합계	111	121	

※ 자료: A-WEB

□ A-WEB은 한국형 선거관리 경험과 민주주의 발전 모델을 국제사회에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소프트파워'[206]를 강화하는 전략적 수단이며, 민주적 선거제도 확산과 가치기반 외교 추진이 국제사회의 주요 흐름으로 자리 잡은 만큼, A-WEB을 통한 국제협력은 한국의 민주주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외교적 영향력 확장에도 기여함.[207]

206) 강제력이나 물질적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 매력과 설득을 통해 타국의 선호를 변화시키는 능력

207) 세계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선거관리 및 민주주의 제도 정착 분야에서도 국제적 협력이 점차 체계화되고 있음. 각국의 선거관리기구들은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상호 유익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선거과정을 개선하며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선거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음. 또한, 민주적 선거의 공정한 시행을 지원하는 국제기구 및 국제 NGO 등은 지원 대상국의 선거 수준과 신뢰도를

□ 또한, 인천 송도에 위치한 A-WEB 본부 유지는 외교적 상징성을 넘어,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정책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회의 개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실질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음.[208]

□ 물론 A-WEB의 활동 성과나 실질적 효용성이 아직 충분히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본부를 우리나라에 계속 유치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시각도 존재하나, 한국형 민주주의의 발전 경험과 선거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민주적 가치 확산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A-WEB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할 수 없음.[209]

□ 또한, A-WEB이 회원기관으로 구성된 만큼 회원국의 분담금으로 기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회원국 중에는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인해 연회비 납부가 어려운 국가가 다수 존재하여 실질적인 분담금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임. 더불어 현행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경상경비 및 인건비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있고, 공무원 파견 및 예산 집행내역 보고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제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 음선필, 2015.] 참고).

208) 참고로, 2023년 A-WEB 회원기관 설문조사 결과, A-WEB에 대한 만족도는 4.35(5점 만점), 설문 참여 기관 중 타 기관에 추천할 의향이 있는 기관은 전체 기관 중 91.8%, A-WEB과 회원기관 간 커뮤니케이션 만족도도 96%에 달했으며, A-WEB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가장 유용한 사업으로 역량강화 연수(33%), 선거참관(31%) 등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A-WEB의 운영 및 세부사업을 수행 중인 사무처에 대한 세계 다른 선거기관의 효용성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209)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Democracy Index 2023)에서 한국은 기존 22위에서 10계단 하락하며 32위를 기록하였음. 이번 평가에서 한국의 점수는 10점 만점에 7.75점으로, 2023년 8.09점(22위)에서 하락했고, 이는 2006년 지수 산출 이후 한국이 받은 가장 낮은 점수임. 다만,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 정부 기능 7.50점 ▲ 정치 참여 7.22점 ▲ 정치 문화 5.63점 ▲ 시민 자유 8.82점을 기록했지만,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항목에서는 9.58점을 기록하며, 선거 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성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있는바, 예산확보구조 및 근거 법률의 취지에 따라, 국가에 의한 일정 수준의 재정지원은 타당하다고 보임.

□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본부를 둔 국제기구로서 그 위상을 유지하고,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A-WEB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210]

□ 참고로, 현재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교류 등' 내역사업에 계상된 증액분(2억 1,900만원)은 A-WEB 총회 등 선거 관련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예산으로, 해당 사업은 A-WEB이 사업시행주체가 되어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 A-WEB의 안정적 운영과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국제회의 참석 및 국제교류 등' 내역사업에 계상된 증액분(2억 1,9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비목을 변경하여 A-WEB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211]

□ 또한, 운영비 지원뿐만 아니라, 현재 회원기관을 상대로 자체 예산을 통해 진행되는 '초청연수사업', '회원기관 선거법 자문' 등을 위해 별도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212]

---

210) 이와는 별도로, 회원국의 분담금에 의한 기관운영 지적에 대하여, A-WEB은 연회비 집행 내역은 집행이사회 및 총회의 보고 사항이고, 회원국들 중 정치적 불안정 등을 겪고있는 나라가 다수 존재하여 연회비 납부 자체가 어려워, 회원국 분담금의 여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입장임.

21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러한 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동의한다는 입장임.

212) A-WEB이 추정한 비목 변경을 통한 운영비 예산외, 기관 사업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총 3억 1,900만원 수준임.

7. 전산운영경비(정보화)(7132-350)

○ 전산시스템 관련 부정선거 음모론 재확산 및 각종 정보보안 이슈 증가로 인해 선거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적정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관련 예산에 대한 증액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선거정보센터 UPS와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재해복구센터 전환훈련의 정례화 및 본·사전투표 데이터의 전면적 이중화 구축을 통해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은 효율적인 선거행정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78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예산 184억 9,100만원 대비 93억 9,000만원 증액(50.7%)된 것임.

<2026년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전산운영경비(정보화)	18,491	27,881	9,390	50.7
정보시스템유지관리	10,421	10,369	△52	△0.5
정보통신망운영개선	4,287	4,287	-	전년동
정보기반보호강화	3,783	3,434	△349	△9.2
선거기반체계고도화	-	9,791	9,791	순증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적정 유지보수 예산 편성을 위한 증액 논의 필요

□ 전산운영경비 사업의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유지관리는 정보시스템 및 선거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보호기반 강화를 통해 대국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103억 6,900만원이 편성되었음.

□ 그런데, 대통령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전산시스템 관련 부정선거 음모론 재확산 및 각종 정보보안 이슈 증가로 인해 선거정보시스템을 비롯한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213)]

□ 이와 관련하여 2023년 7월부터 9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정보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합동으로 정보보안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컨설팅 결과 해킹에 의한 선거결과 조작은 불가능하며,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나,

□ 대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보안컨설팅 결과 발견된 미흡·미조치 건에 대한 중장기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을 강화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음.

---

213) 2025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시에도 선거정보 관련 데이터의 해킹 방지를 위한 보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2025.10.15. 2025년도 국정감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이달희 위원 질의

<보안컨설팅 개요>

○ 기간 : 2023.7.3.~2023.9.22.(약 10주) ○ 주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대상 :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통신망 및 선거장비 ○ 결과 : 시스템 취약점 지적사항 186건 중 174건 조치완료 / 미조치(12건) 건은 대규모 예산(망분리 등)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중장기 사업으로 진행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또한, 2024년에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적정예산 파악을 위해 외부 보안업체와의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적정 유지보수 예산을 17억 400만원 가량으로 추산하였음.

<컨설팅 결과 시스템 유지보수 산정예산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시스템명	구축비용(구매가)	적정 유지·보수금액
1	위원회 대표 홈페이지(시·도 포함)	2,650	427.2
2	조사단속통합관리시스템	1,969	196.8
3	지능형사이버선거범죄대응시스템		
4	위탁선거관리시스템(소관부서 자체산정)	-	171
5	디지털포렌식온라인인증시스템	863	129.4
6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850	127.5
7	정치후원금센터	747	112
8	기록관리시스템	668	100.1
9	통합법규안내시스템	604	90.6
10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459	68.8
11	정책공약마당	359	53.8
12	선거법규포털시스템	219	32.8
13	정보공개시스템	189	28.3
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도서관 홈페이지	186	27.9
15	동영상모니터링시스템	156	23.4
16	사이버선거역사관	154	23.1
17	정치자금회계프로그램	153	22.9
18	재외선거홈페이지	120	18
19	사료관리시스템	83	12.4
20	영문홈페이지	-	10

21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홈페이지	47	7
22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홈페이지	40	6
23	선거구획정프로그램	40	6
24	선거보도모니터링시스템	22	3.3
25	심의통합시스템	21	3.1
26	도서관리시스템	19	2.8
합 계		10,618	1,704.2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에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예산이 15억 5,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예산부족으로 인해 원활한 유지보수 실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기능 강화 등 시스템 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업무 연속성 및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관련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관련 예산 증액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적정예산 17억 400만원과 2026년도 예산안 편성예산 15억 5,600만원의 차액인 1억 4,8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전산운영경비(정보화) 예산 증액 요구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역	금 액
전산운영경비(정보화)	기편성예산	1,556
	필요예산	1,704
	국회 증액 필요금액	148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 선거정보센터 UPS와 배터리 간 분리 등 안정성 강화와 이중화를 위한 재해복구센터 점검 필요

□ 2023년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이 개정되면서, UPS(Uninterrupted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실과 배터리실은 반드시 분리하여 설치해야 함. 동 지침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리튬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 간 및 벽체 간의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하며,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최소화해야 함.[214]

□ 또한,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배터리와 서버 전산장비가 동일한 공간에 집적되어 설치되는 경우, 배터리 발화가 곧바로 서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위험성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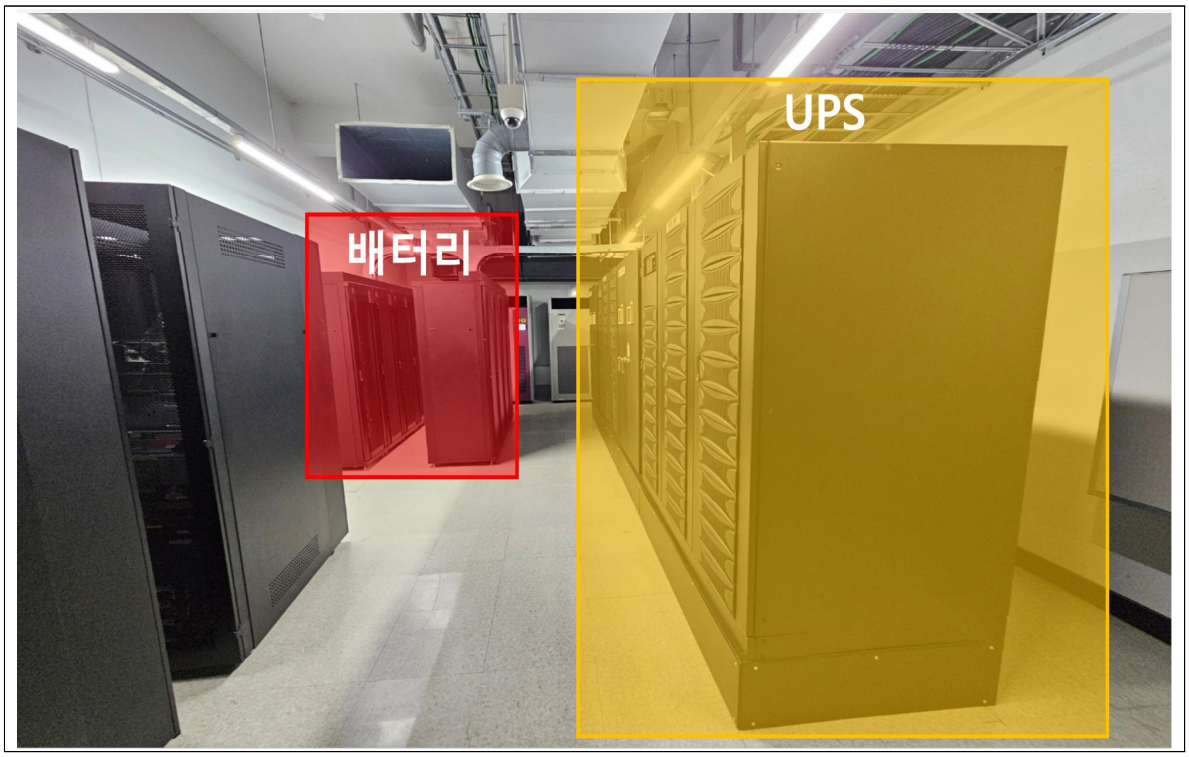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는 별도로 독자적인 전산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천 중앙청사 내 선거정보센터는 서버실과 UPS 및 배터리실로 구성되어 있음. 서버실과 UPS·배터리실은 콘크리트 격벽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된 별도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UPS와 배터리실은 별도의 격벽 없이 동일한 공간에 함께 구축되어 있는 상태임.

---

214)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 제4조(각종 재난에 대비한 보호조치)** ② 사업자는 각종 전원장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리튬배터리실은 원칙적으로 타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설치하고, 배터리 간 및 배터리와 벽간 적정 이격거리를 확보해야 하며, 배터리실 내 전력선 포설을 최소화할 것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정보센터 등 전산센터는 2023년 이전에 구축된 시설로, 개정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임.

<선거정보센터 내 UPS 및 배터리실 배치 현황>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부정선거 논란 등으로 혼란스러운 이 시점에서, 선거 기간 중 배터리 화재 등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국민적 혼란을 야기하고 선거 신뢰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바, UPS와 배터리를 분리하는 등 예방적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선거정보센터의 재해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재해복구센터의 운영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선거정보센터와 재해복구센터 간 데이터 이중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또는 실시간 데이터 전송을 통해 한쪽 센터가 마비될 경우 다른 센터가 즉시 정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선거정보센터와 별도로 대전 지역에 재해복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대선 전까지 전환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다만, 사전투표 관리를 위한 통합명부시스템의 핵심 데이터에 한해 부분적 이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직 완전한 이중화 체계는 구축되지 않았으며 본투표 관련 데이터의 이중화도 미흡한 상황임. 본투표 데이터가 투·개표 기록 중심으로 구성되어 사전투표만큼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도 있으나, 본투표 당일 재난·재해 발생 시 선거관리 및 데이터 신뢰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대비가 필요함.

□ 이에 따라,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UPS와 배터리의 물리적 분리를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며, 장기적으로는 화재 예방 및 발생 시 서버실 안전관리, 그리고 화재 등 비상상황에서도 시스템이 중단되지 않도록 듀얼 서버 가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UPS와 배터리의 물리적 분리를 위해서는 7억 9,600만원이 신규로 반영될 필요가 있음.

<선거정보센터 내 UPS실과 배터리실 분리를 위해 필요 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액	비 목
기본조사 설계비	배터리실 기본설계	20	420-01
공사비(시설)	철거·건식벽체·소화·누수감지 등 공사	152	420-03
자산취득비	항온항습기, 신규 배터리	434	430-01
공사비(배터리 이전)	배터리 이전 공사 및 기존 사무실 이전 공사	170	210-09
감리비	공사 감리	20	420-04
합 계		796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따라서, UPS와 배터리의 물리적 분리를 통해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선거정보센터의 재해복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 재해복구센터의 전환훈련을 정례화하고, 장기적으로 사전투표 통합명부시스템뿐만 아니라 본투표 데이터를 포함한 전면적 이중화 체계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선거기간 중 어떠한 재난·재해 상황에서도 투표정보의 보존성과 시스템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관리적 대비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8. 청사관리(7132-35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집행사례, 공공요금 인상률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청사관리에 필요한 적정 공공요금및제세 예산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산출된 필요예산이 적시에 반영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청사관리 사업은 청사 시설보수 및 유지관리, 청사 관리인력 인건비 지급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67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청사관리 사업 250억 500만원 대비 17억 700만원 증액(6.8%)된 것임.

<2026년도 청사관리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청사관리	**25,005**	**26,712**	1,707	6.8
청사시설 보수	1,252	1,312	60	4.8
청사 유지관리	11,992	12,626	634	5.3
청사관리 인건비	2,062	2,234	172	8.3
사회복무요원관리	9,699	10,540	841	8.7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적정 공공요금및제세 예산규모 파악 노력 필요

□ 동 사업 내 청사 유지관리 내역사업의 2026년 예산은 125억 5,400만원으로, 이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 40억 1,400만원, 임차료(210-07목) 63억 5,200만원 등으로 구성됨.

□ 그런데, 공공요금및제세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2023년과 2024년 각각 10억원 이상의 예산을 이·전용 등을 통해 마련하여 집행하였고, 동 예산이 전년 대비 11억원 증액된 2025년에도 6억원을 이·전용하는 등 예산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임.

<2023~2026년 청사 유지관리 내 공공요금및제세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년도	3,155	-	1,058	-	4,213	4,079	1	133
2024년도	1,916	-	1,583	-	3,499	3,368	-	131
2025년도	3,016	-	600	-	3,616	1,995		
2026년도	4,01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에 2026년도 예산안에 동 예산이 2025년 대비 9억 9,800만원 증액되었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추계에 따르면 2026년도 공공요금및제세 집행액이 51억 7,200만원에 달할 수 있어 최대 11억 2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청사 유지관리 내 공공요금및제세 편성 및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대선,지선)	2023년	2024년 (국선)	2025년 (대선)	2026년(안) (지선)
편성액(A)	2,574	2,722	3,155	1,916	3,014	4,014
집행액(B)	2,721	2,375	4,079	3,368	4,338 (추정)	5,172 (추정)
과부족액(A-B)	-147	347	-924	-1,452	-1,324	**-1,102**

※ 2026년도 집행액은 선거가 없었던 2023년도 집행액에 연간 물가상승률(2%) 적용한 것임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는 관련 지출을 최대로 가정한 것이며, 2026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기료 등 별도의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요금및제세 부족분은 상당 부분 보전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215]

□ 다만,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별도 예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편성 예산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공요금및제세가 어느 정도 보전될 수 있을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2026년도 편성예산의 과부족 여부를 판단하기는 불가능하고,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이·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겠다는 입장임.

215) 실제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동시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2022년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 유지관리 사업의 공공요금및제세 예산은 편성액 27억 2,200만원 대비 23억 7,500만원이 집행되어 3억 4,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 그러나 예산의 이·전용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차년도의 필요 예산을 정확히 예측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전용을 통한 부족분 충당을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 집행사례, 공공요금 인상률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적정 공공요금및제세 예산규모를 파악하는 한편, 산출된 필요예산이 적시에 반영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7136-500)

○ 전국 단위 선거 일정과 분리된 부분적 이용 허용 또는 독립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의 지속적 활용성과 공공 온라인 민주주의 인프라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2026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거 집행내역 등을 참고하여 불용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적정 예산규모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은 온라인투표의 단계적 도입 기반을 조성하고 온라인투표시스템의 안정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 시스템 기능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5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2025년 예산액 5억 6,300만원 대비 800만원 감액(△1.4%)된 것임.

<2026년도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563**	**555**	△8	△1.4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조성	56	50	△6	△10.7
온라인투표시스템 관리	507	505	△2	△0.4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나. 온라인투표시스템 대국민 성과 향상 필요

□ 온라인투표란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등 전자적 통신망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전자적 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투표 내용을 암호화하여 전송·집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최소화하여 투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투표의 비밀성 보장, 중복투표 방지, 해킹 등 보안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 확보 등 신뢰성 확보 및 구축이 필수적인 제도적 요소로 요구되는 방식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부터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구축하여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2021년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온라인투표의 민간시장 보호·육성을 위해 민간영역의 온라인투표서비스는 종료하고 현재는 국가 및 공공기관·단체, 정당 등 공공영역의 온라인투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보안체계를 강화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음.

□ 해당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예산은 매년 평균 5억 5,600만원이 소요되며 최근 5년간 총 27억 8,000만원, 2026년도 예산안에는 5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음.

<최근 5년간 온라인투표기반조성(정보화) 사업비 및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건 수)

연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사업비	531	568	563	563	555	2,780
지원실적	1,612	1,371	1,007	545	-	

주: 2025년 지원실적은 2025년 9월 기준임.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만,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 실적은 202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2022년에는 1,612건이었으나 이후 매년 줄어들어, 2025년 9월 말 기준 545건에 그친 상황임.

□ 이는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한 접근성 부족, 사용자 편의성 저하, 기관 및 단체의 활용도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며, 제도적 신뢰 확보 및 서비스 개선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기관별 온라인투표서비스 지원 내역을 보면, 지원 인원 규모는 당내경선 등에서 활용되는 정당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원 건수에서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회 임원 선거 등을 이유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선거권이 제한된 미성년자들이 온라인투표를 통해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투표 참여에 대한 기술적·심리적 거부감을 완화하고 민주주의 학습 효과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임.

<온라인투표 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 건 수, 명)

구분		2022		2023		2024		2025 (9월말)	
		지원건수	투표인원	지원건수	투표인원	지원건수	투표인원	지원건수	투표인원
정당		68	213,710	41	412,384	61	474,516	35	659,339
국가기관		10	1,850	7	1,837	9	1,429	10	1,765
지방자치단체		76	17,503	57	15,465	54	12,265	26	5,769
공공기관		52	28,398	66	31,822	51	21,846	22	12,735
학교	초등	469	130,809	334	104,084	235	81,727	122	34,590
	중등	388	158,458	336	135,220	222	107,266	51	15,940
	고등	464	165,466	414	157,594	249	120,080	233	102,658
기타		85	53,312	116	104,278	126	164,695	46	48,356
합계		1,612	769,506	1,371	962,684	1,007	983,824	545	881,152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다만, 지원 건수의 전반적 감소 추세는 학교 분야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초·중·고교 대상 온라인투표 지원 건수는 2022년에 비해 2025년 9월 말 기준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됨.

□ 이러한 지원 감소의 원인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이용 제한 기간을 주요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온라인투표시스템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조합장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해당 선거일 30일 전부터 10일 후까지는 이용이 제한되고, 전국 단위 선거가 대부분 4월에 집중되어 있어,[216] 학생회 임원선거가 주로 이루어지는 3월은 시스템

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발생함. 이에 따라 학교 대상 온라인투표 지원이 매년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제도를 통해 각종 선거를 상시 수행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의 주기나 실시 시기가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매년 선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K-voting 시스템의 이용 제한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이용률이 해마다 감소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는 등 시스템의 존재 목적과 활용 가치가 점차 약화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공직선거 등 선거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이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의 취지를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임.

□ 다만, 온라인투표서비스 프로그램은 대부분 웹사이트를 통해 자동화된 절차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은 신청인의 이용 신청 이후 안내 및 단순 질의응답 수준에 그치므로,

216) 최근 전국단위 선거 - 22년 : 3월 대통령선거, 6월 지방선거 / 23년 : 3월 동시조합장선거 / 24년 : 4월 국회의원선거 / 25년 : 3월 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

해당 업무로 인해 공직선거 업무 수행 자체가 곤란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며, 관련 법령에서의 제한 취지는 온라인투표와 공직선거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거권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시스템 운영의 기술적 부담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단위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일정 범위 내의 위탁선거나 공공·비정치적 선거 등에 한해 부분적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운영적 분리를 통해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K-voting 시스템의 운영 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다.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조성 내역사업의 적정 예산규모에 대한 검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조성은 대국민 안내홍보 및 담당자 교육훈련을 통해 온라인 투표 운영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으로 2025년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 그런데, 해당 내역사업의 경우 2024년도 편성예산 5,600만원 중 2,200만원만 집행되었고, 2025년에도 7월말 기준으로 200만원만 집행되는 등 편성예산의 원활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최근 5년간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조성 내역사업 예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예산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불용사유
2021년도	76	76	42	-	34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외업무 제한으로 여비(25백) 등 불용
2022년도	76	76	39	-	37	- 상반기 양대선거 실시에 따른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안내·홍보 등 여비 집행 저조
2023년도	61	61	50	-	11	- 일반연구비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
2024년도	56	56	22	-	34	- 국회의원선거 및 재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온라인투표 이용 제한 및 영지식증명 검증 등을 적용한 신규 블록체인 온라인 투표시스템 전환 연말 완료로 시스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안내·홍보 관련 비용 집행잔액 발생
2025년도 (7월말 기준)	56	56	2			- 상반기 대선 등 선거실시로 온라인투표 제한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대통령선거 및 전국동시지방선거, 2024년 국회의원선거, 2025년 대통령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실시에 따라 온라인투표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고, 2023년의 경우 일반연구비 낙찰차액 및 기타 집행잔액으로 인해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예산집행 현황을 고려하여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600만원 감액된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감액된 비목은 2024년도에 100% 집행된 일반용역비(210-14목)이며 그 외 예산은 2024~2025년도와 거의 동일하게 편성된 점, 2026년 6월에도 동시지방선거가 계획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예산이 불용 없이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

<2024~2026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조성 내역사업 비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7월말 기준)				2026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일반수용비 (210-01)	15	-	-	15	15	-			14
일반용역비 (210-14)	5	5	-	-	5	-			-
국내여비 (220-01)	18	12	-	6	18	-			18
사업추진비 (240-01)	12	5	-	7	12	2			12
일반연구비 (260-01)	6	-	-	6	6	-			6
합계	56	22	-	34	56	2			50

※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가공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도 온라인투표시스템 운영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이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과거 집행내역 등을 참고하여 불용 없이 집행할 수 있는 적정 예산규모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별조사위원회”라 함) 소관 세입예산안은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안

(1) 총 괄

2026년도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132억 5,100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8억 5,100만원(6.4%)이 증액 편성되었음. 2025년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으며, 2026년도에는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	예비비(A)			%
계	-	-	12,400	13,251	851	6.4
o 일반회계	-	-	12,400	13,251	851	6.4
- 운영비(사업비)	-	-	2,165	2,860	695	32.1
- 인건비	-	-	4,183	4,707	524	12.5
- 기본경비	-	-	6,052	5,684	△368	△6.1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내역별로 보면, 사업비는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18억 5,300만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위해 2억 9,300만원, 위원회 활동을 대외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4억 6,400만원, 기록물을 수립 및 정리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5년도 예산 대비 6억 9,500만원이 증액(32.1%)된 2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인건비는 임금 평균 단가 상승에 따라 2025년도 예산 대비 5억 2,400만원이 증액(12.5%)된 47억 7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감액 등을 고려하여 2025년도 예비비 대비 3억 6,800만원이 감액(△6.1%)된 56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음.

(2)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2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프로그램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B)	증 감	
		본예산	추경	예비비 (A)		(B-A)	%
총 계		-	-	12,400	13,251	851	6.4
일반·지방행정(분야)		-	-	12,400	13,251	851	6.4
일반 행정 (부문)	소 계	-	-	12,400	13,251	851	6.4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	-	-	2,164	2,860	696	32.2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 행정지원	-	-	10,236	10,391	155	1.5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3) 사업 내역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3개 단위사업과 7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음.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부사업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본예산	추경	예비비(A)		(B-A)	%
총 계		-	-	12,400	13,251	851	6.4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		-	-	2,164	2,860	696	32.2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	-	1,161	1,853	692	59.6
	안전사회 구현	-	-	285	293	8	2.8
	대외협력	-	-	479	464	△15	△3.1
	기록관리	-	-	239	250	11	4.6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건비		-	-	4,182	4,707	525	12.6
	인건비	-	-	4,182	4,707	525	12.6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기본경비		-	-	6,054	5,684	△370	△6.1
	기관운영(총액)	-	-	1,240	1,421	181	14.6
	기관운영	-	-	4,814	4,263	△551	△11.4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4)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26년도 임무로 '10·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확립’을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임무와 비전

□ 임무(Mission)

10·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철저한 진상규명 조사 및 연구를 통해 10·29이태원참사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
○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를 통해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 마련
○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를 통해 향후 유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수립

□ 비전(Vision)

10·29이태원참사의 진상규명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 안전한 사회 건설·확립

○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對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 신뢰 회복을 통한 공동체 회복 도모
○ 진상규명조사 및 연구를 통해 국가 재난·안전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가지 전략목표(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규명한다)와 1개의 프로그램 목표(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적 조사·연구를 통해 진상규명에 기여한다)를 설정하였음. 해당 프로그램 목표에 설정된 단위사업은 1개임.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1	1	1	4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목표(Program Objectives)
전략목표Ⅰ.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적극적으로 규명한다.	
Ⅰ-1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문적 조사·연구를 통해 진상규명에 기여한다.

(5) 성인지예산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6)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2026년도 신규사업

2025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예산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므로, 2026년도 예산은 모두 신규사업에 해당함. 사업비로는 이태원참사 국내·외조사 및 종합보고서 발간 등을 위해 18억 5,300만원,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해 2억 9,300만원, 대외홍보를 위해 4억 6,400만원, 기록관리를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이 외 직원 인건비로 47억 700만원과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6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음.

나. 2025년도 완료사업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2025년도 완료사업은 해당사항 없음.

Ⅱ.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 특별조사위원회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9조에 근거하여 활동기한이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16일까지이고, 특별조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활동기간을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별도의 의결이 없었음에도 2026년 예산안 산출내역을 9~12개월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므로, 법률 상 위원회 활동기한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2026년도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출예산안은 132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24억원 대비 8억 5,100만원(6.4%)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본예산	추경	예비비(A)			%
계	-	-	12,400	13,251	851	6.4
o 일반회계	-	-	12,400	13,251	851	6.4
- 운영비(사업비)	-	-	2,165	2,860	695	32.1
- 인건비	-	-	4,183	4,707	524	12.5
- 기본경비	-	-	6,052	5,684	△368	△6.1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나.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활동기한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6월 17일 제27차 위원회 회의에서 최초 조사개시를 결정하였고[21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동 위원회의 활동기한은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16일에 완료되는 것으로 예정됨.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상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조사활동 완료 후 제46조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기간을 추가로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다만,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로서 ①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3개월 이내, ② 종합보고서와 백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해 3개월 이내에서 각각 한 차례씩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2025년 9월 3일까지 특별조사위원회

---

217)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27조(조사의 개시)** ① 조사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에서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별도의 의결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조사위원회의 예산안 산출내역은 2026년 활동기간 6개월을 기준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특별조사위원회는 활동기간을 9~12개월로 예정하여 예산안 산출내역을 작성하였음.

□ 예를 들어, 세부사업 '이태원참사 진상규명(1131-310)'의 경우, 조사활동과 관련된 운영비(사업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9개월 또는 12개월을 세부 산출내역의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세부사업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 예산요구안 : 1,853,000천원
산출내역
○ 일반수용비(210-01) : 880,000천원 1. 진상규명 현장조사 운영비 : 30,000원*10회*9월=3,000천원 2. 전문가 감정 : 300,000원*50회*9월=135,000천원 3. 외국인 피해자 관련 통번역 등 가. 통역비 : 300,000원*9회*9개국=24,000천원 나 자료 번역료 : 30,000원*150장*9개국=41,000천원 다. 해외자료조사 및 전문가 자문 : 300,000원*12명*9개국=32,000천원 4. 증인 등 협조자 주차요금 : 3,000원*3시간*30명*9월=2,000천원 5. 진상규명 청문회 참석수당 : 500,000원*6명*2회=6,000천원 6. 세미나, 공청회 개최 가. 자료수집 및 제본 : 3,500,000원*9회=32,000천원 나. 원고료 및 전문가 참석 수당 : 1,000,000원*4명*9회=36,000천원 7. 진상규명 관계자 간담회 가. 간담회 물품 구입 : 20,000원*40명*4회*9월=29,000천원 나. 참석자 주차지원 : 3,000원*3시간*20명*2회*9월=3,000천원 다. 간담회 자료 인쇄 : 15,000원*35부*4회*9월=19,000천원 8. 종합보고서 작성(원고 집필) 가. 원고료 : 4,500,000원*5명=23,000천원 나. 회의 참석 수당 : 200,000원*10명*5회=10,000천원 다. 원고 심의 수당 : 200,000원*4명*3회=2,400천원 9. 종합보고서 및 백서 발간 : 3,000원*161식*1000질=483.000천원

2026년 예산요구안 : 1,853,000천원
산출내역

○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 8,000천원

1. 우편물 발송비 : 300,000원*2회*9월=6,000천원
2. 국제우편물 발송비 : 30,000원*80회=2,000천원

○ 임차료(210-07) : 47,000천원

1. 조사업무수행 차량 : 500,000원*7대*9월=32,000천원
2. 조사장비 임차
   가. 노트북 : 60,000원*11대*9월=6,000천원
   나. 휴대용 프린터 : 20,000원*11대*9월=2,000천원
   다. 소형 녹음기 : 10,000원*15대*9월=1,000천원
   라. 세단기 : 80,000원*6대*12월=6,000천원

○ 유류비(210-08) : 14,000천원

1. 조사차량: 1,7966대*1,163리터*7대=14,000천원

○ 국내여비(220-01) : 251,000천원

1. 이태원참사 관계자 조사
   가. 관내 여비
      1) 일비 : 25,000원*30명*7일*9월=47,000천원
      2) 식비 : 25,000원*30명*7일*9월=46,000천원
   나. 관외 여비
      1) 일비 : 25,000원*25명*2일*3회*9월=34,000천원
      2) 식비 : 25,000원*25명*2일*3회*9월=34,000천원
      3) 교통비 : 50,000원*25명*3회*9월=34,000천원
      4) 숙박비 : 80,000원*25명*3회*9월=54,000천원
2. 조사 간담회 운영지원 교통비 : 20,000원*9명*9회=2백만원

○ 국외업무여비(220-02) : 206,000천원

1. 국외거주 면담조사(9개국)
   가. 항공운임 : 4,769,000원*3명*9회=129,000천원
   나. 일비 : 67,500원*5일*3명*9회=9,000천원
   다. 식비 : 117,450원*5일*3명*9회=16,000천원
   라. 숙박비 : 290,250원*4일*3명*9회=31,000천원
   마. 준비금 : 202,500원*3명*9회=5,000천원
   바. 예비비(항공취소 수수료 등, 총액 약 8%)=16,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32,000천원

1. 이태원참사 사고조사 간담회 : 50,000원*30명*2회*9월=27,000천원
2. 국외거주 피해자 현지 조사
   가. 국외거주 피해자 조사 활동비(간담회비 포함) : 2,000,000원*1회=2,000천원

2026년 예산요구안 : 1,853,000천원
산출내역
나. 국외거주 피해자조사 통역 및 전문가 사례비 : 1,000,000*3회=3,000천원 **○일반연구비(260-01) : 200,000천원** 이태원참사 시뮬레이션 기반 진상규명 연구 : 200,000,000원*1회=200,000천원 **○보상금(310-03) : 130,000천원** 1. 진상규명 기여자 보상금 가. 중요 진술 및 중요자료 수집 : 20,000,000원*4건=80,000천원 나. 중요 제보 및 특수자료 수집 : 10,000,000원*5건=50,000천원 **○기타보전금(310-04) : 85,000천원** 1. 증인 등의 비용 가. 증인 등이 조사를 위해 출석한 경우 : 50,000원*1000명=50,000천원 나. 증인 등의 조사가 장시간 소요된 경우 : 50,000원*500명=25,000원 다. 증인 등의 선물 : 20,000원*500개=10,000원

□ 또한, 인건비의 경우에는 보수(110-01) 비목에 대해 모든 내역을 12개월 기준으로 산출하였는데, 법률 상 사무처의 존속기한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까지임을 고려하여도[218], 특별조사위원회의 별도 의결이 없는 현 시점에서는 9개월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218)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9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조사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특별조사위원회 인건비 - 보수(110-01) 비목 예산안 산출내역]

2026년 예산요구안 : 4,675,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봉급	1) 정무직 ・장관(급) 12,474,300원*1명*12월*1.0397= 155,634천원 ・차관(급) 12,114,800원*2명*12월*1.0397= 302,298천원 2) 별정직 (연봉제) ・고위공무원 10,463,523원*3명*12월*1.07*1.0397= 419,056천원 ・4급상당 6,451,733원*6명*12월*1.07*1.0397= 516,774천원 ・5급상당 5,044,849원*11명*12월*1.07*1.0397= 740,822천원 (월급제) ・6급상당 3,251,300원*26명*12월*1.0397= 1,054,678천원 ・7급상당 2,516,620원*13명*12월*1.0397= 408,179천원
명절휴가비	・6급상당 3,251,300원*26명*0.6*2회*1.0397= 105,468천원 ・7급상당 2,516,620원*13명*0.6*2회*1.0397= 40,818천원
정근수당	・6급상당 3,251,300원*26명*1회*0.58*1.0397= 50,976천원 ・7급상당 2,516,620원*13명*1회*0.33*1.0397= 11,225천원
정근수당가산금	・6급상당 55,238원*26명*12월= 17,234천원 ・7급상당 30,000원*13명*12월= 4,680천원
성과상여금	・6급상당 4,090,900원*26명*1.10= 117,000천원 ・7급상당 3,478,200원*13명*1.10= 49,738천원
가족수당	・장관(급) 60,000원*1명*12회= 720천원 ・차관(급) 60,000원*2명*12회= 1,440천원 ・고위공무원 60,000원*3명*12회= 2,160천원 ・4급상당 60,000원*6명*12회= 4,320천원 ・5급상당 90,000원*11명*12회= 11,880천원 ・6급상당 90,000원*26명*12회= 28,080천원 ・7급상당 90,000원*13명*12회= 14,040천원
시간외수당	・5급상당 15,510원*32시간*11명*12월*1.0397= 68,115천원 ・6급상당 13,229원*32시간*26명*12월*1.0397= 137,322천원 ・7급상당 11,950원*32시간*13명*12월*1.0397= 62,023천원
정액급식비	・장관(급) 140,000원*1명*12회= 1,680천원 ・차관(급) 140,000원*2명*12회= 3,360천원 ・고위공무원 140,000원*3명*12회= 5,040천원 ・4급상당 140,000원*6명*12회= 10,080천원 ・5급상당 140,000원*11명*12회= 18,480천원 ・6급상당 140,000원*26명*12회= 43,680천원 ・7급상당 140,000원*13명*12회= 21,840천원

2026년 예산요구안 : 4,675,000천원	
구 분	산출내역
직급보조비	·정무직(장관급) 1,240,000원*1명*12월= 14,880천원 ·정무직(차관급) 950,000원*2명*12월= 22,800천원 ·고위공무원(가급) 750,000원*1명*12월= 9,000천원 ·고위공무원(나급) 650,000원*2명*12월= 15,600천원 ·4급상당 400,000원*6명*12월= 28,800천원 ·5급상당 250,000원*11명*12월= 33,000천원 ·6급상당 185,000원*26명*12월= 57,720천원 ·7급상당 180,000원*13명*12월= 28,080천원
민원업무수당	·50,000원*2명*12월= 1,200천원
중요직무급	·4급상당 200,000원*2명*12월= 4,800천원 ·5급상당 150,000원*4명*12월= 7,200천원 ·6급상당 150,000원*4명*12월= 7,200천원 ·7급상당 150,000원*5명*12월= 9,000천원

□ 이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므로[219], 위원회 활동기한이 최소 3개월 연장될 것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함[220].

□ 그러나, 종합보고서 작성 및 발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특별조사위원회의 별도의 의결로써 활동기한을 연장해야하므로, 법률 상 위원회의 활동기한의 연장은 의결을 전제로 구체화되며, 의결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2026년 6월 16일까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219)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46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조사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0) 참고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조사개시 후 3년(2021. 5.~2024. 5.)으로 원칙적인 활동기간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그 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음.

□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한 원칙적인 위원회 활동 기한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예비비 등을 통해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2. 이태원참사 진상규명(1131-310)

○ 내역사업 ‘국외조사’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이 2026년 6월 16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내에 국외조사를 완료하여 종합보고서 작성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이태원참사 3주기 계기 방한한 희생자 유가족 대상 조사(2025.10.27.)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 대상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등 국외조사 계획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2026년에 직접 방문을 통해 수행할 국외조사 대상국가 및 인원 수의 감소 및 이에 따른 국외여비 예산의 감액이 필요함.

가. 개 요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은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통해 참사의 원인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 11억 6,100만원 대비 6억 9,200만원이 증액된 18억 5,300만원이 편성되었음.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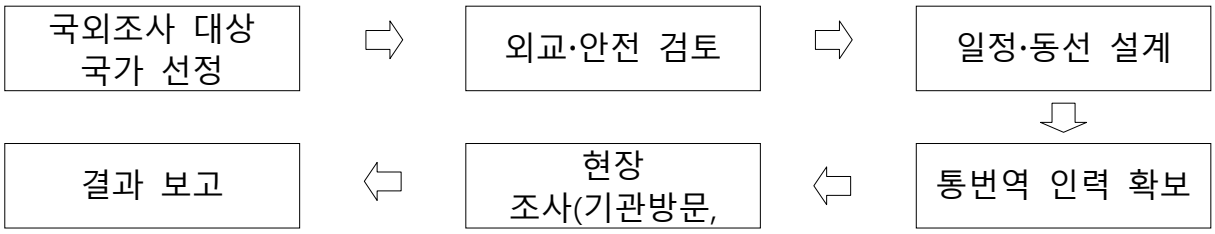
구 분	2025년 예산 예비비(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1,161**	**1,853**	**692**	**59.6**
국내조사	741	883	142	19.2
국외조사	150	250	100	66.7
연구용역	200	200	130	185.7
종합보고서 발간	70	520	320	160.0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나. 국외조사 계획 재검토를 통한 국외여비 예산 감액 필요

□ 내역사업 ‘국외조사’는 외국인 희생자 및 피해자 조사를 위한 외국인 유가족 등 신청인·참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예산보다 1억원 증액된 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외조사 사업 추진 절차]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특별조사위원회는 외국인 희생자의 국적국, 유가족 실제 거주국, 핵심증거 소재국을 최우선적으로 방문·면담·자료확보 등을 추진해야 할 14개국을 조사 필수국으로 분류하였고, 총 24개국 74명을 국외조사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음.

[특별조사위원회의 국외조사 대상]

국 가	희생자	피해자 (생존자·유가족)	합계
계	26	48	74
노르웨이	1	1	2
독일	0	1	1
러시아	4	1	5
말레이시아	0	1	1
멕시코	0	2	2
모로코	0	1	1
몽골	0	1	1
미국	2	4	6
베트남	1	1	2
스리랑카	1	0	1
영국	0	1	1
오스트리아	1	0	1
우즈베키스탄	1	3	4
이란	5	3	8
인도	0	1	1
인도네시아	0	1	1
일본	2	1	3
중국	4	8	12
카자흐스탄	1	0	1
캐나다	0	1	1
태국	1	1	2
파키스탄	0	2	2
프랑스	1	3	4
호주	1	0	1
국적 미확인	0	10	0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 : 조사 필수국(14개국)

□ 구체적인 시기별로 조사 계획을 살펴보면, 특별조사위원회는 2025년 3~4분기에 걸쳐 희생자 5개국(10명), 피해자 10개국(21명)에 대해 국외조사를 실시하고, 2026년에는 1~2분기에 걸쳐 희생자 9개국(16명), 피해자 10개국(27명)에 대해 국외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임.

[특별조사위원회의 국외조사 계획]

연도	희생자		피해자(생존자·유가족)	
	국가 수	조사대상인원 수	국가 수	조사대상인원 수
2025년	5개국	10명	10개국	21명
2026년	9개국	16명	10개국	27명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위와 같은 계획은 2025년 6월 17일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2025년에는 3~4분기에 국외조사를 추진하고, 2026년에는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최초 조사개시결정을 한 날부터 1년인 2026년 6월 16일에 종료됨에 따라 1~2분기에 국외조사를 추진하는 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221].

□ 그런데, 특별조사위원회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희생자 1개국(스리랑카, 1명), 피해자 1개국(파키스탄, 1명)에 대한 방문을 통해 국외조사가 이루어진 이후, 10월 27일에는 이태원참사 3주기

22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9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조사위원회는 최초로 제27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한 차례만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계기로 방한한 9개국의 희생자 유가족 35명을 대상으로 녹취를 통한 진술 확보 등 국외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2025년 특별조사위원회 국외조사 추진 현황]

조사 기간	국가 (인원)	주요 조사 활동 및 실적
'25. 8. 25. ~ '25. 8. 28.	스리랑카 (1명)	• 스리랑카 희생자 부친 및 배우자 진술조사와 희생자의 장례식을 진행한 종교지도자 면담 진행(희생자의 한국 체류 및 근무경력, 참사 발생 전후 행적, 사망 이후 처리 및 유가족 상황 등 확인)
'25. 8. 29. ~ '25. 8. 30.	파키스탄 (1명)	• 이태원참사 외국인 구조참여자 진술조사 진행(참사 당일 행적, 구조활동 참여 경위 및 내용, 구조활동 참여 영향 및 지원 상황 확인)
'25. 10. 27.	이란, 프랑스, 우즈벡, 노르웨이, 러시아, 중국, 호주, 카자흐스탄, 일본 (35명)	• 희생자 사망 경위, 우리 정부 대응, 외국인 유가족 지원체계 문제점, 제도개선 의견 진술 확보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따라서, 2025년의 경우 계획한 피해자(생존자·유가족) 조사대상 인원수 21명보다 많은 인원에 대해 국외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특별조사위원회의 2026년 국외조사 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특히,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 내에 국외조사를 완료하여 종합보고서 작성에 그 내용을 반영해야 하는 사업 추진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이태원참사 3주기 계기 방한한 희생자 유가족 대상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사 대상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2026년에 직접 방문을 통해 수행할 국외조사 대상 국가 및 인원 수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또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필수국으로 선정한 14개국과 관련하여 현재 특별조사위원회는 노르웨이·태국·베트남·스리랑카 등 4개국의 대한민국 대사관과 협력 중에 있다고 밝혔으나, 공문 수·발신 등 형식적인 협조 관계 구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외공관과의 업무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직접 해당 국가에 방문하지 않더라도 국외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종합보고서에 조사 내용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별조사위원회-국외조사 필수국 재외공관과의 업무 협조 현황]

국 가	희생자	피해자 (생존자·유가족)	업무 협조 여부	업무 협조 내용
노르웨이	1	1	O	공문 수·발신 1건
러시아	4	1	X	
미국	2	4	X	
베트남	1	1	O	공문 수·발신 1건
스리랑카	1	0	O	공문 수·발신 3건 회의(면담) 1건
오스트리아	1	0	X	
우즈베키스탄	1	3	X	
이란	5	3	X	
일본	2	1	X	
중국	4	8	X	
카자흐스탄	1	0	X	
태국	1	1	O	공문 수·발신 1건
프랑스	1	3	X	
호주	1	0	X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특별조사위원회에는 2026년 예산안에 국외조사 수행을 위한 국외여비(220-02)를 2025년 예산 1억 600만원 대비 1억원 증액하여 2억 6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5년의 국외조사 추진 현황을 반영하여 실제 방문을 통한 조사가 필요한 국가 및 인원을 재선정하고, 방문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만 국외조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3. 안전사회 구현(1131-320)

○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및 종합보고서 작성 일정을 고려할 때, 내역사업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와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에 각각 편성하고 있는 일반연구비의 집행 가능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연구용역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각각 재검토함으로써 연구용역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실 있는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2025년 예산을 활용한 연구용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내에 연구용역의 결과가 직권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6년 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안전사회 구현’ 사업은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재난안전 확보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대비 700만원이 증액된 2억 9,300만원이 편성됨.

[안전사회 구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예비비			%
안전사회 구현	286	293	7	2.4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	78	162	84	107.7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	208	131	△77	△37.0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나. 연구용역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내실화 도모 필요

□ 내역사업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와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는 예산의 일정 부분을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여 연구용역 발주를 통해 집행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 사업은 2025년 예산과 동일하게 7,500만원을,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 사업에는 2025년 예산 1억 2,500만원 대비 7,500만원을 감액한 5,000만원을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였음.

[안전사회 구현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예비비			%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	78	162	84	107.7
일반연구비(260-01)	75	75	-	-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	208	131	△77	△37.0
일반연구비(260-01)	125	50	△75	△60.0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 2025년 동 내역사업별 연구용역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연구용역 과제는 4건인데, 용역 발주가 이루어진 건수는 1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3건은 아직 발주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등 연구용역 추진 일정이 지연되고 있어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2025년 내역사업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 연구용역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용역명	용역 발주일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1	국내·외 다중인파 사고 사례조사	9.22	25.10~12월 (계약체결 중)	22
2	재난컨트롤타워 개선 방안	-	25.10~12월 (용역준비 중)	22
3	다중운집인파관리 관련 해외 선진 법·제도의 국내 적용 방안 연구	-	25.10~12월 (용역준비 중)	22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2025. 10. 1. 기준

[2025년 내역사업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 연구용역 추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용역명	용역 발주일	계약기간 (계약일)	계약금액
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침해 실태 및 구제 방안 연구	-	25.11월~26.5월 (용역준비 중)	125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2025. 10. 1. 기준

□ 특별조사위원회는 2026년에도 동 내역사업들을 통해 총 5건의 연구용역 과제를 추진할 예정인데, 추진 계획에 따르면 2026년 1월에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4~5월에 종료하는 것으로 일정을 예상하고 있음.

[2026년 내역사업 ‘재난안전 조사 및 연구’ 연구용역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연 번	용역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1	안전문화 대책 수립 관련	26. 1~4월	25
2	재난응급의료체계의 조사·분석·개선 연구	26. 1~4월	25
3	재난관리정보체계 구축·운영 현황 조사·분석·개선 연구	26. 1~4월	25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2026년 내역사업 ‘피해자 권리침해 조사 및 연구’ 연구용역 추진 계획]

(단위: 백만원)

연 번	용역명	연구기간	계약금액
1	대규모 재난 시 공공과 민간의 정신건강 대응 체계 연구	26. 1~5월	25
2	재난 희생자의 사회적 기억 및 추모를 위한 국가·국제적 차원의 추모사례 연구	26. 1~4월	25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그러나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이 2026년 6월까지이고,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활동기한이 3개월 연장되더라도 연구용역 발주 후 유찰 가능성과 연구 주제의 광범위성 등을 고려하면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연구가 완료되어 종합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임.

□ 또한, 동 내역사업들을 통해 추진되는 연구용역과제의 내용은 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과정의 적정성 점검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피해자 권리침해 실태 등에 대한 연구로서 특별조사위원회 안전사회국의 8개 직권조사 사항들과 연계된 것이므로, 연구용역 추진 일정에 따라 조사 완료 시점도 유동적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있음.

[특별조사위원회(안전사회국) 직권조사 사항]

구분(안)	조사과제 제목	주요 내용
직나-1	사전 인파 관리 대책 등 재난 예방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	인파관리대책, 관련 안전 교육 및 홍보, 인프라 구축·운영 등
직나-2	다중운집 안전관리 매뉴얼·훈련 등 재난 대비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조사	재난 대응 매뉴얼, 재난안전통신망, 재난대비훈련 등
직나-3	재난 대응 과정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조사	재난 지휘·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긴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
직나-4	국내·외 다중운집 인파 사고 및 안전관리 사례 조사	인파 사고 사례, 국내·외 재난 안전관리 선진 사례 조사 등
직나-5	이태원참사 희생자구조·병원이송·가족 인도 등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재난 희생자 관련 사망신고 제도의 적정성 및 개선 방안 등
직나-6	이태원참사 피해자의 권리침해 실태 및 구제 방안 조사	심리적·경제적·법적·사회적 피해 및 외국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방안 등
직나-7	국가의 이태원참사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한 적정성 및 개선 방안 조사	정부·지자체 재난 피해자 지원제도 분석, 국내·외 사례, 지원체계 방안 등
직나-8	이태원참사 희생자 등에 대한 사회적 기억과 추모 방안 조사	국가 차원의 추모공간·조형물 조성, 추모행사제도의 필요성 등

(자료: 특별조사위원회)

□ 따라서 특별조사위원회는 연구용역 추진 현황 및 계획을 각각 재검토함으로써 연구용역 과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내실 있는 연구결과의 도출을 위해 2025년 예산을 활용한 연구용역을 우선적으로 수행하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한 내에 연구용역의 결과가 직권조사 결과와 함께 종합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2026년 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감액할 필요가 있음.

4. 기관운영(총액)(7002-200)

○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에 대해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250-03)와 관련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 위원회의 사례를 고려할 때, 정부안 대비 조사 인원 1인당 지급단가를 현실화하여 증액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가. 개 요

□ ‘기관운영(총액)’ 사업은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대비 1억 8,100만원이 증액된 14억 2,100만원이 편성됨.

[기관운영(총액) 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감 (B-A)	
	예비비			%
기관운영(총액)	1,240	1,421	181	14.6

※ 2025년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됨(2025. 1.15.).

나. 1인당 특정업무경비 지급단가 현실화를 위한 증액 필요

□ 특정업무경비(250-03)는 조사·연구·단속·감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로서, 편성된 범위 내에서 중앙관서별 집행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하는 비목임.

□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초 정부안 마련 과정에서 조사 관련 인원 66명(별정직 45명, 파견직 16명, 전문위원 5명)을 기준으로 총 9개월간 1인당 150,000원을 월마다 지급할 계획으로 요구하였으나, 정부안에는 1인당 75,000원으로 반영되었음.

[특정업무경비(250-03) 부처요구액 및 정부안 반영액]

(단위: 천원)

부처요구액		정부안 반영액	
산출근거	총액	산출근거	총액
· 150,000원×66명×9월	89,100	· 75,000원×66명×9월	44,550

(자료 : 특별조사위원회)

□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한 위원회에서 조사 관련 인원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의 집행 사례를 살펴보면, 특별조사위원회의 경우보다 1인당 지급단가가 더 높게 반영된 바 있음.

[조사 관련 인원에게 지급된 특정업무경비 집행 사례]

(단위: 천원)

연 도	부 처	산출근거	금액
2023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 140,000원x60명x12월	100,800
2025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150,000원x110명x11월	181,500

(자료 : 특별조사위원회)

□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 대상이 참사로 인한 국·내외 유가족 및 피해자로 다양하고, 영상분석 및 면담 등의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조사수당의 개념으로 특정업무경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2025년 6월 17일 첫 조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이후 조사개시 현황을 살펴보면, 총 235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되어 조사관(66명) 1인당 평균 약 3.6건의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추가적인 조사개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특별조사위원회 조사개시 현황]

(단위: 건)

구 분	신청사건	직권사건	합계
진상규명조사국	100	127	227
안전사회국	-	8	8

(자료 : 특별조사위원회) ※ 2025. 8.26. 기준

□ 위와 관련하여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유사 위원회의 사례를 참조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관련 인원들의 조사업무 수행의 편의를 제고하고 난이도를 경감하는 차원에서 1인당 지급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특정업무경비의 증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인사혁신처 소관〕

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총 괄

2026년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으로만 구성되었으며, 세입액은 1,100억 9,700만원, 세출액은 6조 8,182억 600만원으로 편성됨.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세입	62,005	110,097	48,092 (77.6%)
세출	6,408,567	6,818,206	409,639 (6.4%)

(1) 세입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5년 예산 620억 500만원 대비 77.6%(480억 9,200만원) 증액된 1,100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음.

(2)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5년 예산 6조 4,085억 6,700만원 대비 6.4%(4,096억 3,900만원) 증액된 6조 8,182억 600만원이 계상되었음.

(3) 기금운용계획안

가. 기금 수입·지출의 개괄적 구조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이 퇴직, 사망 또는 공무상 부상, 질병, 장해를 당한 경우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196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의 제정과 함께 최초의 공적연금으로 설치되었음.

정부회계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의 모든 수입·지출을 하나의 계정으로 관리중이나, 기금 운영 상 공단 내부적으로 사업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단 자체규정인 「회계규정」에 따라 10개 회계(연금회계, 퇴직수당특별회계, 재해보상특별회계, 대여학자금특별회계, 금융자산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설사업특별회계, 융자사업특별회계, 고객지원특별회계, 기금운영회계)로 세분하여 계리하고 있으며,

각 회계별 수입액으로 비용 지출 후 여유자금이 발생하면 금융자산회계로 이관하여 운용·관리하고, 부족시 금융자산회계에서 충당하고 있음.

□ 회계별 사업현황

회계	사업	내용
연금회계	연금사업	• 공무원·국가 등으로부터 기여금·부담금 등을 징수하여 연금수급자 및 퇴직자에게 퇴직급여 등으로 지급
퇴직수당특별회계		
재해보상특별회계	재해보상사업	• 공무원의 공무상 질병·부상·장해 또는 사망 시 유족보상금 등 공상급여 지급 • 재해로 인해 주택손실을 입거나 공무원 본인 등 사망 시 부조급여 지급
대여학자금특별회계	학자금대여사업	• 공무원 본인·자녀의 대학등록금 지원으로 공무원의 생활안정 도모
금융자산회계	금융자산운용사업	• 기금증식을 목적으로 주식, 채권, 대체 등 금융상품에 투자
주택사업특별회계	주택사업	• 무주택공무원에게 시중임대료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건립·임대하여 공무원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
시설사업특별회계	시설운영사업	• 경쟁력있는 후생복지시설(호텔, 골프장 등)을 운영하여 공무원에게 편의 제공
융자사업특별회계	공무원연금대출사업	• 가계자금 대출을 통한 공무원 생활안정
고객지원특별회계	고객지원사업	• 공직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은퇴교육 • 퇴직 후 봉사활동을 통한 공직경험의 사회 환원 지원 • 공무원연금지 제작
기금운영회계	기금운영지원업무	• 기금 관리운영업무 지원

나.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주요내용

2026년도 공무원연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 규모는 2025년의 33조 7,737억원에 비해 4.1% 증가한 35조 1,619억원 수준으로 나타남.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증감
수입·지출	337,737	351,619	13,882 (4.1%)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지출의 약 80%는 법정의무지출인 연금사업과 재해보상사업 수행을 위한 수입과 지출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의 경우 전체 수입액 35조 1,619억원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부담금과 보전금이 21조 7,218억원(61.8%), 공무원의 기여금이 7조 1,441억원(20.3%)으로 나타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 재해보상급여로 지급하기 위한 지출은 28조 6,455억원으로 전체 지출의 81.5%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기타 수입과 지출은 기금의 자산증식과 공무원복지사업을 위한 것으로, 융자금원금회수 및 여유자금 회수 수입이 4조 7,784억원(13.6%), 재산수입 및 잡수입이 1조 5,176억원(4.3%)이며, 학자금 등 융자사업 지출이 9,230억원(2.6%), 주택·시설사업 및

기금운영비 관련 지출이 6,030억원(1.7%), 여유자금운용이 4조 9,904억원(14.2%) 편성되었음.

[공무원연금기금의 2026년도 계획안에 따른 수입구조]

(단위: 억원)

항목	국가·지자체의 부담금·보전금	공무원의 기여금	재산수입	융자원금회수 여유자금회수	합계
금액	217,218	71,441	15,176	47,784	351,619
비중	61.8%	20.3%	4.3%	13.6%	100.0%

[공무원연금기금의 2026년도 계획안에 따른 지출구조]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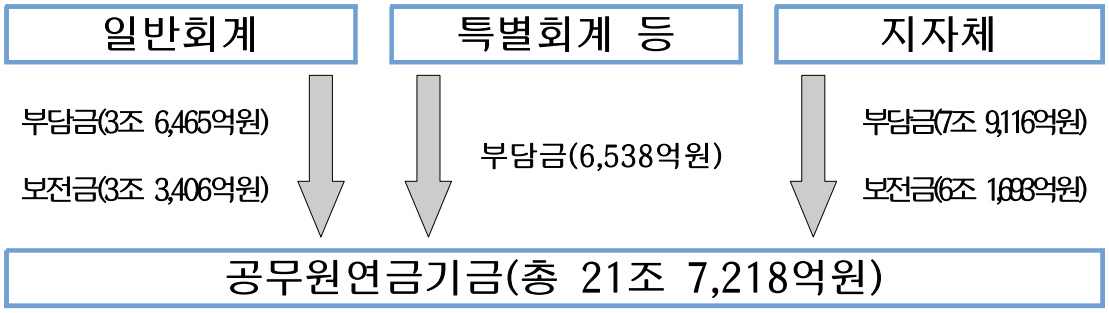
항목	연금급여	학자금 등 융자사업	주택·시설사업 등	여유자금 운용	합계
금액	286,455	9,230	6,030	49,904	337,737
비중	81.5%	2.6%	1.7%	14.2%	100.0%

다. 기금의 전입·전출 구조

공무원연금기금의 다른 회계·기금·지자체와의 거래를 보면,

다른 회계·기금·지자체로부터의 전입금의 경우 연금부담금,[222] 대여학자금부담금 등[223]의 부담금 항목과 보전금[224] 항목이 있는데,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로부터 총 6조 9,871억원, 특별회계 등으로부터 6,538억원, 지자체로부터 14조 809억원 등 총 21조 7,218억원이 전입될 계획임.[225]

[2026년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전입금 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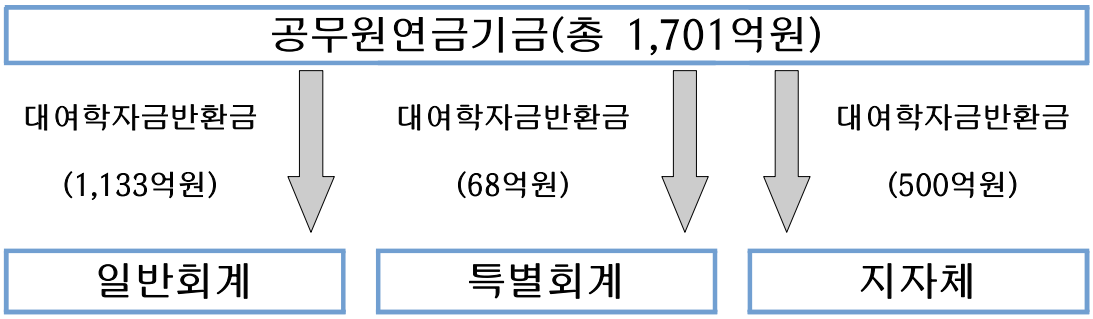


222) 퇴직급여·유족급여 등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
223)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 학자금지원사업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대여학자금운영부담금 포함.
224) 공무원이 부담하는 기여금, 국가 및 지자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으로 연금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금액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가 납부하는 금액
225) 회계-기금 간 거래시에는 기금운용수익으로부터의 기금전입금 충당금(이하 "기금운용수익충당금")을 보전금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어 보전금 규모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전출금의 경우 일반회계,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학자금반환금 총 1,701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무원연금법」 제71조제8항[226] 및 관련 훈령에[227] 따라 기금운용수익 중 보전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이하 “기금운용수익충당금”)의 경우, 2024년의 결산상 현금수익(3,895억원)의 30%인 1,168억원을 2026년 기금전입금으로 계상함.

[2026년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출금 계획안]



226) **「공무원연금법」 제71조(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⑧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연금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1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을 보전금에 충당할 수 있다.

227) **「공무원연금기금 전입금의 보전금 충당 처리기준」 제5조(계산방식)** 전입금 규모는 다음의 순서로 계산한다.
① 기금운용수익에서 유형자산평가이익과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을 차감하여 현금수익을 산정한다. 다만, 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이 음수인 경우에는 0으로 본다.
* 전입금 = 기금운용수익-(유형자산평가이익+장기유가증권평가손익)×기금전입률

2. 일반회계

(1) 세입예산안

2026년도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480억 9,200만원(77.6%)이 증액된 1100억 9,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 주요 증액 사유는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을 위한 전입금 예산 1,031억 1,100만원이 반영된 것임.[228]

[일반회계 항별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	
	예산(A)	구성비	예산(B)	구성비	(B-A)	%
관유물대여료	5	0.01	4	0.004	△1	20.0
기타경상이전수입	1,349	2.2	1,586	1.4	237	17.6
면허료및수수료	1,120	1.8	1,382	1.3	262	23.4
잡수입(재화및용역판매수입)	25	0.04	25	0.02	-	-
잡수입(수입대체경비)	4,020	6.5	3,989	3.6	△31	△0.8
전입금	55,486	89.5	103,111	93.7	47,625	85.8
합 계	**62,005**	**100.0**	**110,097**	**100.0**	**48,092**	**77.6**

(2) 세출예산안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대비 4,096억원 3,900만원(6.4%)

228) 대여학자금 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잉여액이 발생한 기관에 대해 차년도에 예산을 반환하고 있는데 2026년도 국가 예산의 경우 2024년도 이월액(2,058억 7,400만원)에서 2025년도 대부예상액(804억 5,400만원)과 2025년도 반환액(554억 8,600만원)을 차감한 잉여액이 발생, 그 외에 잉여액의 증감 등을 고려 331억 7,700만원을 추가 반영하여 1,031억 1,100만원의 잉여액이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됨.

증액된 6조 8,182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정부예산안의 일반회계 총 예산액 507조 4,468억원의 1.34%에 해당하는 것으로 2025년도에 비하여 점유비가 0.01% 포인트 감소하였음.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상대적 비교]

(단위: 억원)

구분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정부 전체	4,736,594	5,074,468
인사혁신처	64,086 (1.35%)	68,182 (1.34%)

가. 성질별, 분야·부문별 내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경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기본적 경비가 2025년도 대비 9억 7,600만원(1.2%) 증액된 816억 4,0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1.2%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사업비는 2025년도 대비 150억 900만원(9.7%) 증액된 1,700억 9,600만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부담금(공무원연금부담금)은 2025년도 대비 3,936억 5,400만원(6.4%) 증액된 6조 5,664억 7,000만원으로 96.3%를 차지하고 있고, 구체적 증감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성질별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	
	예산(A)	구성비	예산(B)	구성비	(B-A)	%
기본적 경비	80,664	1.3	81,640	1.2	976	1.2
-인 건 비	70,949	1.1	70,953	1.0	4	0.0
-기본경비	9,715	0.2	10,687	0.2	972	10.0
일반사업비	155,087	2.4	170,096	2.5	15,009	9.7
국가부담금	6,172,816	96.3	6,566,470	96.3	393,654	6.4
합 계	**6,408,567**	**100.0**	**6,818,206**	**100.0**	**409,639**	**6.4**

또한,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부문별 구성내역은 일반지방행정분야에 3.7%인 2,517억 3,600만원, 사회복지분야에 96.3%인 6조 5,664억 7,000만원으로 구체적인 증감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분야·부문별 내역]

(단위: 백만원)

분야·부문별	2025예산		2026예산안		증감	
	예산(A)	구성비	예산(B)	구성비	(B-A)	%
일반지방행정분야	235,751	3.7	251,736	3.7	15,985	6.8
- 정부자원관리	150,232	2.3	165,316	2.4	15,084	10.0
- 일반행정	85,519	1.3	86,420	1.3	901	1.1
사회복지분야	6,172,816	96.3	6,566,470	96.3	393,654	6.4
- 공적연금	6,172,816	96.3	6,566,470	96.3	393,654	6.4
합 계	**6,408,567**	**100.0**	**6,818,206**	**100.0**	**409,639**	**6.4**

인사혁신처 소관 예산안의 특징은 공무원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이 세출예산의 대부분(96.3%)을 차지한다는 점임.

전출금은 국가공무원 전체(국방부 등 제외)의 연금(퇴직급여)부담금과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과 퇴직급여 지출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보전금으로 구성되는데,

특히 보전금은 전년대비 508억 200만원 증가한 3조 3,405억 7,200만원으로 1.5% 증가함.

한편, 인사혁신처가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퇴직급여 부족분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공무원 퇴직급여 부족분을 합산한 전체 충당 보전금 규모는 9조 5,099억 800만원임.[229)]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공무원연금기금 전출	**6,172,816**	**6,566,470**	**393,654**	**6.4**
연금부담금	2,064,334	2,188,578	124,244	6.0
퇴직수당부담금	694,650	880,247	185,597	26.7
재해보상부담금	123,893	156,897	33,004	26.6
대여학자금부담금	169	176	7	4.1
보전금	3,289,770	3,340,572	50,802	1.5

229) '26년 보전금 9조 3,215억원에 '24년 정산액 1,884억원을 반영한 예산상 보전금

나. 일반 사업비 내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 중 성질별로 보아 일반사업비로 분류되는 금액은 총 1,700억 9,600만원인데, 이는 2025년도에 비하여 9.7%에 해당하는 150억 9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주요 계속사업의 구체적인 증·감 내역은 다음 표와 같음.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내역(20% 이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주요 증액내역
			(B-A)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ODA)	33,345	44,223	10,878	32.6	·인건비 부족분 보존(+7,679백) 등
교육시설유지관리	3,088	4,212	1,124	36.4	·AI 교육장 구축 및 노트북 구매(+1,155백) 등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보화)	-	1,187	1,187	100	·차세대국가인재DB 구축(신규)

[2026년도 주요 감액사업내역(20% 이상)]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5년 예산 (A)	2026년 예산안 (B)	증 감		주요 감액내역
			(B-A)	%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정보화)	2,609	1,601	△1,008	△38.6	·공무원 채용시험 통합시스템 구축사업 3단계 완료(△1,491백) 등
전자인사관리시스템운영(정보화)	13,284	7,487	△5,797	△43.6	·3세대 전자인사관리시스템 2단계 완료 및 3단계 구축(△5,729백) 등

다. 성인지 예산안

2026년도 인사혁신처 성인지 예산안은 성별 영향을 고려한 공직자 역량개발을 목표로 교육과정운영 사업이 37억 3,000만원 편성되었음.

[2026년도 인사혁신처 성인지 예산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회계	대상사업	'25년 예산(A)	'26년안 (B)	증 감	
				(B-A)	%
일반회계	교육과정운영	3,930	3,730	△200	△5.1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소계		-	-	-	-
직접목적사업 소계		-	-	-	-
총 계		**3,930**	**3,730**	**△200**	**△5.1**

교육과정운영 세부사업은 공직자 대상 성평등 관련 교육을 통해 공직자 양성평등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성평등 목표로 함.

3. 공무원연금기금

(1) 수입계획안

2026년도 공무원연금기금의 수입 편성 규모는 금년(33조 7,737억원) 대비 4.1%(1조 3,882억원) 증가한 35조 1,619억원으로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의 경우 기여금과 자치단체연금부담금인 연금수입에서 8,041억원, 직원 대부금 회수 등 기타경상이전수입에서 20억원 증액되었고, 임대주택 및 회관 임대수입 등 관유물 대여료에서 5억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에서 744억원, 융자원금회수에서 47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자 및 재산수입에서 394억원, 관유물매각수입에서 429억원이 증액되었고, 수입대체경비수입에서 11억원이 감액되었음.

정부내부수입의 경우 국가부담 보전금에서 508억원, 국가부담 부담금에서 4,012억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단위: 억원, %)

항 목	2025계획 (A)	2026계획(안) (B)	증 감		비 고
			(B-A)	%	
자체수입	**231,365**	**239,016**	**7,651**	**3.3**	-
- 연금수입	204,209	212,250	8,041	3.9	기여금, 지자체 부담금
- 기타경상이전수입	-	20	20	순증	직원 대부금 회수
- 관유물대여료	6,762	6,757	△5	△0.1	임대주택 및 회관 등 임대 수입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2,066	1,322	△744	△36.0	주택 및 시설운영수입
- 융자원금회수	12,063	11,590	△473	△3.9	연금 및 학자금 대부
- 이자 및 재산수입	4,144	4,538	394	9.5	금융자산 및 연금대부이자수익
- 관유물매각수입	2,062	2,491	429	20.8	부동산 및 임대 주택 매각
- 수입대체경비수입	59	48	△11	△18.6	은퇴지원교육수입
정부내부수입	**71,889**	**76,409**	**4,520**	**6.3**	-
- 보전금	32,898	33,406	508	1.5	국가분 부담금
- 연금부담금	27,945	29,415	1,470	5.3	국가분 부담금
- 퇴직수당 부담금 등	11,046	13,588	2,542	23.0	국가분 부담금
금융자산 회수	**34,483**	**36,194**	**1,711**	**5.0**	채권·주식 등 회수
합 계	**337,737**	**351,619**	**13,882**	**4.1**	-

(2) 지출계획안

2026년도 공무원연금기금의 지출 편성 규모는 기금의 수입 편성 규모와 같은 35조 1,619억원으로 금년(33조 7,737억원) 대비 4.1%(1조 3,882억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연금사업에서 1조 7,839억원, 주택사업에서 423억원, 시설운영사업에서 36억원, 고객지원사업 및 금융자산운용경비에서 20억원, 회계기금간거래에서 544억이 증액된 반면, 대부사업에서 355억원, 금융자산 운용에서 4,646억원이 감액되었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지출]

(단위: 억원, %)

항 목	2025계획 (A)	2026계획안 (B)	증 감		비 고
			(B-A)	%	
사 업 비	281,799	299,762	**17,963**	**6.4**	-
- 연금사업	268,616	286,455	17,839	6.6	연금 및 재해보상급여
- 대부사업	8,384	8,029	△355	△4.2	연금 및 학자금 대부
- 주택사업	3,814	4,237	423	11.1	주택관리·임대주택건립
- 시설운영사업	838	874	36	4.3	지부시설·복지시설운영
- 고객지원사업	125	145	20	16.0	은퇴지원교육, 퇴직공무원 지원사업, 공무원 재해예방·재활사업
- 금융자산운용	22	22	-	-	자금운용 및 금융자산투자 경비
기금운영비	**729**	**750**	**21**	**2.9**	기금관리 운영비
- 인건비	553	577	24	4.3	인건비, 퇴직금
- 일반경비	175	173	△2	△1.1	관리운영비, 정보화경비 등
차입금상환	**2**	**2**	-	-	금융기관 단기 차입금 이자
회계기금간거래	**657**	**1,201**	**544**	**82.8**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국가분)
금융자산 운용	**54,550**	**49,904**	**△4,646**	**△8.5**	채권·주식·대체투자 등
합 계	**337,737**	**351,619**	**13,882**	**4.1**	-

(3) 공무원연금수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무원 개인 기여금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부담률은 연차적으로 0.25% 인상되어 9.0%에 이르면서 기금의 수입은 늘고 같은 기간 퇴직급여에 물가인상률 적용이 유예되어 지출은 제한되었으나,

2021년부터 퇴직급여인상률이 적용되어 지출은 확대되는 반면 기여율과 부담률은 동일하여, 2026년 퇴직급여 수지차는 9조 3,214억 7,500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연금수지 증감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 항 목	'25년 계획(A)	'26년 계획안(B)	증감(B-A)
Ⅰ. 수 입	14,918,762	15,634,764	716,002
○ 기여금	6,734,615	7,011,969	277,354
○ 연금부담금 등	8,125,229	8,505,948	380,719
○ 기금전입금	58,918	116,847	57,929
Ⅱ. 지 출	23,598,568	24,956,239	1,357,671
○ 퇴직연금	22,854,884	24,322,262	1,467,378
○ 퇴직일시금 등	743,684	633,977	△109,707
Ⅲ. 수지차	8,679,806	9,321,475	641,669

Ⅱ. 검토의견

[일반회계]

<세 출>

1. 국가시험시행(1631-300)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정책 추진에 따라 7급 공채 추가 실시에 필요한 예산이 정부 예산안 편성 시기에 반영되지 못한바,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노동자 안전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소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가시험시행 사업은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 관리를 통해 우수인재를 선발하고 환경 변화에 대응해 수요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공직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4억 9,400만원이 감액된 133억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국가시험시행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가시험시행	13,848	13,818	13,324	△494	△3.6
국가시험운영	13,151	13,286	12,713	△573	△4.3
국가시험 시스템관리	171	38	50	12	31.6
공직박람회 개최	150	150	150	-	-
시험관리 부대비용	304	270	330	60	22.2
상용근로자 인건비	72	74	81	7	9.5

나. 근로감독관 확대를 위한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예산 추가반영 필요

□ 현재 ‘근로감독관 확대’ 대통령 지시(2025.6.5., 국무회의)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증원이 추진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가 산재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 및 건설업의 비중이 OECD 국가들보다 높고, 사고사망만인율[230]도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확보하려는 것임.[231]

* ‘23년 GDP 대비 제조업 비중 27.6%, ’24년 GDP 대비 건설 투자 비중 14.2%
  (OECD 회원국 평균 제조업 15.8%, 건설업 11.5%)
* (사고사망만인율) ’23년 0.39‰, ‘24년 0.39‰
  ↳ 주요 국가 사고사망만인율(‘23년): 일본 0.12, 독일 0.11, 미국 0.35, 영국 0.03

□ 고용노동부는 증원 계획 중인 근로감독관 2,000명 중 수시 직제로 300명을 증원하였고(2025.8.26. 시행), 2025년 하반기에는 700명, 2026년에는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증원되는 인원 중 500명(행정 200, 과학기술 300)을 선발하기 위하여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직 7급 공채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있음.

---

230) 임금근로자수 10,000명당 발생하는 사망자수의 비율
23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9.17.

□ 해당 공채를 통하여 과학기술직군(기계·전기·화공·토목·시설) 300명, 행정직군(일반행정·고용노동) 200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1차시험('25.11.15.), 2차시험('26.1.24.), 3차시험('26.3.5.~6.)을 실시하고, 선발된 인원은 2026년 4월에 고용노동부에 배치될 예정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분야 국가공무원 7급 선발 계획》

□ **선발직군 및 인원**

과학기술직군(300명)					행정직군(200명)	
공업 (기계)	**공업** (전기)	**공업** (화공)	**시설** (토목)	**시설** (건축)	**행정** (일반행정)	**행정** (고용노동)
64	62	52	67	55	100	100

□ **선발 일정**

시험 공고	원서 접수	1차시험 (PSAT)	2차시험 (전문과목)	3차시험 (면접)	합격자 발표	부처 배치
'25.9.10.	'25.9.15.~19.	'26.11.15.	'26.1.24.	'26.3.5.~6.	'26.3월말	'26.4월말

* 근로감독관 채용 원서접수 인원 : 12,290명

자료: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는 해당 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약 20억원(1차 시험: 8억 7,000만원, 2차시험 9억 9,400만원, 3차시험 4억 3,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나,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는 해당 7급 공채 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소요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예산과목)	소요예산				
	1차 ('25.11.15.)	2차 ('26.1.24.)	3차 ('26.3.5.~6.)	'26년 소계 (2차+3차)	합계
총 계	876,745	693,839	439,082	1,132,921	2,009,666
집행 계	353,400	128,772	260,700	389,472	742,872
일용임금(110-04)	27,000	8,710	4,620	13,330	40,330
일반수용비(210-01)	25,500	30,520	38,580	69,100	94,600
임차료(210-07)	46,200	27,132	148,500	175,632	221,832
관리용역비(210-15)	-	-	15,000	15,000	15,000
기타운영비(210-16)	233,200	52,120	16,000	68,120	301,320
국내여비(220-01)	21,500	10,290	38,000	48,290	69,790
출제 계	523,345	565,067	178,382	743,449	1,266,794
일용임금(110-04)	46,510	55,902	14,070	69,972	116,482
일반수용비(210-01)	91,000	66,000	9,800	75,800	166,800
급식비(210-04)	29,720	34,200	5,580	39,780	69,500
임차료(210-07)	4,450	14,330	1,800	16,130	20,580
일반용역비(210-14)	37,415	34,000	14,270	48,270	85,685
기타운영비(210-16)	304,200	342,095	117,745	459,840	764,040
국내여비(220-01)	10,050	18,540	15,117	33,657	43,707

자료: 인사혁신처

□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근로감독관 충원을 위한 7급 공채 추진 방침이 올해 9월 초에 결정되어[232] 시기적으로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해당 소요를 반영하기는 어려웠으며,

232) 2025년도 하반기 고용노동부 충원 계획 제출('25. 9. 3.)

1차시험 실시에 필요한 예산은 인사혁신처 및 고용노동부 소관의 기정 예산을 활용하여 소요 비용을 조달할 계획이나, 2차시험 및 3차시험 실시에 필요한 예산 11억 3,300만원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근로감독관 확대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적정한 예산을 반영하여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결정 과정과 추진 일정을 고려해 볼 때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으로 보임.

□ 따라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과 노동자 안전 확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해당 소요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1849-304)

○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사업은 공무원의 복무제도와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역사업으로는 복무 및 징계운영 사업과 공직윤리위원회운영 사업이 있으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00만원 증액된 5억 2,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복무 및 공직윤리위원회 운영	490	509	529	20	3.9
복무 및 징계운영	194	210	215	5	2.4
공직윤리위원회운영	299	299	314	15	5.0

나.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노력 필요

□ 공직윤리위원회운영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안건 검토 및 회의 개최를 지원하는 사업임.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재산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4급 이상)에게 공무원 본인 및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음.[233]

---

23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재정경제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제14조의12에 따른 직권 재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 또는 제14조의12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음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

□ 공직자가 보유주식을 일정한 수탁자에게 백지신탁할 경우, 보관신탁과는 달리 수탁자는 그 주식을 매각하여 다른 재산으로 바꾸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의 원소유자인 공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에 관한 정보도 갖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임.

□ 다만, 해당 주식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음.

니하며, 수탁기관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는 제외한다.

② <삭제 2019.12.3.>

③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에 따른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 개요》

□ **제도 취지**

◦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적 이해 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

□ **대상 및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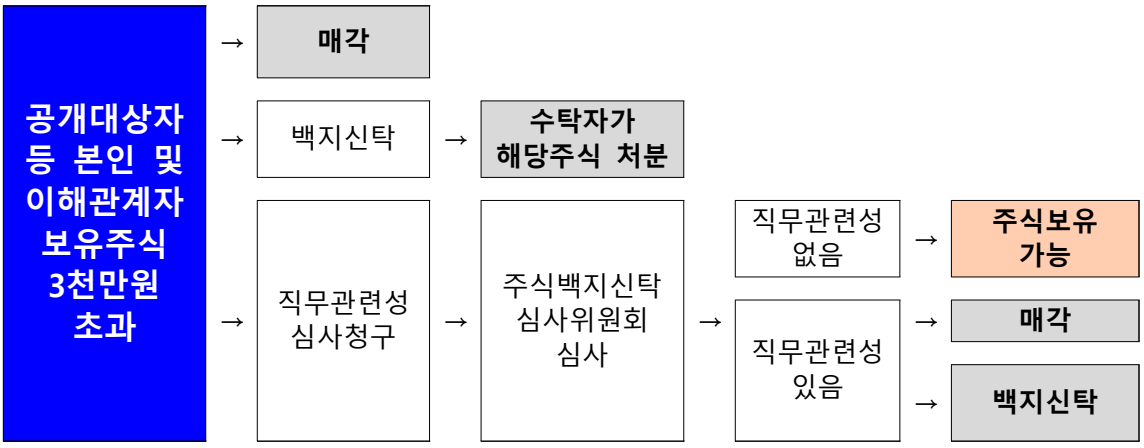
◦ 재산공개대상자, 기획재정부의 금융 사무 관장 국 4급 이상,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본인 및 이해관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보유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주요내용**

◦ 원칙적으로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함

◦ 다만, 매각 또는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야 함

□ **업무처리 절차**



자료: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 주식백지신탁제도는 사적 이익이 공적 결정에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 신뢰도를 제고함은 물론, 공직자가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제도 운영의 취지가 있음.

□ 다만, 공직자 사유재산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과 수탁기관의 자산 운용 불이익이 공직자 본인에게 귀속되는 등의 문제점이 존재하는바,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상당 규모의 주식을 보유한 민간 인재의 공직 영입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234]

현행 법령에서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아 심사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존재하는 상황임.[235]

□ 특히,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다수 제기되었던바,

직무관련성 판단기준[236]과 관련하여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높아

---

234) 동아일보, 「[단독] 보유주식 파느니 공직 포기… 올해만 506건 직무관련성 심사」, 2024년 10월 25일,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25/130290635/2.

235)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제11항에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용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이 조항도 심사기준의 구체화를 전제한 것은 아니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에서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들을 정하고 있을 뿐 심사기준의 구체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추상적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중에서도 직무관련성이 부인된 예들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련업종에 대한 시험 및 평가에 관여하는 직무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지만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장영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과 백지신탁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고려법학」 제70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3. 9, pp. 348, 각주

236)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명확성·일관성 및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민간 우수인재 영입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임 중 주식 접근은 차단하되 퇴임 후 원상회복이 가능한 보관신탁제도 도입 등 대안 검토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음.

□ 이러한 점에서 현행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봄.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1934-531)

○ 신설되는 주니어 직위가 국익 반영이라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 취지에 맞추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사업은 국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국제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8억 7,800만원이 증액된 442억 2,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32,434	33,345	44,223	10,878	32.6
국제부담금 지급	32,403	33,313	44,191	10,878	32.7
운영경비	32	32	32	-	-

나. 국제기구 주니어 직위에 대한 사업 실시에 따른 효과성 확인 필요

□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은 우리 정부가 인건비를 부담하여 국제기구에 공무원을 채용시킴으로써 국제기구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우리나라 입장 등을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의 수는 확대되어[237] 2025년도 기준 135개 직위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7개 직위의 추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음.

□ 새 정부는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데,[238]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정책 기조에 따라 「공직 활력 제고방안」(2025.7.)을 마련하였으며, 청년 공무원의 직무몰입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청년세대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실무급 직위(가칭, 주니어 직위)를 신설·운영할 예정임.

---

237) ('22)120개 → ('23)130개 → ('25)135개 →('26예산안)142개

238) 인사혁신처 보도자료(2025.7.31.) '국민위해 소신껏 일하도록' 공직 활력 제도 정비 본격화, 인사혁신처누리집 (https://www.mpm.go.kr/mpm/comm/newsPress/newsPressRelease/?boardId=bbs_0000000000000029&mode=view&cntId=4096&category=&pageIdx=5)

《「공직 활력 제고방안」(2025.7.) 내 주니어 직위 관련 내용 발췌》

⑵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처우개선 ○ **(청년 대상 고용휴직 확대)** 청년 공무원의 직무몰입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청년 공무원 특화 고용휴직 확대 - **5급 이하** 청년 대상 국제기구 **주니어 고용휴직**(OECD) **신설**

자료: 인사혁신처

□ 현행 국제기구 고용휴직은 국·과장급 공무원이 근무 가능한 직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위 직급이나 저연차 공무원의 지원은 한계가 있는데,

2026년도에 신설 예정인 주니어 직위는 청년세대 중앙부처 공무원(자격요건은 4~9급 경력직공무원, 만 39세 이하, 근무경력 5년~10년으로 예정)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 고용휴직 실무급 직위(가칭, 주니어 직위)로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의하여 경제, 사회, 과학 등 7개 분야에서 추진될 예정임.

□ 주니어 직위 신설은 기존 직위(시니어 직위)와 구분된 이원적 체계로 운영하여 청년세대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과 글로벌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청년세대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직 몰입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OECD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운영성과와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UN 등 타 국제기구로 확대·추진될 예정으로,

해당 7개 직위에 대해 6개월분의 인건비를 반영하여 총 7억 3,200만원(주니어 7개 직위×2억 900만원[239]×0.5년)이 편성되어 있음.

《국제기구고용휴직 기존 직위와 주니어 직위 비교》

구분	기존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	국제기구 주니어 직위('26년 신설)
직위수	135개	7개
직급(OECD)	PAL 7 (P4~5)	PAL 4~6 (P3)
휴직기간	통상 3년 근무(최대 5년)	2년 근무(+1년 연장 가능)
선발절차	선발공고 → 부처추천 → 심의 → 국제기구 추천 → 국제기구 면접 → 휴직발령	
성과관리	매년 휴직 연장 및 휴직자 교체 시 업무실적, 국제기구 성과평가* 결과 등 점검	

※ OECD 직위 비교 및 분야별 현황

UN	OECD	전문가 직위 주요역할
P5	PAL8	최소 10년 관련 경력을 갖춘 선임과장급 직위 부서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관리와 주요 정책 결정에 참여
P4	PAL7	최소 7년 관련 경력을 요구하《는 과장급 직위 팀이나 부서의 관리 및 감독을 담당하며, 전략 계획 수립에 참여

자료: 인사혁신처

□ 주니어 직위 신설은 청년세대 공무원에게 국제기구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글로벌 역량과 국제 감각을 배양하고, 국제사회 영향력 강화를 위해 고위직 진출 확대와 함께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육성을 위해 초급단계부터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고 청년 공무원의 동기부여 및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정책 추진으로 보임.

239) 기존 시니어 직위 단가(2억 5,300만원)에 OECD 관리직급(PAL7)과 실무직급(PAL6) 간의 기본급여 차이(약 82% 수준)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됨.

□ 그러나 주니어 직위에 해당하는 OECD의 PAL 4~6(UN P3급) 직위는 2~5년의 관련 경력을 갖춘 실무직원으로서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일부를 담당하게 될 예정이므로,

현 시점에서 기존 직위와 동일한 수준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견 공무원의 국제개발·협력 전문가 양성,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및 공무원의 경력 개발 등을 통한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의 육성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제개발·협력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전략 등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봄.

□ 또한, 현재 국외장기훈련 등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 일정 기간 복무할 의무(6년의 범위, 위반 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반납)를 부여하여 인력 유출을 억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240] 국제

240)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3조(위탁교육훈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인사혁신처장은 연도별 공무원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훈련목적에 적합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선발하여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 중인 공무원이 교육훈련 목적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인사혁신처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기구고용휴직자에게는 휴직기간(통상적으로 2~3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할 의무를 부여하되,[241] 경비 반납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복무의무가 해제된다는 점에서 실질적 구속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주니어 직위 근무 후 해당 인력의 이탈 가능성도 있어 보이므로,

주니어 직위 고용휴직 공무원이 휴직 복귀 후 이탈하지 않고 국가의 정책능력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신설되는 주니어 직위가 청년세대 공무원에 대한 기회 제공과 동시에 국익 반영이라는 국제기구고용휴직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범 운영 과정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241)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9(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복무의무)** ① 법 제7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제기구에 임시로 채용되어 휴직한 경우로서 인사혁신처 소관으로 편성된 국제부담금 예산의 지원을 받은 공무원은 휴직기간과 같은 기간 이상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의무복무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소속기관을 통하여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 경우나 해당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보화)(1943-302)

○ 동 사업은 현행 시스템의 인프라 교체, 보안 강화, AI 기반 편의성 개선을 위하여 추진되는 핵심 정보화 사업인 만큼, 인사혁신처는 사업의 전체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여 2차년도 시스템 구축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가. 개 요

□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보화) 사업은 현행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하기 위하여 2개년에 걸쳐 새로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11억 8,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음.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보화)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보화)	-	-	1,187	1,187	순증

나.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사업의 면밀한 일정 관리 필요

□ 동 사업은 범국가적 공정채용 지원 및 과학적 인재정보 관리체계 마련을 위하여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2026년 예산안에 11억 8,7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부처에 인사수요가 발생하거나 정무직 등 국가 주요직위 인선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게 구축된 인물정보 관리시스템으로서,

공무원 및 사회 각 분야 전문가에 대한 학력, 경력, 자격면허, 상훈, 저서, 논문 등 주요 직위 인재추천에 필요한 객관적인 인물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개요》

□ 목적

◦ 공무원 및 사회 각 분야 전문가 인물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정무직 등 국가 주요직위 인선시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을 도모

□ 추천직위

◦ 정무직(선거직 제외)
◦ 개방형 및 공모직위
◦ 책임운영기관장
◦ 공공기관장 및 임원
◦ 정부위원회 위원
◦ 각급기관 시험위원
◦ 각종 선발심사위원회 및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 수록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위원
◦ 5급 이상 국가공무원, 4급 이상 지방공무원(여성은 5급 이상)
◦ 대학의 조교수 이상, 인문사회·과학기술 등 각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박사 학위 소지자
◦ 중견기업의 임원, 유망 중소기업(『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경영인
◦ 주요 협회, 단체 등의 임원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변호사·의사·건축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등 전문 자격증 소지자
◦ 기술사, 대한민국 명장·우수숙련기술자·숙련기술전수자·기능한국인
◦ 문화·예술·체육 관련 국내외 입상자 및 훈포상 수여자
◦ 긴급구조요원, 시민단체 활동가, 국제기구 종사자 등 해당 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자
◦ 기관·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청년인재
◦ 국제협력 사업에 참여한 외국인
◦ 사회 각 분야에서 뚜렷한 업적이나 성과를 거두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자
◦ 기타 인사혁신처장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수록정보

◦ 학력, 경력, 자격면허, 상훈, 저서, 논문 등 주요 직위 인재추천에 필요한 객관적인 인물정보 자료

자료: 인사혁신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시스템은 1999년에 구축된 이후 1차 개편('06.11.~'07.03.), 2차 개편('16.04.~'16.12.)을 거쳐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HW와 검색엔진을 포함한 SW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전면 재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지난 10년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통한 인재추천 사용 빈도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국가인재DB 활용 기관이 지속적으로 확대[공공기관('20년), 지방공기업('24년), 지방출연기관('26년 예정)]되는 등 시스템 이용 수요가 대폭 증가하였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사용 현황》

□ 연간 인재추천 사용 빈도(10년간 약 3.1배 추천인원 증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598	11,686	789	21,099	652	15,228	966	26,651	845	22,086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1,006	29,632	966	30,548	972	29,000	900	28,020	**921**	**35,775**

□ 연간 직접검색 사용 빈도(10년간 약 3.9배 추천인원 증가)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324	9,504	149	4,090	209	8,422	305	11,205	485	18,374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활용 건수	추천 인원
553	16,548	677	22,902	913	30,877	993	33,159	**1,140**	**37,247**

자료: 인사혁신처

□ 또한,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고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따른 시스템의 보안 강화가 요구되고 있음.[242)]

□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정보화) 사업은 이와 같은 신규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

현행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인물정보 검색 편의성 증진, 보안 강화, DB관리체계 개선 등을 도모하기 위해 2026년도부터 2개년 동안 진행될 예정임.

□ 동 사업에 대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ISP 수립 사업은 2024년도에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총 62억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개년(2026년~2027년)에 걸쳐 본 사업이 추진될 계획임.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ISP 수립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24.5.14.~ 2024.9.11.(약4개월) / 118,300,000원
· 수행업체 : ㈜지티아이씨
· 주요내용 : 현황분석 ⇒ 목표모델 설계 ⇒이행계획 수립

□ 1차년도(2026년, 11억 8,700만원)에는 국민추천제 시스템 개선, DB 재설계 및 분류체계 정립, 국가인재DB 구축(분석·설계)을 중점적으로

24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방안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 10. 15. 접속,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21834.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년도(2027년, 50억 5,300만원)에는 국가인재DB 구축(구현·테스트), 빅데이터 기반 AI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임.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소요예산 및 추진 일정》

□ **소요예산 : 총 6,240백만원**

(단위: 백만원)

이행과제	과제내용	구 분	2026년	2027년	합 계
#1	국가인재DB 구축	개발비	670	2,428	3,098
		상용SW	–	269	269
		소 계	670	2,697	**3,367**
#2	DB재설계 및 분류체계 정립	개발비	517	-	517
		상용SW	–	–	-
		소 계	517	-	517
#3	빅데이터 기반 AI시스템 구축	개발비	-	1,851	1,851
		상용SW	–	505	505
		소 계	-	2,356	2,356
총 합계			**1,187**	**5,053**	6,240

□ **추진 일정**



자료: 인사혁신처

□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서는 인물정보 검색과 정보 제공 방식, 그리고 국민추천제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한편, 보안관리 체계 강화, 데이터 관리체계 및 인프라 재설계 등을 통하여 시스템 관리의 효율화가 이루어질 계획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주요 개선 내용》

[대외] 사용자 편의성 개선	
개선1	**인물정보 검색 편의성 개선** ① 개인별 검색조건 설정 등 **사용자 맞춤형 검색 기능**으로 검색 편의 제고 +AI 문장형·대화형 검색으로 처음 이용자도 쉬운 검색 ② 미래·융복합 분야 반영 등 **전문분야 분류체계 재설계/주요 기관, 직위 등에 대한 '코드화'**를 통해 인물검색 정확성 확보 +AI 인물정보 분석을 통한 전문분야 자동 추천
개선2	**정보제공 방식 개선 등 사용자 편의성 개선** ① 공무원의 **불필요 임용내역 제거** 등 **핵심경력 관리**로 인물정보 활용성↑ * 처→국→과 등 임용단계 생략/휴직·교육 등 非직무 분리/핵심경력 제공 후 필요시 전체정보 활용 +AI 생성형AI를 통한 인물정보 요약보고서 자동생성 제공
개선3	**국민추천제 시스템 개선** (*공약이행 과제) ① **(대외)** 독립된 시스템 구축(현재 국가인재DB 인프라 공동사용), 사용자중심의 참여형 UI/UX 구성, PC·태블릿·모바일 등 접근성 개선, 영문 홈페이지 구현, 개방형직위 등 시스템 연계 ② **(내부)** 국민추천 결과 자료 자동화 등 관리 효율화, 추천인재 각 부처 상시활용, 통계 자동화 및 시각화(대시보드)
[내부] 관리 효율화	
개선1	**보안관리 체계 강화** ① 개인정보 처리 이상행위 탐지·차단 SW 도입 - 비정상적 대량 다운로드 등 기준 설정 → 탐지 시 자동 차단 및 소명 요구 → 정상여부 판단 ② 문서보안(DRM), 내·외부망 보안 설계기준 등 최신화 도입
개선2	**데이터 관리체계 및 인프라 재설계** ① SW·HW 전면 교체 등 **최신버전 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성능·효율성↑ ※ 검색엔진 등 최신버전 적용, 전체 HW(서버) 클라우드 적용 등 ※ 현재 (여가부)**여성인재DB**·(국조실)**청년인재DB가 시스템을 공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분리**(이관) 검토 필요 ② MOU등 다양한 인물 **연계 데이터의 표준체계 마련**으로 자동 현행화 ※ 기관별 상이한 정보 구성(레이아웃) → 표준 포맷 처리 → DB 자동 현행화

자료: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차세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될 경우 개선된 인물정보 검색 기능과 인공지능 기반 의사결정체계를 바탕으로 정부인사의 획기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단순반복업무 자동화와 불필요한 업무를 제외함으로써 연간 업무처리에 소요되는 67만 시간(비용 약 139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동 사업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전면 교체, 국가 인재 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최신 보안 기준 적용과 AI 기반 검색 도입 등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핵심 정보화 사업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수 있음.

□ 인사혁신처는 향후 2년간 총 62억 4,000만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의 전체 일정을 면밀히 관리하여, 2차년도 시스템 구축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5. 공무원후생복지지원(2044-303)

○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연계하여 동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동호인 대회, 공무원 예술대전, 전직지원 컨설팅, 민관보수수준 실태 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400만원이 감액된 7억 6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공무원후생복지지원	735	770	706	△64	△8.3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	266	269	226	△43	△16.0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253	260	180	△80	△30.8
공무원 전직지원컨설팅 운영	180	200	300	100	50.0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37	41	-	△41	순감

나.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의 내실화 필요

□ 2026년도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 예산안은 7억 6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 7억 7,000만원 대비 6,400만원(8.3%)이 감액 편성되었음.

□ 내역사업별로는 공무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전직지원컨설팅 운영’은 확대된 반면,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 예산이 4,300만원,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예산이 8,000만원,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예산 4,100만원(전액)이 각각 삭감되었으며,

인사혁신처는 동 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와 효과성을 고려한 지출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공무원후생복지지원 사업 내역사업별 증감 내역》

내역사업	2026년도 예산안 증감 세부 내역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	동호인대회 종목 축소(△27백), 후생복지봉사단 종료(△16백)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공무원 음악제 폐지(△80백)
공무원 전직지원컨설팅 운영	전직지원컨실팅 확대 운영(+100백)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전액 삭감 (△41백만원)

*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는 공무원 보수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공무원보수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매년 시행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연구개발(7032-300) 등을 통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임.

자료: 인사혁신처

□ 최근 5년간 동 사업의 규모는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퇴직 예정 공무원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공무원 전직지원컨설팅 운영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재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 사업은 감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근 5년간 내역사업별 예산 추이》

사업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중앙행정기관 동호인대회 및 후생복지 지원	342	234	269	269	226
공무원 예술대전 개최	271	271	260	260	180
공무원 전직지원컨설팅 운영	186	200	200	200	300
민·관 보수수준 실태조사	41	41	41	41	-

자료: 인사혁신처

□ 이같은 예산 편성은 비효율적이거나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예산을 축소하고, 절감된 재원을 핵심 사업에 재배분함으로써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동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삭감은 공직사회의 활력 저하, 유능한 인재에 대한 유인 감소 등 조직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고가 필요해 보임.

□ 최근 낮은 보수, 악성 민원, 경직된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특히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에서 직업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급증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공무원 공채 경쟁률 및 저연차 공무원 퇴직자 수 추이》

□ 인사혁신처 주관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쟁률 추이(2021~2025년)

◦ 5급 공채: (`21)43.5:1→(`22)37.9:1→(`23)35.6:1→(`24)35.0:1→(`25)34.4:1

◦ 7급 공채: (`21)47.8:1→(`22)42.7:1→(`23)40.4:1→(`24)40.6:1→(`25)44.6:1

◦ 9급 공채: (`21)35.0:1→(`22)29.2:1→(`23)22.8:1→(`24)21.8:1→(`25)24.3:1

□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 수 추이(공무원연금 통계 기준)(2020~2024년)

◦ ('19)6,500→('20)9,009→('21)10,426→('22)13,032→('23)13,568→('24)12,013

자료: 인사혁신처

□ 정부는 공무원 처우 개선과 공무원의 공직 이탈 방지를 위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공무원 보수를 9년 만에 최대 폭인 3.5% 인상하여 반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공무원에 대한 문화·체육활동의 지원이나 민·관 보수 수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취향 기반 소모임 앱[243]의 이용 증가와 자신의 취미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즐기려는 '디깅(Digging)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본다면,
보수 인상 외에 직장에서의 동호회 활동이나 문화 활동 등을 지원함으로써 조직 내 원활한 소통과 공직생활의 만족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연계하여 동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243) '문토', '소모임', '당근(모임)' 등

6.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2044-306)

○ 인사혁신처는 신속하고 내실있는 재해보상 심사를 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위원회 개최,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위원수당의 상향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사업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제도의 운영 및 재해 예방을 도모하는 것으로, 내역사업은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및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4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6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2,200만원이 증액된 28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음.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공무원재해보상사업운영	2,206	2,591	2,813	222	8.6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운영	568	638	670	32	4.8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 운영 등	207	207	227	20	8.8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운영	1,431	1,645	1,815	170	9.4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추진	-	101	101	0	0.0

나. 신속하고 내실있는 재해보상 심사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필요

□ 공무원재해보상제도는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제공하여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제도로,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운영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운영은 재해보상에 대한 합리적 심사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경비를 반영하고 있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개요》

□ 심의회 개요

○ **(근 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제7조

○ **(설 치)** 2018. 9. 21.

○ **(주요기능)** ①공무상 요양,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장해급여 등 급여결정② 공무수행사망자 인정 ③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등 심의

○ **(구성인원)**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공무원재해보상법 §7 ①)

※ 풀(pool)제로 운영되며, '25.8월 기준 위원 총 88명

구 분	내 용
위원장	전문성과 연륜 등을 고려하여 회차별 매회 위촉
당연직위원(5명)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부 및 인사처의 4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위원(83명)	의료인, 법조인,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관련 전현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

○ **(임 기)** 3년(연임 2회까지 가능) ※ 당연직 위원 : 재임기간

□ 회의운영

구 분	내 용	비 고
회의개최	매회 11~15명으로 구성	상정 안건 및 위원 일정에 따라 매번 참석 위원 변경
의결정족수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개최빈도	(전자심의) 매주 월 (출석심의) 매주 수, 격주 목	변경가능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개요》

□ **심의회 개요**

○ **(근 거)**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 및 제53조

○ **(설 치)** 2018. 9. 21.

○ **(주요기능)** ①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급여 등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 ②연금급여에 관한 결정, 기여금의 징수 등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에 관한 이의제기에 따른 심사 ③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사 사항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사

○ **(구성인원)**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공무원재해보상법 §53 ①)

※ 풀(pool)제로 운영되며, '25.8월 기준, 위원 총 35명

구 분	내 용
위원장	전문성과 연륜 등을 고려하여 회차별 매회 위촉
당연직위원(5명)	기재부, 행안부, 고용부, 보훈부 및 인사처의 4급 이상 공무원
위촉직위원(30명)	의료인, 법조인, 인사행정 및 사회보장 관련 전현직 공무원 또는 전문가

○ **(임 기)** 3년(연임 2회까지 가능) ※ 당연직 위원 : 재임기간

□ **회의운영**

구 분	내 용	비 고
회의개최	위원장이 회의소집, 매회 11~15명으로 구성	상정 안건 및 위원 일정에 따라 매번 참석 위원 변경
의결정족수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개최빈도	매월 1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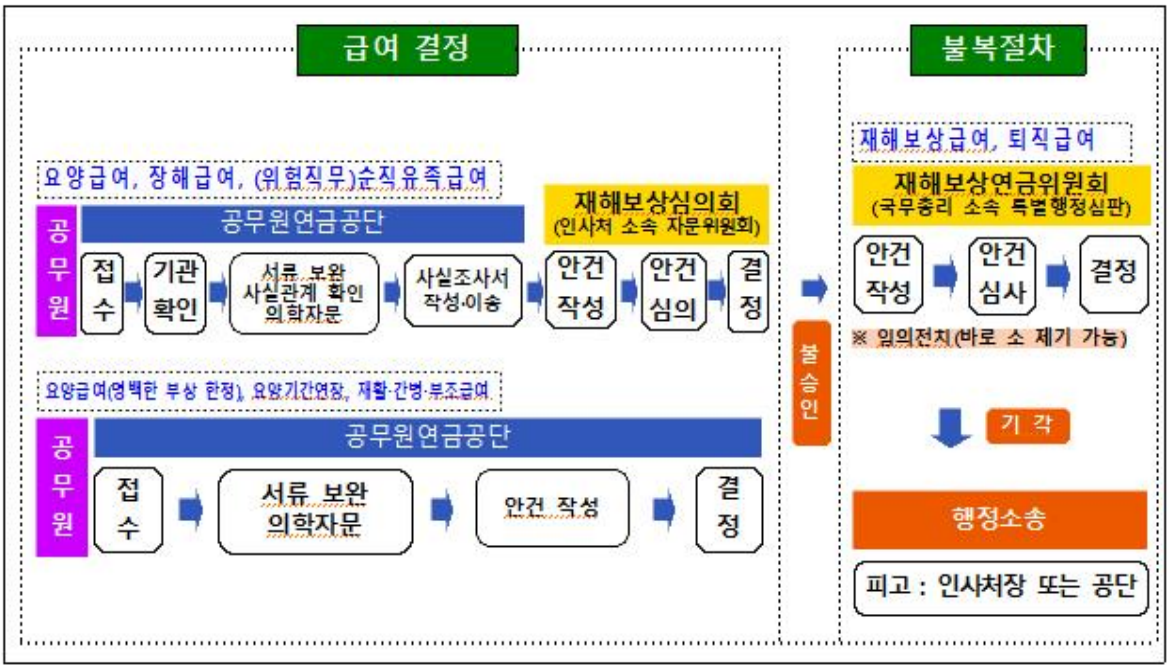
자료: 인사혁신처

□ 공무원인 청구인이 청구서·진단서 등 자료를 갖춰 소속 연금취급기관에 제출할 경우 연금취급기관은 경위조사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 심사를 청구하게 되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신청서·경위조사서·진단서 등 필수서류 및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인사혁신처로 이송하면 인사혁신처는 해당 안건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재해보상이 이루어짐.

□ 해당 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재해보상 급여처리 흐름도》



자료: 인사혁신처

□ 최근 재해보상 청구의 증가로 심의회의 처리 건수와 위원 당 평균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발생 기전이 복잡해 상당인과관계 판단이 어려운 질병(정신질환, 악성종양 등)이나 경위 파악이 어려운 자살 등과 관련된 사안의 비율도 높아져 심의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한 재해보상 처리 지연 및 미처리 이월 건수의 증가 등으로 심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 부담도 가중되고 있음.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현황 및 지급 수당》

(단위 : 회, 건,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회의 개최 횟수	105	113	107	109	105
회별 평균 참석 위원수	10.0명	10.1명	10.0명	10.0명	10.5명
처리 건수*	**7,759**	**6,995**	**7,319**	**9,150**	**10,565**
요양급여 질병	1,132	1,117	1,198	1,142	1,489
정신질환	228	258	335	393	578
악성종양	75	68	80	77	111
자살순직	19	26	49	31	40
장해급여	263	284	295	378	421
위원당 처리 평균 건수**	**7.4**	**6.1**	**6.8**	**8.3**	**9.6**
처리 기간	**69일**	**75일**	**68일**	**72일**	**79일**
위원 수당 지출	240,123	278,115	270,062	279,939	296.914

* 공무상 요양, 재요양·추가상병, 장해급여, 장해재판정, 순직유족급여를 모두 합한 수

** 처리 건수를 연간 참여 인원으로 단순 평균한 값으로, 다수 안건의 경우 복합상병(2개 이상의 상병) 및 법률 쟁점이 있는 안건으로 1인당 평균 검토 안건은 위의 건수를 상회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처리 및 미처리 이월 건수》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규 접수(a)	6,925	6,547	7,375	9,714	9,484
전년 이월(b)	1,677	1,121	1,130	1,650	2,135
처리(c)	**7,481**	**6,538**	**6,855**	**8,689**	**9,892**
미처리 이월 (a+b-c)	**1,121**	**1,130**	**1,650**	**2,135**	**1,727**

* 공무상 요양,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기준 청구

자료: 인사혁신처

□ 재해보상 재심의 경우에도 유사한 상황으로, 재해보상 재심을 처리하는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에서도 처리 기간과 미처리 이월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처리 및 미처리 이월 건수》

(단위 : 건,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신규 접수(a)	664	682	647	788	1,076
전년 이월(b)	143	241	297	355	473
처리(c)	566	626	589	670	682
미처리 이월 (a+b-c)	241	297	355	473	867
회의 개최 횟수	11회	10회	10회	11회	11회
처리 기간	94일	145일	186일	188일	247일

* 재해보상급여(요양, 장해, 순직 등) 및 연금급여 안건 전체

자료: 인사혁신처

□ 현재 재해보상심의위원회 및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위원수당 단가는 인사혁신처에서 운영 중인 다른 위원회 수당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데,

재해보상 심사 건수 및 난이도 상승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계 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재해보상 심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위원 수당의 현실화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244]

244) 현재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등의 위원 수당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정된 '18년 이후 동결된 금액임. 반면, 대법원은 2025년 낮은 감정료 등에 따른 재판 지연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 비용을 2배 인상함.(신체감정 최저 40만원에서 80만원, 진료기록감정 최저 60만원에서 120만원 / 「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

《인사혁신처 소관 위원회별 회차당 위원수당 예산 현황》

구분	공무원재해 보상심의회	공무원재해 보상연금위	중앙징계 위원회	공직자윤리 위원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계	**35만원**	**40만원**	**60만원**	**55만원**	**45만원**
참석수당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15만원
검토수당	20만원	25만원	45만원	40만원	30만원

자료: 인사혁신처

□ 2025년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재해보상 심사 건수의 증가에 따른 심의위원의 업무 증가 및 낮은 수당, 처리 기간의 지연, 전문가 및 객관적인 데이터 필요성 등 재해보상 심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이 지적된 바 있으며,

최근 재해보상 청구 건수의 증가와 함께 심사 결과에 불복한 소송 제기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245] 보다 신속하고 충실한 심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재해보상 심사의 내실화 및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추가적인 위원회 개최,[246]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위원수당의 상향 조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

245) <최근 5년간 재해보상 관련 소송 건수>
: ('20)145건 → ('21)204건 → ('22)260건 → ('23)273건 → ('24)298건

246)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100회를 상회하는 심의회가 개최되고 있어 인력이나 예산의 증가없이 회의 개최 수를 확대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며, 재심에 해당하는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경우 별도의 인력 증원 계획 없이 26년도에 7회 추가 운영 예산만(정부안) 반영된 상태임.

7.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7031-500)

○ 정보화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집중식 정보화시스템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사업은 인사혁신처 디지털 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네트워크, 정보보호시스템, 사무기기, 업무포털, 대표 홈페이지 운영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700만원 증액된 31억 3,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인사혁신처정보화(정보화)	3,027	3,122	3,139	17	0.5
정보화기반 운영	2,667	2,754	2,771	17	0.6
정보시스템 운영	360	368	368	0	0.0

나. 다양한 재난 및 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시스템 점검 등 필요

□ 동 사업은 인사혁신처 내 정보시스템, 업무시스템 및 인터넷기반 대국민 서비스가 사이버침해 및 장애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정보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업무포털과 대표 홈페이지 등 주요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것임.

□ 인사혁신처는 국가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장려라는 국가정보화 정책 기조[247]와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행안부 예규)」[248]에 따라 전 직원이 개인 PC가 아닌 G-드라이브에 모든 업무 자료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환경을 전면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의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2025.9.26.)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업무용 자료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249]에 저장된 데이터가 소실된 바 있음.

---

247)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기관등의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촉진)**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48) **「정부 클라우드저장소(G드라이브) 이용 지침(행안부 예규)」 제4조(기본원칙)** 이용기관은 G드라이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않고 G드라이브에 저장하여야 한다. (하략)

249) G-드라이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없는 정보 접근과 업무의 처리, 공유·협업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향상, 보안 강화, 업무용 자료를 저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정부 공통 클라우드 저장소로,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음.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소실된 G-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는 각 부서별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작성·보관해 온 제도 개선검토 자료, 각종 심사자료, 통계자료 및 인사정책의 수립 및 개선을 위한 자료 등으로

현재 온나라 등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주요 자료는 대부분 복구되었으나[250], G드라이브에 저장된 실무 과정에서 작성된 참고자료가 대부분 소실되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인사혁신처는 그동안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부 클라우드저장소를 전면적으로 활용해 왔으며, 이로 인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피해가 타 기관에 비하여 큰 측면이 있음.

□ 다만, 이번 사례는 중앙 집중식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여 개별 기관 차원에서도 자체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봄.

□ 정보화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사이버 공격, 물리적 재난, 대형 시스템 장애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앙 집중식 정보화시스템에서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업무 수행 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

250) 공무원 임용·보수 등 인사운영 관련 인사기록 데이터가 저장된 e사람 시스템 및 국가인재DB 등은 광주센터에 소재하여 화재 영향이 없었음.

[공무원연금기금]

<지 출>

8. 대여학자금융자(3141-321)

○ 동 사업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은 재직공무원 본인 및 자녀의 대학 등록금에 대하여 무이자 대출을 통한 공무원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300억원이 감액된 2,379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대여학자금융자 사업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대여학자금융자(융자)	346,551	267,900	237,900	△30,000	△11.2

나. 대여학자금융자 수요를 고려한 적정규모의 예산 반영 필요

□ 대여학자금융자는 「공무원연금법」 제7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251]에 근거하여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실시되는 융자사업 중의 하나로,

동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학

---

251) **「공무원연금법」 제75조(대여학자금의 부담)** ① 제17조제4호에 따라 공단이 수행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중 공무원 본인과 그 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이하 "대여학자금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이하 "대여학자금부담금"이라 한다)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연 2기로 나누어 1월 31일 및 7월 31일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의 정산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③ 공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대여학자금등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 공무원연금기금에서 그 부족분을 일시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 일시차입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공단에 내야 한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대여학자금부담금) ① 법 제7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대여학자금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대여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별 전년도 대여실적 및 해당 연도의 학생증가율·등록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액
2.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 부담기관별 대여금에 비례하여 공단이 산정하는 금액

②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정하였을 때에는 그 부담금액을 관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예산에 반영하고 그 금액을 공단에 내야 한다.

③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차입하는 경우 일시차입금의 이자는 차입기간 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더 내거나 덜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다음 기의 납부 기한까지 정산하지 아니한 경우(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전액을 공단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75조제2항 후단에 따른 금액을 원금으로 하고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정산하되, 회계연도마다 복리로 계산한다.

⑤ 공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낸 대여학자금부담금을 공무원연금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보다 우선하여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대여하여야 한다.

⑥ 대여학자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공무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학교를 졸업한 후(자녀가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학한 경우에는 4년제 대학 졸업 후를 말한다) 2년 거치 4년 분할상환하되, 기여금징수의무자가 매월 보수에서 징수하여 공단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중도에 퇴학하는 경우
2. 대여를 받은 공무원의 자녀가 졸업한 학교가 2년제 대학인 경우
3. 대여를 받은 공무원이 퇴직하는 경우
4. 두 자녀 이상의 대여학자금 상환기간이 겹치는 경우

⑦ 대여학자금의 대여 대상·금액·시기 및 상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등록금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통하여 공무원 본인 및 자녀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대출은 예상 퇴직금(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2년에서 4년 이내에 균등 분할 상환하도록 하고 있음.

□ 2026년 계획안은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300억원이 감액된 2,379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당초 공단에서는 대여학자금수요를 감안하여 3,384억 3,80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지출구조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300억원이 감액 조정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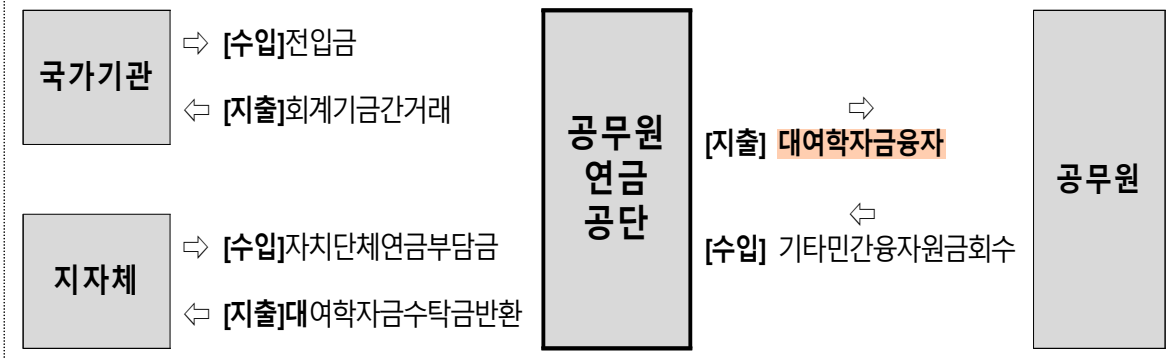
《대여학자금융자 운영 현황(2025년도 기준)》

<table>
<tr><th>구분</th><th>세부내역</th></tr>
<tr><td>대부규모</td><td>○ 연 2,679억원 규모</td></tr>
<tr><td>대부재원</td><td>○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부한 대여학자금 부담금</td></tr>
<tr><td>대부대상</td><td>○「공무원연금법」 제3조에 의한 현직 공무원 본인 및 그 자녀의 국내·외 대학교 등록금(공무원과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포함)
※ 공무원 배우자 제외</td></tr>
<tr><td>대부조건</td><td>
<table>
<tr><th>구분</th><th>국내대학</th><th>해외대학</th></tr>
<tr><td rowspan="2">대부금액</td><td>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납부액</td><td>연 $10,000이내에서 실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납부액
※ 정규학년 등록금만 대부 가능
※ 4년제는 총 $40,000, 6년제는 총 $60,000 가능</td></tr>
<tr><td colspan="2">※ 실등록금 : 등록금에서 장학금 또는 면제액을 공제한 금액</td></tr>
<tr><td>신청횟수</td><td>학기별 신청(연 2회)→총 12회</td><td>횟수제한 없음</td></tr>
<tr><td rowspan="2">대부제외</td><td colspan="2">대학원, 직업훈련기관, 계절학기 수강, 어학연수</td></tr>
<tr><td>(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 과정이 아닌 교육비</td><td>비학위과정(Foundation, Certificate, 전문사 등)</td></tr>
</table>
</td></tr>
<tr><td>대부이율</td><td>○ 무이자(「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252])</td></tr>
<tr><td>대부한도</td><td>○ 예상 퇴직금(퇴직급여, 퇴직수당 등)에서 공단 채무액을 공제한 범위에서 대부 가능 ※ 예상 퇴직금 초과 시 보증보험 설정 필요</td></tr>
<tr><td>신청방법</td><td>○ 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신청(인증서 필요)
※ 불가피한 경우 해외 대학은 수기 신청도 가능</td></tr>
<tr><td>대부금 지급 및 상환</td><td>○ 대부 심사 후 본인 계좌로 3일 이내 입금
○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2~4년 균등 분할 상환
※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2조</td></tr>
<tr><td>상환방법</td><td>○ (재직자) 보수에서 원천공제
※ 보수 미지급 휴직자는 복직 후 보수에서 원천공제 가능
※ 2자녀 이상 공무원은 학자금 상환 유예
○ (퇴직자) 퇴직급여(공제일시금, 퇴직수당)에서 미상환 잔액 일시 공제 또는 연금월액 분할 상환
○ (재임용) 재직자로 고지 전환하되, 퇴직 시 결정한 연금 분할 상환 조건으로 보수에서 원천공제
○ 상환 연체 시 연체료 부과</td></tr>
</table>

자료: 인사혁신처

252)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84조(기금의 운용 이율)** ② 후생복지사업에 따른 기금의 운용 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법 제75조에 따른 대여학자금 및 이 영 제7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자금의 대여: 무이자

《학자금 대여 관련 예산 흐름》



<국가기관 관련>
[수입] 전입금(91): 일반회계전입금(91-911), 특별회계전입금(91-912), 기금전입금(91-913)
* 전입금 용도는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대여학자금부담금으로 구분됨
[지출] 회계기금간거래(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 일반회계전출(8920-891), 특별회계전출(8920-892)

<지방자치단체 관련>
[수입] 자치단체연금부담금(3141-321)
* 자치단체연금부담금 용도는 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구분됨
[지출]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3141-323)

<공무원대출 관련>
[지출] 대여학자금융자(3141-321)
[수입] 기타민간융자원금회수(75-754)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그런데,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의 계획액은 2021년 4,146억원에서 2025년 2,67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액 편성되어 왔으나, 집행액은 3,400억원에서 3,800억원 사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2023년부터는 부족분 마련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바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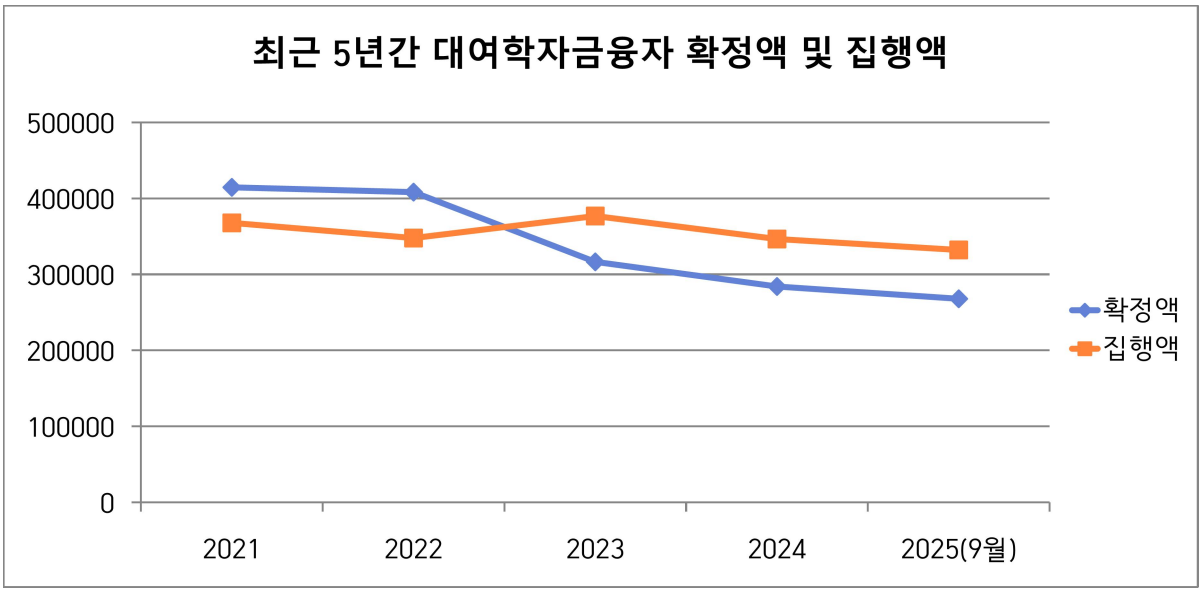
《최근 5개년간 대여학자금 실수요 대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당초 요구	심의.확정		기금운용계획 변경		집행액	집행률	불용액
		확정액	삭감액	증감	최종			
2021	420,906	414,565	△6,341	△45,600	368,965	367,798	99.7%	1,167
2022	408,258	408,258	-	△60,000	348,258	347,847	99.9%	411
2023	354,646	316,491	△38,155	78,719	395,210	376,801	95.3%	18,409
2024	394,649	284,065	△110,584	70,164	354,229	346,551	97.8%	7,678
2025.9월(*)	350,206	267,900	△82,306	74,580	342,480	332,672	97.1%	-

* 계획대비 건수 및 단가 증가로 대여학자금융자 예산 부족으로 자체변경('25.6.20.)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장학금 확대 정책 등으로 향후 대여학자금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의 집행액 추이를 고려해 볼 때 학자금 대여 수요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며,

2026년 계획안이 300억원 감액된 상태로 확정될 경우 예년의 사례를 고려할 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조정되는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예산 및 기금계획은 실제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는데,

본예산 편성 시 사업비를 과소편성한 후 집행 과정에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증액하는 방식은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지양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대여학자금융자 사업은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적정한 규모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확대 편성할 필요가 있음.

9.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3141-323)

○ 수탁금 잉여금이 과도하게 유보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사업은 대여학자금 회수액이 대여액을 초과하여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잉여가 발생한 기관에 대하여 대여학자금 수탁금[253]을 반환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95억원이 증액된 500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82,498	40,500	50,000	9,500	23.5

253)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에 납부한 대여학자금 부담금

나.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규모 확대 필요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대부가 이루어진 대여학자금 상환액이 대부액을 초과하여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잉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잉여액을 반환하는 사업임.

□ 공무원연금공단은 국가(전입금:수입)와 지방자치단체(자치단체연금부담금:지출)의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여 공무원에게 학자금 대여(대여학자금융자:지출)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무원으로부터 학자금이 상환(기타민간융자지원금회수:수입)된 경우, 반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국가기관(회계기금간거래:지출) 및 지방자치단체(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지출)에 각각 반환하고 있음.

《대여학자금융자 부담(상환) 절차》



① [**부담(상환)금 고지]** 대여학자금융자 관련 부담(상환)금 납부 고지

- **(국가·지방자치단체)** 학자금을 대여하는 데에 드는 대여금(순부담금*)과 운영에 드는 경비(운영부담금**) 고지

* 순부담금: 전년 대부 실적 및 해당연도 학생·등록금 증감 등 고려하여 산정 및 고지

** 운영부담금: 대여학자금 운영에 드는 경비를 대여금에 비례하여 산정 및 고지

- **(공무원)** 졸업(중퇴) 익월부터 2년 거치 후 2~4년 균등 분할 상환

② **[부담(상환)금 납부]** 납부 고지된 부담(상환)금을 공단으로 납부

③ **[잉여액 반환]** 추정하여 고지된 부담금과 실제 대부액을 정산하여 3년 이상 연속적으로 잉여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에 잉여액 반환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은 지방자치단체에 대여학자금수탁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반환금액은「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상환액이 대부액을 3년 이상 연속하여 초과하여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을 반환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이에 따라 2026년도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금액을 4,851억 8,300만원으로 산정하여 요구하였으나, 정부의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과정에서 500억원으로 감액 조정되었음.

《수탁금 잉여액 반환 기준》

구분	주요내용
반환대상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부담금 잉여액이 발생한 기관
반환금액	대부수요 준비금을 제외한 순수 이월금액 (= 전전년도 부담금 정산액 - 전년도 반환예정액 - 전년도 대부예상액) ※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의 증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추가 반환하거나,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음.
반환시기	정산년도 기준 차차년도* 상반기(매년 6월 중)

자료: 인사혁신처,「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

《2026년 지자체 대여학자금수탁금반환 요구액(485,183백만원) 산출 내역》

(단위: 백만원)

'24년 부담금 정산액 (A)	'25년 대부 예상액 (B)	'25년 수탁금 반환액 (C)	잉여 발생액 (D=A-B-C)	'25년 상환 예상액의 25% (E)	잉여 반환금 (F≒D+E)
611,602	166,362	40,492	404,748	80,435	**485,183**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2024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결산 예비심사에서는 2022년도 국회 시정요구[254] 및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국가기관·지자체 등에 반환되어야 할 수탁금 잉여금이 매년 예산에 과소 반영·과다 유보되어 비효율적 재정 운용이 초래되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는 대여학자금 수탁금 잉여금을 신속하게 반환하도록 시정요구한 바 있음.

□ 그러나 2025년도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산출된 반환 규모가 4,852억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확정된 예산액은 500억원에 불과하여 유보하고 있는 수탁금 잉여금의 규모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과도한 수탁금 잉여액 해소를 통해 기금운용의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 수탁금 반환액 및 예산확정액》

(단위: 억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안)
수탁금 반환 예정액	1,580	2,595	2,326	1,650	4,062	4,852
수탁금 반환 확정액	1,580	1,595	1,304	825	405	500
수탁금 잉여금	**6,073**	**6,012**	**5,851**	**6,090**	**6,755**	**7,807**

* 수탁금 반환 예정액은 「대여학자금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반환액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254)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과도한 수탁금 잉여금 해소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의 증감 및 예산을 고려하여 전년도 상환액의 25%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추가 반환하거나 감액하여 반환할 수 있게 변경되었음.

□ 따라서, 수탁금 잉여금이 과도하게 유보되는 현상을 개선하고 비효율적 재정 운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여학자금수탁금 반환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10. 주택사업관리(3151-333)

○ 주택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실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기금이 과소 편성되어 있어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실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주택사업관리 사업은 무주택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원활한 반환 및 임대주택의 관리를 도모하는 것으로,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56억 800만원이 감액된 3,425억 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주택사업관리 사업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주택사업관리	421,788	358,141	342,533	△15,608	△4.4

나. 실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주택임대보증금 편성 필요

□ 주택사업관리 예산은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주택임대보증금과 임대주택의 관리에 소요되는 주택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있음.

《주택사업관리 사업 계획안 내역》

내역	비목	세부용도
주택임대보증금	반환금및손실금 (710-03)	임대보증금 반환
주택운영경비	일반수용비 (210-01)	부동산관리비, 지급수수료 소송비, 분양주택판매비, 영업비
	공공요금및제세 (210-02)	세금공과, 보험료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시설유지비, 분양주택관리사업비
	일반용역비 (210-14)	세종시 뉴홈 사전타당성 조사, 모바일 하자관리 서비스 도입
	무형자산 (440-00)	관리비예치금, 임차보증금

자료: 인사혁신처

□ 2026년도 계획안에서는 주택임대보증금이 3,285억 5,500만원에서 3,085억 5,500만원으로 200억원 감액되었는데,

이는 신축단지·신규매입·매각단지를 제외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필요한 주택의 세대수가 감소(2,589→2,402세대)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한 데 기인한 것임.

《2025년도 및 2026년도 주택임대보증금 산출 세부내역 비교》

(단위: 백만원)

2025년		2026년	
정상운영: 2,589세대×111백	287,347	정상운영: 2,402세대×111백	266,665
신축단지: 71세대×360백	25,568	신축단지: 111세대×365백	40,496
신규매입: 28세대× 63백	1,764	신규매입: 19세대× 63백	1,199
별내분양: 124세대×111백	13,876	매각단지 : 5세대× 39백	195
합계	**328,555**	**합계**	**308,555**

자료: 인사혁신처

□ 그런데, 임대보증금 반환을 위하여 2023년에는 3,675세대에 대하여 4,066억 3,800만원, 2024년에는 3,444세대에 대하여 3,884억 5,200만원이 집행되어 계획액을 초과하였고, 이로 인하여 해당 연도의 주택임대보증금 부족분 마련을 위하여 각각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바 있으며, 2025년에도 동일한 사유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이루어졌음.

《최근 3년간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세대, 백만원)

구분	당초(A)		변경(B)		증감(B-A)		결산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세대수	금액
'23년	3,571	379,690	3,930	407,591	359	27,901	3,675	406,638
'24년	3,061	307,475	3,319	388,456	258	80,981	3,444	388,452
'25년	2,812	328,555	3,265	381,528	453	52,973	2,758	322,610

※ '25년 결산은 10월 말 실적 반영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주택임대보증금의 집행 추이와 주택임대차계약은 일반적으로 2년마다 갱신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2026년도 주택임대보증금 역시 과소 계상된 것으로 보임.

□ 주택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실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기금이 과소 편성되어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초래하는 것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면밀한 수요 예측을 통하여 실수요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재원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11. 고객지원사업(3162-302)

○ 연금지인 「공무원연금」의 웹진 발간은 이용자 확대와 비용 절감, 환경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므로, 웹진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고객지원사업은 연금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현직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내역사업은 연금지 제작, 연금담당자 교육,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공무원연금 고객센터 운영, 재해예방·재활사업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6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2억 8,700만원이 증액된 96억 6,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고객지원사업 계획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계획(A)	2026년 계획안(B)	증 감 (B-A)	%
고객지원사업	7,774	8,374	9,661	1,287	15.4
연금지 제작	2,258	2,258	2,323	65	2.9
연금담당자 교육 등	405	530	476	△54	△10.2
퇴직공무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823	1,327	1,209	△118	△8.9
공무원연금 고객센터 운영	2,625	2,381	2,522	141	5.9
재해예방·재활사업	1,663	1,878	3,131	1,253	66.7

나. 「공무원연금」 웹진 이용 활성화 필요

□ 연금지 제작은 공무원연금수급자에게 연금 및 노후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제공하고, 고객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하여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유료 정기간행물 발간 사업임.

□ 공무원연금공단은 1984년 7월 창간 이래 매월 「공무원연금」이라는 월간지를 발간하여 제공하고 있는데,

월간 「공무원연금」은 연금정보, 건강·경제·생활정보 등 맞춤형 콘텐츠와 독자참여 코너를 통해 노후생활 길잡이 역할을 하며, 정부 정책과 공단 사업을 홍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월간「공무원연금」개요(1984.7월 창간)》

구 분	주요 내용
정기구독자	연금수급자 약 189,000명 ※ '24.12월 기준 연금 수급자 695,732명 중 27.2% 구독
발간 주기/ 부수	매월 (연 12회) / 월 192,000부 내외
구독료	연 12,000원(월 1,000원)
규 격	가로 180㎜ × 250㎜, 84면 (표지 4p, 내지 80p)
배 포	정기구독자(189,000부), 유관기관(2,000부), 재발송 등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최근 온라인 중심의 정보 이용이 활성화됨에 따라 4대 연금기관이 연금수급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간행물의 발간 형태도 변화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종이 간행물 발행을 중단하고 웹진[255]으로 전면 전환하였으며, 사학연금은 종이 간행물과 웹진 발행을 병행하고 있고, 군인연금은 기관지를 발행하는 대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4대 연금 기관지 및 웹진 발간 현황 비교표》

(단위: 세대, 백만원)

연금 (기관)	기관지명	웹진	비고
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O (종이 발행 중단)	• 분기별 발행 • 2022년 웹진으로 전면 개편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공단)	월간 공무원연금	X (종이 발행 병행)	• 월간 발행 • 종이 간행물(PDF 포함) 발간
사학연금 (사학연금공단)	월간 사학연금	O (종이 발행 병행)	• 격월간 발행 • 2020년부터 반응형 웹진(*)과 종이 사보를 함께 발행
군인연금 (국군재정관리단)	X	X	•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연금소식',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정보 제공

* 반응형 웹진: 사용자가 접속하는 기기(디바이스)의 화면 크기에 맞춰 웹페이지의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자동으로 변하는 웹진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의 ESG경영[256]의 중요성 부각, 물가 인상으로 인한 발간비용 증가 등에 대응하여 발간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255) 웹진은 '웹(Web)'과 '매거진(Magazine)'의 합성어로, 출판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상에서 만들어 보급하는 잡지를 말함. 기존 종이 잡지와 달리, 동영상이나 오디오 같은 멀티미디어 요소를 활용하고, 사용자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256)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ESG경영은 기업이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위해 이 세 가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경영 방식을 말함

□ 이러한 출판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배출 저감 및 발간 비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하여, 2026년부터는 월간 「공무원연금」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웹진 형태로도 제공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월간 「공무원연금」의 웹진 발간 개요》

□ 추진 배경

○ 구독자의 평균연령 고령화로 **신규 퇴직공무원 구독층 확대** 및 출판문화 트렌드(웹진, 오디오북) 반영 등 **발간 지속성 확보** 필요

○ 공공기관 ESG 경영의 중요성 부각, 물가 인상(원자재, 우편료) 등 발간비용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 **('23년도 경영평가 지적)** 책자 발행으로 종이 소모, 배송을 위한 탄소배출 발생
웹진 구독 시 인센티브 부여 등 발행 규모 지속적으로 감축 노력 필요
→ 주 고객층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 점진적 디지털 전환 추진 예정

□ 운영 방향

○ 월간「공무원연금」을 PC와 **모바일앱**을 통해 구독할 수 있도록 웹으로 제작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

- (고객) 파일 다운로드 없이 웹 화면에서 구독 가능(접근성·편리성 강화)
- (직원) 콘텐츠 추가 및 실시간 수정 등 관리 편리성 제고

○ 웹진 연계한 주요 콘텐츠를 고객 이메일과 문자(카카오톡)로 발송

- 이메일 또는 문자 수신 동의 구독자에게 매월 발송 예정

○ 월간「공무원연금」 정기구독자 대상 「웹진」 서비스 홍보

- 온.오프라인 서비스 동시 제공으로 「웹진」 이용 기회 제공

○ 고객 소통 채널을 활용한 신규 연금수급자 웹진 구독 유도

- 공단 홈페이지, 카카오톡채널, 연금지(책)에 웹진 발간 홍보
- 퇴직예정공무원 대상 각종 안내 자료에 웹진 구독 방법 등 게재 및 사전 퇴직지원교육 시 웹진 신청 유도 등

□ 소요예산 : 1억 5000만원

자료: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 웹진 발간은 최근의 이용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사업으로, 이용자 확대와 비용 절감, 환경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바,

연금수급자의 연령 특성과 디지털 활용 능력의 편차를 감안하여 종이 형태의 유인물 발간을 병행하되, 웹진 이용 교육 및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수급자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웹진 중심으로 일원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홍보 등을 강화하여 「공무원연금」 웹진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수급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경찰청 소관〕

I.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총 괄

□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2개의 프로그램, 3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가. 회계별 세입예산안 총괄

<2026년도 회계별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A)			%
일반회계	1,465,264	1,465,264	1,476,290	11,026	0.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91,539	91,539	94,712	3,173	3.5
합 계	**1,556,803**	**1,556,803**	**1,571,002**	**14,199**	**0.9**

※자료: 경찰청, 총계기준

□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710억 200만원으로 전년도 1조 5,568억 300만원(추경기준)보다 141억 9,900만원(0.9%)이 증액되었음.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에서 110억 2,600만원(0.8%)이 증액되고,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서 31억 7,300만원(3.5%)이 증액되었음.

나. 회계별 세출예산안 총괄

□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계 기준 총 규모는 14조 3,029억 4,900만원으로, 전년도 13조 5,874억원 1,500만원(추경기준)의 5.3%인 7,155억 3,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임.

□ 총지출 기준 총 규모는 14조 2,44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13조 5,307억 9,800만원(추경기준)의 5.3%인 7,134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회계별 세출예산안 총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B)	증 감 (B-A)	%
	본예산	추경(A)			
합 계(총계)	**13,584,578**	**13,587,415**	**14,302,949**	**715,534**	**5.3**
합 계(총지출)	**13,527,961**	**13,530,798**	**14,244,209**	**713,411**	**5.3**
일반회계	13,488,033	13,490,870	14,203,091	712,221	5.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경찰병원)	91,539	91,539	94,712	3,173	3.5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5,006	5,006	5,146	140	2.8

※총지출 = 총계 - (회계간거래 + 회계기금간거래 + 계정간거래)
※자료: 경찰청

□ 총계 기준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7,122억 2,100만원(5.3%)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이하 “책특회계”라 함)가 31억 7,300만원(3.5%) 증액되었으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지특회계”라 함)는 1억 4,000만원(2.8%) 증액되었음.

다. 주요 증액 및 감액 사업

<경찰청 소관 주요 증액 및 감액사업>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B)	증감(B-A)	
		본예산	추경(A)			%
일반회계	차세대지능형순찰플랫폼개발(R&D)	692	692	3,465	2,773	400.7
	미래치안기반조성	2,235	2,235	7,525	5,290	236.7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	1,500	1,500	4,932	3,432	228.8
	치안현장맞춤형연구개발(폴리스랩3.0)(R&D)	936	936	2,494	1,558	166.5
	정보업무전산화(정보화)	4,095	4,095	9,675	5,580	136.3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13,088	13,088	24,705	11,617	88.8
	경찰인재개발	6,597	6,597	11,796	5,199	78.8
	사이버범죄수사단서통합분석 및 추론시스템개발(R&D)	3,640	3,640	6,136	2,496	68.6
	수사경찰전문교육	2,157	2,157	3,588	1,431	66.3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7,999	7,999	4,126	△3,864	△48.4
	경찰병원자산취득	2,915	2,915	1,438	△1,477	△50.7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	34,250	34,250	16,004	△18,246	△53.3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R&D)	1,632	1,632	-	△1,632	△100.0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R&D)	3,381	3,381	-	△3,381	△100.0

※자료: 경찰청

□ 2026년도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차세대지능형순찰플랫폼개발(R&D)(400.7%), 미래치안기반조성(236.7%),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228.8%) 등의 사업이 증액되었음.

□ 차세대지능형순찰플랫폼개발(R&D)는 움직이는 지구대에서 구현할 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솔루션 구현 및 설계, 차량탑재 센서모듈 시제품 개발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었으며, 미래치안기반조성은 국민안전 산업펀드와 국제치안산업대전 예산이 반영되었고, 불법 마약류(R&D)은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추적 연계 마약수사 통합시스템과 다중어레이 복합센서 기반 마약탐지 및 은닉위치 추론 AI시스템 개발 등 예산이 반영되어 증액되었음.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경찰병원자산취득(△50.7%), 범죄대응 및 치안상황관리(△53.3%) 및 불법드론 지능형 대응기술 개발(R&D)(순감),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한 현장지원 기술개발(R&D)(순감) 사업이 있음.

1)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

□ 경찰청 부서별 주요 증액 사업은 경무인사지원 등이 있으며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음.

<부서별 주요 증액사업(세부사업 이하)>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 (사업코드)	사업내용	'26예산안
① 기획조정관			
1	청사시설관리 (7131-312)	내진성능 확보	22,950
2	치안지원인력운영 (7131-314)	방호·미화·견위생 등 공무직 운영	190,171
② 경무인사기획관			
1	경무인사지원 (7131-313)	경찰관서 방호 및 보안강화	6,446
2	경찰복지증진 (7135-311)	직장 보육시설 운영지원	58,718
3	경찰관서직장보육시설 운영(민자) (7135-751)	직장 보육시설 정부지급금	22,909
4	경찰관채용교육 (4135-311)	안전한 사격훈련 환경 조성	3,952
③ 미래치안정책국			
1	경찰기동력강화 (4231-311)	전기 순찰차 교체	17,798
2	피복관리 (4231-313)	경찰관 피복비	76,056
3	장비관리유지 (4231-314)	권총	14,851
4	경찰유무선망개선 (4233-311)	수사부서 발신정보알리미	856
5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 (4234-511)	사이버보안관제센터 운영	5,006
④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1131-311)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3,485
2	범죄대응및치안상황관리 (1132-311)	112근무요원 전문 교육프로그램	720
⑤ 생활안전교통국			
1	교통안전활동 (1331-312)	교통 과태료 QR코드 도입	762
2	사회적약자보호활동 (1431-311)	스토킹 전자장치부착제도 관련 경찰-법무부 시스템 연계	3,309

연번	세부사업 (사업코드)	사업내용	'26예산안
⑥ 경비국			
1	경비경찰활동 (2131-311)	기동대 출동차량 교체	15,600
2	기동대운영및관리 (2131-314)	급식 및 출동간식	26,587
3	대테러위기상황관리 (2132-311)	사족보행로봇	2,400
⑦ 치안정보국			
1	정보업무전산화 (2231-511)	견문관리시스템 고도화	8,836
⑧ 수사기획조정관			
1	수사지원 (1231-311)	차세대 킥스 지원	6,363
⑨ 수사국			
1	지능·경제범죄수사역량강화 (1231-312)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7,010
2	사이버수사역량강화 (1231-315)	사칭·악성메일 분석 시스템	814
⑩ 형사국			
1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 (1231-313)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1,560
2	과학수사역량강화 (1231-314)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	4,640
3	과학수사시스템구축 (1232-511)	현장증거물 수집 자동화시스템 구축	1,462
⑪ 안보수사국			
1	안보수사역량강화 (1231-316)	산업기술유출 수사지원	850
⑫ 감사관			
1	감사·감찰·인권활동 (7133-311)	인권영향평가	112
⑬ 국제협력관			
1	해외치안협력강화 (3133-311)	국제공조시스템 범정부 공동활용	970
2	국제치안활동강화(ODA) (3133-312)	디지털포렌식랩 및 마약수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몽골 경찰 마약수사 역량강화	2,523
⑭ 중앙경찰학교			
1	신임순경교육 (4133-311)	신임순경 교육운영	22,072
⑮ 경찰병원			
1	진료업무운영관리 (4331-311)	의료장비 임차 등 진료업무 운영	22,026
2	전산운영경비(정보화) (4331-511)	병원정보시스템의 유지· 관리 운영	2,419

※자료: 경찰청

2) 2026년 예산 이관 내역

□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업무 이관 및 사업 통합운영 등을 추진하면서 예산이 이관되었음.

<2026년 경찰청 예산안 사업 이관 예산 목록>

(단위: 백만원)

2025년		→	2026년		사 유
세부사업	예산액	→	세부사업	예산액	
범죄예방및 생활질서유지 (1131-311)	957		수사지원 (1131-311)	957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예산 이관
범죄대응및 치안상황관리 (1232-311)	17,870		범죄예방및 생활질서유지 (1131-311)	17,870	지역경찰운영 예산 이관
수사지원 (1131-311)	263		수사인권보호활동 (1231-317)	263	원격화상조사 예산 이관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수사역량강화 (1231-313)	379			379	진술녹화실 설치 예산 이관
	1,520		경찰기동력강화 (4231-311)	1,520	상시 임차차량 예산 이관
공공안녕정보활동 (2231-311)	106			106	
사이버수사역량강화 (1231-315)	141	→	안보수사역량강화 (1231-316)	141	서울청 외청사 운영비 예산 이관
경무인사지원 (7131-313)	56		경찰관채용교육 (4135-311)	56	경찰 역사 교재 발간 예산 이관
	35		경찰복지증진 (7135-311)	35	경찰영웅 흉상 등 수범경찰헌양 예산 이관
	31		경찰정보화기반 고도화(정보화) (4234-511)	31	경찰역사 아카이브시스템 유지보수 예산 이관
차량관리 (4231-312)	22			22	스마트순찰차 멀티캠 운영 프로그램 유지보수 예산 이관
경찰관채용교육 (4135-311)	4,327		신임순경교육 (4133-311)	4,327	채용승진시험 운영 예산 이관
경찰인재개발 (4132-311)	98		수사경찰전문교육 (4134-311)	98	수사기능 교육과정 이관에 따른 급식비 예산 이관

※자료: 경찰청

라. 세출예산안 경비별 현황

□ 2026년도 경찰청 예산 총지출 14조 2,442억원 중 인건비가 11조 1,285억원으로 78.1%, 기본경비가 4,300억원으로 3.0%, 주요사업비가 2조 6,857억원으로 18.9%를 점유하고 있는바,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경상경비의 비중이 81.1%를 차지하고 있음.

<2026년도 경찰청 세출예산안 경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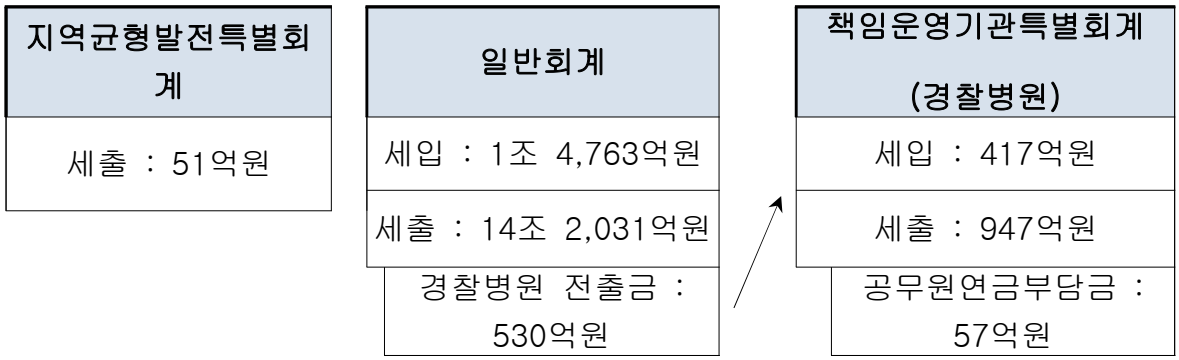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B)	증감 (B-A)		점유율
	본예산	추경(A)			%	
합 계(총지출)	13,527,961	13,530,798	14,244,209	713,411	5.3	100.0
인 건 비	10,508,150	10,508,150	11,128,500	620,350	5.9	78.1
기본경비	421,506	421,506	429,985	8,479	2.0	3.0
주요사업비	2,598,305	2,601,142	2,685,724	84,582	3.3	18.9

※자료: 경찰청

마. 회계간 재정구조

<경찰청 예산안 재정흐름도>



※총계 기준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의 재정은 일반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고, 경찰청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14조 2,030억원이며, 이 중 경찰병원 전출금 53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경찰병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947억원이며, 이 중 공무원연금부담금 57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조 4,762억 9,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기준) 1조 4,652억 6,400만원 대비 0.8%인 110억 2,6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 (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
합 계	1,465,264	1,465,264	1,476,290	11,026	0.8
재 산 수 입	3,449	3,449	3,728	279	8.1
경상이전수입	1,452,238	1,452,238	1,462,429	10,191	0.7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5,555	5,555	5,975	420	7.6
관유물매각대	4,022	4,022	4,158	136	3.4

※자료: 경찰청

□ 세부내역을 보면, 경상이전수입[257]이 101억 9,1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으며 경상이전수입 대부분은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수입 증가(+27억 5,400만원)에 기인한 것임.

257) 경상이전수입은 벌금및과료, 과태료, 징계부과금, 변상금, 위약금, 가산금 등으로 구성

나. 세출예산안

□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지출 기준 14조 2,442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기준) 13조 5,307억 9,800만원 대비 5.3%인 7,134억 1,100만원이 증액되었음.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명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A)			%
합 계(총 계)	13,584,578	13,587,415	14,302,949	715,534	5.3
합 계(총지출)	13,527,961	13,490,870	14,244,209	713,411	5.3
범죄예방및치안상황대응강화	63,524	63,524	61,625	△1,899	△3.0%
범죄수사활동	387,106	389,820	401,443	11,623	3.0%
교통안전·소통확보	305,207	305,207	309,555	4,348	1.4%
사회적약자보호	16,491	16,491	18,462	1,971	12.0%
사회질서유지	192,477	192,477	184,454	△8,023	△4.2%
공공안녕위험예방및대응강화	37,772	37,772	43,332	5,560	14.7%
국제치안협력공조강화	15,126	15,126	16,653	1,527	10.1%
전문경찰양성	71,962	71,962	88,614	16,652	23.1%
치안인프라구축	489,279	489,279	501,882	12,603	2.6%
과학치안활성화	64,027	64,027	68,212	4,185	6.5%
경찰행정지원	11,794,237	11,794,360	12,455,865	661,505	5.6%
회계간거래	50,825	50,825	52,994	2,169	4.3%

※총지출 = 총계 - 회계간거래(전출금)
※자료: 경찰청 I

□ 프로그램별 증감내역을 보면, 전문경찰양성 166억 5,200만원(23.1%), 치안인프라구축 126억 300만원(2.6%), 범죄수사활동 116억 2,300만원(3.0%)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사회질서유지 80억 2,300만원(△4.2%),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18억 9,900만원(△3.0%)이 감액 편성되었음.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가. 세입예산안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인 경찰병원의 202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947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기준) 915억 3,900만원 대비 3.5%인 31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입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A)			%
총 계	**91,539**	**91,539**	**94,712**	**3,173**	**3.5**
손 익 계 정	**88,441**	**88,441**	**93,091**	**4,650**	**5.3**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32,207	32,207	30,144	△2,063	△6.4
재산수입	49	49	114	65	132.7
경상이전수입	46	46	46	-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6,403	6,403	6,403	-	-
관유물매각대	25	25	25	-	-
세계잉여금	1,492	1,492	4,151	2,659	178.2
정부내부수입및기타	48,219	48,219	52,208	3,989	8.3
자 본 계 정	**3,098**	**3,098**	**1,621**	**△1,477**	**△47.7**
세계잉여금	490	490	833	343	7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2,608	2,608	788	△1,820	△69.8

※자료: 경찰청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손익계정에서는 세계잉여금이 26억 5,900만원(178.2%) 증액되었고, 정부내부수입및기타가 39억 8,900만원(8.3%) 증액 되었음.

□ 자본계정에서는 세계잉여금이 3억 4,300만원(70.0%) 증액되었고 정부내부수입및기타가 18억 2,000만원(△69.8%) 감액되었음.

나. 세출예산안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인 경찰병원의 2026년도 총지출 기준 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947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추경기준) 915억 3,900만원 대비 3.5%인 31억 7,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경찰병원)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A)			%
합 계(총 계)	91,539	91,539	94,712	3,173	3.5
합 계(총지출)	85,747	85,747	88,966	3,219	3.8
손 익 계 정	88,441	88,441	93,091	4,650	5.3
인건비	50,207	50,207	53,861	3,654	7.3
기본경비	3,087	3,087	3,098	11	0.4
진료업무지원	25,372	25,372	26,350	978	3.9
장례식장운영	3,983	3,983	4,036	53	1.3
공무원연금부담금	5,790	5,790	5,744	△46	△0.8
감가상각비	1	1	1	-	-
당기순이익	1	1	1	-	-
자 본 계 정	3,098	3,098	1,621	△1.477	△47.7
기본경비	183	183	183	-	-
자산취득	2,915	2,915	1,438	△1,477	△50.7

※총지출 = 총계 - 회계기금간(공무원연금부담금) - 계정간거래(감가상각비,당기순이익)
※자료: 경찰청

□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손익계정에서 인건비가 36억 5,400만원(7.3%) 증액되었고 자본계정에서는 자산취득이 14억 7,700만원(△50.7%) 감액되었음.

4.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는「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74조에 따라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조직별로 구분되어 있음.

□ 경찰청은 동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제주자치경찰인력 지원사업(제주특별자치도계정)을 위한 예산을 관리하고 있음.

□ 2026년도 경찰청 소관 지특회계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51억 4,6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0억 600만원 대비 2.8%인 1억 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경찰청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예산		2026예산안(B)	증감(B-A)	
	본예산	추경(A)			%
합 계(총지출)	5,006	5,006	5,146	140	2.8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006	5,006	5,146	140	2.8
제주자치경찰인력지원	5,006	5,006	5,146	140	2.8

※자료: 경찰청

Ⅱ. 검토의견

1. 세출예산안

가. 일반회계

【총괄】

(1) 치안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체계적·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경찰청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방식으로 시중AI소프트웨어 구매·최적화, 구독, 연구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는 단계에서 업무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인공지능 기술은 향후에도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용에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단기 구독 방식보다는 평생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인공지능 기술 활용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고, 인공지능 기술 도입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에는 체계적인 계획을 기초로 하여 인공지능 기술 도입·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2026년 예산편성 중점방향으로 KICS-AI 등 업무전반에 인공지능의 접목을 추진하고 있음. 동 사업들은 방대한 양의 디지털화된 정보와 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함으로써 치안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2026년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 많은 양의 CCTV 영상 정보의 신속한 분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보급 사업, 경찰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시스템을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업무관리 시스템으로 개편하고, 인공지능을 통해 보안을 강화하는 사업 및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시스템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 등이 있음.

<인공지능 기술 도입·개발 사업>

구 분	내역사업[세부사업]	2026년 예산안
특정 분야 온라인 상의 정보·데이터 수집·분석	SNS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1231-313)]	7억 2,000만원
	AI기반 방첩·대테러 역량강화 : 방첩·대테러 정보 전문분석 서비스 [안보수사역량강화(1231-316)]	3억 8,600만원
	사제총기 등 위험정보 상시점검체계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	8억 9,800만원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분석 프로그램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1231-313)]	15억 6,000만원
	아동학대 영상분석요약 프로그램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1231-313)]	12억원
경찰 업무 플랫폼 구축 및 기존 플랫폼의 보안강화	경찰청 AI 통합플랫폼 구축 ISP [경찰정보화기반고도화(정보화) (4234-511)]	5억 1,900만원
	지문 범죄경력 관리시스템에 AI기반 종합 장애대응 시스템 구축 [과학수사시스템구축(정보화) (1232-511)]	12억 4,200만원

구 분	내역사업[세부사업]	2026년 예산안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R&D) 사업	사이버 범죄 대응 기술 [사이버 범죄 수사단서 통합분석 및 추론 시스템 개발(R&D)(4431-726)]	59억원
	능동형 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이동형플랫폼 기반 솔루션 개발 [차세대 지능형 순찰 플랫폼 개발(R&D)(4431-724)]	33억 3,200만원
	로컬환경 인공지능 모델 대상 포렌식 기술 개발 [사이버수사 지원기술 개발(R&D)(4431-710)]	20억원
	과학기술 기반 군중 밀집관리 기술개발 [과학기술 군중 밀집관리 기술개발(R&D)(4431-720)]	19억원
	인공지능 기반 고속위해 기체분석 플랫폼 구축 [과학적 범죄 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R&D)(4431-631)]	18억원
	다크웹 및 가상자산 거래 추적 연계 마약 수사 통합 시스템 개발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4431-718)]	18억원
	치안 비정형 데이터 암호화 컴퓨팅 기술 연구개발 [치안데이터 활용기술 개발(R&D)(4431-730)]	15억 6,000만원
	다중 어레이 복합센서 기반 마약탐지 및 은닉위치 추론 AI시스템 [불법 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R&D)(4431-718)]	15억원
계		263억 1,700만원

① 특정 분야에 대한 온라인상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인공지능

- 2026년 예산안에는 온라인 상의 마약, 테러 및 안보 위협, 총기 제조와 관련된 정보를 조기에 적발하는 시스템(SNS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방첩·대테러 정보 전문분석 서비스, 사제총기 등 위험정보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을 포함하고 있음. 동 사업의 사업 추진 방식은 소프트웨어 개발, 구매·커스터마이징, 1년 이용(구독) 등 다양하고, 이용되는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차이가 있음.

<특정분야에 대한 온라인 데이터 수집 분석 사업 예산의 세부내역>

구 분	SNS 마약채널 첩보시스템	방첩·대테러 정보 전문분석 서비스	사제총기 등 위험정보 상시점검체계
세부 내역	① 소프트웨어 개발 : 4억 2,000만원 ② 하드웨어 구매 : 3억원	① 소프트웨어 1년 이용 : 3억 8,600만원	① 소프트웨어 구매 : 4억 8,000만원 ② 연구개발 : 4억 1,800만원
비고	개발자가 개발하고, 운영을 위한 서버 등 구축	※ 1년 구독 시 유지보수 불필요 ※ 장비 도입 시 14억 8,700만원 소요(유지보수 필요)	시판 AI 프로그램을 구매 및 커스터마이징(유지비 불필요)

- SNS 마약채널 첩보시스템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약채널을 검색하고, 첩보를 수집하며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서버를 구축함. 동 시스템은 머신러닝 기술(지도학습 기반 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SNS 마약채널의

대화패턴을 스스로 학습하는 정보수집 모델을 개발하는 것임. 경찰청은 향후 딥러닝(딥페이크),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등 향상된 기술을 접목할 계획임.[258]

- 사제총기 등 위험정보 상시체계 시스템은 불법 총기 제조 방법 등을 자동으로 탐지·분류·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시중에 판매하는 AI 소프트웨어 구매(4억 8,000만원)하고 커스터마이징(연구개발 4억 1,800만원)하는 방식으로 구축될 계획임. 동 시스템은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 시스템에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을 연계하여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임.

- 방첩·대테러 분야에서는 방첩대상 및 테러위험인물의 공개된 SNS 활동(웹데이터)을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수집·분석하는 방첩·대테러 정보 전문분석 서비스를 1년 동안 구독하는 방식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예산 3억 8,600만원이 반영됨. 방첩·대테러 정보 전문분석 서비스는 전세계 100여개국 법집행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로서 테러 의심 인물 목록 작성·제공, 대상자 주변 인물 및 관계도 분석, 대상자 체류 지역 특정, 관계 인물 중 국내 체류 계정을 분류하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음.

258) SNS 마약채널 첩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는 연구개발사업으로는 다크웹 기반 마약 유통 모니터링 및 가산자산 거래 연계 마약수사 시스템 개발 사업이 있음. 동 사업은 마약의 은어를 이용하여 시스템 구축자가 패턴을 직접 코딩하는 방식의 규칙(Rule) 기반 모델을 활용하여 다크웹 가상 자산 추적 중심의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연구사업임.

② CCTV 영상 분석 시스템

- 2026년 예산에는 CCTV 영상 분석시스템과 아동학대 영상분석 시스템 보급 사업이 있음.

구 분	CCTV 영상 분석시스템	아동학대 영상분석요약 프로그램
세부 내역	15억 6,000만원 = 2,000만원(라이센스 단가)×78개	12억원 = 프로그램 단가 1억원 × 12개
비고	78개 경찰관서에 보급	12개 시도경찰청에 보급

- CCTV 영상 분석시스템은 신속하고 정확한 영상분석을 위해 인공지능AI 영상분석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사업임. 인공지능 영상분석 프로그램은 화질개선, 안면정보 추출, 필터링 설정, 신속분석, 분석보고서 추출 등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

  CCTV 영상 분석시스템은 2025년 전국 형사기동대 43개팀에 보급 중이고, 2026년에는 78개팀에 보급 예정임. 동 사업의 예산은 라이센스 단가가 2,000만원임.

- 아동학대 영상분석 시스템 보급은 CCTV 속 학대 장면을 찾아내고 영상을 축약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의 성과물인 아동학대 영상분석 시스템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에 6개 시도청에 보급되었고, 2026년에는 나머지 12개 시도청에 보급할 예정임. 프로그램 당 단가는 1억원임.

③ 경찰의 업무 플랫폼 구축, 기존 플랫폼의 보안 강화

- 2026년 예산안에는 경찰청 AI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ISP 예산 5억 1,9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경찰청 AI 통합플랫폼은 경찰청 구성원 전체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으로 개편하여 행정효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지능형 업무시스템에는 문서 초안 작성·요약·검색 기능, 챗GPT와 같이 대화형으로 통계 매뉴얼, 법령 등의 검색·분석 시스템, 보안문서 번역, 회의록 작성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음.

- 그리고 지문 및 전과기록 관리시스템의 장애예방 및 보안 위협 저감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종합 관제 대응 체계를 도입함. 동 사업의 추진 방식은 시중에 판매되는 장애대응 솔루션, 해킹 방지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해당 시스템이 최적화되도록 개발하며, 시스템이 가동될 수 있도록 서버 등 하드웨어를 도입하는 방식임.

④ 연구개발 사업

- 연구개발사업으로는 차세대 지능형 순찰플랫폼 개발, 사이버범죄 수사 단서 통합 분석 및 추론 시스템 개발, 과학적 범죄 수사 고도화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분석, 상황 판단을 돕는 시스템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치안 확보를 위한 다양한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2026년 예산 사업에서는 인공지능 도입 방식이 각 사업별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치안 업무 분야별로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수요의 특징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인공지능 분석 기술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에서 많은 국가들이 이용하고, 구입하는 비용과 1년 구독 비용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 1년 등 단기간 구독 방식보다는 평생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또한, 도입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분석된 결과의 정확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판례를 인용하여 불송치 결정을 한 사례[259]의 원인이 챗GPT 검색 결과를 검증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고 지적됨.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도입하는 인공지능 기술에서도 유사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술이 정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259) 법률신문 2025년 9월 26일 기사, “경찰, '가짜 판례'로 아동학대 불송치 결정”

○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의 효과를 분석하여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향후에는 동 계획을 기초로 하여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및 기술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무인사기획관]

(1) 아산경찰병원 건립(7135-313)

○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지방 소재 공공병원의 구조적 한계로 인한 의료인력 확보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추가 인센티브와 단계적 개원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병원 운영 수입·지출 전망과 이용 목표를 포함한 재정 확보 방안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 2026년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동시 편성된 것은 사업 추진 일정상 부적절하므로, 실시설계비를 조사·측량을 위한 기본조사설계비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아산경찰병원건립 사업(7135-313)은 치안현장에서 입은 부상과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경찰 특화 종합병원을 충남 아산시에 설치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30억 5,000만원이 편성된 신규 사업임.

<아산경찰병원건립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아산 경찰병원 건립	-	-	3,050	3,050	순증

※ 자료: 경찰청

□ 동 사업은 2025년 8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사업기간은 2026~2029년(4년), 총사업비는 1,724억 1,400만원으로 책정되었음.

□ 아산경찰병원은 건축 연면적 28,717㎡(지상 5층, 지하 2층), 300병상 규모로, 심·뇌혈관센터, 정신건강센터 등 6개 전문진료센터와 24개 진료과를 운영할 계획임.

<아산경찰병원 건립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찰관이 치안현장에서 신체적, 정신적 위험에 노출되어 입은 부상과 질병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경찰 특화 종합병원 설치
※ (사업기간) 2026~2029, 4년간

■ **사업 개요**

○ **(사업부지)** 충남 아산시 초사동 465 일원 / 81,118㎡(연면적 28,717㎡)

○ **(총사업비)** 1,724억원(▵공사비 983억 ▵시설부대경비 113억, 의료장비 321억 등)

○ **(시설구성)** 300병상, 24개 진료과, 6개 특화진료센터*(지상 5층, 지하 2층 규모)

외래부	병동부(300병상)				
응급실	일반병동	재활병동	호스피스	감염병동(음압)	중환자실
28병상	218병상	34병상	10병상	20병상	18병상

* (6개 센터) ① 정신건강센터 ② 심뇌혈관센터 ③ 호흡기전문진료센터 ④ 근골격센터 ⑤ 비뇨의학센터 ⑥ 건강증진+대사질환센터

■ **향후 계획**

2026년		2027년		2028~2029년	
설계 공모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착공 ⇨	공사실시 ⇨	준공·개원
의료·운영계획 수립 ⇨		병원 개원 준비			

□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 전액(22억 8,500만원)과 실시설계비의 일부(7억 6,500만원)가 편성되었으며, 2027년부터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임.

<아산경찰병원의 연차별 총사업비 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 사 업 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공 사 비	98,320	-	2,257	38,427	57,636
기본 조사 설계비	2,285	2,285	-	-	-
실시 설계비	2,792	765	2,027	-	-
조사·측량비	983	-	983	-	-
감 리 비	4,905	-	-	1,962	2,943
시설 부대비	339	-	170	102	67
기타 투자비	47,116	-	-	-	47,116
예 비 비	15,674	-	663	4,083	10,928
합 계	172,414	3,050	6,100	44,574	118,690

※ 자료: 경찰청

(나) 우수 의료인력 확보 방안의 실효성 검토 필요

□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①민간수준 보수 상향 ②정주 여건 조성 ③교통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나, 지방 공공의료기관의 고질적인 인력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에 충분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 전문의 58명, 간호직 226명 등 총 486명의 인력 확보를 위해 ①민간수준 보수 상향 ②정주여건 조성 ③교통여건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임.

□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 전문의 58명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경찰청의 의료인력 확보 방안>

구 분	주 요 내 용
민간수준 보수 상향	• 인사처의 '의무직 임기제 공무원 연봉상한 폐지' 방침 활용 • 민간 수준의 자율적 연봉 협상 추진
근무·정주 여건 조성	• 진료과별 2인 이상 전문의 확보로 업무부담 해소 • 의료인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예: 이주정착 장려금 등 논의) • 폴리스 메디컬타운 개발(58.2만평 규모)
교통여건 개선	• 천안아산역-경찰병원 간 전용 셔틀버스 운행
	• 서울역에서 1시간 내 출·퇴근 가능

※ 자료: 경찰청

□ 그러나 서울경찰병원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충원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아산경찰병원도 동일한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큼.

2024년 서울경찰병원의 인건비 집행률은 82%로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며, 정원 681명 중 실제 근무 인원은 576명(84.6%)에 불과함. 특히 간호사는 정원 268명 중 46명이 결원되어 충원율이 82.8%에 그쳤고, 간호조무사는 정원 68명 중 25명이 결원되어 충원율이 63.2%에 불과함. 전공의 파업 여파로 레지던트 39명 중 30명, 인턴 14명 전원이 공석 상태임.

<서울경찰병원 주요 직렬별 정원 및 결원 현황(2024년 말 기준)>

구 분	정원(A)	현원	근무인원(B)	결원(A-B)	충원율 (B/A)
전체	681	623	576	105	84.6%
간호사	268	247	222	46	82.8%
간호조무사	68	47	43	25	63.2%
레지던트	39	9	9	30	23.1%
인턴	14	0	0	14	0%

※ 자료: 경찰청

□ 서울경찰병원은 2024년 한 해 동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충원을 위해 여러 차례 채용공고를 시행하였으나, 목표 인원의 약 60%만 채용하는 데 그쳤음. 경찰병원 측은 간호사는 8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간호조무사는 9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해당 직급에

따른 보수를 받는데 민간병원의 보수 수준과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라 보기 어렵고, 간호 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설명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청이 제시한 아산경찰병원 의료인력 확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음.

첫째, 민간수준 보수 상향이 실제 민간병원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함. 서울경찰병원에서도 임기제 공무원 전문의에 대해 민간수준 연봉협상을 시행하고 있으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결원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음. 서울 소재라는 지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수도권인 아산지역에서 226명의 간호직을 확보하는 것은 보수 상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수 있음.

둘째, 정주 여건 조성 방안 중 '폴리스메디컬타운 개발'은 아산시가 추진하는 장기 도시개발 사업으로, 경찰병원 개원 시점(2029년 예정)에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이주정착 장려금[260]의 구체적인 규모나 지급 방식도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을 판단하기 곤란함.

260) 경찰청은 경찰청·충남도·아산시 업무협약('23.3.24.)에 따라 아산경찰병원 직원 대상 이주 지원 인센티브를 발굴·지원할 계획임. 또한 「아산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21.4.26. 시행) 제19조 제1항에 따라, 아산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정규직 직원 중 전입자에 대해 이주정착장려금, 자녀 장학금, 주택자금 대출이자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구체적 제공방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임.

셋째, 교통여건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천안아산역 셔틀버스는 수도권 거주 의료진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서울경찰병원과 달리 아산경찰병원은 매일 장거리 통근을 해야 하는 구조임. 이는 의료진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근속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 참고로, 국립소방병원(충북 음성군 소재)의 경우에도 개원 준비 과정에서 의료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지방 소재 공공의료기관의 구조적 문제로 파악됨.

□ 따라서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의 우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제시한 방안들이 실제로 58명의 전문의와 226명의 간호직 등 총 486명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충분한지 면밀히 재검토하고, 서울경찰병원의 간호사·간호조무사 결원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한 후 그 성과를 바탕으로 아산경찰병원 인력 확보 전략을 수립하거나, 필요 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 또는 단계적 개원 전략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서울경찰병원의 일반회계전입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산경찰병원도 유사한 재정 구조를 가질 가능성이 크므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서울경찰병원은 경찰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병원 수입만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하지 못해 일반회계전입금에 의존하는 구조로, 최근 일반회계전입금 규모가 급증하고 있음.

<서울경찰병원 손익계정 세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
책임운영기관 사업수입	39,346	32,778	29,499	24,169	32,207	30,144
병원수입	5,371	6,226	6,360	6,048	6,363	6,363
일반회계 전입금	41,508	32,454	27,076	45,646	48,219	52,208

※ 자료: 경찰청(2020~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기준)

□ 일반회계전입금은 2020년 433억원에서 2024년 45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 예산안에서는 522억원으로 편성되어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경찰청은 ①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2020.12~

2022.5)으로 인한 진료환자 감소 ②의료대란 및 전공의 부재로 인한 진료 공백 등을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책임운영기관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에 대해 지정되는 것임. 기관수입의 많은 부분을 일반회계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는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경찰청의 아산경찰병원 재정 확보 방안>

구 분	내 용
유리한 진료권 환경	• 인근에 상급종합병원 부재 • 종합병원도 아산 충무병원 1개소만 존재
경찰관 이용률 제고	• 정신건강센터·비뇨의학센터 등 특화
	• 경찰 교육기관 연계 건강검진
	• 서울-아산 진료기록 공유
지역환자 유치	• 지역 병·의원과의 협약을 통한 환자 전원체계 마련(인근 대학병원과 MOU[261] 체결) • 심뇌혈관센터·호흡기전문센터 등 충남권·아산시의 다빈도 질환 고려, 지역에 부족한 공공전문진료센터 특화)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이 제시한 "유리한 진료권 환경"은 경쟁 의료기관이 적다는

261) 단국대병원, 순천향대병원으로부터 환자 진료 의뢰 및 회송제도 운영, 병원 간 진료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 체결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공문을 수신 완료('25. 7. 14., 7. 17.)

의미이나, 이는 동시에 해당 지역의 의료 수요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의미함. 2024년 7월 기준 아산시 내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1개소, 일반병원 9개소, 의원 157개소 등 총 335개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아산시 인구는 약 37만명 수준으로,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경찰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주민의 이용도 필수적임.

<아산시 내 의료기관 현황(2024.7. 기준)>

(단위: 개소)

의료기관 유형	읍	면	동	합계
종합병원	-	-	1	1
병원	5	1	3	9
의원	33	45	79	157
치과의원	18	26	50	94
한의원	15	20	26	61
기타	4	25	4	33
총합계	75	97	163	335

※ 자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또한,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의 "경제적 가치"를 응급환자 사망률 개선 편익 145억원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적 편익이지 병원의 재정 수입과는 무관함. 병원 운영을 위한 실질적인 수입 확보 방안이 필요함.

□ 참고로, 202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평가 및 적정성 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서울경찰병원을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등 유사 공공병원과 비교한 결과, 환자 경험(85.16점)은 전체 평균(81.30점)을 상회하나, 의료인력 확보율, 경영성과, 진료역량에서는 유사 공공병원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유사 공공병원과 서울경찰병원 역량 비교(2023년 기준)>

구 분	환자경험 (심평원 병원평가)	의료인력 확보율 (100병상당 전문의 수)	효율성 (전문의 1인당 조정환자)	경영성과 (전문의 1인당 의료수익)	진료역량 (진료과 수)	진료역량 (*적정성 평가 1등급 항목 수)
국립중앙 의료원 (2023)	85.34	23.84명	1,549명	870백만원	30개	16개 항목
서울의료원 (2023)	86.18	24.58명	1,281명	544백만원	25개	22개 항목
경찰 병원	85.16	18.47명	1,740명	438백만원	23개	7개 항목

※ 자료: 경찰청

□ 특히 의료인력 확보율은 100병상당 전문의 수가 18.47명으로 유사 공공병원(23~24명)에 비해 현저히 낮고, 전문의 1인당 의료수익은 438백만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870백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 적정성 평가 1등급 항목 수도 7개로 국립중앙의료원(16개), 서울의료원(22개) 대비 낮아 수익성과 진료역량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한편, 환자 경험 평가의 6개 세부 영역 중 의사 영역이 78.76점으로 전체평균(83.00점)을 하회하고 있음[262]. 의사 영역은 의사의 존중과 예의, 경청,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회진시간 관련 정보 제공 등 환자와 의사 간 소통을 평가하는 영역으로, 특히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 문항은 전국 평균(74.53점)에서도 24개 문항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한 항목임. 서울경찰병원의 낮은 의사 영역 점수는 의료인력 확보율이 유사 공공병원 대비 현저히 낮아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많고, 이로 인해 환자 1인당 진료시간 및 소통 기회가 제한적인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함.

□ 종합하면,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이 서울경찰병원과 같이 일반회계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로 운영되지 않도록, ① 경찰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이용 목표 설정 ② 진료과목별 수입/지출 전망 ③ 단계적 개원 등을 포함한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사전에 면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263]

---

26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년(4차) 환자경험평가 결과」, 2024.9. (전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374개 기관 대상)

263) 유사 의료시설인 국립소방병원의 경우, 의료·운영계획 연구용역(예산 4억원)을 통하여 ▵구체적인 수행기능과 역할 정립 ▵의료환경 분석 ▵전문센터·공공의료기능·의학연구소 등 기능별 구체적 운영전략 수립 ▵조직·인력계획 수립 ▵재정계획 수립 ▵기본설계 필수 반영사항 등 공간배치계획 수립 등 병원건립을 위한 구체적 종합계획을 수립함

(라)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 동일 회계연도 편성 문제

□ 경찰청은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의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기본설계비 전액(22억 8,500만원)과 실시설계비(7억 6,500만원)를 동시에 계산하였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첫째,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세부지침」에 따르면,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공사감리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가지 이상의 비목을 동시계상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선행단계의 절차를 마무리하고 후행단계를 진행토록 하기 위함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사업추진 단계별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려는 취지임.

<아산경찰병원의 연차별 총사업비 배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6년	2027년	2028	2029년
합계		172,414	3,050	6,100	44,574	118,690
공사비		98,320	-	2,257	38,427	57,636
시설부대경비	기본조사설계비	2,285	2,285	-	-	-
	실시설계비	2,792	765	2,027	-	-
	감리비	4,905	-	-	1,962	2,943
	조사·측량비	983	-	983	-	-
	시설부대비	339	-	170	102	67
기타투자비		47,116	-	-	-	47,116
예비비		15,674	-	663	4,083	10,928

※자료: 경찰청

□ 특히, 아산경찰병원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등 필수 행정절차를 필수적으로 수행해야함. 또한, 기본조사설계에 소요되는 기간이 9.5개월(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6년 말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따라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동시 계상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공종별 설계단계별 설계기간>

(단위: 월)

구 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 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 이상
건축	4.5	7	9.5	7	7.5	8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6년도 예산안 분석보고서』(국토교통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재인용)

□ 둘째, 아산경찰병원 건립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는 기본조사설계를 진행하고, 2027년에는 실시설계에 착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기본조사설계에 해당하는 조사·측량비가 편성되지 않고 2027년에 편성되어 있어 사업계획과 예산배분 계획이 일치하지 않음

□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기관인 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에 따르면, 예비타당성 조사 시 조사·측량비, 인증용역비, 각종 영향평가 비용 등을 '조사·측량비' 항목으로 별도 산출하도록 제시하고 있음.[264]

또한, 「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기재부)」에서는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부가적 소요경비를 기본조사설계비로 편성·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제시된 '조사·측량비'가 기본조사설계비에 해당함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경찰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제시된 '조사·측량비(공사비의 1%)'가 기본설계비에 해당함을 간과하여, 2026년에는 설계 자체에 소요되는 순수 설계비만을 고려하고, '조사·측량비'는 2027년 편성을 계획한 것으로 보임.[265]

□ 예비타당성조사 시 '조사·측량비'로 수행토록 제시하는 조사·측량, 각종 영향평가 및 각종 인증용역은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인증기관의 보완요청 등에 따라 협의·심의 소요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어 인허가·착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264)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22.12) 114p 가) 조사비 및 측량비 : 각종 측량, 조사, 시험 및 검사 등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포괄하는 항목으로 지반조사비, 지형현황측량비 등이 있다. (예시 : 조사 및 측량비, 지능형 건축물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녹색건축 및 에너지 효율등급 등, 각종 영향평가 비용 등, 미술장식품설치비 등)

265) 경찰청은 사업계획 수립 당시 사업의 초기 단계의 한계점으로 조사 및 측량비를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예비타당성 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의료부문 연구(KDI)'에 따라 조사 및 측량비 등 항목을 일괄하여 공사비의 1%로 산정하였음.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산경찰병원 건립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서는 2026년도에 편성된 실시설계비는 삭감하고, 2027년도에 편성예정이었던 조사·측량비를 2026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경찰청이 2027년도에 계획했던 조사·측량사업을 2026년도로 앞당겨 수행하고자 한다면 ① 용역 범위·내용·일정의 확정, ② 과업지시서 작성 및 입찰 준비, ③ 기본설계와의 일정 연계 및 조정 등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므로, 2026년도 내 실질적 착수가 가능하도록 예산 배분, 세부 과업 내용, 발주 절차 등 집행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경찰관채용교육(4135-311)

○ 확장현실 교육훈련 및 실감형 가상훈련은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교육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신규임용자 및 임용 1년 미만 경찰관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효과를 점검하고, 확장현실 교육훈련과 실감형 가상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훈련장 구축 및 가상훈련 장비를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관 채용교육(4135-311)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직무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장훈련·직무교육·시뮬레이션 훈련, 분야별 치안전문가 양성을 위한 특화 위탁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182억 4,300만원 대비 14억 4,800만원 증액(7.9%)된 196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경찰관 채용교육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경찰관 채용교육	16,094	18,243	19,691	1,448	7.9
· 경찰역량 강화	8,605	10,290	16,095	5,805	56.4
· 교육·훈련 인프라 구축	3,633	3,350	3,320	△30	△0.9
· 채용·승진시험 운영	3,858	4,603	276	△4,327	△94

※자료: 경찰청

(나) 확장·가상현실 교육효과의 분석 및 교육 수요 조사 이후 신규 교육장 구축, VR훈련기기의 구매를 검토할 필요

□ 내내역사업인 확장현실[266] 교육훈련(XR) 예산은 10억 800만원으로, 장비·훈련장 유지 관리를 위한 3억 1,000만원과 부산경찰청과 인천경찰청에 2곳의 신규 훈련장을 구축하는 예산 6억 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음.

□ 내내역사업인 실감형 가상훈련(VR) 예산은 8억 9,600만원으로, 실감형 가상훈련기기 보급을 위한 6억 7,200만원, 컨텐츠 개발 2억원, 연간 유지관리비 2,4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 경찰청은 향후 5개년에 걸쳐 전국 259개 경찰서에 2대씩 총 518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2026년 예산안을 통해서는 1년차 분의 기기 48대를 보급할 계획임.

266) 확장현실은 가상·증강현실(VR·AR) 기술의 개별 활용 또는 혼합 활용을 자유롭게 선택하며, 확장된 현실을 창조하는 기술임. 가상현실(VR)이 360도 영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실을 경험하도록 하는 기술로서 눈 전체를 가리는 헤드셋 형(HMD) 단말기가 필요함. 증강현실(AR)은 실제 사물 위에 컴퓨터그래픽(CG)을 통해 정보와 콘텐츠를 표시하는 것으로 구글 글라스와 같은 안경으로 표현이 가능함(출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확장현실 교육훈련(XR), 실감형 가상훈련(VR) 2026년 예산안 세부내역>

① 확장현실 교육훈련(XR): 10억 800만원(순증) - 장비·훈련장 유지 관리: 3억 1,000만원(서버이전 9,000만원 + 5개소 유지관리 및 라이선스: 2억 2,000만원) - 신규 훈련장 구축: 6억 9,800만원(부산경찰청, 인천경찰청 각 3억 4,900만원) ② 실감형 가상훈련(VR): 8억 9,600만원 - 실감형 가상훈련기기 6억 7,200만원(1,400만원×48대) - 콘텐츠 개발: 2억원 - 유지관리: 2,400만원

□ 확장현실 교육 훈련은 2~8인이 팀단위로 확장현실 헤드셋을 착용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대응하여 현실감 있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10개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음.

○ 확장현실 교육훈련을 위한 교육장은 경찰청 교육장(서울), 경찰인재개발원(아산), 중앙경찰학교(충주), 이동형 훈련장 2대가 설치되어 있음. 현재 구축된 훈련장에서 2일 또는 6일 동안 개발을 진행중인 시나리오를 재생하여 훈련을 실시함.

○ 경찰청은 2026년에 구축된 훈련장에서 시범운영을 위한 조작법 학습 등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신임교육생과 임용 1년 미만 경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임.

○ 확장현실 교육훈련 콘텐츠와 관련해서 연구개발이 종료하는

2025년 12월까지 실증을 통해 콘텐츠를 수정중이며, 2026년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 의견을 받아서 필요시 시나리오 전체 흐름이 변경되지 않는 선에서 개선할 예정임.

<확장현실 교육훈련장 현황>

구 분	위 치	구축 시점	소요 예산·기간	훈련실시 사례	시 설	사 진
경찰청 교육장*	서울	2023년	21억 8,000만원 (3개월)	2024년 11월~12월(6일)	4인·2인·1인 훈련실·강평실·브리핑실 등	
경찰인재개발원	아산	2024년	10억 8,900만원 (2개월)	2025년 4월(2일) 5월(2일)	8인·4인 훈련실·강평실·브리핑실 등	
중앙경찰학교	충주	2025년	20억 4,700만원 (4개월)	2025년 7월(2일) 9월(2일)	8인·4인 훈련실·강평실 등	
이동형 훈련장 2대	(이동형)	2023년	11억 5,500만원 (7개월)	홍보용 배치	4인 훈련실 등	

※ 경찰청 교육장(서울)은 2026년 초까지 축소 이전 예정[동 사업은 2025년 청사시설관리(7131-312)의 긴급복구 등 개보수 사업으로 추진 중임]

자료: 경찰청

<확장현실 교육 콘텐츠 시나리오 현황>

구 분	주 요 내 용	훈련 시간	참가 인원
교통사고	교통사고 현장 통제 및 부상자 구호, 사고현장 증거수집, 사후 조치 기록을 하여 교통사고 대응	15분	2인
스토킹	스토킹 범죄 사건에 대응하여 피해자 구호 및 대처, 행위자 수색 및 추적, 행위자 제압, 돌발상황 대처	15분	4인
물리력대응	폭행 현장에서 행위자 체포, 피해자 구호, 촬영 고지 등 역할을 수행하여 절차에 맞게 물리력 대응	15분	4인
주취난동	주취난동 상황에서 주변 상황을 통제 및 관리하고, 주취난동 상황을 제압 및 대처	15분	4인
스트레스 순응	극단적인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집중력, 자신감, 통제력을 잃지 않고 현장 대응	20분	4인
물리력 대응 (대형유지)	각자의 학습 위치에서 단계별로 대형 유지-제압 및 체포 고지의 역할을 수행	10분	4인
가정폭력	단계별로 가정폭력 상황을 체험하여 가정 폭력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법 수행	20분	2인
이상동기	5가지 유형의 이상동기 범죄 시나리오를 체험하여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이해하고 적절한 대응법 수행	-	최대 8인
대테러	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 용의자 수색 및 제압, 인질대응, 물리력 사용, 화학 테러 대응 등을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학습	20분	4인
사격훈련	흉기 난동 등의 물리력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총기류를 사용한 제압의 역할을 수행하며 올바른 총기류 사용법을 익히도록 학습	5분	2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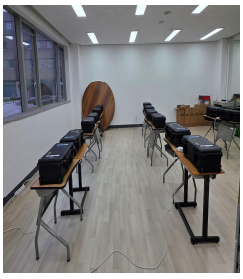
자료: 경찰청

□ 실감형 가상훈련은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여 헤드셋과 컨트롤러 장비를 활용하여 112신고 상황에 대응한 현장감 있는 훈련으로, 훈련 참가인원은 2명이고, 훈련 시나리오는 가정폭력, 흉기난동, 집단폭력 등 8개가 개발되어 있음.

○ 실감형 가상현실 훈련 장비는 2024년 12월 중앙경찰학교에 16대가 보급되어 2025년 6월부터 신임경찰 의무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운영중이고, 경찰대학에 4대가 보급되어 2026년 2월 겨울계절학기의 의무 교육과정으로 편성 예정임.

○ 2025년 예산을 통해서는 중앙경찰학교와 경찰인재개발원에 가상현실 훈련 장비 추가로 배치할 예정임.

<2024년에 경찰대학, 중앙경찰학교에 보급된 실감형 가상훈련 장비 활용 현황>

구 분	보유 대수	활용 현황	교육장 모습
경찰대학	4대	· 교수요원 대상 VR기기 시연회 2회(1·8월) · 체험부스 운영(9월) · 겨울계절학기(2026년 2월) 교육과정(의무)에 편성 예정	
중앙경찰학교	16대	· 교수요원 대상 VR체험 및 사용법 교육(1월) · 2025년 6월부터 신임경찰 교육과정(의무)에 포함 · 5개 수업(112초동대응 실무, 풍속·기초질서, 관계성 범죄 초동조치, 민감사건 초동조치, 강력범죄 초동조치)에서 각 3시간씩 총 15시간 교육(연말까지 2,288명 수강 예정)	

자료: 경찰청

<실감형 가상훈련 교육 콘텐츠 시나리오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훈련시간
가정폭력	가정집에서 발생한 남편의 가정폭력에 대해 행위자 체포, 피해자 분리조치 등을 진행 ※ VR 컨트롤러 조작 방법 숙지를 위해 '튜토리얼' 형태로 구성	약 10분
흉기난동	주점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해 주취자 난동 저지 및 체포,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	약 15분
정신이상자 응급입원	아파트 상가에서 난동 중인 정신질환자를 제압하고, 신원확인 및 응급입원 조치를 진행	약 15분
집단폭력	노상에서 집단폭행 사건이 발생, 저항하는 행위자를 제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	약 15분
치매노인 보호조치	치매노인을 지구대에서 보호조치하면서 신원을 확인하고 보호자에 인계하는 절차 등을 진행	약 15분
스토킹	늦은 밤 여성의 집 주변을 서성이는 스토킹 행위자를 검거하고 피해 여성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진행	약 15분
아동학대	가정집 내 아동학대 의심 상황에서 모친·아동 분리 면담 통해 학대 정황 확인하고 여청수사팀 인계 절차 등을 진행	약 15분
교제폭력	전 연인의 집을 찾아와 난동 부리는 남성을 제압하고,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진행	약 15분

※ 실감형 가상훈련의 참여인원은 2명임.
자료: 경찰청

□ 확장현실 교육훈련과 실감형 가상훈련을 확대 보급함으로써 많은 경찰관들이 팀원들과 함께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경험해 봄으로써 사건 대응하는 역량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확장현실 교육훈련장과 실감형 가상훈련 장비들은 2025년까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보급되었고, 2026년에는 시도경찰청에 확장현실 신규 교육훈련장을 구축하고 및 전국 259개 경찰서 중 지역에 가상현실 훈련 장비를 각각 2개씩 보급할 계획임.

○ 확장현실 신규 교육훈련장을 구축하는 이유에 대해 경찰청은 콘텐츠 품질 개선을 위해서는 다양한 피드백이 확보되어야 하며 이미 구축된 훈련장만으로는 부족하여 다른 지역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2026년에 시범 운영과 신규 훈련장 구축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연구개발 투자로 개발한 콘텐츠가 다양한 지역에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임.

- 이를 위해 경찰청은 시·도청 단위의 신규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의 수요를 파악했고, 시·도청 교육센터·현장실습센터·치안센터 등을 활용하여 여유 공간이 있고 각 시·도청에서 가까운 곳으로 후보지를 선정함.

○ 경찰청은 실감형 가상훈련의 실시 및 기기 도입과 관련하여 별도의 수요 조사는 없었지만 실감형 가상훈련은 혼란스러운 현장상황에서 누락하기 쉬운 각종 절차의 이행 여부를 미리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의 현장경찰관을 대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는 의견임.

□ 다만, 확장현실 및 실감형 가상훈련은 기존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모든 경찰관이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방식을 편안하고

진지하게 수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대하는 교육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이고,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교육 수단을 우선 배포한 뒤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은 일선 경찰관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미 구축된 확장현실 교육훈련장은 실제 훈련을 실시한 사례가 저조하고, 확장현실 교육훈련과 실감형 가상훈련은 성격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데 가상훈련 방식 역시 전국적 도입을 2026년 새롭게 시작하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우선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및 경찰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신규임용자 및 임용 1년 미만 경찰관을 대상으로 먼저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 효과를 점검하고, 확장현실 교육훈련과 실감형 가상훈련에 대한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신규 훈련장 구축 및 가상훈련 장비를 점진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경찰복지증진(7135-311)

○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마음동행센터를 1개소(상담사 1인)를 설치하여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마음건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찰관이 마음건강증진 상담을 받지 않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 경찰관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가 경찰서를 찾아가는 상담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관 복지증진(7135-311)은 경찰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순직·공상경찰관 예우·지원, 복지시설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834억 4,600만원 대비 44억 2,100만원 증액(5.3%)된 878억 6,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경찰복지증진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경찰관 채용교육	74,346	83,446	87,867	4,421	5.3
·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4,463	4,690	4,875	185	3.9
· 전사순직경찰관 예우 및 지원사업	977	1,394	1,339	△55	△3.9
· 경찰복지 실태조사 및 위원회 운영 등	25	25	25	-	-
· 직장보육시설 운영지원	46,841	54,713	58,718	4,005	7.3
· 경찰 임차관사 운영지원	5,510	5,654	5,764	110	1.9
· 경찰관 의료지원	12,050	12,138	12,314	176	1.5
· 경찰수련원 운영지원	3,225	3,338	3,338	-	-
· 경찰 체력단련장 운영지원	917	937	937	-	-
· 위험직무공상경찰관 특별위로금 지급	338	557	557	-	-

※자료: 경찰청

(나) 정신건강 전문가가 경찰서를 방문하여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예방 사업의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내역사업인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경찰관에 대한 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경찰 특화 전문 상담·치료기관인 마음동행센터 운영, 민간상담소 심리상담, 전문의 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48억 7,500만원으로 2025년 예산과 비교하여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마음동행센터 1개소를 추가로 운영하기 위한 예산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예산 세부내역>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
합계: 46억 9,000만원	합계: 48억 7,500만원
○ 마음동행센터 18개소 운영: 35억 3,900만원 · 상담사 1인 센터 운영비: 4억 4,100만원 (월 1,175만원×12개월×1개소) · 상담사 2인 센터 운영비: 27억 1,600만원 (월 1,617만원×12개월×14개소) · 상담사 3인 센터 운영비: 7억 4,100만원 (월 2,058만원×12개월×3개소)	○ 마음동행센터 19개소 운영: 37억 3,900만원 · 상담사 1인 센터 운영비: 2억 8,200만원 (월 1,175만원×12개월×2개소) · 상담사 2인 센터 운영비: 27억 1,600만원 (월 1,617만원×12개월×14개소) · 상담사 3인 센터 운영비: 7억 4,100만원 (월 2,058만원×12개월×3개소) ○ 마음동행센터 증설 1개소: 4,400만원(검사장비 등 비품)
○ 민간상담소 심리상담: 7억 2,000만원 (11만원×2,424명×2.7회)	○ 민간상담소 심리상담: 7억 2,000만원 (11만원×2,424명×2.7회)
○ 자살예방교육: 3억 3,800만원 · 자살예방 강사양성 2억 2,500만원 (100만원×225명) · 자살예방 보수교육: 1억 1,300만원 (50만원×225명)	○ 자살예방교육: 3억 3,800만원 · 자살예방 강사양성 2억 2,500만원 (100만원×225명) · 자살예방 보수교육: 1억 1,300만원 (50만원×225명)
○ 홍보물품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 워크숍 운영경비: 3,400만원	○ 홍보물품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북, 워크숍 운영경비: 3,400만원

□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은 마음동행센터, 민간상담소 등을 통해 경찰관에게 긴급심리지원, 지정상담, 자발적 검사, 힐링캠프 등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

○ 2024년에는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22,280명의 경찰관에게 48,433회의 심리지원을 실시함. 유형별로는 재난·인명사고에 노출된 경찰관에게 지원하는 긴급심리지원은 940회(828명), 격무부서 등에 대한 지정상담은 17,045회(14,558명), 자발적 상담은 29,928회(7,693명), 힐링캠프는 520회(425명)임.

○ 긴급심리지원과 지정상담은 상담사가 경찰관이 있는 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한 것임. 자발적 상담은 경찰관이 센터 등을 방문하여 상담받는 방식이고, 전문의 진료는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 중에 전문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제공하고 있음.

<2024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결과>

(단위: 명, 회)

구분	합계		긴급심리지원		지정상담		자발상담		힐링캠프		전문의 진료(치료)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합계	22,280	48,433	828	940	14,558	17,045	7,693	29,928	425	520	395	2,507
마음동행센터	16,923	38,197	293	404	11,227	13,833	6,170	23,440	425	520	341	2,073
민간상담소	5,359	10,236	535	536	3,331	3,212	1,523	6,488	-	-	57	434

자료: 경찰청, “2025년 경찰청 마음건강증진 계획”

○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기간 동안 전체 상담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해당 기간 동안 의무화 상담 중 긴급심리지원은 2025년에 많았고, 지정상담은 2023년에 많았음.

<2021년~2025년 9월 마음건강 증진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건, 회)

구 분	합계		긴급심리지원		지정상담		자발상담		힐링캠프		전문의 진료(치료)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2021년 합계	18,047	37,096	884	961	11,349	13,405	5,774	20,596	40	40	251	1,540
마음동행센터	9,940	21,881	84	69	7,545	9,599	2,271	10,311	40	40	242	1,511
민간상담소	8,107	15,215	800	892	3,804	3,806	3,503	10,285	-	-	9	29
2022년 합계	23,272	40,501	818	797	17,413	18,433	4,645	18,804	396	555	259	1,440
마음동행센터	14,218	25,974	389	402	10,748	12,304	2,685	11,107	396	555	228	1,199
민간상담소	9,054	14,527	429	395	6,665	6,129	1,960	7,697	-	-	31	241
2023년 합계	25,660	49,823	759	890	18,981	21,442	5,529	23,120	391	545	312	2,089
마음동행센터	18,912	38,199	360	465	14,095	16,801	4,066	16,740	391	545	280	1,846
민간상담소	6,748	11,624	399	425	4,886	4,641	1,463	6,380	-	-	32	243
2024년 합계	22,280	48,433	828	940	14,558	17,045	7,693	29,928	425	520	398	2,507
마음동행센터	16,923	38,197	293	404	11,227	13,833	6,170	23,440	425	520	341	2,073
민간상담소	5,357	10,236	535	536	3,331	3,212	1,491	6,349	-	-	57	434
2025년 9월 합계	17,725	37,355	2,008	2,088	10,427	12,257	5,096	18,927	194	243	411	2,071
마음동행센터	13,261	29,843	731	927	8,199	10,134	4,137	14,795	194	243	340	1,638
민간상담소	4,464	7,512	1,277	1,161	2,228	2,123	959	4,132	-	-	71	433

※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긴급심리지원이 가장 많은 원인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응 인력 대상 긴급심리지원의 영향임

자료: 경찰청

□ 현재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마음동행센터 18개소, 민간상담소 1,240개소, 협약병원 90개소 등 총 1,348개가 있음.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 기관 현황>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마음동행센터	2	1	1	1	1	1	1	-	1	1
민간상담소	313	65	54	60	36	62	27	15	259	62
협약병원	15	8	5	6	3	2	2	-	7	4
계	330	74	60	67	40	65	30	15	267	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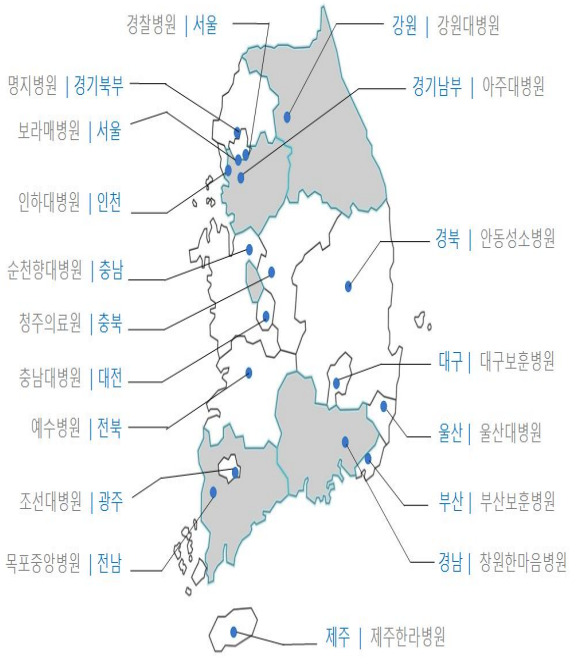
구 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마음동행센터	1	1	1	1	1	1	1	1	18
민간상담소	24	23	47	33	30	44	65	21	1,240
협약병원	6	4	4	2	2	5	13	2	90
계	31	28	52	36	33	50	79	24	1,348

자료: 경찰청

○ 2024년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결과에 따르면 18개 마음동행센터에서 전체 이용 48,433건의 78.9%인 38,197건의 상담 등이 실시됨. 2024년 기준 18개의 마음동행센터에 상담사 36명이 근무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상담사 1인당 연평균 1,000건 이상의 상담을 하고 있으므로 상담사를 확충할 필요가 있어 보임.

○ 경찰청이 2023년 수립한 제3차 경찰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2024~2028년) 및 2025년 경찰청 마음건강 증진 계획 등에 마음건강 관련 인프라 확충을 포함하고 있는 등 경찰청은 마음건강증진 인프라 확충을 주요한 정책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267]

<마음동행센터 현황>

전국 마음동행센터 배치도	센터 현황			
	지역	협약병원	상담사 수	개소연도
	서울	보라매병원	2명	2014년
	서울	경찰병원	3명	2017년
	인천	인하대병원	2명	2019년
	경기북부	명지병원	2명	2019년
	경기남부	아주대병원	3명	2017년
	강원	강원대병원	2명	2018년
	대전	충남대병원	2명	2014년
	충북	청주의료원	2명	2019년
	충남	순천향대병원	2명	2019년
	광주	조선대병원	2명	2014년
	전북	예수병원	2명	2019년
	전남	목포중앙병원	2명	2019년
	대구	대구보훈병원	2명	2018년
	경북	안동성소병원	2명	2019년
	부산	부산보훈병원	3명	2014년
	울산	울산대병원	2명	2019년
	경남	한마음창원병원	2명	2019년
	제주	한라병원	1명	2018년

자료: 경찰청

□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해야 한다’는 인식의 영향으로 마음의 어려움을 드러내는데 익숙하지 않고, 상담·치료 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도 가지고 있어 지원제도를 인지하더라도 이용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고 함. 이를 고려하면, 최근 증가하고 있는

267)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는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5조임.

마음건강증진 상담 수요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서 전국 경찰관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경찰서를 찾아가는 상담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 운영중인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중 상담사가 경찰서를 찾아가는 사업에는 긴급심리지원과 지정상담이 있음.

○ 긴급심리지원 대상에는 타인의 죽음을 목격한 경우가 포함되는데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살인·변사 현장출동 건수는 연평균 57,675건이고, 해당 사건당 6인 이상의 직원(지역경찰, 형사, 감식요원)이 현장을 목격하는데, 해당 기간 긴급심리지원 인원은 평균 719명임.

<타인의 죽음 목격과 관련 긴급심리지원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살인·변사 현장출동(건)	과학수사요원 현장 감식 건수	55,211	59,563	56,687	59,240	44,567
긴급심리지원 실시 인원(명)	타인의 죽음 목격	793	767	653	666	1,889

자료: 경찰청

○ 또한, 긴급심리지원의 대상인 범인 피습 경찰관 수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92명인데, 이 중 긴급심리지원을 실시한 인원은 연평균 43명(평균 실시율 11%)임.

<직무수행 중 본인 위협·피해 관련 긴급심리지원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범인피습 부상 경찰관(명)	공상 경찰관 중 범인 피습	287	359	439	486	177
긴급심리지원 실시 인원(명)	직무수행 중 본인 위협·피해	48	14	42	69	50

자료: 경찰청

○ 지정상담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면, 40대 경찰관은 지정상담 대상자 33,117명 중 18,228명(55%)이 상담을 실시했고, 50대 이상 경찰관은 지정상담 대상자 36,027명 중 11,241 (31.2%)가 상담을 실시함.

<지정상담 실시 현황>

대 상	진행기간	전체 인원 (2024년 기준)	진행 인원 (명)	비율(%)
40대 경찰관	2023년 6월 ~ 2024년 (19개월)	33,117	18,228	55.0%
50대 이상 경찰관(경감·경위급 등)	2022년 4월 ~ 2024년(33개월)	36,027	11,241	31.2%

자료: 경찰청

○ 소방청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 사업(2025년 기준 예산 47억원)의 내역사업 중 예방사업에 해당하는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의 예산이 3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2026년 예산안에 반영된 마음동행센터를 1개소(상담사 1인 센터)를 설치하여 증가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전국 경찰관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현재 대상자에 비해 지원이 부족한 긴급심리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내용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국제협력관】

(1)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 경찰청은 해외치안협력강화 내역사업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내역사업 구분의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코리안데스크와 단기파견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다수의 국제범죄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외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3133-311)은 마약범죄 등 초국가범죄로부터 국민(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주재관 등을 파견하고 자국 및 요청국 경찰의 역량을 강화하여 범죄에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 121억 1,100만원 대비 2억 300만원 증액(1.7%)된 123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음.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해외치안협력강화	12,954	12,111	12,314	203	1.7
·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5,468	4,521	4,407	△114	△2.5
· 초국가범죄 공동대응 네트워크 강화	5,671	7,068	7,265	197	2.8
· 해외 주요사건 공조수사 활동	520	522	642	120	23.0
· 체류외국인 범죄예방 활동	931	-	-	-	-
· 외사사범 수사활동	364	-	-	-	-

※자료: 경찰청

(나) 내역사업 구분의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

□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 사업은 종전의 외사경찰활동(3132-311) 사업과 해외치안협력강화(3133-311)이 통합되었음. 내역사업에는 (1)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2)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네트워크 강화, (3) 해외주요사건 공조수사 활동이 있음.

○ 내역사업인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내역사업인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네트워크 강화는 아래 표와 같이 내내역사업과 내내내역사업 2단계로 구성되어 있고, 내역사업인 해외주요사건 공조수사 활동은 아래에 1단계가 더 있음.

<2026년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의 내역 사업 현황>

내역사업 (예산)	내내역사업 (예산)	내내내역사업 (예산)
1.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예산: 44억 700만원)	1-1) 해외 경찰주재관 등 운영비 (예산: 17억 7,000만원)	① 해외 경찰주재관 등 교체여비 (예산: 8억 7,100만원) ② 해외 경찰주재관 등 공통운영비 (예산: 6,100만원) ③ 해외파견 경찰협력관 운영비 (예산: 7억 100만원) ④ 직무파견 경찰주재관 운영비 (예산: 9,700만원) ⑤ 경찰주재관 등 교육·회의 (예산: 4,000만원)
	1-2) 국제협력경찰 운영 (예산: 2억 3,600만원)	① 국제협력요원 역량강화 (예산: 7,000만원) ② 국제협력 자문협의회 운영 (예산: 3,000만원) ③ 국제협력 경찰 운영지원 (예산: 1억 3,600만원)

내역사업 (예산)	내내역사업 (예산)	내내내역사업 (예산)
	1-3) 정보보안비 (예산: 19억 5,200만원)	
	1-4) 외국경찰 대상 마약범죄 등 대응역량강화 교육훈련 (예산: 4억 1,600만원)	① 선진치안시스템 전수 지원 (예산: 3억 1,600만원) ② 한아세안 국제범죄수사 역량강화 (예산: 1억원)
	1-5) 외국 법집행기관 선진 교육연수 (예산: 3,200만원)	① 외국 법집행기관 교육 프로그램 참석 (예산: 600만원) ② 외국경찰 선진경찰제도 연수 (예산: 2,600만원)
2.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네트워크 강화 (예산: 72억 6,500만원)	2-1) 국제치안 협력활동 (예산: 1억 6,300만원)	① 주요 협력국가 고위급 회담 (예산: 3,000만원) ② 치안분야 주요 정책회의 참석 (예산: 1,100만원) ③ 주요 협력국가 경찰협력회의 (예산: 1,100만원) ④ 외국경찰 등 협력관리 운영 (예산: 4,500만원) ⑤ 데이터이용료 (예산: 1,700만원)
	2-2) 인터폴 국제공조활동 (71억 200만원)	① 인터폴 분담금 납부 (예산: 42억 7,000만원) ② 인터폴 펀딩을 통한 글로벌 금융범죄 대응 (예산: 15억 3,200만원) ③ 인터폴 총회 및 국장회의 등 주요 국제회의 (예산: 5,600만원) ④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운영 (예산: 2,800만원) ⑤ 인터폴 합동단속작전 회의 (예산: 1억 5,600만원) ⑥ 국제공조시스템 범정부 공동활용 (예산: 9억 7,000만원) ⑦ 인터폴 전용통신망 유지보수 (예산: 9,000만원)
3. 해외주요사건 공조 수사 활동 (예산: 6억 4,200만원)		①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예산: 5억 6,800만원) ② 마약·보이스피싱 등 해외거점 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 (예산: 7,400만원)

○ 내역사업인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내역사업인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네트워크 강화는 그 내역사업 명칭만으로는 어떤 사업을 포함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해외치안 협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이 단순하게 구성된 2021년의 분류[268]를 참고하면, 해외치안 협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을 ① 해외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파견, ② 국제회의, ③ 인터폴 분담금, ④ 인터폴 인프라 활용, ⑤ 아세안 등 협력, ⑥ 국제공조 활동, ⑦ 국제협력경찰 운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해당 분류를 기준으로 2021년 예산부터 2026년 예산안의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음.

---

268) 2021년 해외치안협력강화 내역사업 구성
① 해외 경찰주재관 등 교체여비
② 해외 경찰주재관 등 운영비
③ 선진 치안시스템 전수 지원
④ 국제치안협력 활동
⑤ 인터폴 분담금 납부
⑥ 국가중앙사무국 인터폴 국제공조활동
⑦ 인터폴 총재 활동 지원
⑧ 인터폴 국제범죄 공조회의
⑨ 2021 국제 경찰청장회의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 세부 내역[2021년~2026년(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안)
해외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파견	해외 경찰주재관 등 교체 여비		553	661	871	871	871	871
	해외 경찰주재관 등 운영비		1,034	1,035	1,034	667	667	628
		코리안데스크 운영비	476	477	476	229	229	①*
		인터폴 협력관 운영비	256	256	256	255	255	②*
		직무파견 주재관 운영비	217	217	217	98	98	97
		해외 경찰주재관 등 공통운영비	78	78	78	78	78	54
		해외파견 경찰관 안전장비	7	7	7	7	7	7
		경찰주재관 등 교육·회의**	-	-	-	-	-	40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단기 파견		-	269	269	269	269	③*
국제 회의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치안협력 활동		169	151	151	216	189	206
		국제협력 주요 국제회의	42	42	42	101	101	101
		외국 선진경찰 제도 연수	26	26	26	32	32	32
		인터폴 총회 등 주요 국제회의	55	55	55	55	55	56
		대테러 주요 국제회의	28	28	28	28	-	-
		국제범죄 대응강화 회의	18	-	-	-	-	-
		국외출장시 데이터이용료	-	-	-	-	-	17
	국제 경찰청장회의		400	-	560	-	598	-
	인터폴 총재 활동 지원		179	-	-	-	-	-
	인터폴 국제범죄 공조회의		156	156	156	156	156	156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안)
인터폴 분담금	인터폴 분담금 납부	1,591	1,630	2,577	2,577	3,784	4,270
	인터폴 펀딩을 통한 글로벌 금융범죄 대응**	-	-	-	-	-	1,532
인터폴 인프라 활용	인터폴 국가중앙사무국 운영	29	29	29	29	28	28
	국제공조시스템 범정부 공동활용	-	-	-	-	-	970
	인터폴 전산망 개방·확대	-	-	-	-	398	-
	인터폴 전용통신망 유지보수**	-	-	-	-	-	90
아세안 등 협력	선진 치안시스템 전수 지원	385	451	502	386	386	316
	한아세안 국제범죄 수사역량 강화	100	100	100	100	100	100
국제 공조 활동	**국가중앙사무국 인터폴 국제공조활동**	390	389	389	449	448	568
	도피사범 송환 출장	265	265	266	307	307	357
	외국 사법기관 국제공조수사	84	84	82	82	82	151
	외국경찰 국내호송 및 국내입국 공동조사 지원	41	41	41	41	41	42
	외국 사법기관 네트워크 구축	-	-	-	19	19	19
	보이스피싱 등 해외거점 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	-	-	147	74	74	74
국제협력 경찰 운영**		-	-	-	-	-	236

* 표의 ① ② ③ 항목 수치의 합계는 701임.

** 경찰주재관 등 교육·회의, 국제협력경찰 운영, 인터폴 펀딩을 통한 글로벌 금융범죄 대응, 인터폴 전용통신망 유지 보수는 외사경찰활동(3132-311)으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임.

○ 해외치안 협력강화 사업의 내역사업 구성을 위의 표 등과 같이 단순하게 구성하여 내역사업의 명칭으로 사업 내용을 예상할 수 있도록 사업 분류를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해외치안협력강화 사업은 2024년 129억 5,400만원을 집행했고, 2025년 예산은 121억 1,100만원 중 107억 7,683만원을 집행함.[269]

□ 경찰 주재관 및 협력관 파견과 관련해서 경찰 주재관은 34개국에 68명 파견하고 있음. 코리안데스크 등 경찰협력관은 6개국 7개소[270]에 파견하고 있음.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단기 파견[271]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명~4명을 파견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도피사범을 검거·송환함.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단기 파견 현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파견국 및 파견인원	중국 2명 캄보디아 1명 태국 1명	태국 2명 베트남 1명 프랑스 1명	태국 2명 네덜란드 1명	태국 2명 네덜란드 1명

자료: 경찰청

269) 2025년 10월 30일 기준

270) 코리안데스크 등 경찰협력관 현황

국 가	근무인원	설치연도
필리핀 코리안데스크	마닐라 1명, 앙헬레스 1명, 세부 1명	2012년
태국 경찰청	1명	2022년
태국 마약통제청	1명	2023년
베트남 코리안데스크	없음(베트남 공안)	2015년
캄보디아 대사관	1명	-
인터폴 프랑스	2명	-
인터폴 싱가포르	1명	-

271)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단기 파견의 연간 예산 2억 6,900만원임.

○ 코리안데스크와 단기파견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다수의 국제범죄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국제공조활동 중 보이스피싱 등 해외거점 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은 2025년 9월말 기준 예산 7,400만원 중 4,800만원을 집행하여 검거작전을 40회 실시하고, 첩보검증 출장을 29건 실시했으며, 잠복수사관을 34회 동원함.

<보이스피싱 등 해외거점 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 예산 집행 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말
해외거점 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		·예산: 1억 4,700만원 ·집행액: 1억 1,568만원	·예산: 7,400만원 ·집행액: 7,302만원	·예산: 7,400만원 ·집행액: 4,800만원
	검거작전시 해당국 법집행기관 차량 임차료	·예산: 6,000만원 ·집행액: 3,900만원	·예산: 3,000만원 ·집행액: 2,900만원 ·검거작전 건수: 29건 (필리핀 18건 등)	·예산: 3,000만원 ·집행액: 2,000만원 ·검거작전 건수: 40건 (필리핀 24건, 태국 8건 등)
	첩보검증 출장	·예산: 4,400만원 ·집행액: 4,000만원	·예산: 2,200만원 ·집행액: 2,200만원 ·첩보검증 출장 건수: 25건(필리핀 18건 등)	·예산: 2,200만원 ·집행액: 1,400만원 ·첩보검증 출장 건수: 29건(필리핀 20건, 태국 9건 등)
	검거작전을 위한 해당국 잠복 수사관 동원비	·예산: 3,600만원 ·집행액: 3,000만원	·예산: 1,800만원 ·집행액: 1,800만원 ·잠복수사관 동원 건수: 26건(필리핀 24건, 태국 2건 등)	·예산: 1,800만원 ·집행액: 1,200만원 ·잠복수사관 동원 건수: 34건(필리핀 15건, 태국 10건 등)
	네트워크 구축비	·예산: 700만원 ·집행액: 700만원	·예산: 400만원 ·집행액: 400만원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 집행	·예산: 400만원 ·집행액: 200만원 ·네트워크 구축 활동비 집행

자료: 경찰청

○ 그리고 인터폴 국제공조활동은 2025년 예산 4억 4,800만원 중 4억 200만원을 집행하여 국외 도피사범 송환 업무를 수행함.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예산 집행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9월
도피사범 송환 출장	· 예산: 2억 6,500만원 · 집행액: 2억 200만원	· 예산: 2억 6,560만원 · 집행액: 2억 6,411만원	· 예산: 2억 6,560만원 · 집행액: 2억 6,528만원	· 예산: 3억 655만원 · 집행액: 3억 2,400만원	· 예산: 3억 655만원 · 집행액: 3억 267만원
외국 사법기관 국제공조 수사	· 예산: 8,400만원 ·집행액: 6,115만원	· 예산: 8,249만원 · 집행액: 8,229만원	· 예산: 8,249만원 · 집행액: 8,195만원	· 예산: 8,203만원 · 집행액: 8,164만원	· 예산: 8,203만원 · 집행액: 7,077만원
외국 경찰 국내호송 및 국내입국 공동조사 지원	· 예산: 4,100만원 · 집행액: 2,230만원	· 예산: 4,100만원 · 집행액: 4,050만원	· 예산: 4,100만원 · 집행액: 3,843만원	· 예산: 4,117만원 · 집행액: 4,100만원	· 예산: 4,069만원 · 집행액: 3,851만원
외국 사법기관 네트워크 구축	-	-	· 예산: 1,875만원 · 집행액: 1,875만원	· 예산: 1,875만원 · 집행액: 1,875만원	· 예산: 1,875만원 · 집행액: 1,619만원
합 계	· 예산: 3억 9,000만원 · 집행액: 2억 8,500만원	· 예산: 3억 8,900만원 · 집행액: 3억 8,700만원	· 예산: 3억 8,900만원 · 집행액: 3억 8,600만원	· 예산: 4억 4,900만원 · 집행액: 4억 4,700만원	· 예산: 4억 4,800만원 · 집행액: 4억 200만원

자료: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

(1) 경찰청 R&D 연구관리전문기관: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

○ 과학치안진흥센터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별도 기관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통합기평비(평균 2%)가 아닌 사업별 기획평가관리비(3.8%)를 편성하고 있음. 단기적으로는 사업별 적정 기평비 편성을 위한 자체 기준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기관운영비 확보 및 통합기평비 전환 노력이 필요함.

(가) 개 요

□ '과학치안진흥센터[272](이하 'KIPoT')'는 2021년 1월 경찰청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2023년 6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경찰청 고시(제2023-3호)를 통해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치안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기획·관리·운영·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2026년도 경찰청 R&D 예산안은 총 682억 1,200만원이며, 이 중 기획평가관리비(이하 '기평비')로 26억 2,700만원(3.8%)이 편성되었음. 이는 주요 부처 전문기관의 평균 수준(약 2%)을 상회하는 편성 비율임.

272) 과학치안진흥센터는 2021년 1월 12일에 경찰청 산하 비영리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었으며, 소장실 포함 4개 부서 19명으로 구성되었고, 2023년 6월에 경찰청 전문기관으로 지정 고시되었음.

<2026년도 R&D 예산안 편성>[273]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6년			
	예산액	연구 개발비	기평비	기평비 비율(%)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2.0)	2,907	2,907	0	-
과학적 범죄수사 고도화 기술개발	3,068	2,950	118	4.0%
자율주행 기술 개발혁신사업[274]	14,454	13,725	729	5.3%
경찰장비 개선	2,548	2,450	98	4.0%
과학치안공공연구성과 실용화촉진시범사업	1,440	1,440	0	-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기술 개발	4,483	4,311	172	4.0%
사이버수사 지원기술 개발	8,736	8,400	336	4.0%
미래치안 도전 기술 개발	1,383	1,330	53	4.0%
경찰건강 스마트 관리	6,562	6,310	252	4.0%
불법마약류 대응을 위한 현장기술 개발	4,932	4,742	190	4.0%
과학기술 기반 군중밀집관리 기술 개발	1,976	1,900	76	4.0%
치안현장 맞춤형 연구개발 (폴리스랩3.0)	2,494	2,400	94	3.9%
차세대 지능형 순찰 플랫폼 개발	3,465	3,332	133	4.0%
사이버범죄 수사단서 통합 분석 및 추론 시스템 개발	6,136	5,900	236	4.0%
경찰 작전능력 향상기술 개발	1,248	1,200	48	4.0%
치안 데이터 활용 기술개발	1,560	1,500	60	4.0%
치안 신산업 핵심기술 사업화 지원	820	788	32	4.1%
총계	**68,212**	**65,585**	**2,627**	**3.8%**

※ 자료: 경찰청

---

273) 과거 경찰청 R&D 세부사업별 기평비 비율을 살펴보면 2023년 3.83%~4.5%, 2024년 2.0%~4.2%, 2025년 2.45%~4.2% 수준이며, 경찰청은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 적용하였다는 입장임.

274) 경찰청은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은 다부처(산업부·과기부·국토부) 사업으로 연계 협력 지원이 필수로 요구되어 범부처 협의체 운영, 기술교류 추진 등이 필요하고, 개별 과제의 연구성과 통합·연계 및 테스트 실증과 ▵현장 지원 및 운영 ▵유지관리 ▵연계 협력 등으로 인해 다른 사업에 비해 기평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나) 기획평가관리비 편성 기준 마련 필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275]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정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관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업무 수행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음.

□ 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기획·평가·관리 예산(이하 '기평비')'이 책정되어야 함. 그러나 부처별 전문기관 유형과 재정 구조가 상이하여 기평비 산정기준이 일관되지 않고, 일부 기관에서는 기평비가 기관운영비 확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존재함.

□ 이에 정부는 기평비 편성 범위와 목적별(기획·평가·관리·인건비·간접비 등) 기준 마련, 부처별 현황 파악 및 총량 관리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22년 통합기평비 제도를 신설하였음. 통합기평비는 기존의 사업별 기평비를 기관별·회계별로 통합 편성하여 일괄 관리하는 제도로, 전년도 실집행 예산을 기준으로 경직성 경비(인건비·간접비)와 비경직성 경비(기획·평가·관리)를 구분하여

27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명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말한다.

차년도 기평비를 산출하는 구조임.

□ 다만, 기평비 관련 구체적인 편성 지침이나 기준은 여전히 미비함. 특히 법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기관이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별도 기관운영비 편성이 어려워, 일부 기관은 통합기평비 대신 사업별 기평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정기관 및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17개 주요 전문기관은 모두 기관운영비를 별도로 지원받고 있으며, 평균 2%(0.6~3.9%)대의 통합기평비를 편성하고 있음.

<'25년 기준 주요 전문기관의 재원구조 현황>

(단위 : 억원)

기 관 명	전문기관 유형	관리 R&D 사업 예산	기관 운영비	기관고유 사업비	통합 기평비 시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법정기관	9,571 억원	O	O	O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법정기관	1조 4,722 억원	O	O	O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법정기관	5,154 억원	O	O	O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법정기관	4,595 억원	O	O	O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법정기관	3조 3,407 억원	O	O	O
한국연구재단	법정기관	4조 3,576 억원	O	O	O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공공기관	1조 5,225 억원	O	O	O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공공기관	7,418 억원	O	O	O
과학치안진흥센터	비영리 재단법인	616.08 억원	X	X	X

※ 자료: 경찰청

□ 반면, 과학치안진흥센터(KIPoT)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별도의 기관운영비 없이 기평비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예산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높은 요율(2026년 기준 평균 3.8%)의 기평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2026년 예산안 기준 KIPoT의 기평비는 총 20억 7,800만원이며, 이 중 인건비 및 간접비 등 센터 운영비는 약 10억 6,100만원(51.1%)을 차지함.

□ 경찰청은 인건비의 경우 KIPoT에 직접 상주하며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를 하는 인력에 대한 것으로, 통합기평비 신설 전 다른 전문기관의 인건비·간접비 비중(51.7%)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나 기평비의 절반 이상이 인건비와 간접비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점검이 필요함.

<최근 5년간 KIPoT 기평비 중 센터 운영비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기평비 총액	3.56	9.44	10.99	15.58	20.78
센터 운영비 (인건비, 간접비)	2.34	6.03	7.49	8.68	10.61
비율(%)	65.7	63.9	68.2	55.7	51.1

※ 자료: 경찰청

□ 또한, 기평비는 사업 성격, 규모, 관리, 복잡성 등에 따라 사업별 기평비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으나 2026년 경찰청 R&D 예산안에 따르면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 4% 요율을 일괄 적용하여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업무대행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급기준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은 그 기준에 따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경찰청도 법적 근거에 따라 자체적인 기평비 편성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의 투명성과 목적 적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를 거치고는 있으나, 사업별로 일률적인 요율(4%)을 적용하는 것은 기평비의 합리적 편성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

특히 경찰청 R&D 예산이 2015년 22억 원에서 2025년 640억원 규모로 지속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고려하여 사업의 규모, 관리 난이도, 인력 투입 정도 등 사업 특성을 반영한 기평비 산정기준을 검토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전문기관 안정적 운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경찰청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재정적 보완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KIPoT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별도 기관운영비가 없고, 경찰청 R&D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운영의 안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임.

□ 경찰청의 R&D 예산 및 과제 수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KIPoT 연구인력 1인당 관리 과제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경찰청 R&D 예산은 2015년 22억 원에서 2025년 640억 원으로 약 29배 확대되었으며, 사업 수도 1개에서 17개로 증가함. 이에 따라 연구인력 1인당 관리 세부사업 수는 2021년 0.29개에서 2025년 1.07개로 증가하여, 관리업무의 과중과 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임.

<최근 6년간 KIPoT 연구인력 1인당 관리 세부사업 수 추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관리 세부사업 수(개)	2	4	7	13	16	16
연구인력 수(명)	7	9	12	16	15	16
1인당 세부사업 수(개)	0.29	0.44	0.58	0.81	1.07	1.0

※ 자료: 경찰청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조사(「2024년도 연구관리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요 전문기관의 연구인력 1인당 평균 관리사업 수는 0.34개(2023년 기준)에 불과한 반면, KIPoT은 0.58개로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이며, 2025년에는 약 1.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주요 전문기관 대비 약 3배에 달하는 업무 부담으로, 개별 연구원의 과제관리 효율성 및 기획·평가 업무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전문기관별 연구인력 1인당 관리사업 수 비교(2023년 기준)>

(단위: 개/명)

기 관 명	1인당 관리사업 수
한국연구재단	0.35
정보통신기획평가원	0.31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0.35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12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0.6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0.67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1.94
과학치안진흥센터(2023년)	**0.58**
평균	**0.34**
과학치안진흥센터(2025년)	**1.0('25년 기준)**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경찰청

□ 또한, 인력 구성 측면에서도 전문성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KIPoT 연구진 17명 중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9명(52.9%)으로, 박사급 인력 비중이 낮아 고급 연구관리 역량 확보에 한계가 있음. 이러한 인력구조는 기관운영 재원 불안정성과 맞물려 전문인력 유치에도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276]

<KIPoT 연구진 전문성 현황>

구 분	인원(명)	비율(%)
전체 연구진	17	100.0
R&D 관련기관 경력 보유자	17	100.0
전문기관 경력 보유자	16	94.1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9	52.9

※ 자료: 경찰청

□ 한편, 다수의 전문기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주관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연구자·전문가·부처 담당자 등 수요자의 평가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으나, KIPoT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경찰청 R&D 예산과 사업 규모가 지속 확대되고, KIPoT의 과제관리 및 기획·평가 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기적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기관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76)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2명이 퇴사하고 신규 충원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업무부담과 기관 운영의 불안정성은 전문인력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종합적으로, 경찰청은 단기적으로 사업별 기평비의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전문기관의 지위 및 재원구조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히 기관운영비를 별도 확보하거나, 타 전문기관과 유사한 통합 기평비 체계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서의 안정적 운영 기반과 전문인력 확보 여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경찰건강 스마트관리(R&D)(4431-715)

○「경찰건강 스마트관리」 사업의 주요 기술인 웨어러블센서기술은 이미 민간 부문에서 높은 기술 성숙도로 상용화되어 심혈관질환 예방에 활용되고 있으며, 경찰관의 뇌 심혈관질환 위험은 야간근무라는 근무형태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므로, 여타 직군의 유사 연구결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개발 중인 다바이스가 향후 유사 직군에서도 함께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 완성도를 높여 다각적인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경찰건강 스마트관리' 사업(R&D)은 AI, IoT 등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경찰관의 뇌심혈관계질환을 예측·예방하고, 생활습관·근무형태 등에 따른 개인별 건강정보를 분석·관리하기 위해 경찰청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97억 4,000만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64억 9,000만원 대비 7,200만원 증액(1,1%)된 65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경찰건강 스마트관리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경찰건강 스마트관리	4,636	6,490	6,562	72	1.1

※ 자료: 경찰청

<경찰건강 스마트관리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세부 사업명	경찰건강 스마트관리(R&D)
내역 사업명	IoT, AI 기반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 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목표	경찰 인적자원의 개인별 생애주기 건강정보 통합 관리 및 현장 경찰관들의 실시간 생체정보를 활용을 통한 예방적 건강관리 방안 및 근무관리 시스템 구현으로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을 유지하고 치안서비스 강화 도모
사업내용	질병, 생활습관, 근무형태 등에 따른 경찰관 개인별 생애주기 의료·건강정보를 통합·관리하고, 현장 경찰관의 생체정보를 활용, 건강한 경찰 인적자원 항상성 유지·달성 가능한 IoT, AI 기반 건강정보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
수행기간	2022년~2026년(5년)
개발예산	총 297.4억원
연구내용	▸(1세부) 경찰 건강관리 통합플랫폼(폴라이프) 시범운영 및 JEM[277] 구축
	▸(2세부) 뇌심혈관질환 예측기술 개발을 위한 코호트 구축 및 특화 검진
	▸(3세부) 상용 웨어러블 기기 활용 라이프로그 기반 스트레스 케어 기술
	▸(4세부) 자체 전용 웨어러블 기기 기반 맞춤형 디지털 건강관리 서비스

※ 자료: 경찰청

277) JEM(Job Exposure Matrix, 직무-노출 매트릭스)는 잠재적 건강위험인자에 대한 노출을 평가하는 도구로, 직무와 근무환경을 기반으로 질병 발생과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됨.

(나) 사업 목표 달성 가능성 및 사후 관리 방안 검토 필요

□ 본 사업은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2026년 최종연도를 앞두고 당초 계획한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민간 상용 제품 대비 자체 개발 웨어러블 기기의 차별성 및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경찰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웨어러블센서기술은 이미 민간 부문에서 높은 기술 수준으로 상용화되어 뇌심혈관계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에 활용되고 있음.[278] 실례로, 삼성전자의 갤럭시워치는 혈압·심전도·체성분·혈중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할 수 있으며, 애플의 애플워치도 심전도·체온·혈중 산소포화도·수면 모니터링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279]

□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 사업이 이미 상용화된 삼성 갤럭시 워치를 일부 활용하고 있으나 경찰관 맞춤형 건강관리를 위한 자체 웨어러블 기기 개발[280]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기에, 전용 웨어러블

---

278) ㈜삼성전자, Apple Inc.은 웨어러블센서기술을 활용한 상용품을 판매중임.
○ (삼성-갤럭시워치) 혈압, 심전도, 황산화지수, 체성분, 체온·피부온도센서, 혈중 산소포화도 등 측정
○ (애플-애플워치) 심전도, 체성분, 체온·피부온도 센서, 혈중 산소포화도, 수면 모니터링 등 측정

279) 이러한 상용 기기들의 심혈관질환 탐지 성능에 대해서는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들이 보고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2019년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발표된 Apple Heart Study 에서는 419,297명을 대상으로 애플워치를 활용한 심방세동 탐지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으며, 2022년 Sensors에 발표된 Sedlacek 등의 연구에서는 삼성 스마트워치의 심박수 및 심박변이도 측정 정확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

280) 경찰청은 상용 웨어러블과 차별화된 자체 웨어러블 기기의 기능으로 ① 심전도 파형 등 원본 생체신호(raw data) 직접 수집·분석을 통한 경찰관 맞춤형 알고리즘 개발, ② 별도 보정기구 없는 혈압 자동보정

기기가 상용 제품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함을 해소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기술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차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자체 개발 웨어러블 기기의 성능 및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인인증을 획득하고 추가 임상시험 데이터를 확보하여, 향후 상용화 추진을 위한 명확한 성과 활용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경찰관의 뇌심혈관질환 위험은 야간근무라는 근무형태에 기인하는 측면이 커 경찰관만의 특수성이라기보다 다양한 직업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 경찰청은 한양대 연구(2015)를 인용하여 경찰관의 허혈성 심질환이 일반공무원 대비 2배, 심근경색 4배 높다고 주장하나, 여러 연구[281]에서 야간근무와 심혈관질환의 연관성은 이미 충분히 입증된 의학적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소방·의료·제조 등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야간근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나타남.

□ 실제로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청도 2015~2019년 5년간 37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장 중심형 소방활동 지원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코호트 추적을 통한 소방공무원 신체·정신적 질병 원인 파악, 직무특성·건강진단자료의 빅

및 실시간 혈당변이도 모니터링, ③ 전문 측정 프로토콜 기반 투명한 수면분석 정확도 제공, ④ 심박변이도·움직임·체온 등 다변인 활용 개인 맞춤화 스트레스 정량 측정 등을 설명하고 있음.

281) Park 등이 PLoS One에 발표한 연구(2015)와 Sung 등이 직업환경의학회지에 발표한 연구(2025)

데이터화 및 분석 등을 수행하였음. 경찰청 사업(297억 4,000만원)은 소방청 사업 대비 약 7.9배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두 직종 모두 야간·교대근무와 긴장된 업무 수행이라는 공통점을 고려할 때 향후 후속 개발 관련하여 부처 간 중복 투자 방지 및 성과 공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현행 성과지표는 과정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움.** 경찰청이 제출한 성과지표를 살펴보면 ① 경찰관 의료·건강 DB 구축(9만건), ② 경찰관 특화 코호트 구축(4,000건), ③ 플랫폼 서비스 만족도(75점), ④ 논문 영향력 지수, ⑤ 웨어러블 디바이스 공인인증 획득(3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는 R&D 연구 수행과정에서 산출되는 기술적 지표들에 해당하며, 이 지표들이 R&D 사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성과지표라 하더라도 사업을 통한 궁극적인 목표인 '경찰관 뇌 심혈관질환 예방 및 돌연사 감소'라는 성과의 달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워 보임.

□ 이에, 본 사업 종료 이후 경찰청에서 본 사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물을 도입할 경우, '경찰관 뇌 심혈관질환 조기발견'과 같은 실질적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경찰청에 따르면 2028년 경찰병원 의료연구복합센터로 통합

플랫폼을 이관하여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구체적인 이관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이관 이후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활용 주체와 체계적 관리·지원, 후속 연구 등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마련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추적·평가할 수 있는 장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종합하면, 본 사업의 주된 목표가 질환의 치료가 아닌 예측·예방인 만큼, ① 개발 기술·기기의 의료기기 성능 수준 인증 확보 및 상용화 계획의 구체성, ② 사업 성과물 도입 시 실질적인 효과성 분석을 통해 궁극적인 사업 목표 달성, ③장기적 유지관리 및 업그레이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민간 기술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 민간·공공에서 수집·구축된 유사 직군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찰관뿐만 아니라 야간근무 등 유사한 근무형태의 직업군에게도 동 사업의 성과가 확대·도입·상용화될 수 있도록 예측 모델 고도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미래치안기반조성(7132-311)

○ 국민안전산업펀드는 정책적 성격이 강하고 민간투자 유치가 쉽지 않은 분야이므로,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차별화된 추진전략 마련이 필요함. 아울러 기존 정책펀드와의 중복성 해소, 펀드 조성 일정의 현실화, 투자→실증→조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구축 등 사전 관리체계 강화가 요구됨.

(가) 개 요

□ 미래치안기반조성(7132-311) 사업은 정책연구용역, 국제치안산업대전, 직무발명 활성화, 치안산업 운영,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지원, 국민안전산업펀드 등 6개 세부사업을 통해 치안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산업 생태계를 지원하는 사업임.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22억 3,500만원 대비 52억 9,000만원 증액(236.6%)된 75억 2,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미래치안기반조성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미래치안기반조성	2,231	2,235	7,525	5,290	236.6

※자료: 경찰청

(나) 국민안전산업펀드 결성지연 우려 및 사업 타당성 검증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필요

□ ‘국민안전산업펀드(이하 안전산업펀드)’는 비교적 영세하고 자금 접근성이 낮은 국내 치안·재난안전 분야 산업의 현실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조성·운용하는 정책펀드[282](경찰청·행안부 공동)로, 투자 전문 운용사(Venture Capital, Accelerator)[283]의 역량을 활용하여 성장 잠재력은 높으나 자금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첨단기술 기반 기업의 기술·제품 고도화, 시장 개척 등 성장 촉진을 지원하려는 것임.

2026년도 예산안은 정책자금(정부)과 민간자금의 비율을 각 50%로 설정하여 연간 총 200억원 규모로 편성(경찰청 50억원, 행안부 50억원, 민간 100억원) 하였음.

<국민안전산업펀드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결성 목표	• **총 200억원(경찰청 50억원, 행정안전부 50억원, 민간 100억원)**
투자대상	• **첨단기술 기반 국민안전산업 분야 창업기업, 기술사업화 및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 ※ 기업 현황(‘23년) : △치안산업 14,189개 △재난안전산업 88,810개 △소방산업 9,212개
출자비율	• **정부 50%(경찰청 50억원, 행안부 50억원), 민간 50%(100억원)**

282)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나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자금 공급 촉진을 위해 정부 재정을 지분 투자하는 지원 방식의 재간접펀드를 의미함.

283) Venture Capital :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회사 / Accelerator :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등록한 법인

구 분	주요 내용
주목적투자비율	• 국민안전산업 분야에 60% 이상 투자, 나머지 40%는 기타 기업 투자
운용기간 등	• 8년(4년 투자, 4년 회수), 기준수익률: 3% 설정
운용주체	한국벤처투자를 통한 모펀드-자펀드 구조(Fund of Funds)

① 민간투자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안전산업펀드는 경찰청·행안부 공동 출자로 총 200억원 규모를 조성하며, 정부 50%, 민간 50%의 출자비율을 설정함. 정책적 목적이 강하고 시장성이 제한적인 치안산업 특성상 민간투자자의 수익성 기대는 낮아 실제 투자 유치가 쉽지 않을 수 있음.

<국민안전산업펀드의 민간투자 유치 제약요인>

구 분	내 용	민간투자 유치 영향
시장 특성	공공조달 중심, 제한적 민간시장	• 수익성 불확실 → 투자 기피
기준수익률	3%	• 타 정책펀드(1% 이하 66개) 대비 높으나 시장금리 수준
주목적투자비율	60%	• 정책 목적 강할수록 민간 참여 저조
투자 경험	치안산업 투자 운용사 부족	전문성 부족 → 참여 주저
Exit 경로	공공조달 연계 방안 불명확	투자 회수 불확실성 ↑

※ 자료: 경찰청

□ 국회예산정책처의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2024.11)에 따르면, 2021년 이후 결성된 중소기업모태펀드와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자펀드 중 기준수익률이 1% 이하인 자펀드가 중소기업모태펀드 46개, 농림수산식품모태펀드 2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주목적 투자대상에 대한 한정적인 투자환경을 감안하여 운용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준수익률을 낮게 설정한 것[284]으로, 정책적 목적이 강하고 시장성이 제한적인 분야일수록 민간 출자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줌.[285]

<치안산업 기업 규모별 분포 현황 (2023년 기준)>

기업 규모	기업 수(개)	비중(%)	평균 매출액(억원)	평균 종사자 수(명)	평균 자본금(억원)
대기업 (300명 이상)	368	2.6	445.0	846	268.2
중기업 (50~299명)	1,528	10.8	77.8	107	40.4
소기업 (50명 미만)	12,293	86.6	7.7	15	6.4
합계	14,189	100.0	26.6	46	16.9

*자료: 경찰청

284) 기준수익률(3%)을 초과 달성했을 때, 초과 달성분의 20%는 펀드운영사(Venture Capital)에게 인센티브로 지급, 나머지 80%는 투자비율에 맞게 배분(정부 40%, 민간 40%)

285)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치안산업 기업 14,189개 중 소기업(50명 미만)이 12,293개(86.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매출액은 7.7억원, 평균 자본금은 6.4억원에 불과하여 영세한 것으로 나타남.

<2023년 치안산업 매출액>

(단위: 억원)

합 계	치안 관련 제품 제조업	치안 관련 제품 도매 및 소매업	치안 관련 건축·시설 설계 및 공사업	치안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 및 정보제공업	치안 관련 단체	그 외 치안 관련 서비스업
378,687	90,794	19,014	32,216	39,252	3,297	194,113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실질적인 민간투자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출자의향서(LOI) 사전 확보, 치안산업 투자 경험 보유 운용사 발굴, 기준수익률 3% 수준에서의 실질적 민간 참여 의향 확인 등을 통해 민간자본 100억원 유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펀드 결성 실패 또는 투자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286]

286) 경찰청은 현재까지 동 펀드 운용의 구체적인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로, 한국벤처투자에서 작성한 공통 지침이 있으나, 한국벤처투자에서는 아직 모태펀드에 편입되지않은 만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임. 펀드 운용 관련 연간 시행계획은 올해(2026년) 11월 중 작성예정이라고 밝힘.

② 기존 정책펀드와의 중복성 검토 필요

□ 치안산업은 일반적인 벤처·중소기업 지원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 치안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공공목적을 가지며 주요 수요처가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라는 점에서 높은 공공성을 띠고 있으며, 기술개발 및 실증, 판로확보에 있어 장벽이 높고 민간투자의 수익 기대치가 낮아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또한 국내 치안시장은 공공조달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일반 민간시장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더욱이 우리나라의 정책펀드는 모펀드, 부처별 출자계정, 자펀드 등 다층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지원 목적과 투자대상이 중복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287]

국민안전산업펀드는 모펀드 내 출자계정 수준에서 조성될 예정이나, 한국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한국모태펀드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진계정·혁신모험계정·청년계정(창업기업 지원), 특허청 특허계정(지식재산 기반 기술사업화 기업 지원) 등과 투자 목적 및 지원대상이 일부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287) 정책펀드의 다층적 구조란 1단계 모펀드(한국벤처투자 등이 운용) → 2단계 부처별 출자계정(중기부 계정, 경찰청 계정 등) → 3단계 자펀드(민간 운용사가 실제 기업에 투자)로 이어지는 구조를 말함. 이러한 구조에서 각 부처가 유사한 목적(예: 창업기업 지원,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별도 계정을 만들면서 투자대상 기업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한국모태펀드 내 유사 계정 및 타 부처 정책펀드 현황>

부처/계정명	주 출자분야	중복 가능성
[한국모태펀드]		
중진계정	창업초기, 지방기업, 부품소재, M&A 등	창업초기 중복
혁신모험계정	청년창업기업	창업기업 중복
청년계정	창업초기기업·혁신성장기업	창업초기 중복
특허계정	특허기술사업화 기업	기술사업화 중복
연구개발특구계정	연구개발특구 소재 기업	기술기업 중복
[타 부처 펀드]		
산업부 공공기술 창업펀드	7년 이내 창업기업	창업기업 중복
산업부 CVC 스케일업 펀드	로봇, 첨단제조 등 첨단전략기술	첨단기술 중복
중기부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 등	AI·로봇 중복
과기부 AI 혁신펀드	AI기반 기술, AI 응용서비스 기업	AI 기술 중복

※자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총괄)」, 2024.11 재인용; 경찰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 그러나 경찰청의 사업계획서에는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펀드 운용방안이나 기존 펀드와의 차별화 전략이 제시되지 않았음. 치안분야 전문성을 갖춘 운용사 선정 기준, 공공조달 연계 방안, 기존 정책펀드와의 명확한 투자 대상 구분 등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펀드를 운용할 경우 실질적인 치안산업 육성 효과 없이 형식적인 펀드 운용에 그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경찰청은 기존 정책펀드와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야 함. 투자대상의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치안산업진흥법」 제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연계를 통해 펀드의 법적 성격, 투자 범위, 지원 대상, 운영체계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288]

③ 펀드 조성 일정의 현실성 및 성과관리 체계 검토 필요

□ 경찰청은 2026년부터 국민안전산업펀드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조성 일정의 현실적 검토가 필요함.

□ 경찰청은 한국벤처투자 자료를 근거로 운용사 선정 후 3개월, 자펀드 결성에 운용사 선정 후 6개월 등 총 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289] 치안산업 펀드는 첨단치안·재난안전 분야의 업력이 짧고 시장 평가가 불확실하여 민간자본 유치까지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특히, 치안산업진흥법 등 관련 근거법 심사와 연동될 경우 추진 속도가 늦어질 수 있으며, 정책 목적(공공성)과 시장성(수익성) 균형을 맞추는 약정 조건 협의에도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 조성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

288) 경찰청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3항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이는 출자 가능 근거일 뿐 치안산업 육성의 정책적 기반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보임.

289) 모태펀드 자펀드의 결성 기간은 2020~2023년까지 통상 9~10개월이 소요되었으나, 2024년에는 5개월 내로 결성.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는 운용사 선정 시 '민간 출자자 모집 실적'을 평가 요소로 포함하고, 결성 시한 연장 제한과 조기 결성 인센티브 강화 정책을 시행한 결과로 평가됨(<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24년 벤처투자 11.9조원·펀드결성 10.6조원」, 2025.2.11 발표>).

<경찰청 계획상 정책펀드 조성 소요기간>

단 계	소 요 기 간	비 고
운용사 선정	공고 후 3개월 내외	제안서 접수 및 심의
자펀드 결성	운용사 선정 후 6개월 내외	민간 출자자 모집 포함
총 소요기간	공고 후 8개월	일반 모태펀드 기준

*자료: 경찰청

□ 또한, 주목적 투자대상이 한정적인 환경에서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공공조달 연계 방안 구체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 펀드 투자기업의 제품에 대한 실증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실증 성공 시 수의계약 또는 우선구매, 혁신제품 지정 및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제 연계, 경찰청 R&D 과제와 펀드 투자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 실증 → 투자 → 조달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함.

□ 아울러 성과지표를 민간투자 유발액, 실증사업 참여 건수, 기술이전·사업화 성공률 등으로 맞춤형 설계하여, 단순 수익률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정책 목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범죄예방대응국]

(1)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1131-311)

○ 총포 등 소지허가자의 갱신대상 확대에 따라 2026년도 우편료 예산증액은 불가피하나, 단순히 우편 발송량 증가에 대응하는 일시적 예산편성에 머물지 않고, 연락처 관리체계 개선과 모바일 전자고지 등 온라인 통지기능 도입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우편료 절감 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 예산안 중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된 6억 1,100만원은 시스템 연구·개발 비용으로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 일반연구비(260-01)로 비목 변경이 필요함.

(가) 개 요

□ 동 사업은 범죄예방 기획·운영, 불법 풍속영업 규제, 민간 총포·화약 안전관리, 지역경찰운영 등 경찰의 전반적 범죄예방·대응 정책 추진에 있어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130억 8,800만원 대비 116억 1,700만원 증액(88.8%)된 247억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11,909	13,088	24,705	11,617	88.8

※ 자료: 경찰청

(나) 총포 등 소지 허가자 통지체계 개선을 통한 예산 효율화 필요

□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90]에 따라, 기존 총포류(엽총·권총·공기총 등)에만 적용되던 3년 주기 갱신제도가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이하 '무기류')까지 민간보유 무기류 전반으로 확대되었음.

이에 따라 갱신통지 대상 무기류는 약 10만 정에서 약 62만 정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허가 취소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의 효력을 갖춘 등기우편 송달 대상자 또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

<연도별 누적 소지 허가 현황>

(단위: 정)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말 기준)
총포	123,854	116,186	113,424	109,977	106,678	104,628
도검	77,770	80,945	82,305	82,159	66,032	65,674
분사기	482,913	480,048	479,625	461,277	438,026	414,490
전자충격기	39,464	39,898	39,935	39,773	38,297	36,925
석궁	858	845	827	799	774	761

29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2026. 1. 8.)
제16조(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갱신) ① 제12조에 따라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에 따라 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갱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통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총포소지 허가의 갱신예고)[291]에 따른 통지 또는 결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에 앞서 청문절차[292]를 통해 국민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절차적 조치로, 도달 효력을 갖춘 등기우편으로 행정통지를 송달하고, 소지 허가 미갱신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허가 취소나 형사처벌의 법적 효력 및 행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임.

□ 경찰청은 법률 개정으로 인한 통지 건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6년도 우편료 예산을 30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8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음(2025년 120백만원 → 2026년 308백만원). 그러나 현행 우편 송달 중심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예산만 증액하는 방식은 행정 및 예산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29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의2(총포소지허가의 갱신예고)** 총포소지허가를 한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총포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갱신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허가갱신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29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의 효력정지
2. 제45조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
3. 제46조제1항에 따른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 또는 화약류사용허가의 취소

<최근 5년간 우편료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1년	'22년	'23년	'25년 예산 본예산(A)	'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총포·화약 시스템 총기 소지자 등 통합 우편료	120	120	120	120	308	188	증액

※ 자료: 경찰청

□ 최근 5년간 경찰청은 연평균 약 12만 4천 건의 행정통지를 발송하며 매년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해 왔음. 2026년부터는 무기류 전반으로 갱신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발송 건수가 약 12.3만 건(전체 허가자 36.7만 명의 1/3년)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최근 5년간 우편물 발송 건수>

(단위: 건)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말 기준)
125,423	125,942	124,586	110,587	135,690	100,057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무기류 소지자 중 연락처가 최신 정보로 갱신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에는 수사 목적 외에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전화번호를 수집·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허가대상자 권익 보호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는 입장을 제시함.

□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293]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하위법령에 '갱신통지를 위한 연락처 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모바일 전자고지' 제도는 전자행정송달 방식으로 등기우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국민 동의가 전제되는 경우 활용 가능함. 경찰청이 최초 허가 또는 갱신 시 전자통지 동의서를 받아 동의자에 한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하고,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우편 발송하도록 개선할 경우, 우편료 절감과 행정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경찰청 및 타 행정기관 전자고지 활용 사례>

기 관	전자고지 내용	비 고
국세청	납세고지서 등을 카카오톡·문자로 발송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건강보험공단	보험료 납부고지, 자격득실 확인서 등	전자문서 발송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관련 각종 통지	전자문서 발송
지방자치단체	지방세 고지, 과태료 부과 등	전자고지 활용
경찰청	교통 범칙금·과태료 등	전자고지 활용

※ 자료: 경찰청

293)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한편, 경찰청은 2026년도에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294]을 추진할 계획으로, 시스템 개발 사항에 '모바일 통지' 기능을 추가할 경우 행정처리의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우편료 효과 절감도 예상됨.

□ 종합하면, 총포 등 소지허가 갱신대상 확대에 따른 우편료 증액은 불가피하나, 단순히 우편 발송 증가에 대응하는 일시적 예산 편성에 머물지 않고, 연락처 관리체계 개선과 온라인 갱신 및 모바일 전자고지 기능 도입을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294)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발 사업(2026년도 예산안 8억 1,300만원)은 현재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갱신 절차를 허가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주요 개선 내용은 ① 온라인 갱신 절차 기능 도입, ② 무기류 위·변조 분석 기능 강화, ③ 경찰청 내·외부망 연계, ④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및 웹브라우저 표준화 등임. 또한, 경찰청은 향후 모바일 플랫폼과 연계한 통지체계로의 단계적 전환을 추진할 계획으로, 온라인 갱신 기능 도입 시 모바일 통지 기능을 병행·개발할 경우 우편 발송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됨.

(다)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은 비목 변경 필요

□ ‘총포화약안전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사업’은 기존에 허가자가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했던 갱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시스템 개선 사업으로, △온라인 갱신 절차 기능 도입 △무기류 위·변조 분석 기능 강화 △경찰청 내·외부망 연계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 및 웹브라우저 표준화 등을 수행할 계획임.

□ 2026년 예산안에는 블록체인 기반 이미지 분석 솔루션, 데이터 암호화 소프트웨어 등 상용프로그램 구매비 2억 200만원(자산취득비), 기술료·제경비·직접인건비 등 전산개발 비용 6억 1,100만원(일반용역비) 등 총 8억 1,3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총포·도검·분사기 등 온라인 갱신 시스템 세부 산출내역>

(단위:백만원)

총포·도검·분사기 등 온라인 갱신 시스템 도입	813
○ 소프트웨어	202
- 블록체인기반 이미지 분석 솔루션	74
- ESB 솔루션 (에이전트,어댑터 포함) 등	112
○ 연구개발비	611
- 직접인건비	180
- 제경비	259
- 기술료 등	172

※ 자료: 경찰청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역비(210-14)는 기관의 일상적 업무 수행과정에서 단순 대행업무를 외부에 맡길 때 사용하는 경비로, 행사 운영·채용·영상 제작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반 업무지원에 한정됨.

□ 동 사업은 과학기술 기반 시스템 연구·개발(R&D) 성격의 사업으로, 시스템의 계획·설계·분석·조사·시험·기술개발·감리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기획재정부 예산집행지침상 일반연구비(260-01)로 편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일반용역비(210-14)로 편성된 예산 6억 1,100만원은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따라서 해당 사업의 용도에 부합하는 적정 비목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된 비목변경 (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비목변경(안)		변경액
		변경 전	변경 후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1131-311)	총포화약류 안전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일반용역비 (210-14)	일반연구비 (260-01)	611

[생활안전교통국]

(1) 사회적약자보호활동(1431-311)

○ 범죄피해평가제도는 제도의 필요성 및 만족도에 비해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지역별 편차도 일부 확인되므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시도청별 실태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능형 CCTV는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사회적약자보호활동 사업(1431-311)은 아동, 여성,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학교폭력, 실종사건, 가정폭력·아동학대 및 성범죄·스토킹 범죄에 대해 범죄예방 프로그램 및 교육 등을 제작·실시하고, 해당 업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며, 각 범죄담당 경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164억 9,100만원 대비 19억 7,100만원 증액(12.0%)된 184억 6,200만원이 편성되었음.

<사회적약자보호활동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4,941	16,491	18,462	1,971	12.0

※ 자료: 경찰청

(나) 범죄피해평가제도 활성화 및 지역별 격차 해소 방안 검토 필요

□ 경찰청의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강력범죄,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대상으로 외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신체적·심리적·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 평가한 뒤 수사관이 그 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함으로써 피해자의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의견이 가해자 구속영장 발부와 양형 등 형사 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제도임.[295]

2026년 예산안으로 2025년 예산 4억 8,900만원과 동일한 금액이 편성되어 있음.

<범죄유형별 범죄피해평가 실시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1~8월)
운영 관서		166	208	230	259	259	259
전체 건수		988	1,391	1,696	1,883	1,975	1,640
범죄 유형별 현황	성폭력	432	640	779	739	928	638
	폭력	332	374	372	461	457	428
	스토킹	-	-	210	245	285	327
	살인	65	86	101	100	100	63
	기타	159	291	234	338	205	184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해 왔으며 2023년부터 전국 모든

295) 도입 경과를 살펴보면, 경찰청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보장하고 조속한 심리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2016년 101개 경찰서에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 이후로 매년 운영 관서를 확대해 왔으며 2023년부터 전국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 중임.

경찰서('25년 기준 261개 관서)에서 운영 중임. 범죄피해평가 절차는 위기개입·상담·면담·보고서 작성 등 총 5단계로 진행되며, 구속 영장 청구 등을 위해 긴급한 경우 2023년부터 신속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296]

□ 경찰청에서 제출한 범죄피해평가제도 관련 자료를 살펴봤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범죄피해평가제도의 시행률이 매우 낮아 적극적인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최근 5년간 범죄피해평가 실시 건수를 살펴보면, 2021년 1,391건에서 2025년 1~8월 1,640건(연간 추정 2,460건)으로 증가하였으나, 강력범죄 대비 시행률은 2025년 8월 기준 0.6%에 불과하여 여전히 낮은 수준임.

296) 경찰청에서 2023년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96%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1%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평가제도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범죄피해평가 실시 건수 및 시행률>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8월
강력범죄*(건)	419,685	450,463	447,491	425,760	267,139
범죄피해평가(건)	1,391	1,696	1,883	1,975	1,640
시행률(%)	0.3	0.4	0.4	0.5	0.6

※ 자료: 경찰청

* 강력범죄 유형 :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 범죄피해평가제도는 피해자 만족도[297] 96%, 타 피해자 권유 의향 93%로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대비 시행률은 0.6%에 불과하여 제도의 확산이 미흡한 상황임.

□ 특히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강화로 구속영장 신청 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범죄피해평가 지원 건수가 급증하고 있음. 범죄피해평가는 기본평가(2~3주 소요)와 신속평가(3~5일 소요)로 구분되는데, 구속영장 청구 등 긴급한 경우 활용되는 신속평가의 경우 2023년 도입 이후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음.

297) 2023년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이용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의 95%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91%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범죄피해평가제도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제도의 필요성과 만족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범죄피해평가 유형별 실시 현황 및 예산>

(단위: 건, 만원)

구 분	평가유형	소요기간	단 가	2023년	2024년	2025년 1~8월	예상수요 (2026년)
기본평가	일반 사건	2~3주	18	1,743	1,803	1,454	2,000
신속평가	긴급 사건	3~5일	25	140	172	186	480
합계	-	-	-	1,883	1,975	1,640	2,480

주: 2026년 예상 수요는 2025년 1~8월 실적(1,640건)을 연간 환산한 수치
※ 자료: 경찰청

□ 2025년 1~8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2,480건의 수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기본평가 1,900건, 신속평가 420건 등 총 2,320건 분량의 예산만 편성되어 있음.

<범죄피해평가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건)

구 분	2025년 예산	2026년 정부안	예상 수요	차 이
전문가 수당	4.68	4.47	4.80	0.33
건수	2,300	2,320	2,480	160
기본평가	-	1,900	2,000	100
신속평가	-	420	480	60

※ 자료: 경찰청

□ 특히 신속평가의 경우 단가가 기본평가(18만원)보다 높은 25만원이고, 2023년 140건에서 2024년 172건으로 증가한 추세와 최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강화 분위기[298]를 고려할 때 2026년에는 약 48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안에는 420건 분량만 반영되어 있음.

둘째, 범죄피해평가 실시율이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실시율이 낮은 지역에 대한 점검 및 관리방안 수립이 필요함.

□ 2025년 1~8월 기준 지역별 시행률을 살펴보면, 전남(0.84%), 전북(0.82%), 세종(0.78%) 등이 높은 반면, 충북(0.45%), 부산(0.52%), 경기남부(0.54%) 등은 전국 평균(0.61%)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시행률이 가장 높은 전남(0.84%)과 가장 낮은 충북(0.45%) 간 격차는 약 1.9배에 달함.

<2021~2024년 지역별 범죄피해평가 시행률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8월)	2025년 (1~8월)
범 위	0.20~0.7	0.31~1.0	0.41~1.2	0.5~1.6	0.5~0.8
전국 평균	0.5	0.6	0.7	0.9	0.6
지역간 격차 (최고/최저)	3.5배	3.7배	3.0배	3.2배	1.9배

※ 2024년 최종 시행률은 강력범죄 전체 425,760건비 대비 1,975건 피해평가 실시(실시율0.5%)
※ 자료: 경찰청

□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간 격차(최고/최저)를 살펴보면 2021년

298) 최근 스토킹·교제폭력·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치안 수요가 연이어 증가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25.8월)」 발표, 구속 등 가해자 격리 강화 등 대응 고도화 방안 수립

3.5배, 2022년 3.7배, 2023년 3.0배, 2024년 3.2배로 지속적으로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임. 2025년에는 지역간 격차가 1.9배로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임.[299]

□ 이는 시·도경찰청별로 동 제도를 적용하고 관리함에 있어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제도의 혜택을 균질하게 받지 못하는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률이 낮은 지역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전문가 풀 확대, 제도 홍보 강화, 운영 매뉴얼 점검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025년 1~8월 강력범죄 대비 피해평가 건수>

(단위: 건, %)

지 역	강력범죄	범죄피해평가	시행률
전 남	8,134	68	0.84
전 북	7,822	64	0.82
세 종	1,548	12	0.78
경기북	15,751	121	0.77
인 천	15,261	110	0.72
울 산	5,052	34	0.67
제 주	4,568	30	0.66
강 원	6,950	45	0.65
충 남	9,708	63	0.65

299) 경찰청은 지역별 격차의 원인으로 범죄피해 건수 대비 피해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고, 전년도 실적 기반으로 예산이 배분되는 구조에서 시·도청별로 강력범죄·관계성범죄 등 범죄피해평가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워 예산집행률의 편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경찰청은 향후 예산 증액을 위한 노력과 함께 시·도청별 운영실적 점검·관리 및 내·외부 홍보 등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임.

지 역	강력범죄	범죄피해평가	시행률
경 북	11,947	78	0.65
서 울	50,790	322	0.63
광 주	8,352	50	0.60
대 전	8,644	49	0.57
대 구	13,379	74	0.55
경기남	51,393	275	0.54
경 남	18,189	97	0.53
부 산	21,446	111	0.52
충 북	8,205	37	0.45
전국 합계	267,139	1,640	0.61

※ 자료: 경찰청
＊ 강력범죄 유형 :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폭력

□ 종합해보면, 경찰청은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필요성 및 만족도에 비해 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지역별 편차가 다소 있으므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시·도청별 실태 파악을 위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능형 CCTV의 적극적 활용 및 지원 강화 필요

□ '지능형 CCTV 활용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사업은 가해자에게 주거지가 노출되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범죄피해자 주거지 인근에 위험을 자동 감지·경고하는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 2026년도 예산안은 내역사업인 '피해자보호활동'에 지능형 CCTV 1,100대 설치를 기준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16억 9,400만원이 편성됨.

<지능형 CCTV 사업 예산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예산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지능형 CCTV 활용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1,703	1,703	1,703	1,703	-	-

※ 자료: 경찰청

□ 최근 5년간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112신고가 급증하면서 안전조치 및 잠정조치 대상이 지속 증가하고 있음. 스토킹 범죄의 경우 2021년 14,509건에서 2025년 8월 27,603건(연간 추정 41,405건)으로 185% 급증하였고, 교제폭력은 2021년 57,305건에서 2025년 8월 68,324건(연간 추정 102,486건)으로 78% 증가함.

<최근 5년간 관계성범죄 112신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8월
스토킹	14,509	29,565	31,824	31,947	27,603
교제폭력	57,305	70,790	77,150	88,394	68,324
가정폭력	218,680	225,609	230,830	236,647	184,188

※ 자료: 경찰청

□ 안전조치 위험도 평가결과, '매우 높음' 등급이 2024년 1.8%에서 2025년 8월 2.8%로 증가하고, '높음' 등급도 30.2%에서 35.8%로 증가하여 고위험 피해자의 비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음.

<안전조치 위험도 등급별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4년	2025년 1~8월
매우 높음	547(1.8)	658(2.8)
높음	9,287(30.2)	8,510(35.8)
총 안전조치 건수	30,755(100.0)	23,743(100.0)

※ 자료: 경찰청

□ 안전조치 수단별 활용 현황을 보면 맞춤형 순찰(74.4%), 스마트워치(62.6%) 등 일부 수단에 편중되어 있고, CCTV(5.1%), 임시숙소(1.8%), 보호시설(0.4%) 등은 활용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안전조치 수단별 활용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8월
총 안전조치 건수	24,810	29,372	30,750	30,755	23,743
112등록	24,810 (100.0)	29,372 (100.0)	30,750 (100.0)	30,755 (100.0)	23,743 (100.0)
스마트워치	10,989 (44.3)	14,208 (48.4)	16,690 (54.3)	17,508 (56.9)	14,857 (62.6)
CCTV	907(3.7)	817(2.8)	984(3.2)	1,055(3.4)	1,204(5.1)
임시숙소	62(0.2)	185(0.6)	196(0.6)	306(1.0)	425(1.8)
보호시설	12(-)	19(-)	33(0.1)	49(0.2)	86(0.4)
맞춤형 순찰	18,639 (75.1)	21,485 (73.1)	22,247 (72.3)	22,388 (72.8)	17,671 (74.4)
신변 경호	17(0.1)	12(-)	115(0.4)	196(0.6)	332(1.4)
가해자 경고	1,824(7.4)	2,307(7.9)	2,684(8.7)	2,051(6.7)	1,643(6.9)
피해자 권고	2,845(11.5)	10,950 (37.3)	19,542 (63.6)	22,980 (74.7)	19,419 (81.8)

※ 자료: 경찰청

□ 그런데 경찰청에서 제출한 안전조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실질적 보호 효과가 높은 지능형 CCTV의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이 증가하는 수요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CCTV의 경우 2021년 907건에서 2025년 1~8월 1,204건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1~8월 실적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806건의 수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1,100건 지원예산만 편성되어 있음.

<지능형 CCTV 설치 수요 및 예산 현황>

(단위: 건, 억원)

구 분	2024년 예산	2025년 예산	2026년 정부안	예상 수요	차 이
설치 건수	1,100 (실적 1,055)	1,100 (1~8월 1,204)	1,100	1,806	706
예산액	16.94	16.94	16.94	27.81	10.87
집행액	16.94	13.62	-		
1대당 단가	154만원	154만원	154만원	154만원	-

주: 예상 수요는 2025년 1~8월 실적(1,204건)을 연간 환산한 수치
※ 자료: 경찰청

□ 최근 스토킹 및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급증하면서 지능형 CCTV 설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2025년 1~8월 기준 스토킹 신고는 전년 동기 대비 36.2%, 교제폭력은 22.1%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CCTV 설치도 전년 동기 대비 36.7% 증가함.

<2024~2025년 관계성범죄 신고현황>

구 분	'24.1~8월	'25.1~8월	증감율
총 계	226,830	280,115	23.5% ↑
스토킹	20,271	27,603	36.2% ↑
교제폭력	55,979	68,324	22.1% ↑
가정폭력	150,580	184,188	22.3% ↑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지능형 CCTV가 가해자를 자동 감지하여 피해자 스마트폰과 경찰서에 동시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으로, 2025년 1~8월 동안 14명 검거(구속 6명) 등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24년 11월에는 방화를 시도한 스토킹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등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설명함.

□ 그러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증가하는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전년과 동일한 1,100건 설치 예산(16.94억원)만 편성되어 있어, 실제 예상 수요(1,806건, 27.81억원)와 약 706건 분량(10.87억원)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지능형 CCTV 설치 수요 증가 추세를 고려한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안전조치 수단의 균형적 활용을 위한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도로교통공단출연금(1331-314)

○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은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과 일부 주민 반대 여론으로 사업 지연 가능성이 있으며, 일정 단축으로 토지매입과 건축이 동시에 진행되어 토지매입 지연 시 사업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경찰청은 계획 단계부터 사업 종료까지 면밀한 사업관리와 예산 집행을 추진하고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여 주민 우려를 해소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장치의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수용이 중요하므로, 최초 장착 대상자 발생 이전까지 설치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 사업(1331-314)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연구·방송·운전면허시험관리 및 기술개발 등을 위해 설립된 한국도로교통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본예산 편성액 1,397억 900만원 대비 35억 6,500만원(2.6%)이 감액된 1,361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음.

<도로교통공단출연(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도로교통공단출연 (출연금)	145,005	139,709	136,144	△3,565	△2.6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한편, 한국도로교통공단의 2026년도 지출 예산안은 4,472억 7,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4,400만원(3.4%)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26년도 자체수입 예산안은 3,111억 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82억 900만원(6.2%) 증액 편성되었음.

<2026년도 수입·지출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수 입	**432,628**	**447,272**	**14,644**	**3.4**
자체수입	292,919	311,128	18,209	6.2
도로교통공단출연 (출연금)	139,709	136,144	△3,565	△2.6
지 출	**432,628**	**447,272**	**14,644**	**3.4**
인건비	209,095	218,165	9,070	4.3
경상경비	4,363	4,491	128	2.9
사업비	214,333	219,604	5,271	2.5
예비비	4,837	5,012	175	3.6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나)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관련 면밀한 사업관리 및 지역사회 소통 필요

□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에[300] 따라 운전면허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전국 27개 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시에 추가로 시험장을 2028년까지 건립할 계획임.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현황>

(광역시 이상)

구 분	시험장 명칭	도로명 주소(요약)	준 공 일
서울특별시	강남운전면허시험장	강남구 테해란로	1980.06.04.
	강서운전면허시험장	강서구 남부순환로	1999.04.30.
	도봉운전면허시험장	노원구 동일로	1984.12.24.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마포구 월드컵로	1994.01.19.
부산광역시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남구 용호로	1990.03.31.
	북부운전면허시험장	사상구 사상로	1979.05.12.
대구광역시	대구운전면허시험장	북구 태암남로	1989.07.01.
인천광역시	인천운전면허시험장	남동구 아암대로	1998.07.27.
광주광역시	광주운전면허시험장(예정)	북구(예정)	2027년 예정
대전광역시	대전운전면허시험장	동구 산서로	1981.09.07.
울산광역시	울산운전면허시험장	울주군 상북면	1995.12.2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운전면허시험장(예정)	소담동(예정)	2028년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운전면허시험장	애월읍 평화로	1990.05.24.

※ 그 외 지역별 시험장: 경기(용인, 의정부, 안산), 충북(청주, 충주), 충남(예산), 강원(춘천, 강릉, 원주, 태백), 전북, 전남(전남, 광양), 경북(문경, 포항), 경남(마산)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300) 「도로교통법」 제147조(위임 및 위탁) ⑤시·도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운전면허와 관련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위임 및 위탁) ⑤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은 법 제14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발급
2. 법 제86조에 따른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운전면허시험장이 부재한 지역으로, 시민들은 인근 시험장까지 대중교통 이용 시 편도 2시간 내외를 이동하여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세종도시교통공사와 2024년 4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28년 세종운전면허시험장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301]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 업 개 요	조 감 도
▸ 대상부지: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32-81번지 일원 ▸ 부지면적 및 소유자: 17,804m^2(약5,386평)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로 면허시험장 기 지정 부지 ▸ 사업예산 및 기간: 457억 원('24년~'28년) ▸ 조직구성: 민원부, 면허 시험부 2개 부서로 2급지 인력 약 35명 계획 ▸ 주요시설: 행정 본관동(행정 및 민원업무), 기능시험동(1, 2종 기능시험 등) 및 공원 등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본 사업은 토지매입비 134억 원, 건축비 283억 원 등 총 457억원 규모로, 2026년에는 설계비 9억 원이 반영되어 향후 토지매입 및 건축공사 408억 원과 시험용 차량 및 면허 발급기 등 시험장 운영을 위한 예산 등 39억 원이 추가로 투입될 예정이며, 운영 인력 35명 규모의 2급지 시험장으로 운영될 계획임.[302]

301)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2024년 12월 기준) 세종시 인구 약 39만명, 자동차 등록대수 약 20만대. 세종시청 기준 인근 시험장까지 평균 이동거리 63.1km이며, 대전시험장(32.0km, 01:20), 청주시험장(36.5km, 02:15), 충주시험장(121.0km, 02:05), 예산시험장(63.0km, 02:30) 소요

<연차별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소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합 계		45,698	100	-	900	22,593	22,105
기본 계획수립		100	100	-	-		-
토지매입		13,409		-	-	13,409	-
건축	소 계	24,273	-	-	892	7,794	15,587
	설계비	892	-	-	892	-	
	건축비 등	23,381				7,794	15,587
기타	소 계	4,016			8	1,390	2,618
	부대비	1,589				530	1,059
	예비비	2,427			8	860	1,559
시험장 운영비		3,900	-	-	-	-	3900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최근 건설공사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이 행정처리 과정이나 토지매입 등에서 지연될 경우 공사비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큼.[303] 실제로 공단이 2025년 7월 준공한 tbn 충남교통방송 건립 사례에서도 당초 계획 대비 공사비가 2019년 당초 계획 260억원에서 2025년 준공 시점 기준 295억 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35억 원(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302) 1급지 시험장 13개소: 대전, 강남, 마산, 도봉, 대구, 안산, 남부, 북부, 서부, 인천, 전남, 강서, 용인. 2급지 시험장 14개소: 춘천, 의정부, 청주, 강릉, 예산, 전북, 제주, 충주, 울산, 원주, 태백, 문경, 포항, 광양(2급지 시험장은 1급지 시험장에 비해 인력과 시험 응시를 위한 시험용 차량이 적은 규모의 시험장)

303) 통계청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2010년=100 기준)는 2025년 1월 기준 130.1로 5년간 약 30.1% 상승. 철근·레미콘 등 자재비 상승과 운반비·노무비 등 간접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2025년 1월 월간 건설시장 동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tbn충남교통방송 건립 사업비 변동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당초 계획	2025년 준공	증감	%
합 계		26,040	29,558	+3,518	+13.5
토지매입		2,603	2,603	-	-
건 축	소 계	15,327	18,849	+3,522	+23.0
	건 축	13,285	15,945	+2,660	+20.0
	설 계	700	700	-	-
	감 리	1,342	2,204	+862	+64.2
부대비		1,445	1,445	-	-
장비구축 및 운영비		6,665	6,661	△4	△0.1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따라서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이 행정처리 과정이나 토지 매입 등 건축 계획 과정에서 지연될 경우,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향후 예산 증액 요구로 이어져 재정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있음.

□ 특히 2027년에 토지매입(134억원)과 건축(77억원)이 동시에 계획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대규모 건축사업은 토지 소유권 확보를 완료한 후 건축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동시 진행 구조는 토지매입 절차[304]가 지연될 경우 건축 일정 전체에 영향을 미쳐 사업 지연 및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실제로 본 사업은 초기 단계에서 이미 일정 지연이 발생한 바 있음.

30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등) ① 사업시행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 또는 원형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조성토지 또는 원형지의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작성된 공급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당초 계획되었던 설계비가 2025년 예산에 미반영되어 있는데, 공단은 2024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1억원을 편성하고 부지선정 이후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8월) 및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부지선정이 6개월 지연되어 2025년 2월에 완료되었음.

□ 공단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세종시와 협의하여 여러 후보지를 비교·분석하고 건립대상 부지를 재검토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2026년 정부 예산안에 설계비를 편성하게 되었고, 해당 부지는 행복도시 개발계획상 면허시설용도로 이미 지정되었다는 설명임.

□ 그러나 부지선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먼저 실시한 것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임.

□ 더욱이 지역 내 일부에서 사업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305] 주요 반대 사유는 시험장 면적이 협소하여 도로주행시험을 일반도로에서 실시할 수밖에 없고, 초보 운전자의 미숙한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인근 학교 밀집 지역의 보행자 안전이 우려된다는 것임.

□ 이에 대해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일반도로에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행코스를 도심 외곽으로 검토하고 있고,

305) 2025년 9월 8일 세종시의회 제1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 사업의 즉시 중단과 계획 재검토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됨.

전기차 및 차량 내부 안내방송 시스템 도입으로 소음·매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공공시설 건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민원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공공 건축사업의 특성상 사업 지연은 단순한 일정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 추가 증가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지연까지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본 사업은 총사업비 457억원이 전액 국비로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역 내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은 국가 재정의 비효율적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세종운전면허시험장 건립사업이 계획된 일정과 예산 범위 내에서 준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매입 절차를 조기에 완료하는 등 계획 단계부터 사업 종료까지 전 과정에 걸쳐 면밀한 사업관리와 예산집행을 하는 한편, 사업 추진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행코스 설계, 안전대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우려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지역 내 이의제기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 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 활동 강화 필요

□ 음주운전방지장치 설치는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재범자(2회 이상)가 면허를 재취득할 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안 19억 2,500만원 대비 전액 감액되어 미편성 되었음.

<음주운전방지장치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음주운전방지장치	-	1,925	-	△1,925	순감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음주운전은 여전히 교통사고 사망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윤창호법[306] 시행 이후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음주운전 재범률은 43.8% 수준으로 크게 줄지 않았음.

<음주운전 재범률>

연 도	2020	2021	2022	2023	2024	비 고
재범률(%)	45.4	44.5	42.2	42.3	43.8	-

※ 자료: 경찰청

30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2018.12.18. 시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및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개정되었으며, 또한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2019. 6. 25. 시행),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낮추고 결격 기간을 연장하는 등 벌칙 수준을 상향하였음.

□ 동 제도는 음주운전 재범자(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자)가 면허를 재취득할 때 일정 기간 차량에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것으로, 사후적 제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성격의 제도로,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여 규정치를 초과하면 엔진 시동을 차단하는 기계적 장치로, 음주 상황에서 차량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 관련 주요 내용>

설치대상	운영 형태	설치기간	교육 의무	미설치 차량 운전 시			장치손상
				행정 처분	결격 기간	형사 처벌	형사 처벌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의무	당해 음주운전 결격기간과 동일기간 (2(단순) ~ 5년 (뺑소니 등))	면허 취득 시 의무교육	필요적 취소	1년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3년 이하 3,000만원 이하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방지장치 작동 개요>

- 자동차에 음주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전자가 시동을 걸기 전에 운전자의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규정치를 넘는 경우엔 엔진을 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계적 장치.
-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음주 상황에서 차량의 시동을 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음주운전방지장치 작동 절차 >



① 점화 스위치 on → ② 장치 워밍업 → ③ 음주측정 → ④ 시동 → ⑤ 운전

※ 자료: 한국도로교통공단

□ 공단은 「도로교통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음주운전방지장치의 등록과 정상작동 여부 등의 검사를 경찰청으로부터 위탁[307] 받아 운영하며 장치의 등록과 관리는 공단이 담당하고 실체 부착은 공단이 인증한 제조업체가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음.

□ 동 제도가 2024년 10월부터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은 물론 제도 대상자조차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임.

□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주요 홍보 채널 어디에서도 '음주운전방지장치 제도'에 대한 구체적 안내가 게재되어 있지 않으며, 제도 시행의 목적, 장치의 기능, 설치 절차, 비용, 교육 이수 방법 등에 관한 설명이 전무한 실정으로, 제도 시행 초기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이에 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24년 10월) 이후 실제 음주운전방지장치를 설치해야 할 대상자는 최소 2년[308] 후인 2026년 10월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도 시행 초기 단계의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춰 2025년은 장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2026년 상반기까지 5개 권역의 음주운전방지장치 검사소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307)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등의 준수사항)**
① 제80조의2에 따라 음주운전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 사항을 시·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한 자는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등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08) 2024년 10월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단속된 사람(2회)의 결격기간(2년)이 지난 최초 시점은 2026년 10월로 예상

□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제도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제고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제도의 정착 여부는 장치의 기술적 완성도뿐 아니라 국민의 수용성과 이해도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임. 특히 음주운전방지장치는 제도 시행 초기 인지도가 낮아 대상자 간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최초 장착 대상자 발생 전까지 명확한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 홍보, 안내자료 배포 등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경비국]

(1) 대테러위기상황관리(2132-311)

○ AI 기반 사족보행로봇 도입은 활용 가능성, 기존 개발 로봇의 성능과 평가, 현장 투입 여건, 예산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검증·테스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비를 우선 도입하여 시범 운용을 통해 성능과 운용 효율성을 평가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대테러위기상황관리(2132-311) 사업은 경찰특공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민생치안 확립을 지원하고, 각종 유형의 재난에 활동하는 경찰관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 장비 지급 및 안전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339억 500만원 대비 18억 3,700만원 증액(5.4%)된 357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대테러위기상황관리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대테러위기상황관리	31,614	33,905	35,742	1,837	5.4

※자료: 경찰청

(나) 현장 투입 실효성과 활용 빈도를 고려한 AI 사족보행로봇 시범 도입 검토 필요

□ 'AI기반 사족보행로봇 도입' 사업은 인질·사제총기·폭발물 및 화생방 의심물질 발견 신고 등 고위험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에 앞서 로봇을 투입하여 내부 상황을 파악하고 위험 물질을 탐지·식별함으로써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고 신속한 현장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4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음.

□ 동 사업에서는 사족보행 다목적 전술로봇 6대를 도입하며, 1대당 약 4억원으로 편성됨. 각 로봇에는 360° 회전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 다양한 센서가 탑재되고, 폭발물과 화생방 탐지 장비를 장착할 수 있는 브라켓이 포함되어 현장 상황에 맞춰 활용되도록 계획됨. 이를 통해 고위험 사건 발생 시 경찰관 안전 확보와 신속한 현장대응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AI기반 사족보행로봇 도입 사업 예산안 세부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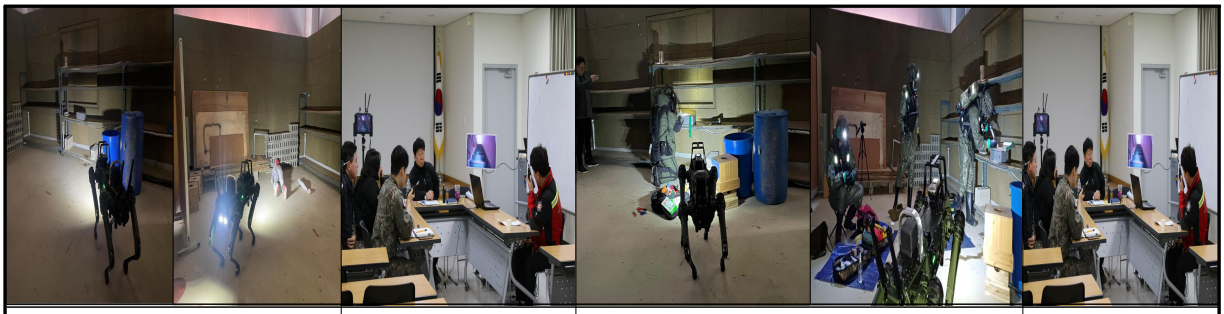
<자산취득비(430-01): ('25) 0 → ('26) 2,400백만원(순증)>

○ **사족보행로봇 구입: 2,400백만원 = 400백만원 × 6대**

- 로봇 구입(본체, 카메라, 센서, 컨트롤러 등 포함): 약 230~250백만원
- 통신장비(GCS): 약 120~180백만원
- 탐지장비 브라켓: 약 23백만원

※ 자료: 경찰청

[AI기반 사족보행로봇 도입 활용 등]



사족보행로봇 폭발물·화학시료 등 확인 실시간 영상 전송	현장지휘소에서 영상 확인 ⇨ 작전 수립	경찰 진입 폭발물 제거 또는 화학시료 채취 ⇨ 현장지휘소에 영상 전송	현장지휘소 실시간 영상 확인

□ 동 사업은 고위험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 투입 여건을 고려할 때 기대하는 신속 대응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신속 대응 실효성 관련하여 현장 투입의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면, 사족보행로봇 역시 전문 운용인력 확보, 장비 적재·수송, 조작요원 준비, 현장 도착 후 조립·셋업·통신점검 등 여러 절차로 인해 특공대와 유사한 투입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 경찰청의 운용계획에 따르면 운용요원이 컨트롤러로 원격 조정하고 송·수신장치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확인하는 구조로, 이는 현장 도착 후에야 작동 가능한 시스템임. 따라서 로봇 도입이 실제로 대응 시간을 단축하고 경찰관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운용 시나리오와 소요시간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고위험 사건 현장은 촉박하고 위험한 상황이므로, 로봇의 주행 가능 지형(계단, 경사, 장애물 등), 작동 가능 환경(온도, 습도, 방수 등), 배터리 지속시간, 통신 송·수신 거리 등 핵심 성능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특히 건물 내부, 지하, 협소한 공간 등 다양한 현장에서 통신 안정성과 장애물 극복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6대 도입을 진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전체 신고 건수 중 실제 로봇 투입이 필요한 사건 비율이 낮아 연간 실제 투입 건수는 제한적일 수 있음. 최근 3년간 총기·폭발물·화생방 신고 건수는 2023년 3,747건에서 2024년 437건, 2025년 6월 기준 176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임. 특히 화생방 의심 신고는 2023년 3,285건에서 2024년 83건으로 급감하여 신고 건수 변동성이 큼.

□ 로봇 투입이 필요한 사건의 비율은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연간 실제 투입 건수가 제한적일 수 있음. 경찰청은 6대를 전국 시·도청 또는 권역별로 배치할 계획이나, 대당 4억원의 고가 장비가 연간 극히 제한적인 횟수만 활용될 경우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최근 총기·폭발물신고 사건 현황>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총 계(건)	3,747	437	176
총 기	151	92	54
폭발물 신고	311	262	104
화생방 의심 신고	3,285	83	18

※ 자료: 경찰청

□ 종합하면, AI 기반 사족보행로봇 도입은 활용 가능성, 기존 로봇 성능, 현장 투입 여건, 예산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초기 단계에서는 최소 장비를 우선 도입하여 시범 운용을 실시하고, 성능과 운용 효율성을 평가한 뒤 단계적 확대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신규 장비 도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찰관 안전 확보, 현장대응 능력 향상 등의 성과목표와 함께 로봇 투입 횟수, 현장 도착 소요시간, 탐지 성과 등의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초기 시범 운용을 통해 이를 검증한 후 확대 도입과 배치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수사기획조정관]

(1) 수사지원(1231-311)

○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 일정과 예산 편성 간의 일시적 공백 발생에 따라, 향후 스캔용역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현장 스캔 장비 보급 확충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특근매식비는 인건비 보조적 성격상 근무형태나 인력운용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신규 증액 요구에 앞서 유사 사업의 집행 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예산 조정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수사지원(1231-311) 사업은 경찰법상 경찰의 직무로 규정된 '범죄수사활동'을 위하여 경찰의 수사업무에 필요한 물적, 인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2,203억 2,200만원 대비 95억 3,100만원이 증액(4.3%)된 2,298억 5,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수사지원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 감	
				B-A	(B-A)/A
수사 지원	229,278	220,322	229,853	9,531	4.3

※ 자료: 경찰청

(나)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스캔 용역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인프라 보강 필요

□ '차세대KICS 스캔시스템' 사업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시행('25.10.10)에 따른 스캔업무 효율화를 위한 스캔용역 사업 및 지역 경찰 스캐너 보급을 통해 차세대KICS 스캔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63억 6,300만원이 순증 편성되었음. 스캔용역비는 4,870백만원(113원×43,099,056면), 스캐너 구입비는 1,493백만원(730천원×2,045대)으로 구성됨.

<차세대KICS 스캔시스템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4년 예산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증 감
스캔 시스템	5,417	-	6,363	순증
- 일반용역비 (210-14)	1,359	-	4,870	순증
- 자산취득비 (430-01)	4,058	-	1,493	순증

※ 자료: 경찰청

□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제도는 수사·기소·재판·집행 등 형사절차 전 단계를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신속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2024년 9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통하였으며, 2025년 10월부터는 법무부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과 연계하여 완전 전자화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그러나 동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라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도의 조기 안착 및 안정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스캔시스템 사업은 「형사절차전자문서법」 제정('21.10)에 따라 사건기록물 등을 전자문서로 변환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2024년 스캔용역비 13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법 시행 시기 지연으로 불용되었고, 2025년도 본예산에는 반영되지 않음. 이로 인해 법 시행 일정에 맞춘 사건기록 전자화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음.

□ 경찰청 계획에 따르면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은 2025년 11월로 예정되어 있어, 법 시행('25.10.10) 이후에야 용역사업 준비가 본격화될 전망임. 이에 따라 실제 용역 개시 시점('26.2월)까지 약 4개월의 공백이 발생하여 시행 초기 스캔업무가 수사관에게 집중될 우려가 있음.

<차세대KICS 스캔시스템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일상감사 등 내부 검토	⇨	사업자 선정 (조달절차)	⇨	용역사업 실시
'25. 11.		'25. 12.		'25. 1.		'26. 2

□ 법원행정처가 “10월 10일 이후 수사를 개시한 사건부터 전자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고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시행 초기 스캔 적체 및 수사지연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경찰청은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계약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거나, 과도기 동안의 수사현장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법정 의무사항이 수반되는 사업은 시행시점을 고려한 선제적 사업관리가 요구됨.

□ 둘째, 민원인 등이 제출한 실물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환하기 위한 장비인 스캐너는 2024년 수사팀당 1대 보급되었고 2026년도 예산안에는 지역경찰관서당 1대 보급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

□ 그러나 법 시행 이전에 시행된 전자기록 시범 유통 과정과 현장 의견 등을 통해 현장 수사관들은 제도변화에 따른 스캔 업무의 부담감을 느끼는 동시에 전자화 과정에서 스캔 장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309]

309) 뉴시스, “인력 부족한데, 수백 장 일일이 스캔까지”…경찰 수사서류 '전산화'에 우려도(2025.09.05.)

□ 특히, 경찰청은 2015년부터 '수사부서 사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사무공간과 조사공간을 분리하기 위해 경찰관서마다 조사실을 설치·운영 중이나, 실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부분의 조사가 이루어지는 조사실에는 스캐너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조사실에 스캐너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수사관은 피조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즉시 스캔하지 못하고 조사실 밖 사무실로 이동해 별도로 스캔을 수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사의 흐름이 중단되고 피조사자가 조사실에서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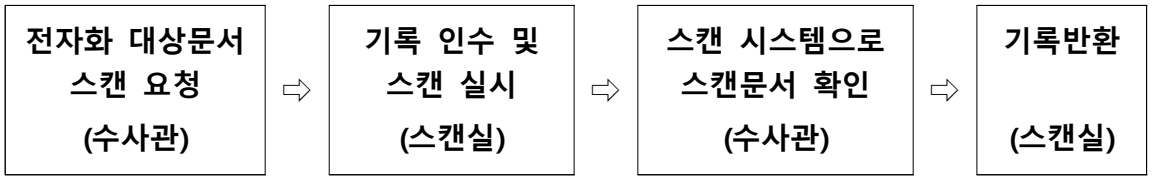
□ 이는 형사절차 전자화 제도의 취지인 "형사절차의 신속성과 국민 편의성 제고"와 다소 괴리가 있으며, 민원인이 조사 중 직접 제출한 자료를 즉시 전자화할 수 없는 상황은 조사시간 지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경찰청은 조사실 등 실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스캐너를 추가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수사 효율성 및 국민 편의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스캔용역사업은 고소장 등 실물 서류를 전문 용역인력이 전담 처리함으로써 수사관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임. 경찰청은 스캔실이 설치된 전국 152개 관서(시·도청 15개, 경찰서 137개)에만

용역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며, 평일 09~18시 상시근무체계로 운영하고 야간·휴일(18~09시) 시간대에는 수사관이 보완 수행하는 이중체계를 유지할 예정임.

<스캔용역(스캔실) 운영 흐름도>



※ 자료: 경찰청

□ 그러나 스캔실 설치대상 관서별 공간 확보, 보안시설, 네트워크 구축 등 물리적 인프라 준비상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며, 경찰청은 스캔 장소는 각 관서 실정에 따라 상이(별도 스캔실 또는 수사지원팀 사무실 등)하여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스캔 서류에는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법 시행 전까지 관서별 보안등급 부여, 출입통제, 용역인력 관리 방안 등 세부 운영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외부 용역인력 투입에 따른 정보보호 및 수사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병행하고, 인력·장비·네트워크 등 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여 형사사법절차 완전 전자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가 요구됨.

(다) 수사경찰특근매식비 증액 필요성 재검토 필요

□ 수사경찰 특근매식비는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부서 근무자 중 비현업 근무자(12,892명)가 초과근무 시 사용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대비 5억 4,200만원(14.3%) 증액된 43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수사경찰특근매식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

구 분	'24년 예산	'24년 결산	'25년 예산(A)	'25년 집행 (8월말)	'2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수사경찰 특근매식비	3,790	2,820	3,790	3,247	4,332	542	14.3

※ 수사경찰특근매식비는 2025년부터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1231-313)」에서 「수사지원(1231-311)」 사업으로 이관(3,790백만원)

※ 자료: 경찰청

□ 경찰청은 2025년 특근매식비 단가인상(7천원→9천원, 28.6%↑) 및 사업이관으로 인한 지급대상 증가[310] 등에 따라 특근매식비 소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원활한 수사업무 지원을 위해 2026년도에는 5억 4,200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함.[311]

□ 그러나 경찰청 전체 세부사업별 특근매식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업에서 특근매식비 불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10) 경찰청은 2025년부터 형사국 소관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수사역량강화(1231-313)'에서 '수사지원(1231-311)'으로 사업이 이관되면서 수사지원 특근매식비 지급 대상이 형사국 소관부서 근무자에서 국수본 소속 전 수사부서 근무자로 확대(약 6,000명 -> 약 13,000명)됨에 따라 집행액(집행률)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설명함.

311) 2026년도 예산 산출근거는 9천원(단가) × 12,892명(대상인원) × 37회(연간 특근횟수) = 43억 3,200만원으로, 2025년 대비 단가 인상분(28.6%)의 절반 수준(14.3%)을 인상한 것임.

<수사경찰특근매식비 연도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예 산(A)	집 행(B)	불 용 액 (이·전용 포함)	집 행 률(B/A)
2022년	4,738	2,880	1,858 (338)	60.8
2023년	4,738	3,542	1,196 (857)	74.8
2024년	3,790	2,820	970 (446)	74.4
2025년(8월말)	3,790	3,247	-	85.7

※ 자료: 경찰청

□ 2022년의 경우 예산 47억 3,800만원 중 28억 8,000만원만 집행되어 집행률이 60.8%에 불과하였으며, 2023년 74.8%, 2024년 74.4%로 최근 3개년 평균 집행률은 약 70% 수준임.

□ 특히 2024년의 경우 예산 37억 9,000만원 중 28억 2,000만원만 집행되어 약 9억 7,000만원(25.6%)이 이·전용 또는 불용되었으며, 이는 2026년도 증액 요구액 5억 4,200만원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규모임.

□ 더욱이 경찰청 전체 세부사업별 특근매식비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 사업에서 특근매식비 불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경찰청 주요 세부사업별 특근매식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 사업명)	'22년			'23년			24년		
	예 산	집 행	불용률	예 산	집 행	불용률	예 산	집 행	불용률
형사·교통·여성청소년 범죄 수사 역량 강화[1]	4,400	2,880	34.5	3,881	3,542	8.7	3,371	2,820	16.3
범죄 예방 및 생활 질서 유지	411	231	43.9	211	178	15.5	1,075	914	15.0
사회적 약자 보호 활동	256	99	61.2	259	118	54.4	259	86	66.7
교통 안전 활동	9,729	9,511	2.2	9,650	9,167	5.0	9,772	9,149	6.4
경비 경찰 활동	14,269	14,060	1.5	15,868	15,635	1.5	17,751	17,537	1.2
신임 순경 교육	2,127	1,290	39.4	30	17	44.6	18	18	0.0
수사 경찰 전문 교육	6	1	84.5	6	1	78.3	6	0	93.1

※ 주1: 수사경찰특근매식비는 2025년부터 '수사지원' 사업으로 편성(3,790백만원)

※ 자료: 경찰청

<세부사업별 특근매식비 불용률이 큰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예 산	집 행	불용액	불용률	예 산	집 행	불용액	불용률
수사경찰 전문교육	6	1	5	78.3	6	0	6	93.1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259	118	141	54.4	259	86	173	66.7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 유지	211	178	33	15.5	1,075	914	161	15.0
형사·교통·여성 청소년 범죄수사 역량강화 (수사경찰 특근매식비)	3,881	3,542	339	8.7	3,371	2,820	551	16.3

※ 2026년도 수사경찰특근매식비 543백만원 증액 요구
※ 자료: 경찰청

□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하면 수사경찰 전문교육은 불용률이 78.3%에서 93.1%로, 사회적약자보호활동은 54.4%에서 66.7%로 증가 되었으며, 수사경찰 특근매식비도 8.7%에서 16.3%로 불용률이 증가하였음.

□ 경찰청 전체의 특근매식비 예산 운용현황을 보면, 일부 사업에서는 대규모 불용이 발생하는 반면 다른 사업에서는 증액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사업 간 예산 배분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경찰청은 특근매식비가 인건비 보조적 성격상 근무형태나 인력운용에 따라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 증액 요구에 앞서 사업 간 예산 조정을 우선 검토하고, 그럼에도 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증액을 검토하는 것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형사국】

(1)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1231-313)

○ 경찰청은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1231-313) 사업의 폴리그래프의 단가를 과학수사 역량강화(1231-314) 사업의 거짓말 탐지기와 동일하게 실제 가격을 예산 단가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과학수사 역량강화(1231-314) 사업의 내역사업인 거짓말 탐지의 명칭을 폴리그래프와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1231-313)는 강력범죄,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마약범죄 등의 수사활동을 지원하고, 공정한 사고처리를 위한 현장 수사장비 지원으로 교통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196억 6,000만원 대비 4,000만원 감액(0.2%)된 19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음.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본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22,623	19,660	19,620	△40	△0.2
· 형사활동 지원	4,260	2,078	2,891	813	39.1
· 사회적약자대상범죄 전담수사팀역량강화	3,665	3,776	2,095	△1,681	△44.5
·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1,580	2,598	2,332	△266	△10.2
· 사회적약자대상 범죄 피해자 지원	2,720	2,598	2,332	△266	△10.2
· 마약조직범죄 수사활동 지원	3,594	8,364	9,458	1,094	13.1
· 과학분석을 통한 정밀한 교통사고조사	2,824	1,680	1,680	-	-
· 교통사고조사 운영	3,980	1,164	1,164	-	-

※자료: 경찰청

(나) 폴리그래프 예산 단가를 조정할 필요

□ 내역사업인 과학분석을 통한 정밀한 교통사고 조사의 내내역사업인 교통조사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2억 4천만원이 편성됨. 이 중 폴리그래프 검사실 운영에 6,500만원, 폴리그래프 교체에 1억 7,500만원이 편성됨.

<내내역사업인 교통사고 폴리그래프 예산의 세부 내역>

② 교통조사 폴리그래프: (2025 본예산) 240백만원 → (2026 요구) 240백만원, 전년동 ○ 폴리그래프 검사실 운영: 6,500만원 = 21개소(검사실 전체 개소) × 258,000원 × 12개월 ○ 폴리그래프 노후교체: 1억 7,500만원 = 5개(연간 교체대수) × 3,500만원

□ 폴리그래프 단가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인 3,50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 집행과정에서는 인상된 가격인 4,300만원을 기준으로 구매하여 총 4대를 구매하고 있음. 경찰청은 2026년 예산을 통해서도 4대를 구매할 예정임.

○ 별도의 세부사업인 과학수사 역량강화(1231-314)의 내내역사업인 거짓말탐지 기법에 따라 구매하고 있는 동일한 폴리그래프(거짓말 탐지기)의 예산 단가가 2024년부터 4,2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을 고려하여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 강화(1231-313) 사업의 폴리그래프 예산 단가를 4,250만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과학수사역량강화(1231-314)의 내내역사업 거짓말탐지기법의 세부 내역>

14. 거짓말탐지 기법 : (2025) 638백만원 → (2026) 638백만원, 전년동
- 검사실 개보수: (2025) 165백만원→ (2026) 165백만원(3개소×55백만원), 전년동
검사기 보급: (2025) 340백만원 → (2026) 340백만원(8대×42.5백만원), 전년동
검사기 유지보수: (2025) 133백만원 → (2026) 133백만원(1년×133백만원), 전년동

○ 위의 과학수사역량강화(1231-314) 사업의 예산안의 세부내역에서는 거짓말탐지 기법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형사·교통·여성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사업의 폴리그래프와 동일하므로 거짓말탐지와 폴리그래프를 동일한 용어로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과학수사역량강화(1231-314)

○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는 우편통지 비율이 51%로 높아 예산이 전년 대비 130.4% 급증하고 있는데, 법령상 문자통지와 우편통지가 동등한 통지 수단으로 인정되고 건당 비용이 4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우편통지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여 예산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과학수사역량강화(1231-314) 사업은 일선 수사경찰의 신속·정확한 범죄 해결을 위해 필요한 범인 검거, 증거 수집 등 첨단 과학수사 장비를 보급하고 및 기법을 도입·운영하는 사업으로,

2026년 예산안은 2025년 예산 442억 5,200만원 대비 61억 5,100만원이 증액(13.9%)된 504억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

<과학수사역량강화 사업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 결산	2025 예산(A)	2026 예산안(B)	증감	
				B-A	(B-A)/A
과학수사역량강화	37,802	44,252	50,403	6,151	13.9

※자료: 경찰청

(나)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증액): 우편통지 비율 절감 통한 예산 효율화 필요

□ 과학수사역량강화의 내역사업인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 사업은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24.1.)에 따라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회 목적 등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업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가 대행하는 것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6억 2,600만원(130.4%) 증액된 46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 예산안>

구 분	'25년 예산(A)	'26년 예산안(B)	증감(B-A)	증감률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	2,014	4,640	2,626	130.4%

※ 자료: 경찰청

□ 「전기통신사업법」[312]은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을 국민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경찰청은 연간 200만건 이상의 통지 의무 부과에 따른 수사관 업무 가중을 고려하여 2024년 9월부터 KAIT에 통지업무를 대행하고 있음.

312)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사실의 통지) ① 제83조제3항에 따라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검사, 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의 대상이 된 당사자에게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메신저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KAIT는 정보주체의 현재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여 1단계 문자 통지를 실시하고, 번호 미확인 또는 문자 실패 시 주소지 기반으로 2단계 우편(등기)통지를 실시하고 있음.[313] 대행 수수료 단가는 KAIT의 시스템 구축 선투자 비용과 운영비, 문자·우편 발송 원가를 포함하여 산정하되, 2024년 4월 통지대행 예상 건수 감소(연 432만건 → 377만건) 및 시스템 운영 개시 시점 연기(6월→9월) 등을 고려하여 2024년 7월 단가를 재산정하였음.[314]

313) KAIT는 정보주체의 현재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하여 1단계 문자통지를 실시하고, ① 휴대전화번호 값이 없는 경우, ② 통신사 회선 확인 결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③ 문자 발송 후 5시간 내 단말기 도달(수신) 확인이 안 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2단계 우편(등기)통지를 실시하고 있음.

314) KAIT(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시스템 구축비 38.44억원은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업무 수행을 위해 선투자한 비용으로, 개발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2024년 10억 300만원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7억 2,800만원씩 회수하는 계획을 전제로 KAIT는 통신사 및 시스템 구축사와 함께 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당초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통지대행 시스템 구축비용 회수계획>

(단위: 백만원, 만건)

구 분		총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KAIT 등 구축비 회수 계획		3,844	1,003	728	728	728	728
당초 예상 통지량		1,858만건	130만건	432만건	432만건	432만건	432만건
산출 단가(원) (구축비+운영비+발송실비 ÷ 통지건수)	문자 (80%)	**390.5**	1004.9	344.4	344.4	344.4	344.4
	우편 (20%)	**3,210.5**	3824.9	3164.4	3164.4	3164.4	3164.4

※ 자료: 경찰청

당초 단가는 ① 시스템 개발 비용(38.44억원), ② 통지대행 운영비(연 5억원, 5년간 25억원), ③ 발송 원가(113.37억원)를 합산한 금액(177.3억원)을 ④ 예상 통지대행 총 건수(18,585,353건, 문자(80%) 14,868,282건 / 우편(20%) 3,717,071건)로 나누어 산정하였음{(①+②+③)÷④}.

그러나 2024년 4월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가 당초 예상(연 432만건)보다 감소(연 377만건)하고 시스템 운영 개시 시점이 연기(6월 → 9월)됨에 따라, KAIT의 투자비 회수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자 2024년 7월 단가를 재산정하여 문자 930원, 우편 3,750원으로 인상되었음.

<통지대행 수수료 단가 변화>

구 분	발송 원가	당초 단가('24.1)	인상 단가('24.7)	인 상 액	인 상 률
문자 통지	50원	390원	930원	540원	138%
우편 통지	2,850원	3,210원	3,750원	540원	17%

※ 자료: 경찰청

□ 2025년도 예산은 시행 초기로 별도 통계 없이 2022년 통신이용자 정보제공 건수를 기준으로 문자:우편 = 87:13 비율로 산정하였으나, 2025년 1월~9월 실제 운영 결과 문자 42.7%, 우편 57.3%로 나타나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 실제 운영 실적을 반영하여 문자 43%, 우편 51%로 산정하였음.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 예산안 세부내역>

'25년 산출내역: 2,014백만원

① 문자통지대행: 903백만원 (2,315,511건 × 390원)

② 우편통지대행: 1,111백만원 (345,996건 × 3,210원)

※ '25년 통신이용자정보 취득 예상 건수 2,661,507건 중 문자통지 비율 87%, 우편통지 비율 13%로 산정

'26년 산출내역: 4,640백만원

① 문자통지대행: 802백만원 (862,858건 × 930원)

② 우편통지대행: 3,838백만원 (1,023,390건 × 3,750원)

※ '26년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예상 건수 2,006,647건 중 문자통지(43%) 862,858건, 우편통지(51%) 1,023,390건으로 예상

<예산안 책정시 문자·우편 비율 변화>

구 분	'25년 예산 산정 시	'25년 실제 운영(1~9월)	'26년 예산안
문자통지 비율	87%	42.7% (596,736건)	43%
우편통지 비율	13%	57.3% (798,902건)	51%

※ 자료: 경찰청

□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는 우편통지 비율이 51%로 높아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데, 법령상 문자통지가 허용되고 건당 비용이 4배 저렴함에도 우편통지 비율이 높은 상황을 개선하여 예산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통신이용자정보제공 통지대행 수수료는 2025년 20억 1,400만원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46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30.4% 증가하는데, 이는 단가인상과 우편통지 비율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임.[315] 특히 우편통지 비율이 당초 예상(13%)을 크게 상회하여 2025년 실제 운영 결과 57.3%(1월~9월 기준 798,902건), 2026년 예산안 기준 51%에 달하고 있어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찰청은 우편통지 비율이 당초 예상(13%) 대비 증가한 사유에 대해 ① 통신사 회선 확인 비대상의 경우(13.3%) ② 통신사 회선

315) 2024년 7월 단가 인상으로 문자통지는 138%(390원 → 930원), 우편통지는 17%(3,210원 → 3,750원) 증가하고, 우편통지 비율이 당초 예상(13~20%)을 크게 상회하여 51%에 달한다는 점임. 이로 인해 우편통지 예산이 전체의 82.7%를 차지하고 있음.

확인 실패(약 35.2%), ③ 문자 발송 실패(약 19.7%, 문자메시지 발송 후 5시간 내 단말기 수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음.[316]

□ 그러나 이러한 사유 중 일정 부분은 시스템 개선이나 통신사 연계 절차의 보완 등을 통해 해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경찰청은 통신사 회선 확인 대상 확대, 문자 도달 확인 기간 조정, 대상자별 통합 통지기능 개발 등 통지대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체 통지대상 중 문자통지로 전환 가능한 대상을 최대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317]

□ 한편, KAIT의 시스템 구축비 38억 4,400만원은 통지 건수에 비례하여 회수되는 구조로 단가에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KAIT는 통지 건수가 감소하면 건당 단가를 인상하여 투자비를

316) ① 통신사 회선 확인 비대상(약 13.3%)은 휴대전화번호 값이 없는 유형(예: 범행에 사용된 IP 주소 가입자 인적사항 조회)의 경우 문자통지 절차 없이 우편통지로 진행,
② 통신사 회선 확인 실패(약 35.2%): 제공된 휴대전화번호가 해지 등으로 현재 사용 중인 회선이 아닌 경우
③ 문자 발송 실패(약 19.7%): 문자메시지 발송 후 5시간 내 단말기 도달 수신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로 단말 미지원, 전송시간 초과, 단말기 일시정지 등

317) 참고로, 경찰청은 현재 문자통지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검토 중임.
첫째, 통신사 회선 확인 대상 확대를 통해 KAIT와 유·무선 사업자 간 가입 정보 조회 기능을 보완하여, 휴대전화번호 값이 없거나 변경된 경우에도 인적사항을 토대로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번호를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통해 전체 통지대상 중 '통신사 회선 확인 비대상(약 13.3%)'과 '통신사 회선 확인 실패(약 35.2%)' 중 일부를 문자통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둘째, 문자 도달 확인 기간 확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는 문자통지 실패 판단 기준이 '5시간 내 도달'로 제한되어 있으나, 이를 '24시간 내 도달'로 조정하고 통지 시점을 제공 시점으로부터 '25일째'에서 '24일째'로 변경하면, 법상 '30일 내 통지' 요건을 충족하면서 문자 도달 확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문자 발송 실패(약 19.7%) 중 전송시간 초과 등 사유로 우편통지로 전환된 일부 건을 문자통지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셋째, 대상자별 통합 통지 기능 개발을 통해 복수의 통신사업자로부터 동일인에 대한 정보가 제공된 경우, 개별 발송되던 통지를 통합 처리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는 사업자별 기준으로 통지되어 동일 수사 건에 대해 여러 건의 중복 통지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통합하면 중복 메시지 차단으로 인한 문자 발송 실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회수하려 하고, 통지 건수가 증가하면 수사기관의 예산편성 범위를 벗어나게 되므로 통지 건수 변동 리스크가 경찰청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음.

<'26년 예산안 기준 통지대행 유형별 단가 집행 예상>

구 분		단가 (A + B)	발송원가 (A)	운영비+구축비 (B)
문자통지(43%) (862,858건)	건별	930원	50원	880원
	총액	802백만원	43백만원	759백만원
우편통지(51%) (1,023,390건)	건별	3,750원	2,850원	900원
	총액	3,838백만원	2,917백만원	921백만원
계		4,640백만원	2,960백만원	1,680백만원

※ 자료: 경찰청

□ 문자통지 비율을 확대함으로써 평균 발송 원가를 낮추게 될 경우 향후 통지 건수에 증감이 있더라도 수사기관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318], 문자통지 건수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노력과 함께 이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단가 산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협상할 필요가 있음.[319]

318) ① 문자통지 비율 확대 시 △통지 건수가 증가하더라도 예산 범위(4,640백만원) 내에서 집행 가능 △초과 회수된 운영비+구축비(164백만원 = 1,844백만원 - 1,680백만원)에 대한 단가 인하(약 79원 = 164백만원 ÷ 2,074,843건) 협상 가능함.
② 반면, △통지 건수가 감소하더라도, 예산 범위(4,640백만원) 내에서 집행 가능 △운영비+구축비 부족분(171백만원 = 1,680백만원 - 1,509백만원)에 대해 단가를 인상(약 101원 = 171백만원 ÷ 1,697,623건) 하더라도 총 대행비용은 3,838백만원(3,667백만원 + 171백만원)이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여 KAIT 투자비 회수 계획에는 지장이 없음.

319) 경찰청에 따르면 KAIT는 2025년까지 구축비용 중 18억 9,800만원(49.5%)을 회수할 예정이고, 2026~2028년 동안 나머지 비용을 회수할 예정임. 투자비 회수 완료 후에는 구축비용 부분을 제외한 통지 발송원가와 연간 운영비(5억원)를 기준으로 통지대행 수수료를 문자 315원(현재 930원 대비 66.1% 감소), 우편 3,115원(현재 3,750원 대비 17% 감소) 수준으로 재산정하기 위해 수수료 단가 재협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문자통지 비율 확대(10%) 시 통지 건수 증감(±10%) 대응 시나리오>

구 분		계	문자 통지(53%)	우편 통지(41%)
통지 건수 증가 (+10%)	통지대행 건수	2,074,873건	1,169,875건	904,998건
	발송원가	2,638백만원	59백만원	2,579백만원
	운영비+구축비	1,844백만원	1,029백만원	815백만원
	소계	**4,482백만원**	1,088백만원	3,394백만원
통지 건수 감소 (△10%)	통지대행 건수	1,697,623건	957,170건	740,453건
	발송원가	2,158백만원	48백만원	2,110백만원
	운영비+구축비	1,509백만원	842백만원	667백만원
	총액	**3,667백만원**	2,917백만원	921백만원

※ 자료: 경찰청

〔소방청 소관〕

1.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2026년도 소방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52억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6억원이 증액(13.0%)됨.

(단위: 억원)

구 분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46	52	6	13.0
o 일반회계	46	52	6	13.0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2026년도 소방청 소관 세출예산안은 3,295억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6억원이 감액(0.5%)됨.

(단위: 억원)

구 분	'25예산		'26예산안 (B)	증 감 (B-A)	%
	당초(A)	추경			
합 계	3,311	3,456	3,295	△16	△0.5
o 인 건 비	754	754	798	44	5.8
o 기본경비	105	105	108	3	2.9
o 주요사업비	2,452	2,597	2,388	△64	△2.6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2025년도 예산 대비 5.8% 증액된 798억원이 편성되었고, 기본경비는 2.9% 증액된 108억원이 편성되었음.

사업비는 위험물 사고 예방·대응력 강화 및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위험물 시설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R&D)’에 35억원, 철도 차량·시설 관련 화재에 신속 대응을 위한 ‘철도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철도 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대응 체계 개발(R&D)’ 18억원, 기후위기형 복합재난에 첨단 소방기술 확보를 위한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R&D)’ 38억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를 위한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R&D)’ 45억원, 배터리 기반의 미래 인프라에서의 화재에 선제적 대비·대응하기 위해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성 대응을 위한 소방 기술 개발(R&D)’ 1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지원사업에서 4억원(’25: 47억원→’26: 51억원), 화재안전 및 시설 기준 개발 사업에서 94억원(’25: 10억원→’26: 104억원), 중앙소방학교 운영 사업에서 12억원(’25: 53억원→’26: 65억원),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사업에서 8억원(’25: 13억원→’26: 21억원), 119종합상황관리 사업에서 12억원(’25: 1억원→’26: 13억원),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R&D) 사업에서 20억원(’25: 17억원→’26: 37억원), 디지털 혁신기반 화재원인 분석기술 개발(R&D) 사업에서 20억원(’25: 5억원→’26: 25억원),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사업에서 20억원

('25: 133억원→'25: 153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사업에서 17억원('25: 172억원→'26: 155억원), 국립소방병원 운영사업에서 230억원('25: 624억원→'26: 394억원),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 조성사업에서 41억원('25: 50억원→'26: 9억원),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사업에서 44억원('25: 131억원→'26: 88억원), 실화재훈련시설 구축사업에서 5억원('25: 39억원→'26: 34억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사업에서 8억원('25: 82억원→'26: 74억원), 중앙119 특수구조대 지원사업에서 44억원('25: 374억원→'26: 330억원), 소방행정 정보화사업에서 3억원('25: 16억원→'25: 13억원), 119구급 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정보화) 사업에서 5억원('25: 16억원→'26: 11억원), 소방 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서 18억원('25: 38억원→'26: 20억원)이 감액되어,

사업비 총액은 64억원이 감액되어 2025년도 예산 대비 2.6% 감액된 2,388억원이 편성됨.

(2) 목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25예산 (A)	'26예산안 (B)	증 감 (B-A)	%
합 계	340,389	329,511	△1,618	△0.5
인건비	76,431	87,059	5,261	6.4
운영비	37,193	44,294	2,146	5.1
여비	1,496	1,945	△28	△1.4
업무추진비	390	439.407	△1	△0.1
직무수행경비	2,898	3,040	62	2.1
연구용역비	5,671	7,443	328	4.6
보전금	447	152.208	10	7.2
민간이전	22,076	3,443	190	5.8
자치단체이전	23,740	32,427	3,748	13.1
일반출연금	200	39,410	17,677	81.3
연구개발출연금	18,997	44,723	19,247	75.5
건설보상비	1,265	3,151	△173	△5.2
건설비	69,323	17,259	△51,063	△74.7
유형자산	80,236	44,710	1,042	2.4
무형자산	27	15	△65	△81.3

(3) 프로그램별 예산안 내역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25예산		'26예산안 (B)	증감 (B-A)	%
	당초(A)	추경			
합 계	331,129	345,620	329,511	△1,618	△0.5
소방정책지원	243,108	257,599	235,611	△7,497	△3.1
소방행정지원	88,021	88,021	93,900	5,879	6.7

(4) 성과계획서

가) 임무와 비전

소방청은 2026년도 임무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위해 재난대응역량을 강화한다.’로 설정하고, ‘안전한 나라·행복한 국민, 대한민국 119!’를 비전으로 설정하였음.

나) 목표 및 과제 현황

소방청은 단일 전략목표(‘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구현’)와 단일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하였음.

프로그램 목표로 설정된 단위사업은 총 12개로 일반재정 10개, 정보화 1개, R&D 1개로 구성되어 있음.

<2026년 소방청 성과 목표 및 관리과제 현황>

구 분	전략 목표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소 계	일반재정	정보화	R&D
개수(개)	1	1	12	9	1	1
비율(%)	-	-	100.0	75.0	8.3	8.3

(단위 : 백만원)

구 분	성과계획	대상사업			
	단위사업명	회계구분	사업코드	사업구분	'26예산안
전략목표 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로 지속가능한 안심사회 구현					267,542
프로그램목표 Ⅰ-1. 재난환경 변화에 대비 소방분야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267,542
소방정책지원	자율소방안전관리강화	일반회계	1100-1131		60,668
	소방시설장비지원	일반회계	1100-1132		13,243
	화재예방제도 선진화	일반회계	1100-1133		13,260
	119현장대응력 강화	일반회계	1100-1134		11,662
	소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일반회계	1100-1150		17,725
	소방안전기술개발	일반회계	1100-1160		50,326
	소방교육강화	일반회계	1100-1170		11,424
	중앙119구조본부지원	일반회계	1100-1171		52,280
	소방안전연구	일반회계	1100-1172		3,102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	119구급 운영지원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2800-2835	타부처소관	31,931
소방정책지원	중앙소방학교수입대체경비	일반회계	1100-1173		697
	국립소방연구원수입대체경비	일반회계	1100-1174		1,224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2026년도 신규사업

2026년도 소방청의 신규사업은 5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26예산안	비고
	계	14,900	
소방안전기술개발	1. 위험물 시설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R&D)	3,500	
소방안전기술개발	2. 철도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철도 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대응 체계 개발(R&D)	1,800	
소방안전기술개발	3.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R&D)	3,800	
소방안전기술개발	4.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 연구(R&D)	4,500	
소방안전기술개발	5.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R&D)	1,300	

나. 2025년도 완료사업

소방청의 2025년도 완료사업은 1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구 분	'25예산		'26예산안 (B)	증감 (B-A)	
	당초(A)	추경			%
계	371	371	-	△371	순감
지진대비대응 역량강화	371	371	-	△371	순감

Ⅱ. 검토의견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1131-301)

○ ‘찾아가는 상담실’ 내역사업은 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마음건강 지원 및 상담·치유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인데, 최근 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2020년 667건 → 2024년 779건, 16.8% 증가) 상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각 시도별 심리상담 횟수의 편차가 존재하므로(2020~2025 소방관 1인당 평균 상담 횟수: 0.65 ~ 2.24) 그 원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최근 5년간의 심리상담 결과를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비율은 해마다 차이는 있으나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대형 재난으로 인한 참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소방청은 2018년 이후 소방공제회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공상 입증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행정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재 시행중인 ‘유해물질 노출 관련 연구’의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공상추정 질병의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은 직무환경 특성상 충격적 사건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쉬운 소방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수면장애 등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심리회복 및 치료를 지원하며 소방공무원의 자긍심과 소속감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① 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② 치료사업인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③ 소방공무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대원 체력증진 프로그램, 순직 소방관 예우 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됨.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도 예산 46억 7,700만원 대비 3억 8,400만원이 증액(8.2%)된 50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4,093	4,677	5,061	384	8.2
○ 찾아가는 상담실	2,388	3,014	3,448	434	14.4
○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690	690	740	50	7.2
○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551	560	560	-	-
○ 마음건강 설문조사 연구용역	20	35	35	-	-
○ 현장대원 체력 증진 프로그램	65	65	65	-	-
○ 순직 소방관 예우 지원 사업	100	150	150	-	-
○ 중대재해예방 안전 보건관리체계 구축	80	63	63	-	-
○ 소방심신수련원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	100	-	△100	순감
○ 소방차 운행기록분석 시스템 구축 ISP 등	199	-	-	△199	순감

나.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체계의 운영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사업에는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하는 내역사업으로 ‘마음건강 설문조사’, ‘찾아가는 상담실’, ‘스트레스 회복력강화 프로그램’,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지원 관련 내역사업 추진 체계>

1. 마음건강 설문조사 (선별)		
• 개인별 정신건강 파악 및 치료·관리필요군 선별, 보건안전지원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全 소방공무원 ※ 24년 61,807명 응답(94.1%)	`15년~현재

2.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		
• 계약에 의한 외부 상담기관을 선정 • 전문 심리상담사가 심리상담, 교육 등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관리	• 全 소방공무원 ※ 24년 79,453건 상담	`15년~현재

3.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회복)		
• 설문조사·심리상담 결과, 심신안정 지원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2~4일간 전문치유 프로그램 운영	• 심신안정이 필요한 소방공무원 ※ 24년 2,531명 참여	`12년~현재

4.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치료)		
•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정신건강 관련 병원비, 약제비 전액 국비 지원	• 병원 검사·진료를 실시한 소방공무원 ※ 24년 7,635건 지원	`12년~현재

자료: 소방청

□ 이 중 ‘찾아가는 상담실’ 내역사업은 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PTSD 등 마음건강 지원 및 상담·치유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30억 1,400만원 대비 4억 3,400만원이 증액(14.4%)된 34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

<찾아가는 상담실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2025년 본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3,014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2,832백만원** 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ㆍ 124명(상담사 인원) × 45,750천원(상담 운영비) × 50%(국고보조) ○ **일반용역비(210-14) : 165백만원** 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중앙119구조본부) ㆍ 4명(상담사 인원) × 41,145천원(상담 운영비) ○ **국내여비(220-01) : 9백만원** 가. 사업추진 여비 ㆍ 75천원 × 3명 × 40회 = 8백만원 ○ **일반수용비(220-01) : 8백만원** 가. 사업운영 책자 발행 ㆍ 800부 × 10천원 = 8백만원	3,448	○ **자치단체 경상보조(330-01) : 3,225백만원** 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ㆍ 141명(상담사 인원) × 45,750천원(상담 운영비) × 50%(국고보조) ○ **일반용역비(210-14) : 206백만원** 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중앙119구조본부) ㆍ 5명(상담사 인원) × 41,145천원(상담 운영비) ○ **국내여비(220-01) : 9백만원** 가. 사업추진 여비 ㆍ 75천원 × 3명 × 40회 = 8백만원 ○ **일반수용비(220-01) : 8백만원** 가. 사업운영 책자 발행 ㆍ 800부 × 10천원 = 8백만원

자료: 소방청

- 찾아가는 상담실 내역사업은 국비와 지방비의 1:1 매칭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가 매년 전문상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데, 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 등을 방문하여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마음건강 교육 등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소방청은 상담사와의 상담 결과 마음건강 관리·치료 필요군[320]에 대해서는 추적 관리 및 심층상담을 통해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및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실질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함.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초기 심리상담을 거쳐 관리·치료필요군을 선별하고 심층상담, 집단상담, 교육·홍보를 통한 심리지원·인식개선 및 마음건강 지원체계 마련

○ 외부 전문상담 기관을 선정하여 심리상담사가 全 소방공무원 대상 심리치유 지원

□ 2026 예산안

○ 34억 4,800만원

※ 2019년 이후 소방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요 예산을 50:50으로 분담

※ 2015년 ~ 2024년까지 약 285.23억원 투입, 411,877건 심리지원

□ 주요 내용

○ 심리상담사가 소방관서 등을 방문하여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마음건강 교육 등 실시

320) - 마음건강 관리필요군이란 증상이나 낮은 수준의 위험이 존재하여 예방적 또는 조기 개입을 통해 해결 가능한 비교적 중하지 않은 수준을 의미함.
- 마음건강 치료필요군이란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보여 심층적인 심리치료 등의 치료적 개입을 요구하는 상태를 의미함.
(자료: 소방청)

□ 운영절차(2025)

○ 운영지침을 원칙으로 시·도별로 실정에 맞춰 자율적 운영

- 각 시도별 예산상의 상담사 기준인원으로 상담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나, 시도별 상담인력의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다만, 전국(중앙, 시도) 상담사는 전일제와 시간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로 인해 예산상 기준 인원과 실제 근무 인원 간에 차이가 있음

○ 집행절차

표준지침 수립 국고보조금 교부	⇨	운영계획 수립 심리상담 전문기관 선정	⇨	프로그램 운영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상담 전문기관

○ 집행현황

사업연도	소방관서(개소)	소요예산(억원) (국비+시도비)	상담건수	비 고
2015년	224	3.8	4,702	국비
2016년	228	6	6,616	
2017년	233	21.4	21,696	
2018년	237	21	26,103	
2019년	242	30	37,732	국비 + 시도비 (50:50)
2020년	244	34.48	48,026	
2021년	248	35.44	53,374	
2022년	257	40.09	63,416	
2023년	262	46.51	70,759	
2024년	264	46.51	79,453	

(자료: 소방청)

□ 찾아가는 상담실 내역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상담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최근 5년간 소방청(중앙119 구조본부)과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활동 중인 상담사 인원을 살펴보면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2020년 72명 → 2025년 128명).

이에 따라 상담사 1인당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2020년 777명 → 2025년 533명), 2025년 기준 전체 소방관서(중앙 119구조본부 포함) 264곳에 배치된 상담사는 128명으로 약 2개의 소방관서당 1명의 상담사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1명의 상담사가 평균 522명의 소방공무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참고로 2020년 이후 상담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만족도(2020년 4.0점 → 2024년 4.5점)와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료를 권고한 건수(2020년 1,461건 → 2024년 3,741건)는 해마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최근 5년간 상담사 인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321]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정부안	목표
전국	상담사 수	72명	76명	88명	102명	102명	128명	**146명**	**268명**
	상담사 1인당 담당 소방공무원 수	787명	803명	703명	629명	630명	522명	**458명**	**249명**
시도	상담사 수	72명	76명	84명	98명	98명	124명	**141명**	**260명**
	상담사 1인당 담당 소방공무원 수	777명	794명	728명	647명	648명	533명	**468명**	**254명**

(자료: 소방청)

<최근 5년간('20년~'24년) 찾아가는 상담실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 점 / 5점 만점)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4.0	4.1	4.3	4.1	4.5

※ 설문방법 : 상담인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하여 조사

(자료: 소방청)

<최근 5년간('20년~'24년)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연계된 규모>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1,461건	1,439건	2,133건	1,931건	3,741건

(자료: 소방청)

321) 전국과 시도를 별도로 제시하는 이유에 대하여 소방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함.
- 전국 통계에는 시도와 중앙119구조본부가 포함되었으며, 중앙119구조본부는 시도에 비해 소방공무원 수 대비 상담사가 많아 중앙119구조본부를 포함하여 산정한 전체 평균을 적용할 경우 상담사 1인당 담당 인원이 실제보다 적게 산출됨. 이에 동일한 기준의 시도 상담사 1인당 담당 소방공무원 수를 확인하기 위해 전국과 시도를 별도로 제시하였음.

- 한편, 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는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2020년 667건 → 2024년 779건, 16.8% 증가), 2024년 기준 지역별 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는 238건에서 1,075건까지 분포하고 있음. 이는 소방공무원의 상담에 대한 인식 개선과 만족도 향상으로 상담 수요가 증가한 결과로 보임.

- 다만, 상담사 1인당 연간 상담 건수 증가로 인해 업무 부담 가중 및 상담의 질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322].

322)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현재 2개 소방서당 상담사 1인이 배치되어 있으나, 2026년에는 각 소방서 당 상담사 1인을 배치하여 상담사 1인당 담당 소방대원 수를 낮춰 심리지원을 강화하고자 상담사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2026년도 예산안은 소방청의 목표 대비 54.5%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2026년 소방청의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확충 계획>

구 분	상담사 인원 및 예산안			비 고
	편성안(A)	목표(B)	A/B %	
인원	146명	268명	54.5%	
예산안(국비)	3,448백만원	6,327백만원	54.5%	

*2025 현재 전국(중앙, 시도) 소방관서수: 268개소, 전국(중앙, 시도) 소방공무원수 66,802명('24.12.31. 기준)
(자료: 소방청)

<최근 5년간 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

(단위 : 건)

시·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담 건수	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	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	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	상담사 1인당	상담 건수	상담사 1인당
합계	48,026	**667**	53,374	**702**	63,416	**721**	70,759	**694**	79,453	**779**
소방청 323)	-	-	-	-	503	126	806	202	951	238
서울	4,446	445	4,489	449	5,947	595	5,906	537	8,422	842
부산	3,202	640	3,398	680	4,097	819	5,351	892	6,143	1,024
대구	2,816	939	2,561	854	2,763	691	3,103	776	3,147	787
인천	1,121	280	1,028	257	2,599	650	1,970	394	2,266	378
광주	1,367	684	1,568	784	1,428	714	2,074	1,037	2,323	774
대전	1,924	962	2,347	1,174	2,158	1,079	2,242	1,121	2,675	892
울산	940	940	1,408	704	1,368	684	1,606	803	1,672	836
세종	485	485	970	970	1,233	1,233	1,263	1,263	1,658	829
경기	2,937	245	3,412	284	4,685	312	7,579	446	11,096	740
강원	3,810	762	4,227	845	3,183	531	4,264	609	5,180	648
충북	2,104	701	2,112	704	3,272	818	3,178	795	3,358	840
충남	3,280	820	5,429	1,357	5,921	1,184	5,630	938	4,554	759
전북	2,466	617	3,090	773	3,346	837	3,713	743	3,730	746
전남	3,699	925	6,197	1,239	4,695	783	6,010	859	6,448	1,075
경북	7,633	1,272	4,901	700	6,660	951	6,582	823	7,144	893
경남	3,720	930	4,035	807	4,763	953	5,145	735	5,300	883
제주	1,055	1,055	1,202	1,202	2,357	2,357	2,593	1,297	1,708	854
창원	1,021	1,021	1,000	1,000	2,438	2,438	1,744	872	1,678	839

※ 개인이 반복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실적은 상담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됨
(자료: 소방청)

323) 소방청 본청은 현재 중앙119구조본부에 각 권역별로 상담사 1명씩 총 4명의 상담사를 배치하고 있는데, 2024년에 소방공무원 1인당 2.4회 상담을 실시하였음. 소방청은 중앙119구조본부는 4개 권역(수도권대, 영남대, 호남대, 충청강원대)으로 나눠져 있고, 각 지역 간에 거리가 멀어서 4명의 상담사가 각 권역별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함.

○ 둘째, 시도별 심리상담 횟수에 편차가 존재하므로 그 원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 소방청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각 시도에 교부하는데, 국고보조금의 80%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따라 배분하고 나머지 20%는 성과평가 결과 및 정책·사업 참여도에 따라 차등 배분하고 있음.

<찾아가는 상담실 국고보조금 교부 기준>

소방공무원 정원 기준 (기본운영비) ⇨ 국고보조금의 **80%**	+	'찾아가는 상담실' 성과평가 ⇨ 국고보조금의 **10%**	+	마음건강 정책·사업 참여도 ⇨ 국고보조금의 **10%**

❶ **(기본운영비)** 국고보조금의 80%를 **소방공무원 정원**에 따라 배분

❷ **(성과평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지침 상 16개 과업을 **소방청과 외부 평가위원이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평가(1,000점 만점), 순위 선정**

- 소방청(정량평가) : 운영실적 등 13개 항목 690점
- 평가위원(정성평가) : 연구보고서 등 4개 항목 310점(대학교 교수진 등 4명)

※등급설정: 성과평가 순위에 따라 **4등급(가~라)으로 지급비율을 구분**

❸ **(정책·사업 참여) 보건안전지원 사업 및 소방청 주관 마음건강 정책·사업 참여도**에 따라 각 항목별 기준에 의해 교부액 차등 배분

▸찾아가는 상담실 '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수행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 접수·검토
▸마음건강 설문조사 참여	▸워크숍 및 정책설명회 참석

(자료: 소방청)

- 한편, 각 지역별 소방관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소방관 1인당 평균 상담 횟수는 1.24회로 나타났으나, 지역별로는 0.65회에서 2.24회까지 약 3.4배 차이가 발생함.

<각 시도별 소방관 1인당 평균 상담 건수(2020 - 2025.6.)>

(단위: 건, 명)

지 역	2020-2025년 소방관 1인당 평균 상담 횟수*	소방공무원 정원(평균)	상담사 인원(평균)	비 고
서울	0.85	7,387	10.67	
부산	1.33	3,693	5.67	
대구	1.05	2,880	3.83	
인천[324]	0.65	3,348	4.83	
광주	1.22	1,595	2.33	
대전	1.55	1,620	2.33	
울산	1.15	1,375	2	
세종	2.24	566	1.17	
경기[325]	0.72	11,237	15.33	
강원	1.01	4,368	15.33	
충북	1.16	2,771	4	
충남	1.40	4,151	5.5	
전북	1.20	3,382	4.67	
전남	1.29	4,419	6.17	
경북	1.31	5,425	7.83	
경남	1.18	4,249	6	
제주	1.53	1,192	1.5	
창원	1.48	1,087	2	
평균	1.24			

* 2025년의 상담건수는 6월까지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환산(2배)하여 12월까지의 실적으로 산정하였음

(자료: 소방청 제출자료 재가공)

324) 「2024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지침」상 스크리닝상담*을 50%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음. 인천은 과업에 맞춰 상담이 실시되어 2024년도에 소방공무원 1인당 0.67회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나, 2025년에는 소방관 1인당 평균 상담 횟수가 1.17건으로 증가하였다고 소방청은 설명함.

325) 경기도의 경우 2020년 이후 소방관 1인당 평균 상담 건수는 0.72건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해마다 소방관 1인당 평균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20년 0.28건 → '24년 0.97건 → '25년 6월 1.67건)

- 소방청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추이를 볼 때 2020년 소방관 1인당 평균 상담 횟수가 가장 낮았던 시도의 상담 횟수는 0.35건에 불과했으나 해당 시도에서 적극적인 심리지원을 추진한 결과 2025년에는 소방관 1인당 평균 상담 횟수가 1.17건으로 약 3.5배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상담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2024년도 상담 실적의 편차 원인에 대해서는 「2024년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지침」에 따라 소방공무원 정원의 50% 이상에 대해 스크리닝 상담[326]을 의무화하였으나, 일부 시도는 자체적으로 상담을 확대 운영한 반면, 일부는 지침 수준으로만 시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각 시도 별로 상담 횟수에 편차가 발생한 원인 중에는 각 시도의 사업 추진 의지, 심리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함.

  향후 소방청은 각 시도별 상담 횟수의 편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상담실' 사업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26) 스크리닝 상담이란 상담 초기 단계에서 내담자의 문제나 위험 요인을 빠르게 선별하고 적절한 지원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진단 상담을 의미함.

○ 셋째, 대형재난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과 심리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소방공무원은 업무 특성 상 참혹한 화재·재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쉬움[327]. 소방청은 해마다 전국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마음건강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의 결과를 살펴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비율은 해마다 차이는 있으나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21년 5.7% → '22년 8.1% → '23년 6.5% →'24년 7.2%)[328].

---

327)

<최근 10년간('15년~'24년) 자살 소방공무원 중 순직 승인 현황>

(단위: 명)

구 분	자살 소방공무원	인사혁신처 신청 인원 기준			최종 순직 결정 건[1)+2)]	비 고
		청구	승인[1)]	재심·소송 인정[2)]		
계	146	42	23	9	32	
2015년	12	1	0	1	1	행정소송
2016년	6	3	1	2	3	행정소송
2017년	15	3	2		2	
2018년	9	0	0		0	
2019년	14	5	0	5	5	재심, 행정소송
2020년	12	6	3	1	4	행정소송
2021년	17	3	1		1	
2022년	21	7	6		6	
2023년	11	5	5		5	
2024년	17	8	5		5	
2025년	12	1				25.9월말 현재

1)과 2)는 인사처 보유자료(공무원재해보상심의일 기준)로 다수 청구 건의 경우 최종 청구 기준으로 산정
(자료: 소방청)

328) 상세내용은 '[참고 1] 2021년 이후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참조
-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전체 외상사건 노출 빈도는 유의하게 줄었지만 연 12회이상 '고빈도 노출군' 비중이 늘어, 이 집단에서 PTSD 응답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고, 상담, 치료 이용 증가와 조직 내 인식 제고로 증상 인지 및 응답이 늘어 관찰된 비율이 유지 혹은 소폭 상승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한편, 설문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외상사건 노출경험 횟수는 전체적으로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21년 6.3회 → 24년 5.8회) 같은 기간 동안 12회 이상 외상사건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의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21년 12.9회 → 24년 13.5회).

- 이는 대형재난 발생시 출동하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심리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PTSD 예방과 심리회복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이와 관련하여 소방청은 현재 약 2개 소방관서 당 1명의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으나 소방공무원에 대한 심리 상담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소방관서 당 1명의 상담사를 배치하여 상담사 1인당 담당 소방공무원 수를 낮추고 상담의 품질을 높이며, 집단상담·자조모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임용 전부터 퇴직 후까지 생애 전(全) 주기[329] 심리지원체계를 도입하는 등 소방대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방안 마련을 추진 중이고

329) 소방청은 소방대원의 생애 전 주기 심리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임용 전) 신임 교육과정 심리지원 프로그램(상담·교육·심리검사) 운영(실시 중)
(재직 중) 매년 정기적 심리상담 / 승진, 복직, 휴직 시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중)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 및 국립소방병원 정신건강센터, 소방심신수련원 지원 등(계획 중)

대형참사에 출동한 소방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1:1 상담 횟수를 늘리는 등 긴급심리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하면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중이라고 밝힘.

<찾아가는 상담실 2026년 예산안 및 증액요구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0000-000)	2025년 본예산 (추경)	2026년 예산안	요구 증감액	증액 이유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찾아가는 상담실) (1131-301)	3,014	3,448	2,897	○「찾아가는 상담실」은 외부 전문 상담기관을 선정, 상담사가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마음건강 교육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명의 상담사가 2개 소방관서를 담당하고 있으나, '26년부터는 1명의 상담사가 1개 소방관서를 전담하도록 상담사를 확충*하기 위해 필요 * '25년 128명 → '26년 정부안 146명 → 증액안 268명(정부안 대비 +122명) ※ 산출(❶+❷) : +2,897백만원(국비) ❶ 상담사 122명 × 46.66백만원 × 국비 50% = 2,846백만원 ❷ 운영비 등 33백만원

(자료: 소방청)

- 참고로 2025년도 소방청 국정감사에서도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관리 개선을 위하여 상담사를 확대하고 다수사상자 현장 출동 대원등에 대한 PTSD 관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다. 소방공무원 공상 입증지원 제도 강화 필요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소방청은 ① 업무환경 및 현장 안전관리, ②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③ 처우 및 전·현직 소방공무원 복지대책, ④ 순직 예우 및 공상 지원 분야의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제2차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순직 소방관 예우 지원 사업’은 ‘순직 예우 및 공상 지원’ 분야 중 ‘순직 예우’ 분야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와 동일하게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소방청은 2025년도에 동 사업 예산을 활용해서 ‘119 메모리얼데이’ 행사와 ‘순직소방공무원 유가족 위문’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6년도에도 동일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면서,

  동 사업을 통해 순직소방공무원의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리고 추모공감대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며, 순직 유가족을 순직일이 있는 달에 직접 방문해서 위문품과 서한문을 전하여 유가족이 진정성 있는 위로를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힘.

□ 소방청의 ‘순직 예우 및 공상 지원’ 분야의 정책 추진에 관해서는 ‘순직 예우’와 더불어 ‘공상지원’ 분야에서도 정책적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임.

○ 먼저, 공상지원 분야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행정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026년도에 ‘순직 예우 및 공상 지원’ 분야 중 ‘순직 예우’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공상지원’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음.

- 이에 대해 소방청은 ‘순직 예우 및 공상 지원’ 관련 정책 중 ‘공상지원’ 분야의 사업으로는 소방공제회의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입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소방청은, 소방업무의 특성상 소방업무가 원인이 되어 암 등 중증 질환으로 투병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빈번하나, 「공무원 재해 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공무상 부상 및 공무상 질병)[330]로

330)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공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1. 공무상 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공무상 사고"라 한다)로 인한 부상
가. 공무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공무상 질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가. 공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나. 공무수행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직장 내 괴롭힘(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민원인 등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유족이 질병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공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당사자나 유족이 입증하기 어려워 이를 개선하고자 2018년부터 관련 전문가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활용해서 소방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입증을 지원하는 '공무상 재해 입증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 동 사업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대한소방공제회 등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8년부터 2025년 8월까지 147건의 공무상 재해 입증 신청을 지원했고 이 중 99건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았음(승인율 75%[331]).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입증지원 사업 추진 성과>

(단위: 건)

구 분	입증지원 건수	공무상 요양승인		비고
		승인	불승인 / 기타	
'18. 9. ~ '20.1.	30	23	6 / 기타 1	1차
'20. 7. ~ '21.12.	45	35	8 / 기타 2	2차
'22. 6. ~ '23. 4.	31	22	8 / 기타 1	3차
'23. 8. ~ '24. 8.	31	18	10 / 기타 3	4차
'25.3. ~ '26. 1.	10	1	1 / 기타 8	5차
계	147	99		

(자료: 소방청)

라.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마. 그 밖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31)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결정 132건 중 승인 99건으로 계산(15건은 진행 중임)

-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기후변화가 심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화재와 대형사고 발생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332] 소방공무원이 공무 수행 중에 부상이나 질병을 얻을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이고, 공무상 재해에 대해 소방청이 적합한 보상·복귀 지원을 하는 경우 소방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소방청은 '공무상 재해 입증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임.

- 다만, 동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과 행정적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현재 동 사업은 기부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1억원이 모일 때마다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사업 기간이 불규칙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음(1차: 2018.9~2020.1., 2차: 2020.7.~2021.12., 3차: 2022.6.~2023.4., 4차: 2023.8.~2024.8., 5차: 2025.3. ~).

<공무상 재해 입증지원 사업 추진 현황>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25.10.현재)
추진기간	'18.09.~'19.12. (16개월)	'20.06.~'21.12. (19개월)	'22.5.~'23.04. (12개월)	'23.05.~ (18개월)	'25.03.~
예산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 사업재원 : 대한소방공제회 예산(기부금 및 대한소방공제회 자체 예산)
(자료: 소방청)

332) 최근에 발생한 대형사고로는 2024년 12월 29일 전라남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2216편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를 이탈하면서 여객기 탑승자 중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하는 항공사고가 발생하였고,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울산 울주에서 초대형산불이 발생해서 103,876ha의 산림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30명이 사망하고 45명이 부상을 입었음.

2020년 이후 소방공무원의 순직 청구 건수는 연 평균 23.2% 증가하고 있고(2020년 19건 → 2024년 25건), 공상 청구 건수는 2020년 이후 매년 평균 1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2020년 1,135건 → 2024년 1,752건),

소방청은 공상청구 건수 증가에 대응하여 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 기반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소방공무원 순직 청구 현황>

(단위 : 건, %)

연 도	청구		승인		불승인	
	건수	청구증가율	건수	승인률	건수	불승인률
2020	19		15	78.9	4	21.1
2021	13	△31.6	9	69.2	4	30.8
2022	26	100.0	23	88.5	3	11.5
2023	15	△42.3	13	86.7	2	13.3
2024	25	66.7	19	76.0	6	24.0

※ 2020 ~ 2024 평균 청구건수 : 19.6건
※ 연도별 청구건수 증가율 평균 : 23.2%
(자료: 소방청 제공자료 재가공)

<소방공무원 공상 청구 현황>

(단위 : 건, %)

연 도	청구		승인		불승인	
	건수	청구증가율	건수	승인률	건수	불승인률
2020	1,135		999	88.0	136	12.0
2021	1,046	△7.8	931	89.0	115	11.0
2022	1,201	14.8	1,075	89.5	126	10.5
2023	1,523	26.8	1,318	86.5	205	13.5
2024	1,752	15.0	1,429	81.6	323	18.4

※ 2020~ 2024 평균 청구건수 : 1,331.4건
※ 연도별 청구건수 증가율 평균 : 12.2
(자료: 소방청 제공자료 재가공)

· 한편, 소방청은 질병과 부상에 대한 공상·순직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공상·순직 입증을 지원하고 관련 서류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부터 재해보상·보훈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운영 중인데, 2025년 10월 현재 총 4명으로 운영 중임(직제상 정원 2명, 파견 2명).

공무수행 과정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상당 기간 노출돼 질병에 걸린 경우 이를 공무상 재해로 추정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이하 '공상추정'이라 함)가 2023년 6월에 도입됨에 따라[333] 향후 소방공무원의 공상·순직 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므로,

소방청은 이에 대비하여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334].

<재해보상·보훈 전담인력 운영 현황>

(단위: 명)

연 도	직제상 정원	현 원	비 고
2022. 11.	-	3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파견 인원 3명
2025. 10.	2	4	시도 소방본부로부터 파견 인원 2명 ※직제 개정으로 재해보상·보훈 전담인력 2명 증가

(자료: 소방청)

333)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추정한다. 이 경우 질병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질병명, 공무원의 직종,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재직한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334) 행정안전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소방청 국정감사(2025.10.15.)에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관리의 일환으로 소방공무원 공상 신청 및 입증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들의 지적에 대하여 소방청은 소방공무원들의 순직 및 공무상 요양 승인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행안부 등)와 전담조직 신설을 협의하겠다고 밝힘.

○ 다음으로, 공상 인정 특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소방청 차원의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021년 이후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의 유해물질 노출 관련 연구를 연간 1건~2건 시행하고 있고, 관련 예산은 연간 1억 5,000만원~1억 7,800만원임.

<소방공무원 유해물질 노출 관련 연구예산 현황[335]>

(단위: 백만원)

연 도	연구건수	예산액	비고(세부사업명)
2021~2023 (3년 계속사업)	1건	450 (연 150)	1172-300 (국립소방연구원운영)
2024	2건	162	1172-300 (국립소방연구원운영)
2025	2건	178	1160-603 (소방현장활동지원기술개발)

(자료: 소방청)

-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유해물질 노출 관련 연구의 주요 목적은 소방 분야의 직업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유해인자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질병 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데 동 연구 결과를 공무상 재해 입증 지원을 위해서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함.

- 그런데, 공상추정제가 도입된 후 소방공무원의 재해 입증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으나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에

335)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유해물질 노출 관련 연구 관련 상세 내용은 [참고 3] 참조

대해서만 공상추정이 인정된다는 제도적 한계가 있음.

현행 공상추정제에서 인정하고 있는 질병은 ① 직업성 암 6종(중피종, 방광암, 폐암, 비호지킨림프종, 다발성 골수종, 백혈병), ② 근골격계질병(어깨), ③ 심뇌혈관질병, ④ 정신질환임.

- 한편, 소방공무원의 순직 청구건수는 연 평균 23.2%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암 관련 순직 청구건수는 평균 4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공상 청구 건수는 202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12.2%인데 비해 암 관련 공상 청구 건수는 연평균 20.2%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통계는 소방공무원이 직무와 암 발생 간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문제 제기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 있음.

<소방공무원 암 관련 순직 청구 및 승인 현황>

(단위 : 건, %)

연 도	청구		승인		불승인	
	건수	청구증가율	건수	승인률	건수	불승인률
2020	2		1	50.0	1	50.0
2021	3	50.0	2	66.7	1	33.3
2022	7	133.3	6	85.7	1	14.3
2023	7	0.0	6	85.7	1	14.3
2024	6	△14.3	5	83.3	1	16.7

※ 2020~ 2024 평균 청구건수 : 5.0건
※ 연도별 암 관련 순직 청구건수 증가율 평균 : 42.3%
(자료: 소방청 제공자료 재가공)

<소방공무원 암 관련 공상 청구 및 승인 현황>

(단위: 건, %)

연 도	청구		승인		불승인	
	건수	청구증가율	건수	승인률	건수	불승인률
2020	31		16	51.6	15	48.4
2021	39	25.8	20	51.3	19	48.7
2022	38	△2.6	19	50.0	19	50.0
2023	51	34.2	31	60.8	20	39.2
2024	63	23.5	36	57.1	27	42.9

※ 2020~ 2024 평균 청구건수 : 44.4건
※ 연도별 암 관련 공상 청구건수 증가율 평균 : 20.2%
(자료: 소방청 제공자료 재가공)

-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과 공무상 재해의 추정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해서 고시한 구체적인 질병 외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해물질 노출기간, 노출량 등을 고려하여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고[336],

우리 위원회는 2024년 11월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을 통해[337]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역학조사를 위하여

336)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 Ⅱ. 공무상 질병 유형별 예시, 10. 직업성 암, 저목
- 직업성 암과 관련한 공무상 질병 추정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4] 참조

337) 우리 위원회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안번호 제2202021호 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안 및 의안번호 제2205432호 이성권의원 대표발의안)을 폐기하고 이를 반영한 대안을 제안하였고(2024. 11. 28.), 해당 대안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2024. 12. 10) 2025년 1월 7일에 공포되었고 2025년 7월 8일부터 시행되었음.

그 범위를 ‘소방공무원이거나 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으로 확대하고,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특수·정밀건강진단 결과,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암 등록통계 사업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음[338].

참고로, 2022년 7월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소방공무원 직업의 발암성 분류를

338)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5조(소방업무환경측정 등) ① 소방청장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평가(이하 “소방업무환경측정”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로 하여금 소방활동 현장에 대하여 유해인자 발생 등 소방업무환경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업무환경측정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역학조사) ① 소방청장은 직업성질환의 진단 및 발생원인 규명 또는 그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질병과 직무 관련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직업성질환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5.1.7.>
② 소방관서의 장과 소방공무원은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5.1.7.> <종전 제3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5.1.7.>
1.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3. 「암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
④ 소방청장이 제3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소방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1.7.>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⑤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제3항에서 이동 2025.1.7.>
⑥ 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청장이 소방공무원에게 알리는 경우 그 시기·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1.7.>

기존의 ‘그룹 2B(Limited evidence in humans, 인체 암 발생 증거 제한 그룹)’에서 ‘그룹 1(Suffient evidence in humans, 인체 암 발생 증거 충분)으로 상향하였고, 1) 중피종, 방광암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Suffient evidence in humans, Group 1)으로 2) 대장암, 전립선암, 고환암, 피부흑색종, 비호지킨 림프종에 대해서는 제한적 증거 있음으로 재분류하였음[339][340].

- 따라서, 소방청은 유해물질 노출 관련 연구의 목적을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공상추정 질병의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연구 목적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341].

339) 출처: 세계보건기구 국제암연구소(IARC)「소방관의 직업적 노출」, 단행본 132권. 2023.7.(자료: 소방청)

340) 소방청은 동 연구에 소방방재청의 “재난현장 보건안전 유해인자 분석연구 및 소방업무종사자 특수건강진단 모델개발”연구(2011)가 인용되었다고 설명함.

341) 소방청은 질병(PTSD 등 정신질환, 신체질환) 등 입증이 어려운 사안에 대해 소방청 차원*에서 사전 검토 및 자료 보완, 신청 및 입증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 질병 등에 대하여 공상신청 창구를 소방청으로 일원화
** 소방청 차원에서 입증이 어려운 질병과 공무상 인과관계에 대해 전문가(직업환경의학과 등)와 협업을 통해 역학조사 보고서 작성 등 입증 지원(2018년부터, 147건)

[참고 1] 2021년 이후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 주요 정신건강 문제

○ **PTSD 7.2%, 우울 6.5%, 자살위험 5.2%**

구분	실시인원(명)	**PTSD**(명, %)		**우울**(명, %)		**자살위험**(명, %)	
2021년	53,980	3,093	5.7	2,379	4.4	2,390명	4.4
2022년	54,056	4,364	8.1	4,129	7.6	2,906명	5.4
2023년	52,802	3,412	6.5	3,323	6.3	2,597명	4.9
2024년	61,087	4,375	**7.2**	3,937	**6.5**	3,141명	**5.2**

□ 외상사건 노출경험

연도	실시인원(명)	최근 1년간(회)	1년간 12회 이상(%)	1년간 15회 이상(%)
2021년	53,980	6.3	12.9	10.2
2022년	54,056	5.9	13.1	10.3
2023년	52,802	5.9	13.7	10.7
2024년	61,087	**5.8**	**13.5**	**10.5**

□ 기타 정신건강 문제

○ 수면문제 치료필요군 **6.4%**, 문제성 음주 치료필요군 **6.7%**

구분	실시인원(명)	**수면문제 치료필요군**(명, %)		**문제성 음주 치료필요군**(명, %)	
2021년	53,980	2,909	5.4	2,820	5.2
2022년	54,056	4,245	7.9	3,728	6.9
2023년	52,802	3,519	6.7	3,471	6.6
2024년	61,087	3,921	**6.4**	4,076	**6.7**

□ 회복탄력성[342)]

※ '22년 도입

2022년		2023년		2024년	
54,056명	평균 5.5점	52,650명	평균 5.4점	61,087명	평균 5.4점

※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최대 10점)

□ 기질적 용서[343)]

※ '24년 도입

구분	실시인원	**합계**	자기용서	상황용서	타인용서
2024년	61,087명	**90.5점**	31.2점	29점	30.3점

※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 타인,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각 영역에서 잘 용서함을 의미(최대 126점)

342) 심리적 안녕감을 위협하는 역경에 직면했을 때 효과적인 대처를 통해 긍정적인 적응을 이뤄내는 현상

343)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적인 일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으로, 기질적 용서가 높을수록 자기, 타인 또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잘 용서함을 의미

[참고 2]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입증지원 사업 추진 현황

(자료: 소방청)

□ 사업 목적: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공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관련 전문가의 역학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입증할 수 있도록 지원

□ 소방청 담당 인력: 4명*(정식직제 2명, 파견 2)

· 업무: 재해보상 입증지원, 순직, 공무상 요양, 장해급여, 보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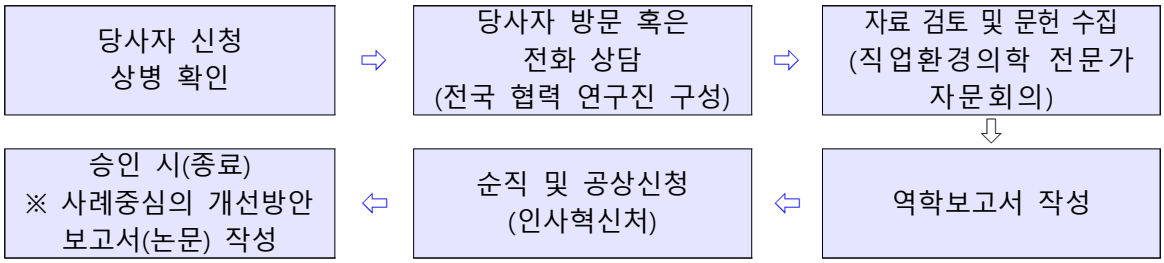
□ 기대 효과: 입증지원을 통해 작성된 역학조사 보고서로 순직 및 공무상 요양 승인율 제고

□ 수행기관 :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직업환경의학과)

□ 사업재원 : 대한소방공제회 예산(기부금 및 대한소방공제회 자체 예산)

구 분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25.10.현재)
추진기간	'18.09.~'19.12. (16개월)	'20.06.~'21.12. (19개월)	'22.5.~'23.04. (12개월)	'23.05.~ (18개월)	'25.03.~
예산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1억원

□ 지원절차



※ 불승인 시 소송 및 재심신청을 위한 추가 보고서 작성

□ 추진성과

(단위: 건)

구 분	입증지원 건수	공무상 요양승인		비고
		승인	불승인 / 기타	
'18. 9. ~ '20.1.	30	23	6 / 기타 1	1차
'20. 7. ~ '21.12.	45	35	8 / 기타 2	2차
'22. 6. ~ '23. 4.	31	22	8 / 기타 1	3차
'23. 8. ~ '24. 8.	31	18	10 / 기타 3	4차
'25.3. ~ '26. 1.	10	1	1 / 기타 8	5차
계	147	99		

[참고 3] 2010년 이후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유해물질 노출 관련 연구 현황

(자료: 소방청)

□ 2010년 ~2020년 : 4건

1. 화재진압 시 공기 중 미세먼지,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성 물질에 권고기준을 초과하여 노출(**소방방재청**, 2011; 중앙소방학교, 2018)
2. 화재진압 후 소변 중 (잠재적) 발암성물질인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 PBDEs(브롬계 난연제) 대사산물 농도가 화재진압 전에 비해 유의한 증가(**소방방재청**, 2011; **부산소방재난본부**, 2020)
3. 화재진압 후 방화복과 대원 피부 표면 PAHs 오염 증가(**중앙소방학교**, 2017)
4. 화재현장 출동 차량의 표면먼지에서 일반차량에 비해 PAHs와 PBDEs가 높은 농도로 검출(**부산소방재난본부**, 2020)

□ 2021년 ~ 2025년: 5건

1. 소방공무원 화학물질 노출 집단 추적조사

○ (연구기간) 2021.4.19.~2023.9.30.

○ (소요예산 및 연구자) 총 4억 5,000만원, 국립소방연구원

○ (주요내용)

- 2021년 신임 소방공무원의 생체시료 채취·분석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 추적 평가
- 경력 증가에 따라 신임 소방공무원의 소변 및 혈액 중 일부 유해물질(과불화화합물, 납, 카드뮴) 농도의 유의한 증가 확인

2. 2023년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 분석

○ (연구기간) 2024.1.1.~2024.11.30.

○ (소요예산 및 연구자) 2,000만원, 국립소방연구원

○ (주요내용)

- 2023년 전국 소방공무원 정기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질병 판정에 관한 역학적 분석 결과 도출
- 전국 소방공무원 정기건강진단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분석하고, 소방공무원의 청력 손실에 관한 역학적 분석 결과 도출

3. 소방업무 환경의 유해화학물질 노출 모니터링 연구

○ (연구기간) 2024.4.24.~2024.11.20.

○ (소요예산 및 연구자) 1억 4,200만원,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

○ (주요내용)
- 소방청사 환경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및 과불화화합물 오염에 관한 선행연구 등 문헌조사
- 소방청사 내 주요 국소환경 중 표면 먼지시료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및 과불화화합물 농도 평가
- 신임 소방대원 유해물질 노출 모니터링 코호트 시료 분석 및 유해물질 농도에 관한 프로파일 구축
- 기존 코호트 시료와의 데이터 병합 및 기술통계 자료 구축

4. 소방공무원의 유해물질에 관한 이차 노출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 연구 (추진 중)

○ (연구기간) 2025.1.1.~

○ (소요예산 및 연구자) 7,400만원, 국립소방연구원

○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유해물질 이차 노출 관리 관련 국내외 지침 등 문헌 조사
- 소방청사 환경의 먼지시료 중 유해물질 농도 평가
- 소방대원의 발암성 물질 노출과 제염 등에 관한 인식도, 신체 및 차량/장비 제염 등 위생수칙 이행 실태 및 방해요인, 이행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실태 조사
- 유해물질 이차 노출 최소화를 정책지원 방안 제시
- 효과적인 제염 및 환경 관리에 관한 보건관리 교육(직장훈련 등) 자료 개발

5. 이차 전지의 연소 시 공기 중 유해물질 발생 특성과 건강 유해성 연구 (추진 중)

○ (연구기간) 2025.1.1.~

○ (소요예산 및 연구자) 1억 400만원, 한국자원경제연구소

○ (주요내용)
- 이차 전지 연소 시 발생하는 건강 유해물질에 대한 국내외 연구 및 관련 정보 조사·정리
- 연소실험을 통한 이차 전지 연소 시 공기 중에 발생하는 건강 유해물질 방출 특성 평가
- 공기 중 화학물질 시료채취 및 분석법과 직독식 측정법을 이용하여 이차 전지 연소 시 발생하는 주요 건강 유해물질의 농도를 측정
- 이차 전지 화재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건강 위험성 관련 후속 연구의 방향 제언

□ 2026년 : 2건(예정)

1. 2024년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결과 분석 (예정. 추후 변경 가능)

○ (연구기간) 2026년~

○ (소요예산) 미정

○ (연구책임자) 미정

○ (주요내용)
- 2024년 전국 소방공무원 정기건강진단 결과를 분석하고, 질병 판정에 관한 역학적 분석 결과 도출
- 전국 소방공무원 정기건강진단의 비만 유병율 산출 및 역학적 분석 결과 도출

2.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유해인자 노출평가 및 환경보건 관리기술 개발 (예정. 추후 변경 가능)

○ (연구기간) 2026년~

○ (소요예산 및 연구자) 미정

○ (주요내용)
- 소방청사의 환경보건 유해인자 노출 정밀 조사 및 관리기준 수립
- 화재 오염물질 노출 저감을 위한 청사 내 환경 및 보호장구 제염 등 관리기술 개발
- 소방관의 유해물질 노출 평가 고도화를 위한 복합 화학물질 시료채취 기법

[참고 4] 공무상 질병 유형의 예시[344)]

Ⅲ. 공무상 질병 추정기준

3. 직업성 암

가.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나.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첫 노출 후 10년 이상 경과하여 발생한 중피종. 다만, 노출기간이 5년 미만이라도 석면관련 흉막판이나 석면폐증이 있는 경우는 공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방광암 또는 폐암

라. 함정, 군용트럭, 특수차량 등의 수리・보수・정비 업무 담당으로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마. 용접 또는 주물작업이 주 직무로서(근무일 중 4시간 이상), 10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폐암

바. 화재진압・구조가 주 직무로서, 5년 이상 근무 후 발생한 백혈병, 비호지킨 림프종 또는 다발성골수종

344)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혁신처 예규) 중 일부 발췌

2. 국립소방병원 운영(1131-305)

○ 소방청에 따르면 국립소방병원 수술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균실 클린룸 조성, 멸균물품 보관을 위한 항온항습기, 수술실 가스공급설비 등이 필요하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안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 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한정된 정부 자원을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는 것인데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한 필수시설 설치 예산을 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주요 질병에 대한 진료와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소방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정부의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개설허가를 위해 필요한 의사 인력 8명을 2025년 9월 말까지 모두 채용하는 계획을 2024년에 수립했었으나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4명만 실제로 채용되었음. 특히 2025년 10월 말 현재도 병원개설허가를 위해 필요한 의사 인력 중 2개 과(내과 또는 외과 중 1개 진료과, 영상의학과)의 의료인력을 아직 채용하지 못하고 있음. 소방청은 2026년도 의사직 인건비 예산을 1월~2월은 8명, 3월~5월은 30명, 6월~12월은 49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6년도에 채용 예정인 의사직 인력 채용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의사직 인력 채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인건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소방청은 의료인력 채용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국립소방병원 인근의 정주여건 강화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진 미확보 문제로 정상 개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국립소방병원 운영” 사업은 소방공무원의 주요 질병에 대한 진료 및 연구 수행 전담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345],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624억 1,800만원 대비 230억 800만원이 감액(△36.59%)된 394억 1,000만원이 편성되었음.

<국립소방병원 운영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결산	당초(A)	제2차 추경			%
국립소방병원 운영	71,753	62,418	69,067	39,410	△23,008	△36.9
○인건비	-	446	446	21,311	20,865	4,678.3
○경상운영비	-	511	511	7,655	7,144	1,398.0
○전산시스템	-	7,468	7,468	1,969	5,499	△73.6
○의료장비 도입 등	-	4,062	4,062	1,684	2,378	△58.5
○일반비품	-	5,014	5,014	1,666	3,348	△66.8
○의료용품	-	1,238	1,238	3,086	1,848	149.3
○정주여건 확보	-	153	153	541	388	253.6
○진료비감면	-	-	-	1,498	1,498	순증
국립소방병원 건립[346]	52,585	40,685	47,334	-	△40,685	순감
개원준비단 운영[347]	19,168	2,841	2,841	-	△2,841	순감

345)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 ① 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방공무원, 「소방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의무소방원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진료
2. 소방공무원등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
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응급의료사업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6.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방전문치료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구조·구급대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8. 소방공무원등 및 주민에 대한 보건교육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10.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나. 국립소방병원 운영: 병원시설 구비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주요 상병(傷病)에 대한 진료 및 연구 수행 전담의료기관을 설치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지표를 개선 및 국민에 대한 공공의료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는데,

소방청은 2018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20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22년부터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시작하여 2025년 6월에 국립소방병원 건립을 완료하였고,

2025년 12월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득과 2026년 6월 개원을 목표로 2025년 10월 현재 의료인력 선발, 의료기기 확충 등을 진행하고 있음.

346) 국립소방병원이 2025년 6월에 준공됨에 따라 국립소방병원 건립 관련 예산은 2026년에 편성되지 않았음.

347) 국립소방병원 건물이 2025년 6월에 준공되고 2026년 1월부터 시범운영이 실시될 예정임에 따라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 운영비는 2025년 11월까지만 편성되었고, 2025년 12월부터는 국립소방병원 운영비가 편성되었음.

<국립소방병원운영 사업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및 지원형태 : '25~계속 / 출연 (건립사업 '20~'25년 준공완료)

○ 추진근거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사업규모 : 302병상, 19개 진료과목, 연면적(지상 4층 / 지하 2층) 39,433㎡, 종합병원

< 준공 >



< 조감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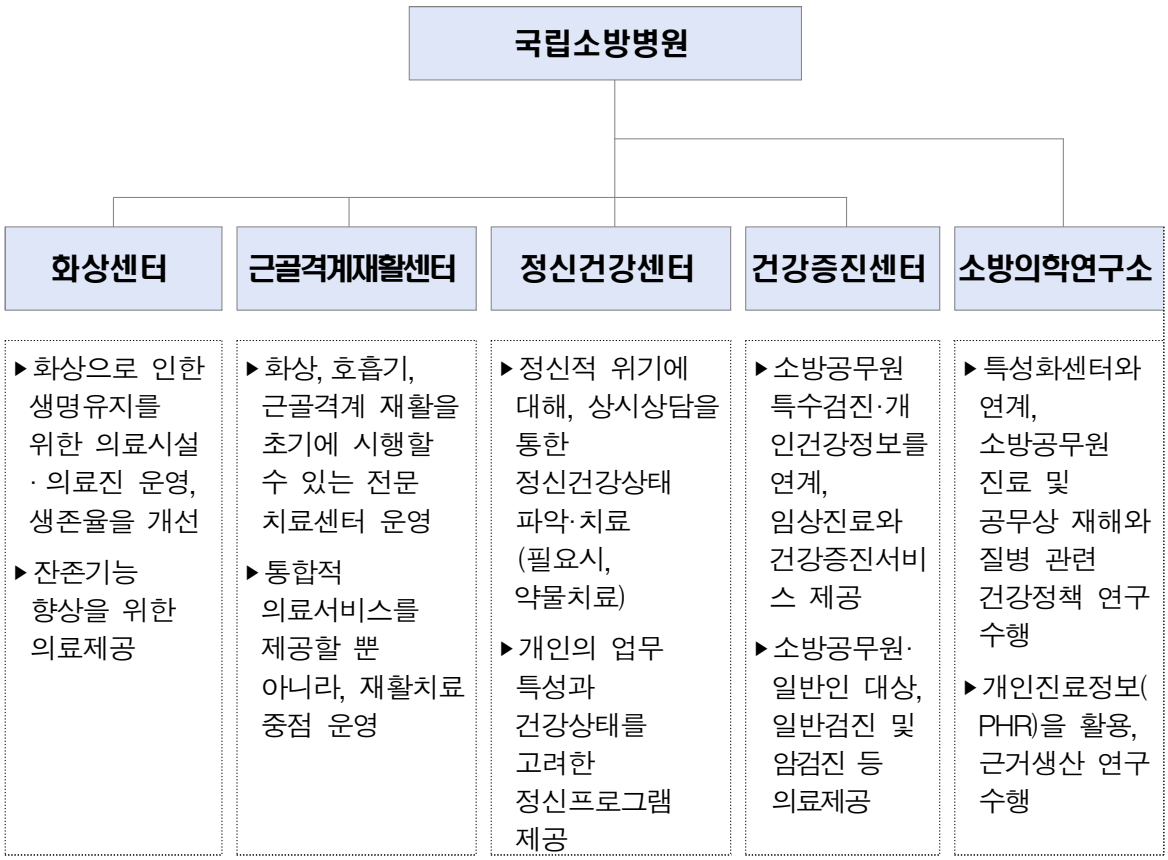
□ 설립 연혁

- 국립소방병원 법인설립 ····· '21. 12. 16.
- 병원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 체결(소방청·서울대병원) ····· '22. 06. 20.
- 건설사업관리용역(11. 8) 및 공사계약 체결(12. 1) → 공사착공 ····· '22. 12. 08.
- 국립소방병원 준공 완료 ····· '25. 06. 21.

□ 운영 일정(안)

<table>
<tr><th colspan="5">2025년</th><th colspan="5">2026년</th></tr>
<tr><th>6월</th><th>7월</th><th>8월</th><th>9월</th><th>12월</th><th>1월</th><th>2월</th><th>3월</th><th>4월</th><th>5월</th><th>6월</th></tr>
<tr><td rowspan="2">공사 준공</td><td rowspan="2">건축물 사용 승인</td><td rowspan="2">제규정 시행</td><td>인력배치 (1단계)</td><td>의료기관 개설</td><td colspan="2">일부진료</td><td>인력배치 (2단계)</td><td colspan="2">외래진료</td><td>개원 (실제운영)</td></tr>
<tr><td>모의진료</td><td>허가취득</td><td colspan="2">시범진료 준비</td><td colspan="3">시범진료</td><td>개원</td></tr>
</table>

□ 주요 기능



□ 진료 과목

* 총 19개 진료과목(내과 세분류 시 24개)

연번	진료과목		센터구분	연번	진료과목		센터구분
1	외과		화상센터	9	내과	호흡기내과	일반진료
2	성형외과					감염내과	
3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건강센터	10	소아청소년과		
4	정형외과		근골격계 재활센터	11	부인과(분만제외)		
5	재활의학과			12	신경과		
6	신경외과			13	응급의학과		
7	직업환경의학과		건강증진센터	14	진단검사의학과		
8	가정의학과			15	마취통증의학과		
9	내과	순환기내과	일반진료	16	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17	입원의학과		
		신장내과		18	이비인후과		
		내분비내과		19	치과		
주요장비 : MRI, CT, Angio, 고압산소치료기, 투시촬영기, 유방촬영기 등							

(자료: 소방청)

□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운영사업 예산안 394억 1,000만원은 전액 기관운영출연금(320-01)으로 편성되었음.

- 그 동안의 국립소방병원 운영 관련 경과를 살펴보면, 소방청은 2022년 6월에 「국립소방병원법」[348]에 따라 서울대학교병원과 병원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349] 2025년 6월 소방병원이 준공된 후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모의진료 및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6월 정식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국립소방병원 운영체계(위탁경영)>



(자료: 소방청)

- 위탁계약에 따라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이 2022년 8월에 구성되었고, 개원준비단은 2025년 11월까지 운영되는데[350],

국립소방병원 관련 예산이 최초로 편성된 2022년도에는 국립소방

348) 「국립소방병원법」
제19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소방병원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349) 위탁기간: 2022.6.20. ~ 2027.6.19. (5년)

350) 2025년 12월 부터는 '국립소방병원 운영' 내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음.

병원(법인)이 설립 중인 단계여서 국가사무의 일부를 민간에 위임하는 것으로 보아 국립소방병원 건립비를 제외한 비용은 모두 국립소방병원 개원준비단 운영비 내역에 포함하여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하였으나,

2025년 6월에 국립소방병원이 준공되었고 2025년 12월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획득을 계획 중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351] 향후 국립소방병원이 공공기관 지정이 확실시되며[352][353], 「국립소방병원법」에 출연 근거가 있다는 점[354]을 고려해서 2025년 예산부터는 국립소방병원 건립비를 제외한 모든 경비는 기관운영 출연금(350-01)으로 편성되었음.

---

3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52)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의 2025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해 2024년 8월 현황조사에 참여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음. 소방청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지정이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고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립소방병원이 실제 운영을 시작하는 2025년 12월 이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함.

※ 공공기관 지정 절차

현황조사	⇨	주무기관 협의	⇨	심의·의결	⇨	지정 고시
공공기관 지정 대상 현황조사 (8월~10월)		기획재정부와 주무기관 협의		공공기관운영위 심의·의결 확정		기획재정부 지정, 해제, 변경 고시(매년 1월)

353) 소방청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 총액인건비제 적용을 받게 되어 법정 한도 내에서만 의료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되므로 민간병원과 비교할 때 급여 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의료진을 확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나, 정부 예산지원을 받기 용이하고 경영평가 등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함.

354) 「국립소방병원법」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국립소방병원 운영 경비 편성 비목 변천 내역>

기 간	편성비목	예산 (단위: 백만원)	비고(세부 편성 내용)
2022. 8. ~ 2024. 12.	민간위탁 사업비 (320-02)	-2022: 600 -2023: 1,674 -2024: 19,168	소방병원 건립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인건비, 경상운영비, 전산시스템 구축비, 의료장비 도입비, 일반비품, 의료용품, 정주여건 확보 비용 등)
2025. 1. ~ 현재	기관운영 출연금 (350-01)	-2025: 21,733 -2026(안): 39,410	

<국립소방병원 출연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 승인	출연금 교부신청	출연금 교부결정	실적보고	모니터링
소방병원	소방청	소방병원	소방청	소방병원	소방청

(자료: 소방청)

□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운영 사업 예산안 편성내역을 살펴보면[355],

① 의사직 49명, 간호직 186명 등 총 370명의 의료인력 인건비로 213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고(2025년 4억 4,600만원 대비 4,678.3% 증액), ② 4대보험료 등 복리후생비 490억 4,000만원, 시설유지·보안·환경·급식 등을 위한 외주용역비 23억 2,000만원, 공공요금, 법정점검 등을 위한 관리운영비 21억 5,100만원 등

355)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운영예산은 비용과 수익을 추계하여 수익과 지출의 차이 만큼 지원하는 방식(수지차 방식)으로 정부예산안을 편성하였음.

경상경비가76억 5,500만원 편성되었으며(2025년 5억 1,100만원 대비 1,398.0% 증액),

③ 전산시스템 운영을 위한 위탁용역비가 19억 6,900만원 편성되었고(2025년 74억 6,800만원 대비 73.6% 감액), ④ 의료장비 구매비가 16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2025년 40억 6,200만원 대비 58.5% 감액), ⑤ 그 밖에 일반비품 구매비가 16억 6,600만원, 의료용물품 구매비가 30억 8,600만원, 의료진의 정주요건 확보를 위하여 5억 4,100만원, 소방공무원 진료비 지급을 위한 비용이 14억 9,800만원 편성되었음.

<국립소방병원 운영 사업 2026년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table>
<tr><th>구 분</th><th>'25년
예산</th><th>'26년
정부안</th><th>증감</th><th>비 고</th></tr>
<tr><td>합 계</td><td>62,418</td><td>39,410</td><td>△23,008</td><td>비용총액 : 47,655백 – 예상수익 8,245백</td></tr>
<tr><td>❶ 국립소방병원 건립 등</td><td>40,685</td><td>-</td><td>△40,685</td><td>건립 완료</td></tr>
<tr><td>❷ 개원준비단 운영비</td><td>2,841</td><td>-</td><td>△2,841</td><td>의료기관 개설허가에 따른 개원준비단 해단</td></tr>
<tr><td>❸ 인건비</td><td>446</td><td>21,311</td><td>20,865</td><td>·인건비 21,311(비용25,543–수익4,232)
·(단가) 서울대학교병원 파견직의사 평균 급여/ 일반직 2025 소방병원 실행예산
·(물량) 정원 370명
* 의사직 49, 간호직 186, 일반직 90, 기능직 45
<table>
<tr><th>구분</th><th>의사직</th><th>약무직</th><th>간호직</th><th>보건직</th><th>사무직</th><th>기술직</th><th>기능직</th><th>합 계</th></tr>
<tr><td>인원</td><td>49명</td><td>6명</td><td>186명</td><td>51명</td><td>21명</td><td>12명</td><td>45명</td><td>370명</td></tr>
<tr><td>금액
(백만원)</td><td>11,696</td><td>336</td><td>8,362</td><td>2,131</td><td>1,061</td><td>710</td><td>1,247</td><td>25,543</td></tr>
</table>
·(참고) 서울병원위탁 서산의료원 4억원,
인천적십자 3.5억원</td></tr>
<tr><td>❹ 경상경비</td><td>511</td><td>7,655</td><td>7,144</td><td>·경상경비 7,655(비용9,375–수익1,720)
(복리후생) 4,904
* 4대보험, 퇴직금등 법정부담금 인건비의 약 19.2%
(외주용역) 2,320
* 시설유지, 보안, 환경, 급식, 콜센터 등
(관리운영비) 2,151
* 공공요금, 법정점검, 지급수수료 등</td></tr>
<tr><td>❺ 전산시스템 전산위탁용역</td><td>7,468</td><td>1,969</td><td>△5,499</td><td>·전산위탁용역 1,969(비용2,470–수익501)
(인건비) 1,434
(제경비 및 기술료) 1,036</td></tr>
<tr><td>❻ 의료장비</td><td>4,062</td><td>1,684</td><td>△2,378</td><td>·의료장비 1,684 (비용2,113–수익429)
(외래진료과) 1,685, (진료지원) 428</td></tr>
<tr><td>❼ 일반비품</td><td>5,014</td><td>1,666</td><td>△3,348</td><td>·일반비품 1,666(비용2,090-수익424)
(가구비품) 1,600, (일반비품) 490
* 가전물품, 전산비품</td></tr>
<tr><td>❽ 의료용물품</td><td>1,238</td><td>3,086</td><td>1,848</td><td>·의료용물품 3,086(비용3,504-수익418)
(진료재료) 1,576, (약 품) 1,254, (의료물품) 674</td></tr>
<tr><td>❾ 정주여건 확보</td><td>153</td><td>541</td><td>388</td><td>·정주여건 541(비용679-수익138)
(보증금) 360 , (임차료) 307 , (수수료) 12
*의사직 25호, 일반직 13호</td></tr>
<tr><td>❿ 진료비 감면 사업비</td><td>-</td><td>1,498</td><td>1,498</td><td>·소방공무원 진료비 지급</td></tr>
</table>

(자료: 소방청)

□ 국립소방병원은 「국립소방병원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고 사업성격 상 비영리재단법인이므로 기본재산의 출연을 통하여 기관 고유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국립소방병원법」에 따르면 국립소방병원의 운영 재원은 사업 수익금, 국가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구성되나[356], 2022년 의료법인 설립 후 별도의 기본재산 출연이 없어 현재로서는 정부의 출연금 예산을 통해 의료사업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고 보임.

□ 다만, 소방청에 따르면 국립소방병원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술실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무균실 클린룸 조성, 멸균물품 보관을 위한 항온항습기 설치, 수술실 가스공급설비 마련 등이 필요하나,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운영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안이 편성되지 아니하였음.

- 소방청은 2024년~2025년에 필요 의료장비 및 설비 계획 수립 중 신규 설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수술실 등 관련 설비는 국립소방병원 건립비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라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하였고 2026년도에는 건립비 예산도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 수술실 등 관련 설비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였다고 설명함.

356)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재원) 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수술실, 무균실 등의 조성을 위한 추가 예산 필요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내 용[357][358]	단가	물량	소요금액
설비 비품	합 계			1,202
	멸균보관실 UPS 실 항온항습기	40	4	160
	FCU중앙제어 집중화 컨트롤 장치	0.36	470	170
	자동제어설비 백업 장치	110	1	110
	수술실 가스공급 설비	14	5	70
	ANGIO실 및 무균실 클린룸 조성 설비 (BFU[공기순환장치], 배관, 자동제어기 등)	34.6	6	208
	AV시스템, 승강기제어시스템 등	23.5	10	235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비품 등	5.6	6	34
	건물 유지를 위한 기타소모품	0.13	1,650	215

(자료: 소방청)

357) 소방청이 제시한 각 설비비품의 필요성은 [참고] 참조

358) 소방청은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함.

설비비품	미확보시 문제점
멸균보관실 UPS 실 항온항습기	- 항온항습 유지 못 할 경우 의료물품 멸균 유지 어려움으로 필수 필요 - UPS 장치 배터리 온도 증가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로 필수 필요
FCU중앙제어 집중화 컨트롤 장치	- 에어컨 등 공조기 중앙제어장치로 개별 제어 시 운영 어려움이 있음 *소방병원 실방 1000개 이상
건물 시설 자동제어설비 백업 장치	- 백업장치 없을시 블랙아웃 상황 발생하여 수술이 멈추게 될 수 있음
수술실 가스공급 설비	- 수술실 내 이산화탄소 가스공급설비가 없어 복강경 수술 진행 불가
ANGIO실 및 무균실 클린룸 조성 설비 (BFU[공기순환장치], 배관, 자동제어기 등)	- 혈관조형장비를 통하여 의료시술이 진행하려면 클린룸 조성이 필요하며, 미확보시 의료시술(인터벤션(ex: 스탠트 삽입술) 시술) 불가
AV시스템, 강기제어시스템 등	- 교육, 세미나, 회의 등에 사용할 음향, 영상기기 시스템 구축 필요 - 중앙통제실에서 승강기 현장확인 및 비상상황 파악 및 제어 시 필요
보일러 흡수식 냉온수기 비품 등	- 시설장비 가동에 따른 지속적인 소모품 교체 필요
건물유지를 위한 기타소모품	- 병원의 기본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건물유지 소모품 등 필요

(자료: 소방청)

<2025 및 2026 국립소방병원 건립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기준일: 2025. 9월 말)

구 분	2025 예산현액	2025 집행액	2025 집행예정	2025 집행잔액	2026 예산안
국립소방병원 건립	81,735	63,725	18,010	-	-
공사비	57,777	41,030	16,747	-	-
감리비	2,117	855	1,262	-	-
시설부대비	108	107	1	-	-
출연금*	21,733	21,733	21,733	-	39,410

* 2025년도 출연금은 국립소방병원이 실집행을 완료할 예정임. 다만, 통합정보시스템구축은 12월 완료 예정이나 검수 후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대금지급이 연기되어 사고이월 가능성 있음

(자료: 소방청)

- 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한정된 정부 자원을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배분하는 것인데,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을 정부의 예산안 편성 단계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소방청은 2024년에도 의료기관 허가를 위한 필수시설인 의료가스장비 배관, 방사선차폐시설을 포함한 헬리패드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하여 다른 사업 예산의 전용을 통해 해당 공사를 시행하는 등 국립소방병원의 진료 관련 설비의 예산 확보에 차질을 빚었음.

<2024 전용 증액[359]을 통한 국립소방병원 필수 의료시설 설치 내역>

(단위: 백만원)

집행내역	선금 집행액[360]	선금 집행일자	비고(공사기간)
헬리패드[361] 공사	1,400	24.12.30	24.10.14~25.05.20
의료가스 장비 배관공사	150	24.12.30	24.08.19~25.05.20
방사선 차폐 공사	68	24.12.30	24.08.21~25.05.20
계	1,618		

(자료 : 소방청)

- 향후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이 소방공무원의 주요 질병에 대한 진료와 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소방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을 정부의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일반출연금의 경우, 출연금 지급은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

359) 2024년 국립소방병원 필수 의료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전용 재원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전용 ('24.10.)	전국소방헬기통합 관리운영지원(312)	420-03	1,218	국립소방병원건립	420-03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119항공정비실 공사비 불용예정액을 공사비로 전용
전용 ('24.10.)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301)	420-03	97	국립소방병원건립	420-03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구조본부 불용예정액을 공사비로 전용
전용 ('24.10.)	지진대비대응역량 강화(305)	420-03	303	국립소방병원건립	420-03	국립소방병원 건립 부족재원 마련을 위해 중앙구조본부 불용예정액을 공사비로 전용
계			1,618			

※ 자료: 소방청

360) 소방청은 공사비 중 일부를 노무비와 자재구매를 위한 선금으로 2024. 12. 30일에 지급하였다고 밝힘. (총 공사비: 헬리패드 28억, 의료가스 26억, 방사선차폐 6억)

361) 소방청은 헬리패드는 헬기 착륙을 위한 장소로, 병원 건물에 헬리패드가 설치되면 응급환자 헬기 이송 시 즉각 처치가 가능하여 소생률을 높일수 있는데, 병원 건립 공사 중 헬리패드 공사를 실시하지 않고 완공 이후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로 인한 소음과 병원 이용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 등 우려가 있으며, 또한 병원 운영도 어려움이 예상되어 2024년에 공사를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지지만, 출연금 정산을 포함한 출연금 관리에 관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어 법적인 정산의무가 없고 이월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관리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음[362].

- 특히 국립소방병원의 경우 개원준비단의 운영예산 집행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운영비 초과집행이 발생한 바 있음.

<2022~2024년 개원준비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인건비			운영비			합계		
	편성	집행	집행률	편성	집행	집행률	편성	집행	집행률
2022	546	89	16.0	54	127	235.0	600	216	36
2023	1,366	711	52.0	308	442	144.0	1,674	1,153	69
2024	1,992	1,954	98.16	134	491	371.6*	2,126	2,445	115.0

※ 국립소방병원 관련 예산에는 건립비, 개원준비단 인건비·운영비 외에 전산시스템 구축비, 의료장비 구매비 등이 있음. 초과 집행한 개원준비단 운영비는 인건비나 전산시스템 구축비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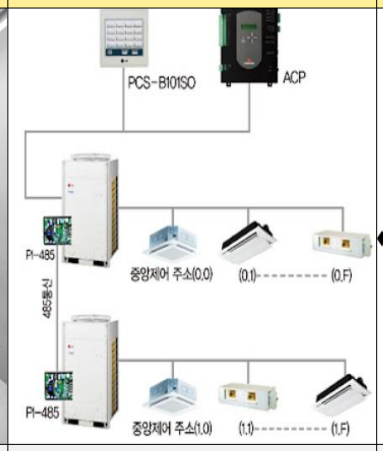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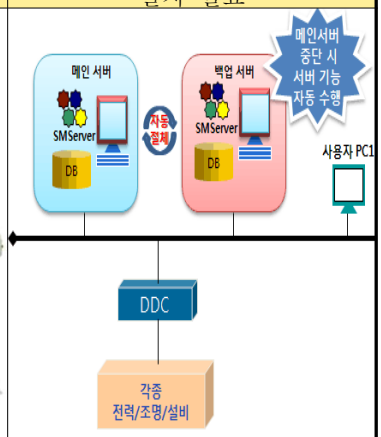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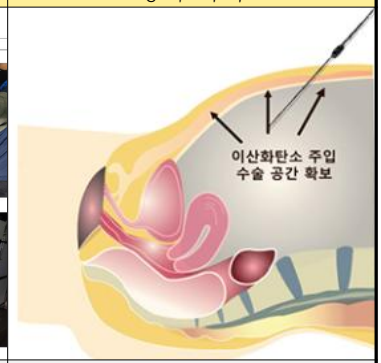
(자료: 소방청)

- 향후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이 합리적으로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출연금 편성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363].

362) 국회의정연수원, 예결산검토 표준교재(출연금), 2024, 28면.

363) 이와 관련해서 국립소방병원은 소방청의 승인을 받아 「국립소방병원 출연금 관리 규정」을 제정하였고('25.7.18.), 출연금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립소방병원 기관운영출연금 관리방향 」('24.11.6.)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예산집행 및 관리하고 있으며, 국립소방병원의 본예산, 변경예산, 예산이월, 결산 등은 소방청의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하고, 출연금 집행결과 및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힘.

[참고] 2026 추가 설치가 필요한 설비비품 및 필요성

구분	이미지		
기타비품			
	ANGIO실 및 무균실 클린룸 조성 설비	광대역증폭기	멸균보관실 항온항습기
	클린룸 조성을 통해 시술을 수행하기 위한 설비 마련 필요	TV, FM 망구축을 위해 설치가 필수적임	멸균물품 보관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항온항습기 설치 필요
			
	UPS 설비 설치	FCU 중앙제어 집중화	자동제어설비 백업시스템
	UPS실 배터리 안정성을 위한 적정 온도 유지 필요	중앙제어가 되지 않기에, 인력 및 에너지 관리 도모	메인제어 중단 시, 블랙아웃현상 방지 목적
			
	공기조화기 필터 교체		수술실 가스공급설비
	국립소방병원 공조기 필터 주기적 교체 필요		수술실 가스 공급설비 마련하여 수술여건 개선 도모

(자료: 소방청)

다.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등 인력충원 계획 강화 필요

□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인건비 예산은 213억 1,100만원이 편성되었음.

소방청은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인건비 예산을 국립소방병원 개원 일정을 고려하여 단계적 인력배치 계획에 따라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2026년도 국립소방병원 인건비 편성 내역>

○ 국립소방병원 개원일정

1단계(1~2월)	→	2단계(3~5월)	→	3단계(6~12월)
시범진료 준비		시범진료 및 개원준비		개원

○ 2026년 총소요 : 21,311백만원(비용 25,543백만원 - 수익 4,232백만원)

- (1~2월) 84명(보건직 등 보강) 인건비 996백만원(2개월)
- (3~5월) 215명(의사 등 보강) 인건비 4,137백만원(3개월)
- (6~12월) 370명(의사 등 보강) 인건비 20,410백만원(7개월)

※ 2026년 직종별 소요

(단위: 명,백만원)

구분	의사직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사무직	기술직	기능직	합계	소요금액	비고 (동 기간 중 충원 인원)
합계	**49**	6	186	51	21	12	45	370	25,543	
1~2월	**8**	2	40	6	13	10	5	84	996	약무직(1), 간호직(3)
3~5월	**30**	4	120	25	16	10	10	215	4,137	의사직(22) 약무직(2), 간호직(80), 보건직(19), 사무직등(8)
6~12월	**49**	6	186	51	21	12	45	370	20,410	의사직(19) 약무직(2), 간호직(66), 보건직(26), 사무직등(42)

(자료: 소방청)

□ 현재 국립소방병원은 2025년 12월 말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득을 목표로 의료진 등 인력을 충원하고 있음.

-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개설 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전문의 7명, 약무직 1명, 간호직 36명, 보건직 2명 등 총 46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함. 인력 충원 현황을 살펴보면, 2025년 7월에 실시한 일반직 인력 채용을 통해 약무직, 간호직, 보건직 등의 인력은 병원 개설 허가 신청에 필요한 인원을 모두 선발하였으나[364], 의사직 채용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의사직 인력의 경우 소방청은 국립소방병원 개설허가를 위해 필요한 의사 인력 8명을 2025년 9월 말까지 모두 채용한다는 계획을 2024년에 수립했었으나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4명만이 실제로 채용되었음[365].

364) - 소방청은 현재 선발된 인력은 단계적으로 채용·근무 중이며, 2025년 12월 초까지는 모든 채용인력이 국립소방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 2025년 7월 국립소방병원 일반직 인력 채용 현황을 살펴보면 선발 예정인원 48명에 비해 총 544명이 응시하는 등 11.3:1의 경쟁률을 기록하여 총원 기준으로는 인력 충원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5년 7월 국립소방병원 일반직 인력 채용 현황>

직종	채용인원	응시인원	비 고
사무직	5	120	원무행정(1), 기획(1), 회계(1), 급여(1), 물류(1)
보건직	6	154	임상병리사(1), 방사선사(2), 영양사(1), 보건의료정보관리사(1), 사회복지사(1)
기술직	1	9	통신(1)
간호직	34	235	간호사(34)
운영가능직	2	26	원무(2)
계	48	544	

365) 소방청은 의사직 인력 채용을 위해 2025년에 6월, 8월, 9월, 10월에 총 4회 의사직 인력 채용 공고를 하였음.

특히 2025년 10월 말 현재도 병원개설허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중 2개 과(내과 또는 외과 중 1개 진료과, 영상의학과)의 의료인력을 아직 채용하지 못하고 있음.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충원 계획 및 현황(진료과목별)>

(단위: 명)

연번	진료과목	정원	2025년 9월말 기준 인원	
			2024년 말 기준 충원 계획	2025년 9월 말 현재 현원
1	소화기내과	3	1	-
2	호흡기내과	1		
3	순환기내과	3		
4	내분비내과	1		
5	감염내과	1		
6	신장내과	1		
7	외과	4	1	-
8	정형외과	3		
9	신경외과	2		
10	성형외과	2		
11	신경과	3		
12	정신건강의학과	2		
13	산부인과	1	1	1 (11월배치)
14	소아청소년과	2	1	1 (11월배치)
15	이비인후과	1		
16	재활의학과	2		
17	가정의학과	1		
18	응급의학과	4		
19	마취통증의학과	3	1	-
20	영상의학과	4	1	-
21	진단검사의학과	1	1	1
22	치과	-		
23	직업환경의학과	1		
24	입원의학과	2		
25	병원장	1	1	1
합 계		49	8	4

※ 의사 정원은 「국립소방병원 의료·운영계획 연구용역」에 근거
※ 2025년 충원은 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필수진료과 선발을 우선으로 함
(자료: 소방청)

□ 소방청은 2025년도 병원개설허가 및 2026년도 개원 시 의료 인력 충원 계획과 관련해서 국립소방병원 의사 49명 전원을 서울대학교병원의 임상교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파견받을 계획이나,

전원을 임상교수급 자격자로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진료교수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파견받을 계획이고, 진료교수급 의사로도 충원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국립대병원 퇴직교수를 자체적으로 채용하거나 인근 대학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의사를 파견 받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힘.

<2025년 및 2026년 소방청의 국립소방병원 의료진 확보 계획>

□ 의료기관 개설 허가 필요 의사 현황

○ 의사직 채용 현황(2025. 11월 초 현재)

진료과	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개설허가 필요인력	7명	4명					1명	1명	1명
확보인원	5명	-	-	1명 (11월배치)	1명 (11월배치)	1명 (11월배치)	-	1명 (11월배치)	1명 (9월)

- 서울대병원 1~4차 채용 공고(6월, 8월, 9월, 10월)를 통해 5명 전문의 확보

※ 충원필요 진료과(2개) : 내과, 외과 중 1개 진료과 및 영상의학과

○ 미확보 의사 충원계획

- 미확보 진료과 의사 서울대병원 및 소방병원 자체채용 병행

□ `26년 의사직 확보 계획

○ '26년 의사직 채용계획

구 분		'25.10	'25.11	'25.12	'26.01	'26.02	'26.03
정원 49명	서울대병원	① 진료과별 배치인력 파악(10월중) ② 진료과별 인력배치 확정(11월~12월)			→ 매월 추가 확보진행		
	소방병원				→ 부족인력 병행채용		
	계	`25년 8명 채용 완료 추진			`26년 41명 채용 완료 추진		

○ 주요사항

- 서울대병원 의사직 수요조사 실시 ('25년 10월 ~ 11월)
- 수요조사를 통하여 '26년 임상교수 충원 예정 ('26년 3월 발령)

※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증원규모 반기별 약 15명 수준으로 소방병원 개원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 수요를 고려한 임상교수 증원 배치

[서울대학교병원 임상교수 증원 현황]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상반기(3월)	16	15	3	8
하반기(9월)	13	5	5	7

주1) 의정갈등 시기인 23년 이후 제외 및 20~22년 코로나 상황 감안

주2) 매년 상반기 평균 7명의 추가 증원, 소방병원 특수성을 감안 추가 증가예상

(자료: 소방청)

- 그러나, 2025년 10월까지 4차례의 공고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의사직 인력을 확충하지 못하였고, 2025년 6월 기준으로 전국 공공의료기관 198곳 중 45.4%인 92곳이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데[366]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경찰병원 역시 외과 등 필수과의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며[367],

소방병원의 경우 타 공공병원들과 달리 기숙사(관사)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지리적인 위치 상 의료진 정주여건이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368],

국립소방병원 의료인력을 계획대로 충원하지 못할 우려도 제기될 수 있다고 보임[369][370].

---

366) 경향신문, 공공의료기관 의사, 정원보다 4700여명 부족, 2025. 10. 15.

367) 경찰병원의 의사직 정원은 75인이나 2025년 9월 말 기준 현원은 68인임. 공석은 외과 1인, 정형외과 1인, 비뇨의학과 1인, 산부인과 1인, 소화기내과 1인, 피부과 1인, 건강증진센터(직업환경의학과) 1인 등 총 7인임(자료: 경찰청).
한편, 현재 공석인 의무직 결원 발생 후 경찰병원은 해당 과목의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꾸준히 채용 절차를 진행중이나 지원자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힘.

<경찰병원의 공석인 의무직 채용 절차 진행 현황(2025. 9월 말 기준)>

진료과목	공석발생	공석발생 후 채용내역	지원자수
외과	24.12.31. 이후	총 1회 공고('25년 제3회 공고)	0
정형외과	24.08.31. 이후	총 5회 공고('24년 제3회, 제4회, 제5회, '25년 제2회, 제3회 공고)	0
비뇨의학과	24.04.30. 이후	총 3회 공고('24년 제3회, 제4회, '25년 제3회 공고)	0
산부인과	23.02.15. 이후	원장승진으로 인한 공석, 산부인과 전문의 2인으로 채용 진행 안함	
소화기내과	25.02.26. 이후	총 1회 공고('25년 제3회 공고)	0
피부과	24.10.16. 이후	총 3회 공고('24년 제4회, 제5회, '25년 제3회 공고)	0
건강증진센터 (직업환경의학과)	18.10.22. 이후	코로나 전까지 매년 2회 공고 진행, 향후 채용 진행 예정	0

(자료: 경찰청)

368) 소방청은 우수의료진 확보를 위해서는 지리적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주여건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나, 2026년도 예산안 중 의료진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총 소요는 13억 5,800만원인데 비해 실제로 편성된 예산은 5억 4,100만원이라고 설명함.

□ 소방청의 계획대로 2025년 12월 말까지 개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025년 12월 초까지는 개설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371]. 이때까지 개설 허가 신청을 위한 의사직 인력 기준(7명)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설 허가가 늦어질 것인데, 이 경우 소방청이 계획한 2026년 상반기 6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이 줄어들거나 정식 개원이 늦어질 수 있음.

- 소방청은 2026년도 의사직 인건비 예산을 1월~2월은 8명, 3월~5월은 30명, 6월~12월은 49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26년도에 채용 예정인 의사직 인력이 채용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의사직 인력 채용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는 인건비 등 예산 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소방청은 의료인력 채용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우수한 의료인력의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국립소방병원 인근의 정주여건 강화 등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진 미확보 문제로 정상 개원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임[372].

---

369) 실제로 2025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국립소방병원 의사 확보가 지지부진해 2026년 6월 정식 개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

370) KBS 뉴스, 국립소방병원, 연말 부분 개원인데…전문의 확보 난항, 2025. 10.13.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79556)

371) 소방청에 따르면 의사직 인력 채용 공고부터 채용까지 3주~4주 정도 기간이 소요됨.

372) 이와 관련, 소방청은 정주여건 개선 및 의료진 확보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여 의료인력 채용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임.

[참고] 국립소방병원 중기 인력 운영 계획(안)

(단위: 명)

연 도	전체인력	의사직	간호직	약무직	보건직	사무직	기술/일반직	기능직(사무)	기능직(간호조무)
2025.12.*	80	8	37	1	6	13	10	5	-
2026.06	370	49	186	6	51	21	12	45	-
2027	616	49	288	12	63	36	17	34	117

※ 302병상 100% 운영시 인원임.

(자료: 소방청)

3.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1133-300)

○ 소방청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을 2026년부터 5년간 실시할 예정인데(국비:지방비=50:50), 그동안 동 사업의 추진 일정은 계획에 비해 지연되는 경향이 있었고, 비상소화장치의 사용을 위해서는 상수도 급수관로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소방청은 일부 비상소화장치함의 설치 위치를 2026년도 예산사업인 '119빅데이터 분석사업(2026 예산안 4억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사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음. ○ 노후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사업은 2026년부터 3년간 전국의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등 화재취약계층 총 149만 8,000세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임(국비:지방비=80:20). 시·도 소방본부는 2025년도에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을 시행 중이나 소방청은 2026년 이후 시행하는 동 사업 수요에 해당 가구를 중복 산정하였는 바, 향후 수요 산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방청은 노후아파트 거주자의 화재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신청률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은 화재예방 및 제도 개선 발굴, 화재예방법 추진 안전관리 강화, 소방시설법령 제·개정 및 민원센터 운영, 중앙소방특별조사단 운영, 다중이용업수 화재위험평가,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 노후 아파트 연기 감지기 보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도 당초 예산액 11억 1,700만원 대비 93억 9,000만원 증액(923.3%)된 104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당초 (A)	1차 추경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905**	**1,017**	**6,180**	**10,407**	**9,390**	**923.3**
·화재예방 및 제도 개선 발굴	91	75	75	75	-	-
·화재예방법 추진 안전관리 강화	119	139	139	159	20	14.4
·소방시설법령 제·개정 및 민원센터 운영	183	219	219	219	-	-
·중앙화재안전 조사단 운영	332	344	344	344	-	-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130	190	190	140	△50	△26.3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	-	-	5,163	2,280	2,280	순증
·노후 아파트 연기 감지기 보급	-	-	-	7,190	7,190	순증
·대국민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50	50	50	-	△50	순감

나.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를 위한 집행관리 철저 필요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 사업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고 규모도 대형화되면서 산림인접마을의 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산림인접마을 주민 스스로가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5년간(2026년~2030년) 비상소화장치함 2,280개 설치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6년도에는 비상소화장치함 456개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22억 8,0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2026년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 사업: 예산안 편성 내역>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5,163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5,163백만원 가. 소화전+비상소화장치함 348개×7.5백만원=2,610백만원 나. 비상소화장치함 : 851개×3백만원=2,553백만원	2,280	○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 : 2,280백만원 가. 비상소화장치함 : 456개×5백만원[373]=2,280백만원

373) 2025년도 2차 추경 사업에서 소방청은 비상소화장치함 단가를 1개당 300만원으로 책정하였고 소화전+비상소화장치함은 1개당 750만원으로 책정하였으나, 2026년도 예산안은 비상소화장치함 단가를 500만원으로 책정하였음. 이와 같이 비상소화장치함에 대하여 연도별로 다른 단가를 적용한 이유에 대하여 소방청은 ‘25년 설치시에는 설치유형에 따라 유형별 기준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6년에는 지자체에서 설치위치 여건에 맞게 설치 유형을 조정할수 있도록 중간가격으로 하여 개소당 500만원 국고보조 지원 금액을 편성하였다고 설명함.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6년 ~ 2030년

□ 사업규모 : 비상소화장치함 456개 ※ 5년간 총 2,280개소 설치예정

- 456개 × 10백만원×국고보조 50% = 2,280백만원

- 설치유형

① 소화전+비상소화장치 (소화전 미설치된 지역)	② 비상소화장치 (소화전 기설치된 지역)	함 내부 사진
		

※ 설치위치 여건(소화전 有,無) 맞게 설치 유형을 조정

□ 총사업비 : 228억원(국비 114억원, 지방비 114억원)

□ 사업수행방법 : 자치단체 경상보조(50%)

□ 집행절차

기본계획수립 (시도본부) ▶ 설계용역입찰 (시도본부) ▶ 실시설계 (수행기관) ▶ 공사용역입찰 (시도본부) ▶ 설치공사 (수행기관) ▶ 준공검사 (시도본부)

<참고> 2025년 추가경정예산

□ 사업규모 : 비상소화장치함 1,199개

- 유형 ❶ (소화전+비상소화장치) 348개소 x 15백만원 x 50%(국비) = 2,610백만원
- 유형 ❷ (비상소화장치) 851개소 x 6백만원 x 50%(국비) = 2,553백만원

□ 총사업비 : 103억원(국비 51.6억원, 지방비 51.6억원)

※ 자료: 소방청

<2020년 이후 각 시도별 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

[소방국가화재정보시스템 기준(2020년 ~ 2025. 6월)]

시도 (소방본부)	발생건수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소계 (천원)	소실면적 (㎡)
		사망	부상		
계	3,167	48	274	1,438,701,493	1,244,367,314
강원	330	2	59	63,923,900	71,948,305
경기	667	1	29	3,175,433	3,071,470
경남	296	5	29	44,711,257	54,915,213
경북	437	29	80	1,303,504,526	1,075,333,101
광주	33	-	1	169,411	121,631
대구	87	1	18	199,451	4,134,625
대전	21	-	1	10,510	37,539
부산	84	-	3	366,821	363,439
서울	54	-	-	4,778	95,017
세종	30	-	3	54,687	23,476
울산	102	2	8	4,447,422	15,634,522
인천	61	-	1	608,130	1,041,757
전남	246	2	6	4,207,931	8,576,642
전북	193	3	12	1,393,845	1,171,421
제주	8	-	-	22,327	28,433
창원	24	-	2	40,393	76,721
충북	115	-	7	482,339	2,661,289
충남	307	2	11	10,859,985	4,868,625

자료: 소방청

□ 이 사업은 2019년 4월 강원도 고성 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고성 홍와솔 마을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한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여 주택 22채 중 19채를 화재로부터 지켜낸 사례에 착안한 것으로,

2020년에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820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4년도 말까지 전국 총 2,807개소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고,

2025년 10월 현재 전국 시·도 1,199소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등 2025년 말까지 총 4,006개의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될 예정임.

<전국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374]>

(2025 12. 31. 기준)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4,006	25	10	61	15	63	11	93	12	22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창원
	1,915	115	77	91	130	1,088	63	2	8

(자료: 소방청)

- 참고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은 2020년, 2022년, 2023년, 2025년에 실시되었는데, 2020년, 2022년, 2025년에는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였고, 2023년도에만 본예산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시행되었음[375]

374) 2,807개소 중 1,664개소는 국비 지원(지원률: 50%, 지원액: 109억원)을 통해 설치하였고, 1,143개소는 시도에서 자체예산으로 설치하였음.

375) 소방청은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은 지방비(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이었고, 그 동안 국비는 2020년, 2022년도에 추경 예산으로 편성·지원되었으며, 2023년도에만 일반회계 본예산(민간경상보조)으로 편성·지원하였다고 설명함(지원률: 50%). 2023년도의 경우, 정부안에는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동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54억 2,300만원이 본예산에 반영되었음.

<연도별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 확충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table>
<tr><th>연 도</th><th>본예산
편성액</th><th>추경예산
편성액</th><th>계</th><th>비 고
(설치 지역, 규모)</th></tr>
<tr><td>2020</td><td>-</td><td>3,500</td><td>3,500</td><td>
<table>
<tr><th>구분</th><th>합계</th><th>경북</th><th>강원</th></tr>
<tr><td>계</td><td>820</td><td>-</td><td>820</td></tr>
<tr><td>유형1
(소화전비소함)</td><td>550</td><td>-</td><td>550</td></tr>
<tr><td>유형2
(비소함)</td><td>270</td><td>-</td><td>270</td></tr>
</table>
</td></tr>
<tr><td>2021</td><td>-</td><td>-</td><td>-</td><td>-</td></tr>
<tr><td>2022</td><td>-</td><td>1,963</td><td>1,963</td><td>
<table>
<tr><th>구분</th><th>합계</th><th>경북</th><th>강원</th></tr>
<tr><td>계</td><td>627</td><td>177</td><td>450</td></tr>
<tr><td>유형1
(소화전비소함)</td><td>27</td><td>27</td><td>0</td></tr>
<tr><td>유형2
(비소함)</td><td>600</td><td>150</td><td>450</td></tr>
</table>
</td></tr>
<tr><td>2023</td><td>5,423</td><td>-</td><td>5,423</td><td>
<table>
<tr><th>구분</th><th>합계</th><th>경북</th><th>강원</th></tr>
<tr><td>계</td><td>1,044</td><td>438</td><td>606</td></tr>
<tr><td>유형1
(소화전비소함)</td><td>509</td><td>106</td><td>403</td></tr>
<tr><td>유형2
(비소함)</td><td>535</td><td>332</td><td>203</td></tr>
</table>
</td></tr>
<tr><td>2024</td><td>-</td><td>-</td><td>-</td><td>-</td></tr>
<tr><td>2025</td><td>-</td><td>5,163</td><td>5,163</td><td>
<table>
<tr><th>시 도</th><th>합계</th><th>①유형
(소화전+비소함)</th><th>②유형
(비소함)</th></tr>
<tr><td>합계</td><td>1,199</td><td>348</td><td>851</td></tr>
<tr><td>대구</td><td>60</td><td>20</td><td>40</td></tr>
<tr><td>대전</td><td>24</td><td>19</td><td>5</td></tr>
<tr><td>울산</td><td>50</td><td>18</td><td>32</td></tr>
<tr><td>세종</td><td>19</td><td>7</td><td>12</td></tr>
<tr><td>경기 남부</td><td>90</td><td>50</td><td>40</td></tr>
<tr><td>경기 북부</td><td>40</td><td>23</td><td>17</td></tr>
<tr><td>강원</td><td>63</td><td>35</td><td>28</td></tr>
<tr><td>충남</td><td>29</td><td>0</td><td>29</td></tr>
<tr><td>전북</td><td>50</td><td>25</td><td>25</td></tr>
<tr><td>전남</td><td>80</td><td>15</td><td>65</td></tr>
<tr><td>경북</td><td>654</td><td>118</td><td>536</td></tr>
<tr><td>경남</td><td>40</td><td>18</td><td>22</td></tr>
</table>
</td></tr>
<tr><td>계</td><td>5,423</td><td>10,626</td><td>16,049</td><td></td></tr>
</table>

(자료: 소방청)

□ 소방청은 산림면적 740ha 당 1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의 산림인접마을 대상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실시할 예정이고, 동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가 50:50으로 편성될 예정이라고 설명함.

또한, 소방청은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를 위한 국비 예산은 소화전 등 소방인프라 구축이 보다 필요한 산림인접마을이 많은 '도'단위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산림 면적을 고려하여 설치 수량을 조정해서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힘.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계획 개요>

○ 사업 기간 :2026-2030(5년 계속사업)
○ 설치 목표: 산림면적 740ha 당 1개 비상소화장치 설치
○ 설치 기준
- 소화전 등 소방인프라 구축이 보다 필요한 산림인접마을이 많은 도단위 지자체 위주로 산림면적을 고려하여 설치 수량 조정
- 각 시·도별 연도별 예산액은 소방청이 시·도와 협의하여 결정
- 각 연도별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역은 지자체가 선정

○ 설치 예산: 비상소화장치 1대 당 국비 500만원 지원(국비: 지방비=50:50)

(자료: 소방청)

<2026~ 2030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 계획>

(단위: 개, 백만원)

구분	산림 면적 (ha)	기 설치 수량*	26년 이후 설치 수량 계	총예산[376]	2026		2027		2028		2029		2030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개수	금액
계	6,340,519	4,006	2,280	11,400	456	2,280	456	2,280	456	2,280	456	2,280	456	2,280
서울	15,323	25	0	0				0		0		0		0
부산	34,926	10	17	85	17	85		0		0		0		0
대구	48,338	61	10	50	10	50		0		0		0		0
인천	39,373	15	19	95	19	95		0		0		0		0
광주	18,944	63	0	0				0		0		0		0
대전	29,764	11	0	0	0	0		0		0		0		0
울산	68,001	93	10	50	10	50		0		0		0		0
세종	24,849	12	10	50	10	50		0		0		0		0
경기	512,105	227	250	1,250	50	250	50	250	50	250	50	250	50	250
강원	1,366,644	1,915	25	125	25	125		0		0		0		0
충북	488,337	115	270	1,350	50	250	60	300	50	250	50	250	60	300
충남	404,097	77	235	1,175	35	175	50	250	50	250	50	250	50	250
전북	440,746	91	250	1,250	30	150	50	250	60	300	60	300	50	250
전남	686,852	130	395	1,975	61	305	96	480	86	430	76	380	76	380
경북	1,333,691	1,088	264	1,320	34	170	50	250	60	300	60	300	60	300
경남	698,810	63	465	2,325	95	475	90	450	90	450	90	450	100	500
창원	42,385	8	0	0		0		0		0		0		0
제주	87,334	2	60	300	10	50	10	50	10	50	20	100	10	50

* 기설치 수량은 2025.12. 31. 기준

(자료: 소방청)

□ 그 동안은 대형산불이 발생하였을 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해서 해당 지역의 산림인접마을만을 대상으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

376) 국비 예산 산출식: 1천만원*50%*개수

하였으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동시 다발성 산불의 발생과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산불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377], 소방력만으로는 민가 등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불로 인한 재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소방차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소화전 등 소방인프라가 부족한 전국의 산림인접 마을에 산불 발생 시 초기 대응 효과성이 입증된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 다만, 소방청은 동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소방청의 동 사업 추진 일정 계획을 살펴보면, 해마다 1월에 일반회계 예산의 배정 및 교부와 시·도 예산 편성을 완료하고, 1월부터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2월에 설계용역 입찰을 통해 3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용역 입찰을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확정한 후, 12월까지 설치공사와 준공검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임.

377) 국립산림과학원은 대규모 피해를 동반하는 예측 불가능한 동시다발성 산불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1.5℃ 상승)8.6%, (2.0℃ 상승)13.5% 산불발생 위험성 증가
(출처: 이병두(국립산림과학원), “초고속, 극한 산불 시대의 대응”, 산불대응체계 전문가 간담회 발제자료, 국회사무처 법제실, 2025. 4. 11(금), 39면.)

<각 연도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사업 집행 절차>

집행계획(집행주체)	비고(시기 또는 소요기간)
예산 배정 및 교부(기획재정부, 소방청)	연도별 1월
시·도 예산편성(시·도)	연도별 1월
기본계획 수립(시·도 소방본부)	연도별 1월 ~ 2월
설계용역 입찰(시·도 소방본부)	연도별 2월
실시설계(수행기관)	연도별 3월
공사용역 입찰(시·도 소방본부)	연도별 4월
설치공사(수행기관)	연도별 5월 ~ 11월
준공검사(시·도 소방본부)	연도별 12월

(자료: 소방청)

- 그러나, 그동안의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동 사업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하였던 2020년과 2022년에는 해당 연도 말의 실제 예산집행률이 40%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2025년도 추경사업의 경우 10월 말 현재 집행률이 0.0%인 지방자치단체도 4개 단체나 됨[378].

또한, 본예산을 통해 동 사업을 추진했던 2023년도에도 연도 말 실제 예산집행률이 일부 시도의 경우 52.7%에 그치는 등 대체적으로 비상소화장치 설치 사업이 계획에 비해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379].

378) 소방청은 올해(2025년) 산불 피해가 많았던 경북의 경우 비상소화장치함을 약 49억 8천만원(국비 지방비합산)으로 654개소를 설치하는 규모가 큰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강원도(도비 25%, 시군비25%)와 충남(시군비 50%)은 지방비 확보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구, 울산, 세종, 경기남부, 경기북부, 전북, 전남, 경남 등 8개 시도는 2025년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고, 강원,충남,경북은 내년 상반기까지 2025년도 추경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라고 설명함.

379) 2022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구축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 예산 확보부터 설치공사 완료까지 1년 이상 소요된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각 연도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확충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2025년도는 10.31.일 기준)

연도	사업시행 주체 (기관명)	소방청		사업시행주체(지방자치단체)						
		예산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2020년 (추경)	강원도	-	3,500	3,500	-	3,500	1,369	2,131	-	39.1
2022년 (추경)	강원도	-	1,350	1,350	-	1,350	185	1,165	-	13.7
	경상북도	-	650	650	-	650	276	374	-	42.5
2023년 (본예산)	강원도	3,632	-	3,632	-	3,632	3,523	0	109	97.0
	경상북도	1,791	-	1,791	-	1,791	944	847	0	52.7
2025년 (추경)	대구		270	270		270	58			21.5
	울산		231	231		231	10.5			4
	세종		36	36		36	-			-
	경기남부		495	495		495	17.5			3.5
	경기북부		223.5	223.5		223.5	8.5			1.9
	강원		346.5	346.5		346.5	-			-
	충남		297	297		297	52.5			17.7
	전북		262.5	262.5		262.5	10.5			4
	전남		307.5	307.5		307.5	-			-
	경북		2,493	2,493		2,493	-			-
	경남		201	201		201	60			29.8

※ 국비50%, 지방비50% 사업으로 상기 금액은 국고보조예산액임

(자료: 소방청)

---

* 2022년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구축 사업 시·도 추가경정 예산 확보 및 공사 기간
  - 강원: 2022. 10. 10. ~2023. 12. 29.(약 14개월 소요)
  - 경북: 2022. 7. 18. ~ 2023. 3. 29.(약 8개월 소요)
  (자료: 소방청)

□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데, 지방비 예산편성, 설치 지역 선정, 공사업체 선정 등이 지연될 경우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워질 수 있음. 소방청은 예산안이 국회 의결된 후, 이후의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집행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특히, 비상소화장치는 소방인프라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설치하여 주민 자율진화 체계 구축을 통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것으로 비상소화장치의 사용을 위해서는 상수도 급수관로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소방청은 2026년도 예산사업인 '119빅데이터 분석 사업(2026 예산안 4억원)'의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비상소화장치함의 설치 위치를 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380] 동 사업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381].

380) 소방청은 2026년에 시행하는 '119빅데이터 분석운영 사업(1133-311)'의 내역사업인 119빅데이터 분석 사업(2026 예산안: 4억원)'과 연계해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최적 입지를 도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 분석데이터
(내부데이터) 최근 5년간 산불(출동, 진화, 피해), 소방대상물, 소방용수시설 등 (외부데이터) 산림, 산림내 시설물, 임도, 상수관로, 인구, 유동(입산)인구등

381) 소방청은 2026년도 사업의 경우, 연초에 예산을 배정하고, 시·도의 사업 진행 정도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동 사업 예산이 조기에 집행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힘.

다. 노후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 : 수요 산정의 정확성 제고 및 신청률 제고 방안 등 마련 필요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 사업의 내역사업인 ‘노후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은 13세 미만 아동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장애인 가구 등 화재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률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연기감자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에 71억 9,0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되었음.

<2026년도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 예산안 산출내역>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0	-	7,190	○ **자치단체경상보조(330-01) : 7,190백만원** 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 7,190백만원 、 단가 8,000원 x 감지기 3대 x 노후아파트 500,000세대 x 60%(국비80%×신청예상75%) = 7,190백만원

□ 동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국의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화재취약계층 총 149만 8,000세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각 세대당 3대씩 보급하기 위한 사업임. 동 사업을 위한 총사업비는 270억원(연간 90억원)으로 이 중 국비를 80%, 지방비를 20% 투입할 계획임.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 개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년 ~ 2028년

○ (사업규모) 연기감지기 보급

○ (사업대상) '05년 이전 건축허가 아파트에
13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거주 세대

※ 「재난 및 안전관리법」 상 안전 취약계층[382]으로 지원 대상을 한정

○ (설치장소) 거실 및 방의 천장 면에 부착

○ (소요예산) 국비 총 27,000백만 원 / 연 90억 원

※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 국비:지방비 = 80:20
「보조금관리법」상 기초생활보장 급여(80%), 장애인 의료비(80%) 보조율 적용

< 산정 근거 > A × B × C × D = 27,000백만원 / 3년 / 교부금

(A) 총 보급 대상 수: **149만 8천 세대***

* 노후 아파트 469만 세대 중 대피가 곤란한 대상(❶ 13세 미만 ❷ 65세 이상 ❸ 장애인)의 인구 비율(인구통계학적 31.9% / 대상별 중복 제외) 적용하여 추산

(B) 세대당 감지기 수: **3대,** **(C)** 감지기 단가: **8천원,** **(D)** 예상 신청률: **75%**

- **'26년 예산**: 7,190백만원(지방비 1,810백만원)

□ 그간 투자경과 및 향후계획

구 분	25년	26년	27년	28년
화재안전 시설기준 및 개발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예산 (물량단가)	-	9,000백만원 (1식*9,000백만원)	9,000백만원 (1식*9,000백만원)	9,000백만원 (1식*9,000백만원)

자료: 소방청

3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으

□ 최근 부산의 노후 아파트에서 화재로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383][384] 정부는 화재취약자 보호를 위해 ① 공동주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긴급 화재안전점검 실시 및 화재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 병행 시행, ②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한 연기감지기 보급, ③ 돌봄공백 아동에 대한 화재대피 안심콜 도입, ④ 초등학생 피난대피 교육 및 화재 예방·홍보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로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3세 미만의 어린이
2. 65세 이상의 노인
3.「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그 밖에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가스·전기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
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
4.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83) (2025. 6. 25) 부산 진구, 아동 2명 사망, (2025. 7. 2.) 기장군 아동 2명 사망, (2025. 7. 13.) 부산 만덕동 80대 포함 사망 2명

384) 관련기사
- 소방방재신문, 연달아 여아 4명 숨진 부산 아파트 화재...문제는 뭐였나 - 부모 집 비운 사이 참변, 스프링클러 없는 노후아파트, 피난 시기 알려주는 경보설비도 문제, 화재감지 속도 느린 열감지기에 믿기 어려운 경보 음향장치들 '가득', "작동했다는데, 제때는 울렸나"… 이력 알 수 없는 구형 화재수신기, 관계부처 합동대책 마련 분주… 정부 "근본 문제 찾아 재발 막을 것", 2025.7.10.(출처: https://www.fpn119.co.kr/newnews/print.php?uid=237110)

<화재취약자에 대한 화재 예방 관련 정부 정책 추진 현황>

(추진배경) 부산 노후 아파트 화재로 인한 다수 사망자 발생

(추진경과) 노후 아파트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관계기관 회의 실시*

* 국무조정실장 주재 회의(1차 7.4., 2차 7.17.) /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주재 회의(7.11.)

(구체적인 대책 및 향후 일정)

1. 관계기관 합동 긴급 화재안전점검 실시 및 화재 대피요령 등 안전교육 병행

- 전국 49,810개 단지 중 스프링클러 미설치 25,380개 단지 점검 완료('25.9.9.)

※ 점검 결과 : 양호 23,716, 불량 1,664, 조치내역 1,609, 현지시정 6,691

* (점검 사항) 소방시설 등 실태조사 및 입주민 등 관계자 화재예방 교육

2.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한 연기감지기 보강

- ('25년) 빠른 화재 감지와 경보가 가능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 '25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사업(10만개 확보)을 조정하여 돌봄취약 세대 등 대상 우선 설치(25,000세대 보급 가능/세대당 4대)**

- ('26~28년) '열감지기'가 설치 된 노후 아파트 세대 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로 보급 사업 추진(26년 국비 90억, 3년간 270억 요청)

- (장기과제) 기존 소방시설과 연동하여 작동하면서 경보 기능이 내장 되어있는 연기감지기 개발 추진

3. 돌봄공백 아동에 대한 화재대피 안심콜 도입

- 여가부·복지부·교육부 협조 下 화재피난약자* 정보를 사전 등록 후 화재 발생 시 상황실에서 선제적 동보전화를 위한 '화재대피 안심콜' 제도 도입('25.12~)

* 자력 대피 능력이 취약한 돌봄 공백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피난약자

** 사전 파악된 전화번호 소방상황실 등록 → 화재시 동별 등록자에게 일제 전화로 화재 대피요령 전파 → 정확한 세대 파악시 상황요원이 직접 전화해 피난 안내

4. 초등학생 피난대피 교육 및 화재 예방·홍보

- (화재예방교육) 안전체험 차량 및 체험관, 소방안전교실 등 가용자원 활용, 노후 아파트 인근 초등학교에 소방안전교육사가 직접 방문 등 화재안전교육(이론+체험) 화재예방 교육실시

※ 3,419개교 중 3,185개교 976,388명 교육완료, 2학기부터 연말까지 교육 확대

- (예방홍보)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 민·관 협업을 통한 여름철 전기화재 예방 수칙, 냉방기기 및 콘센트 안전 사용 홍보

* 여름철 전기사용 안전수칙 영상, 안전한 냉방기기 사용법 등

(자료: 소방청)

-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은 화재취약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책의 일환임.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는 총 23,547건 발생하였는데 332명이 사망하고 2,519명이 부상하였으며 약 1,514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상당함.

<최근 5년간 공동주택 화재 발생 현황>

연 도	건수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사망(명)	부상(명)	
계	23,547	332	2,519	151,377,052
2020	4,719	74	486	27,596,180
2021	4,399	67	531	59,154,391
2022	4,577	72	476	19,217,204
2023	4,869	58	526	20,328,934
2024	4,983	61	500	25,080,343

자료: 소방청

- 한편, 스프링클러시설은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이지만 노후 아파트의 경우 수조 및 펌프 설치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는 등 건축구조적 문제와 비용 문제[385]로 인하여 스프링클러시설을 설치하기가 쉽지 아니한 반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는 설치가 용이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며(1대당 8,000원) 화재로 인한 연기 발생시 발생하는 경보음으로 인하여 거주자가 화재 발생을 즉각 인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385) 소방청은 기존 공동주택 중 노후 아파트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는데에 약 43조 4,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효과>

< 설비 개요 >

		
외관 (직경 10cm, 무게 150g)	설치기준 (구획된 실마다)	설치방법(나사고정)

○ (**빠른 감지**) 열감지기보다 **2분 이상 빠르게 화재를 감지**(서울소방본부, 2018)

○ (**자체 경보**) 화재 감지 시 85dB(지하철 소리) 이상의 **경보음을 발생**

○ (**비용 효율**) 대규모 소방시설 공사와 비교 시 **비용 대비 높은 효과**

항 목	단독경보형 감지기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비용	대당 8천 원~1만 원, 배선 불필요	수백~ 수천만 원, 배관·배선공사 필요
설치·유지 용이성	나사 부착, 10년 배터리, 자가 점검	정기점검 및 교체 필요
인명 보호 효과	강력 경보로 대피 유도, **사망률 23%↓***	주로 화재 진압 목적, 대피 기능 한계

* 자동소화시스템(AES)이 없는 상태에서 **배터리로 작동하는 연기감지기가 있는** 경우**화재사망자 발생률 23% 낮음**(NFPA, 2015, Smoke Alarms in U.S Home Fires)

자료: 소방청

- 노후 아파트의 경우 세대 내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대피 및 대응이 어렵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화재취약계층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대피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포함)가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만, 노후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소방청은 노후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 수요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노후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 3년간 시행될 예정인데, 소방청은 동 사업의 총 보급 대상수를 149만 8,000세대로 산정하였음. 그 산정근거로 노후 아파트 469만 세대 중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 65세 이상 고령자가 있는 가구, 장애인이 있는 가구 등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용이하지 않은 대상이 있는 가구를 인구 비율(31.9%)을 적용하여 추산하였다고 설명함.

  또한, 2026년도에는 3년간 소요될 예산(270억원)의 1/3인 90억원의 80%인 71억 9,000만원을 국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각 시도별 노후아파트 세대 수에 비례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힘.

<소방청의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사업 산정식>

< 사업 기간 > 2026년 * 동 사업은 3년 계속사업임(2026~ 2028)

< 산정 근거 > A × B × C × D × E × 1/3= 9,000백만원

(A) 3년간 총 보급 대상 수: **149만 8천 세대***

* 노후 아파트 469만 세대 중 대피가 곤란한 대상(❶ 13세 미만 ❷ 65세 이상 ❸ 장애인)의 인구 비율(인구통계학적 31.9% / 대상별 중복 제외) 적용하여 추산

(B) 세대당 감지기 수: **3대,**

(C) 감지기 단가: **8천원,**

(D) 예상 신청률: **75%**

(E) 국비 보조율: **80%**

자료: 소방청

- 그런데, 2025년 10월말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사업을 시행 중임. 각 시도 소방본부는 2025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 24,000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을 시행 중이나[386], 소방청은 2026년도부터 추진 예정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사업의 수요를 산정하면서 2025년도에 시행 중인 가구를 중복하여 계산하였음.

또한, 소방청이 산정한 총 보급 대상 149만 8,000세대는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가구나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를 각각 추정하여 모두 더한 숫자로, 단독경보형 연기

386) 소방청은 2025년 10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 2만 4천 세대 중 5,714세대(23.3%)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완료하였다고 밝힘.

감지기 보급 대상이 한 가구에 2명 이상 있는 경우의 수는 염두에 두지 않고 산정하였음.

- 동 사업은 3년 계속사업이므로 소방청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시에 보다 정확한 수요를 산정하여 이를 예산안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387].

○ 둘째, 노후 아파트 연기감지기 설치 신청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소방청은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추계하면서 총 보급대상 세대의 75% 정도가 동 연기감지기 설치를 신청할 것으로 가정하였음.

- 한편, 소방청은 문자메시지 전송, 공익포스터·리플릿 제작 및 주민센터·병원·버스정류장 부착 등 통해 동 사업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화재취약가구를 선정하기 위하여 소방청이 관련 행정기관에 화재취약가구의 연락처 등 정보를 요청하면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도 이미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함[388].

---

387) 소방청은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대상 보급 사업에 참석한 가구도 포함하여 산정되었으나, 동 사업의 규모(약 2만 4천 세대)는 전체 보급 목표인 150만 세대 대비 경미(1.6%)한 수준으로 향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관련 부서로부터 대상자 정보를 제공받은 후,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정확한 세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개선된 산식을 적용하여 2027년도 예산에 반영·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388) 소방청은 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에 대한 정보는 각 시 · 군 · 구의 아동복지 부서, 노인복지 부서, 장애인복지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5호는 공공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면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사업을 위해 개인정보 제공

- 다만, 동 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동 사업의 신청률을 전체 대상 가구의 7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방청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임.

2017년에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였음에도 불구하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389]) 2023년 말 현재 설치율은 70.2%로 나타나고 있고[390]

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유사 사업들에서도 신청률이 60 ~ 70%의 범위에 형성된 경향[391]을 고려할 때,

---

절차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요청하였고(요청일자: 2025. 9. 9.), 2025년 10월 23일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정보제공 결정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개정 2013.8.6.>)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28조의8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2.4., 2023.3.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2.4., 2023.3.14.>
1. ~ 4. (생 략)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 10. (생 략)

389)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390) 자료: 소방청[국토교통부 2023년 주거실태조사(2024년 12월 발표)]

소방청의 계획과 같이 전체 대상 가구의 75%이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음.

소방청은 사업 대상자가 동 사업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소방청의 문자 안내가 보이스피싱으로 오인될 소지는 없는지, 고령층 대상자 등이 디지털 접근성의 한계로 이 사업 참여에 배제될 가능성은 없는지[392]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및 안내 방안을 구체화하는 등 화재 취약계층의 동 사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393].

391) 유사 사업 신청률

사업명	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률	기관명	연도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보급	저소득청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65%	보건복지부	2023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대상 무료 예방접종	69%	보건복지부	2023
에너지바우처 지원	저소득 가구 에너지 난방비 지원	66%	한국에너지공단	2023
공기청정기 교체 지원	저소득층 및 다자녀 기구 공기청정기 교체 지원	70%	보건복지부	2022

392) 2025년의 카드 소비 환급 정책인 '상생페이백'이 국민적 호응을 받고 있으나, 디지털 접근성의 한계로 제도 참여에서 배제되는 고령층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시각도 있음.
예를 들면, 연령별 신청률을 보면 세대 간 참여 격차가 극명함. 전체 신청자 중 30대(26%)와 40대(25%)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20대 이하(18.4%)와 50대(19.3%)까지 포함하면 90%에 육박함. 60대 이상은 11.3%에 불과했고, 인구 대비 신청률은 30대(36.7%), 40대(30.9%), 50대(20.9%)에 비해 60대(10.8%), 70대(4.1%), 80대 이상(1.1%)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인구 대비 신청률은 그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음.
(자료: 세계일보, "'상생페이백' 열풍 속, 소외된 60대 이상…디지털 장벽이 만든 또 다른 격차", 2025. 11. 11. https://v.daum.net/v/20251011050253179)

393) 소방청은 소방청 홈페이지, 유튜브, 언론 등을 활용한 전국 단위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고, 특히 교육부와 협력하여 13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정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대상 가구에서 직접 사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시·도본부 및 소방서에서는 주민센터, 복지기관 등과 연계한 지역 밀착형 안내, 화재예방 캠페인 시 병행 홍보를 추진하여 보다 많은 대상 가구가 사업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함.
다만, 소방청은 2026년도의 소방정책홍보 예산은 7억 4,3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5년 대비 약 11%가 감액된 예산액이라고 설명하면서, 연기감지기 설치 등 신규 사업 홍보 수요 증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요구 증가 등 소방정책 홍보에 대한 수요는 커지고 있으나 관련 예산이 제약적인 상황이라고 밝힘.

○ 셋째, 노후 아파트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소방청은 노후아파트 연기감지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각 연도별 소요 예산액 총액만 계획한 상태이고, 각 연도별 보급 대상자 선정 기준은 소방청에서 마련하였으나 현재 각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설명하고 있어[394], 지방자치단체(시·도 소방본부)와 동 사업의 세부적인 사업 운영 계획을 마련하는 중으로 보임.

2026년에 동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연도별 보급대상자 선정 기준 및 우선 순위 등 기본계획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2026년 소방정책홍보 예산안(7031-300)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4예산	2025예산		2026예산(안)(B)	증감(B-A)	
		본예산(A)	추경(+α)			%
ㅇ소방정책홍보	804	835	-	743	△92	△11.0
- 국민참여 소통채널 운영	408	342	-	280	△62	△18.1
- 정책공감 인프라구축	261	304	-	304	-	-
- 생활안전문화행사 콘텐츠	135	189	-	159	△30	△15.9

394) 소방청은 연기감지기 보급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아파트 노후도, 취약세대 비율, 화재 발생 이력 등을 제시하였고 이 중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히면서, 실제 사업 시행 시에는 시도 소방본부에서 해당 기준을 참고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 절차(안)>

Ⅰ단계

- 연도별 보급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기반, 단지별 신청접수
  - 소방서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협조

↓

Ⅱ단계

- 사업대상 통보(1차 메시지 전송)
  - 방법 : 시도본부 및 소방서 비상동보시스템 활용
  - 내용 :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여 발송

✔ 문자메시지 전송(안)

○○소방서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무상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급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자:홍길동 • 문의:000-000-0000

↓

Ⅲ단계

- 설치방법 파악
  - (자율설치 가능 시) 설치안내문과 함께 단독경보형감지기 배부
  - (자율설치 불가 시) 유선 또는 문자로 방문이 가능 날짜와 시간 협의

✓ **연락 불가 시 처리방법**

· 3회 이상(예: 유선 2회, 문자 1회)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그 근거(통화 시도 기록 등)를 남기고 보급 활동을 보류

↓

Ⅳ단계

- 방문 설치 시
  - 민원응대 요령 및 악성 민원 시 행동요령[붙임 1]
  - 감지기 관리방법 교육[붙임 2]
  - 설치완료 후 관계자 서명 또는 사진 첨부[붙임 4]

✓ **민원인 부재 시 처리방법**

- 민원인 부재 시 사진촬영 등 증거자료 확보[붙임 5]

- 민원인 자율설치 시
  - 설치 완료 사진 회신방법(홈페이지 또는 문자메시지) 안내

↓

Ⅴ단계

- 해피콜을 통한 사후 관리
  - 설치 6개월 후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관리의 중요성 강조
  - 대상 중 5~10% 표본점검

자료: 소방청

- 한편, 소방청은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전원(배터리)의 평균 수명은 10년인데, 연기감지기가 설치된 후에는 개별 세대에서 연기감지기를 관리하여야 하며 설치 6개월 이후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겠다는 사후관리 방안을 가지고 있음.

연기감지기는 아파트 실내에 설치되므로 기본적으로 해당 아파트 거주자가 연기감지기를 관리하여야 할 것임. 다만, 동 사업 대상이 고령층, 장애인 등 화재취약계층임을 감안할 때, 천장에 설치되는 연기감지기가 오작동시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거나 연기감지기의 전원인 베터리가 수명을 다하는 경우 이를 교체하는 등 연기감지기의 유지·관리가 항상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는 단언할 수 없음.

연기감기지의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도 잘 이루어져야 화재 발생 시 연기감지기가 잘 작동할 수 있으므로 소방청은 연기감지기를 보급받은 가구가 연기감지기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395].

395) 소방청은 연기감지기 제품 대부분이 봉이나 긴 막대기를 이용해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일정 부분 자체 해결이 가능하고, 설치 시 리셋 방법을 안내하고 지역 소방서(원스톱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4.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1171-301)

○ 소방청은 2026년도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동 훈련장을 건립할 계획인데,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은 2026년 9월에 완료될 예정임. 일반적으로 정부의 예산안은 전년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예산이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동 사업 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소방청은 2026년에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1억 5,000만원) 외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2,000만원)를 편성하였음.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예산 총사업비는 훈련장의 규모, 훈련장에 설치하는 장비나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을 추진할 지 여부,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및 2027년도 예산안에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를 편성할지 여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어야 확정될 수 있음. 교통영향평가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 대상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추진이 확정된 직후인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2026년도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가. 개 요

□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은 대형·특수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전국 4개 권역 119특수구조대의 운영을 위한 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 395억 7,400만원 대비 43억 6,700만원이 감액(△11.7%)된 330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음.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본예산(A)	추경			%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	44,694	37,374	39,574	33,007	△4,367	△11.7
공무직 운영	1,915	2,246	2,246	2,446	200	8.9
출동차량 및 장비 보강	1,680	1,591	1,591	6,942	5,351	336.3
청사시설 및 장비 유지	3,044	2,779	2,779	2,382	△397	△14.3
특수구조대 훈련지원	503	617	617	449	△168	△27.2
소방헬기 확충	18,600	15,505	15,505	19,250	3,745	24.2
국가항만 소방정대 운영비	-	1,738	1,738	1,368	△370	△21.3
RT 등 신속동료구조 훈련센터 건립	-	-	-	170	170	순증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도입	-	-	2,200	-	-	-
국가항만 소방선박 통합운영	18,952	12,898	12,898	-	△12,898	순감

나.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사업 : 사업일정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 ‘중앙119특수구조대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6년도에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사업 예산이 1억 7,000만원 신규편성되었음.

- RIT(Rapid Intervention Team) 신속동료구조훈련장이란 화재 등으로 인한 위험상황이 발생하여 소방관이 고립된 경우 소방관의 탈출과 구조를 실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전문시설임.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이 건립되면 화재·폭발 등 극한 상황을 재현한 훈련장에서의 교육훈련을 통해 고립이나 매몰과 같은 위험상황이 발생할 때 소방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 구조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소방청은 2026년도에 동 시설의 건립을 위한 타당성 연구 용역(1억 5,000만원) 및 교통영향평가(2,000만원)를 수행할 예정임.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관련 2026년도 예산안 내역>

□ 2026년도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예산안 상세내역: 총 1억 7,000만원
- RIT 신속동료훈련장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원

(자료: 소방청)

- 소방청은 현재 AI 기반의 다양한 첨단 소방장비가 개발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과 유사한 상황에서의 실전 테스트 공간이 미비하다고 설명하면서[396],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을 건립하면 그동안 국외 교육을 통해 진행하였던 RIT, 실화재 훈련 등[397]을 동 시설을 이용해서 훈련할 수 있고 소방관의 RIT 신속동료구조훈련 강화를 통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감소할 수 있으므로, 10년간 약 28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힘.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을 통한 기대효과>

□ 향후 10년간 약 280억원 예산 절감 가능

- RIT, 실화재 등 국외 교육시 소요예상 금액 : 연간 약 9억원
- 인명 및 재산 피해 감소 연간 편익 : 연간 약 19억원

※ 출처 : 2022년 10월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교육장 건립 연구용역 결과

(자료: 소방청)

□ 소방청은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관련 총 사업비는 약 310억원으로 추정하면서, 2026년에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사업

396) 소방청은 현재 각 시도(소방)에도 RIT 간이 모듈 시설이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정형화된 유사한 구조이고 장애물 극복을 통한 동료소방관 구출 시설에 국한되어 있으며, 실제 화재로 인한 복합상황(열, 연기 등 극한상황)은 연출할 수 없는 시설이라고 설명함.

397) 2023년 이후 RIT, 실화재 훈련 등 국외훈련 인원 및 비용
- 2023년: (없음)
- 2024년: 6명, 1억 2,244만원(재원: 외교부 해외긴급구호예산)
- 2025년(안): 14명, 2억 4,042만원(재원: 외교부 해외긴급구호예산)
(자료: 소방청)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2027년부터 총 4년에 걸쳐 동 건립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힘.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계획: 연도별 사업 예산(안)>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합 계	30,958	170	682	676	8,830	20,600
연구용역비	150	150	-	-	-	-
교통영향평가	115	20	30	65	-	-
기본설계비	647	-	647	-	-	-
실시설계비	611	-	-	611	-	-
공 사 비	27,268	-	-	-	8,180	19,088
감 리 비	2,097	-	-	-	629	1,468
시설부대비	70	-	5	-	21	44

(자료: 소방청)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및 운영 개요>

○ **(사업기간)** 2026 ~ 2030년 / 5개년(중기재정 반영 예정)

○ **(사업예산) 총30,958백만원**[398]

(연구용역150, 설계1,373, 공사27,268, 감리2,097, 시설부대70)

- **`26년 일반연구비 170백만원 편성(RIT 등 신속동료구조 훈련장 필요성 등 용역)**

○ **(건립방향)**

- 소방 순직사고 현장을 재현한 **한국형 RIT 전문훈련장 건립**
- 시설 및 프로그램 등 **국제인증**으로 권위와 신뢰성 있는 훈련기관으로 정립
- **특수소방장비를 활용**한 특수구조 실전 훈련의 적용 검증을 위한 공간

※ NFPA1402(건립가이드), NFPA1403(실화재훈련), NFPA1404(SCBA 호흡훈련), NFPA1407(RIT절차 기준) 반영

○ **(기대효과)**

- 차별화 : 시·도 특수대응단 및 국외(아시아) 소방관 대상 교육
- 예산절감: 10년간 약280억원 절약 효과(교육비[10년간] 90억, 인명·재산 피해[10년간] 감소 190억)
- 다목적: 특수소방장비 도입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사용 가능

○ **(운영계획)**

- 자가 생존 능력과 기본적인 신속동료구조 기술을 비롯하여 첨단장비를 활용한 전문 기술까지 단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 (대상) 중앙구조본부 250여명 + 시도 특수대응단(대) 500여명
- 고립사고 전부터 현장 안전평가, 대원 위치관리, 비상탈출로 확보 등 사고 현장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RIT지휘관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각 시·도별 재난여건을 반영한 종합전술(임무부여, 지휘통제 등)기반 훈련 운영
  ※ 훈련장 연중 상시 개방(예정)

○ **(공간구조)**

- 곡선, 장애물, 수평.수직 요소, 가변형 모듈을 활용해 시각적 혼란과 구조적 유연성을 갖춘 미로형 공간을 구현
- 실화재 상황에서 고립 소방관 구출 훈련 실시하는 통합형 훈련 시설
- 훈련 중 위기 상황 발생 시 외부로 즉시 탈출 할 수 있는 **개방형 구조**

[RIT등 특수구조훈련장 구성]

<table>
<tr><td rowspan="3"> 
</td><td>대지면적 5,600㎡ / 연면적 3,217㎡</td></tr>
<tr><td>훈련장 1층(1,936㎡)
RIT 기본(Advanced) 훈련장
▶ 극한 상황 생환 및 비상 탈출
▶ 폐쇄 공간 극복
RIT 심화(Technical) 및 특수장비 실전 훈련장
▶ 고립 소방관 구출
▶ 팀 단위 전술 시나리오 운영
▶ 장비 실전 테스트 베드(실화재)
※기존 신속동료구조훈련장 RIT 기초과정 운영</td></tr>
<tr><td>훈련상황센터 3층(1,281㎡)
1층 교육지원시설
2층 강의실, 교관 연구실 및 협업공간
3층 교육생 편의시설</td></tr>
</table>

(자료: 소방청)

398) 상세내용은 [참고] 참조

□ 최근 5년간 현장에서 활동하던 소방대원 중 총 12명의 위험직무순직이 발생하였음. 그 동안의 위험직무순직 사고는 급격한 연소확대, 화재이상 현상[399], 화재 발생 건물의 복잡한 구조 등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을 건립하면 위기 상황이나 특수한 상황에서의 소방·구조를 위한 훈련 강화를 통해 소방관의 직무상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최근 5년간 소방대원 위험직무순직 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위헌직무순직	12	2	3	3	2	2

【최근 5년간 주요 순직사고 현황】

- **(경북 문경 / '24.2.1.)** 육가공 공장 화재현장 인명검색 중 급격한 연소확대로 2명 순직
- **(제주 서귀포 / '23.12.1.)** 감귤창고 화재현장 진압활동 중 창고 처마 붕괴로 순직
- **(전북 김제 / '23.3.6.)** 목조 단독주택 화재현장 인명검색 중 급격한 연소확대로 순직
- **(경기 평택 / '22.1.6.)** 대형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현장활동 중 화재이상현상으로 3명 순직
- **(울산 중부 / '21.6.30.)** 상가건물 화재현장 급격한 연소확대로 중화상, 치료 중 순직
- **(경기 이천 / '21.6.17.)**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활동 중 실종되어 순직
- **(경기 용인 / '21.5.9.)** 화재현장 출동 중 농로 침하로 물탱크차 전복되어 순직
- **(충북 충주 / '20.8.2.)** 현장출동 과정에서 유실된 도로 확인 중 지반침하로 급류에 실종
- **(전남 순천 / '20.7.31.)** 계곡 수로관에 구조대상자 구조활동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

(자료: 소방청)

399) 화재이상 현상이란 일반적인 화재 진행 양상과 달리 열·가스·연기가 비정상적으로 축적·확산되어 예측하기 어려운 폭발적 거동을 보이는 현상을 의미함. 대표적인 화재이상 현상의 유형은 백드래프트(Backdraft), 플래시오버(Flashover), 롤오버(Rollover), 스모크 익스플로전(Smoke Explosion)이 있음(자료: 소방청).

□ 다만, 소방청의 동 사업 추진 계획 및 2026년도 예산안 내역과 관련해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임.

○ 첫째, 사업 추진 일정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소방청의 계획에 따르면 2026년에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동 훈련장을 건립할 계획임.

  소방청의 2026년도 연구용역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신속동료구조 훈련장 건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은 2026년 9월에 완료될 예정이고(연구용역 기간(안): 6개월[400]), 동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기획재정부와 신속동료구조 훈련장 건립을 위한 예산을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임.

- 그러나, 일반적으로 정부의 예산안은 전년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401]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예산을

400) RIT 건립사업 규모를 고려할 때 6개월의 연구용역 기간이 적정하지에 대하여 소방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제시함.
- 2024년 10월 이후 건립추진 T/F를 구성하여 3차례 회의와 중요 연구과제를 도출하는 등 이미 세부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이 사전 검토된 상태로, 연구용역은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핵심 범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예정임.
  · 기본계획 및 구성안 확정
  · RIT 전문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장비운용 표준안 마련
  · 환경, 안전 관련 인허가 검토 및 타당서 평가
  · 예산 산정 근거 및 중기재정 반영자료 작성 등
- 위와 같은 사업 범위, 추진 경과 및 후속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연구용역 기간 6개월은 적정한 기간으로 판단됨.

소방청의 계획대로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동 사업 일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402].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추진 일정(안)>

연구용역 절차	일자(또는 소요기간)
계획수립	'26. 1월
용역발주 및 계약	'26. 2월 ~ 3월
용역수행	'26. 3월 ~ 9월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동 사업 예산 협의 예정
(자료: 소방청)

○ 둘째, 동 사업과 관련해서 소방청은 2026년도 예산안에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동 내역을 2026년도 예산안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403].

---

401) 2026년도 예산안은 2025. 9. 3일에, 2025년도 예산안은 2024. 9. 2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음.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02)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연구용역 진행 중에도 중간결과(6~7월) 기반의 사업개요, 규모, 예산산출 근거를 제시하면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함.

403)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0.5.17., 2014.1.1., 2020.6.9.>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소방청은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가 약 309억원으로 추산되고 훈련장 규모와 세부 시설 등 자세한 내역은 2026년도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2026년에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을 2026년 9월까지 완료하고 교통영향평가를 2026년 10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힘.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추진 일정(안)>

내 용	일정(안) (소요기간)
연구용역	'26.2~9.(7개월)
교통영향평가	'26 ~ '28.(3년)
설계용역(기본, 실시)	'27 ~ '28.(1년)
관련인허가	'28.(1개월)
공사계약 및 시공	'29.6 ~ '30.12.(1년6개월)
준공	'30.12.

자료: 소방청

- 그러나,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예산 총사업비는 훈련장의 규모, 훈련장에 설치하는 장비나 시설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404],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을 추진할 지 여부, 예비타당성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404) 소방청은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1132-324)을 진행 중임. 소방청 설명에 따르면 실화재훈련장은 컨테이너를 활용한 화재성상 관찰 위주의 훈련시설인데 비해 RIT전문훈련장은 RIT + 실화재훈련 복합시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 및 2027년도 예산안에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추진을 위한 기본설계비를 편성할지 여부는 연구용역 결과가 도출되어야 확정될 수 있다고 보임.

- 교통영향평가 제도는 도시개발이나 대규모 시설 건설 등으로 인해 주변 교통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검토하고 필요한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로[405] 일반적으로 총사업비 대상사업[406]의 경우 해당 사업 추진이 확정된 직후인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시작함.

설로 실제 화재현장과 유사한 상황을 다양하게 재현하여(가변식 모듈설치) 열화상카메라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자가탈출, 동료구조 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배양할 수 있는 훈련 시설임. 따라서 실화재훈련시설에 비해 신속동료구조훈련장에 설치되는 시설들은 실화재훈련시설에 비해 고가의 장비와 시설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됨.

참고로, 실화재훈련시설 중 팀훈련을 위한 시설 1세트[3개 셀(어택셀, T 타입 셀, 멀티스토리 셀)로 구성] 예산이 2026년도에 23억 6,0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자료: 소방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1, 139면).

40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예측·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개정 2015.7.24.>)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
2. 산업입지와 산업단지의 조성
3. 에너지 개발
4. 항만의 건설
5. 도로의 건설
6.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7. 공항의 건설
8. 관광단지의 개발
9. 특정지역의 개발
10. 체육시설의 설치
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12.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06)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 건축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에 해당함.

※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항 2호 총사업비가 200억 원 이상인 건축사업 (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아직까지 신속동료구조훈련장 총사업비가 도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소방청이 밝힌 2026년도 사업 일정을 감안할 때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에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비 등 관련 예산이 편성될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므로,

2026년도에 신속동료구조훈련장 건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407].

407) 이에 대하여 소방청은 교통영향평가는 실시설계 전 단계에서 완료되어야 하는 절차로, '26년 예산 요구 시점에는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근거로 평가 착수계획을 제시하여 예산 반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참고] RIT 신속동료구조훈련장 총사업비 추계 상세 자료

(자료: 소방청)

○ 예산추계 상세현황(소방청 자체 추계)

구 분	총사업비	산 출 근 거
합 계	30,958	유형별 공사비 단가에 맞춰 작성(수급관리계획 반영)
연구용역비	150	- 2022년 서울소방학교 실화재 훈련장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1억원 + 노임단가 상승 금액('25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1인 1일 평균임금(기계·설비 기술사 470,112원)
교통영향평가	115	- 직접인건비(경비포함) + 제경비(직접인건비 110%~120%) +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 20%~40%) + 부가세
기본설계비	647	- 공사비 중 공급가 24,789,091×4.07%×1.1×45% + 기본설계 추가사항(BF예비인증, 녹색건축인증 등 1.47억) ※ 10.시설부대경비 다. 건축부문요율 제2종(보통)중급
실시설계비	611	- 공사비 중 공급가 24,789,091×4.07%×1.1×55% ※ 11.시설부대경비 마. 건축부문요율 제2종(보통)중급
공 사 비	27,268	- 연면적 3,217㎡×3,692천원/㎡ + 전기인입2억 + 태양광발전설비1.5억 + 토목공사7.4억 - 건축·내화구조 시설54억 + 실화재 프롭 등 훈련시설70억 + 배연설비6억 + 중앙통제 ICT3억 + ICS평가 소프트웨어3억 + 예비비3억 + 훈련 컨텐츠 개발4억
감 리 비	2,097	- 공사비 중 공급가 24,789,091×7.56%×1.1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0.36억) ※ 11.시설부대경비 바. 전면책임감리비요율 (보통)
시설부대비	70	- 공사비 중 공급가 24,789,091×0.23%×1.1 + BF인증(0.07억) ※ 11.시설부대경비 가. 건설부문요율(시설부대비)

○ RIT 훈련시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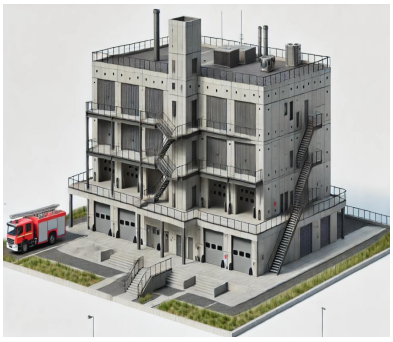
(사업위치) 중앙119구조본부 부지 내　　※ 면적 : 8,000㎡ 2,420평

	
중앙119구조본부 비축기지 옆 ※ RIT 훈련센터, 실화재훈련장, 숙소동 각 1개소 규모 돔형식의 배출시설 적용(환경오염 방지 설비 기준 적용)	※참고: 美 일리노이주 RIT 훈련시설 (면적: 약 4,900㎡, 1,512평 / 3개동 기준)

(시설기반) 첨단화·실용적·환경적 훈련센터 시설기준 마련(3개동 추진)

▌RIT전문훈련센터

▸ 최근 10년간 대한민국 주요 순직 사고사례에 맞춰 시나리오 구성이 가능한 다중이용시설, 공사장, 대규모공장 등 다양한 건물 형태로 구성



▸ 50M(가로) x 30M(세로), 6층
▸ (건축물 4면) 다른 상황의 탈출 상황 재현

【각 층별】

▴ 각 층별 내부 예측 불가한 시나리오 제공을 위한 구획 조정 가능한 구조설계

▴ 각 층별 실화재 훈련 시설 설계

6 상가건물, 주택
5 공사장, 전시장
4 다중이용시설
3 탈출훈련장
2 창고시설, 응급처치훈련장
1 대규모 밀폐공간, 이론강의실

500 ㎡		**대규모 밀폐 지하 공간 및 장비 실전 테스트** - 무인화재진압장비와 특수소방장비(차량)를 활용한 전술훈련
250 ㎡		**폐쇄 공간 및 얽힘 극복**('22평택 '12남양주 등 7명 순직) - 철근, 전선 등 장애물 얽힘 상황에서 구조대원 접촉 및 해방 임무 수행
250 ㎡		**구조대상 안정화 및 공간 확보**('24문경 등 6명 순직) - 고립 구조대원에게 공기 공급, 위치확보 및 탈출 공간 정비 중심
250 ㎡		**인양 및 탈출 지원**('08은평, '05칠곡 등 7명 순직) - RIT가 구조대상 인양 또는 이송 후 탈출까지 수행하는 복합 훈련
386 ㎡		**복합위험 환경 대응**('06강남 1명 순직) - 고온, 연기, CBRNE 등 복합 상황에서 RIT 구조 활동 훈련
300 ㎡		**통합 전술 시나리오 운영**('23김제, '04안산 3명 순직) - 지휘소(ICP) 설정부터 다층 구조물 내 구조상황 전개까지 실전 시뮬레이션

▌**실화재 훈련장(1층)** ▸ RIT 임무수행과 병행되는 화재 대응 훈련

※ 구조물 내 화재 확산 경로 예측, 분석 대응 훈련, 농연상황 의사소통(협소공간)

* 20M(가로) x 20M(세로), 1층, 돔형식의 배출시설(환경오염방지 설비 기준 적용)

▌**강의동(3층)** ▸ 국내·외 소방관, 대국민 소방 안전체험 등 사용

※ 국내·외 소방대원 훈련과정 시 합숙으로 인한 예산절감

- ▸ 중앙119구조본부, '25년 전문과정 16개과정 **380여명** / 합숙 가능
- ▸ 국제구조대 합동훈련(매년 상·하반기 / **200여명** → 인근 숙박업소 이용)
- ▸ 코로나19 등 국가비상상황 시 국가시설로 활용

5.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1171-302)

○202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용량포 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토지분양계약서의 적정성 검토 등으로 인해 토지매매 계약 체결(계획:2025.2.~5.→실제:2025.6.)과 설계공모가 다소 지연되었고(계획:2025.5.→실제:2025.8.~10.) 이에 따라 준공 역시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계획: 2027.8.→변경: 2027.12.). 청사가 계획보다 늦게 준공되는 경우 장비 도입 및 설치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으므로 소방청은 청사 건립 공사가 변경된 일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소방청은 2026년에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장비 도입을 시작할 예정인데 통상적으로 외산 장비가 도입되는 경우 통관 절차 등으로 인해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서 동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소방청은 2026년도에 중앙119구조본부에 중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임. 중용량포방사시스템은 2026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장비라는 점에서 장비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청은 동 장비의 적시 도입을 위하여 규격작성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지원 사업은 위험물질 사고 및 화생방 사고의 대응·수습·복구를 위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출동장비를 유지·관리하고 전국 7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408]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는 2025년 예산 184억 8,900만원 대비 3억 4,700만원 감액(△1.9%)된 181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음.

408) 소방청은 울산, 서산, 여수, 시흥, 구미, 익산, 충주 등 7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시설장비지원 사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지원	8,825	18,489	18,142	△347	△1.9
청사관리 공무직운영	529	598	658	60	10
청사 운영·유지	1,175	1,474	1,186	△288	△19.5
출동차량 및 장비 유지관리	435	468	528	60	12.8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운영	127	165	110	△55	△33.3
합동점검 및 교육훈련 지원	137	161	161	-	-
출동차량 및 장비보강 (중용량포방사시스템 장비)	541	460 (-)	9,381 (8,800)	8,921 (8,800)	1,939.3 (순증)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여수)	-	2,277	6,118	3,841	168.7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서산)	5,881	12,886	-	△12,886	순감

나. 여수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사업 일정의 철저한 관리 필요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6년도에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에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과 관련하여 ① 청사 건립 예산 11억 7,000만원과 ②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관련 예산 49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음(총 61억 1,180만원).

-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2018년 고양저유소 화재 사건을 계기로 대형화학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저유소 화재의 경우, 화재 진압을 위해 유류(油類)저장탱크 전면에 살포된 포(泡, 거품)가 고온의 열기류로 쉽게 깨져 액표면(液表面)에 안착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있는데,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용량의 포수(泡水) 용액을 일시 방사할 수 있는 대형유류저장탱크의 화재진압을 위한 시스템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은 정격토출량 45,000LPM 이상, 정격 토출압력 1.2Mpa 이상, 연속구동시간 5시간 이상이며, 주펌프·중계펌프 각 1대와 이송차량 등 9대의 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방청은 동 시스템 도입에 따라 대형유류저장탱크 화재의 조기진압(6시간 이내)이 가능해 화재로 인한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배수펌프 기능을 활용해 수해지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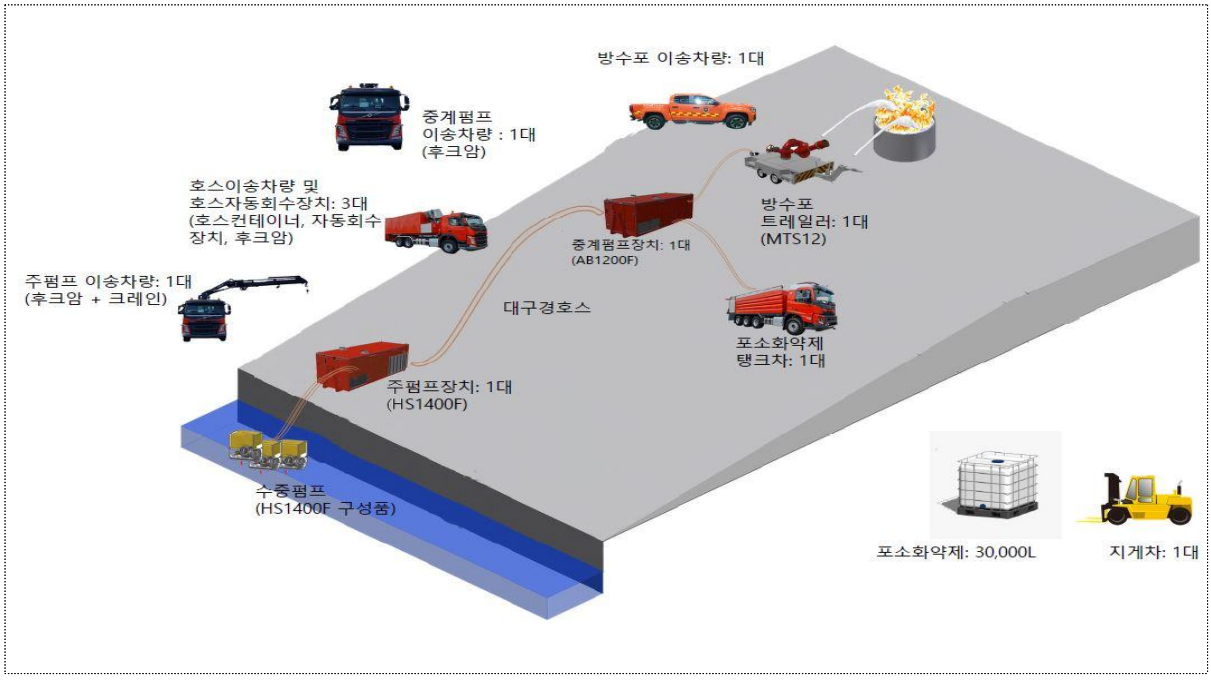
이미 구축 완료된 울산119화학구조센터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의 경우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배수 출동, 포항 포스코 침수사고 배수 출동 등 수난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와 현장대응에 탁월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주요제원 및 형상>

배치 부서	울산119화학구조센터	
주요 제원	75,000LPM (2세트 / 45,000LPM, 30,000LPM) 방수거리 : 최대 110m 송수거리 : 최대 2.5km	
구 성	◇ 1식 (8종 17대 / 2세트 구성) - 45,000LPM(8종 10대) → 주펌프1, 중계펌프1, 방수포1, 방수포이송1, 호스이송3, 포소화약제탱크차1, 포소화약제이송차1, 지게차 - 30,000LPM(6종 7대) → 주펌프1, 중계펌프1, 방수포1, 방수포이송1, 호스이송2, 포소화약제탱크차1	

사진								
장비명	방수포	방수포 이송	주펌프 이송차	중계펌프 이송차	호스 이송차	포소화약 제탱크차	포소화약제 이송트럭	지게차
구성	1대	1대	1대	1대	3대	1대	1대	1대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구성: 차량 8종 10대>



(자료: 소방청)

□ 동 사업이 최초로 계획된 2019년 당시 소방청은 석유화학단지가 있는 울산, 여수, 서산 등 3개 권역[409]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계획하였으나, 예산 확보와 실제 사업 추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도입 시기와 기간을 조정하였음.

이에 따라 울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는 2021년에, 서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는 2025년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이 구축되었고(2025. 12월 완공 예정),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에는 2027년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임.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축 연혁 및 향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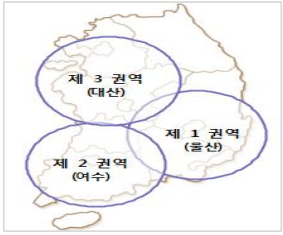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119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축 시기		예산 총액	비 고
	계획*	실제		
울산	2020 ~ 2021	2020 ~ 2021	17,652	장비 14,240 청사 3,412
서산	2022 ~ 2023	2023 ~ 2025	18,953	장비 10,933 청사 8,020
여수	2024 ~ 2025	2025 ~ 2027	21,967	장비 12,708 청사 9,259

* 계획시기는 동 사업이 최초로 계획된 2019년 당시 추진일정을 기준으로 함
(자료: 소방청)

409) 소방청은 울산, 여수, 서산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한 사유로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이동 및 설치 시간을 고려할 때 전국 단일 권역 대응은 곤란하고, 석유화학단지 중 500만L 이상 탱크 1,760기 중 79%가 울산, 여수, 서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울산, 여수, 서산의 119화학구조센터에 구축하기로 계획했다고 설명함.
* 탱크 위치 :울산(720기, 40.9%), 여수(398기, 22.6%), 서산(272기, 15.5%)

* 권역 간 이동 및 설치 예상시간(화재진압 2시간 별도)
· 울산 ⟷ 여수 215km, 최소 5시간 소요
· 울산 ⟷ 서산 393km, 최소 6시간 30분 소요
· 여수 ⟷ 서산 325km, 최소 6시간 소요



□ 현재 여수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사업은 2025년~ 202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2025년도(1차연도)에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보상비 및 기본조사설계비로 총 22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26년도(2차연도)에는 청사 건립을 위하여 실시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11억 7,000만원이, 장비(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입을 위하여 49억 2,7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27년도(3차연도)에는 135억 9,300만원이 편성될 예정임.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여수) 도입 사업 총 예산안: 연차별·비목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합 계	2025	2026	2027
합 계	21,967	2,277	6,097	13,593
장비 구매(430-01)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입	12,708	-	4,927	7,781
청사 건립	9,259	2,277	1,170	5,812
-건설보상비(410-00)	2,124	2,124	-	-
-기본설계비(420-01)	153	153	-	-
-실시설계비(420-02)	152	-	152	-
- 공사비(420-03)	6,738	-	1,000	5,738
- 감리비(420-04)	68	-	14	54
-시설부대비(420-05)	24	-	4	20

(자료: 소방청)

<2026년도 여수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관련 예산안 편성 내역>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2,277 백만원	○ 건설보상비(410-00) : 2,124백만원 가. 여수센터 청사 신축 (2,124,000천원) ・여수센터 신축 건설보상비 : 1식x2,124,000천원=2,124,000천원 ○ 기본조사설계비(420-01) : 153백만원 가. 여수센터 청사 신축 (153,000천원) ・여수센터 청사 기본설계비 : 1식x153,000천원=153,000천원	6,118 백만원	1. 청사 건립 관련 : 1,170백만원 ○ 실시설계비(420-02) : 152백만원 가. 여수센터 청사 신축 (152,000천원) ・여수센터 청사 실시설계비 : 1식x152,000천원=152,000천원 ○ 공사비(420-03) : 1,000백만원 가. 여수센터 청사 신축 (100,000천원) ・ 1식x100,000천원=100,000천원 ○ 감리비(420-04) : 14백만원 가. 여수센터 청사 신축 (14,000천원) ・ 1식x14,000천원=14,000천원 ○ 시설부대비(420-05) : 4백만원 가. 여수센터 청사 신축 (4,000천원) ・ 1식x4,000천원=4,000천원 2.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관련: 4,948백만원 ○ 국외여비(220-02) : 21백만원 가. 여수센터 대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국외여비 (21,000천원) ・중간검사 1식x21,000천원=21,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927백만원 가. 대용량포방사시스템 장비 도입 (4,927,000천원) ・1식×4,927,000천원(여수)=4,927,000천원

(자료: 소방청)

□ 동 사업은 대형 화학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성이 큰 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적기에 장비가 도입되고 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2025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용량포 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토지분양계약서의 적정성 검토 및 건축 인허가와 관련한 여수시와의 업무 협의 등으로 인하여 토지매매 계약 체결(계획: 2025.2.~5. → 실제: 2025.6.)과 설계공모가 다소 지연되었고(계획: 2025.5. → 실제: 2025. 8.~10.) 이에 따라 준공 역시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계획: 2027.8.→변경: 2027.12.).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여수) 청사건립 추진현황>

구 분	당초계획	실제일정	비 고
기본계획	'25.1.	'25.1.	
건립부지 선정	'25.1.	'25.1.	
건립예산 확보	'25.1.	'25.1.	
토지매매 계약	**'25.2.~5.**	**'25.6.**	
설계공모	**'25.5.**	**'25.8.~10.**	
기본설계	'25.10.~12.	'25.10.~'26.1.(예정)	
실시설계	'26.1.~3.	'26.2.~6.(예정)	
인허가 처리	'26.4~5.	'26.7.(예정)	
공사 입찰 및 계약	'26.6.~8.	'26.8.~9.(예정)	
공사착공	'26.9.	'26.10.(예정)	
관급자재 발주·공사	'26.10.	'26.11.(예정)	
준공	'27.8.	'27.12.(예정)	

(자료: 소방청)

참고로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용량포 청사 건립 사업도 원래 계획하였던 대상부지에 공공청사를 건축하는 것이 불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설계공모(계획: ‘23.5. → 실제: ’23.7.) 및 기본설계·실시설계(계획: ‘23.11.～’24.7. → 실제: ’23.11.～‘24.12.)가 계획 대비 지연되었음[410].

- 청사가 계획보다 늦게 준공되는 경우 장비 도입 및 설치 역시 지연될 수 밖에 없고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이 구축되더라도 실제 재난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장 소방대원이 동 장비를 다루는 훈련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방청은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청사 건립 공사가 계획된 일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소방청은 2027년에 구축될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적기에 도입하기 위하여 2025년 중에 규격심의위원회 개최, 일상감사·시장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1월에 조달청에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의 구매를 의뢰하며 2026년 5월에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을 계획 중임.

410)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청사건립 추진현황은 [참고] 참조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여수) 장비구매 추진 현황 및 계획>

사업추진	향후 추진 일정(안)	비고
예산 확보	2025. 12월	26 정부예산안에 반영
규격심의위원회 개최	2025. 11월	
일상감사, 시장조사 등 행정절차	2025. 12월	
조달청 구매의뢰	2026. 1월	5개월
조달업무 구매협의	2026. 1~2월	
입찰공고	2026. 3~4월	
제안서평가	2026. 5월	
1순위 우선협상자 협상	2026. 5월	
구매계약 체결	2026. 5월	
장비 도입	2027. 하반기	

(자료: 소방청)

- 그 동안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 일정을 살펴보면,

①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의 경우 계약 의뢰부터 계약 체결에 5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장비 도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②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도입의 경우 계약 의뢰부터 계약 체결에 8개월 정도 소요되었고 장비 납품 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약 15개월임[411)412)].

411)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계약 기간: 2024. 10. 29 - 2026. 1. 23.(약 15개월) [신용장 개설일 '24.10.30일부터 450일 이내]

412) 울산과 서산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장비구매 관련 상세 추진 경과는 [참고] 참조

-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역시 외산 장비를 구매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413], 통상적으로 외산 장비가 도입되는 경우 통관 절차 등으로 인해 계획 대비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414] 등을 고려할 때, 여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이 계획대로 도입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및 계약의 이행 관리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413) 소방청은 울산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네델란드 Hytrans사와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는 노르웨이 FFS(Fire Fighting Systems) 사와 각각 대용량포방사시스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음.

414) 산불전문진화차의 경우 국내 제작 차량이 아닌 독일 벤츠사의 유니모그(U5023) 모델 차대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특수 제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수입에서 제작까지 12~15개월이 소요되었음. 이에 따라 산불전문진화차 도입 사업의 경우 계획 대비 실제 배치가 지연된 사례가 있음.

< 산불전문진화차 연도별 확충계획 대비 실제 배치 현황 >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계
계획	대수		10	16	21	-	47
	금액		7,500	12,000	15,750	-	35,250
실제 배치	대수	이전년도 이월분		7	13	23(예정)	47
		당해연도분	3	1	-		
		계	3	8	13	23(예정)	47
	금액		2,143	7,201	7,956	16,179	33,479

※ 2024년도 수치는 전년도에서 이월된 진화차 대수임

※ 자료: 소방청

[참고]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청사건립 추진현황

구 분	당초계획	실제일정	비고(지연 시 사유)
건립예산 확보	‘23.1.	‘23.1.	
기본계획	‘23.2.	‘23.4.7	출동차량 진출입로 협소로 타부지 검토
건립부지 선정	‘23.2.	‘23.4.11~7.3.	
토지매매 계약	-	무상임대	대상부지에 공공청사 건축 불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 수행
설계공모	‘23.5.	‘23.7.28.~11.2.	
기본설계	‘23.11.~12.	‘23.11.29. ~ ’ 24.7.26.	
실시설계	‘24.1~7.	‘24.1.3.~ 12.3.	
인허가 처리	‘24.8~10.	‘24.9.2.	
공사 입찰 및 계약	‘24.10.~11.	‘24.10.~11.	
공사착공	‘24.12.	‘24.12.	
관급자재 발주 · 공사	‘24.12.	‘25.3.7.~11.	
준공	‘25.11.	‘25.12(예정)	

(자료: 소방청)

[참고] 서산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장비구매 추진경과

사업추진	일 자	비 고
예산 확보	2024. 1. 1.	
규격심의위원회 개최	2024. 1. 11.	
일상감사, 시장조사 등 행정절차	2024. 2. 2.	
조달청 구매의뢰	2024. 2. 29.	약 10개월 소요
조달업무 구매협의	'24. 3. 1. ~ '24. 7. 2.	
1차 입찰공고	'24. 7. 5. ~ '24. 8. 1.	
1차 제안서평가	'24. 8. 12.	
2차 입찰공고	'24. 8. 13. ~ '24. 8. 27.	
2차 제안서평가	'24. 8. 29.	
1순위 우선협상자 협상	'24. 9. 10. ~ '24. 9. 11.	
구매계약 체결	'24. 10. 29.	
납품	’25년 12월말 도입 예정 ※‘26. 1. 23.(납품기한)	**납품기한: 구매일부터 약 15개월**

(자료: 소방청)

다. 중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 면밀한 사업 준비 및 관리 필요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시설장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출동차량 및 장비 보강’은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차량 및 장비를 구매하는 사업으로,

소방청은 2026년도에 매년 계속사업으로 구매하는 출동차량 및 장비 외에 중용량포시스템 4대를 신규 구매하기 위한 예산 88억원을 편성하였음(22억원×4대)[415].

<2026년도 출동차량 및 장비 보강 내역사업: 편성 내역>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예산	산출내역	예산	산출내역
460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백만원 가. 심의위원수당 (2,000천원) ・장비 구매 심의수당 : 2명×5회×200천원=2,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458백만원 가. 차량 및 장비 구매 (458,000천원) ・출동차량(지휘차) 교체(1종 2대): 2대×123,000천원=256,000천원 ・화생방장비(2종 7점) : 1식×202,000천원=202,000천원	9,381백만원	○ 일반수용비(210-01) : 2백만원 가. 심의위원수당 (2,000천원) ・장비 구매 심의수당 : 2명×5회×200천원=2,000천원 ○ 사업추진비(240-01) : 1백만원 가. 차량 및 장비구매 등 업무추진비 (1,000천원) ・1식×1,000천원=1,000천원 ○ 자산취득비(430-01) : 9,378백만원 가. 차량 및 장비 구매 (578,000천원) ・출동차량(지휘차) 교체(1종 2대): 1대(예방순찰차)×80,000천원=80,000천원 1대(지게차)×45,000천원=45,000천원 ・화생방장비(12종 230점) : 1식×453,000천원=453,000천원 나. <u>중용량포 구매 (8,800,000천원)</u> ・중용량포시스템 구매(1종 4대): 4대×2,200,000천원=8,800,000천원

(자료: 소방청)

415) 소방청에 따르면, 중용량포 방사시스템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장비로 2026년도에 4대를 구입할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소방청(중앙119 구조본부)에는 2027년도 이후에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설명함.

□ 중용량포방사시스템의 성능은 방수량 8,000LPM 이상, 방수거리 100m 이상, 연속구동시간 4시간 이상이며, 2대의 차량과 장비운송용 컨테이너로 구성되어 있음[416].

- 소방청은 다양한 중규모 화재 발생 시 열과 농연으로 소방대원의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량의 소화액을 방사하여 초기 진압 및 연소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용량포방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대용량포에 비해 방수량이 적지만 상대적으로 배수능력이 탁월하고 운영이 비교적 간단하며, 단일차량, 소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기동성이 우수하여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특히 수해시 배수 성능이 우수하고 급수지원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밝힘.

416) 소방청은 현재 방수량에 다소 아쉬움이 있어 배수량 및 방수량 15,000 ~ 20,000LPM 정도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지 시장조사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대용량포방사시스템과 중용량포방사시스템 비교>

모델명	대용량포 방사시스템	중용량 방사시스템
▶ 제작업체	하이트란스 (네덜란드)	하이트란스 (네덜란드)
▶ 용도	유류화재, 대형화재, 배수작업	대형화재, 배수작업
▶ 차량	9종 17대	2대+장비운송용 컨테이너
▶ 방수량	75,000LPM (대형 45,000 + 중형 30,000)	8,000LPM (배수펌프 45,000LPM)
▶ 방수거리	130m	100m
▶ 물탱크	-	-
▶ 폼탱크	60,000리터	-
▶ 운영인력	34명	4명
▶ 장비사진		
▶ 장점	1. 방수 및 배수용량 탁월 2. 대형 유류화재 진압 가능 3. 연속탈출 가능구조	1. 배수능력 우수 2. 도입 금액 저렴 3. 소수 운용인력
▶ 단점	1. 도입금액 고가 2. 다수 인력 및 차고 필요 3. 전개 시간 필요 4. 강, 바다 등 수원 필요	1. 설치 후 이동 제한적 2. 강, 바다 등 수원 필요 3. 전개 시간 필요
▶ 도입가격	176억원(울산 기준) (장비 142억, 청사 34억)	22억원

(자료: 소방청)

- 소방청은 2026년도에 중용량포방사시스템을 전국 119화학구조센터 중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이 배치되지 않은 4곳(시흥, 구미, 익산, 충주[417])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중용량포방사시스템 4대가 도입되면 전국 119화학구조센터(7곳)에 모두 포방사시스템이 배치되어 향후 화재, 수해 등 각종 재난에 통합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 중용량포방사시스템 도입을 위한 소방청의 계획을 살펴보면,

2025년에 규격심의위원회 개최, 일상감사·시장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6년 1월부터 중용량포방사시스템 구매를 위한 절차를 추진하여 2026년 5월에 구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중용량포 방사시스템 장비구매 추진계획>

내 용	일자(안)
규격심의위원회 개최	2025. 11월
일상감사, 시장조사 등 행정절차	2026. 12월
조달청 구매의뢰	2026. 1월
조달업무 구매협의	2026. 1~2월
입찰공고	2026. 3~4월
제안서평가	2026. 5월
1순위 우선협상자 협상	2026. 5월
구매계약 체결	2026. 5월
장비 도입	2026. 12. ~ 2027년 상반기(예정)

(자료: 소방청)

417)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이 배치된 곳은 울산, 서산, 여수 119화학구조센터(3곳)임.

□ 소방청의 설명에 따르면 중용량포방사시스템은 대용랑포방사시스템에 비하여 기동성이 우수하고 화재 진압 시 소방대원의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다만, 중용량포방사시스템은 2026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장비라는 점에서 장비 도입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방청은 동 장비의 적시 도입을 위하여 규격작성 등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6.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R&D) 사업

○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 사업 중 ‘산불대응용 개인보호장비 개발’ 내역사업의 경우 현재 보급된 산불진화복, 안전모, 안전화 등이 존재하는 만큼 기존 장비의 단점을 보완하고 산불대응에 보다 효율적이 장비 개발을 위하여 산불 진압 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현장대원을 동 연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고, 현재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 개발 관련 유사 사업(소방활동복 일체형 보호복 개발 등)의 성과를 동 사업에 적극적으로 응용할 필요가 있음. ○ “철도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소방철도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대응 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동 사업의 연구 성과물인 소방 철도의 활용 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소방 R&D 성과물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방대원의 안전확보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소방 현장에서 검증하는 다양한 실증 연구가 필요함. 소방청은 현장 실증이 포함되는 연구개발사업이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제도적 방안 마련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가. 개 요

□ 2026년도 소방청 소관 연구개발(R&D) 예산은 총 18개 과제의 연구개발을 위해 503억 2,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 305억 3,100만원 대비 64.8% 증가하였음(197억 9,500만원 증액).

- 신규사업으로는 소방청 단독사업 5건 149억원이 편성되었고, 계속사업으로는 소방청 단독 사업 7건과 다부처 공동기획사업 5건 총 354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음.

<2026년 소방청 R&D 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4년 결산	2025년 예산(A)	2026년 예산안(B)	증 감 (B-A)	%
계(A+B+C)	22,281	30,531	50,326	19,795	64.8
신규사업 소계(A)	-	-	14,900	14,900	순증
-소방청 단독사업(신규) (5개 세부사업)	-	-	14,900	14,900	순증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신규)	-	-	-	-	-
기존사업 소계(B)	22,281	30,531	35,426	4,895	16.0
-소방청 단독사업(기존) (8개 세부사업)	12,327	23,291	27,302	4,011	17.2
-다부처 공동기획 사업(기존) (5개 세부사업)	2,518	7,240	8,124	884	12.2
완료사업(C)	7,436	-	-	-	-

<소방청 R&D: 2026년 신규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신규사업명(세부사업 코드)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연구기간 (총사업비)	비 고
합 계	-	**14,900**		
위험물 시설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1160-629)	-	**3,500**	26.-30.	소방청단독
- 국내 위험물 분류 및 판정 체계 고도화 및 위험물 물성 분석·판정 방법 개발	-	600	26.-30.	
- 위험물 사고 현장 의사결정 보조를 위한 스마트 통합 지휘시스템 개발	-	1,000	26.-28.	
- 산업 현장 및 연구 시설 소규모 화학물질 유출 대응을 위한 휴대용 중화제 기술 개발	-	400	26.-28.	
- 위험물 사고현장 대응 훈련시스템 개발	-	900	26.-28.	
- 위험물 사고 대응 현장대원용 유해화학물질 제독 시스템 기술개발	-	600	26.-28.	
철도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소방철도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대응 시스템 기술개발(1160-630)	-	**1,800**	26.-30.	소방청단독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1160-631)	-	**3,800**	26.-30.	소방청단독
- 토사, 매몰(싱크홀) 구조자를 위한 인명 탐지 및 구조장비 개발	-	1,800	26.-28.	
- 홍수(침수) 등 인명구조 시 사용 가능한 논클러그(Non-clog) 펌프 개발 및 자동 제어 시스템	-	500	26.-28.	
- 산불대응용 개인보호장비(장화, 헬멧, 방화복) 및 현장 고립 시 소방대원 긴급 안전 확보 장비 개발	-	1,500	26.-28.	
소방시설 화재 적응성 평가 시스템 구축연구 (1160-632)	-	**4,500**	26.-30.	소방청단독
미래 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1160-633)	-	**1,300**	26.-30.	소방청단독
- 철도차량 및 전기버스 특성 기반 화재 진압기술 개발	-	1,300	26.-29.	

<소방청 R&D : 2026년 계속사업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계속사업명(세부사업 코드)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증감	연구 기간	비고
합 계	**30,531**	**35,426**	**△4,895**		
소방현장 활동지원 기술개발(1160-603)	**5,055**	**5,603**	548	계속사업	소방청 단독
- 소방현장 대응기술	4,025	3,903			
- 화재예방 확보기술	515	978			
- 보건안전 강화기술	515	722			
소방 구급서비스 스마트 첨단기술 연구개발(1160-614)	**3,800**	**2,000**	△1,800		소방청 단독
- 인공지능 기반의 구급상황 통합 관리·지원 플랫폼 개발 및 실증	2,300	1,500		23.-27.	
- AI기반 모바일 뇌파를 이용한 뇌졸중 이송 시스템 개발	1,500	500		24.-26.	
전기기반 모빌리티 관련 시설 및 부품 화재대응 기술개발(1160-617)	**7,806**	**7,900**	94		소방청 단독
- 기계식주차장 전기차 화재 조기대응 소화시스템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안) 개발	1,400	1,500		24.-26.	
-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위험성 분석 및 대응기술 개발	1,846	1,650		24.-27.	
- 재사용 배터리의 운송·보관 단계에서의 화재 위험성 분석 및 화재안전기준(안) 개발	1,860	1,800		24.-27.	
- 전기차 해상운송 중 화재예방을 위한 SOC 기준 설정 및 가이드라인 개발	1,500	1,000		24.-26.	
- 열화상 축적기술 및 영상인식기술을 활용한 전기충전소 및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징후 감지시스템	750	750		24.-27.	
-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접이식 냉각·질식 소화덮개 개발	450	1,200		24.-27.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개발 (1160-618)	**3,000**	**3,000**	-		소방청 단독
- 공기호흡기에 탈부착 가능한 비상탈출용 소방장비 개발	350	350		24.-26.	
- 특수방화복의 활동성 개선 및 교체 주기 확인 기술개발	750	550		24.-26.	
- 소방호스 관리 편의성 증대를 위한 자동화 장비 개발	750	450		24.-26.	
- 소방용 방화헬멧(Type B) 설계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 개발	550	450		24.-26.	
- 화재현장 요구조자 식별 가능한 쌍안경 개발	300	450		25.-27.	
- 압력표시형 소방관창 개발 및 관창 압력 소방차량 연동	300	450		25.-27.	
- 소방대원 근력증강 웨어러블 장비기술 개발	-	300		26.-28.	

계속사업명(세부사업 코드)	'25년 예산	'26년 예산안	증감	연구 기간	비고
합 계	30,531	35,426	△4,895		
소방현장 인명피해 예방 및 저감 기술개발(1160-620)	1,700	3,700	2,000		소방청 단독
- 전통시장 특성을 반영한 AI기반 실시간 전기화재 예방시스템 기술개발	800	1000		25.-27.	
- 경량화된 고층(60m이하) 사용이 가능한 공기안전매트 제품화 기술 및 성능 인증기준 개발	300	1,000		25.-27.	
- 유해가스 분석을 통한 방염제품 연소생성물의 위험성 분석 및 평가 기술	600	800		25.-28.	
- 순직사고 방지 지휘판단기술	-	900		26.-28.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1160-621)	900	1,800	900		소방청 단독
- 소방대원 인프라리스 위치추정 및 관제시스템 기술	500	1,000		25.-27.	
- 소방 현장대원 생명확보를 위한 디스플레이 기술	400	800		25.-27.	
디지털 혁신기반 화재원인 분석기술 개발 (1160-624)	500	2,500	2,000	25.-28.	소방청 단독
다층신소재 기반 현장맞춤형 개인보호기술 개발(1160-623)	390	624	234	25.-28.	다부처
건축물 화재확산 방지 및 피난·소화성능 향상 기술개발(1160-625)	750	1,000	250	25.-29.	다부처
리튬기반 배터리 제조 및 저장·취급 시설 안전을 위한 기술개발(1160-627)	2,600	3,600	1,000		다부처
- 리튬이온배터리 소화장치 및 리튬금속 소화약제 개발	800	800		25.-28.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내화구조 및 방화구획 기준 개발	200	200		25.-28.	
- AI, 센서 기반 전지화재 예측·감지 시스템 개발	200	200		25.-28.	
- 리튬전지 제조 사업장 화재 화재 대응 및 관제시스템 표준기술 개발	400	400		25.-28.	
- 리튬금속 및 리튬이온배터리 화재안전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1,000	2,000		25.-28.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 기술개발(1160-612)	1,500	1,000	△500	23.-27.	다부처
소방현장 탐색·진압 활동지원 센서 및 로봇 기술개발(1160-613)	2,000	1,900	△100	23.-28.	다부처
재난안전연구개발사업 공동전문기관 기획평가관리비(1160-628)	530	799	250	계속사업	

나. 주요 신규 사업 검토

(1)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1160-631)

□ 2026년도 소방청 소관 예산안의 특징은 기후위기로 예기치 못한 대형·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발전과 함께 예기치 못한 신유형의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재난 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비해서 소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초연구와 실증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장비의 도입을 추진하는 것임.

- 소방청의 연구개발사업 역시 이러한 소방청 예산 편성의 기조에 맞추어 대형산불, 극한 호우, 도시 침수, 폭염, 싱크홀 등 복합·대형화되는 기후위기 재난에 대응하고자 “기후위기 재난을 위한 과학적 대응체계구축 및 첨단 소방기술 개발” 사업이 신규로 편성(38억원)되었음.

□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은 산불, 침수, 폭염 등 복합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소방대원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첨단기술 적용 복합재난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234억원의 연구예산이 투입될 계획이고, 1차연도인 2026년에는 38억원이 편성되었음.

<연구과제 개요>

○ 연구목적 :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 소방기술 확보를 통해 국민 생명 보호 및 소방 현장 대응력 강화
○ 연구기간 : 2026. 4. 1. ~ 2029. 12. 31.(45개월)
○ 참여부처 : 소방청
○ '26 소요예산 : 3,800 백만원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R&D) 사업 계획>

내역사업	연구내용	총 소요액	2026예산액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R&D)	○ 토사, 매몰(싱크홀) 구조자를 위한 인명 탐지 및 구조장비 개발	('26~28년) 총 66억원	18억원
	○ 홍수(침수) 등 인명구조 시 사용 가능한 논클러그(Non-clog) 펌프 개발 및 자동제어 시스템	('26~28년) 총 37.5억원	5억원
	○ 산불대응용 개인보호장비(장화, 헬멧, 방화복) 및 현장 고립 시 소방대원 긴급 안전확보 장비 개발	('26~28년) 총 60억원	15억원
	○ 도시 탐색 및 구조를 위한 협소, 침수, 붕괴 공간에서 활용 가능한 다관절 주행로봇 개발	('27~29년) 총 35억원	-
	○ 소방전용 통신기술 개발	('27~29년) 총 35.5억원	-
합계 234억원			**38억원**

(자료: 소방청)

- 동 사업은 소방청의 단독 연구개발 사업으로 산불대응용 개인보호장비(장화, 헬멧, 방화복), 현장 고립 소방대원 긴급 안전확보 장비, 토사 매몰자 탐지 및 구조장비, 침수구역 배수 펌프 등을 개발할 예정임.

- 2025년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경남 산청·하동, 경북 의성·안동·영덕·영양·청송, 울산 울주에서 초대형산불이 발생하여 103,876ha의 산림에 피해가 발생하고, 183명의 인명피해와 1조 818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초래하는 기후위기형 복합재난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기후위기형 복합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R&D 투자 확대, 재난 현장 맞춤형 인명구조 장비·소방장비의 개발 및 보급 등 체계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동 연구개발은 필요한 과제로 보임.

- 다만, 동 사업은 소방청 단독 기술개발 사업이나 연구주제가 산림청(산불대응용 개인보호장비 등 개발), 국토교통부(싱크홀 구조장비 개발), 행정안전부(홍수, 침수) 등 다양한 부처와 관련이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긴밀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특히, 산불대응용 개인보호장비 개발의 경우 현재 보급된 산불진화복, 안전모, 안전화 등이 존재하는 만큼[418] 기존 장비의 단점을 보완하고[419] 산불대응에 보다 효율적이 장비 개발을 위하여 산불 진압 활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현장대원(소방청 소속 중앙 119산불진화대원, 산림청 소속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산불전문

418) 산림청은 산불진화용 방염 진화복, 안전모, 안전화와 관련된 규정을 가지고 있음.

419) 기존 방화복과 헬멧은 무겁고 통기성이 떨어지며, 안전화는 산악 지형에 적절하지 않은 등 기존 산불대응용 개인보호장비의 품질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자료: 경향신문, 불꽃 맞고 물 뒤집어 쓰는 산불진화대원들, 2023.6.28.; 오마이뉴스, 이틀 교육에 허술한 장비. 산불 진화대원 대대적 개선 필요, 2025.3.27.)

예방진화대원 등)을 동 연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또한, 현재 소방청은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개발(1160-618) 사업을 추진 중인데, 동 사업의 내용 중에는 “특수방화복 활동성 개선 연구”, “한국형 소방용 방화헬멧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 개발” 사업이 진행중이고,

  다층신소재 기반 현장맞춤형 개인보호기술 개발(1160-623) 사업을 통해 소방활동복 일체형 보호복 등을 개발 중임.

<개인보호장비 개발 관련 소방청 R&D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기술개발(1160-618)						
	연구기간	총연구비	‘24년	‘25년	‘26년	비고
인체공학 설계 기반 탄소섬유를 이용한 한국형 소방용 방화헬멧(Type B) 최적화 및 경량화 기술 개발	‘24~‘26	1,400	400	550	450	
특수방화복 활동성 개선 및 교체 시기 확인 기술개발	‘24~‘26	1,900	600	750	550	
계		3,300	1,000	1,300	1,000	

자료: 소방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다층신소재 기반 현장맞춤형 개인보호기술 개발(1160-623)						
	연구기간	총연구비	‘25년	‘26년	‘27년	‘28년
최적설계 소방 활동복일체형 보호복 개발	‘25~‘28	1,875	375	600	600	300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소방대원의 개인보호장비 개발과 관련한 유사 사업의 성과를 산불대응용 개인보호장비 개발에 적극적으로 응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소방청은 초대형 산불, 도심형 산불 등 산불 발생의 양상이 최근 변화함에 따라 산불 진압을 위한 소방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그 일환으로 2026년도에 산불대응용 개인보호장비 및 현장 고립 시 소방대원 긴급 안전 확보 장비 개발을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소방헬기·소형 산불진화차 등 산불진압 장비를 확충하고자 장비구입을 위한 예산 9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앙119산불진화대(109명)를 구성하여 산불 발생 초기부터 산불 진압 현장에서 진화작업을 실시할 계획임[420].

420) 소방청은 산불 진압 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산불진압을 위한 인력과 조직은 정비하였으나 산불진압 인력[중앙119산불진화대(109명)]의 산불 진압 관련 개인보호장비 구입 예산은 2026년도에 편성되지 아니하였음.

<산불진압 관련 2026년도 소방청 예산안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명(세부사업 코드)	'25예산 (A)	'26예산 (B)	증감 (B-A)	증감율 (B-A)/A
계	-	13,500	13,500	순증
-기후위기형 복합재난 대응 기술개발(R&D) (1160-631)				
· 산불대응용 개인보호장비(장화, 헬멧, 방화복) 및 현장 고립시 소방대원 긴급 안전 확보 장비 개발		1,800	1,800	순증
-중앙119특수구조대지원(1171-301)				
· 신규 중형 소방헬기 도입(1대)	-	3,600	3,600	순증
· 산불진화차 보강(소형산불진화차 6대, 고성능화학차 2대, 초대형물탱크차 대)	-	5,820	5,820	순증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1133-300)				
·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	-*	2,280	2,280	순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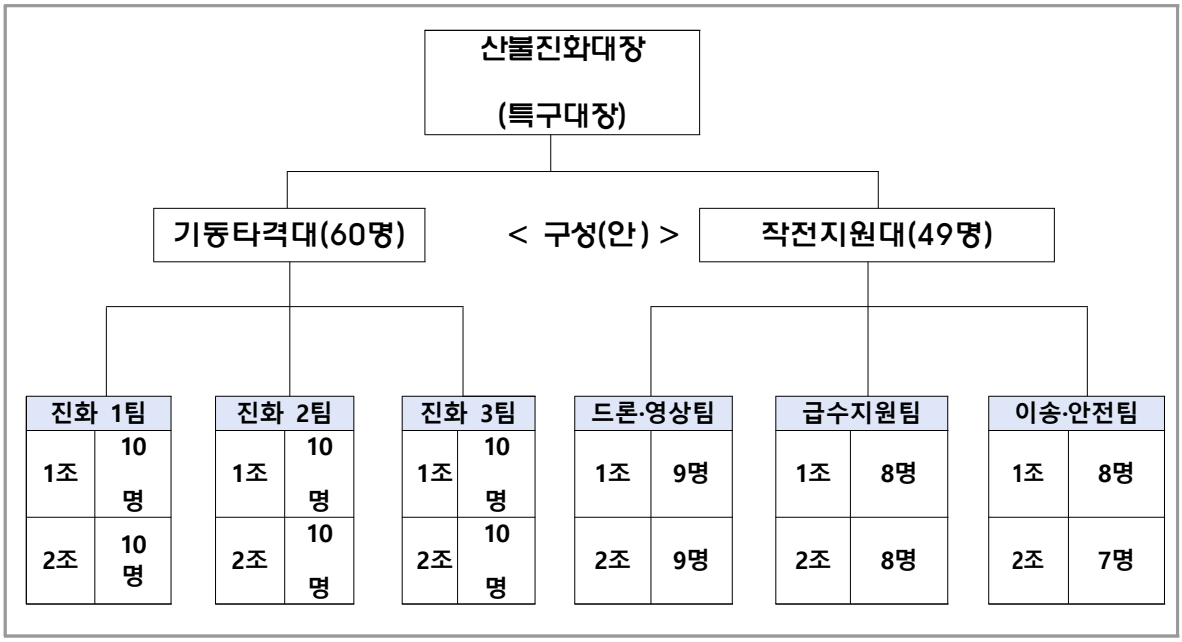
※ 화재안전 및 시설기준개발(1133-300)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림인접지역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에 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5,163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자료: 소방청)

<중앙119산불진화대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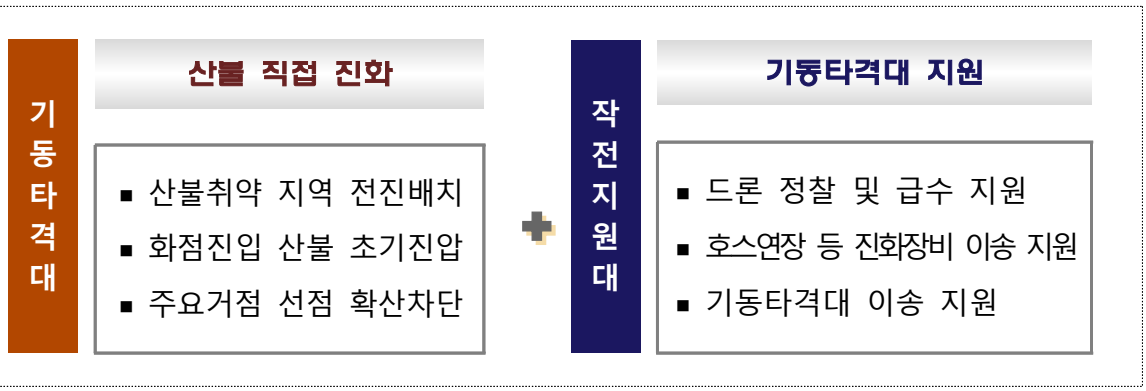
○ (인력구성) 4개 특구대(109명) 중심 산불진화대 인력풀 구성('25.8.18.)

※ 각 조(55명) : 진화 3개팀 및 드론·영상팀, 급수지원팀, 이송·안전팀으로 구성



○ (운영방안) 기동타격대(60명)와 작전지원대(49명) One-Team 체계 운영

- **(추진방향)** 사전소집을 통한 취약지역 전진배치 및 신속 현장대응
- **(동원체계)** 소방청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및 산불 확산 대응단계에 따른 동원(2교대 등 상황에 따라 탄력 운영) **※ 소방청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소집**



(자료: 소방청)

(2) 철도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소방철도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대응 시스템 기술개발(1160-630)

□ “철도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소방철도모빌리티[421] 및 디지털 사고대응 시스템 기술개발(R&D)” 사업은 국내 철도운영 환경에 최적화되어 선로 내에서 직접적인 소방 및 구급활동이 가능한 철도차량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고 1차연도인 2026년에는 18억원이 편성되었음.

<연구과제 개요>

○ 연구목적 : 철도 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철도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대응 체계 개발 ○ 연구기간 : 2026. 4. 1. ~ 2030. 12. 31.(57개월) ○ ‘26 소요예산 : 1,800 백만원

<철도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소방철도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대응 시스템 기술개발(R&D) 사업 계획>

내역사업	연구내용	연구과제(소요액)	2026예산액
철도사고 신속대응을 위한 소방철도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대응 시스템 기술개발(R&D)	○ 소방철도 모빌리티 및 디지털 사고대응 체계(안) 기술개발, 운영 관련 법/제도 및 운영 가이드라인(안) 수립 등	(‘26~30년) 총 284억원	18억
합계 284억원			**18억**

(자료: 소방청)

421) 소방철도 모빌리티란 국가 중요시설인 철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용 철도 개발로 철도 내에 화재진압을 위한 물탱크, 관창 및 연결호스 등 소화시설과 소방대원과 장비를 사고지역까지 이송하기 위한 이송 모듈, 인명을 구조하고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구조·구급 모듈이 포함된 소방용 철도차량을 의미함(자료: 소방청).

- 현재까지 국내 철도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와 기술이 없는 실정이고, 특히 철도시설은 고위험/특수시설로 분류되는데 다량의 터널 및 교량 등으로 인해 소방대와 소방장비의 접근에 제한이 많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국내 철도시설 운영환경에 최적화된 화재 및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 및 구급활동 전용 모빌리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임.

- 다만, 소방청은 동 사업의 연구 성과물인 소방 철도의 활용 계획에 대해서는 2025년 11월 현재 아직 구체화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음. 동 사업은 5년에 걸쳐 총 2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인 만큼 소방청은 소방 기술개발의 성과물을 소방 재난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방철도를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3) 위험물 시설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1160-629)

□ “위험물 시설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R&D)” 사업은 인화성·발화성이 높은 위험물의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 기술을 확보해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험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고 1차연도인 2026년에는 18억원이 편성되었음.

<연구과제 개요>

○ 연구목적 : 인화성·발화성 높은 위험물 화재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 확보를 통한 국민 생명 보호 및 위험물 사고 피해 최소화
○ 연구기간 : 2026. 4. 1. ~ 2030. 12. 31.(57개월)
○ ‘26 소요예산 : 3,500 백만원

<위험물 시설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R&D) 사업 계획>

내역사업	연구내용	연구과제(소요액)	2026예산액
위험물 시설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R&D)	○ 국내 위험물 분류 및 판정 체계 고도화 및 위험물 물성 분석·판정 방법 개발	(‘26~30년) 총 81억원	6억원
	○ 위험물 사고 현장 의사결정 보조를 위한 스마트 통합 지휘시스템 개발	(‘26~28년) 총 40억원	10억원
	○ 산업 현장 및 연구 시설 소규모 화학물질 유출 대응을 위한 휴대용 중화제 기술 개발	(‘26~28년) 총 18억원	4억원
	○ 위험물 사고현장 대응 훈련시스템 개발	(‘26~28년) 총 35억원	9억원
	○ 위험물 사고 대응 현장대원용 유해화학물질 제독 시스템 기술개발	(‘26~28년) 총 26억원	6억원
합계 200억원			**35억원**

(자료: 소방청)

- 위험물 사고는 공공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민간기업의 연구개발만으로는 위험물 안전에 충분한 기술 축적과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임.

- 한편, “위험물 시설 화재·폭발 사고 예방 및 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세부과제인 “국내 위험물 분류 판정 체계 고도화 및 위험물 물성 분석·판정방법 개발”은 위험물 분석·판정 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위험물 분석·판정 장비와 시험법을 개발하는 사업인데,

  산화성 물질, 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에어로졸 물질 등 많은 화학물질이 GHS 국제기준[422]과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 간에 분류체계와 시험방법이 서로 달라[423] 위험물 사고 시 서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고[424] 위험물질의 수출입 시 국제기준에 따른 판정시험을 진행한 물질이라도 국내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판정 시험을 진행해야 하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위험물 분석·판정 장비와 시험법을 개발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

422) GHS 국제기준 : 화학물질 분류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n Classification and Labeling for Chemicals)

423)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을 물리적 위험성 관점(화재·폭발 관점)에서 제1류부터 제6류까지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GHS는 화학물질을 물리적 위험성(17종), 건강유해성(10종), 환경유해성(2종)으로 관리하고 있음.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도 같은 '인화성액체'도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은 250도 미만까지 위험물로 보나, GHS는 93도 이하까지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봄(자료: 소방청).

424) 산화성 액체를 예로 들면 국제기준(GHS)은 판정방법이 시간압력 시험으로 표준시료와 물질을 혼합하여 밀폐된 강철튜브에 넣고 폭발시켜 시간당 상승하는 압력 속도를 측정하여 판정하는 반면, 국내 기준에서는 표준물질과 목분을 혼합하여 불을 붙여 화염이 유지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됨(자료: 소방청).

- 다만, 소방청은 장기과제로 위험물에 대한 국내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세부과제는 실제 소방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향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을 대비해서 필요한 내용도 포함해서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국내 위험물 분류 판정 체계 고도화 및 위험물 물성 분석·판정방법 개발 세부과제: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안)>

(단위: 백만원)

세부내용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소 계
위험물 분석·판정 분류체계 개발 및 검증	국제기준·사례 비교분석, 문제점·개선요소 분석, 제도 도입 핵심요소 설계	분류체계 검증 및 시험, 품명별 물성시험 실시	위험물 분류체계 재정립	-	-	1,400
	300	500	600	-	-	
위험물 분석·판정 장비 및 실증환경 구현	-	시험장비 도입방안 수립	실증환경 구현을 위한 기획 및 기반 조성	물성시험 적용 시험장비 개발, 실증환경 구현	최종 시험장비 개발·검증	4,200
		600	700	1,100	1,800	
위험물 분석·판정 시험법 개발 및 검증	국제수준 시험법 비교분석, 문제점·개선요소 분석	시험법 도입방안 수립	시험결과 분석·DB 구축	최종 시험법 개발·검증	-	2,500
	300	500	600	1,100	-	

(자료: 소방청)

다. 연구개발 성과물의 현장 적용성 강화 노력 필요

□ 소방청은 기존 소방안전분야 연구성과의 사장을 방지하고 현장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1161-621)”을 추진하고 있는데,

2026년도는 “소방대원 인프라리스 위치 추정 및 관제시스템 기술개발”과 “보급형 핸즈프리 열화상 비전 디바이스 개발” 2차 연도로 각각 10억원, 8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음.

- 동 연구개발의 특징은 각 과제 추진 3차 연도에는 소방재난 현장에서의 실증을 거쳐 최종 결과물의 인증 또는 성능기준 평가를 위한 규격 제시 등 실제 소방재난 현장에서 즉시 사용가능한 결과물을 만드는 것임.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1161-621) 예산편성 내역>

구 분	연구기간	총연구비	2025	2026	2027	비고
소방대원 인프라리스 위치추정 및 관제시스템 기술 개발	‘25~‘27	2,500	500	1,000	1,000	
시야개선 영상처리 기술 기반 보급형 핸즈프리 열화상 비전 디바이스 개발	‘25~‘27	2,000	400	800	800	
계		4,500	900	1,800	1,800	

(자료: 소방청)

<소방안전 현장활용 기술개발: 과제별 추진내용>

o 소방대원 인프라리스 위치추정 및 관제시스템 기술 개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모니터링/관제	**모니터링/관제**	**통합테스트 및 실증**
• 모니터링/관제 시스템 설계 • 전자지도 가공기 개발 • 위험상황 감지 기술 조사 • 실내측위 지원 기술 조사	• 3D 전자지도 및 모니터링 개발 • 자원 및 이력관리 중앙 관제 개발 • 위험상황 감지 및 SOS 개발 • 랜드마크 자동 추출 개발	• 성능 분석용 통계 기능 개발 • 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테스트 • 실증 주관
복합 위치인식 시스템	**복합 위치인식 시스템**	**복합 위치인식 시스템**
• AI 통합 측위 시스템 설계 • 낙상 및 비정상 움직임 탐지 • P2M 메시네트워크 검증 • 모듈 펌웨어 개발	• 저대역폭 측위 엔진 개발 • 저전력 측위 기술 경량화 • ZigBee 애드온 HW 개발	• 동작 검증 및 성능 개선 • 단말 펌웨어 보완
위치추적 단말기	**위치추적 단말기**	**위치추적 단말기**
• 단말 보드 하우징 설계 • 단말 프로토타입 및 인증 검토	• 단말 프로토타입 최적화	• 단말 하우징 • 테스트 및 인증 시험
현장 실측 방안	**현장 실측 및 실증 계획**	**현장 실증**
• 측위 장치 제어기술 보완 • 사전 전자지도용 실내 측위 기술 검토	• 실내 3D 모델 구축 • 실증 대상지 정밀 전자지도 구축 • 실증 계획 수립	• 실증 대상지 정밀 전자지도 구축 • 실증 체계 수립 및 실증 평가

o 화재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시야확보를 위한 보급형 핸즈프리열화상 카메라 및 면체 내부 무선 디스플레이 디바이스 개발



자료: 소방청

□ 선제적으로 소방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유형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기 위해서는 소방 연구개발이 필수적임. 그런데, 소방 연구개발의 최종 목적은 소방재난 상황에서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응용 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고 보임.

소방 R&D 성과물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방대원의 안전확보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이를 소방 현장에서 검증하는 다양한 실증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임. 소방청은 현장 실증이 포함되는 연구개발사업이 보다 많아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제도적 방안 마련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Ⅳ. 대체토론 요지

ㅇ 생략

Ⅴ.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행정안전부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

- 8,081억 4,800만원 순증액
- 증액 : 51개 사업, 8,082억 5,200만원
- 감액 : 2개 사업, 1억 400만원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 미합의로 2개안 병기)

(1안) 2,226억 800만원 순증액

- 증액 : 11개 사업, 2,226억 800만원

(2안) 6,523억 9,200만원 순감액

- 증액 : 11개 사업, 1,976억 800만원
- 감액 : 1개 사업, 8,500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

- 62억 7,900만원 순증액
- 증액 : 5개 사업, 62억 7,900만원
- 감액 : 없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없음

나. 세출 : 수정의결

- 4,400만원 순증액
- 증액 : 1개 사업, 4,400만원

인사혁신처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

- 116억 9,800만원 순증액
- 증액 : 4개 사업, 116억 9,800만원
- 감액 : 없음

2. 공무원연금기금 : 원안의결

경찰청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

- 543억 6,200만원 순증액
- 증액 : 20개 사업, 571억 2,600만원
- 감액 : 2개 사업, 27억 6,400만원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원안의결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없음

나. 세출 : 원안의결

소방청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

- 366억 3,100만원 순증액
- 증액 : 9개 사업, 366억 3,100만원

Ⅵ. 심사결과

행정안전부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

- 8,081억 4,800만원 순증액
- 증액 : 51개 사업, 8,082억 5,200만원
- 감액 : 2개 사업, 1억 400만원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 미합의로 2개안 병기)

(1안) 2,226억 800만원 순증액

- 증액 : 11개 사업, 2,226억 800만원

(2안) 6,523억 9,200만원 순감액

- 증액 : 11개 사업, 1,976억 800만원
- 감액 : 1개 사업, 8,500억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

- 62억 7,900만원 순증액
- 증액 : 5개 사업, 62억 7,900만원
- 감액 : 없음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 : 해당없음

나. 세출 : 수정의결

- 4,400만원 순증액
- 증액 : 1개 사업, 4,400만원

인사혁신처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

- 116억 9,800만원 순증액
- 증액 : 4개 사업, 116억 9,800만원
- 감액 : 없음

2. 공무원연금기금 : 원안의결

경찰청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

- 543억 6,200만원 순증액
- 증액 : 20개 사업, 571억 2,600만원
- 감액 : 2개 사업, 27억 6,400만원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원안의결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가. 세입 : 해당없음

나. 세출 : 원안의결

소방청 소관

1. 일반회계

가. 세입 : 원안의결

나. 세출 :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수정의결

- 366억 3,100만원 순증액
- 증액 : 9개 사업, 366억 3,100만원

Ⅶ. 소수의견의 요지

1. 행정안전부 소관

○ 해당사항 없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3.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4. 인사혁신처 소관

○ 해당사항 없음

5. 경찰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6. 소방청 소관

○ 해당사항 없음

Ⅷ. 부대의견

행정안전부 소관

1. 행정안전부는 공공 데이터의 기계 판독성 확보와 특정 소프트웨어 종속성 해소를 위해, HWP 등 폐쇄형 포맷을 국제 표준인 개방형 문서 포맷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AI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문서 구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입력을 의무화하는 이행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2. 행정안전부는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사업’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과의 중복성 및 데이터 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3. 행정안전부는 ‘AI정부24(AI 통합민원플랫폼)’ 추진에 앞서 사업에 투입되는 AI 분야 전문인력 수준 및 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4.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내 노후 UPS·배터리 교체 및 공주센터 내 UPS·배터리 분리사업 추진 시 전기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 방식 등을 검토한다.

5.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인구의 실질적인 지방 유입·체류를 독려할 수 있도록 개별 청년마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6.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사업 지침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중 소득보장정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집행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7.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지속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위한 운영비가 차질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여야 하며,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장기적인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8.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나 산하기관에 모든 재원을 이전하여 집행률을 명목상 높이지 않도록 실집행률을 관리하고, 기금의 취지에 맞도록 일회성·전시성 사업을 지양하며 정주여건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및 평가 기준을 보완한다.

9.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10. 행정안전부는 초고령화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수가 적지만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동산교부세가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1. 행정안전부는 2026년 보통교부세 교부기준 개선방안 적용 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금성 복지지출 운영·사회연대경제조직 관련 개정사항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2.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만전을 기하고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13. 행정안전부는 탄소감축·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보통교부세 보정수요를 보강하고, 특별교부세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달성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14. 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330-01목), 자치단체교부금(330-02목),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목),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목) 사업 중 지방소멸완화 및 극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해당 사업들의 효과 및 성과를 평가·관리하는 '균형성장 영향 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15.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여건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교부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율 상향 등의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16.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비부담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한다.

17.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지역사랑상품권 참여수준을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18.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19.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기반 순환형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20.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이전을 위한 예산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1.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가 심사한 예산을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22. 행정안전부는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과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23.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재난대책비 예산과 전년도 복구비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에서 선거범죄 등이 제외되어 한정된 경찰 수사 인력만으로 충분한 수사가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선거범죄 등에 대한 자체 예방·적발·단속·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내부 역량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 소관

1.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 위험직군 공무원의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데이터를 축적하게 하고, 공무상 재해요양 신청 시 인사혁신처가 정신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2.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협의회의 안건에 '범정부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을 상정하고, 트라우마 전문가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경찰청 소관

1.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및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생활밀착형 구조로 경력을 재배치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2. 경찰청은 세종시 소담동 등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9억원을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사업으로 설정하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집행한다.

3. 경찰청은 장비관리유지 사업의 저위험권총 및 저위험탄 구입 예산 214억 3,900만원을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사업으로 설정하고, 저위험권총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성이 인정된 경우 예산을 집행한다.

4. 경찰청은 70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단축하고, 70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한다.

5.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6. 경찰청은 공공 데이터의 기계 판독성 확보와 특정 소프트웨어 종속성 해소를 위해, HWP 등 폐쇄형 포맷을 국제 표준인 개방형 문서 포맷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AI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문서 구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입력을 의무화하는 이행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소방청 소관

1. 소방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49만 8천 세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반영한다.

2. 소방청은 화재진압용 개인 보호장비 소모품(방화신발, 장갑, 두건)이 화재진압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현행보다 개선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3. 소방청은 재난현장 지휘권 확립을 위해 조속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으로 상향한다.

<참고자료>

Ⅰ.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 총괄표

1. 세입예산안 예비심사결과: 조정 없음

2. 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단위 : 백만원)

위원회명	소 관	회 계	수정의결		
			증 액	감 액	증 감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일반회계	808,252	△104	808,148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2,608 (197,608)	- (△850,000)	222,608 (△652,39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회계	6,279	-	6,279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일반회계	44	-	44
	인사혁신처	일반회계	11,698	-	11,698
	경찰청	일반회계	57,126	△2,764	54,362
	소방청	일반회계	36,631	0	36,631
	합 계		1,142,638 (1,117,638)	△2,868 (△852,868)	1,139,770 (264,770)

주 1) 회계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기준으로 작성(단, 회계-기금 간 거래인 기금 전출금 증감액 등은 포함)

2) 증액, 감액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변동된 금액을 의미

3) 예비심사 결과 두가지 안이 제시된 경우 최저금액을 괄호 안에 표시

3.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결과: 조정 없음

Ⅱ.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가. 행정안전부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공공부문 AI서비스 지원(정보화) (2039-508)	-	-	20,608	25,440	4,832	○ 내역사업인 '공공 AI 사업지원센터'는 260개 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100여개 AI 사업 컨설팅 지원을 위해 48억 3,200만원 증액	
2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사업 (정보화) (2032-506)	929	929	-	8,933	8,933	○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약 20년 전 구축상태로 노후화, 보안에 취약하고 시스템이 중단될 수 있어 차세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한바, 1차년도 사업비 89억 3,3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3	정보보호인프라 확충(정보화) (2033-500)	19,933	19,933	19,514	29,984	10,470	○ 모바일신분증 플랫폼 보강 및 개선(76억원), 중앙부처 인증시스템 보안체계 강화 점검(23억 5,000만원), 간편인증 확대 보안 취약점 점검 및 기능 고도화(5억 2,000만원)를 위해 104억 7,000만원 증액 필요	
4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정보화) (2035-507)	1,471	1,471	543	1,086	543	○ 전국에 산재된 유휴 공공자원을 국민이 한 곳에서 검색·예약할 수 있는 정부 플랫폼 '공유누리'의 운영 및 유지관리 예산을 2025년도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해 5억 4,300만원 증액 필요	
5	행정정보화지원 및 관리조정(정보화) (2041-502)	3,901	3,901	3,511	6,375	2,864	○ 1·2등급 지방행정정보시스템이 입주해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28억 6,400만원 증액 필요	
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정보화) (2046-503)	15,008	15,008	10,478	17,078	6,600	○ 내내역사업인 '국가공유DB 구축'은 AI 대전환에 따라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66억원 증액 필요	
7	행정서비스통합 포털운영(정보화) (2047-500)	24,999	24,999	20,733	31,748	11,015	○ 내역사업인 '행정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은 각종 정부 서비스를 AI를 활용하여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정부24(AI 통합민원플랫폼)를 구축하기 위해 110억 1,5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8	인허가민원종합 시스템 (정보화) (신설)	-	-	-	5,031	5,031	○ 국민과 기업이 인허가 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지자체에 분산된 행정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50억 3,100만원 신규 편성 필요 ※ 증액 내역 - 원스톱서비스 SW개발 및 선도 과제 구현 : 36억원 - 기관 간 연계 : 2억원 - 지원 사업 발굴 : 12억원	
9	지자체경쟁력 지원 (1139-307)	6,410	6,410	5,323	5,823	500	○ 내역사업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미편성)은 주민자치회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5억원 증액	
10	새마을운동지원 (1142-304)	792	792	713	3,763	3,050	○ 내역사업 '새마을운동중앙회 연수생활관 리모델링'(미편성)은 중앙회 연수생활관 4개동의 시설 노후화('83년 준공)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및 새마을운동 종주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 제고를 위해 리모델링 설계비 및 공사비 30억 5,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1	행복한 선진시민사회 구현 (1143-305)	180	180	161	2,180	2,100	○ 내역사업 '대전 자유회관 시설보강'(미편성)은 한국자유총연맹이 사용 중인 국유재산(자유회관 대전지부)의 노후화('86년 준공, '24년 정밀안전진단 D등급)로 시설보강 및 보수공사를 위해 21억원 증액	
						△81	○ 내역사업 '한국자유총연맹 지원'(1억 6,1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900만원 감액)은 한국자유총연맹의 규모 및 다른 비영리단체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8,100만원 감액	
12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 (1143-308)	189	189	170	1,670	500	○ 내역사업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환경개선'(미편성)은 중앙협의회가 임차 사용 중인 국유재산(기재부 소유)의 환경개선을 위해 5억원 증액	
						1,000	○ 내역사업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지원'(1억 7,0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900만원 감액)은 중앙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예산 지원을 위해 10억원 증액	
13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1145-300)	7,513	7,513	6,115	9,513	298	○ 내역사업 '국민통합위원회 운영비'(37억 3,9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3억 9,800만원 감액)는 회의참석수당 현실화 및 홍보 강화를 위해 2억 9,800만원 증액	
						3,100	○ 내역사업 '국민통합위원회 사업비'(23억 7,600만원, 전년 본예산 동)는 내내역사업(사회적대화기구 운영, 통합공모전 개최, 대국민 소통행사 등) 확대 추진을 위해 31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4	지역청년 일자리+사업 (신설)	-	-	-	13,500	13,500	○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내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135억원 증액	
15	한국섬진흥원 지원 (1242-300)	4,863	4,863	4,463	5,874	1,411	○ 한국섬진흥원의 섬 정보·통계 DB 플랫폼 구축 사업을 위하여 14억 1,100만원 증액	
16	알뜨르비행장 부지 평화공원 조성 (신설)	-	-	-	1,800	1,800	○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고려하여 18억원 증액	
17	기록물보존복원 (2331-306)	4,830	4,830	4,747	5,238	491	○ 내역사업 '기록물복원'(35억 4,8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억 5,500만원 감액)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관 종이기록물의 디지털화를 위한 예산 4억 9,100만원 증액	
18	전자기록 관리체계구축 (정보화) (2332-501)	4,089	4,089	6,505	7,389	884	○ 내역사업 '기록물 생산·관리 통합시스템 구축'(28억 5,9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24억 5,100만원 증액)은 AI 시대에 부합하는 기록관리 핵심기능 개발을 위해 8억 8,400만원 증액	
19	기록정보서비스 (2334-300)	1,746	1,746	1,254	1,742	488	○ 내역사업 '소장기록물 공개재분류'(5억 6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00만원 감액)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이관 비공개기록물의 부분공개를 위한 개인정보 비식별화 예산 4억 8,8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0	정부청사노후 시설등정비 (2231-301)	16,227	16,227	20,177	21,077	900	○ 정부청사 중 UPS 및 ESS 시설 관련 전기설비규정을 미충족하는 일부 청사에 대한 안전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 9억원 증액	
21	이북도민 관련단체 및 행사지원 (1531-302)	1,209	1,209	1,532	1,626	△23	○ 내역사업 '국외 이북도민 고국방문단 초청행사'(3억 4,700만원, 전년 본예산 동)는 이북5도위원회의 발전적 개편을 위해 해외이북도민 대상 정책설명 예산(국외업무여비) 2,300만원 감액	
						117	○ 내역사업 '남북 실향민문화 육성사업 지원'(미편성,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1,700만원 순감)은 실향민과 북한이탈주민 대상 남북 문화교류 사업 추진을 위해 전년 수준으로 1억 1,700만원 증액	
22	국가정보자원관 리원운영 (정보화) (2036-500)	272,149	272,149	270,240	314,626	44,386	○ 국정자원 화재 복구 시 예비비를 통해 대전센터에서 대구센터 내 민간클라우드로 이전된 5개 기관 16개 업무시스템*의 2026년도 이용료, 대전센터의 노후 UPS 배터리 교체 및 공주센터의 UPS·배터리 분리 등을 위해 443억 8,600만원 증액 ※ 증액 내역 - 대구센터 민간클라우드 이용료 : 399억 600만원 - 노후 배터리 교체 : 20억 8,400만원 - 공주센터 UPS·배터리 분리 : 23억 9,600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3	범정부 신규도입 전산장비 통합구축 (정보화) (2036-503)	83,099	83,099	98,197	167,103	63,050	○ 대전센터 내 재해복구시스템이 미구축된 주요 정보시스템에 대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복제하는 스토리지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을 위해 630억 5,000만원 증액	
						5,856	○ 대전센터 긴급복구를 위해 투입된 전산장비 중 리스로 도입된 일부 전산장비의 2026년 리스료 58억 5,600만원 증액	
24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 (정보화) (2036-507)	173,334	173,334	158,400	668,500	510,100	○ 대전센터 주요 정보시스템의 이중화 추진을 위하여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민간 클라우드에 서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공주센터에 서버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5,101억원 증액 ※ 증액 내역 - 최적 이중화 모델 분석을 위한 ISP 수립 : 466억원 - 민간 클라우드 이전 및 서버 DR 구축 : 1,935억원 - 공주센터 등에 서버 DR 구축 : 2,250억원 - 민간 클라우드 활용 스토리지 DR 구축 : 417억원 - 대전센터 이전 및 신축 검토 : 33억원	
25	국가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정보화) (2045-500)	16,642	16,642	30,318	31,868	1,550	○ 내역사업인 '백본전송망 회선비'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국가정보통신망 백본전송망을 운영·관리하는 것으로,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후 늘어날 국가정보통신망 트래픽에 대비하여 15억 5,0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6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전환·정착 지원 (신설)	-	-	-	63,600	63,600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636억원 증액	
27	지방분권 종합타운 조성 (신설)	-	-	-	300	300	○ 지방균형발전 추진을 선도하기 위한 종합타운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3억원 증액	
28	전국민탄소중립 실천지원- 대국민참여 기반마련 및 실천공동체조성 (신설)	-	-	-	400	400	○ '탄소중립 실천 공동체 조성'을 위해 3억원을 신규로 반영 ○ '탄소중립 실천 공모대회 개최'를 위해 1억원을 신규로 반영	
29	지방정부탄소 중립실행기반 강화-협력기반 마련 및 우수지자체발굴 (신설)	-	-	-	500	500	○ 지방정부 탄소중립 협력 워크숍을 위해 2억원을 신규로 반영 ○지방정부 탄소중립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3억원을 신규로 반영	
30	과거사 관련 사업 지원 (2431-301)	10,461	10,461	9,405	9,705	300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노근리사건 명예 회복' 관련 영문교육자료집 제작을 위한 사업비 3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31	대일항쟁기강제동원조사 지원 및 운영 (2432-300)	7,694	7,694	8,619	9,302	683	○ 최근 일본 조세이탄광 유해 발견에 따라 향후 추가 유해발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고려하여 유해발굴 지원과 협력, 유전자 검사 등을 위한 예산 6억 8,300만원 증액	
32	부마민주항쟁 명예회복지원 (2433-300)	2,578	2,578	2,530	2,985	455	○ 내역사업인 '부마민주항쟁재단 지원' 사업의 예산이 전 정부에서 36% 삭감되었으므로(2020년 22억원→2024년 14억 400만원), 원활한 사업지원 및 목적에 따른 신규사업 지원을 위해 4억 5,500만원 증액	
3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지원 (2434-300)	8,033	8,633	7,230	11,154	1,565	○ 1987년 이후 국민 기본권운동 기록화 사업, 사료 수집 및 관리, 사료정리서비스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15억 6,500만원 증액	
						417	○ 민주화운동사업회 소장 사료 기반 연구체계 구축, 민주화운동 사전편찬, 연구성과 체계화 시스템 구축 등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4억 1,700만원 증액	
						1,442	○ 민주화운동기념관 M2(옛 대공분실) 6,7층의 업무공간을 이전하고 이를 전시 및 관람객 편의공간으로 제공하여 기념관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람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업무공간 이전 및 복원 사업비 14억 4,200만원 증액	
						500	○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을 위한 제3회 민주주의 마라톤 개최, 민주화운동 문화공연 등의 시민참여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5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34	민주화운동기념 사업 지원 (2435-300)	30,864	30,864	24,758	30,707	500	○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 등으로 주목받는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상징콘텐츠로 개발하여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제사회에 K-민주주의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비 5억원 증액	
						500	○ 5·18민주이념을 계승·기념할 수 있는 전남 5·18기념관 및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5억원 증액 필요	
						1,200	○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2억원 증액 필요	
						1,700	○ 5·18 당시 피를 나누고 생명을 살렸던 옛 광주적십자병원의 역사적 공간 보존 및 '5·18미래세대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17억원 증액	
						500	○ 중부권 대표 민주주의 교육공간인 3·8민주의거기념관 개관('24.11.)에 따라 3·8민주의거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3·8아카데미 강좌, 3·8민주의거 주제 공연, 3·8TV 개설 및 운영 등 시민참여형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 5억원 증액	
						1,549	○ 사업회법과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인 민주화운동기념관의 운영을 위한 시설의 유지보수 및 원형 복원을 위해 15억 4,9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35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2436-300)	1,954	1,954	3,188	5,362	911	○ 광주센터 정원(13명) 인건비 부족분과 물가상승비, 운영비 부족분,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등 치유 서비스 확대를 위해 추가인력 10명의 인건비 및 사업비 9억 1,100만원 증액	
						663	○ 제주센터의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적정 서비스 및 맞춤형 지원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을 위한 6억 6,300만원 증액	
						600	○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및 선감학원 등 인권침해사건 피해자에 대한 트라우마 치유 지원을 국가에 권고함에 따라 트라우마 치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6억원 증액	
36	인건비(본부) 7001-100	182,338	182,338	191,892	192,236	344	○ 여순사건위원회의 활동종료시한까지 미처리 사건의 처리를 완료하기 위해 조사전문인력 5명의 증원을 위한 인건비 3억 4,400만원 증액	
37	여수·순천 10·19위원회 지원 (2437-300)	4,804	4,804	3,770	5,393	1,623	○ 성공적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여순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 기획단 운영비와 수집된 사료 내용의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비, 미국·러시아 등의 자료 수집을 위한 국외여비 등 총 16억 2,300만원 증액	
38	집중안전점검 및 정부합동 안전점검 운영 (2631-301)	3,204	3,204	3,275	3,375	100	○ 내역사업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1억 5,000만원)'의 선령 초과 유선 및 도선의 대체 건조 지원 규모를 연 1척 수준에서 연 최대 3척까지 확대하기 위해 1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39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2631-303)	3,124	3,124	3,004	3,304	300	○ 신규 내역사업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의 필요성 등을 구체화하는 연구용역비 3억원 증액	
40	재난안전 드론 상황실 연계 및 역량강화 (2631-307)	-	-	3,390	5,390	2,000	○ 드론-상황실 연계 사업 대상 지자체 확대 및 지자체 드론 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제공을 위해 20억원 증액	
41	국민안전의식 선진화 (2632-301)	3,032	3,032	2,741	2,841	100	○ 신규 내역사업 '충청남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의 기본계획 수립비 1억원 증액	
42	승강기안전관리 개선 (2632-306)	5,872	5,872	6,010	9,031	3,021	○ 신규 내역사업 '안전 취약요소 점검 및 모니터링 감지장치 설치'의 다중이용시설 승강기 실태조사를 위해 30억 2,100만원 증액	
43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 (정보화) (3031-502)	112,752	112,752	129,073	130,873	1,800	○ 내역사업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역량 강화(2억원)'의 거점별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현장교육 및 합동훈련, 교육콘텐츠 제작 비용 18억원 증액	
44	재난안전 AI 관제체계 및 데이터 구축(정보화) (3032-509)	5,075	5,075	12,369	15,830	3,461	○ 내역사업 'AI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지원시스템 구축(31억 3,500만원)'의 플랫폼 기능 고도화 및 CCTV 영상정보 수집 연계 지자체 확대 등을 위해 34억 6,1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45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2731-300)	551	551	601	2,416	1,815	○ 신규 내역사업 '주민대피지원단운영'의 마을 단위 대피지원조직 수당 등을 지원하기 위해 18억 1,500만원 증액	
46	재난관리평가 지원 (2731-301)	655	655	662	1,154	492	○ 내역사업 '우수기관 포상금(4억 9,200만원)'의 우수기관 훈격별 포상금 100% 확대를 위해 4억 9,200만원 증액	
47	10·29참사 피해자지원단 운영지원 (2735-309)	545	545	3,393	3,943	250	○ 내역사업 '피해지원사업' 이태원참사 피해자지원에 관한 인터넷 소통창구를 누리집으로 구축하기 위한 제작비 2억 5,000만원 증액	
						300	○ 내역사업 '추모사업'의 이태원참사 4주기 추모행사를 정부 주관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3억원 증액	
48	재난심리회복 지원 (2734-303)	940	940	1,052	1,333	51	○ 내역사업 '재난경험자 심리회복프로그램 운영(2억원)'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자의 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5,100만원 증액	
						230	○ 신규 내역사업 'AI 기반 재난심리회복지원 플랫폼 구축 ISP 수립'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예산 2억 3,000만원 증액	
49	민방위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2634-304)	6,736	6,736	10,592	17,718	7,126	○ 내역사업 '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38억 3,600만원)'의 국고보조율 상향(70%→100%) 및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해 71억 2,6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50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운영 (0000-000)	-	-	-	1,400	1,400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구성하는 지원조직의 운영 예산 14억원 증액	
51	7·15참사 피해자 지원단 운영지원 (2735-000)	-	-	-	185	185	○ 7·15오송 지하차도 참사 피해복구와 유가족 위로 등을 위해 피해자지원단을 운영하고, 추모사업 관련 유가족 요청사항 지원을 위한 1억 8,500만원 증액	

주 1) 총괄표(순계기준)와 달리 회계 간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2)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0000-000)은 사업코드번호(단위사업-세부사업)를 의미

3) **“수정이유”는 감액(증액)이유와 감액(증액) 대상사업이 드러나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특히, 감액의 경우 감액사유를 상세히 작성)**

4) “비고”에는 증감액 연계사업 등을 표시, 예를 들면 ※증감액연계(세부사업간), ※증감액연계(내역사업간)

5) **각각의 회계·기금에 대한 조정내역(표)이 사업별·페이지별로 분리되지 않고 1개의 표로 이루어지도록 작성**(사업별·페이지별로 새로운 표를 만드는 것이 아닌, 줄을 추가하여 작성)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자율계정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특수상황 지역개발 (1231-300)	194,260	194,260	199,449	204,849	4,800	○ 내역사업인 '인제 주민복지시설 진·출입로 안전시설 보강 및 편의시설 조성'(신규) 사업의 신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48억원 증액	※증감액연계 (내역사업간)
						600	○ 내역사업인 '홍성 죽도 생태 탐방로 및 둘레길 설치' (신규) 사업의 신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6억원 증액	
2	접경권발전지원 (자율) (1233-300)	45,627	45,627	53,271	57,771	3,500	○ 내역사업인 춘천시 '춘천 소양8교 건설'(신규) 사업으로 춘천 강북지역의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35억원 증액	※증감액연계 (내역사업간)
						1,000	○ 내역사업인 양주시 '양주 평화로 가로환경 개선'(신규) 사업의 신규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고려하여 10억원 증액	

주 1) 특별회계 내 계정이 구분되는 경우, 계정별로 구별하여 작성

2) 총괄표(순계기준)와 달리 회계 간 내부거래를 포함하여 작성

3)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0000-000)은 사업코드번호(단위사업-세부사업)를 의미

4) **"수정이유"는 감액(증액)이유와 감액(증액) 대상사업이 드러나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특히, 감액의 경우 감액사유를 상세히 작성)**

5) "비고"에는 증감액 연계사업 등을 표시, 예를 들면 ※증감액연계(세부사업간), ※증감액연계(내역사업간)

6) **각각의 회계·기금에 대한 조정내역(표)이 사업별·페이지별로 분리되지 않고 1개의 표로 이루어지도록 작성**(사업별·페이지별로 새로운 표를 만드는 것이 아닌, 줄을 추가하여 작성)

(3)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지역지원계정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1141-302)	13,321	13,321	17,820	19,350	500	○ 내역사업 '국립 자원봉사 연수원 건립'(미편성)은 자원봉사자 및 관리자 대상 전문교육 실시를 위한 연수원 건립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예산 5억원 증액	
						1,030	○ 내역사업 '자원봉사활동 지원체계의 효율화 증진'(26억 1,8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3,900만원 증액)은 '26년 세계자원봉사자의 해 계기,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 캠페인(가칭 "2026 다시, 봄 자원봉사 문화 캠페인") 예산 5억 3,000만원 증액, K-자원봉사단 구성·프로그램 운영 예산 5억원 증액 (총 10억 3,000만원 증액)	
2	지역발전활성화 (1231-303)	5,328	5,328	10,777	24,252	9,675	○ 내역사업인 '안전한 주민생활 환경 조성 - 안전한 화장실 조성'(63억 7,3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52억 6,300만원 증액) 사업 추진시 상시형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및 비상벨 설치 지원 대수를 확대하고 국비 지원율을 상향하기 위하여 96억 7,500만원 증액 필요	※증감액연계 (내역사업간)
						3,800	○ 내역사업인 '고향사랑기부제 활동지원'(2억원, 전년 본예산 대비 5억 5,000만원 감액) 사업 추진시 고향사랑e음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을 국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38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3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1233-301)	61,797	61,797	79,942	91,342	500	○ 내내역사업인 '미래모빌리티 거점단지 접근도로 개설'(신규) 사업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거점단지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5억원 증액	※증감액연계 (내역사업간)
						4,500	○ 내내역사업인 '북삼 인평공원 조성'(신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5억원 증액	
						3,300	○ 내내역사업인 '북삼역 진입도로 개선'(5억원, 전년 본예산 대비 5억원 증액) 사업의 2026년 상반기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보상 협의 추진을 위하여 33억원 증액	
						3,000	○ 내내역사업인 '오평~덕산간(리도204호선) 도로확포장공사'(미편성, 전년 본예산 대비 10억원 감액) 사업의 2026년 보상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30억원 증액	
						100	○ 내내역사업인 '북삼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건립'(미편성, 전년 본예산 대비 5억원 감액) 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따른 용역비를 위하여 1억원 증액	
4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1241-300)	2,835	2,835	3,742	9,742	6,000	○ 내역사업인 '2026년 섬 방문의 해 추진'(신규) 사업의 섬 방문의 해 사업비 및 전남 섬 반값 여행 지원 소요액을 고려하여 60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5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1938-301)	8,915	9,135	11,914	(1안)38,164 (2안)13,164	1,250	○ 내역사업인 '지역공동체 활성화'(신규) 사업의 지역공동체 활동비, 교육 등 용역사업비, 조사기록 일반연구비, 사업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12억 5,000만원 증액	
						(1안) 25,000 (2안)원안유지	○ 내역사업인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지원'(신규) 사업은 사회연대경제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1안) 협업 발굴 및 규모화 지원, 국내외 교류확산, 통계관리, 거버넌스, 우수사례 등 사업 추진을 위하여 250억원 증액 (2안) 법적 근거 및 업무이관 미비에 따라 신규 예산 편성이 부적절하므로 원안유지 필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개의 안을 병기
6	마을기업 육성사업 (3131-301)	1,675	1,675	5,250	7,585	2,335	○ 내역사업인 '마을기업 육성사업'(46억 5,0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31억 7,500만원 증액)의 '25년 신규 지정 마을기업 지원, 청년 및 인구감소지역 마을기업 추가 지원, 재지정 마을기업 확대를 위하여 23억 3,500만원 증액	
7	복합재난 대응 인구감소지역 집약형 도시 시범사업 (신설)	-	-	-	500	500	○ 동사업(신규)의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책용역비 및 일반용역비를 고려하여 5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8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49-306)**	-	1,000,000	1,150,000	(1안) 1,151,000 (2안) 301,000	(1안)원안유지 (2안)△850,000	○ 동 사업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1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유지 (2안) 국가채무의 급증 및 현·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이 급증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8,500억원 감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2개의 안을 병기
						1,000	○ 내역사업인 '블록체인기반 구축 및 시범사업'(신규)은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구성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10억원 신규 반영	
9	**재해위험 지역정비 (보조)** **(2635-300)**	874,154	944,332	1,048,810	1,199,028	123,994	○ 내역사업 '재해위험지구정비(5,935억 1,700만원)'의 신규 및 계속 사업지구 55개소 사업비 등 1,239억 9,400만원 증액	
						5,400	○ 내역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1,129억 9,700만원)의 신규 및 계속 사업지구 8개소 사업비 등 54억원 증액	
						20,824	○ 내역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3,419억 2,900만원)의 신규 및 계속 사업지구 21개소 사업비 등 208억 2,400만원 증액	

3.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4.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해당 없음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정당사무지원 (1132-320)	66	66	675	2,050	1,375	○ 내역사업인 '정당·후원회 법정사무관리(6억 4,0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1,100만원 증액)'는 정당 및 후원회 설치에 따른 회계관리를 지원하여 건전한 정치자금 문화를 형성하려는 것임 ○ 「정치자금법」 개정으로 지방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2026년 제9회 지방선거 이후 회계관리 프로그램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동 프로그램은 2015년 개발 이후 노후화되어 사용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바,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한 개발비 등 13억 7,5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	민주시민의식 함양및지원 (1133-330)	477	477	550	3,227	80	○ 내역사업인 '선거·정당관계자등 과정'(0, 전년 본예산과 동일)은 선거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선거·정당관계자 연수는 정당사무처 간부와 당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 및 정당 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6,500여명을 교육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2025년도와 2026년도 예산이 미반영되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연수운영비 등 8,000만원 증액	
						2,597	○ 내역사업인 '유권자 과정 등'(4억 9,0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8,400만원 증액)은 학생, 시민 등을 대상으로 관련 민주교육을 실시하는 것임 ○ 유권자 과정은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미래유권자에 대해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정당·선거관계자뿐만 아니라 미래유권자를 대상으로, 연 평균 약 3600회, 50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 간 관련 예산이 감액되고 있어, 감액 전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25억 9,7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3	선거정보 및 기록물관리 (7132-344)	1,313	1,313	5,626	6,538	912	○ 내역사업인 '도서관 운영·관리 및 도서편찬'(2억 9,7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6,700만원 감액)은 도서를 효과적으로 수집·정리·보관하고 도서관 서비스와 Web-DB를 통해 선거·학술자료를 제공하는 것임 ○ 연합뉴스는 중앙선관위를 비롯한 각급 선관위에 뉴스리더 단말기(19대), 프리미엄뉴스 아이디(4개), 모바일 뉴스 리더 서비스(445명)를 제공해왔으나, 구독 서비스 이용료 예산이 2024년부터 전액 삭감되어 구독이 어려운 상황으로, 양질의 콘텐츠 및 정보서비스 유지를 위해 서비스 이용료 9억 1,200만원 증액	
4	국제교류협력 (7132-345)	926	926	995	1,314	319	○ 내역사업인 'A-WEB 운영지원'(5억 8,6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1억 5,000만원 감액)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의 원활한 활동과 운영 및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은 창립 이후 후발민주주의 국가의 선거관리 역량강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왔으나, 보조금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액되어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운영지원을 위해 역량강화 연수사업비 등 3억 1,9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5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7132-350)	18,491	18,491	27,881	28,877	796 200	○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유지관리'(103억 6,9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5,200만원 감액)은 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원활한 행정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전산장비 유지·보수 및 행정전산장비를 도입하려는 것이고, 내역사업인 '정보기반보호강화'(34억 3,400만원, 전년 본예산 대비 3억 4,900만원 감액)은 사이버 위협 대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및 선거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현재 선거정보센터 UPS실에 UPS와 리튬이온배터리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선거사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배터리를 별도 공간으로 분리하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증가한 사이버공격 대응을 위한 보안 강화를 위해 기본조사 설계비 등 9억 9,600만원 증액	

(2) 특별회계: 해당 없음

3.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4.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해당 없음

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기관운영(총액) (7002-200)	-	-	1,421	1,465	44	○ 이태원참사 조사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 지급 현실화 보전을 위한 조사활동비(특정업무경비) 4,400만원 증액	

3.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4.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해당 없음

라. 인사혁신처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단체교섭및건전 노사관계구축 (1848-306)	152	152	152	652	500	○ 동 사업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및 이행관리,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하려는 것임 ○ 2024년 예산에서 전액삭감(△3.73억원)된 공무원노조 사무실 지원 예산의 복원이 필요하므로, 관련 소요를 고려하여 공무원노조 사무실 지원 예산 5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	공무원재해보상 사업운영 (2044-306)	2,591	2,591	2,813	3,577	608	○ 내역사업인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운영'(내역사업 예산안, 전년 본예산/추경 대비 1억 200만원 증액)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재해보상 심사를 지원하는 것임 ○ 재해보상 심사청구 증가 및 심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수당, 회의준비 비용 등 6억 800만원 증액	
						156	○ 내역사업인 '공무원 재해보상연금위원회운영 등'(내역사업 예산안, 전년 본예산/추경 대비 2,000만원 증액)은 공무상 요양 등 불승인 건에 대한 특별행정심판 실시를 지원하는 것임 ○ 재해보상 재심청구 증가 및 심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수당, 회의준비 비용 등 1억 5,600만원 증액	
3	국가시험시행 (1631-300)	13,818	13,818	13,324	14,457	1,133	○ 동 사업은 5·7·9급 공채, 외교관 후보자 선발 등을 위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국가시험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려는 것임 ○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감독관 2,000명의 증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실시되는 7급 공채 2·3차시험이 내년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이에 필요한 예산 소요를 고려하여 11억 3,3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4	국제기구 고용휴직제도 운영(ODA) (1934-531)	33,345	33,345	44,223	53,524	9,301	○ 동 사업은 국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국제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통하여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하는 것임 ○ 상대적으로 낮게 편성된 인건비 단가, 최근 누적된 고환율로 인한 환차손 등으로 사업예산의 부족분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부족한 사업비 93억 100만원 증액	

(2) 특별회계: 해당 없음

3. 공무원연금기금 운용계획안 : 해당 없음

4.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해당 없음

마. 경찰청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기획조정활동 (7131-316)	3,739	3,739	3,572	5,072	1,500	○ 판례·법률 생성형 AI 검색시스템 이용권 구매를 위한 15억원 증액	
2	경찰복지증진 (7135-311)	83,446	83,446	87,867	91,572	2,250	○ 내역사업인 “경찰관 의료지원”은 경찰관 특수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검진(우울증, PTSD)을 추가하기 위한 22억 5,000만원 증액	
						1,455	○ 내역사업인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은 증가하는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 수요 대응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마음동행센터 5개소 증설을 위한 14억 5,500만원 증액	
3	아산경찰병원 건립 (7135-313)	-	-	3,050	3,450	400	○ 내역사업인 “아산경찰병원 건립”은 건립 1년차 사업계획의 충실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의료·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4억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4	해외치안 협력강화 (3133-311)	12,111	12,111	12,314	17,816	198	○ 내역사업인 “해외 주요사건 공조수사 활동”은 “보이스피싱 등 해외범죄조직 검거작전 수행” 예산(1억 4,800만원) 및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활성화 예산(5,000만원) 등 1억 9,800만원 증액	
						1,385	○ 내역사업인 “초국가범죄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은 납치·감금 등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한 해외파견 경찰 인력 증원을 위해 귀부임 소요 여비, 주택·차량 임차료를 위한 13억 8,500만원 증액	
						3,919	○ 내역사업인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 네트워크 강화”는 동남아 스캠범죄 척결을 위한 국제공조작전(4억 1,800만원), 인터폴 펀딩을 통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 초국경 성범죄 대응(10억 9,200만원) 및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펀딩을 통한 초국경조직범죄 공동대응(24억 900만원)을 위한 39억 1,900만원 증액	
5	장비관리유지 (4231-314)	43,699	43,699	59,083	62,319	3,236	○ 내역사업인 “현장장비구입”은 전국 261개 경찰관서에 각 8개씩 개당 155만원의 방탄방패 구비를 위한 32억 3,6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6	경찰정보화 기반고도화 (정보화) (4234-511)	77,006	77,006	78,334	83,264	1,898	○ 대규모 재해·재난에서 필수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경찰청 정보시스템 DRS 구축하기 위한 정보화전략 수립(9억 3,800만원) 및 온나라 2.0 전환을 위해 클라우드 이전, DB 전면 변경, 사용자 요구 전담 대응 등을 위한 개발비(9억 6,000만원)를 위한 예산 18억 9,800만원 증액	
						3,032	○ 2025년 10월 사용 종료된 상용 AI검색시스템(엘박스)를 대체하기 위해 경찰청 내 AI기반 법령정보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 30억 3,200만원 증액	
7	미래치안 기반조성 (7132-311)	2,235	2,235	7,525	10,855	3,330	○ 치안문제 해결을 위한 AI 활용방안 검증(10억원), 자율비행 AI순찰드론 구매 및 원격관제플랫폼 구축(23억 3,000만원)을 위한 예산 33억 3,000만원 증액	
8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 (1131-311)	13,088	13,088	24,705	25,044	339	○ 내역사업인 “자율방범대 관리시스템 및 교육자료”는 자율방범대 관리시스템의 독립 서버 구축·유지 관리(1억 6,100만원), 교육훈련 실효화(7,600만원), 중앙회 지원(1억 200만원)을 위한 예산 3억 3,900만원 증액	
9	112시스템운영 (정보화) (1132-511)	16,186	16,186	20,916	21,792	876	○ 차세대 112시스템 구축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을 위해 예산 8억 7,6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0	**교통안전활동** **(1331-312)**	42,894	42,894	45,178	47,088	1,910	○ 내역사업인 “기타 교통활동 지원”은 체납과태료 징수실적 우수관서 포상금 예산(2억 6,000만원), 현행 도로교통법의 분법 및 하위법령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3억원) 및 고령운전자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 사업을 전년 수준인 9만명 지원을 유지(13억 5,000만원) 등을 위한 예산 19억 1,000만원 증액	
11	**도로교통공단 출연** **(출연금)** **(1331-314)**	139,709	139,709	136,144	144,634	8,490	○ 내역사업인 “도로교통공단(출연금)”은 교통안전 교육원 건립(20억 5,000만원), 광주광역시 운전면허시험장의 건축비·자재값 상승 등에 추가 소요되는 예산(64억 4,000만원) 등 84억 9,000만원 증액 필요	
12	**교통행정전산화** **(정보화)** **(1332-511)**	1,615	1,615	1,387	2,022	635	○ 내역사업인 “전산시스템 신기술 확대”는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은 업체의 기술지원 중단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시급하게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하는 ISP를 위한 예산 6억 3,5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3	사회적약자 보호활동 (1431-311)	16,491	16,491	18,462	20,538	405	○ 내역사업인 “가정폭력·아동 등 학대 근절”은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해 피해자보호팀 역량강화(피해자지원 및 협업비) 예산 4억 500만원 증액	
						560	○ 내역사업인 “여성대상범죄 예방 및 보호활동”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CASE 관리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팀의 사기 진작을 위한 포상금(1억 3,000만원) 및 지역경찰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관계성 범죄 상황 기반 시나리오 훈련 영상 제작 및 현장 코칭(4억 3,000만원)을 위한 5억 6,000만원 증액	
						1,111	○ 내역사업인 “피해자 보호 활동”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을 가해자의 구속·양형에 반영할 수 있는 범죄피해평가 제도 활성화(전문가 수당 3,300만원) 및 스토킹 교제폭력 신고 증가에 따라 고위험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능형CCTV 설치(10억 7,800만원)를 위한 11억 1,100만원 증액 필요	
14	수사지원 (1231-311)	220,322	221,783	229,853	239,378	6,147	○ 내역사업인 “현장수사활동경비”는 수사활동 지원 및 수사관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61억 4,700만원 증액	
						3,378	○ 내역사업인 “차세대KICS 지원”은 경찰관서 조사실당 스캐너 1대(총 4,627대) 배치를 위한 33억 7,8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5	수사인권 보호활동 (1231-317)	6,144	6,144	6,809	6,748	△61	○ 내역사업인 “진술영상녹화실 운영”은 최근 5년간 진술영상녹화 실시율이 5% 내외로 저조함에도 2026년도 예산안에 신규 설치 20개소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불필요한 예산 투입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 3억 500만원의 20%인 6,100만원 감액	
16	형사사법업무 전산화 (정보화) (1232-512)	11,550	11,550	10,761	16,061	5,300	○ 내역사업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선”은 형사사법포털(KICS)의 비정형 멀티미디어 분석기능 구현을 위한 53억원 증액	
17	지능·경제범죄 수사역량강화 (1231-312)	6,903	6,903	9,130	9,837	707	○ 내역사업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139명) 확대·개편 및 시도청 피싱사기 전담수사부서 신설(221명)에 소요되는 운영비 7억 700만원 증액	
18	사이버수사 시스템구축 (정보화) (1232-513)	11,433	11,983	12,228	13,632	1,404	○ 내역사업인 “디지털포렌식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은 노후된 2018년식 분석용 워크스테이션 90대를 교체하여 첨단 포렌식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 14억 400만원 증액	
19	형사·교통·여성 청소년범죄 수사역량강화 (1231-313)	19,660	19,660	19,620	20,431	811	○ 내역사업인 “형사활동 지원”은 2025년 10월 신설된 중대재해 전담수사팀의 전문교육(1억 1,000만원), 고용노동부와 협업체계 구축(4,000만원), 가스누출 감지기(6,100만원), 시도청 단위 전담팀의 국내 여비(3억 3,100만원), 안전모 등 보호장구(2억 6,900만원) 지원을 위한 8억 1,100만원 증액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0	경찰대학운영 (4131-311)	14,592	14,592	14,949	16,117	1,168	○ 내역사업인 “경찰대학운영”은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등 해외 고위급 경찰관 대상 지휘관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2억 300만원), 2026년 완공 예정인 경찰대학 국제경찰교육훈련센터에 외국 경찰관 대상 교육 등에 필요한 오디어비쥬얼 시스템 구매·설치(3억 3,100만원), 신임경찰 및 관리자 대상으로 올바른 공권력 행사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대한 체계적인 헌법교육(6억 3,400만원)을 위한 예산 11억 6,800만원 증액	
21	중앙학교인건비 (7102-116)	62,354	62,354	78,689	75,986	△2,703	○ 내역사업인 “중앙학교인건비”는 3월부터 교육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교육생 800명에 대한 1월·2월 봉급을 위한 예산 27억 300만원 감액	
22	수사경찰 전문교육 (4134-311)	2,157	2,157	3,588	4,870	1,282	○ 내역사업인 “수사교육운영지원”은 신임수사관을 장기교육(2개월 이상)하는 서울신임수사교육센터 서울분원 구축(11억 3,800만원) 및 수사서류 작성 등 실습을 위한 교육용 PC 구매(1억 4,400만원)를 위한 12억 8,200만원 증액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해당 없음

3.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 해당 없음

4.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 해당 없음

바. 소방청

1. 세입예산안 조정내역 : 해당 없음

2. 세출예산안 조정내역

(1)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지원 (1131-301)	4,677	4,677	5,061	8,440	3,379	○ 내역사업 '찾아가는 상담실'은 외부 전문 상담기관 상담사가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6년부터는 1명의 상담사가 1개 소방관서를 전담하도록 상담사 확충을 위한 28억 7,900만원 증액 필요 ○ 내역사업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은 심신안정이 필요한 직원을 대상으로 2~4일간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국가 차원에서 전국 대형재난 등에 출동한 대원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억원 증액 필요 ○ 내역사업 '마음건강 상담·검사·진료비 지원'은 정신건강 관련 병원비, 약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PTSD, 우울 등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소방대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사례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병원 진료비 3억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2	국립소방병원 건립 (1131-305)	62,418	69,067	39,410	42,279	2,869	○ 내역사업 '경상경비' 중 소방병원 시설, 미화, 경비 관련 외주용역비 7개월분 11억 9,000만원이 편성됨. - 국립소방병원 개원 전 5개월 분의 외주용역비 추가 반영을 위한 8억 5,000만원 증액 필요. ○ 내역사업 '일반비품'은 소방병원 진료 수행 및 건물 안전 가동을 위한 설비 등을 구축하는 것임. - 소방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수술실, 무균실 클린룸 조성 설비 구비 등에 필요한 12억 200만원 증액 필요 ○ 내역사업 '정주여건'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관사를 지원하는 것임. - '26년도에 의사직 25명분 5억 4,100만원만 편성되었으므로, 의사직 24명 및 간호직 등 일반직 26명분 추가 지원을 위한 8억 1,700만원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3	우수 소방장비 확산 기반조성 (1132-300)	5,007	5,007	866	26,536	25,670	○ 내역사업 '대형산불대응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신규)'은 산불 대응력 강화를 위한 산불전문진화차 등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① 울산: 차량구입비(국비) 19억 4,500만원 증액 필요 ② 경상남도: 산불전문진화차 등 장비 6종 25대 확충을 위한 국비 115억 2,500만원 증액 필요 ○ 내역사업 '소방차 운용역량강화 센터 구축(신규)'은 전국 단위 소방차 운전 전문교육훈련기관 및 평가인증기관을 설립하려는 것임. - 교육훈련탑(1동)과 운전연습 코스(8종) 구축예산 12억원 증액 필요 ○ 내역사업 '소방시설장비지원(신규)'은 소방대원 개인보호장비인 '가죽제 방열화'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전액 국비 지원을 위한 110억원 증액 필요	
4	국가재난대응 시설 구축 운영 (1132-331)	400	400	200	1,512	1,312	○ 내역사업 '국가산단 유류화재 적응 소화약제 비축 창고 설치(신규)'는 국가산단 대형유류화재 발생 시 소화약제 및 장비의 신속한 현장 보급을 위한 비축창고를 울산(舊 공단 119안전센터)에 설치하려는 것으로, 국비 13억 1,200만원(공사비) 증액 필요	

연번	세부사업명 (0000-000)	2025		2026(안) (A)	수정안 (B)	증감액 (B-A)	수정이유	비고
		본예산	추경					
5	미래인프라 화재위험 대응을 위한 소방기술개발 (R&D) (1160-633)	-	-	1,300	2,800	1,500	○ 내역사업 '데이터센터 화재대응기술개발(신규)'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등 국가 핵심 인프라 화재 증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화재 진압기술을 확보하려는 것임. - 데이터센터 화재대응 기술개발* 예산 15억원 증액 필요	
6	소방 융합 연구센터 구축 (1172-305) (신설)	-	-	-	100	100	○ 세부사업 '소방 융합연구센터 구축(신규)'은 2026년의 국립소방연구원 신청사 이전과 병행해서 유휴지를 개발하여 산·학·연 융합연구 중심거점을 조성하려는 것임. - 소방R&D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25. 9. 3.)에서 결정된 "소방 융합연구센터" 구축사업(신규) 이행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1억원 증액 필요	
7	119종합상황 관리 (7031-301)	125	125	1,287	2,265	978	○ 내역사업 '119상황관리 역량강화'(신규)는 119상황실 근무자를 교육하기 위한 가상교육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것임. - 실제 119신고접수 및 출동지령시스템과 동일한 훈련용 에뮬레이터 구입을 위하여 9억 7,800만원 증액 필요	
8	소방청인건비 (7001-100)	72,122	72,122	76,127	76,150	23	○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상향(소방준감→ 소방감)에 따른 인건비 2,300만원 증액 필요	
9	의용소방대 연수원 구축 (신설)	-	-	-	800	800	○ 세부사업 '의용소방대연수원 구축(신규)'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적 대응을 위하여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 자원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억원 증액 필요	

(2) 특별회계: 해당 없음

3.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4. 기타 특이사항(사업명 또는 비목 변경 등): 해당 없음

Ⅲ.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조정내역: 해당 없음

Ⅳ. 부대의견

가.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공공 데이터의 기계 판독성 확보와 특정 소프트웨어 종속성 해소를 위해, HWP 등 폐쇄형 포맷을 국제 표준인 개방형 문서 포맷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AI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문서 구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입력을 의무화하는 이행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 행정안전부는 ‘AI 학습용 공공데이터 가공 사업’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업과의 중복성 및 데이터 분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에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는 ‘AI정부24(AI 통합민원플랫폼)’ 추진에 앞서 사업에 투입되는 AI 분야 전문인력 수준 및 규모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내 노후 UPS·배터리 교체 및 공주센터 내 UPS·배터리 분리사업 추진 시 전기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 및 기술력이 검증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제한경쟁입찰 방식 등을 검토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 청년유입 및 체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청년 인구의 실질적인 지방 유입·체류를 독려할 수 있도록 개별 청년마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 대상사업 지침에서 현금성 지원 사업

을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하고, 2026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중 소득보장정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집행되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증액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안정적·지속적인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위한 운영비가 차질없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여야 하며, 향후 공공산후조리원 업무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장기적인 예산 편성 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사업과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나 산하기관에 모든 재원을 이전하여 집행률을 명목상 높이지 않도록 실집행률을 관리하고, 기금의 취지에 맞도록 일회성·전시성 사업을 지양하며 정주여건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및 평가 기준을 보완한다.

○ 정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별도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 행정안전부는 초고령화 지방자치단체, 영유아 수가 적지만 출산·양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투자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부동산교부세가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2026년 보통교부세 교부기준 개선방안 적용 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현금성 복지지출 운영·사회연대경제조직 관련 개정사항이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26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만전을 기하고 지방교부세법 제15조에 따라 보통교부세 산정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

○ 행정안전부는 탄소감축·재생에너지 확대 등 탄소중립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보통교부세 보정수요를 보강하고, 특별교부세에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및 달성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 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사업(330-01목), 자치단체교부금(330-02목), 자치단체자본보조(330-03목), 자치단체대행사업비(330-04목), 지방자치단체융자금(450-05목) 사업 중 지방소멸완화 및 극복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예산사업의 범위를 확정하고, 해당 사업들의 효과 및 성과를 평가·관리하는 '균형성장 영향 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

○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여건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교부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율 상향 등의 국비 지원을 통해 지역 간의 형평성을 확보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비부담율을 차등화하는 방안 검토한다.

○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기준에 지역사랑상품권 참여수준을 반영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행정안전부는 블록체인 기반 순환형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하여 농어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제주분원 이전을 위한 예산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지방의회가 심사한 예산을 수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방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 행정안전부는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과 옛 광주적십자병원 보존 및 활용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국비 지원을 검토한다.

○ 행정안전부는 재난대책비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당해연도 재난대책비 예산과 전년도 복구비를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에서 선거범죄 등이 제외되어 한정된 경찰 수사 인력만으로 충분한 수사가 기대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온·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선거범죄 등에 대한 자체 예방·적발·단속·조사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위탁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내부 역량 제고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별도로 마련한다.

다.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 위험직군 공무원의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데이터를 축적하게 하고, 공무상 재해요양 신청 시 인사혁신처가 정신건강검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무원 재해보상을 심사하는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 인사혁신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협의회의 안건에 '범정부 트라우마 전문가 양성'을 상정하고, 트라우마 전문가 공급 파이프라인을 구축한다.

라. 경찰청

○ 경찰청은 기동순찰대 및 중심지역관서 제도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생활밀착형 구조로 경력을 재배치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 경찰청은 세종시 소담동 등 운전면허시험장 건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 9억원을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사업으로 설정하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집행한다.

○ 경찰청은 장비관리유지 사업의 저위험권총 및 저위험탄 구입 예산 214억 3,900만원을 기획재정부 수시배정 사업으로 설정하고, 저위험권총 사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정성이 인정된 경우 예산을 집행한다.

○ 경찰청은 70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단축하고, 70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실제 운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검토한다.

○ 경찰청은 법무부와 협의하여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예산을 확대하여 피해자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

○ 경찰청은 공공 데이터의 기계 판독성 확보와 특정 소프트웨어 종속성 해소를 위해, HWP 등 폐쇄형 포맷을 국제 표준인 개방형 문서 포맷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며, AI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문서 구조 표준화 및 메타데이터 입력을 의무화하는 이행 계획을 수립·추진한다.

마. 소방청

○ 소방청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49만 8천 세대에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를 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객관적인 산출 근거를 마련하여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 반영한다.

○ 소방청은 화재진압용 개인 보호장비 소모품(방화신발, 장갑, 두건)이 화재진압 소방관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현행보다 개선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한다.

○ 소방청은 재난현장 지휘권 확립을 위해 조속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대전과 광주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감으로 상향한다.